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650호
2021.2.18.(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제439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

제440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6

[입법예고]

제2021-428호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규칙안 입법예고 ····· 8

[행정예고]

제2021-399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9

◈ 고 시

제2021-81호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 21

제2021-84호 영등포 미성아파트 등 3건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 25

제2021-85호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6

제2021-86호 이문 · 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4

제2021-87호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49

제2021-91호 현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76

제2021-92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0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 변경,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6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생활숙박시설 관리기준” 변경] ····· 121

제2021-93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381

제2021-94호 마포로1 제28 · 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83

◈ 공 고

제2021-375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 391

제2021-379호 시유재산 변상금 납부 독촉 공고 ····· 392
제2021-384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 394
제2021-385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395
제2021-390호 2020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397
제2021-412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 404
제2021-419호 2021년도 제2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 405
제2021-421호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의무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 ····· 407
제2021-430호 공시송달공고 ····· 410
제2021-433호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사실 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 417

◈ 서울시교육청 입법예고

제2021-3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423
제2021-4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429
제2021-4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34

◈ 구 고 시

제2021-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중랑구) ····· 444
제2021-3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중랑구) ····· 449
제2021-30호 도시관리계획(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성북구) ····· 452
제2021-2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서대문구) ····· 453
제2021-1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서구) ····· 456
제2021-2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영등포구) ····· 460
제2021-29호 사당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동작구) ··· 464

◈ 구 공 고

제2021-20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안)(중랑구) ····· 471
제2021-181호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강북구) ····· 475
제2021-184호 도시계획시설(북한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강북구) ····· 509

제2021-279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광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재열람 공고(은평구) ····· 609
제2021-293호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은평구) ·· 612
제2021-228호 도시계획시설(등마루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강서구) ····· 613
제2021-28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동작구) ····· 619
제2021-28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동작구) ····· 620
제2021-291호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동작구) ·· 622

◈ 사업소공고

제2021-4호 행정처분 1차(경고) 알림 공시송달 공고(강남소방서) ····· 623
제2021-61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 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 624
제2021-62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 626

◈ 기 타

제2021-50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628
제2021-5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629
제2021-5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630

자치법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39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1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서울혁신기획관 및 제3항의 갈등조정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 및 제3항”을 “서울혁신기획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교육정책과장·평생교육과장·청소년정책과장·친환경급식과장은 지방서기관”을 “교육정책과장·평생교육과장·청소년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친환경급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면직 시까지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시민 접점 행정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위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갈등조정담당관(4호)의 개방형직위 지정을 해제함(제5조).

나. 친환경 급식 등 시민 접점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친환경급식과장(평생교육국) 직위를 조정함(제17조의2).

▸ 지방서기관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 서울특별시규칙 제440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1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표 중 4급 서기관란 및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서기관	99	73	7	7	8	4
서기관또는 기술서기관	72	52			15	5

별표 1의 표 중 6급 소계란 및 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447	1,830	106	106	1,292	113
시설	556	304	2	2	230	18

별표 1의 표 중 7급 소계란, 전산란, 녹지란, 의료기술란 및 방송통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408	1,352	111	145	1,738	62
전산	128	77	5	9	36	1
녹지	79	10		2	67	
의료기술	48	2		2	44	

방송통신	59	27	3	12	17	

별표 1의 표 중 8급 소계란 및 행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급 소계	1,374	189	48	71	1,063	3

행정	165	31	15	16	102	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증가하는 행정수요의 대응 인력 재배치를 위하여 직급 및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감염병 진단·검사 기능 강화, 친환경 급식 효율적 관리, 스마트 도로 환경 조성 등 행정수요 증가 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직급·직렬 간 정원을 상계조정하여 재배치함(5명).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428호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 관련 추진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희롱 · 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나. 성희롱 · 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등의 책무(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예방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사건의 조사, 행위자에 대한 징계등 처리, 조사결과의 통지 및 공개(안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사.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여성권익담당관(전화: 02-2133-5324, FAX: 02-2133-0732, E-mail: jin1019@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행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399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 · 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76호, 2019. 5. 30.)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도시 개발사업의 평가기준을 보완·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의 실행수단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공사장 내 건설기계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함

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건축물의 개발난방설비 시 1종 보일러 설치 의무화

다. 신재생에너지 산정방식 개정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기준을 2022년까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병행시행 후 2023년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일원화

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량 산정방식 변경

- 건축면적당 일정비율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경우 일반 태양광 용량의 2배 가중치를 적용함

마.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면수 및 충전시설 비율을 연도별로 상향화

바.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신설

- 전력피크 부하감소를 위해 계약용량에 비례하여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을 신설하고 용도·규모별 적용상한을 규정함

사.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냉방설비 설치기준 명시

-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른 냉방방식 도입을 의무화함

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대책을 강화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공사 및 운영시로 감량대책 운영시점을 확대하고, 대형감량기 및 RFID종량기 중 1종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전용수거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자.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 비율 명시
차. 일조장해 평가기준을 보완 및 정비
– 사업으로 인한 일조침해 발생 사실을 입주민에게 사전 공고하도록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 2133-3542, FAX 2133-1019, E-mail: shiningjoo@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고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table>
<tr><td>1. 규제사무명</td><td>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td><td colspan="8">2. 구 분</td></tr>
<tr><td></td><td></td><td>신설</td><td>○</td><td>강화</td><td>○</td><td>내용심사</td><td>○</td><td>존속기한 연장</td><td></td></tr>
<tr><td>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9">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장 이동률, 팀장 이경옥, 담당 문주영</td></tr>
<tr><td>4. 근거법령명등</td><td colspan="5">◦ 환경영향평가법 제 42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시행규칙</td><td colspan="2">관 련 규제수</td><td colspan="2">24</td></tr>
<tr><td>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9">◦ 피규제집단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등
◦ 이해관계자 : 시민 등</td></tr>
<tr><td>6. 규제존속기한</td><td colspan="9">◦ 규제존속기한 미설정
- 「환경영향평가법」,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유지되는 동안 존치 필요</td></tr>
<tr><td>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td><td colspan="9">
<table>
<tr><td>대 기 질</td><td>1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80% → 100%)
2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1종 보일러 설치 의무화(오피스텔 포함)</td></tr>
<tr><td>온실가스</td><td>1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면 및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상향
(주차면 5%→ 10%→12%, 충전시설 3%→7%→ 10%)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산정방식 개정
(신재생에너지법→신재생에너지법 또는 녹색건축법→녹색건축법,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 상향)
3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량 산정방식 변경
(건축 면적당 주거용 건축물은 0.05kW/m2, 비주거용 건축물은 0.06kW/m2 용량 이상)
4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신설(계약전력 용량의 5% 이상)
5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냉방설비 설치기준 제시</td></tr>
<tr><td>친환경적 자원순환</td><td>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대책 강화
(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중 1종 이상을 설치하여 처리)
2 공사시 폐기물 처리 대책 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제시
3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 등 친환경적 건설자재 사용 검토 의무
4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 비율 제시
(건축물 사용 자재의 15% 이상, 정비사업 배출 폐기물의 30% 이상)</td></tr>
<tr><td>일조장해</td><td>1 일조장해 평가기준 보완
(일조침해 발생 사실을 입주민에게 사전 공고)</td></tr>
</table>
</td></tr>
</table>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우리시는 2020년 7월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전략’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를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실행될 정책방향을 제시함

전략 실행의 일환으로, 고시(안)에서는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건물, 수송, 폐기물 분야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강화하여 제시함

대기질

(건설기계 사용 부문)

1. 규제 강화의 필요성
   - ○ 대기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음
   - ○ 노후화된 건설기계의 사용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사용 공사장 대부분은 민간사업장임. 이에, 민간사업장의 대기오염 저감 노력 유도를 위하여 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 대기오염 배출로 인하여 사용 제한을 받는 대상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펌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5종에 한정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의무사용 비율을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향시켜온 바 있음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에서 건설공사장 사용 기계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규정은 공공기관 발주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민간사업자 시행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 사업자는 대기오염 배출이 적은 건설기계 확보를 위한 노력과 상대적으로 높은 대여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사업으로 유발되는 대기오염과 시민의 편익을 비교했을 때 수용 가능한 정도로 예상함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 일부 노후화된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건설공사 참여 제한이 있지만, 해당 건설기계의 경우 “저공해 조치” 이후 공사 참여가 가능함

(1종 인증 보일러 설치 의무화)

1. 규제 강화의 필요성
  ○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9.4.2.제정)에서 가정용 보일러 제조·공급, 판매 기준을 제시함
  ○ 우리시는 전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건축물 종류를 불문하고 개별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1종 인증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 개별난방설비가 필요한 건축물은 1종 인증 보일러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가정용보일러를 배출가스 및 열효율을 기준으로 1, 2종으로 구분하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거나, 응축수 배출구가 없는 등의 사유로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 설치가 어려운 경우 2종 인증 보일러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의하여 고효율 설비 적용을 위한 보일러실 설계로 인하여 1종 인증 보일러 설치가 가능하나, 오피스텔 등에 개별보일러가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응축수의 배출구 없는 보일러실 설계로 1종 인증 보일러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
  ○ 따라서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1종 보일러 설치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자 함이며, 기술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난방 설비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다른 대체 수단은 존재하지 않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규제의 영향을 받게되는 대상은 개별보일러실이 포함된 오피스텔 등 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임
  ○ 사업자의 경우 보일러실 설계 시 응축수 배출구 설계의 부담과 1종 인증 보일러 설치를 위한 추가 부담 발생함
  ○ 하지만, 이는 서울지역의 대기환경 오염과 기준 신설로 인한 시민의 편익을 비교했을 때 수용 가능한 정도로 판단함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기관리권역 내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판매하는 자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 바 있어 이번 심의기준 개정이 추가적 제한요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온실가스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면 및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상향)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우리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부분이 수송부분에서 기인하고 있어 이 분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환경친화적(저공해) 자동차 전용 주차면 확보,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등 환경친화적(저공해) 자동차 이용 편의 증진을 통하여 보급 확산시키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내연차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공간의 확대는 내연차 이용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에 대한 편의증대를 통하여 보급 확산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정책적 결정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결과임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사업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공간의 마련 및 인프라 구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됨
   ○ 그러나, 도심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주차공간과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직접적 편익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에게, 환경적 편익은 시민에게 귀속될 것임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산정방식 변경)

1. 규제 방식 변경의 필요성
   ○ 환경영향평가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기준을 도입한 시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산정방식이 유일하여 이를 차용하였으나, 2017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개정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가 신설되었고, 정부에서도 인증의무화 계획을 발표함
   – 신재생에너지법 기준 산정방식은 건물용도별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과 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생산량, 설비가격에 비례한 원별 보정계수 등을 고시하여 건물 연면적과 설비용량만으로 계산 가능

- 국토교통부는 ZEB 인증 의무화에 대한 연차별 계획 발표
  : ’ 20년 공공건축물(연면적 1천m2 이상) → ’ 25년 공공건축물(연면적 5백m2 이상), 민간건축물(연면적 1천m2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 ’ 30년 민간·공공 건축물(연면적 5백m2 이상)

○ 현행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적용 중인 신재생에너지법 기준 산정방식은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실제 설비의 에너지생산량 및 소비량 등을 반영하지 못함

○ 또한, ZEB인증제도 의무화 시 인증을 위한 에너지자립률 산정방식과 현재 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각각 별개의 에너지생산량 등을 산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함

○ 이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준을 개별 건축물의 실제 에너지자립률에 가까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ZEB 인증에서 활용되는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대규모(연면적 10만m2 이상) 건축사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의 에너지자립률 산정방식 적용 사례가 적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 발생 우려가 있음

○ 이 점을 감안하여, ’ 21~’ 22년에는 현재 기준과 새로운 기준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 23년부터 새로운 기준 전면 적용하여 사업자가 충분히 검토·대응할 수 있도록 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건축물 에너지자립률 산정을 위하여 활용 가능한 기준은 신재생에너지법 또는 녹색건축법이 유일함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기존 사업 대비 태양광, 지열 설치 비용은 증가하나, 연료전지 설치비용은 감소함

○ 또한, 1차에너지소요량 감축을 위한 단열, 창호 등 강화가 필요하여 공사비 증가도 불가피함

○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부담되어야할 불가피한 비용이며, 그로 인한 편익은 전 시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됨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해당없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량 산정방식 변경)

1. 규제 방식 변경의 필요성

○ 현재 태양광 설치 의무량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전체 신재생에너지 용량 또는 생산량 중 20퍼센트 이상을 태양광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음

○ 이러한 방식은, 같은 규모의 사업일지라도 신재생에너지원별 설치 계획에 따라 태양광 설치

의무량이 다르게 산출됨. 또한, 전체 신재생에너지 용량 또는 생산량 산정 기준 변경이 예정되어 있어 태양광 설치 의무량 산정방식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태양광 설치 의무량이 건축 규모에 따라 산정될 수 있는 '건축면적 비례'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주거용 사업은 건축면적의 35%, 비주거용 사업은 건축면적의 40% 면적에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의무량을 부여하되, 일반적 설치 장소인 옥상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벽면을 활용할 수 있어 설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태양광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 기준 제시가 없다면, 태양광 설치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함

– 태양광 의무 설치 기준이 없던(2019년 4월 이전) 시기, 태양광 발전설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설치된 반면, 지하공간의 활용이 가능한 지열, 연료전지로 편중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에너지자립률 의무 기준 내에서 에너지원 간 비율 조정을 통해 설치되므로, 추가적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광 설비 설치만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쟁 제한적인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음

– 전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16% 수준(신재생에너지법 산정 기준)

(연료전지 설치 의무화)

1. 규제 방식 변경의 필요성

○ 전력자립률이 낮은 서울의 전력 공급을 위하여 타지역에 대규모 화력발전소 등이 건설·가동중임. 특히, 여름 및 겨울철 전력사용 성수기에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노후 발전기까지 가동하며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건축물 내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경적 발전원인 연료전지 설치를 통하여 전력사용 성수기 등에 건축물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우리시 내 분산형 전원으로 활용코자 함

– 서울 내 건물에 설치된 비상전원(경유발전기) 용량은 6.4GW로 이를 일부 대체해도 원전 1기(1GW) 규모만큼 건물 내 설치 가능

– 정부는 전력 수요지 인근에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 발전량 비중 ' 40년까지 30% 목표(' 19.6월, 제3차에너지기본계획)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원 중 기상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상시발전이 가능하고, 크기가 작아 건물 내 설치가 가능함
  ○ 다만, 연료전지 가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단가가 전기요금에 비해 높아 설비의 설치 및 가동에 사업자의 불만이 존재할 수 있음
  ○ 이러한 제약요소를 감안하여 설치한 연료전지 가동으로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등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고자 함
    - ’22년부터 한전, 대형건물 등에 수소로 만든 전력(연료전지 생산 전력) 구매를 의무화 하는 제도 시행 예고(’20.10월,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정부에서 수소발전의무화 제도를 예고하였으나, 구체적 내용은 발표되지 않아 관련 규정 등은 부재함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연료전지 설치를 위한 상당한 비용 부담이 예상되어,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연료전지를 활용한 수익사업을 허용하고자 함
  - 해당 설비의 발전사업 등 수익사업에 이용, 부지 임대를 통한 외부 사업자 연료전지 설치 허용
  ○ 이러한 방식 통한 연료전지 발전량 증가는 서울의 전력 자립률을 높이고, 노후 석탄 화력발전 수요를 낮추어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연료전지 설치 의무 기준으로 인해 다른 에너지원의 설치를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음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한 냉방설비 설치 기준 제시)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m2 이상)은 여름철 냉방을 위한 전기 사용량이 많아 전력 부하를 증가시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방방식에 대한 제약 규정이 없어,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력피크를 가중시킬 여지가 있음
  - 공공기관은 연면적 1천m2 이상 냉방면적 신·증축 시 또는 새로 설치 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설비 60%를 의무화
  ○ 이에, 대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공용부분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냉방방식을 의무화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현행 건축법 관련 규정에서 중앙냉방을 도입하는 건물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설비로 냉

방부하의 60% 이상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도 주로 중앙냉방 방식이 도입되는 공용부분에 한정하고 있어 적용에 문제가 없음

○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기준으로 설치되는 지열 설비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설비에 해당되어, 대부분의 사업들은 공용부분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지열 설비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현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충족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업자에게 추가적 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친환경적 자원순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기 설치)

1. 규제 변경의 필요성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신규 시설의 건립의 어려운 상황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감량 노력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이에, 심의기준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이 높은 전용수거시설 종류를 구체화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현재 신축 건물에 일반적으로 선택되고 있는 방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정 내용에 대한 반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나, 제시된 처리 방법은 기존에도 사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수단이므로 금번 규제로 인한 추가적 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현재 선택하는 일반적인 수단이므로, 규제로 인한 경쟁 제한이 발생하지 않음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

1. 규제 강화의 필요성
   ○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많은 부분을 건설폐기물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폐기물 자체 감량 노력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이에, 건축물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일정량의 재활용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정비사업 대상 부지에서 배출한 건설폐기물량과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과 연계시켜 사업장 폐기물 배출 감소를 유도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현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용도의 공사에서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 사용하고 있음.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는 재활용 건축자재를 일정비율 사용할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 또는 높이를 완화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공사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황임
   ○ 재활용자재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금번 기준의 실행 등으로 인하여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이행해야 하므로 재활용자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함. 하지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사유 발생 시 협의내용에 대한 조정 여지가 있으므로 과도한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금번 규제는 재활용자재 사용 촉진을 내용으로 하여, 재활용 원료 이외의 원료로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자의 기업활동을 다소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이는 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영향으로 판단됨

일조장해

(일조장해 평가기준 보완)

1. 규제 강화의 필요성
   ○ 현재 주거지역 일조권 침해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침해가 발생하는 세대에 대한 대안은 부족한 상황임

○ 이에, 실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의견을 명문화하여 협의의 기본조건으로 제시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영구음영에 대한 기준은 이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시 권고되고 있는 사항이며,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 정도가 조절될 수 있도록 표현하였으므로 충분히 실현가능함
○ 사업장 내부 입주민에 대한 일조침해 발생 사실 공고, 사업장 외부 주거민을 위한 민원대책 수립은 현재도 권고되어 온 기준으로 충분히 실현가능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사업자는 영구음영 발생을 피하기 위한 설계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장 내·외 주거민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으로 판단함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대기질·온실가스·친환경적 자원순환·일조장해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해당없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81호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보행통행량이 많은 구역 등 보행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을 위하여 동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보행환경개선지구 : 5개소

연번	자치구	위 치	지구면적	유 형	지정연도
1	동대문구	신이문로 일대	72,000㎡	보행유발지구	2021
2	은평구	서오릉로2길 일대	50,000㎡	보행유발지구	
3	노원구	석계로 일대	257,000㎡	보행유발지구	
4	영등포구	문래로 일대	187,000㎡	보행유발지구	
5	종로구	계동길 일대	27,000㎡	보행유발지구	

2. 위치도(축척 없음) : 따로 붙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02-2133-2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행환경개선지구 위치도

위 치 도

□ 보행환경개선지구

① 동대문구 신이문로 일대



② 은평구 서오릉로2길 일대



③ 노원구 석계로 일대



④ 영등포구 문래로 일대



⑤ 종로구 계동길 일대


갤러리도스
한벽원미술관
북촌한옥마을
이도
종로구립
고희동미술관
석정보름우물
삼청동거리
가회동성당
해인정
대동세무
고등학교
삼청파출소
가회동
백인제가옥
김성수
선생옛집
창덕궁
가정당
오촌댁
효자각
황생가칼국수
가고시포
서울교육
박물관
가회동
주민센터
소쇼
마을서재
의풍각
대조전
희정당
아트선재센터
경근당
갤러리담
북촌문화센터
GSITM
LG상남
도서관
진설청
인정전
검서청
인정문
어차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덕성여자
고등학교
현법재판소
창동만두
현대빌딩
원서공원
금호문
진선문
원역처소
덕성여자
중학교
스타벅스
아라리오뮤지엄
인스페이스
서울돈화문
국악당
갤러리현대
종로문화원
안국빌딩
서원빌딩
운현궁
베니키아
노블호텔
루드블랑
웨딩홀
로얄팰리스
스위트아파트
조금
서울종로
경찰서
덕성여자대학교
종로캠퍼스
현대뜨레비앙
아파트
서울지방
국세청
조계사
안녕인사동
인사동
문화의거리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
코리안리
재보험빌딩
인사아트센터
크라운호텔
인사동거리
익선동
한옥거리
통통쁘띠호텔
종로구청
호텔아벤트리
오라카이
디아망빌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84호

영등포 미성아파트 등 3건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영등포구 여의도동 37번지 여의도 아파트지구 미성아파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번지 여의도 아파트지구 목화아파트 및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번지 영등포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등 총 3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목록

연번	구역명	위 치	구역면적(㎡)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비고
1	미성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여의도동 37번지 일대	40,882	2022.03.02까지	여의도 아파트지구
2	목화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여의도동 30번지 일대	11,570	2022.03.02까지	
3	영등포 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문래동5가 22번지 일대	11,188.1	2022.12.20까지	-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라목에 따른 해당기간으로부터 각 2년간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토지 등 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해당 기간 도래 전 연장 요청한 바,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 연장함

3. 관련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38) 및 영등포구 주택과(☎02-2670-3661)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끝.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85호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된 노고산동 107-38번지 일대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 5 (신촌마포4구역)	마포구 노고산동 31-6번지 일대	50,537.6	-	50,537.6	-

※ 특별계획구역5(신촌마포4구역) 외 기재생략

나.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

구 분		특별계획구역 5 (신촌마포4구역)		비 고
		기 정	변 경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좌동)	-
건축물 용도	권장 용도	판매, 업무, 관광숙박,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주거(준주거지역에 한함)	판매, 업무, 관광숙박,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함)주)	세부개발계획시 제시된 권장용도 중 선택하여 주용도로 설정
	불허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로터리변외 지역 준주거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위락시설 허용	(좌동)	전층
건폐율		60%이하	(좌동)	-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일반상업지역(간선부) : 600%이하 / 800%이하 / 법적용적률 2배 이하 일반상업지역(이면부) : 500%이하 / 700%이하 / 법적용적률 2배 이하 준주거지역 : 300%이하 / 360%이하 / 법적용적률 2배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이하 / 250%이하 / 법적용적률 2배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이하 / 200%이하 / 법적용적률 2배 이하	(좌동)	-

구 분	특별계획구역 5 (신촌마포4구역)		비 고
	기 정	변 경	
최고높이	로터리일대 : 100m이하 로터리변 제외한 상업지역 : 80m이하 주거지역 : 60m이하	로터리일대 : 100m이하 로터리변 제외한 상업지역 : 84m 이하주) 주거지역:60m이하	4-15지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 특별계획구역은 용도, 밀도, 최고높이 이외의 사항은 도시환경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름(용적률인센티브, 획지계획 등)
주) 건축물 권장용도 및 최고높이 변경사항은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한하여 적용함

■ 변경사유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43호, 2019.10.17.)』에 따른 주거 주용도 도입을 위한 용도계획 변경 및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 따른 높이 완화 적용

2. 정비구역 지정(변경)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노고산동 107-38 일대	3,258.1	증) 9.9	3,268.0	-

■ 변경사유 : 정비기반시설(공원) 추가 기부채납(9.9㎡)에 따른 시행면적 증가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258.1	증) 9.9	3,268.0	100.0	-
정비기반시설	소 계	723.8	증) 9.9	733.7	22.5	-
	도 로	322.7	-	322.7	9.9	-
	공 원	401.1	증) 9.9	411.0	12.6	-
획지	소 계	2,534.3	-	2,534.3	77.5	-
	획 지	2,534.3	-	2,534.3	77.5	-

■ 변경사유 : 정비기반시설(공원) 추가 기부채납(9.9㎡)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2)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258.1	증) 9.9	3,268.0	100.0	-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95.3	증) 9.9	505.2	15.5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762.8	-	2,762.8	84.5	-

※ 정비기반시설(공원) 추가 편입에 따른 면적증가로써, 용도지역 간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5	12	국지 도로	146 (67)	노고산동 107-112	노고산동 109-61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7.7.8)	

※ ( )는 4-15지구 내 도로 연장임

나) 공 원

시 설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②	공원	소공원	신수동 81-21일대	1,999.0 (401.1)	- (증)9.9	1,999.0 (411.0)	서울시고시 제2014-304호 (14.8.28.)	-

※ ( )는 금회 4-15지구에서 부담하는 면적임

4)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지구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신촌지역(마포) 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3,332.8	4-15	2,534.3	노고산동 107-38 일대	11	-	-	11	-	-

나)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지구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신촌지역 마포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3,332.8	4-15	2,534.3	노고산동 107-38 일대	업무	60 이하	기준 587 이하 허용 784 이하	80 이하	-
변경				2,534.3		주거	60 이하	기준 587.0 이하 허용 715.5 이하 상한 1,000.0 이하	84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43호)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주택 :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건립
-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공공주택 : 전체 공공주택 세대수의 60% 이상 건립
• 건립 규모 및 비율

구 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일반분양		30㎡ 초과 ~ 60㎡ 이하	256		76.9	
오피스텔		30㎡ 초과 ~ 60㎡ 이하	34		10.2	
공공주택		40㎡ 이하	34	43	10.2 (11.4)	12.9 (14.4)
		40㎡ 초과 ~60㎡ 이하	9		2.7 (3.0)	
	공공임대	40㎡ 이하	9	15	2.7 (3.0)	4.5 (5.0)
		40㎡ 초과 ~60㎡ 이하	6		1.8 (2.0)	
	장기일반 민간임대 (20년이상)	40㎡ 이하	25	28	7.5 (8.4)	8.4 (9.4)
		40㎡ 초과 ~60㎡ 이하	3		0.9 (1.0)	
합 계			288		100.00	

※ ( )는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299세대)에 대한 비율임

<table>
<tr><td>심의완화 사항</td><td>
• 용적률 : ① + ② + ③ = 1000.82% → 1000%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587%
② 공공기여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량 : 128.50% 적용
<table>
<tr><th>구분</th><th>목 표</th><th>인센티브 대상</th><th colspan="2">기 준</th><th colspan="2">적용(안)</th></tr>
<tr><td rowspan="3">의무</td><td rowspan="3">친환경개발</td><td>녹색건축물 인증</td><td rowspan="3">기준등급 준수 시 허용용적률 총량의 1/2 부여</td><td rowspan="3">최대 100%</td><td rowspan="3">98.5%</td><td rowspan="3">소계 128.5%</td></tr>
<tr><td>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td></tr>
<tr><td>신재생에너지이용시설</td></tr>
<tr><td>계획 유도</td><td>보행가로 활성화</td><td>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td><td>정량부여(30%)</td><td>30%</td><td>30%</td></tr>
</table>
③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285.32% 적용
<table>
<tr><td>기반시설 (도로,공원) 제공에 따른 완화</td><td>산식 = 허용용적률 × 1.3 × 가중치 × α
= 715.5% × 1.3 × 0.7736 × {(733.7㎡−312.7㎡)÷(2,534.3㎡−134.35㎡)}
= 126.21%
가중치 = [{(800%×322.7㎡)+(360%×411.0㎡)}÷733.7㎡]÷715.5%
= 0.7736</td></tr>
<tr><td>건축물 기부채납 (공람공고)</td><td>산식 = 허용용적률 × 1.3 × 가중치 × α
= 715.5% × 1.3 × 1.0 × {373.5㎡÷(2,534.3㎡−134.35㎡)}
= 144.73%</td></tr>
<tr><td>건축물 기부채납 (증가분)</td><td>산식 = 허용용적률 × 0.7 × 가중치 × α
= 715.5% × 0.7 × 1.0 × {68.8㎡÷(2,534.3㎡−134.35㎡)}
= 14.37%</td></tr>
</table>
• 높이완화 : 최고높이 80m이하 → 84m이하 (4m완화)
- 완화량 = 기준높이×(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 80m×[{421.0㎡(기반시설)+442.3㎡(건축물 기부채납)}÷3,268.0㎡]
= 최대 21m완화 가능 → 4m완화 적용
</td></tr>
<tr><td></td><td>
• 주거비율 85% 이하 (연면적 기준)
※ 주거용 용적률 400% → 850% 이하
• 공공주택 105.98% 이상 공급
※ {허용용적률−(허용용적률×비주거비율+400%)}÷2
= {715.5%−(715.5%×0.1447+400%)}÷2 = 105.98%이상 ≤ 107.26%계획
※ 공공임대주택 총 15세대, 용적률 39.17%주)
</td></tr>
<tr><td rowspan="2">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기정</td><td>• 건축지정선 : 백범로변 3m • 건축한계선 : 이면부 2m</td></tr>
<tr><td>변경</td><td>• 건축지정선 : 백범로변 3m • 건축한계선 : 이면부 2m
• 고층부(4층 이상) 벽면한계선 : 백범로변 6m</td></tr>
</table>

주) 상기 용적률은 추후 건축심의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기반시설 제공계획

구분	지구명		면적(㎡)		정비기반시설(㎡)				시설제공	순부담 비율	비고
			시행	획지	계	도로	문화시설1	분담면적			
신촌지역 마포4 구역	4-15	기정	3,258.1	2,534.3	723.8	322.7		401.1	-	22.2	
		변경	3,268.0	2,534.3	733.7	322.7	-	411.0	442.3	29.2	

※ 4-15지구외 기재생략

■ 변경사유 : 정비기반시설(공원) 추가 기부채납 및 건축물(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기부채납 계획 반영

5)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 현황 : 4세대 - 계획 : 333세대 [증) 329세대] [공동주택:299세대, 오피스텔 34호]	-

3. 기타 (2020년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주거비율 완화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은 정비계획 결정고시문에 명기할 것
   ○ 기부채납 계획한 키움센터의 별도 출입구는 이용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북측 및 동측 도로변으로 조정할 것
   ○ 층별 용도배치계획 관련 오피스텔을 최상층에 계획하였으나, 저층부로 조정 검토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지형도면 및 정비계획결정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2133-4636)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3153-9362)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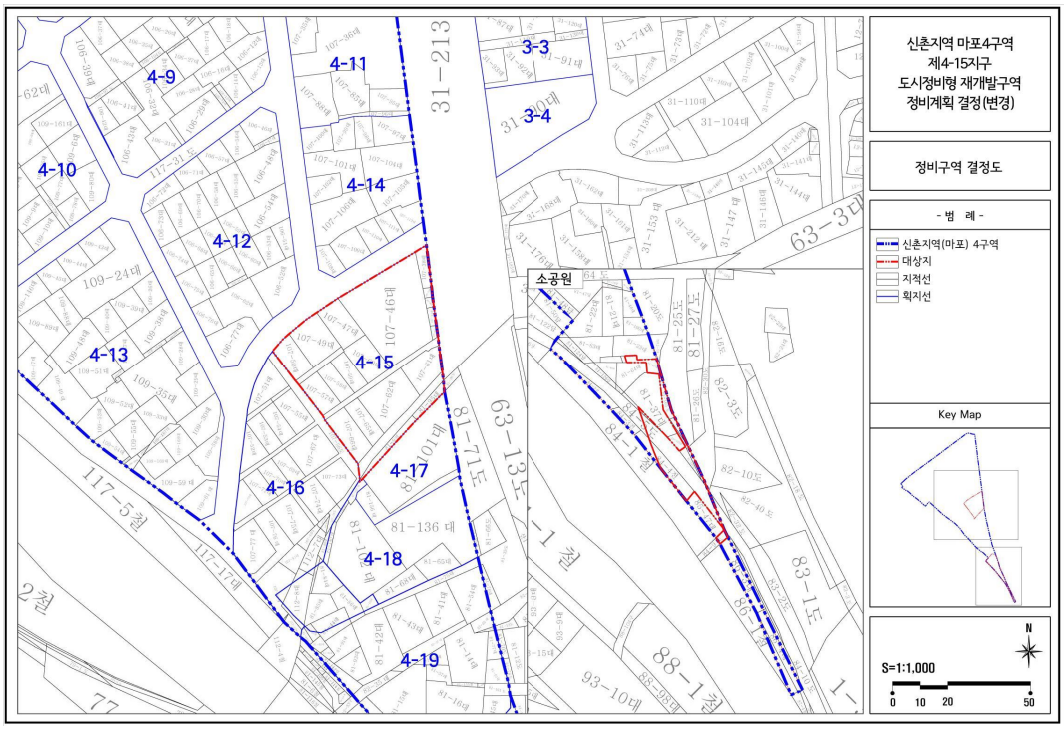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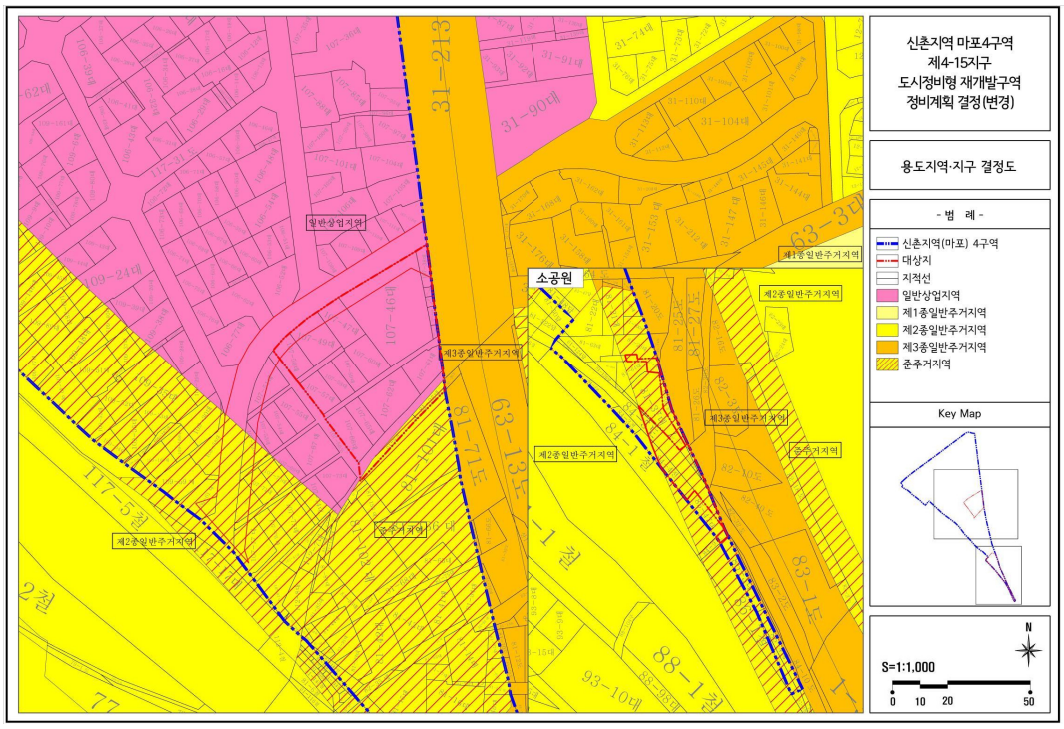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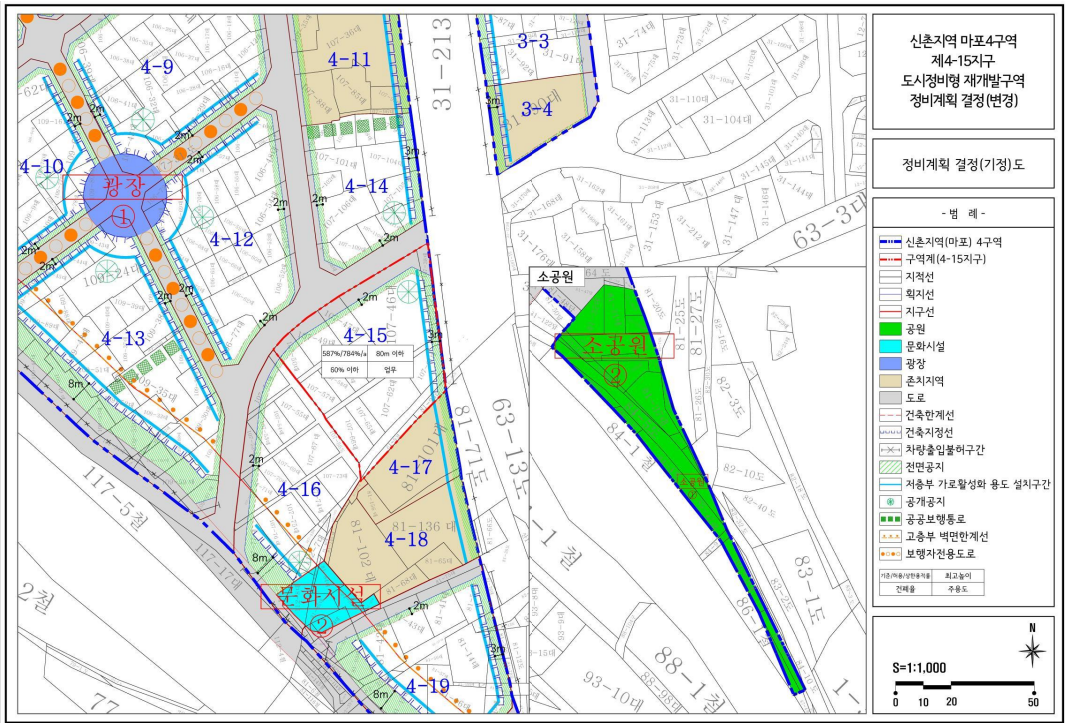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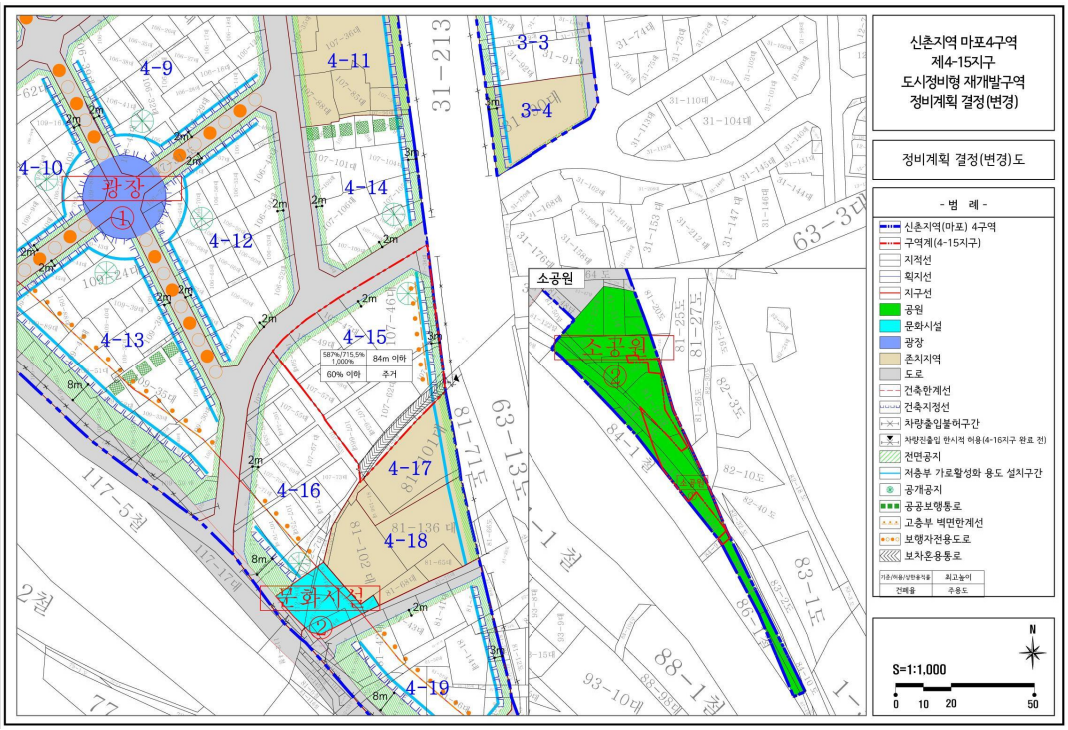

◈ 서울시특별시고시 제2021-86호

이문 · 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 제2010-365호(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7.21.), 제2011-397호(2011.11.29.), 제2012-78호(2012.4.5), 제2012-162호(2012.06.28.), 제2012-359호(2012.12.27.), 제2013-263호(2013.08.08.), 제2014-89호(2014.03.13.), 제2014-290호(2014.08.21.), 제2014-373호(2014.10.30.), 제2015-20호(2015.01.22.), 제2015-206호(2015.7.16.), 제2015-325호(2015.10.22.), 제2016-122호(2016.04.21.), 제2016-148호(2016.05.26.), 제2016-233호(2016.8.4.), 제2016-285호(2016.9.8.) 제2016-360호(2016.11.10.), 제2016-379호(2016.11.17.), 제2017-13호(2017.1.12.), 제2017-189호(2017.6.1.), 제2018-93호(2018.3.29.), 제2018-124호(2018.4.26.), 제2018-218호(2018.7.19.), 제2019-19호(2019.1.17.), 제2019-103호(2019.3.21.), 제2019-163호(2019.5.23.), 제2019-241호(2019.7.25.), 제2019-264호(2019.8.8.), 제2019-280호(2019.8.22.), 제2019-309호(2019.9.19.), 제2020-59호(2020.2.13.), 제2020-255호(2020.06.18.), 제2020-264호(2020.06.25.), 제2020-306호(2020.07.16.), 제2020-331호(2020.08.06.), 제2020-452호(2020.11.12.), 제2020-483호(2020.11.26.), 제2020-591호(2020.12.31.)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 · 휘경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휘경1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변경) 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원	801,245.3	-	801,245.3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22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기재생략)

4. 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801,245.3	-	801,245.3	100.0	
주거용지	소 계	462,437.0	-	462,437.0	57.7	-
	공동주택	443,688.9	-	443,688.9	55.4	중앙 · 삼익 · 금호(사업완료) 포함
	주상복합	11,621.5	-	11,621.5	1.4	KCC 웰츠타워 등
	종교시설	7,126.6	-	7,126.6	0.9	7개
근생용지	소 계	86,300.0	-	86,300.0	10.8	-
	상업업무	84,898.0	-	84,898.0	10.6	이문 · 회기 지구단위계획구역
	근린생활시설용지	1,402.0	-	1,402.0	0.2	이문4구역
공공시설용지	소 계	252,508.3	-	252,508.3	31.5	-
	도 로	135,170.4	-	135,170.4	16.9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철 도	44,371.5	-	44,371.5	5.5	-
	공 원	37,815.3	-	37,815.3	4.7	-
	녹 지	10,438.9	-	10,438.9	1.3	연결녹지, 철도변 완충녹지
	학 교	10,000.0	-	10,000.0	1.2	초등학교 1개교
	복합커뮤니티센터	7,923.0	-	7,923.0	1.0	4개소 -3개소 : 도시계획시설 결정 -1개소 : 도시계획시설 제외(4구역)
	공공청사 등	4,575.2	-	4,575.2	0.6	공공청사, 광장, 공공공지, 방수설비
	주 차 장	2,214.0	-	2,214.0	0.3	지하주차장 2개소 (5,530㎡ 중복결정제외)

※변경사유 : 휘경1구역 면적변경 없는 지형도면 고시선 오류(이격, 겹침 등) 수정에 따른 변경

2) 인구 · 주택수용계획 (변경없음, 기재생략)

3) 기반시설 설치계획(문화 · 복지시설 등) (변경없음, 기재생략)

4)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기재생략)

5) 교통계획 (변경없음, 기재생략)

6) 경관계획 (변경없음, 기재생략)

7)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없음, 기재생략)

8)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촉진지구		801,245.3	-	801,245.3	100.0	-
촉진구역		570,247.3	-	570,247.3	71.2	-
이문1구역		144,856.0	-	144,856.0	18.1	-
이문3구역		154,783.0	-	154,783.0	19.3	결합개발구역
이문3-1구역		133,542.0	-	133,542.0	16.7	구역지정 요건완화, 역세권
이문3-2구역		21,241.0	-	21,241.0	2.7	구릉지
이문4구역		149,690.0	-	149,690.0	18.7	-
휘경1구역		12,916.0	-	12,916.0	1.6	정비구역 기 지정
휘경2구역		43,685.3	-	43,685.3	5.5	-
휘경3구역		64,317.0	-	64,317.0	8.0	-
존치지역		230,998.0	-	230,998.0	28.8	-
지구단위 계획구역	소 계	156,000.0	-	156,000.0	19.5	-
	②	67,135.0	-	67,135.0	8.4	이문지구단위계획
	③	88,865.0	-	88,865.0	11.1	회기지구단위계획(촉진지구 내)
존치시설 및 건축물	소 계	74,998.0	-	74,998.0	9.3	-
	⑤	4,877.0	-	4,877.0	0.6	웰츠타워(주상복합) 등
	⑥	12,993.0	-	12,993.0	1.6	이문로
	⑦	11,776.0	-	11,776.0	1.5	중앙하이츠 아파트
	⑧	17,038.0	-	17,038.0	2.1	경원선
	⑨	8,446.0	-	8,446.0	1.0	삼익아파트
	⑩	1,319.0	-	1,319.0	0.2	빗물펌프장(방수설비)
	⑪	7,298.0	-	7,298.0	0.9	중앙선
	⑫	6,357.0	-	6,357.0	0.8	기타 존치건축물
	⑬	3,196.0	-	3,196.0	0.4	이문동 교회
	⑭	1,698.0	-	1,698.0	0.2	중랑제일교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없음, 기재생략)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구역명	주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계획	
		기준	상한		평균층수/최고층수	최고높이(m)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247.64%이하	30%이하	18.8이하/27이하	103이하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	-	-	-	-	-
이문3-1	공동주택 및 비주거	210%	478.40%이하	45%이하	35이하/50이하	185이하
이문3-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70%	75%이하	40%이하	-/40이하	20이하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317%이하	35%이하	-/40이하	140이하
휘경1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30%	265%이하	30%이하	19이하/20이하	78이하
휘경2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300%이하	30%이하	25이하/30이하	112이하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300%이하	30%이하	26이하/35이하	118이하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없음)

구역명	면적(㎡)	기반시설면적(㎡)					
		계획기반시설①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②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③	순부담 제외면적④	건축물 토지 환산 면적⑤	순부담면적 ①-②-③-④+⑤
합 계	570,247.3	145,458.4	24,455.1	6,736.3	2,043.0	4,472.5	116,696.5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144,856.0	29,027.0	-	-		-	29,027.0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154,783.0	34,332.0	1,280.0	-	2,043.0	-	31,009.0
이문3-1	133,542.0	34,332.0	1,280.0	-	2,043.0	-	31,009.0
이문3-2	21,241.0	-	-	-	-	-	-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149,690.0	44,544.0	12,276.4	6,476.3	-	4,472.5	30,263.8
휘경1재정비촉진구역	12,916.0	1,864.0	563.0	-	-	-	1,301.0
휘경2재정비촉진구역	43,685.3	13,892.4	6,371.0	260.0	-	-	7,261.4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64,317.0	21,799.0	3,964.7	-	-	-	17,834.3

주) 이문3(3-1), 이문3(3-2)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시 '결합개발제도 운영기준' 에 의한 결합개발구역으로서 하나의 구역으로 공원 · 녹지 면적산정
주) 휘경1재정비촉진구역은 30,000㎡ 이하의 기 결정된 정비구역으로 2㎡/세대 기준 적용
주) 이문3재정비촉진구역의 순부담면적은 인센티브 제외 도로(1,827㎡) 및 이전이 기 결정된 보건소 부지면적(216㎡)은 불포함한 수치임.
주) 이문3재정비촉진구역은 추가로 건축물(이문1동 주민센터, 임대주택, 공영주차장, 토지환산면적 3,999㎡)을 기부채납함.
주) 휘경3재정비촉진구역의 순부담면적은 건축물(사회복지시설b,c) 기부채납 환산면적(6,579㎡) 포함(건축물 연면적 : 사회복지시설b_지상 3,200㎡ / 지하 3,555㎡, 사회복지시설c_지상1,340㎡ /지하 780㎡)

12) 임대주택 건설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기재생략)
13)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기재생략)
14) 기타계획(에너지순환, 방재, 특성화계획) (변경없음, 기재생략)
15)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기재생략)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기재생략)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휘경1구역 외 변경없음)
가. 휘경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휘경1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243번지 일대	12,916.0	-	12,916.0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2,916.0	-	12,916.0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864.0	-	1,864.0	14.4	-
	도 로	1,217.0	-	1,217.0	9.4	-
	공 원	647.0	-	647.0	5.0	-
택 지 (획지)	소 계	11,052.0	-	11,052.0	85.6	-
	5-1	11,052.0	-	11,052.0	85.6	-

※변경사유 : 면적변경 없는 지형도면 고시선 오류(이격, 겹침 등) 수정에 따른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4	6~8	국지 도로	262 (153)	휘경1동 86-6	휘경1동 255-9	일반 도로	-	서고2005-408 (05.12.22)	-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900 (370)	휘경동 192-19	휘경동 145-40	일반 도로	-	건고1997-194	-
기정	소로	2	2	9	국지 도로	62	휘경1동 109-1	휘경1동 42-9	일반 도로	-	서고2005-408 (05.12.22)	-

※ ( )는 촉진구역 내 연장임

■ 공원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회기공원	소공원	휘경동 194-28 일대	647.0	-	647.0	서고2005-408 (05.12.22)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공동 이용시설	경로당,보육시설	휘경1재정비촉진구역내	252.44	-	252.44	
	관리사무소, 경비실, 작은도서관		346.49	-	346.49	
	주민공동시설		282.82	-	282.82	

주) 재개발사업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다) 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휘경1 재정비 촉진구역	12,916.0	-	-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243번지 일대	88	-	-	88	-	-

■ 건축시설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평균	최고
기정	휘경1 재정비 촉진구역	12,916.0	5-1	11,052.0	동대문구 휘경동 243번지 일대	42,00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65 이하	-	20층 (78m)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299세대 [임대 51세대](17.1%) - 전용면적 60㎡이하 : 185세대(61.9%) - 전용면적 85㎡이하 : 114세대(38.1%)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련법규에 의함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고
주택재개발사업	1단계 (2008~2019년)	주택재개발조합	증)71	이상없음	-

마) 임대주택 등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휘경1 재정비촉진구역내	11,052.0	-	5,097.79	21세대(41.2%)	40㎡이하	총건립세대수 299세대의 17%(50.83세대)
				23세대(45.1%)	40~50㎡이하	
				7세대(13.7%)	50~60㎡이하	
				51세대(100%)	계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휘경1재정비촉진구역	휘경동 243번지 일대	12,916.0	-	12,916.0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2,916.0	-	12,916.0	100.0
소계	12,916.0	-	12,916.0	10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12,916.0	-	12,916.0	100.0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①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4	6~8	국지 도로	262 (153)	휘경1동 86-6	휘경1동 255-9	일반 도로	-	서고2005-408 (05.12.22)	-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900 (370)	휘경동 192-19	휘경동 145-40	일반 도로	-	건고1997-194	-
기정	소로	2	2	9	국지 도로	62	휘경1동 109-1	휘경1동 42-9	일반 도로	-	서고2005-408 (05.12.22)	-

※ ( )는 촉진구역 내 연장임

② 공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회기공원	소공원	휘경동 194-28 일대	647.0	-	647.0	서고2005-408 (05.12.22)	-

③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공동 이용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휘경1재정비촉진구역내	252.44	-	252.44	
	관리사무소, 경비실, 작은도서관		346.49	-	346.49	
	주민공동시설		282.82	-	282.82	

주) 재개발사업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 구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 지	소 계	11,052.0	-	11,052.0	100.0	-
	5-1	11,052.0	-	11,052.0	10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①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기정	허용용도	5-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② 건축물 밀도에 관한 계획

○ 건폐율 계획

구 분	지 역	건폐율	비 고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 용적률 계획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기정	230% 이하	-	265% 이하	-	

■ 용적률 완화사항

구분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소형주택건설	
기정	35.0%	-	

○ 높이 계획

구 분	지 역	높이기준	비 고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20층/78M 이하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관련법규에 의함	-

라) 대지내공지 및 통로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기재생략)

마)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기재생략)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검토결과	환경영향	대책 및 반영사항	비고
자연환경	토양포장 우수유출	○	• 토양포장, 우수유출 다소 변화 예상	• 토양포장율의 감소 및 우수유출량 감소(빗물의 지하침투율이 최대가 되도록 조경면적 최대 반영, 투수성 포장재료 사용)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	• 기시가지(저층주거밀집)로 대규모 지형 변동없음	• 주변단지와 도로의 Level에 맞게 계획	
	녹지변동 녹지체계	○	• 녹지면적 변화	• 녹지면적 증가, 지구내 녹지공간조성, 오픈스페이스 확보	
	습지보전	x	• 보전대상 습지없음		
	비오톱	○	• 토지이용 변화로 비오톱 유형 변화	• 녹지공간을 조성, 친환경적 생태공간 확보, 불투수 토양포장율이 100%이상에서 61.7%로 변화	
생활환경	일조	○	• 일조침해 예상	• 건축선이격 및 적정배치로 일조장해 최소화, 북측엔 철로변으로 미치는 일조영향은 경미	
	바람	○	• 바람 차단 예상	• 충분한 인동간격과 풍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로 바람차단 최소화	
	에너지	○	• 에너지 이용량 증가 예상	• 지역특성에 적합한 에너지 절감방안 마련 • 지상녹지공간 확보 등 에너지 절약형 단지 • 건축물 설계기법 최대한 채택	
	환경오염	○	• 에너지사용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인구증가에 따른 오수 및 폐기물의 증가	• 청정연료사용에 따른 청정연료사용 및 체계적인 계획수립에 따라 오수 및 폐기물에 의한 오염 경미	
	경관	○	• 주택재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주택재개발지역으로 경관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통풍이 가능한 건축배치, Sky Line 등을 고려한 층고계획 수립	
	휴식 및 여가공간	○	• 주민운동시설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 보행결절부에 놀이터, 광장, 쌈지쉼터 등의 주민편의 공간으로 활용	
시행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	• 다량의 건축폐기물 발생예상 • 비산먼지 발생	• 건축폐기물은 사업시행시 저감방안 마련, 전량 위탁 및 재활용 • 주기적 살수, 세륜 • 세차시설 설치	

②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임대주택 세대수			임대주택 비율(%)		
			계	임대주택	소형주택	전체세대수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 중 소형주택
합 계	299	100.0	51	51	-	17.05	100.0	-
40㎡이하	21	7.02	21	21	-	7.02	41.18	-
40㎡초과~50㎡이하	23	7.69	23	23	-	7.69	45.10	-
50㎡초과~60㎡이하	141	47.16	7	7	-	2.34	13.72	-
60㎡초과~85㎡이하	114	38.13	-	-	-	-	-	-
85㎡초과	-	-	-	-	-	-	-	-

5. 휘경1재정비촉진구역 외 기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없음

6.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된 도서와 같음)
   ※ 첨부된 관련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9) 및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02-2127-4590)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도면

[촉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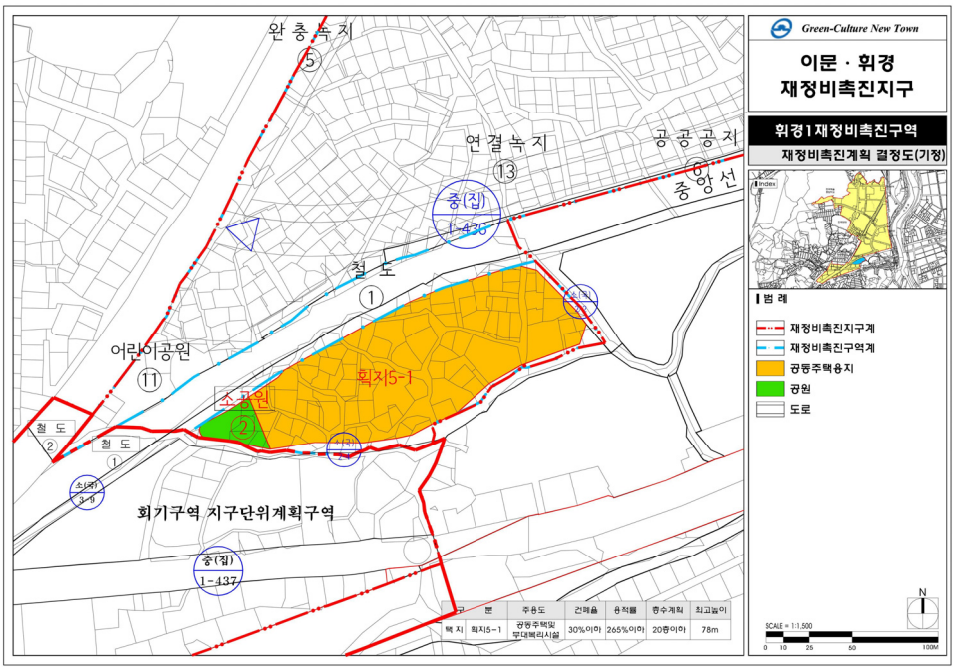

[촉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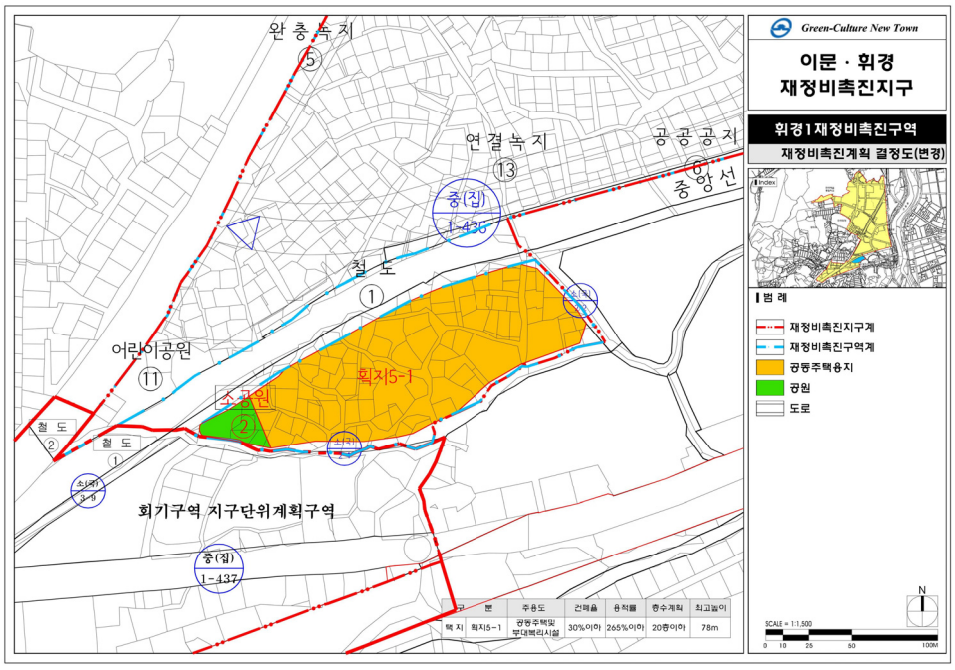

※ 변경사유 : 면적변경 없는 지형도면 고시선 오류(이격, 겹침 등) 수정에 따른 변경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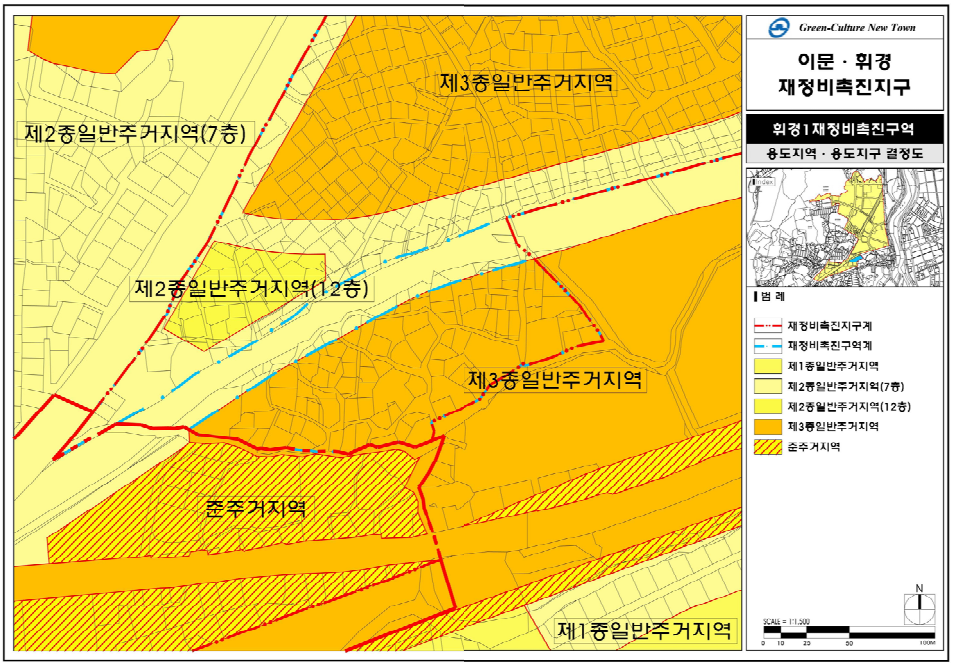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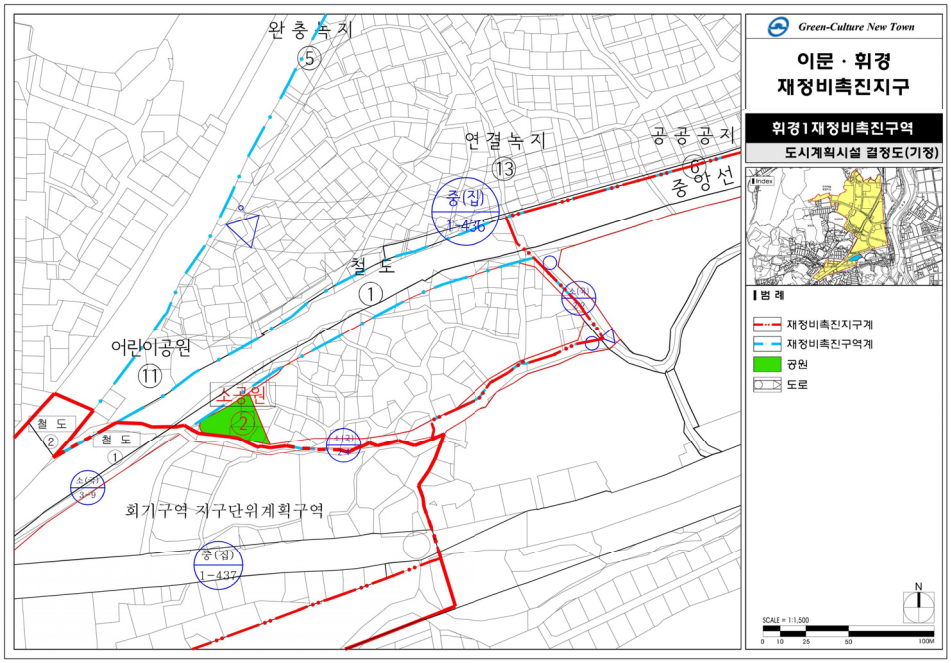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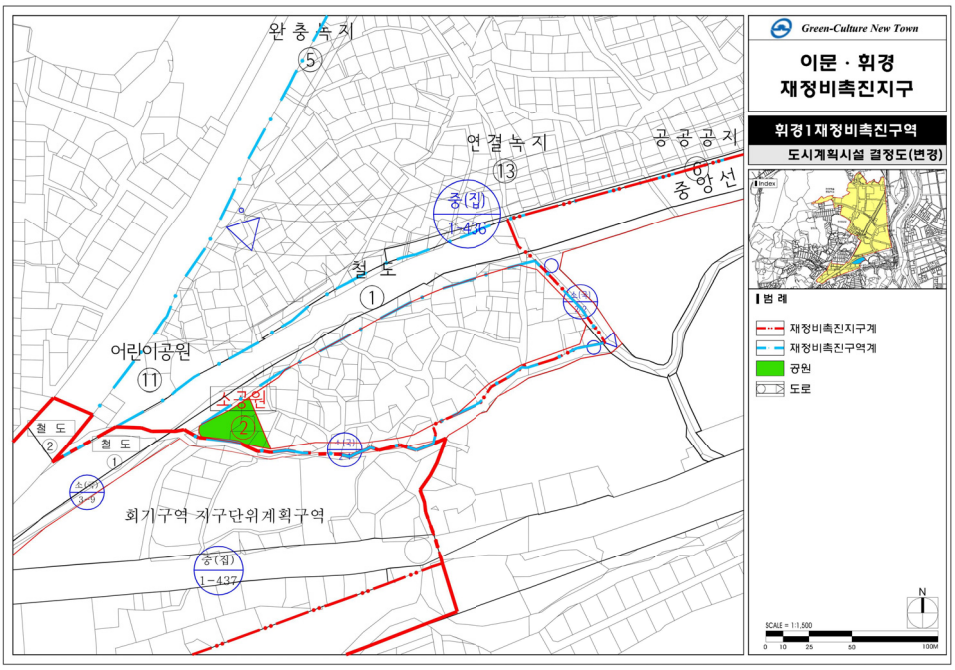

※ 변경사유 : 면적변경 없는 지형도면 고시선 오류(이격, 겹침 등) 수정에 따른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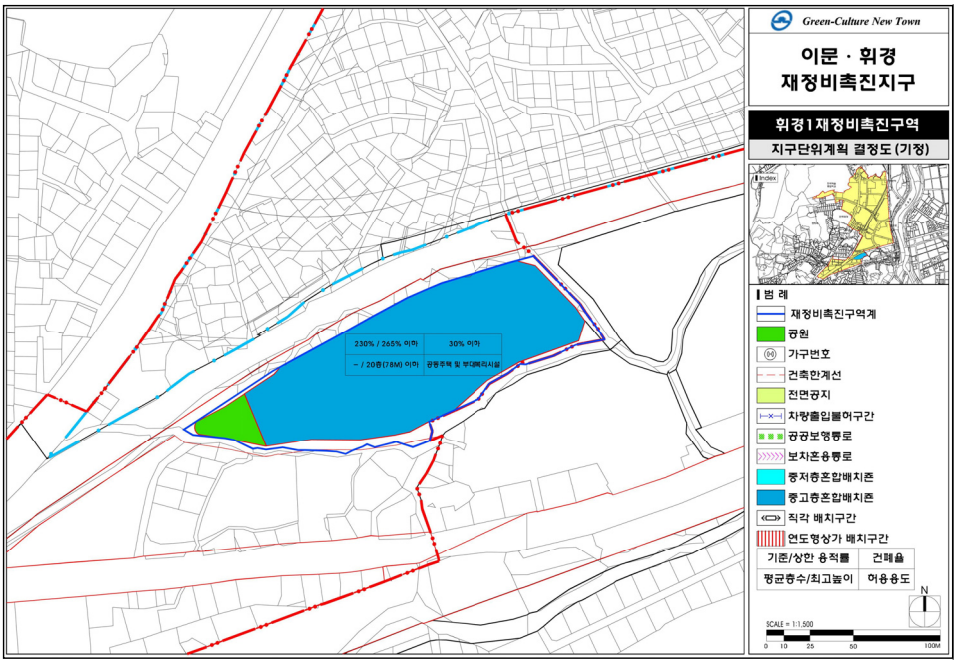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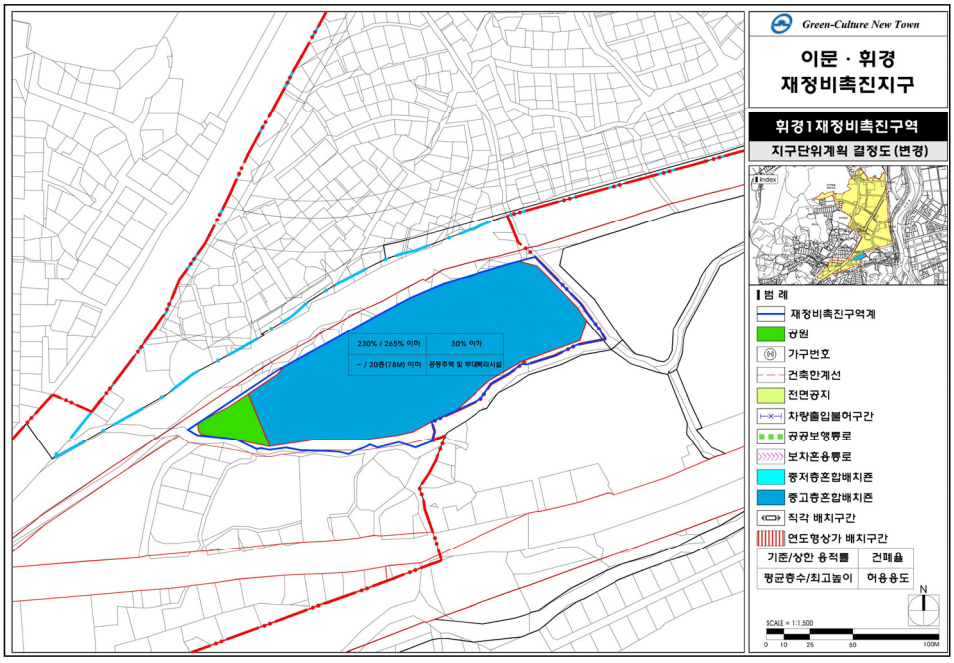

※ 변경사유 : 면적변경 없는 지형도면 고시선 오류(이격, 겹침 등) 수정에 따른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87호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8호(2004.2.25.)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48호(2005.12.30.)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1·2지구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79호(2020.12.2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89호(2020.07.09.)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개발제한구역 내 낙후지역 시가지를 개발·정비하여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임대 및 분양주택의 건립을 통해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서울시 서북권역의 관문도시로서 새로운 지구중심 창출
- 지역특성을 고려한 녹지보전방안의 제시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건전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유도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일원
- 면 적 : 3,492,650.9㎡

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길 621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없음)
- 1지구 : 2004.02.25 ~ 2017.12.31
- 2지구 : 2005.12.30 ~ 2021.12.31
- 3지구 : 2006.12.28 ~ 2021.12.31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변경 없음)
- 수용 및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변경)
  • 실시계획인가도서의 내용과 같음 : 「붙임 1」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전화:02-2133-7217),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전화: 02-351-7403)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02-3410-7578)
  • 관계도서 : 공람장소 비치 도면과 같음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해당 없음

10.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도서 : 「붙임 1」

11.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
  • 기 실시계획 변경인가 시 조건부여 사항 이행할 것.
  • 금회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 관련 제반 영향평가 협의의견 및 관계기관 등의 협의내용은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할 것.

< 붙임 1 >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계		3,492,650.9	-	3,492,650.9	100.00	
주거용지	소 계	1,394,787.2	감)3,221.8	1,391,565.4	39.84	
	주 택 용 지	1,350,153.9	감)3,221.8	1,346,932.1	38.57	
	단독주택용지	66,415.6	-	66,415.6	1.90	
	공동주택용지 (아파트)	1,283,738.3	감)3,221.8	1,280,516.5	36.67	
	준주거시설용지	36,776.4	-	36,776.4	1.05	
	근린생활시설용지	7,856.9	-	7,856.9	0.22	
상업용지	소 계	78,753.7	-	78,753.7	2.25	
	일반상업	78,753.7	-	78,753.7	2.25	
도시기반시설용지	소 계	1,896,932.1	증)14,567.6	1,911,499.7	54.73	
	도로	503,967.6 (522,269.2)	-	503,967.6 (522,269.2)	14.43 (14.95)	·중복 결정된 도로 17,428.8㎡는 하천(11,469.8㎡), 근린공원(5,959.0㎡**) 면적에 편입 ·구거용지 내 도로 872.8㎡는 구거용지 면적에 편입
	주차장	20,960.7	-	20,960.7	0.60	7개소 ·주차장③의 중복입체 결정된 사항은 구파발역 연결통로임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자동차정류장	16,529.6	증)3,221.8	19,751.4	0.57	2개소
	철도시설	4,159.1 (28,941.3)	-	4,159.1 (28,941.3)	0.12 (0.83)	·철도본선(19,771.1㎡)은 하천 1,236.6㎡*, 도로 16,017.6㎡, 근린공원 2,313.3㎡, 완충녹지 100.4㎡, 연결녹지 103.2㎡에 편입 ·구파발역(3,975.5㎡)는 도로 3,838.2㎡, 공원 137.3㎡에 편입 ·구파발역과 입체적결정된 1,035.6㎡은 상업용지에 편입
	완충녹지	36,317.0	-	36,317.0	1.04	
	연결녹지	26,052.7 (26,111.7)	-	26,052.7 (26,111.7)	0.75 (0.75)	·중복 결정된 연결녹지 59.0㎡는 하천면적에 편입
	경관녹지	135.8	-	135.8	-	
도시기반시설용지	도시자연공원	9,160.5	-	9,160.5	0.26	
	근린공원	775,698.6	-	775,698.6	22.21	
	문화공원	65,279.7	-	65,279.7	1.87	
	소공원	1,392.0	-	1,392.0	0.04	
	공공공지	672.1	-	672.1	0.02	
	자원회수시설	8,512.5	-	8,512.5	0.24	1개소
	수도시설	- (7,856.5)	-	- (7,856.5)	- (0.22)	·중복 결정된 수도시설 7,856.5㎡는 근린공원 면적에 편입
	공동구	520.4	-	520.4	0.01	관리사무소, 환기구 (매설연장 : 990m)
	공공청사	73,209.7	-	73,209.7	2.10	9개소
	학교	145,069.4	-	145,069.4	4.16	초4, 중3, 고4
	박물관	- (6,530.1)	-	- (6,530.1)	- (0.19)	1개소 ·중복 결정된 박물관①은 6,503.1㎡는 문화공원 면적에 편입
	문화시설	-	증)3,306.5	3,306.5	0.09	1개소
	체육시설	- (11,535.9)	증)8,039.3	8,039.3 (19,575.2)	0.23 (0.56)	2개소 ·중복 결정된 체육시설③(11,535.9㎡)은 폐기물처리시설 면적에 편입
	도서관	1,324.6	-	1,324.6	0.04	1개소
	사회복지시설	16,171.5	-	16,171.5	0.46	4개소
	하천	145,349.5	-	145,349.5	4.16	
	유수지	13,300.6 (22,509.3)	-	13,300.6 (22,509.3)	0.38 (0.64)	3개소 ·중복 결정된 유수지(2개소) : 9,208.7㎡는 근린공원에 편입
	종합의료시설	21,612.6	-	21,612.6	0.62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1,535.9	-	11,535.9	0.33	1개소
기타시설용지	소 계	122,177.9	감)11,345.8	110,832.1	3.18	
	주차장용지	1,969.7	-	1,969.7	0.06	부설주차장 3개소
	종교시설	31,138.0	-	31,138.0	0.89	25개소
	주유소	4,741.6	-	4,741.6	0.14	4개소
	유치원	3,889.3	-	3,889.3	0.11	6개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공익시설	6,569.8	-	6,569.8	0.19	3개소
	군사시설	3,913.3	-	3,913.3	0.11	5개소
	편익시설	47,040.1	감)11,345.8	35,694.3	1.02	8개소
	자동차관련	8,478.9	-	8,478.9	0.24	3개소
	커뮤니티시설용지	398.5	-	398.5	0.01	2개소
	업무시설용지	3,352.4	-	3,352.4	0.10	1개소
	구거용지	10,686.3	-	10,686.3	0.31	

주1 : * 철도와 중복 결정된 하천 1,236.6㎡ 중 947.9㎡는 도로와 중복 결정됨
주2 : ** 도로와 중복 결정된 근린공원 5,959.0㎡ 중 51㎡는 수도시설과 중복 결정됨
주3 : ( )는 중복결정 및 입체결정 면적 포함

2. 주택공급계획(변경)

가. 지구별 주택공급계획

• 기정

구 분	계	1지구	2지구	3지구	비 고
수용인구 (인)	49,727	13,255	15,355	21,117	
주택공급 (호)	17,800	4,734	5,484	7,582	

• 변경

구 분	계	1지구	2지구	3지구	비 고
수용인구 (인)	49,570	13,255	15,355	20,960	
주택공급 (호)	17,744	4,734	5,484	7,526	

나. 주택용지 블록별 계획

• 기정

구 분		면적	세대수	평형(평)	유형	용적률	용도지역	층수
계		1,350,153.9	17,800					
1지구	소계	371,568.2	4,734					
	BL 1-1	39,803.6	707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1-2	27,320.9	335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1-3	19,201.6	255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구 분		면적	세대수	평형(평)	유형	용적률	용도지역	층수
	BL 1-4	19,463.0	241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1-5	27,243.7	318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1-6	21,400.8	379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1-7	29,546.9	378	60㎡이하,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200% 이하	제2종전용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1-8	17,088.7	208	60㎡이하,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200% 이하	제2종전용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1-9	10,714.5	127	85㎡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1-10	19,620.7	230	60㎡이하,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200% 이하	제2종전용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1-11	13,322.0	187	60㎡이하,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200% 이하	제2종전용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1-12	35,907.7	551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1-13	33,498.3	298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 이하
	BL 1-14	35,795.9	300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 이하
	BL 1-15	21,639.9	220	-	연립주택	110% 이하	제1종일반	4층 이하
2지구	소계	382,652.7	5,484					
	BL 2-1	57,606.9	947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2-2	30,550.8	434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 15층 이하
	BL 2-3	52,431.7	659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 15층 이하
	BL 2-4	8,694.3	143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2-5	25,393.2	387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 15층 이하
	BL 2-6	29,003.1	353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 이하
	BL 2-7	50,520.5	472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 이하
	BL 2-8	37,091.5	448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 이하
	BL 2-11	30,152.8	469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 15층 이하
	BL 2-12	34,604.2	660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 15층 이하

구 분		면적	세대수	평형(평)	유형	용적률	용도지역	층수
	BL 2-13	15,577.5	162	85㎡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 이하
	BL 2-14	11,026.2	350	60㎡이하	아파트 (임대주택)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3지구	소계	595,933.0	7,582					
	BL 2-9	33,088.1	412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 이하
	BL 2-10	17,599.0	297	60㎡ 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 15층 이하
	BL 3-1	31,050.1	334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 이하
	BL 3-2	45,240.0	486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 이하
	BL 3-3	56,867.1	1,022	85㎡ 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3-4	23,523.1	423	85㎡ 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3-5	41,188.8	712	85㎡ 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3-6	18,585.4	189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 이하
	BL 3-7	17,984.0	175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 이하
	BL 3-8	32,745.7	330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 이하
	BL 3-9	61,878.0	571	85㎡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평균 15층 이하
	BL 3-10	14,232.0	126	85㎡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평균 15층 이하
	BL 3-11	13,761.0	125	85㎡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평균 15층 이하
	BL 3-12	31,257.4	426	85㎡ 이하	아파트	평균 150% 이하	제1종일반 제2종일반	4층 이하 15층 이하
	BL 3-13	64,126.8	1,117	60㎡ 이하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120% 이하	제2종전용	평균 7층 이하 (최고 12층 이하)
	BL 3-14	24,930.9	554	85㎡ 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3지구	BL 3-15	1,460.0	26	60㎡ 이하, 60㎡초과	공동주택	200 이하	제2종일반	-
	단독 1-1	2,768.1	12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1-2	3,615.1	17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1-3	3,662.8	17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구 분	면적	세대수	평형(평)	유형	용적률	용도지역	층수
단독 1-4	2,889.7	13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1-5	1,130.2	3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1-6	1,546.6	8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1-7	1,452.0	7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1-8	3,695.9	15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1-9	2,848.4	9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1-10	459.9	2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1-11	2,640.0	8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1-12	3,860.1	12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1-13	560.5	2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1-14	5,279.0	16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1-15	2,109.2	7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1-16	1,025.6	3		단독주택	200% 이하	제2종일반	4층 이하
단독 2-1	1,481.2	5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2-2	3,299.7	10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2-3	4,192.1	13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2-4	5,612.1	18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3-1	954.0	5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3-2	2,444.9	13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3-3	2,336.0	14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3-4	2,393.1	14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3-5	1,407.8	5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구 분		면적	세대수	평형(평)	유형	용적률	용도지역	층수
	단독 3-6	2,585.2	8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4	166.4	1	-	단독주택	200% 이하	제2종일반	-

• 변경

구 분		면적	세대수	평형(평)	유형	용적률	용도지역	층수
계		1,346,932.1	17,744					
1지구	소계	371,568.2	4,734					
	BL 1-1	39,803.6	707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1-2	27,320.9	335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1-3	19,201.6	255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1-4	19,463.0	241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1-5	27,243.7	318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1-6	21,400.8	379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1-7	29,546.9	378	60㎡이하,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200% 이하	제2종전용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1-8	17,088.7	208	60㎡이하,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200% 이하	제2종전용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1-9	10,714.5	127	85㎡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1-10	19,620.7	230	60㎡이하,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200% 이하	제2종전용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1-11	13,322.0	187	60㎡이하,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200% 이하	제2종전용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1-12	35,907.7	551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1-13	33,498.3	298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 이하
	BL 1-14	35,795.9	300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 이하
	BL 1-15	21,639.9	220	-	연립주택	110% 이하	제1종일반	4층 이하

구 분		면적	세대수	평형(평)	유형	용적률	용도지역	층수
2지구	소계	382,652.7	5,484					
	BL 2-1	57,606.9	947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2-2	30,550.8	434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 15층 이하
	BL 2-3	52,431.7	659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 15층 이하
	BL 2-4	8,694.3	143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2-5	25,393.2	387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 15층 이하
	BL 2-6	29,003.1	353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 이하
	BL 2-7	50,520.5	472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 이하
	BL 2-8	37,091.5	448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 이하
	BL 2-11	30,152.8	469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 15층 이하
	BL 2-12	34,604.2	660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 15층 이하
2지구	BL 2-13	15,577.5	162	85㎡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 이하
	BL 2-14	11,026.2	350	60㎡이하	아파트 (임대주택)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3지구	소계	592,711.2	7,526					
	BL 2-9	33,088.1	412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 이하
	BL 2-10	17,599.0	297	60㎡ 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 15층 이하
	BL 3-1	31,050.1	334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 이하
	BL 3-2	45,240.0	486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 이하
	BL 3-3	56,867.1	1,022	85㎡ 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3-4	23,523.1	423	85㎡ 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3-5	41,188.8	712	85㎡ 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3-6	18,585.4	189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 이하
	BL 3-7	17,984.0	175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 이하
	BL 3-8	32,745.7	330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 이하
	BL 3-9	61,878.0	571	85㎡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평균 15층 이하

구 분		면적	세대수	평형(평)	유형	용적률	용도지역	층수
	BL 3-10	14,232.0	126	85㎡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평균 15층 이하
	BL 3-11	13,761.0	125	85㎡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평균 15층 이하
	BL 3-12	31,257.4	426	85㎡ 이하	아파트	평균 150% 이하	제1종일반 제2종일반	4층 이하 15층 이하
	BL 3-13	60,905.0	1,061	60㎡ 이하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120% 이하	제2종전용	평균 7층 이하 (최고 12층 이하)
	BL 3-14	24,930.9	554	85㎡ 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 이하
	BL 3-15	1,460.0	26	60㎡ 이하, 60㎡초과	공동주택	200 이하	제2종일반	-
	단독 1-1	2,768.1	12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1-2	3,615.1	17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1-3	3,662.8	17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1-4	2,889.7	13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1-5	1,130.2	3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1-6	1,546.6	8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1-7	1,452.0	7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1-8	3,695.9	15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1-9	2,848.4	9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1-10	459.9	2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1-11	2,640.0	8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1-12	3,860.1	12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3지구	단독1-13	560.5	2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1-14	5,279.0	16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1-15	2,109.2	7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1-16	1,025.6	3		단독주택	200% 이하	제2종일반	4층 이하
	단독 2-1	1,481.2	5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2-2	3,299.7	10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구 분	면적	세대수	평형(평)	유형	용적률	용도지역	층수
단독 2-3	4,192.1	13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2-4	5,612.1	18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3-1	954.0	5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3-2	2,444.9	13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3-3	2,336.0	14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3-4	2,393.1	14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3-5	1,407.8	5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3-6	2,585.2	8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 이하
단독 4	166.4	1	-	단독주택	200% 이하	제2종일반	-

3. 도시관리계획(변경)

가. 도시개발구역(변경 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없음)

다. 용도지역(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492,650.9	-	3,492,650.9	100.0	
주 거 지 역	2,291,666.0	-	2,291,666.0	65.6	
전용주거지역	864,357.0	-	864,357.0	24.7	
제1종 전용주거지역	123,549.2	-	123,549.2	3.5	
제2종 전용주거지역	740,807.8	-	740,807.8	21.2	용적률 150% 이하
일반주거지역	1,346,563.5	감)18,680.1	1,327,883.4	38.0	
제1종 일반주거지역	45,838.6	-	45,838.6	1.3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96,422.5	감)42,096.8	1,254,325.7	35.9	
제3종 일반주거지역	4,302.4	증)23,416.7	27,719.1	0.8	
준주거지역	80,745.5	증)18,680.1	99,425.6	2.9	
일 반 상 업 지 역	121,604.5	-	121,604.5	3.5	
자 연 녹 지 지 역	1,079,380.4	-	1,079,380.4	30.9	

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11항에 의거하여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50% 이하로 함.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		면적 (㎡)	비고
		기 정	변 경		
1	진관동 161-23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3,416.7	• 연서로변 역사·문화·관광 거점 형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진관동 208-10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8,680.1	• 진관지역 생활권 내 연서로변 중심기능 수행과 역사·문화·관광 중심거점 형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라. 도시계획시설(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없음)

나)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진관동 77-7 일원	5,077.0	감)3,221.8	1,855.2	서고시458 06.12.28	
신설	7	주차장	진관동 175-309 일원	-	증)3,221.8	3,221.8	서고시289 20.07.09	

주) ( )는 사업대상지 내 면적임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 시설 변경 - 면적 : 5,077.0㎡ → 1,855.2㎡ (감3,221.8㎡)	• 서울시 진관공영차고지 확충계획에 따라 진관 제2공영차고지 조성부지 확보를 위해 주차장① 용지 일부를 자동차장류장②용지로 변경
7	주차장	• 시설 신설 - 면적 : 3,221.8㎡	• 기자촌 지역의 은평 문화거점 형성에 따른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차장 신설

다) 철도(변경없음)

라) 자동차정류장(변경)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자동차정류장	공영 차고지	진관동 77-7 일원	-	증)3,221.8	3,221.8	서고시289 20.07.09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자동차정류장	• 시설 신설 - 면적 : 3,221.8㎡	• 서울시 진관공영차고지 확충계획에 따라 진관제2공영차고지 조성부지 확보를 위해 주차장①용지 일부를 자동차정류장②용지로 변경하여 신설

2) 공간시설(변경 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공공청사(변경 없음)

나) 학교(변경 없음)

다) 문화시설(변경)

•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문화시설	문화시설	진관동 161-23 일원	-	증) 3,306.5	3,306.5	서고시289 20.07.09	

•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문화시설	• 시설 신설 - 면적 : 3,306.5㎡	• 은평구 통일박물관 건립계획에 따라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편익②용지를 문화시설②용지로 변경하여 신설

라) 체육시설(변경)

•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체육시설	-	진관동 75-29 일원	-	증)8,039.3	8,039.3	서고시289 20.07.09	

•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체육시설	• 시설 신설 - 면적 : 8,039.3	• 서울시 요청사항인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부지 확보를 위하여 편익⑭ 용지를 체육시설② 용지로 변경하여 신설

마) 도서관(변경 없음)
바) 사회복지시설(변경 없음)

5) 방재시설(변경 없음)
6) 보건위생시설(변경 없음)
7) 환경기초시설(변경 없음)

마. 기타 도시기반시설(변경)
1) 종교시설(변경 없음)
2) 주유소시설(변경 없음)
3) 유치원시설(변경 없음)
4) 공익시설(변경 없음)
5) 군사시설(변경 없음)
6) 편익시설(변경)
• 편익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편익	진관동 161-23 일원	3,306.5	감)3,306.5	-	
폐지	14	편익	진관동 75-29 일원	8,039.3	감)8,039.3	-	

• 편익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편익	• 시설 폐지	• 은평구 통일박물관 건립계획에 따라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편익②용지를 문화시설②용지로 변경
14	편익	• 시설 폐지	• 서울시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계획에 따라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편익⑭용지를 체육시설② 용지로 변경

7) 자동차관련시설(변경 없음)
8) 주차장(부설주차장)(변경 없음)
9) 커뮤니티시설(변경 없음)
10) 업무시설(변경 없음)
11) 구거용지(변경 없음)

4.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내용 및 조서(변경) : 붙임 2

5.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변경 없음)

< 붙임 2 >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내용 및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없음)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 “「붙임1」 3.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같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 “「붙임1」 3.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같음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 공동주택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소계		64,126.8	감)3,221.8	60,905.0	
	BL 3-13A	진관동 175-204 일원	59,268.6	감)3,221.8	56,046.8	
	BL 3-13B	진관동 175-481 일원	1,652.7	-	1,652.7	
	BL 3-13C	진관동 175-405 일원	1,624.5	-	1,624.5	
	BL 3-13D	진관동 175-419 일원	1,581.0	-	1,581.0	

– 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BL 3-13A	◦ 기자촌 지역의 은평 문화거점 형성에 따른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BL 3-13A 용지 일부를 주차장⑦ 용지로 변경

• 단독주택용지(변경 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없음)

• 준주거시설용지(변경 없음)

• 상업용지(변경 없음)

• 주차장용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고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주	①	-	진관동 77-7 일원	5,077.0	감)3,221.8	1,855.2	
신설	주	⑦	-	진관동 175-309 일원	-	증)3,221.8	3,221.8	

– 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주 ①	◦ 서울시 진관공영차고지 확충계획에 따라 진관제2공영차고지 조성부지 확보를 위해 주차장① 용지 일부를 차고지② 용지로 변경
주 ⑦	◦ 기자촌 지역의 은평 문화거점 형성에 따른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BL 3-13A 용지 일부를 주차장⑦ 용지로 변경하여 신설

• 자동차정류장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차고지	②	-	진관동 77-7 일원	-	증)3,221.8	3,221.8	

– 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차고지 ②	◦ 서울시 진관공영차고지 확충계획에 따라 진관제2공영차고지 조성부지 확보를 위해 주차장① 용지 일부를 차고지② 용지로 변경하여 신설

• 자원회수시설용지(변경 없음)
• 수도시설용지(변경 없음)
• 공동구용지(변경 없음)
• 공공청사용지(변경 없음)
• 유치원용지(변경 없음)
• 학교용지(변경 없음)
• 도서관시설용지(변경 없음)
• 박물관용지(변경 없음)
• 문화시설용지(신설)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문화	②	-	진관동 161-23 일원	-	증)3,306.5	3,306.5	

– 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문화 ②	◦ 은평구 통일박물관 건립계획에 따라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편익시설② 용지를 문화시설② 용지로 변경하여 신설

•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 없음)

• 체육시설용지(신설)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체육	②	-	진관동 75-29 일원	-	증)8,039.3	8,039.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1호(2020.01.09.)로 변경된 사항 중 폐기물처리시설 지상부에 체육시설③ 중복결정은 은평구청에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진행

– 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체육 ②	◦ 서울시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계획에 따라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편익⑭ 용지를 체육시설② 용지로 변경하여 신설

• 폐기물처리시설용지(변경 없음)
• 종교용지(변경 없음)
• 주유소용지(변경 없음)
• 공익시설용지(변경 없음)
• 편익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편익	②	-	진관동 161-23 일원	3,306.5	감)3,306.5	-	
폐지	편익	⑭	-	진관동 75-29 일원	8,039.3	감)8,039.3	-	

– 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편익 ②	◦ 은평구 통일박물관 건립계획에 따라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편익시설② 용지를 문화시설② 용지로 변경
편익 ⑭	◦ 서울시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계획에 따라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편익⑭ 용지를 체육시설② 용지로 변경

• 군사시설용지(변경 없음)
• 자동차관련시설용지(변경 없음)
• 종합의료시설용지(변경 없음)
• 유수지용지(변경 없음)
• 주차장시설용지(부설주차장)(변경 없음)
• 커뮤니티시설용지(변경 없음)
• 업무시설용지(변경 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 공동주택용지(변경 없음)
- 단독주택용지(변경 없음)
- 단독주택용지(한옥지정구역)(변경 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없음)
- 준주거시설용지(변경 없음)
- 상업용지(변경 없음)
- 주차장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주	주 7	용도	◦ 지정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5절 주차장을 따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m	

- 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주 ⑦	◦ 기자촌 지역의 은평 문화거점 형성에 따른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BL 3-13A 용지 일부를 주차장⑦ 용지로 변경

- 자동차정류장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차고지	차고지 2	용도	◦ 지정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6절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을 따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20m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 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차고지 ②	◦ 서울시 진관공영차고지 확충계획에 따라 진관제2공영차고지 조성부지 확보를 위해 주차장① 용지 일부를 차고지② 용지로 변경하여 신설

- 자원회수시설용지(변경 없음)
- 공동구시설용지(변경 없음)
- 공공청사용지(변경 없음)
- 학교시설용지(변경 없음)
- 도서관용지(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 없음)
- 문화시설용지(신설)

구분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문화	문화 2	용도	◦ 지정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 제4절 문화시설을 따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동일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없이 재료와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니도록 계획	
			색채	◦ 원색의 사용을 금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 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문화 ②	◦ 은평구 통일박물관 건립계획에 따라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편익시설② 용지를 문화시설② 용지로 변경하여 신설

- 체육시설용지(신설)

구분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체육	체육 2	용도	◦ 지정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 제5절 체육시설을 따름, 군사시설(토우진지 1개소) ※군사시설은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함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20m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1호(2020.01.09.)로 변경된 사항 중 폐기물처리시설 지상부에 체육시설③ 중복결정은 은평구청에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진행

– 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체육 ②	◦ 서울시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계획에 따라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편익⑭ 용지를 체육시설② 용지로 변경하여 신설

- 폐기물처리시설용지(변경 없음)
- 종교용지(변경 없음)
- 주유소용지(변경 없음)
- 공익시설용지(변경 없음)
- 편익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편익	편익 2, 5, 7, 8, 11-2, 12	용도	◦ 허용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방송통신시설 ※ 시설별 제한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동일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없이 재료와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니도록 계획	
			색채	◦ 원색의 사용을 금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3m	
변경	편익	편익 5	용도	◦ 지정용도 : 특화시설(10% 이상), 업무시설(20% 이상, 오피스텔 제외) ◦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노유자시설 ※ 특화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제외),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촬영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시설별 제한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 불허용도 : 지정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허용 400% 이하) ※ 용적률 인센티브 –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전시장)] 개방 시 3계수 적용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6) Ⅱ-1-4-5-(3) 인센티브항목 등 계획기준 적용	
			높이	15층 이하	
			배치	–	
			형태	◦ 동일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없이 재료와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니도록 계획	
			색채	◦ 원색의 사용을 금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3m	
변경	편익	편익	용도	◦ 지정용도 : 특화시설(20% 이상)	

구분	도 면 번 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7, 8, 11-2, 12		◦ 완화용도 : 업무시설(바닥면적 제한 완화, 오피스텔 제외) ◦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노유자시설 ※ 특화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제외),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촬영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시설별 제한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완화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동일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없이 재료와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니도록 계획	
			색채	◦ 원색의 사용을 금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5m	
폐지	편익	편익 2	-	-	
기정	편익	편익 4	용도	◦ 허용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유치원 제외), 운동시설 (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방송통신시설 ※ 시설별 제한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동일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없이 재료와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니도록 계획	
			색채	◦ 원색의 사용을 금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3m	
변경	편익	편익 4	용도	◦ 지정용도 : 특화시설(10% 이상), 업무시설(20% 이상, 오피스텔 제외) ◦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노유자시설 ※ 특화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제외), 교육연구시설(유치원 제외), 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촬영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시설별 제한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 불허용도 : 지정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허용 400% 이하) ※ 용적률 인센티브 -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전시장)] 개방 시 3계수 적용	

구분	도 면 번 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6) Ⅱ-1-4-5-(3) 인센티브항목 등 계획기준 적용	
			높이	15층 이하	
			배치	-	
			형태	◦ 동일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없이 재료와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니도록 계획	
			색채	◦ 원색의 사용을 금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10m	
기정	편익	편익 14	용도	◦ 허용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군사시설(토우진지 1개소) ※필히 군부대와 협의 후 군사시설 설치 ※시설별 제한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20m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폐지	편익	편익 14	-	-	

- 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편익 ②	◦ 은평구 통일박물관 건립계획에 따라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편익시설②용지를 문화시설② 용지로 변경
편익 ④, ⑤	◦ 진관지역생활권(은평지구)의 중심기능 수행과 역사·문화·관광 거점 형성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도입용도 중 일부를 지정용도(특화시설 및 업무시설)로 변경 ◦ 제2종전용주거지역(BL2-9)과 연접한 경계부(편익④ 북측)에 완충공간이 필요하여, 편익④ 용지 내 건축한계선 변경(3m→10m)을 통한 완충공간 확보
편익 ⑦, ⑧, ⑪-2, ⑫	◦ 편익시설의 조속한 공급으로 거주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주변 문화인프라와 연계한 역사·문화·관광 중심 거점형성을 위해 도입용도 중 일부를 지정용도(특화시설) 및 완화용도(업무시설)로 변경 ◦ 제2종전용주거지역(BL3-9)과 연접한 경계부(편익⑧ 북측)에 완충공간이 필요하여, 편익⑧ 용지 내 건축한계선 변경(3m→5m)을 통한 완충공간 확보
편익 ⑭	◦ 서울시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계획에 따라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편익⑭ 용지를 체육시설② 용지로 변경

- 종합의료시설용지(변경 없음)
- 군사시설용지(변경 없음)
- 자동차관련시설용지(변경 없음)
- 주차장용지(부설주차장)(변경 없음)
- 커뮤니티시설용지(변경 없음)
- 업무시설용지(변경 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 일반사항(변경 없음)
- 공동주택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BL	BL 3-11 BL 3-12 BL 3-1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변경	BL	BL 3-11 BL 3-12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BL3-13 용지는 주차장⑦로 변경

- 단독주택용지(변경 없음)
- 단독주택용지(한옥지정구역)(변경 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없음)
- 준주거용지(변경 없음)
- 상업용지(변경 없음)
- 주차장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주	주 1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통일로변에 5m의 외곽녹지를 지정	
변경	주	주 1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통일로변에 5m의 외곽녹지를 지정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신설	주	주 7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자동차정류장용지(변경 없음)
- 자원회수시설용지(변경 없음)
- 공공청사용지(변경 없음)
- 학교시설용지(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 없음)
- 문화시설용지(신설)

구분	도 면 번 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신설	문화	문화 2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도로 경계선 사이 3m 외곽녹지 설치	

- 체육시설용지(신설)

구분	도 면 번 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신설	체육	체육 2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도로 경계선 사이 3m 외곽녹지 설치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1호(2020.01.09.)로 변경된 사항 중 폐기물처리시설 지상부에 체육시설③ 중복결정은 은평구청에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진행

- 폐기물처리시설용지(변경 없음)
- 종교용지(변경 없음)
- 주유소용지(변경 없음)
- 공익시설용지(변경 없음)
- 편익시설용지(변경)

구분	도 면 번 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편익	편익 2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차량출입불허(허용)구간 지정 ◦ 녹지를 제외한 인접대지 경계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3m 외곽녹지 설치	
폐지	-	-	-	-	편익2 폐지 (문화②로 변경)
기정	편익	편익 4, 5, 7~9, 12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차량출입불허(허용)구간 지정 ◦ 녹지를 제외한 인접대지 경계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2~3m 외곽녹지 설치	
변경	편익	편익 5, 7, 9, 12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차량출입불허(허용)구간 지정 ◦ 녹지를 제외한 인접대지 경계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2~3m 외곽녹지 설치	
변경	편익	편익 4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차량출입불허(허용)구간 지정 ◦ 인접대지 경계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2~10m 외곽녹지 설치	BL2-9경계선 외곽녹지 변경
변경	편익	편익 8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차량출입불허(허용)구간 지정 ◦ 인접대지 경계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2~5m 외곽녹지 설치	BL3-9경계선 외곽녹지 변경
기정	편익	편익 14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도로 경계선 사이 3m 외곽녹지 설치	
폐지	-	-	-	-	편익14 폐지 (체육②로 변경)

- 군사시설용지(변경 없음)
- 자동차관련시설용지(변경 없음)
- 종합의료시설용지(변경 없음)
- 주차장시설용지(부설주차장)(변경 없음)
- 업무시설용지(변경 없음)

4)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없음)

5)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없음)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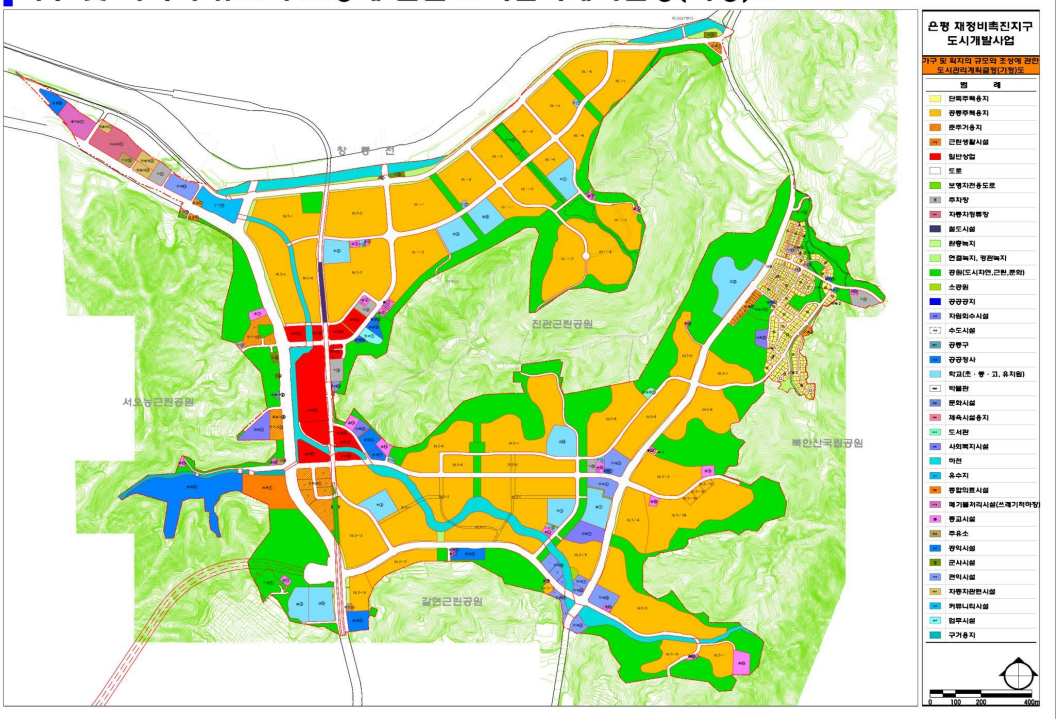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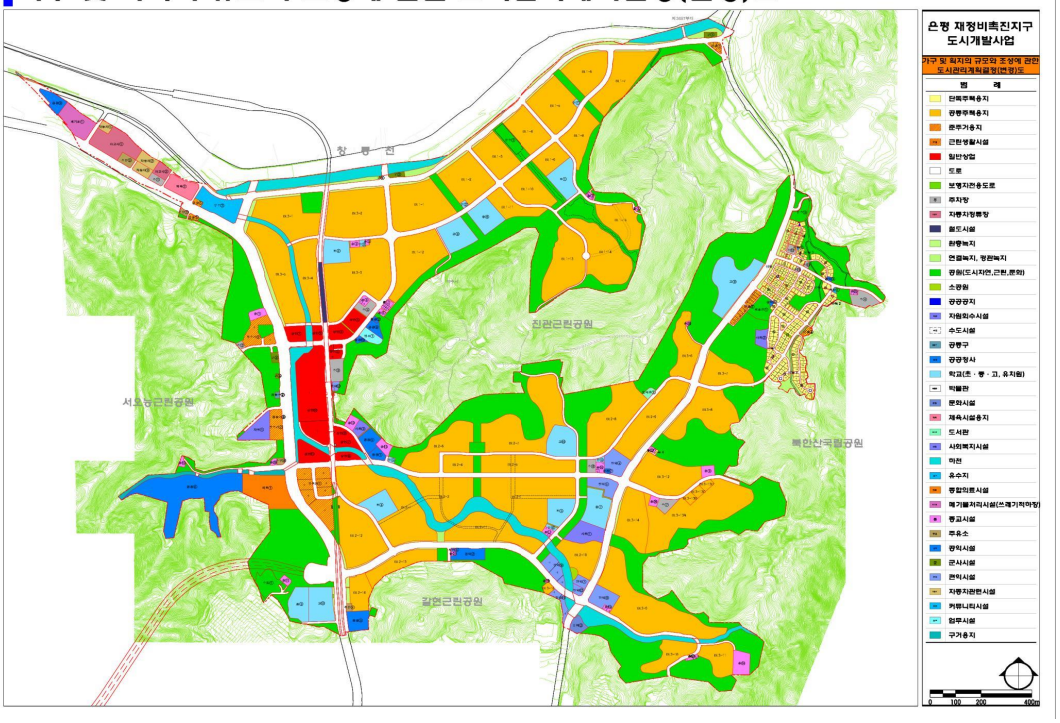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기정) 총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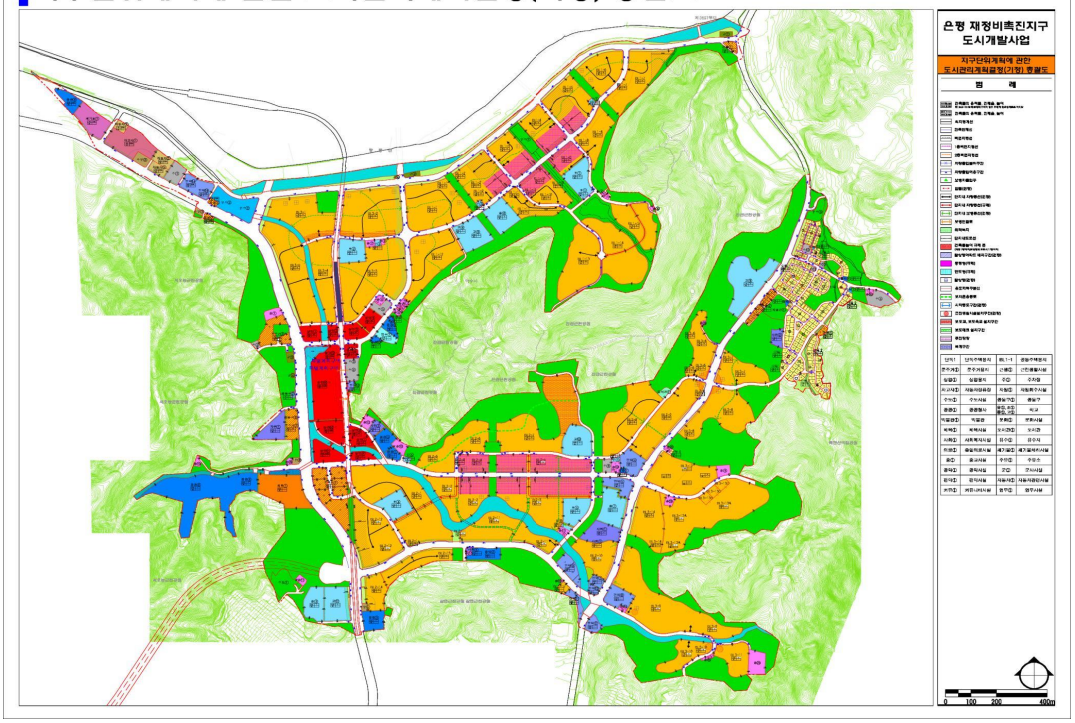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총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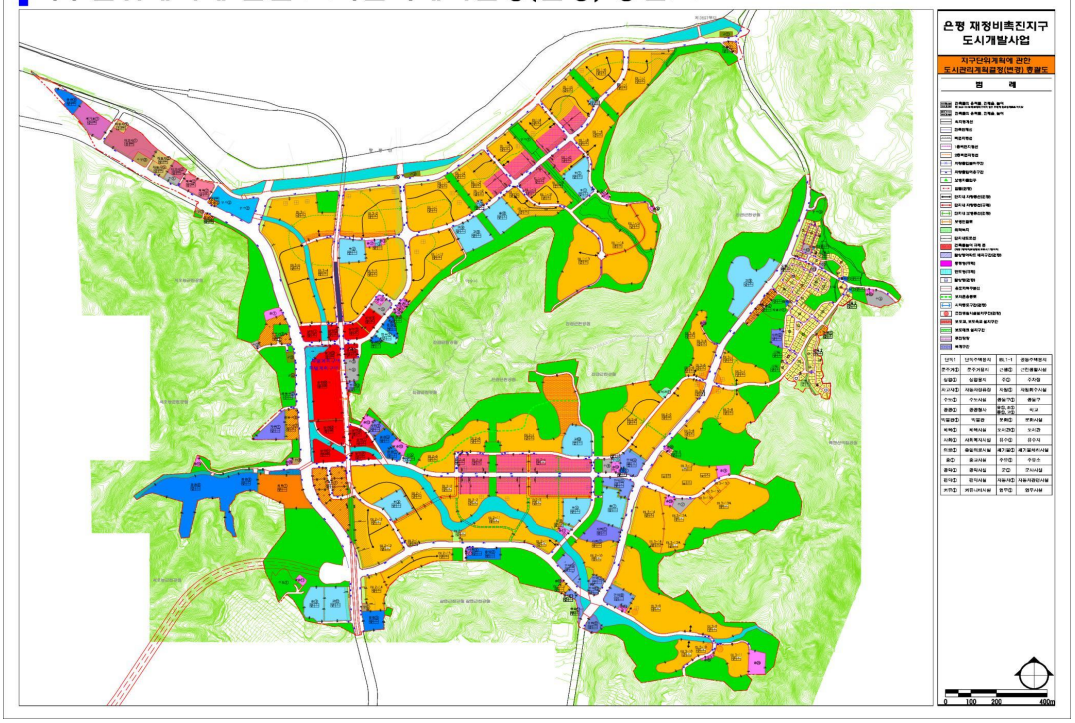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91호

현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187호(1962.12.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 서울시 고시 제44호(2011.3.1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종)된 동작구 흑석동 256-1번지 일대 현충근린공원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훼손된 녹지공간 복원과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으로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쾌적한 여가활용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2. 위 치 : 동작구 흑석동 256-1번지 일대

3. 면 적 : 614,134.10㎡

4. 조성계획 결정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5), 동작구 공원녹지과(☎ 820-9846)에 각각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끝.

현충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56-1번지일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093,601.1	66,567.49	3	3,729.49	6,989.92	255	614,134.1	54,355.29	4	4,888.05	9,499.12	27	감) 12,212.2㎡
기반시설	소 계	49,418.0	49,418.0	-	-	-		45,185.9	34,552.9					감) 14,865.1㎡
	도 로	44,334.0	44,334.0					40,945.0	30,312.0 (10,633.0)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광 장	4,075.0	4,075.0					3,236.7	3,236.7					감) 838.3㎡
	생태육교	1,009.0	1,009.0					1,004.2	1,004.2					감) 4.8㎡
조 경 시 설		2,069	2,069	-	-	-		3,335.8	3,335.8				22	증)1,266.8㎡
휴 양 시 설		3,142	3,142	1	127	127	228	6,358.3	6,358.3	1	127	127		증)3,216.3㎡
유 희 시 설		260	260	-	-	-	1	2,498.5	2,498.5				4	증)2,238.5㎡
운 동 시 설		10,815.49	10,815.49	1	3,570.49	6,830.92	26	7,052.49	7,052.49	2	4,729.05	9,340.12	1	감) 3,763.0㎡
교 양 시 설		737	737	-	-	-		483.7	483.7					감) 253.3㎡
편 익 시 설		126	126	1	32	32		73.6	73.6	1	32.0	32.0		감) 52.4㎡
녹지 및 기타		1,027,033.61						549,145.81						감) 477,887.80㎡
공원시설율 (법정40%)		(66,567.49㎡ / 1,093,601.1㎡) × 100% = 6.09%						(54,355.29㎡ / 614,134.1㎡) × 100% = 8.85%						
공원건폐율 (법정20%)		(3,729.49㎡ / 1,093,601.1㎡) × 100% = 0.34%						(4,888.05㎡ / 614,134.1㎡) × 100% = 0.80%						
도서관,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관,운동시설 (법정 20%)		(10,815.49㎡ / 66,567.49㎡) × 100% = 16.25%						(7,052.49㎡ / 54,355.29㎡) × 100% = 12.97%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 계				1,093,601.1	66,567.49		3동	3,729.49	6,989.92	255			614,134.1	54,355.29		4동	4,888.05	9,499.12	27	감) 12,212.2㎡
기반시설	소 계			49,418.0	49,418.0								45,185.9	34,552.9						감)14,865.1㎡
	도 로			44,334.0	44,334.0								40,945.0	30,312.0 (10,633.0)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광 장	가		4,075	4,075						가	11개소	3,236.7	3,236.7						감) 838.3㎡
		가-1	흑석동 산88-68임	(283)	(283)						가-1	흑석동 산88-76임	(260.8)	(260.8)						감) 22.2㎡
		가-2	흑석동 256-1대	(360)	(360)						가-2	흑석동 256-1공	(233.0)	(233.0)						감) 127.0㎡
		가-3	흑석동 256-74임	(1,898)	(1,898)						가-3	흑석동 256-74임	(285.7)	(285.7)						감) 1,612.3㎡
		가-4	흑석동 산42-1임	(43)	(43)						가-4	흑석동 산42-1임	(43.0)	(43.0)						
		가-5	사당동 산21-1임	(226)	(226)						가-5	사당동 산21-9공	(226.0)	(226.0)						
		가-6	사당동 산21-9임	(1,223)	(1,223)						가-6	사당동 산21-9공	(1,223.0)	(1,223.0)						
		가-7	동작동 산20-3임	(42)	(42)						가-7	동작동 108-7천	(42.0)	(42.0)						
											가-8	흑석동 330-9도	(191.9)	(191.9)						신설
											가-9	흑석동 산59임	(38.0)	(38.0)						신설
											가-10	흑석동 산61-48임	(218.0)	(218.0)						신설
											가-11	상도동 산49-121임	(475.3)	(475.3)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생태육교	나		1,009	1,009						나	2개소	1,004.2	1,004.2						감) 4.8㎡
		나-1	흑석동 330-9도	(667)	(667)						나-1	흑석동 330-9도	(662.2)	(662.2)						감) 4.8㎡
		나-2	사당동 산31-37임	(342)	(342)						나-2	사당동 산31-37임	(342.0)	(342.0)						
조경시설	소 계			2,069	2,069								3,335.8	3,335.8					22	증) 1,266.8㎡
	계 류	다	사당동 산22-20임	444	444						다	사당동 산22-17공	444.0	444.0						
	연 못	라		767	767						라	5개소	933.2	933.2						증) 166.2㎡
		라-1	흑석동 33-376대	(163)	(163)						라-1	흑석동 33-252공	(163.0)	(163.0)						
		라-2	흑석동 산60-6임	(170)	(170)						라-2	흑석동 산60-6임	(337.1)	(337.1)						증) 167.1㎡
		라-3	흑석동 330공	(115)	(115)						라-3	흑석동 330공	(115.0)	(115.0)						
		라-4	사당동 산22-21임	(207)	(207)						라-4	사당동 산22-34임	(207.0)	(207.0)						
		라-5	사당동 산22-11임	(112)	(112)						라-5	사당동 산21-9공	(111.1)	(111.1)						감) 0.9㎡
	지압보도	마	시설지내	58	58															폐지
		마-1	하-4	(41)	(41)															
		마-2	하-9	(17)	(17)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조경시설	초화원	바	흑석동 산42-1임	800	800						바	3개소	1,933.5	1,933.5						지) 1,133.5㎡
											바-1	동작동 산42-1임	(779.0)	(779.0)						부호변경 (바→바-1)
											바-2	흑석동 256-1공	(521.4)	(521.4)						신설
											바-3	상도동 산49-36임	(633.1)	(633.1)						신설
	사각파고라	①	시설지내							27	①	14개소	418.5	418.5					16	지) 418.5㎡
		①-1	체력단련장내 (하-1)			목조				(1)	①-1	휴게소 내 (차-4)	(15.8)	(15.8)	목조				(1)	지) 15.8㎡
		①-2	음수장내 (바-1)			목조				(1)	①-2	음수장 내 (바-1)	(16.0)	(16.0)	목조				(1)	지) 16.0㎡
		①-3	체력단련장내 (하-2)			목조				(1)	①-3	휴게소 내 (차-5)	(32.0)	(32.0)	목조				(1)	지) 32.0㎡
		①-4	휴게소내 (차-1)			목조				(1)	①-4	모험놀이장 내 (야-1)	(16.0)	(16.0)	목조				(1)	지) 16.0㎡
		①-5	배드민턴장내 (파-2)			목조				(1)	①-5	초화원 내 (바-2)	(25.0)	(25.0)	목조				(1)	지) 25.0㎡
		①-6	어린이놀이터내 (카)			목조				(1)	①-6	어린이놀이터 내 (카)	(60.0)	(60.0)	목조				(1)	지) 60.0㎡
		①-7	광장내 (가-3)			목조				(2)	①-7									폐지
		①-8	게이트볼링장내 (타)			목조				(1)	①-8									폐지
		①-9	임간휴게소내 (아-2)			목조				(2)	①-9	임간휴게소 내 (아-2)	(32.0)	(32.0)	목조				(2)	지) 32.0㎡
		①-10	임간휴게소내 (아-6)			목조				(1)	①-10	게이트볼장 내 (타)	(32.0)	(32.0)	목조				(1)	지) 32.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①-11	임간휴게소내 (아-12)			목조				(2)	①-11									폐지
		①-12	임간휴게소내 (아-15)			목조				(2)	①-12									폐지
		①-13	피크닉장내 (자-2)			목조				(1)	①-13									폐지
		①-14	배드민턴장내 (파-3)			목조				(1)	①-14	배드민턴장 내 (파-3)	(16.0)	(16.0)	목조				(1)	증) 16.0㎡
		①-15	산책로37진입부			목조				(1)	①-15									폐지
		①-16	야외교실내 (라-2)			목조				(2)	①-16	야외교실 내 (라-2)	(31.4)	(31.4)	목조				(2)	증) 31.4㎡
		①-17	임간휴게소내 (아-25)			목조				(1)	①-17									폐지
		①-18	체력단련장내 (하-14)			목조				(1)	①-18	휴게소 내 (차-14)	(16.0)	(16.0)	목조				(1)	증) 16.0㎡
		①-19	임간휴게소내 (아-26)			목조				(1)	①-19									폐지
		①-20	임간휴게소내 (아-28)			목조				(1)	①-20									폐지
		①-21	체력단련장내 (하-17)			목조				(1)	①-21	휴게소 내 (차-17)	(16.0)	(16.0)	목조				(1)	증) 16.0㎡
		①-22	임간휴게소내 (아-29)			목조				(1)	①-22									폐지
											①-23	발물놀이터 내 (자)	(12.3)	(12.3)	목조				(1)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①-24	모험놀이장(야-2)	(98.0)	(98.0)	목조				(1)	신설
조경시설	육각정자	②	시설지내							5	②	2개소	32.1	32.1					2	증) 32.1㎡
		②-1	초화원내 (바)			목조				(1)	②-1	초화원 내 (바-1)	(21.7)	(21.7)	목조				(1)	증) 21.7㎡
		②-2	휴게소내 (차-2)			목조				(1)	②-2									폐지
		②-3	임간휴게소내 (아-11)			목조				(1)	②-3									폐지
		②-4	임간휴게소내 (아-14)			목조				(1)	②-4									폐지
		②-5	체력단련장 (하-8)			목조				(1)	②-5	휴게소 내 (차-10)	(10.4)	(10.4)	목조				(1)	증) 10.4㎡
	사각정자	③	임간휴게소내 (아-5)			목조				1										폐지
											③-1	발물놀이터 내 (자)	30.3	30.3	목조				1	신설
	쉘터	④	시설지내							6	④	2개소	12.9	12.9					2	증) 12.9㎡
		④-1	체력단련장 (하-3)			목조				(1)	④-1	휴게소 내 (차-6)	(6.9)	(6.9)	목조				(1)	증) 6.9㎡
		④-2	임간휴게소 (아-16)			목조				(1)	④-2									폐지
		④-3	체력단련장 (하-6)			목조				(1)	④-3									폐지
		④-4	체력단련장 (하-7)			목조				(1)	④-4									폐지
		④-5	배드민턴장내 (파-3)			목조				(1)	④-5	배드민턴장내 (파-3)	(6.0)	(6.0)	목조				(1)	증) 6.0㎡
		④-6	체력단련장 (하-11)			목조				(1)	④-6									폐지 (도자구역)
	평상	⑦	시설지내							16	⑦	야외교실 내 (랴-2)			목조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⑦-1	광장내 (가-3)			목조				(7)										폐지
		⑦-2	피크닉장내 (자-2)			목조				(6)										폐지
		⑦-3	야외교실내 (라-2)			목조				(1)										부호변경 (⑦-3→⑦)
		⑦-4	피크닉장내 (자-3)			목조				(2)										폐지
	장의자	⑤	시설지내			목조				167										폐지
	야외탁자	⑥	시설지내							6										폐지
		⑥-1	임간휴게소내 (아-4)			목조				(2)										
		⑥-2	피크닉장내 (자-1)			목조				(4)										
휴양시설	소 계			3,142	444		1동	127	127	228			6,358.3	6,358.3		1동	127	127		증) 3,216.3㎡
	경로당	사	흑석동 256-1대	127	767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1동	127	127		사		127.0	127.0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1동	127	127		
	임간휴게소	아	30개소	2,149	(163)						아	30개소	1,915.1	1,915.1						감) 233.9㎡
		아-1	흑석동 산79-2임	(27)	(170)						아-1	흑석동 산79-2임	(27.0)	(27.0)						
		아-2	흑석동 256-77임	(70)	(115)						아-2	흑석동 256-70임	(41.4)	(41.4)						감) 28.6㎡
		아-3	흑석동 산42-1임	(36)	(207)						아-3	흑석동 산42-1임	(36.0)	(36.0)						
		아-4	〃	(89)	(112)						아-4	흑석동 산42-1임	(89.0)	(89.0)						
		아-5	〃	(98)	58						아-5	흑석동 산42-1임	(98.0)	(98.0)						
		아-6	흑석동 330공	(33)	(41)						아-6	흑석동 330공	(33.0)	(33.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아-7	상도동 산49-1임	(16)	(17)						아-7	상도동 산49-1임	(16.0)	(16.0)						
		아-8	상도동 산49-118임	(6)	800						아-8	상도동 산49-118임	(6.0)	(6.0)						
		아-9	〃	(6)	(6)						아-9	상도동 산49-118임	(6.0)	(6.0)						
		아-10	〃	(6)	(6)						아-10	상도동 산49-118임	(6.0)	(6.0)						
		아-11	〃	(643)	(643)						아-11	상도동 산49-118임	(643.0)	(643.0)						
		아-12	상도동 산49-121임	(185)	(185)						아-12	상도동 산49-121임	(185.0)	(185.0)						
		아-13	사당동 산31-1임	(111)	(111)						아-13	사당동 산31-49임	(95.8)	(95.8)						감) 15.2㎡
		아-14	사당동 산31-3임	(128)	(128)						아-14	사당동 산22-17공	(89.6)	(89.6)						감) 38.4㎡
		아-15	사당동 산31-1임	(170)	(170)						아-15	사당동 산22-16임	(87.2)	(87.2)						감) 82.8㎡
		아-16	사당동 산21-1임	(4)	(4)						아-16	사당동 산21-18임	(4.0)	(4.0)						
		아-17	사당동 산21-1임	(10)	(10)						아-17	사당동 산21-18임	(10.0)	(10.0)						
		아-18	〃	(26)	(26)						아-18	사당동 산21-18임	(26.0)	(26.0)						
		아-19	〃	(30)	(30)						아-19	사당동 산21-18임	(30.0)	(30.0)						
		아-20	사당동 산12-2임	(24)	(24)						아-20	사당동 산12-2임	(24.0)	(24.0)						
		아-21	사당동 산21-1임	(29)	(29)						아-21	사당동 산12-2임	(8.2)	(8.2)						감) 20.8㎡
		아-22	동작동 산11-1임	(26)	(26)						아-22	동작동 산11-1임	(26.0)	(26.0)						
		아-23	동작동 산9임	(23)	(23)						아-23	동작동 산9임	(23.0)	(23.0)						
		아-24	동작동 산10-41임	(53)	(53)						아-24	동작동 산10-41임	(53.0)	(53.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휴양시설	임간휴게소	아-25	동작동 산16-1임	(16)	(16)						아-25	동작동 산16-21임	(16.0)	(16.0)						
		아-26	동작동 108-7천	(25)	(25)						아-26	동작동 108-7천	(3.4)	(3.4)						감) 21.6㎡
		아-27	동작동 산21임	(79)	(79)						아-27	동작동 산21임	(79.0)	(79.0)						
		아-28	동작동 산25-1임	(135)	(135)						아-28	동작동 109-8도	(108.5)	(108.5)						감) 26.5㎡
		아-29	동작동 산28-5임	(16)	(16)						아-29	동작동 산28-5임	(16.0)	(16.0)						
		아-30	동작동 산30-8임	(29)	(29)						아-30	동작동 산30-8임	(29.0)	(29.0)						
	피크닉장	자		490	490						자	3개소	476.2	476.2						감) 13.8㎡
		자-1	흑석동 산42-1임	(51)	(51)						자-1	흑석동 산42-1임	(51.0)	(51.0)						
		자-2	사당동 산22-16임	(380)	(380)						자-2	사당동 산22-16임	(366.2)	(366.2)						감) 13.8㎡
		자-3	동작동 산21임	(59)	(59)						자-3	동작동 산21임	(59.0)	(59.0)						
	휴게소	차		376	376						차	15개소	3,537.7	3,537.7						증) 3,161.7㎡
		차-1	흑석동 256-50임	(130)	(130)						차-1									폐지
		차-2	흑석동 256-1대	(230)	(230)						차-2	흑석동 산60-6임	(209.2)	(209.2)						감) 20.8㎡
		차-3	흑석동 252-43대	(16)	(16)						차-3									폐지
											차-4	흑석동 산88-76임	(85.8)	(85.8)						부호변경 (하-1→차-4)
											차-5	흑석동 산79-2임	(261.6)	(261.6)						부호변경 (하-2→차-5)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차-6	흑석동 산63-76임	(74.6)	(74.6)						부호변경(하-3→차-6)
											차-7	사당동 산22-16임	(147.9)	(147.9)						부호변경(하-5→차-7)
											차-8	사당동 산12-2임	(68.1)	(68.1)						부호변경(하-6→차-8)
											차-9	사당동 산12-2임	(33.2)	(33.2)						부호변경(하-7→차-9)
											차-10	사당동 산12-2임	(1,483.3)	(1,483.3)						부호변경(하-8→차-10)
											차-11	사당동 산11-1임	(71.6)	(71.6)						부호변경(하-9→차-11)
											차-12	사당동 산11-1임	(17.3)	(17.3)						부호변경(하-10→차-12)
											차-13	동작동 산13-1임	(24.4)	(24.4)						부호변경(하-12→차-13)
											차-14	동작동 산20-4임	(500.7)	(500.7)						부호변경(하-14→차-14)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차-15	동작동 산20-3임	(65.0)	(65.0)						부호변경(하-15→차-15)
											차-16	동작동 산27임	(152.5)	(152.5)						부호변경(하-16→차-16)
											차-17	동작동 산27임	(328.9)	(328.9)						부호변경(하-17→차-17)
											차-18	사당동 산21-9공	(13.6)	(13.6)						신설
휴양시설	쉼터										여	3개소	248.0	248.0						신설
											여-1	흑석동 339-1공	(192.7)	(192.7)						
											여-2	사당동 산10-1임	(30.3)	(30.3)						
											여-3	동작동 산20임	(25.0)	(25.0)						
	전망쉼터										어	사당동 산31-49임	63.0	63.0						신설
	사각파고라	①	시설지내							27										시설변경(휴양→조경)
		①-1	체력단련장내 (하-1)			목조				(1)										
		①-2	음수장내 (바-1)			목조				(1)										
		①-3	체력단련장내 (하-2)			목조				(1)										
		①-4	휴게소내 (차-1)			목조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①-5	배드민턴장내 (파-2)			목조				(1)										
		①-6	어린이놀이터내 (카)			목조				(1)										
		①-7	광장내 (가-3)			목조				(2)										
		①-8	게이트볼링장내 (타)			목조				(1)										
		①-9	임간휴게소내 (아-2)			목조				(2)										
		①-10	임간휴게소내 (아-6)			목조				(1)										
		①-11	임간휴게소내 (아-12)			목조				(2)										
		①-12	임간휴게소내 (아-15)			목조				(2)										
		①-13	피크닉장내 (자-2)			목조				(1)										
		①-14	배드민턴장내 (파-3)			목조				(1)										
		①-15	산책로37진입부			목조				(1)										
휴양시설	사각파고라	①-16	야외교실내 (라-2)			목조				(2)										시설변경(휴양→조경)
		①-17	임간휴게소내 (아-25)			목조				(1)										
		①-18	체력단련장내 (하-14)			목조				(1)										
		①-19	임간휴게소내 (아-26)			목조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①-20	임간휴게소내 (아-28)			목조				(1)										
		①-21	체력단련장내 (하-17)			목조				(1)										
		①-22	임간휴게소내 (아-29)			목조				(1)										
	육각정자	②	시설지내							5										시설변경 (휴양→조경)
		②-1	초화원내 (바)			목조				(1)										
		②-2	휴게소내 (차-2)			목조				(1)										
		②-3	임간휴게소내 (아-11)			목조				(1)										
		②-4	임간휴게소내 (아-14)			목조				(1)										
		②-5	체력단련장 (하-8)			목조				(1)										
	사각정자	③	임간휴게소내 (아-5)			목조				1										시설변경 (휴양→조경)
	쉘터	④	시설지내							6										시설변경 (휴양→조경)
		④-1	체력단련장 (하-3)			목조				(1)										
		④-2	임간휴게소 (아-16)			목조				(1)										
		④-3	체력단련장 (하-6)			목조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④-4	체력단련장 (하-7)			목조				(1)										
		④-5	배드민턴장내 (파-3)			목조				(1)										
		④-6	체력단련장 (하-11)			목조				(1)										
휴양시설	평상	⑦	시설지내							16										시설변경(휴양→조경)
		⑦-1	광장내 (가-3)			목조				(7)										
		⑦-2	피크닉장내 (자-2)			목조				(6)										
		⑦-3	야외교실내 (랴-2)			목조				(1)										
		⑦-4	피크닉장내 (자-3)			목조				(2)										
	장의자	⑤	시설지내			목조				167										시설변경(휴양→조경)
	야외탁자	⑥	시설지내							6										시설변경(휴양→조경)
		⑥-1	임간휴게소내 (아-4)			목조				(2)										
		⑥-2	피크닉장내 (자-1)			목조				(4)										
유희시설	소 계			260	260					4			2,499.0	2,499.0					4	주) 2,239.0㎡
	어린이놀이터	카	흑석동 256-3임	260	260						카	사당동 산21-9공	397.0	397.0						주) 137.0㎡
	모험놀이장	야									야	3개소	1,300.0	1,300.0						신설
		야-1									야-1	흑석동 산60-8임	(369.0)	(369.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야-2									야-2	흑석동 256-77임	(459.0)	(459.0)						
		야-3									야-3	흑석동 256-76임	(472.0)	(472.0)						신설
	발물놀이터	쟈		802	802						쟈	사당동 산 21-9임	802.0	802.0						
	조합놀이대	⑧	어린이놀이터내 (카)							(1)	⑧	어린이놀이터 내(카)							1	
	모험놀이대	ⓐ								3	ⓐ								3	
		ⓐ-1								(1)	ⓐ-1	모험놀이장 내(야-1)							(1)	
		ⓐ-2								(1)	ⓐ-2	모험놀이장 내(야-2)							(1)	
		ⓐ-3								(1)	ⓐ-3	모험놀이장 내(야-3)							(1)	
운동시설	소 계			10,815.49	10,815.49		1동	3,570.49	6,830.92	26			7,052.49	7,052.49		2동	4,729.05	9,340.12	1	감) 3,763.0㎡
	게이트볼장	타	흑석동 산60-8임	520	520						타	흑석동 산60-8임	750.0	750.0						증) 230.0㎡
	배드민턴장	파		2,064	2,064						파	2개소	1,144.0	1,144.0						감) 920.0㎡
		파-1	흑석동 산88-68임	(652)	(652)						파-1	흑석동 산88-76임	(652.0)	(652.0)						
		파-2	흑석동 252-32대	(920)	(920)															폐지
		파-3	사당동 산12-2임	(492)	(492)						파-3	사당동 산12-2임	(492.0)	(492.0)						
	실내배드민턴장										차	흑석동 252-32대	1,158.0	1,158.0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지하1층	1,158.56	2,509.20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체육관	가	사당동 산21-11임	3,570.49	3,570.49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1동	3,570.49	6,830.92		가	사당동 산21-9공	3,570.49	3,570.49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1동	3,570.49	6,830.92		
	테니스장	나	상도동 산49-78임	430	430						나	상도동 산49-78임	430.0	430.0						
	체력단련시설	⑨	시설지내							26	⑨	휴게소 내(차-18)							1	
	체력단련장	하		4,231	4,231															시설변경(운동→휴양)(체력단련장→휴게소)
		하-1	흑석동 산88-68임	(102)	(102)															
		하-2	흑석동 산79-2임	(295)	(295)															
		하-3	흑석동 산63-76임	(85)	(85)															
		하-4	흑석동 산256-77임	(449)	(449)															폐지
		하-5	사당동 산22-16임	(302)	(302)															시설변경(운동→휴양)(체력단련장→휴게소)
		하-6	사당동 산12-2임	(68)	(68)															
		하-7	사당동 산12-2임	(33)	(33)															
		하-8	사당동 산12-2임	(1,465)	(1,465)															
		하-9	사당동 산12-2임	(55)	(55)															
		하-10	동작동 산11-1임	(17)	(17)															
		하-11	동작동 산10-47임	(145)	(145)															폐지(도자구역)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하-12	동작동 산13-1임	(24)	(24)															시설변경(운동→휴양)(체력단련장→휴게소)
		하-13	동작동 산13-2임	(112)	(112)															폐지(도자구역)
		하-14	동작동 산20임	(517)	(517)															시설변경(운동→휴양)(체력단련장→휴게소)
		하-15	동작동 산20-3	(65)	(65)															
		하-16	동작동 산27임	(152)	(152)															
		하-17	동작동 산27임	(345)	(345)															
교양시설	소 계			737	737								483.7	483.7						감) 253.3㎡
	관찰데크	다		146	146															폐지(도자구역)
		다-1	사당동 산31-1임	(29)	(29)															
		다-2	〃	(29)	(29)															
		다-3	〃	(30)	(30)															
		다-4	〃	(29)	(29)															
		다-5	〃	(29)	(29)															
	야외교실	라		259	259						라	2개소	151.7	151.7						감) 107.3㎡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라-1	흑석동 산42-1임	(31)	(31)						랴-1	흑석동 산42-1임	(31.0)	(31.0)						
		라-2	동작동 산11-5임	(228)	(228)						랴-2	동작동 산11-5임	(120.7)	(120.7)						감) 107.3㎡
	자연학습장	마		332	332						마	2개소	332.0	332.0						
		마-1	흑석동 산42-1임	(92)	(92)						마-1	흑석동 산42-1임	(92.0)	(92.0)						
		마-2	〃	(240)	(240)						마-2	흑석동 산42-1임	(240.0)	(240.0)						
편익시설	소 계			126	126		1동	32	32				73.6	73.6		1동	32	32		감) 52.4㎡
	음수장	바		94	94							3개소	41.6	41.6						감) 52.4㎡
		바-1	흑석동 33-253공	(42)	(42)						바-1	흑석동 33-253공	(26.3)	(26.3)						감) 15.7㎡
		바-2	사당동 산22-16임	(52)	(52)						바-2	사당동 산22-16임	(9.6)	(9.6)						감) 42.4㎡
											바-3	흑석동 산60-7임	(5.7)	(5.7)						신설
	화장실	샤	흑석동 256-74임	32	32		1동	32	32		샤	흑석동 256-74임	32.0	32.0		1동	32	32		
녹지 및 기타				1,027,033.61									549,145.81							감) 477,887.80㎡

3. 도로조서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계				17,023.9	44,334.0				
변경					14,073.0	30,312.0 (10,633.0)				
당초	대로	소계			27.0	(373.0)				
변경					27.0	(373.0)				
신규		1	1	16	27.0	(373.0)	진입로	동작동 102-80도	소로3-6	도시계획도로
당초	중로	소계			985.0	13,535.0				
변경					934.0	2,864.0 (9,776)				
당초		2	1	19	245	4,655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도시계획도로
변경		2	1	20	197	(3,771)	도로	나-2	사당동 산31-37임	
당초		3	1	12	503	6,036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도시계획도로
변경		3	1	13	500	(6,005)	도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	2	12	237	2,844	진입로	공원경계	가-6	
변경		3	2	12	237	2,864	진입로	산책로-34	가-6	
당초	소로	소계			621.0	3,378.0				
변경					688.0	3,252.0 (484.0)				
당초		2	1	9	60	540	연결로	공원경계선	공원경계선	오류보정
폐지										
당초		2	2	9	92	828	연결로	공원경계선	공원경계선	오류보정
폐지										
당초		3	1	6	264	1,584	연결로	중로3-1	산책로-16	
변경		3	1	6	206	1,292	연결로	가-3	중로3-1	
당초		3	2	6	16	96	연결로	공원경계선	갸	
변경		3	2	7	16	126	연결로	중로3-2	가-6	
당초		3	3	6	63	378	진입로	공원경계선	공원경계선	(폐지) 도자구역
폐지		3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소로	3	4	6	62	372	진입로	동작동 333 대	동작동 333 대	폐지 (도자 구역)
폐지										
당초		3	5	4.5	168	756	연결로	중로3-1	가-3	
변경		3	5	4	177	536	연결로	가-3	가-8	
당초		3	6	4	48	192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변경		3	6	4	10	38	진입로	대로1-1	동작동 333-1	
당초		3	7	3	22	66	진입로	공원경계선	산책로25	
변경		3	7	6	35	212	진입로	가-3	가-10	
신규		3	8	8	61	(484)	진입로	중로3-1	상도동 산49-141	도시 계획 도로
신규		3	9	8	37	326	진입로	중로2-1	사당동 산31-38임	
신규		3	10	6	104	489	진입로	사당동 1133-9	사당동 산22-34	
신규		3	11	6	42	233	연결로	산책로-62	나-1	
당초	산책로	소계			15,417.9	27,421.0				
변경					12,451.0	24,196.0				
당초			1	3	12	36	연결로	산책로-40	라-2	
변경			1	3	12	37	연결로	산책로-40	라-2	
당초			2	2.7	260	702	연결로	소로3-1	산책로-7	
변경			2	3.0	258	700	연결로	소로3-1	산책로-7	
당초			3	2.5	28	70	연결로	파-2	산책로-17	
폐지			3							(폐지)
당초			4	2.5	8.4	21	연결로	산책로-15	차-2	
변경			4	2	61	139	연결로	산책로-15	산책로-17	
당초			5	2.5	4	10	연결로	산책로-17	카	
폐지			5							(폐지)
당초			6	2.4	100	24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7	
폐지			6	2.0	106	238	진입로	중로2-1	산책로-7	
당초			7	2	3,951	7,902	연결로	아-30	공원경계	
변경			7	2	2,642	7,511	연결로	아-30	동작동 산44-14임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8	2	8	16	연결로	바	산책로-7	
변경			8	2	8	16	연결로	바-1	산책로-7	
당초			9	2	56	112	연결로	가-1	바	
변경			9	2	48	111	연결로	가-1	바-1	
당초			10	2	1	2	연결로	산책로-9	파-1	
변경			10	2	1	2	연결로	산책로-9	파-1	
당초			11	2	60	120	연결로	가-1	하-2	
변경			11	2	60	120	연결로	가-1	차-4	
			12	2	40	80	연결로	가-1	산책로-14	
변경			12	2	34	81	연결로	바-1	산책로-14	
당초			13	2	3	6	연결로	하-2	산책로-14	
변경			13	2	2	5	연결로	차-4	산책로-14	
당초			14	2	160	320	연결로	바	산책로-7	
변경			14	2	160	319	연결로	바-1	산책로-7	
당초			15	2	143	286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7	
변경			15	3	130	395	진입로	흑석동 산61-24도	가-10	
당초			16	2	54	108	연결로	산책로-15	소로3-1	오류 보정
폐지										
당초			17	2	73	146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3-3	
변경			17		102	314	진입로	산책로-4	소로3-5	
당초			18	2	18	36	연결로	타	소로3-3	
변경			18	1.5	33	53	연결로	산책로-17	소로3-5	
당초			19	2	42.5	85	연결로	소로3-3	소로3-1	
변경			19	3	43	129	연결로	소로3-5	소로3-1	
당초			20	2	23	46	연결로	소로3-3	라-4	
변경			20	1.5	22	34	연결로	산책로-19	야-2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21	2	12	24	연결로	라-4	소로3-1	
변경			21	2	19	40	연결로	야-2	소로3-1	
당초			22	2	90	180	연결로	소로3-1	산책로-2	
변경			22	2	52	105	연결로	소로3-1	산책로-2	
당초			23	2	111	222	연결로	산책로-56	산책로-97	
변경			23	2	111	222	연결로	산책로-56	산책로-97	
당초			24	2	87.5	175	연결로	중로3-1	산책로-2	
변경			24	2	84	138	연결로	중로3-1	도자구역	
당초			25	2	55	110	연결로	산책로-6	산책로-7	
변경			25	2	108	220	연결로	산책로-6	산책로-7	
당초			26	2	181	362	연결로	다-3	아-13	폐지 (도자 구역)
폐지			26							
당초			27	2	227	454	연결로	아-14	다-3	폐지 (도자 구역)
폐지			27							
당초			28	2	100	200	연결로	다-3	자-2	폐지 (도자 구역)
폐지			28							
당초			29	2	430	860	진입로	공원경계	자-2	
변경			29	2	399	793	진입로	소로3-10	자-2	
당초			30	2	170	34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29	
변경			30	2	170	343	진입로	사당동 179-1대	산책로-29	
당초			31	2	7	14	연결로	산책로-29	라-4	
변경			31	2	7	14	연결로	산책로-29	라-4	
당초			32	2	93	186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7	
변경			32	2	96	193	진입로	사당동 180-52	산책로-7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33	2	75	150	연결로	가-5	산책로-7	
변경			33	2	75	150	연결로	가-5	산책로-7	
당초			34	2	340	68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36	
변경			34	2	227	456	진입로	중로3-2	산책로-36	
당초			35	2	95	190	연결로	산책로-36	파-3	
변경			35	2	93	179	연결로	산책로-36	파-3	
당초			36	2	229	458	연결로	산책로-37	산책로-7	
변경			36	2	228	381	연결로	산책로-37	산책로-7	
당초			37	2	280	56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34	
변경			37	2	268	537	진입로	사당동 산10-22임	산책로-34	
당초			38	2	132	264	연결로	하-11	아-22	
변경			38	2	78	165	연결로	도자구역	아-22	
당초			39	2	27	54	진입로	공원경계	하-11	폐지 (도자 구역)
폐지			39							
당초			40	2	275	550	연결로	산책로-41	아-23	
변경			40	2	80	156	연결로	산책로-41	아-23	
당초			41	2	165	33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42	
변경			41	2	118	242	진입로	동작동 61-56잡	산책로-42	
당초			42	2	166	332	연결로	하-14	산책로-7	
변경			42	2	73	164	연결로	차-13	산책로-7	
당초			43	2	338	676	연결로	공원경계	하-14	
변경			43	2	337	674	연결로	대로1-1	차-13	
당초			44	2	270	540	진입로	소로3-2	산책로-43	
변경			44	2	84	169	진입로	소로3-4	산책로-43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45	2	195	390	연결로	산책로-42	산책로-90	
변경			45	2	152	307	연결로	산책로-42	도자구역	
당초			46	2	142	284	연결로	산책로-42	가-8	
변경			46	2	140	270	연결로	산책로-42	가-7	
당초			47	2	162	324	진입로	공원경계	하-16	
변경			47	2	163	332	진입로	동작동 332-1공	차-15	
당초			48	2	179	358	진입로	공원경계	하-17	
변경			48	2	167	339	진입로	동작동 90-12대	차-16	
당초			49	2	210	420	연결로	산책로-115	산책로-7	
변경			49	2	185	369	연결로	동작동 86-6대	산책로-7	
당초			50	1.8	3.5	6	연결로	산책로-46	하-15	
변경			50	1.8	3.5	6	연결로	산책로-46	차-14	
당초			51	1.5	2	3	연결로	산책로-9	하-1	
폐지			51	1.5	1.4	2	연결로	산책로-9	차-3	
당초			52	1.5	14	21	연결로	산책로-12	파-1	
변경			52	1.5	13	20	연결로	산책로-12	파-1	
당초			53	1.5	32	48	연결로	산책로-17	타	
변경			53	1.5	20	33	연결로	산책로-17	타	
당초			54	1.5	32	48	연결로	산책로-55	소로3-1	폐지
폐지										
당초			55	1.5	28	42	연결로	소로3-3	라-4	
변경			55	1.5	30	45	연결로	가-9	야-2	
당초			56	1.5	582	873	진입로	가-4	공원경계	
변경			56	1.5	582	873	진입로	가-4	상도동 430 대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57	1.5	156	234	연결로	산책로-62	산책로-97	
변경			57	1.5	156	236	연결로	산책로-62	산책로-105	
당초			58	1.5	36	54	연결로	산책로-61	산책로-99	
변경			58	1.5	35	52	연결로	산책로-61	산책로-99	
당초			59	1.5	64	96	연결로	산책로-62	산책로-61	
변경			59	1.5	64	97	연결로	산책로-62	산책로-61	
당초			60	1.5	8	12	연결로	산책로-105	산책로-62	
변경			60	1.5	8	12	연결로	산책로-108	산책로-62	
당초			61	1.5	60	90	연결로	산책로-60	산책로-57	
변경			61	1.5	60	90	연결로	산책로-62	산책로-57	
당초			62	1.5	276	414	진입로	공원경계	가-4	
변경			62	1.5	270	370	진입로	중로3-1	가-4	
당초			63	1.5	106	159	연결로	산책로-62	산책로-57	
변경			63	1.5	101	155	연결로	산책로-62	산책로-57	
당초			64	1.5	16	24	연결로	산책로-65	산책로-62	
변경			64	1.5	16	33	연결로	산책로-65	산책로-62	
당초			65	1.5	128	192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62	
변경			65	1.5	128	200	진입로	상도동 421 대	산책로-62	
당초			66	1.5	8	12	연결로	산책로-67	산책로-65	
변경			66	1.5	8	19	연결로	산책로-67	산책로-65	
당초			67	1.5	60	90	연결로	산책로-65	산책로-65	
변경			67	1.5	60	92	연결로	산책로-65	산책로-65	
당초			68	1.5	92	138	연결로	산책로-2	산책로-65	
변경			68	1.5	73	119	연결로	도자구역	산책로-65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69	1.5	14	21	연결로	산책로-24	냐	
변경			69	1.5	14	21	연결로	산책로-24	냐	
당초			70	1.5	44	66	연결로	산책로-24	산책로-71	
변경			70	1.5	44	67	연결로	산책로-24	산책로-71	
당초			71	1.5	174	261	연결로	산책로-106	산책로-106	
변경			71	1.5	174	264	연결로	산책로-109	산책로-109	
당초			72	1.5	32	48	연결로	산책로-71	산책로-109	
변경			72	1.5	31	48	연결로	산책로-71	산책로-112	
당초			73	1.5	30	45	연결로	산책로-110	산책로-77	
변경			73	1.5	30	45	연결로	산책로-109	산책로-77	
당초			74	1.5	64	96	연결로	산책로-77	아-11	
변경			74	1.5	64	96	연결로	산책로-77	아-11	
당초			75	1.5	5	8	연결로	아-11	산책로-7	
폐지			75	1.5	5	8	연결로	아-11	산책로-7	
당초			76	1.5	30	45	연결로	산책로-106	산책로-77	
변경			76	1.5	30	45	연결로	산책로-109	산책로-77	
당초			77	1.5	224	336	연결로	산책로-106	산책로-106	
변경			77	1.5	223	334	연결로	산책로-109	산책로-109	
당초			78	1.5	8	12	연결로	산책로-6	아-12	
변경			78	1.5	7	11	연결로	산책로-6	아-12	
당초			79	1.5	90	135	진입로	나-2	산책로-25	
변경			79	1.5	89	142	진입로	나-2	산책로-25	
당초			80	1.5	54	81	연결로	산책로-34	하-6	
변경			80	1.5	54	84	연결로	산책로-34	차-7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81	1.5	306	459	연결로	산책로-41	아-24	
변경			81	1.5	175	269	연결로	산책로-41	아-24	
당초			82	1.5	36	54	연결로	라-2	산책로-81	
변경			82	1.5	35	54	연결로	라-2	산책로-81	
당초			83	1.5	78	117	연결로	산책로-84	산책로-82	
변경			83	1.5	77	116	연결로	산책로-84	산책로-82	
당초			84	1.5	62	93	연결로	산책로-40	산책로-81	
변경			84	1.5	51	78	연결로	도자구역	산책로-81	
당초			85	1.5	62	93	연결로	하-15	산책로-46	
변경			85	1.5	64	97	연결로	차-14	산책로-46	
당초			86	1.5	18	27	연결로	산책로-85	산책로-46	
변경			86	1.5	18	30	연결로	산책로-85	산책로-46	
당초			87	1.5	16	24	연결로	산책로-85	산책로-46	
변경			87	1.5	16	25	연결로	산책로-85	산책로-46	
당초			88	1.5	50	75	연결로	산책로-46	산책로-90	
변경			88	1.5	50	77	연결로	산책로-46	산책로-90	
당초			89	1.5	26	39	연결로	산책로-46	아-27	
변경			89	1.5	26	38	연결로	산책로-46	아-27	
당초			90	1.5	92	138	연결로	아-27	산책로-7	
폐지			90	1.5	63	95	연결로	아-27	도자구역	
당초			91	1.5	84	126	연결로	산책로-94	산책로-90	
변경			91	1.5	74	110	연결로	산책로-94	산책로-90	
당초			92	1.5	30	45	연결로	산책로-91	산책로-90	
변경			92	1.5	29	43	연결로	산책로-91	산책로-90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93	1.5	16	24	연결로	가-8	산책로-91	
변경			93	1.5	15	23	연결로	가-7	산책로-91	
당초			94	1.5	30	45	연결로	산책로-46	아-27	
변경			94	1.5	29	44	연결로	산책로-46	아-27	
당초			95	1.5	122	183	진입로	공원경계	아-30	
변경			95	1.5	79	115	진입로	동작동 126-3	아-30	
당초			96	1.2	85	102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97	
변경			96	1.2	85	103	진입로	흑성동 산42-1	산책로-97	
당초			97	1.2	240	288	연결로	가-4	공원경계	
변경			97	1.2	242	336	연결로	가-4	여-1	
당초			98	1.2	10	12	연결로	마-1	마-2	
변경			98	1.2	11	13	연결로	마-1	마-2	
당초			99	1.2	50	60	연결로	마-2	마-1	
변경			99	1.2	52	66	연결로	마-2	마-1	
당초			100	1.2	20	24	연결로	산책로-65	산책로-62	
변경			100	1.2	20	24	연결로	산책로-65	산책로-62	
당초			101	1.2	37.5	45	연결로	산책로-102	산책로-7	
변경			101	1.2	37	44	연결로	산책로-120	산책로-7	
당초			102	1.2	85.0	102	연결로	가-6	갸	
변경			102	1.2	41	49	연결로	산책로-120	산책로-101	
당초			103	1.2	17.5	21	연결로	산책로-102	갸	
변경			103	2.5	8	20	연결로	산책로-102	라-5	
당초			104	1.2	6	7	연결로	산책로-35	하-8	
변경			104	1.2	6	9	연결로	산책로-35	차-9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105	1.0	28	28	연결로	마-1	산책로-97	
변경			105	1.0	26	28	연결로	마-1	산책로-97	
당초			106	1.0	20	20	연결로	산책로-104	산책로-97	
변경			106	1.0	18	19	연결로	산책로-107	산책로-98	
당초			107	1.0	33	33	연결로	산책로-62	산책로-97	
변경			107	1.0	32	32	연결로	산책로-62	산책로-98	
당초			108	1.0	188	188	연결로	가-4	산책로-65	
변경			108	1.0	186	158	연결로	가-4	산책로-65	
당초			109	1.0	403	403	연결로	산책로-2	산책로-7	
변경			109	1.0	417	419	연결로	도자구역	산책로-7	
당초			110	1.0	32	32	연결로	아-7	산책로-106	
변경			110	1.0	30	32	연결로	산책로-112	산책로-109	
당초			111	1.0	38	38	연결로	산책로-110	아-7	
변경			111	1.0	38	39	연결로	산책로-112	아-7	
당초			112	1.0	80	80	연결로	산책로-107	산책로-106	
변경			112	1.0	80	81	연결로	산책로-110	산책로-109	
당초			113	1.0	25	25	연결로	산책로-108	산책로-73	
변경			113	1.0	25	25	연결로	산책로-112	산책로-109	
당초			114	1.0	216	216	연결로	아-21	아-19	
변경			114	1.0	80	81	연결로	도자구역	아-19	
당초			115	1.0	78	78	연결로	하-6	산-7	
변경			115	1.0	79	79	연결로	차-7	산책로-7	
당초			116	1.0	120	120	연결로	하-6	산책로-35	
변경			116	1.0	119	120	연결로	차-7	산책로-35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117	1.0	165	165	연결로	산책로-38	산책로-7	
변경			117	1.0	128	128	연결로	도자구역	산책로-7	
당초			118	1.0	50	5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폐지
폐지			118							
당초			119	0.5	2	1	연결로	산책로-112	하-7	
변경			119	0.5	3	2	연결로	산책로-115	차-8	
신설			120	2.0	81	162	연결로	가-5	가-6	신설
신설			121	1.5	38	65	연결로	산책로-17	아-1	신설
신설			122	1.5	11	18	연결로	산책로-123	타	신설
신설			123	1.5	32	49	연결로	소로3-5	아-1	신설


조성계획도(변경전)
SCALE=1/4,000
현충근린공원(전체)

조성계획도(변경전)

현충근린공원(전체)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1,093,601.1	66,567.49	255	
기반시설	소 계		49,416.0	49,416.0		
	도 로	㉮	44,344.0	44,344.0		
	광 장	가-1	283	283		
		가-2	360	360		
		가-3	1,898	1,898		
		가-4	43	43		
		가-5	226	226		
		가-6	1,223	1,223		
		가-7	42	42		
	생 태 육 교	나-1	667	667		
		나-2	342	342		
조경시설	소 계		2,069	2,069		
	계 류	다	444	444		
	연 못	라-1	163	163		
		라-2	170	170		
		라-3	115	115		
		라-4	207	207		
		라-5	112	112		
	시 험 보 도	마-1	41	41		
		마-2	17	17		
	초 화 원	바	800	800		
휴양시설	소 계		3,147	444	228	
	경 로 당	사	127	767		
	휴게휴게소	아-1	27	170		
		아-2	70	115		
		아-3	36	207		
		아-4	89	112		
		아-5	98	58		
		아-6	33	41		
		아-7	18	17		
		아-8	6	800		
		아-9	6	6		
		아-10	6	6		
		아-11	643	643		
		아-12	185	185		
		아-13	111	111		
		아-14	128	128		
		아-15	170	170		
		아-16	4	4		
		아-17	10	10		
		아-18	26	26		
		아-19	30	30		
		아-20	24	24		
		아-21	29	29		
		아-22	26	26		
		아-23	23	23		
		아-24	53	53		
		아-25	16	16		
		아-26	25	25		
		아-27	79	79		
		아-28	135	135		
		아-29	16	16		
		아-30	29	29		
	피크닉장	자-1	51	51		
		자-2	380	380		
		자-3	59	59		
	휴 게 소	차-1	130	130		
		차-2	230	230		
		차-3	16	16		
	사각파고라	⑪	-	-	27	
	육각정자	⑫	-	-	3	
	사각정자	⑬	-	-	1	
	쉘 터	⑭	-	-	8	
	정 자	⑮	-	-	167	
	야 외 탁 자	⑯	-	-	6	
	원 상	⑰	-	-	16	
유희시설	소 계		260	260	1	
	어린이놀이터	카	260	260		
	조합놀이대	⑱	-	-	1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운동시설	소 계		10,815.49	10,815.49	26	
	게 이 트 볼 장	타	520	520		
	배 드 민 턴 장	파-1	652	652		
		파-2	920	920		
		파-3	492	492		
	체 력 단 련 장	하-1	102	102		
		하-2	295	295		
		하-3	85	85		
		하-4	449	449		
		하-5	302	302		
		하-6	68	68		
		하-7	33	33		
		하-8	1,465	1,465		
		하-9	55	55		
		하-10	17	17		
		하-11	145	145		
		하-12	24	24		
		하-13	112	112		
		하-14	517	517		
		하-15	65	65		
		하-16	152	152		
		하-17	345	345		
	체 육 관	가	3,570.49	3,570.49		
	다 목 적 실	나	430	430		
	체력단련시설	⑲	-	-	28	
교양시설	소 계		737	737		
	문 화 데 크	다-1	29	29		
		다-2	29	29		
		다-3	30	30		
		다-4	39	39		
		다-5	29	29		
	야 외 교 실	라-1	31	31		
		라-2	228	228		
	자연학습장	마-1	82	82		
		마-2	240	240		
편익시설	소 계		126	126		
	음 수 장	바-1	42	42		
		바-2	52	52		
	화 장 실	사	32	32		
녹지및기타	소 계		1,027,033.61			
	녹 지		1,027,033.61			

조성계획도(변경전)

SCALE=1/1,500



현충근린공원

■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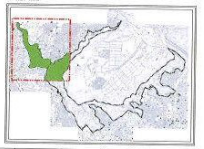

■ 범 례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고
합계				1,093,601.1	66,567.49	255	
기반시설	소계			49,418.6	49,418.6		
	도로		㉮	44,344.0	44,344.0		
	광장		가-1	283	283		
			가-2	360	360		
			가-3	1,898	1,898		
			가-4	43	43		
			가-5	226	226		
			가-6	1,223	1,223		
			가-7	42	42		
	생태육교		나-1	667	667		
			나-2	342	342		
조경시설	소계			2,069	2,069		
	계류		다	444	444		
	연못		라-1	163	163		
			라-2	170	170		
			라-3	115	115		
			라-4	207	207		
			라-5	112	112		
	서암보도		마-1	41	41		
			마-2	17	17		
	초화원		바	800	800		
휴양시설	소계			3,142	444	228	
	관로당		사	127	767		
	잉간휴게소		아-1	27	170		
			아-2	70	115		
			아-3	36	207		
			아-4	89	112		
			아-5	58	58		
			아-6	33	41		
			아-7	16	17		
			아-8	6	800		
			아-9	6	6		
			아-10	6	6		
			아-11	643	643		
			아-12	185	185		
			아-13	111	111		
			아-14	128	128		
			아-15	170	170		
			아-16	4	4		
			아-17	10	10		
			아-18	26	26		
			아-19	30	30		
			아-20	24	24		
			아-21	29	29		
			아-22	26	26		
			아-23	23	23		
			아-24	53	53		
			아-25	16	16		
			아-26	25	25		
			아-27	79	79		
			아-28	135	135		
			아-29	16	16		
			아-30	29	29		
	피크닉장		자-1	51	51		
			자-2	380	380		
			자-3	59	59		
	휴게소		차-1	130	130		
			차-2	230	230		
			차-3	16	16		
	사각파고라		①	-	-	27	
	육각정사		②	-	-	5	
	사각정사		③	-	-	1	
	팔 각		④	-	-	6	
	십 의 자		⑤	-	-	167	
	이 의 탁 자		⑥	-	-	6	
	정 상		⑦	-	-	16	
유희시설	소 계			260	260	1	
	어린이놀이터		키	260	260		
	초한놀이대		④	-	-	1	

조성계획도(변경전)

SCALE=1/1,500

현충근린공원

■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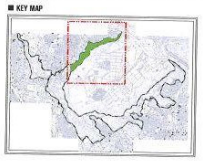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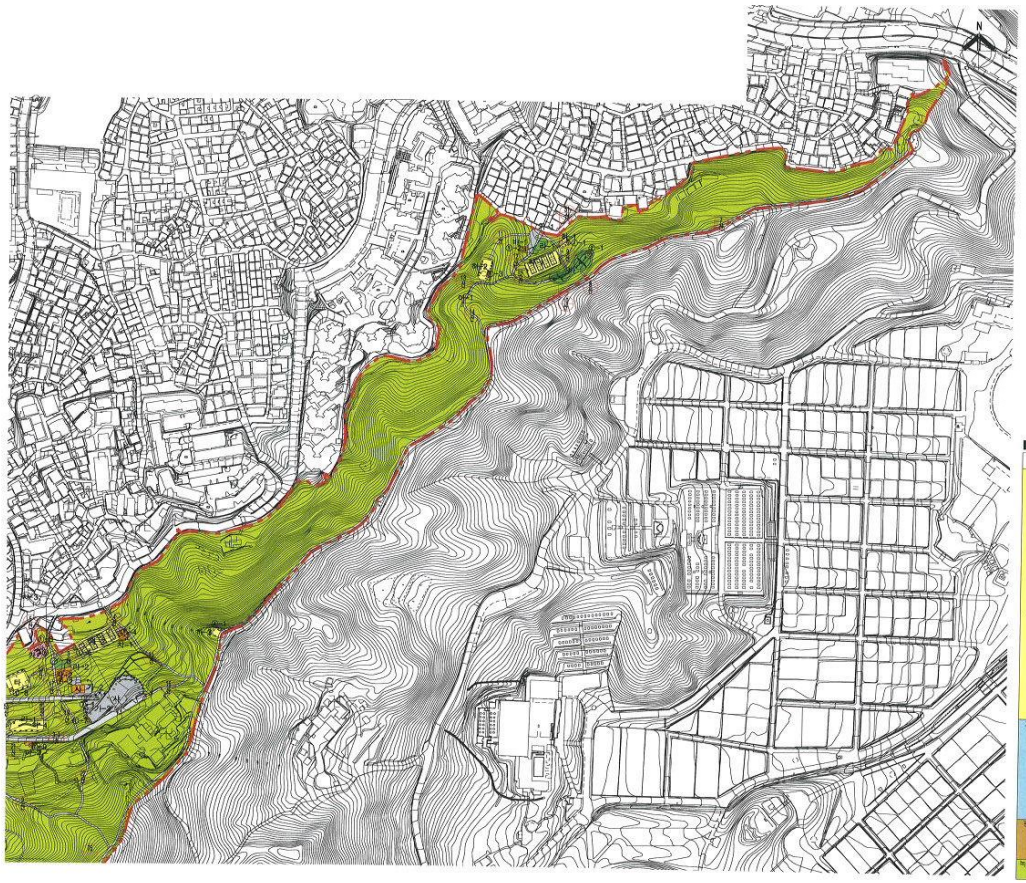

■ 범 례

구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굴 착 율(%)	비 고
운동시설	소 계		10,815.49	10,815.49	26	
	게이트볼장	타	520	520		
	배드민턴장	파-1	652	652		
		파-2	920	920		
		파-3	492	492		
	체력단련장	하-1	102	102		
		하-2	295	295		
		하-3	85	85		
		하-4	449	449		
		하-5	302	302		
		하-6	68	68		
		하-7	33	33		
		하-8	1,465	1,465		
		하-9	55	55		
		하-10	17	17		
		하-11	145	145		
		하-12	24	24		
		하-13	112	112		
		하-14	517	517		
		하-15	65	65		
		하-16	152	152		
		하-17	345	345		
	체 육 관	가	3,570.49	3,570.49		
	테 니 스 장	나	430	430		
	체육단위시설	마	-	-	26	
교양시설	소 계		737	737		
	관 찰 데 크	다-1	29	29		
		다-2	29	29		
		다-3	30	30		
		다-4	29	29		
		다-5	29	29		
	야 외 교 실	라-1	31	31		
		라-2	228	228		
	자연학습장	마-1	92	92		
		마-2	240	240		
편익시설	소 계		126	126		
	음 수 장	바-1	42	42		
		바-2	52	52		
	화 장 실	사	32	32		
녹지및기타	소 계		1,027,033.61			
	녹 지		1,027,033.61			

현충근린공원



조성계획도(변경전)

SCALE=1/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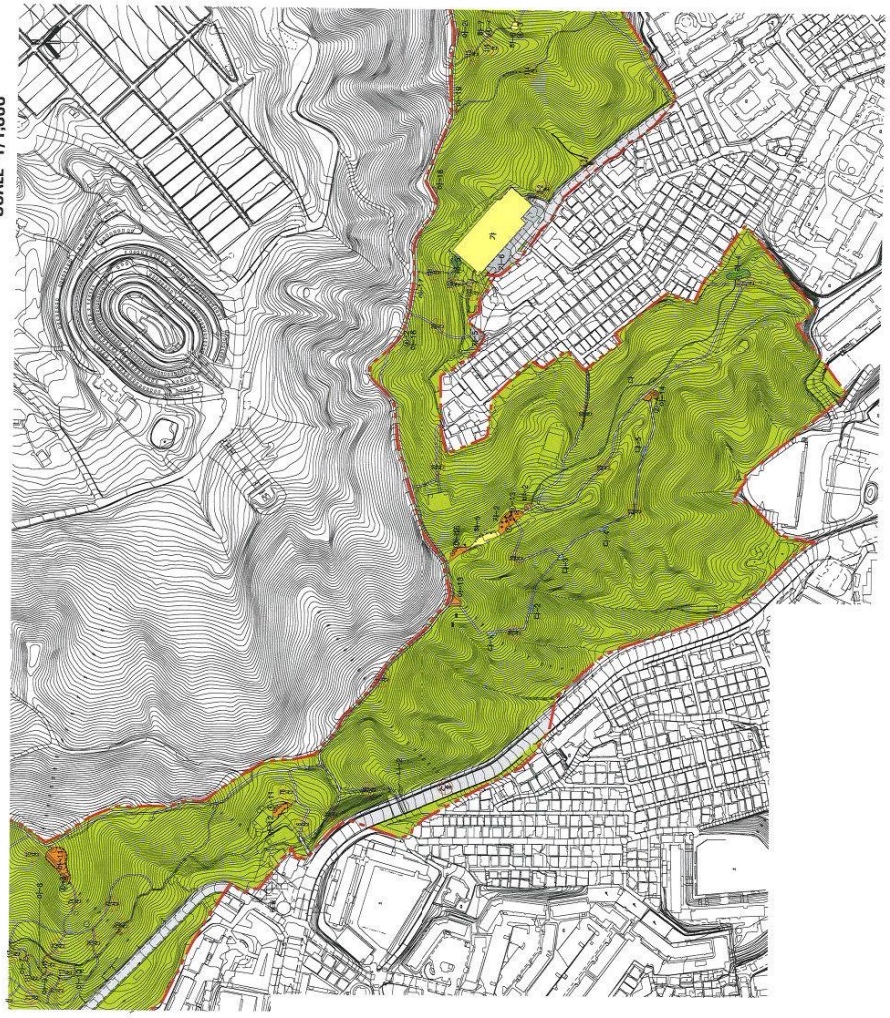

조성계획도(변경전)

SCALE=1/1,500



현충근린공원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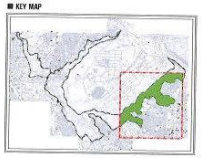


조성계획도(변경전)
SCALE=1/1,500
현충근린공원
KEY MAP
N


조성계획도(변경후)
SCALE=1/4,000
현충근린공원(전체)
N

조성계획도(변경후)

현충근린공원(전체)

■범 례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고
합	계		614,134.1	54,355.29	27	
기반시설	소 계		45,185.9	34,552.9		
	도 로	㉮	40,945.0	30,312.0 (10,633.0)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광 장	가	3,236.7	3,236.7		
		가-1	(260.8)	(276.4)		
		가-2	(233.0)	(233.0)		
		가-3	(285.7)	(285.7)		
		가-4	(43.0)	(43.0)		
		가-5	(226.0)	(226.0)		
		가-6	(1,223.0)	(1,223.0)		
		가-7	(42.0)	(42.0)		
		가-8	(191.9)	(191.9)		
		가-9	(38.0)	(38.0)		
		가-10	(218.0)	(218.0)		
		가-11	(475.3)	(475.3)		
	생태육교	나	1,004.2	1,004.2		
		나-1	(662.2)	(662.2)		
		나-2	(342.0)	(342.0)		
조경시설	소 계		3,335.8	3,335.8	22	
	계 류	다	444.0	444.0		
	연 못	라	933.4	933.4		
		라-1	(163.0)	(163.0)		
		라-2	(337.1)	(337.1)		
		라-3	(115.0)	(115.0)		
		라-4	(207.0)	(207.0)		
		라-5	(111.1)	(111.1)		
	초 화 원	바	1,933.5	1,933.5		
		바-1	(779.0)	(779.0)		
		바-2	(631.4)	(631.4)		
		바-3	(633.1)	(633.1)		
	사각파고라	①	418.5	418.5	16	
		①-1	(15.8)	(15.8)	(1)	
		①-2	(16.0)	(16.0)	(1)	
		①-3	(32.0)	(32.0)	(1)	
		①-4	(16.0)	(16.0)	(1)	
		①-5	(25.0)	(25.0)	(1)	
		①-6	(60.0)	(60.0)	(1)	
		①-9	(32.0)	(32.0)	(2)	
		①-10	(32.0)	(32.0)	(1)	
		①-14	(16.0)	(16.0)	(1)	
		①-16	(31.4)	(31.4)	(2)	
		①-18	(16.0)	(16.0)	(1)	
		①-21	(16.0)	(16.0)	(1)	
		①-23	(12.3)	(12.3)	(1)	
		①-24	(98.0)	(98.0)	(1)	
	육각정자	②	32.1	32.1	2	
		②-1	(21.7)	(21.7)	(1)	
		②-5	(10.4)	(10.4)	(1)	
	사각정자	③	30.3	30.3	1	
	탭 터	④	12.9	12.9	2	
		④-1	(6.9)	(6.9)	(1)	
		④-5	(6.0)	(6.0)	(1)	
	평 상	⑦	-	-	1	

■범 례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고
휴양시설	소 계		6,358.3	6,358.3		
	경 로 당	사	127.0	127.0		
	임간휴게소	아	1,915.1	1,915.1		
		아-1	(27.0)	(27.0)		
		아-2	(41.4)	(41.4)		
		아-3	(36.0)	(36.0)		
		아-4	(89.0)	(89.0)		
		아-5	(98.0)	(98.0)		
		아-6	(33.0)	(33.0)		
		아-7	(16.0)	(16.0)		
		아-8	(6.0)	(6.0)		
		아-9	(6.0)	(6.0)		
		아-10	(6.0)	(6.0)		
		아-11	(643.0)	(643.0)		
		아-12	(185.0)	(185.0)		
		아-13	(95.8)	(95.8)		
		아-14	(89.6)	(89.6)		
		아-15	(87.2)	(87.2)		
		아-16	(4.0)	(4.0)		
		아-17	(10.0)	(10.0)		
		아-18	(26.0)	(26.0)		
		아-19	(30.0)	(30.0)		
		아-20	(24.0)	(24.0)		
		아-21	(8.2)	(8.2)		
		아-22	(26.0)	(26.0)		
		아-23	(23.0)	(23.0)		
		아-24	(53.0)	(53.0)		
		아-25	(16.0)	(16.0)		
		아-26	(3.4)	(3.4)		
		아-27	(79.0)	(79.0)		
		아-28	(108.5)	(108.5)		
		아-29	(16.0)	(16.0)		
		아-30	(29.0)	(29.0)		
	피크닉장	자	467.5	467.5		
		자-1	(51.0)	(51.0)		
		자-2	(366.2)	(366.2)		
		자-3	(59.0)	(59.0)		
	휴 게 소	차	3,537.7	3,537.7		
		차-2	(269.2)	(269.2)		
		차-4	(85.8)	(85.8)		
		차-5	(261.6)	(261.6)		
		차-6	(74.6)	(74.6)		
		차-7	(147.9)	(147.9)		
		차-8	(68.1)	(68.1)		
		차-9	(33.2)	(33.2)		
		차-10	(1,463.3)	(1,463.3)		
		차-11	(71.6)	(71.6)		
		차-12	(17.3)	(17.3)		
		차-13	(24.4)	(24.4)		
		차-14	(602.7)	(602.7)		
		차-15	(65.0)	(65.0)		
		차-16	(152.5)	(152.5)		
		차-17	(328.9)	(328.9)		
		차-18	(13.6)	(13.6)		
	쉼 터	머	248.0	248.0		
		머-1	(192.7)	(192.7)		
		머-2	(30.3)	(30.3)		
		머-3	(25.0)	(25.0)		
	전망쉼터	머	63.0	63.0		

■범 례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고
위락시설	소 계		2,498.5	2,498.5	4	
	어린이놀이터	키	397.0	397.0		
	물분놀이터	샤	802.0	802.0		
	조합놀이대	⑧	-	-	1	
	모험놀이장	아	1,300.0	1,300.0		
		아-1	(369.0)	(369.0)		
		아-2	(459.0)	(459.0)		
		아-3	(472.0)	(472.0)		
	모험놀이대	⑨	-	-	3	
		⑨-1	-	-	(1)	
		⑨-2	-	-	(1)	
		⑨-3	-	-	(1)	
운동시설	소 계		7,052.49	7,052.49	1	
	게이트볼장	타	750.0	750.0		
	베드민턴장	파	1,144.0	1,144.0		
		파-1	(652.0)	(652.0)		
		파-3	(492.0)	(492.0)		
	체육관	카	3,570.49	3,570.49		
	테니스장	나	430.0	430.0		
	써킷단련시설	⑩			1	
	실내배드민턴장	차	1,158.0	1,158.0		
교양시설	소 계		483.7	483.7		
	야외교실	라	151.7	151.7		
		라-1	(31.0)	(31.0)		
		라-2	(120.7)	(120.7)		
	자연학습장	마	332.0	332.0		
		마-1	(92.0)	(92.0)		
		마-2	(240.0)	(240.0)		
편익시설	소 계		73.6	73.6		
	음수장	바	41.6	41.6		
		바-1	(26.3)	(26.3)		
		바-2	(9.6)	(9.6)		
		바-3	(5.7)	(5.7)		
	화장실	사	32.0	32.0		
녹지및기타	소 계		549,145.81			
	녹 지		549,145.81			

조성계획도(변경후)

SCALE=1/1,500

현충근린공원



■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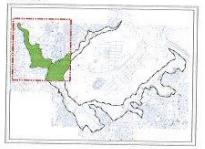

■ 범 례

구분	시설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614,134.1	54,355.29	27	
기반시설	소 계		45,185.9	34,562.9		
	도 로	⑧	40,945.0	30,312.0 (10,633.0)		도시계획도로 시설연락 시도로
	공 창	가	3,236.7	3,236.7		
		가-1	(260.8)	(276.4)		
		가-2	(233.0)	(233.0)		
		가-3	(285.7)	(285.7)		
		가-4	(43.0)	(43.0)		
		가-5	(226.0)	(226.0)		
		가-6	(1,223.0)	(1,223.0)		
		가-7	(42.0)	(42.0)		
		가-8	(191.9)	(191.9)		
		가-9	(38.0)	(38.0)		
		가-10	(218.0)	(218.0)		
		가-11	(475.3)	(475.3)		
	생 태 육 교	나	1,004.2	1,004.2		
		나-1	(662.2)	(662.2)		
		나-2	(342.0)	(342.0)		
조경시설	소 계		3,386.8	3,335.8	22	
	계 단	다	444.0	444.0		
	연 못	라	933.4	933.4		
		라-1	(163.0)	(163.0)		
		라-2	(337.1)	(337.1)		
		라-3	(115.0)	(115.0)		
		라-4	(207.0)	(207.0)		
		라-5	(111.1)	(111.1)		
	초 화 원	바	1,933.5	1,933.5		
		바-1	(779.0)	(779.0)		
		바-2	(521.4)	(521.4)		
		바-3	(633.1)	(633.1)		
	사각파고라	①	418.5	418.5	16	
		①-1	(15.8)	(15.8)	(1)	
		①-2	(16.0)	(16.0)	(1)	
		①-3	(32.0)	(32.0)	(1)	
		①-4	(16.0)	(16.0)	(1)	
		①-5	(25.0)	(25.0)	(1)	
		①-6	(60.0)	(60.0)	(1)	
		①-9	(32.0)	(32.0)	(2)	
		①-10	(32.0)	(32.0)	(1)	
		①-14	(16.0)	(16.0)	(1)	
		①-16	(31.4)	(31.4)	(2)	
		①-18	(16.0)	(16.0)	(1)	
		①-21	(16.0)	(16.0)	(1)	
		①-23	(12.3)	(12.3)	(1)	
		①-24	(98.0)	(98.0)	(1)	
	육각정자	②	32.1	32.1	2	
		②-1	(21.7)	(21.7)	(1)	
		②-5	(10.4)	(10.4)	(1)	
	사각정자	③	30.3	30.3	1	
	쉼 터	④	12.9	12.9	3	
		④-1	(6.9)	(6.9)	(1)	
		④-5	(6.0)	(6.0)	(1)	
	평 상	⑦	-	-	1	

조성계획도(변경후)

SCALE=1/1,500

현충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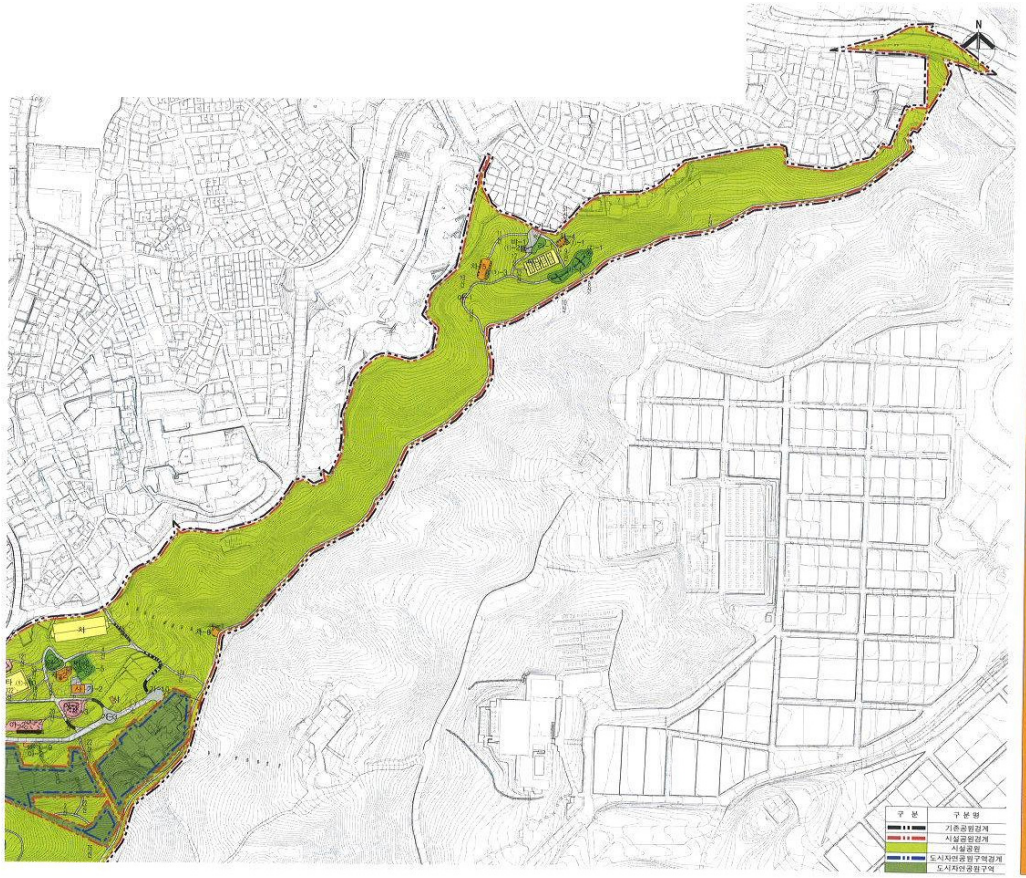

■ 범 례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적물(기)	비고
휴양시설	소 계		6,358.3	6,358.3		
	광 로 당	사	127.0	127.0		
	임간휴게소	아	1,916.1	1,915.1		
		아-1	(27.0)	(27.0)		
		아-2	(41.4)	(41.4)		
		아-3	(36.0)	(36.0)		
		아-4	(89.0)	(89.0)		
		아-5	(98.0)	(98.0)		
		아-6	(33.0)	(33.0)		
		아-7	(16.0)	(16.0)		
		아-8	(6.0)	(6.0)		
		아-9	(6.0)	(6.0)		
		아-10	(6.0)	(6.0)		
		아-11	(643.0)	(643.0)		
		아-12	(185.0)	(185.0)		
		아-13	(95.8)	(95.8)		
		아-14	(89.6)	(89.6)		
		아-15	(87.2)	(87.2)		
		아-16	(4.0)	(4.0)		
		아-17	(10.0)	(10.0)		
		아-18	(26.0)	(26.0)		
		아-19	(30.0)	(30.0)		
		아-20	(24.0)	(24.0)		
		아-21	(8.2)	(8.2)		
		아-22	(26.0)	(26.0)		
		아-23	(23.0)	(23.0)		
		아-24	(53.0)	(53.0)		
		아-25	(16.0)	(16.0)		
		아-26	(3.4)	(3.4)		
		아-27	(79.0)	(79.0)		
		아-28	(108.5)	(108.5)		
		아-29	(16.0)	(16.0)		
		아-30	(29.0)	(29.0)		
	피크닉장	자	467.5	467.5		
		자-1	(51.0)	(51.0)		
		자-2	(366.2)	(366.2)		
		자-3	(59.0)	(59.0)		
	휴 게 소	차	3,537.7	3,537.7		
		차-2	(209.2)	(209.2)		
		차-4	(85.6)	(85.6)		
		차-5	(261.6)	(261.6)		
		차-6	(74.6)	(74.6)		
		차-7	(147.9)	(147.9)		
		차-8	(68.1)	(68.1)		
		차-9	(33.2)	(33.2)		
		차-10	(1,483.3)	(1,483.3)		
		차-11	(71.6)	(71.6)		
		차-12	(17.3)	(17.3)		
		차-13	(24.4)	(24.4)		
		차-14	(500.7)	(500.7)		
		차-15	(65.0)	(65.0)		
		차-16	(152.5)	(152.5)		
		차-17	(328.9)	(328.9)		
		차-18	(13.6)	(13.6)		
	화 장	어	248.0	248.0		
		어-1	(192.7)	(192.7)		
		어-2	(30.3)	(30.3)		
		어-3	(25.0)	(25.0)		
	현실원터	어	63.0	63.0		

조성계획도(변경후)

SCALE=1/1,500

현충근린공원

■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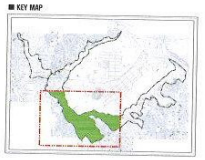



■ 범 례

구 분	구 분 명
	기존공원경계
	시설공원경계
	시설유원
	도시자연공원구역경계
	도시자연공원구역

구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주 차 (기)	비 고
유희시설	소 계		2,498.5	2,498.5	4	
	어린이놀이터	키	397.0	397.0		
	물꽃놀이터	지	802.6	802.6		
	조합놀이대	사	-	-	1	
	모험놀이장	아	1,300.0	1,300.0		
		아-1	(369.0)	(369.0)		
		아-2	(459.0)	(459.0)		
		아-3	(472.0)	(472.0)		
	모험놀이대	자	-	-	3	
		자-1	-	-	(1)	
		자-2	-	-	(1)	
		자-3	-	-	(1)	
운동시설	소 계		7,052.49	7,052.49	1	
	게이트볼장	타	750.0	750.0		
	베드민턴장	파	1,144.0	1,144.0		
		파-1	(652.0)	(652.0)		
		파-3	(492.0)	(492.0)		
	체육관	가	3,570.49	3,570.49		
	테니스장	나	430.0	430.0		
	세대다면시설	차			1	
	실내배드민턴장	차	1,168.0	1,168.0		
교양시설	소 계		483.7	483.7		
	야외교실	라	151.7	151.7		
		라-1	(31.0)	(31.0)		
		라-2	(120.7)	(120.7)		
	자연학습장	마	332.0	332.0		
		마-1	(92.0)	(92.0)		
		마-2	(240.0)	(240.0)		
편익시설	소 계		73.6	73.6		
	음 수 장	바	41.6	41.6		
		바-1	(26.3)	(26.3)		
		바-2	(9.6)	(9.6)		
		바-3	(5.7)	(5.7)		
	화 장 실	사	32.0	32.0		
녹지및기타	소 계		549,145.81			
	녹 지		549,145.81			


조성계획도(변경후)
SCALE=1/1,500
현충근린공원
KEY MAP

조성계획도(변경후)

SCALE=1/1,500

현충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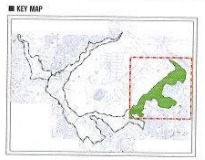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92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0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 변경,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6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생활숙박시설 관리기준” 변경]

1.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0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 변경 및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6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생활숙박시설 관리기준에 대하여 2020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0.12.23)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 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2019.1.16.)에 따라 변경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생활숙박시설 관리방안 수립」(2020.11.9.)으로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산정에서 생활숙박시설이 제외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하기 위해 세종로 지구 단위계획구역 외 30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 변경 및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62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비주거용도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상한용적률을 적용하는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01개 구역

자치구	구역명
종로구	세종로, 율곡로, 종로4·5가, 북촌, 숭인2, 숭인, 종로2·3가, 성균관대 주변, 경복궁서측,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혜화명륜동, 사직1, 이화동일대, 정동일대
중구	퇴계로변, 약수, 회현, 명동관광특구, 주교, 북창, 서울시청사부지, 남대문시장,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장충동 일대

자치구	구역명
용산구	숙명여대주변, 용산, 한남, 이태원로 주변, 서계동 일대, 유엔사부지
성동구	금호 지구중심, 왕십리 광역중심, 뚝섬, 뚝섬주변지역,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청계천로변구역, 행당 도시개발구역
광진구	건대입구역지구, 군자역지구 (구 중곡), 화양1지구, 화양2지구, 자양지구, 아차산역지구, 중곡역지구, 구의사거리, 광나루역, 구의지구, 구의 · 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9존치관리, 구의 · 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1존치정비
동대문구	경희대앞, 배봉생활권중심, 서울시립대 주변지역, 신설, 신이문생활권중심, 이문동 22-2번지 일대, 이문생활권중심, 전농지구중심, 회기구역, 휘경동주거환경관리사업, 장안평일대
중랑구	망우동 83번지 일대(소규모 단절토지), 망우지구, 면목생활권, 면목지구중심, 묵동지구, 상봉생활권, 신내동 385번지 일대(소규모 단절토지), 안새우개 · 새우개, 중화생활권중심, 중화 존치관리구역
성북구	길음, 동덕여대 주변지역, 동선지구중심, 동소문동2가, 미아지구상세계획구역, 보문생활권중심, 석관지구중심,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성신여대 주변지역, 월곡생활권중심, 장수마을, 장월택지개발지구, 정릉3동, 정릉생활권중심, 정릉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서울 정릉공공주택지구
강북구	4.19사거리, 미아사거리역 주변, 미아역 일대, 삼양사거리, 서울휴먼타운(능안골), 수유 · 번동
도봉구	도봉생활권, 도봉역세권, 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 방아골, 방학역세권, 새동네 · 안골, 쌍문생활권, 쌍문지구중심, 창동2택지개발지구, 서울창동
노원구	공릉, 공릉1택지개발지구, 공릉2택지개발지구, 공릉공공주택지구, 광운대주변, 노원구역, 상계1 · 2단계택지개발지구, 상계2택지개발지구, 상계3택지개발지구, 상계역주변, 상계 · 장암 도시개발구역, 수락구역, 월계1지구택지개발지구, 월계3택지개발지구, 월계4택지개발지구, 월계5택지개발지구, 월계6택지개발지구, 월계생활권중심, 중계택지, 중계본동, 상계4동, 상계동 공공주택사업, 중계2택지
은평구	응암역생활권중심, 구청생활권중심, 응암지구중심, 구산생활권중심, 신사생활권중심, 연신내, 수색 · DMC역주변지역, 독바위, 불광, 역촌역세권, 연서로, 응암로, 수색1 존치관리구역, 증산 공공주택지구
서대문구	서대문구청주변, 개미마을, 천연, 충정, 서울 휴먼타운(북가좌동), 가재울, 아현, 북아현, 홍제, 신촌지구일대, 충현
마포구	마포지구, 공덕지역중심, 성산지구, 대흥지구, 상수역세권 주변, 마포구 청사 이전부지, 상암 택지개발지구, 상암2지구, 서울 휴먼타운(연남동), 합정지구, 아현1지구, 아현2지구, 마포 디자인 · 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공덕동 행복주택, 경의선 서강대역 복합역사개발
양천구	목동중심지구, 신월 생활권중심, 신정 생활권중심, 김포가도(양천), 목동오거리, 신정택지개발지구, 신정2택지개발지구, 신투리 택지개발지구, 서울목동지구 택지 개발사업, 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서울신정4보금자리주택지구, 신정 도시개발
강서구	공항로, 우장산역생활권중심, 목동사거리생활권중심, 화곡역지구중심, 까치산역지구중심, 공항지구중심, 가양택지개발지구, 방화1택지개발지구, 방화2택지개발지구, 등촌택지개발지구, 화곡택지개발지구, 서울발산지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공항동 군부대 이적지, 마곡도시개발사업
구로구	개봉역, 구로디지털단지역,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온수역 일대, 온수동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구로동 주거환경관리사업, 구로구 개봉3동 주거환경관리사업,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구로동 CJ공장부지, 취락지구(연지마을), 서울천왕2(국민임대주택),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천왕 도시개발구역, 서울개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금천구	시흥 생활권중심, 금천구심, 문성 생활권중심, 정심 생활권중심, 독산, 가산, 시흥 박미사랑마을, 시흥박미사랑마을(Ⅱ단계), 석수역세권, 시흥생활권

자치구	구역명
영등포구	영등포1, 신길동, 대림광역중심, 대림2생활권, 방림부지,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당산지구중심, 영등포구 문래동5가 10번지 일대, 당산동4가 80번지일대, 강남성심병원, 신길지구중심, 신풍지구, 신길1생활권, 신길6생활권, 서울문래 기업형임대 주택 공급촉진지구, 선유도역 주변
동작구	상도지구, 대림지구, 사당이수, 신대방지구, 노량진지구, 원불교부지
관악구	대림 지역중심, 난곡사거리지구중심, 난곡생활권중심, 은천생활권중심, 낙성대생활권중심, 신림지구중심, 봉천지역중심, 서울대주변, 봉천택지개발지구, 신림택지개발지구, 낙성대주변, 남부순환로(시흥IC)주변, 미림생활권중심
서초구	서초로,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양재택지, 양재지구중심, 잠원동 66-2 일대
강남구	개포택지개발지구, 논현, 청담, 대치, 테헤란로2, 국제교류복합지구, 양재 지구중심, 대치택지개발지구, 수서택지개발지구, 대치동 구마을, 926정거장주변, 아랫반고개마을, 한국과학기술회관, 역삼, 강남세브란스병원
송파구	거여지구, 삼전, 송파대로 제1지구, 방이, 개롱, 위례성길,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풍납, 거여택지개발지구, 장지택지개발지구, 위례택지개발지구, 거여2지구,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문정 도시개발구역, 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마천지구, 서울동남권유통단지, 송파대로 제2지구
강동구	성내지구, 암사지구, 천호지구, 고덕택지개발지구, 굽은다리, 강일2택지개발지구, 둔촌동역 주변, 강동구청주변,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강일도시개발구역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이 허용되는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62개 구역

자치구	구역명
종로구	세종로, 대학로, 율곡로, 운현궁 주변, 조계사 주변, 북촌, 숭인2, 인사동, 종로2·3가, 경복궁서측, 이화동일대, 정동일대
중구	회현, 명동관광특구, 주교, 북창, 남대문시장,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장충동 일대
용산구	한남
성동구	왕십리 광역중심
동대문구	경희대앞
중랑구	묵동지구
성북구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도봉구	방학역세권, 쌍문지구중심
노원구	상계2택지개발지구, 중계택지
은평구	연신내, 수색·DMC역 주변지역, 불광
서대문구	천연, 충정, 홍제, 신촌지구일대
마포구	마포지구, 합정지구, 아현2지구, 경의선 공덕역 복합역사개발
강서구	화곡역지구중심, 까치산역지구중심, 공항지구중심, 서울발산지구

자치구	구역명
구로구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금천구	가산, 금천구심
영등포구	영등포1,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신길지구중심, 대림광역중심, 당산지구중심
동작구	대림지구
관악구	대림 지역중심,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신림지구중심, 봉천지역중심
서초구	서초로
강남구	개포택지개발지구, 테헤란로2, 국제교류복합지구, 수서택지개발지구, 926정거장주변
강동구	천호지구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종로구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01개소(상한용적률 산정기준 변경)

■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결정(변경)(안)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을 포함할 경우 상한용적률 산정기준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019.1.16.)」을 적용한다.

상한용적률 = 허용 or 기준용적률 × (1+1.3×가중치× $\alpha_{토지}$+0.7× $\alpha_{건축물}$)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alpha_{토지}$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alpha_{건축물}$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운영기준(2019.1.16.)」 상 상한용적률 산정식을 적용한다.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019.1.16.)」시행일 이전에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이 포함되어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열람공고한 경우 또는 지

구단위계획 결정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인·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은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건축물 기부채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기부채납 총량이 종전과 동일하거나 그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1)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시 상한용적률 산정식 결정(신설) – 산정식이 없는 구역(138개소)

(신설)「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019.1.16.)」에 따른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적용

$$\text{상한용적률} = \text{허용용적률} \times (1+1.3\times\text{가중치}\times\alpha_{\text{토지}}+0.7\times\alpha_{\text{건축물}})$$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alpha_{\text{토지}}$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alpha_{\text{건축물}}$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37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치구	구역명
종로구	종로4·5가, 종로2·3가, 경복궁서측,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사직1
중구	약수, 회현, 서울시청사부지
용산구	한남, 이태원로 주변, 유엔사부지
성동구	행당 도시개발구역
광진구	구의사거리
동대문구	신이문생활권중심, 이문생활권중심, 회기구역, 휘경동주거환경관리사업
중랑구	망우동 83번지 일대(소규모 단절토지), 망우지구, 묵동지구, 상봉생활권, 신내동 385번지 일대(소규모 단절토지), 중화생활권중심

자치구	구역명
성북구	길음, 동선지구중심, 동소문동2가, 미아지구상세계획구역, 보문생활권중심,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월곡생활권중심, 장수마을, 장월택지개발지구, 정릉3동, 정릉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서울 정릉공공주택지구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주변, 미아역 일대, 서울휴먼타운(능안골), 수유 · 번동
도봉구	도봉생활권, 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 방아골, 쌍문생활권, 창동2택지개발지구, 서울창동
노원구	공릉, 공릉1택지개발지구, 공릉2택지개발지구, 공릉공공주택지구, 광운대주변, 상계2택지개발지구, 상계3택지개발지구, 상계 · 장암 도시개발구역, 수락구역, 월계3택지개발지구, 월계4택지개발지구, 월계5택지개발지구, 월계6택지개발지구, 월계생활권중심, 중계본동, 상계4동, 상계동 공공주택사업
은평구	연신내, 독바위, 불광, 역촌역세권, 응암로, 증산 공공주택지구
서대문구	개미마을, 천연, 충정, 서울 휴먼타운(북가좌동), 신촌지구일대
마포구	마포지구, 성산지구, 마포구 청사 이전부지, 상암 택지개발지구, 상암2지구, 서울 휴먼타운(연남동), 마포 디자인 · 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공덕동 행복주택, 경의선 서강대역 복합역사개발
양천구	신정택지개발지구, 신정2택지개발지구, 신투리 택지개발지구,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서울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 신정 도시개발
강서구	등촌택지개발지구, 화곡택지개발지구, 서울발산지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공항동 군부대 이적지, 마곡 도시개발사업
구로구	온수역 일대, 온수동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구로동 주거환경관리사업, 구로구 개봉3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취락지구(연지마을), 서울천왕2(국민임대주택),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천왕도시개발구역, 서울개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금천구	시흥 생활권중심, 문성 생활권중심, 정심 생활권중심, 독산, 시흥 박미사랑마을, 시흥 박미사랑마을(Ⅱ단계), 시흥생활권
영등포구	방림부지,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서울문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동작구	대림지구, 사당이수, 노량진지구
관악구	난곡사거리지구중심, 난곡생활권중심, 서울대주변, 봉천택지개발지구, 신림택지개발지구
서초구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잠원동 66-2 일대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아랫반고개마을
송파구	거여택지개발지구, 장지택지개발지구, 위례택지개발지구,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문정도시개발구역, 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서울동남권유통단지
강동구	강일2택지개발지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강일도시개발구역

(2)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시 상한용적률 산정식 결정(변경) – 산정식이 있는 구역(164개소)

① 상한용적률 산정식 : 기준용적률 × (1+1.3×가중치×α)

기 정	변 경
기준용적률 × (1+1.3×가중치×α)	기준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 + 0.7×α건축물)

○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치구	구역명
종로구	세종로, 북촌, 혜화명륜동

② 상한용적률 산정식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1.3×가중치×α)

기 정	변 경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1.3×가중치×α)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1.3×가중치×α토지 + 기준용적률×0.7×α건축물)

○ 수색1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치구	구역명
은평구	수색1 존치관리구역

③ 상한용적률 산정식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1.3×α)

기 정	변 경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1.3×α)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1.3×α토지 + 기준용적률×0.7×α건축물)

○ 이문동 22-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치구	구역명
동대문구	이문동 22-2번지 일대
구로구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④ 상한용적률 산정식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기 정	변 경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 + 0.7×α건축물)

○ 율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0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치구	구역명
종로구	율곡로, 숭인2, 성균관대 주변, 이화동일대
중구	퇴계로변, 명동관광특구, 주교, 남대문시장,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주변
용산구	숙명여대주변, 서계동 일대
성동구	금호 지구중심, 왕십리 광역중심
광진구	건대입구역지구, 군자역지구(구 중곡), 화양1지구, 화양2지구, 아차산역지구, 자양지구, 중곡역지구, 광나루역, 구의지구, 구의 · 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9존치관리, 구의 · 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1존치정비
동대문구	경희대앞, 배봉생활권중심, 서울시립대 주변지역, 신설, 전농지구중심, 장안평일대
중랑구	면목생활권, 중화 존치관리구역
성북구	석관지구중심, 성신여대 주변지역, 정릉생활권중심
도봉구	방학역세권, 쌍문지구중심
노원구	노원구역, 상계1 · 2단계택지개발지구, 중계 택지, 중계2택지
은평구	수색 · DMC역 주변지역, 연서로
서대문구	서대문구청주변 , 아현, 홍제
마포구	공덕지역중심, 대흥지구, 상수역세권 주변, 합정지구, 아현2지구
양천구	목동중심지구, 신월 생활권중심, 신정 생활권중심, 김포가도(양천), 목동오거리
강서구	공항로, 목동사거리생활권중심, 화곡역지구중심, 까치산역지구중심, 가양택지개발지구, 방화1택지개발지구, 방화2택지개발지구
구로구	개봉역
금천구	가산
영등포구	신길동, 대림2생활권, 당산지구중심, 당산동4가 80번지일대, 강남성심병원, 신길1생활권
동작구	상도지구, 신대방지구, 원불교부지
관악구	대림 지역중심, 은천생활권, 낙성대 생활권, 신림지구중심, 봉천지역중심, 낙성대주변, 남부순환로(시흥IC)주변, 미림생활권

자치구	구역명
서초구	서초로, 양재택지, 양재지구중심
강남구	개포택지개발지구, 논현, 청담, 대치, 테헤란로2, 국제교류복합지구, 양재 지구중심, 대치택지개발지구, 수서택지개발지구, 926정거장주변, 한국과학기술회관, 강남세브란스병원
송파구	삼전, 방이, 개롱, 위례성길, 송파대로 제1지구, 송파대로 제2지구
강동구	성내지구, 암사지구, 천호지구, 고덕택지개발지구, 둔촌동역 주변, 강동구청 주변

⑤ 상한용적률 산정식 : 허용용적률 × (1+1.3×α)

기 정	변 경
허용용적률 × (1+1.3×α)	허용용적률 × (1+1.3×α토지 + 0.7×α건축물)

○ 숭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5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치구	구역명
종로구	숭인
중구	북창
용산구	용산
성동구	뚝섬
중랑구	안새우개 · 새우개
강북구	삼양사거리
도봉구	새동네 · 안골
노원구	상계역주변
은평구	구청생활권중심, 구산생활권중심
마포구	아현1지구
강서구	우장산역생활권중심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영등포구	신길지구중심
강동구	굽은다리

⑥ 상한용적률 산정식 : 허용용적률 × ((1+0.3×α)/(1−α))

기 정	변 경
허용용적률 × ((1+0.3×α)/(1−α))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 + 0.7×α건축물)

○ 청계천로변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치구	구역명
성동구	청계천로변구역
노원구	월계1지구택지개발지구
영등포구	신풍지구, 신길6생활권

⑦ 상한용적률 산정식 : 허용(기준)용적률 × (1+1.3×가중치×α)

기 정	변 경
허용(기준)용적률 × (1+1.3×가중치×α)	허용(기준)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치구	구역명
성동구	뚝섬주변지역,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중랑구	면목지구중심
성북구	동덕여대 주변지역
도봉구	도봉역세권
서대문구	가재울
송파구	거여지구,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풍납, 거여2지구, 마천지구

⑧ 상한용적률 산정식 : 허용(기준)용적률 × (1+1.3×α)

기 정	변 경
허용(기준)용적률 × (1+1.3×α)	허용(기준)용적률 × (1+1.3×α토지 + 0.7×α건축물)

○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치구	구역명
강북구	4.19사거리
강남구	역삼

⑨ 상한용적률 산정식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현금·건축물)

기 정	변 경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 + 0.7×α현금 · 건축물)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 + 0.7×α건축물)

○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치구	구역명
종로구	정동 일대
중구	장충동 일대
은평구	응암역생활권중심, 응암지구중심, 신사생활권중심
서대문구	충현, 북아현
강서구	공항지구중심
영등포구	대림광역중심, 선유도역주변

⑩ 기타

○ 구로구 구로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table>
<tr><th>구분</th><th>기정</th><th>변경</th></tr>
<tr><td>3 확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td><td>
나. 건축물 밀도 및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table>
<tr><th>구 분</th><th>복합개발지</th><th>산업부지</th><th>임대산업부지</th><th>비고</th></tr>
<tr><td rowspan="2">밀도 관련</td><td>건폐율</td><td colspan="3">60% 이하</td><td>-</td></tr>
<tr><td>용적률</td><td>기준 허용 상한
210% 380% 400%
※상한용적률 산정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상한용적률 적용 산식 :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α×가중치)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td><td>기준 허용 상한
320% 400% -
※상한용적률 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상한용적률 적용 산식 : 허용용적률×(1+1.3α×가중치)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td><td>기준 허용 상한
- 400% -</td><td>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 계획 적용</td></tr>
</table>
</td><td>
나. 건축물 밀도 및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table>
<tr><th>구 분</th><th>복합개발지</th><th>산업부지</th><th>임대산업부지</th><th>비고</th></tr>
<tr><td rowspan="2">밀도 관련</td><td>건폐율</td><td colspan="3">60% 이하</td><td>-</td></tr>
<tr><td>용적률</td><td>기준 허용 상한
210% 380% 400%
※상한용적률 산정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상한용적률 적용 산식 :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α토지×가중치+기준용적률×0.7×α건축물)
※α토지란 공공시설등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α건축물이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 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td><td>기준 허용 상한
320% 400% -
※상한용적률 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상한용적률 적용 산식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 + 0.7×α건축물)
※α토지란 공공시설등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α건축물이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 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td><td>기준 허용 상
- 400% -</td><td>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 계획 적용</td></tr>
</table>
</td></tr>
</table>

○ 금천구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table>
<tr><th>구분</th><th>기정</th><th>변경</th></tr>
<tr><td>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2) 건축물의 밀도 결정 (변경)조서</td>
<td>■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table>
<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2">용도지역 기준</th><th rowspan="2">접도조건</th><th colspan="3">지구단위계획 내용</th></tr>
<tr><th>종전</th><th>변경</th><th rowspan="2">접도조건 및 기타</th><th rowspan="2">기준용적률</th><th rowspan="2">허용용적률</th><th rowspan="2">상한용적률</th></tr>
<tr><th>용도지역</th><th>용도지역</th></tr>
<tr><td rowspan="12">기정</td><td>일반상업</td><td rowspan="5">일반상업</td><td>12m이상</td><td>600%이하</td><td>800%이하</td><td rowspan="5">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한경우 허용용적률×(1+1.3α) 이내 ※α=(공공시설제공면적)/(공공시설제공후 대지면적)</td></tr>
<tr><td rowspan="2">준공업</td><td>12m이상</td><td>400%이하</td><td>660%이하</td></tr>
<tr><td>12m미만</td><td>250%이하</td><td>450%이하</td></tr>
<tr><td rowspan="2">일반주거</td><td>12m이상</td><td>300%이하</td><td>630%이하</td></tr>
<tr><td>12m미만</td><td>250%이하</td><td>450%이하</td></tr>
<tr><td>준공업</td><td>준공업주4,주5)</td><td>-</td><td>300%이하</td><td>400%이하</td></tr>
<tr><td rowspan="3">준공업</td><td rowspan="3">준주거</td><td>8m이상</td><td>250%이하 (300%이하)주1)</td><td>400%이하</td><td rowspan="3">500%이하</td></tr>
<tr><td>8m미만</td><td>250%이하</td><td>350%이하</td></tr>
<tr><td>군부대부지</td><td>250%이하</td><td>400%이하</td></tr>
<tr><td rowspan="2">준공업</td><td rowspan="4">제3종 일반주거</td><td>아파트단지 (베르빌,무지개,건영A)</td><td>230%이하</td><td>-</td><td>250%이하</td></tr>
<tr><td>군부대부지</td><td>250%이하</td><td>300%이하주2)</td><td>-</td></tr>
<tr><td>제2종 일반주거</td><td>아파트단지 (목련A)</td><td>200%이하</td><td>-</td><td>250%이하</td></tr>
<tr><td></td><td>-</td><td>200%이하</td><td>230%이하</td><td></td></tr>
</table>
주1) ( )는 15m이상 도로에 인접한 대지에 한해 적용
주2) 군부대부지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체계를 적용하여 기준/허용 용적률 산정
주3) 구역계 면적 증가에 따라 증가된 부지의 용적률은 기정 용적률 체계를 따름
주4) 베르빌아파트 북측 113번지 일대 15개 필지(준공업지역)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건립 시 210%/230%/ 250% (기준/허용/상한)의 용적률 체계를 따름
(※상한=허용+(기준x1.3αx가중치))
그 외 공동주택건립시, 250% / - (기준/허용). 단, 지구단위계획 지침내용을 수용하여야 함
주5) 준공업지역내 특별계획구역 중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정비유형을 적용하는 지역은 본 지침에서 마련하는 별도의 용적률 체계 적용</td>
<td>■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table>
<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2">용도지역 기준</th><th rowspan="2">접도조건</th><th colspan="3">지구단위계획 내용</th></tr>
<tr><th>종전</th><th>변경</th><th rowspan="2">접도조건 및 기타</th><th rowspan="2">기준용적률</th><th rowspan="2">허용용적률</th><th rowspan="2">상한용적률</th></tr>
<tr><th>용도지역</th><th>용도지역</th></tr>
<tr><td rowspan="12">기정</td><td>일반상업</td><td rowspan="5">일반상업</td><td>12m이상</td><td>600%이하</td><td>800%이하</td><td rowspan="5">공공시설 등 기부채납한경우 허용용적률× (1+1.3×α토지×가중치+0.7×α건축물)이내</td></tr>
<tr><td rowspan="2">준공업</td><td>12m이상</td><td>400%이하</td><td>660%이하</td></tr>
<tr><td>12m미만</td><td>250%이하</td><td>450%이하</td></tr>
<tr><td rowspan="2">일반주거</td><td>12m이상</td><td>300%이하</td><td>630%이하</td></tr>
<tr><td>12m미만</td><td>250%이하</td><td>450%이하</td></tr>
<tr><td>준공업</td><td>준공업주4,주5)</td><td>-</td><td>300%이하</td><td>400%이하</td></tr>
<tr><td rowspan="3">준공업</td><td rowspan="3">준주거</td><td>8m이상</td><td>250%이하 (300%이하)주1)</td><td>400%이하</td><td rowspan="3">500%이하</td></tr>
<tr><td>8m미만</td><td>250%이하</td><td>350%이하</td></tr>
<tr><td>군부대부지</td><td>250%이하</td><td>400%이하</td></tr>
<tr><td rowspan="2">준공업</td><td rowspan="4">제3종 일반주거</td><td>아파트단지 (베르빌,무지개,건영A)</td><td>230%이하</td><td>-</td><td>250%이하</td></tr>
<tr><td>군부대부지</td><td>250%이하</td><td>300%이하주2)</td><td>-</td></tr>
<tr><td>제2종 일반주거</td><td>아파트단지 (목련A)</td><td>200%이하</td><td>-</td><td>250%이하</td></tr>
<tr><td></td><td>-</td><td>200%이하</td><td>230%이하</td><td></td></tr>
</table>
주1) ( )는 15m이상 도로에 인접한 대지에 한해 적용
주2) 군부대부지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체계를 적용하여 기준/허용 용적률 산정
주3) 구역계 면적 증가에 따라 증가된 부지의 용적률은 기정 용적률 체계를 따름
주4) 베르빌아파트 북측 113번지 일대 15개 필지(준공업지역)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건립 시 210%/230%/ 250% (기준/허용/상한)의 용적률 체계를 따름
(※상한=허용+{(기준x1.3xα토지x가중치)+(기준x0.7xα건축물)})
그 외 공동주택건립시, 250% / - (기준/허용). 단, 지구단위계획 지침내용을 수용하여야 함
주5) 준공업지역내 특별계획구역 중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정비유형을 적용하는 지역은 본 지침에서 마련하는 별도의 용적률 체계 적용</td></tr>
<tr><td>5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가. 용적률 인센티브</td>
<td>○ 상한용적률(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table>
<tr><th>항 목 \ 내 용</th><th></th><th>완화기준</th><th>비고</th></tr>
<tr><td>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한 경우</td><td>조성후 기부채납시</td><td>허용용적률× (1+1.3×가중치 ×α)</td><td>•α = 공공시설 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td></tr>
</table></td>
<td>○ 상한용적률
<table>
<tr><th>항 목 \ 내 용</th><th></th><th>완화기준</th><th>비고</th></tr>
<tr><td>공공시설 등 기부채납한 경우</td><td>조성후 기부채납시</td><td>허용용적률× (1+1.3×가중치 × α토지 + 0.7 × α건축물)</td><td>•α토지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α건축물이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가중치=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td></tr>
</table></td></tr>
</table>

○ 금천구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table>
<tr><th>구분</th><th>기정</th><th>변경</th></tr>
<tr>
<td>3 확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td>
<td>2) 건축물의 용적률 결정조서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table>
<tr><td>공동주택 적용시</td><td>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1.3α×가중치) 이내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 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비율</td></tr>
<tr><td>공동주택 미적용시</td><td>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이내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td></tr>
</table>
※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제7조 제3항 제2호
-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공공시설확보 등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한용적률의 산출방식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td>
<td>2) 건축물의 용적률 결정조서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table>
<tr><td>공동주택 적용시</td><td>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가중치×α토지+기준용적률×0.7×α건축물)이내
※ α토지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건축물이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경우에는 면적 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비율</td></tr>
<tr><td>공동주택 미적용시</td><td>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이내
※ α토지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건축물이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td></tr>
</table>
※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제7조 제3항 제2호
-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가 공공시설등 확보, 전략개발 등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적용기준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td>
</tr>
</table>

○ 영등포구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구역

<table>
<tr><th>구분</th><th>기정</th><th>변경</th></tr>
<tr><td>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2.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결정(변경) 조서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td><td>
2)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
<tr><td>일반상업지역</td><td>영중로변</td><td>600% 이하</td><td>800% 이하</td><td rowspan="4">공공시설 부지 제공 시 허용용적률 ×(1+1.3×가중치×α) 이내</td></tr>
<tr><td rowspan="3">준공업지역</td><td>이면부</td><td>200% 이하</td><td>350% 이하</td></tr>
<tr><td>영등포로, 국회대로, 당산로, 양산로, 영중로 이면부</td><td>300% 이하</td><td>400% 이하</td></tr>
<tr><td>영신로(특별계획구역 해제 지역)</td><td>250% 이하</td><td>400% 이하</td></tr>
</table>
주) 1.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 노인복지시설 ·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 입지 시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 및 제14항 규정 적용
2.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입지 시 허용용적률적용은 상기 적용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별표3)에 의한 용적률 적용
3.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이상의 대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 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은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적용하며, 이면부로 위치가 변경되는 대지는 인접한 이면부용적률 적용
4. 하나의 대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 · 용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
</td><td>
2)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
<tr><td>일반상업지역</td><td>영중로변</td><td>600% 이하</td><td>800% 이하</td><td rowspan="4">공공시설 등 기부채납한 경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이내</td></tr>
<tr><td rowspan="3">준공업지역</td><td>이면부</td><td>200% 이하</td><td>350% 이하</td></tr>
<tr><td>영등포로, 국회대로, 당산로, 양산로, 영중로 이면부</td><td>300% 이하</td><td>400% 이하</td></tr>
<tr><td>영신로(특별계획구역 해제 지역)</td><td>250% 이하</td><td>400% 이하</td></tr>
</table>
주) 1.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 노인복지시설 ·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 입지 시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 및 제14항 규정 적용
2.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입지 시 허용용적률적용은 상기 적용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별표3)에 의한 용적률 적용
3.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이상의 대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 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은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적용하며, 이면부로 위치가 변경되는 대지는 인접한 이면부용적률 적용
4. 하나의 대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 · 용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
</td></tr>
<tr><td>5. 인센티브 운영계획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td><td>
다) 상한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table>
<tr><th>항목</th><th>완화조건</th><th>산정방식</th></tr>
<tr><td>상한용적률</td><td>공공시설 제공 시</td><td>•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 또는 [허용용적률×(1+ 1.3×가중치×α)] 이내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내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단,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8항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td></tr>
</table>
</td><td>
다) 상한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table>
<tr><th>항목</th><th>완화조건</th><th>산정방식</th></tr>
<tr><td>상한용적률</td><td>공공시설 등 기부채납한 경우</td><td>•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또는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이내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α토지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건축물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단,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 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8항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td></tr>
</table>
</td></tr>
</table>

○ 영등포구 문래동5가 1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table>
<tr><th>구분</th><th>기정</th><th>변경</th></tr>
<tr><td>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td><td>○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 관한 결정조서
■ 상한용적률 산정(예시)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기 준</th><th>산 식</th><th>계 획</th></tr>
<tr><td rowspan="7">공동주택부지</td><td colspan="2">기준</td><td>210%</td><td></td><td></td></tr>
<tr><td rowspan="5">허용</td><td rowspan="5">277%</td><td>우수디자인 5%</td><td rowspan="5">277% 이하</td></tr>
<tr><td>지속가능형 건축구조(무량판구조) 7%</td></tr>
<tr><td>친환경 신재생에너지 5%</td></tr>
<tr><td>장기전세주택 건립용적률 25%</td></tr>
<tr><td>장기전세주택으로 인한 완화용적률 25%</td></tr>
<tr><td>상한</td><td>300%</td><td>277+210×1.3×(1,790/13,838.4) = 312.31</td><td>300% 이하</td></tr>
<tr><td rowspan="4">산업부지</td><td colspan="2">기준</td><td>320%</td><td></td><td></td></tr>
<tr><td rowspan="2">허용</td><td rowspan="2">400%</td><td>건축한계선 : 320×(966.62/5,536.62)×3 = 167.60
자연지반보존 : 320×(394.49/5,536.62)×0.2 = 4.56</td><td rowspan="2">400% 이하</td></tr>
<tr><td>상한</td><td>–</td><td>{1+1.3×(1,790/13,838.4)} × 400 = 467.26</td><td>467.26% 이하</td></tr>
</table></td><td>○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 관한 결정조서
■ 상한용적률 산정(예시)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기 준</th><th>산 식</th><th>계 획</th></tr>
<tr><td rowspan="7">공동주택부지</td><td colspan="2">기준</td><td>210%</td><td></td><td></td></tr>
<tr><td rowspan="5">허용</td><td rowspan="5">277%</td><td>우수디자인 5%</td><td rowspan="5">277% 이하</td></tr>
<tr><td>지속가능형 건축구조(무량판구조) 7%</td></tr>
<tr><td>친환경 신재생에너지 5%</td></tr>
<tr><td>장기전세주택 건립용적률 25%</td></tr>
<tr><td>장기전세주택으로 인한 완화용적률 25%</td></tr>
<tr><td>상한</td><td>300%</td><td>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α토지+기준용적률×0.7×α건축물)</td><td>300% 이하</td></tr>
<tr><td rowspan="4">산업부지</td><td colspan="2">기준</td><td>320%</td><td></td><td></td></tr>
<tr><td rowspan="2">허용</td><td rowspan="2">400%</td><td>건축한계선 : 320×(966.62/5,536.62)×3 = 167.60
자연지반보존 : 320×(394.49/5,536.62)×0.2 = 4.56</td><td rowspan="2">400% 이하</td></tr>
<tr><td>상한</td><td>–</td><td>허용용적률× (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td><td></td></tr>
</table></td></tr>
</table>

(3)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기준 변경

① 비주거용도에 대한 기준 신설 - 비주거용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구역(51개소)

(신설)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비율을 용적률의 10%이상으로 하고 지상층에 설치토록 계획함

○ 종로구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50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치구	구역명
종로구	세종로, 대학로, 율곡로, 운현궁 주변, 조계사 주변, 북촌, 숭인2, 인사동, 종로2·3가, 경복궁서측, 이화동일대
중구	회현, 명동관광특구, 주교, 북창, 남대문시장,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장충동 일대
동대문구	경희대앞
중랑구	묵동지구
성북구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도봉구	방학역세권
노원구	상계2택지개발지구, 중계택지

자치구	구역명
은평구	연신내, 수색·DMC역 주변지역, 불광
서대문구	천연, 충정, 홍제, 신촌지구일대
마포구	마포지구, 합정지구, 아현2지구, 경의선 공덕역 복합역사개발
강서구	화곡역지구중심, 까치산역지구중심, 서울발산지구
구로구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금천구	금천구심
영등포구	영등포1,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신길지구중심
동작구	대림지구
관악구	대림 지역중심
강남구	개포택지개발지구, 테헤란로2, 국제교류복합지구, 수서택지개발지구, 926정거장주변
강동구	천호지구

② 비주거용도에 대한 기준 변경 - 비주거용도에 대한 기준이 있는 구역(12개소)

○ 종로구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table>
<tr><th>구분</th><th>기정</th><th>변경</th></tr>
<tr><td>3. 건축물에 관한 결정 조서
2)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계획
나) 용적률 계획</td><td>■ 용적률
<table>
<tr><th rowspan="2">적용지역</th><th colspan="3">용적률</th><th rowspan="2">비고</th></tr>
<tr><th>기준</th><th>허용</th><th>상한</th></tr>
<tr><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d>150% 이하</td><td>150% 이하</td><td>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td><td rowspan="5">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적용</td></tr>
<tr><td>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td><td>200% 이하</td><td>200% 이하</td><td>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td></tr>
<tr><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d>200% 이하</td><td>200% 이하</td><td>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td></tr>
<tr><td>제3종일반주거지역</td><td>250% 이하</td><td>250% 이하</td><td>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td></tr>
<tr><td>준주거지역</td><td>400% 이하</td><td>400% 이하</td><td>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td></tr>
<tr><td>일반상업지역</td><td>600% 이하</td><td>600% 이하</td><td>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td><td>역사도심 기준 적용</td></tr>
</table>
※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84조 적용
※ 상업지역에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여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이상(지상부설치) 계획하여야 함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완료지구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中 완료지구 관리방안에 따름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미시행지구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中재생관리지침 및 구역별 개정비계획에 따름</td><td>■ 용적률
<table>
<tr><th rowspan="2">적용지역</th><th colspan="3">용적률</th><th rowspan="2">비고</th></tr>
<tr><th>기준</th><th>허용</th><th>상한</th></tr>
<tr><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d>150% 이하</td><td>150% 이하</td><td>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td><td rowspan="5">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적용</td></tr>
<tr><td>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td><td>200% 이하</td><td>200% 이하</td><td>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td></tr>
<tr><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d>200% 이하</td><td>200% 이하</td><td>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td></tr>
<tr><td>제3종일반주거지역</td><td>250% 이하</td><td>250% 이하</td><td>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td></tr>
<tr><td>준주거지역</td><td>400% 이하</td><td>400% 이하</td><td>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td></tr>
<tr><td>일반상업지역</td><td>600% 이하</td><td>600% 이하</td><td>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td><td>역사도심 기준 적용</td></tr>
</table>
※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84조 적용
※ 상업지역에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여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이상 (지상부설치) 계획하여야 함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완료지구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中 완료지구 관리방안에 따름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미시행지구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中재생관리지침 및 구역별 개정비계획에 따름</td></tr>
</table>

○ 용산구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table>
<tr><th>구분</th><th>기정</th><th>변경</th></tr>
<tr><td>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변경)조서
나. 건축물의 밀도계획
2) 용적률 계획</td><td>
▌용적률(기준/허용) 계획
<table>
<tr><th>구분</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h>비고</th></tr>
<tr><td>제1종일반 주거지역</td><td>130%이하</td><td>150%이하</td><td rowspan="8">•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준용</td><td>용도지역 변경 없음</td></tr>
<tr><td>제2종일반 주거지역</td><td>180%이하</td><td>200%이하</td><td>용도지역 변경 없음</td></tr>
<tr><td>제3종일반 주거지역</td><td>220%이하</td><td>250%이하</td><td>용도지역 변경 없음</td></tr>
<tr><td rowspan="2">준주거지역</td><td>300%이하</td><td>360%이하</td><td>용도지역 변경 없음</td></tr>
<tr><td>300%이하</td><td>400%이하</td><td>종전 준주거지역 (90년 이전)</td></tr>
<tr><td rowspan="2">일반 상업지역</td><td>300%이하</td><td>630%이하</td><td>용도지역 변경 없음</td></tr>
<tr><td>400%이하</td><td>660%이하</td><td>종전 준주거지역 (90년 이전)</td></tr>
</table>
주) 1. 주거(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대 비주거의 용적률 계획 및 건축물 용도비율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1.01) “4-4. 용적률 적용기준” 준용
2.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 중 용도지역 변경이 없던 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주거용적률은 47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일반상업지역 중 종전 준주거지역이었던 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주거용적률은49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td><td>
▌용적률(기준/허용) 계획
<table>
<tr><th>구분</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h>비고</th></tr>
<tr><td>제1종일반 주거지역</td><td>130%이하</td><td>150%이하</td><td rowspan="8">•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준용</td><td>용도지역 변경 없음</td></tr>
<tr><td>제2종일반 주거지역</td><td>180%이하</td><td>200%이하</td><td>용도지역 변경 없음</td></tr>
<tr><td>제3종일반 주거지역</td><td>220%이하</td><td>250%이하</td><td>용도지역 변경 없음</td></tr>
<tr><td rowspan="2">준주거지역</td><td>300%이하</td><td>360%이하</td><td>용도지역 변경 없음</td></tr>
<tr><td>300%이하</td><td>400%이하</td><td>종전 준주거지역 (90년 이전)</td></tr>
<tr><td rowspan="2">일반 상업지역</td><td>300%이하</td><td>630%이하</td><td>용도지역 변경 없음</td></tr>
<tr><td>400%이하</td><td>660%이하</td><td>종전 준주거지역 (90년 이전)</td></tr>
</table>
주) 1. 주거(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대 비주거(생활숙박시설 제외)의 용적률 계획 및 건축물 용도비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생활숙박시설 관리방안 수립」(2020.11.9.)에 따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관리운영기준 “3-4. 용적률 계획” 준용
2.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 중 용도지역 변경이 없던 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주거용적률은 47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일반상업지역 중 종전 준주거지역이었던 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주거용적률은49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td></tr>
</table>

○ 성동구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기정	변경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나.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2) 용적률 결정 조서 (변경)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적용 기준 (특별계획구역 포함)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계획 주1) 기존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이 상향된 지역 모두 적용한다. 단, 준주거지역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자치구포함)에서 인정한 경우 제외한다. 주2)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한다.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비율 적용 기준 (특별계획구역 포함)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계획 주1) 기존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이 상향된 지역 모두 적용한다. 단, 준주거지역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자치구포함)에서 인정한 경우 제외한다. 주2)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한다.

○ 도봉구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table>
<tr><th>구분</th><th>기정</th><th>변경</th></tr>
<tr><td>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 (변경)</td><td>
2) 건축물의 용적률
<table>
<tr><th colspan="2" rowspan="2">적용지역</th><th colspan="3">용적률(%)</th><th rowspan="2">비고</th></tr>
<tr><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
<tr><td rowspan="2">일반상업지역</td><td>도봉로변</td><td>300이하</td><td>630이하</td><td rowspan="7">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td><td></td></tr>
<tr><td>이면도로변</td><td>250이하</td><td>500이하</td><td></td></tr>
<tr><td rowspan="5">준주거지역</td><td rowspan="2">도봉로변</td><td>300이하</td><td>360이하</td><td rowspan="2"></td></tr>
<tr><td>250이하</td><td>350이하</td></tr>
<tr><td>노해로변</td><td>300이하</td><td>360이하</td><td></td></tr>
<tr><td rowspan="2">이면도로변</td><td>250이하</td><td>360이하</td><td rowspan="2"></td></tr>
<tr><td>250이하</td><td>350이하</td></tr>
<tr><td colspan="2">준공업지역</td><td>300이하</td><td>400이하</td><td></td><td></td></tr>
</table>
주) 1. 용도지역이 상향된(1991.5.11.이후)지역에 용도제한 적용기준 적용
2.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및 준주택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이상 계획(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4-4-4)하여 저층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 입지시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4항 규정 적용
4.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 중 도봉로변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7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일반상업지역 중 이면도로변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50% 이하(허용용적률의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5. 동일한 용도지역내에서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대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은 대지 가중평균값 적용
6. 하나의 대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 · 용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
7. 관광숙박시설 입지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서울시 2012.10.)을 적용
</td><td>
2) 건축물의 용적률
<table>
<tr><th colspan="2" rowspan="2">적용지역</th><th colspan="3">용적률(%)</th><th rowspan="2">비고</th></tr>
<tr><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
<tr><td rowspan="2">일반상업지역</td><td>도봉로변</td><td>300이하</td><td>630이하</td><td rowspan="7">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td><td></td></tr>
<tr><td>이면도로변</td><td>250이하</td><td>500이하</td><td></td></tr>
<tr><td rowspan="5">준주거지역</td><td rowspan="2">도봉로변</td><td>300이하</td><td>360이하</td><td rowspan="2"></td></tr>
<tr><td>250이하</td><td>350이하</td></tr>
<tr><td>노해로변</td><td>300이하</td><td>360이하</td><td></td></tr>
<tr><td rowspan="2">이면도로변</td><td>250이하</td><td>360이하</td><td rowspan="2"></td></tr>
<tr><td>250이하</td><td>350이하</td></tr>
<tr><td colspan="2">준공업지역</td><td>300이하</td><td>400이하</td><td></td><td></td></tr>
</table>
주) 1. 용도지역이 상향된(1991.5.11.이후)지역에 용도제한 적용기준 적용
2.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및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이상 계획(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3-4-2(3)) 하여 저층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 입지시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4항 규정 적용
4.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 중 도봉로변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7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일반상업지역 중 이면도로변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50% 이하(허용용적률의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5. 동일한 용도지역내에서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대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은 대지 가중평균값 적용
6. 하나의 대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 · 용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
7. 관광숙박시설 입지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서울시 2012.10.)을 적용
</td></tr>
</table>

○ 강서구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table>
<tr><th>구분</th><th>기정</th><th>변경</th></tr>
<tr><td>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2.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 결정(변경)조서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 조서)</td><td>2)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2">기준용적률(%)</th><th colspan="2">허용용적률(%)</th><th rowspan="2">비고</th></tr>
<tr><th>기정</th><th>변경</th><th>기정</th><th>변경</th></tr>
<tr><td rowspan="3">근린상업지역</td><td>공항대로변</td><td>550%이하</td><td>500%이하</td><td>700%이하</td><td>600%이하</td><td></td></tr>
<tr><td>개화동로변</td><td>550%이하</td><td>300%이하</td><td>700%이하</td><td>500%이하</td><td></td></tr>
<tr><td>내부필지</td><td>400%이하</td><td>500%이하
(300%이하)</td><td>500%이하</td><td>600%이하
(500%이하)</td><td>( )는 도시계획 조례제정 이전 변경지역임</td></tr>
<tr><td rowspan="2">준주거지역</td><td>개화동로변</td><td>400%이하</td><td>300%이하</td><td>500%이하</td><td>360%이하</td><td></td></tr>
<tr><td>내부필지</td><td>300%이하</td><td>300%이하</td><td>360%이하</td><td>360%이하</td><td></td></tr>
<tr><td rowspan="2">주거지역</td><td>제3종일반주거</td><td rowspan="2">300%이하</td><td>250%이하</td><td rowspan="2">360%이하</td><td>250%이하</td><td></td></tr>
<tr><td>제2종일반주거</td><td>200%이하</td><td>200%이하</td><td></td></tr>
<tr><td colspan="2">자연녹지지역</td><td>-</td><td>50%이하</td><td>-</td><td>50%이하</td><td></td></tr>
</table>
주1)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1991.05.11.이후)된 지역에서 주거 및 주거복합건물을 건축 할 경우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이하로 적용함
주2) 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 전체연면적의 20% 이상
주3) 근린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 용적률의 10%이상(지상부 설치)
주4)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대지 합병, 공동개발 및 용도지역 상향 등에 의해 대지에 서로 다른 기준/허용용적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 및 허용용적률의 면적대비 가중평균값을 적용함
주5) 하나의 대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 · 용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
주6)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적률 등 완화하는 사항, 준주거지역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별표3]’ 및 ‘서울시고시 제2019-312, 313호(2019.09.19.) 사항을 적용함
주7) 특별계획구역 및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공항동 50-1번지 일원)은 별도 계획지침에 따름</td><td>2)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2">기준용적률(%)</th><th colspan="2">허용용적률(%)</th><th rowspan="2">비고</th></tr>
<tr><th>기정</th><th>변경</th><th>기정</th><th>변경</th></tr>
<tr><td rowspan="3">근린상업지역</td><td>공항대로변</td><td>550%이하</td><td>500%이하</td><td>700%이하</td><td>600%이하</td><td></td></tr>
<tr><td>개화동로변</td><td>550%이하</td><td>300%이하</td><td>700%이하</td><td>500%이하</td><td></td></tr>
<tr><td>내부필지</td><td>400%이하</td><td>500%이하
(300%이하)</td><td>500%이하</td><td>600%이하
(500%이하)</td><td>( )는 도시계획 조례제정 이전 변경지역임</td></tr>
<tr><td rowspan="2">준주거지역</td><td>개화동로변</td><td>400%이하</td><td>300%이하</td><td>500%이하</td><td>360%이하</td><td></td></tr>
<tr><td>내부필지</td><td>300%이하</td><td>300%이하</td><td>360%이하</td><td>360%이하</td><td></td></tr>
<tr><td rowspan="2">주거지역</td><td>제3종일반주거</td><td rowspan="2">300%이하</td><td>250%이하</td><td rowspan="2">360%이하</td><td>250%이하</td><td></td></tr>
<tr><td>제2종일반주거</td><td>200%이하</td><td>200%이하</td><td></td></tr>
<tr><td colspan="2">자연녹지지역</td><td>-</td><td>50%이하</td><td>-</td><td>50%이하</td><td></td></tr>
</table>
주1)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1991.05.11.이후)된 지역에서 주거 및 주거복합건물을 건축 할 경우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이하로 적용함
주2) 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비율 : 전체연면적의 20%이상
주3) 근린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비율 : 용적률의 10%이상(지상부 설치)
주4)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대지 합병, 공동개발 및 용도지역 상향 등에 의해 대지에 서로 다른 기준/허용용적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 및 허용용적률의 면적대비 가중평균값을 적용함
주5) 하나의 대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 · 용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
주6)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적률 등 완화하는 사항, 준주거지역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별표3]’ 및 ‘서울시고시 제2019-312, 313호(2019.09.19.) 사항을 적용함
주7) 특별계획구역 및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공항동 50-1번지 일원)은 별도 계획지침에 따름</td></tr>
</table>

○ 금천구 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table>
<tr><th>구분</th><th>기정</th><th>변경</th></tr>
<tr><td>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용도계획</td><td>(나)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기준
<table>
<tr><th>구분</th><th>적용기준</th><th>비고</th></tr>
<tr><td>비주거용도 비율</td><td>•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이상
- 다만, 입지특성과 공공기여(기부채납 10%이상 등)를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자치구 포함)를 통해 허용용적률의 10%이상 계획 가능
-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 전면도로가 6m이하인 이면부는 적용 제외 가능 (준주거지역)</td><td></td></tr>
</table>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4.03.14.)</td><td>(나)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기준
<table>
<tr><th>구분</th><th>적용기준</th><th>비고</th></tr>
<tr><td>비주거용도 비율</td><td>•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이상
- 다만, 입지특성과 공공기여(기부채납 10%이상 등)를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자치구 포함)를 통해 허용용적률의 10%이상 계획 가능
-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 전면도로가 6m이하인 이면부는 적용 제외 가능(준주거지역)</td><td></td></tr>
</table>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관리운영기준 (2020.05.26.)</td></tr>
</table>

○ 영등포구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table>
<tr><th>구분</th><th>기정</th><th>변경</th></tr>
<tr><td>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라.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2) 용적률 결정(변경) 조서</td><td>■ 용적률 계획(변경)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용적률(%)</th><th rowspan="2">비고</th></tr>
<tr><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
<tr><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d>200% 이하</td><td>200% 이하</td><td rowspan="3">조례용적률 2배 이하</td><td rowspan="3">※ 기 개발지에 한하여 기정 용적률계획 유지</td></tr>
<tr><td>준주거지역</td><td>300% 이하</td><td>360% 이하</td></tr>
<tr><td>일반상업지역</td><td>300% 이하</td><td>630% 이하</td></tr>
</table>
주) 1.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1-4-4(4)에 따라 지상부 용적률 10% 이상으로 함
2.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 용도비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별표 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2호」(2019.09.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3호」(2019.09.19)를 준수하여 용도비율 및 용적률을 적용
3. 하나의 대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 · 용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
4. 장기전세주택 및 관광숙박시설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따름
5. 상한용적률은 공공기여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0항 및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2019.01.16.)」 적용</td><td>■ 용적률 계획(변경)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용적률(%)</th><th rowspan="2">비고</th></tr>
<tr><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
<tr><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d>200% 이하</td><td>200% 이하</td><td rowspan="3">조례용적률 2배 이하</td><td rowspan="3">※ 기 개발지에 한하여 기정 용적률계획 유지</td></tr>
<tr><td>준주거지역</td><td>300% 이하</td><td>360% 이하</td></tr>
<tr><td>일반상업지역</td><td>300% 이하</td><td>630% 이하</td></tr>
</table>
주) 1.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비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생활숙박시설 관리방안 수립」(2020.11.9.)에 따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관리운영기준 3-4-2(3)에 따라 지상부 용적률 10% 이상으로 함
2.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 용도비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별표 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2호」(2019.09.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3호」(2019.09.19)를 준수하여 용도비율 및 용적률을 적용
3. 하나의 대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 · 용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
4. 장기전세주택 및 관광숙박시설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따름
5. 상한용적률은 공공기여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0항 및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2019.01.16)」 적용</td></tr>
</table>

○ 영등포구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table>
<tr><th>구분</th><th>기정</th><th>변경</th></tr>
<tr><td>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다.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 조서
2) 용적률 결정(변경) 조서</td><td>· 용적율 계획(변경)
<table>
<tr><th>구분</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h>비고</th></tr>
<tr><td>일반(노선)상업지역</td><td>600%이하</td><td>800%이하</td><td rowspan="5">조례 용적률의 2배 이하</td><td>-</td></tr>
<tr><td>간선부(준주거지역)</td><td>300%이하</td><td>360%이하</td><td>•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td></tr>
<tr><td>간선부(준주거지역)</td><td>300%이하</td><td>400%이하</td><td>•준공업지역→준주거지역</td></tr>
<tr><td>이면부(준주거지역)</td><td>250%이하</td><td>350%이하</td><td>-</td></tr>
<tr><td>이면부(준공업지역)</td><td>250%이하</td><td>400%이하</td><td>•비주거시설 적용</td></tr>
</table>
※ 1.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오피스텔(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 등 주거시설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5조 및 제55조 제4항의 규정 적용
2. 준공업지역 내 산업재생형 및 주거재생형 적용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의2 및 「2030 준공업지역종합발전계획」에 따름
3.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1-4-4(4)에 따라 지상부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함
4.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노선상업지역에 일부 걸치는 건축물 포함)
5.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이상의 대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 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은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적용하며, 이면부로 위치가 변경되는 대지는 인접한 이면부용적률 적용
6. 하나의 대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
7. 장기전세주택 및 관광숙박시설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따름</td><td>· 용적율 계획(변경)
<table>
<tr><th>구분</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h>비고</th></tr>
<tr><td>일반(노선)상업지역</td><td>600%이하</td><td>800%이하</td><td rowspan="5">조례 용적률의 2배 이하</td><td>-</td></tr>
<tr><td>간선부(준주거지역)</td><td>300%이하</td><td>360%이하</td><td>•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td></tr>
<tr><td>간선부(준주거지역)</td><td>300%이하</td><td>400%이하</td><td>•준공업지역→준주거지역</td></tr>
<tr><td>이면부(준주거지역)</td><td>250%이하</td><td>350%이하</td><td>-</td></tr>
<tr><td>이면부(준공업지역)</td><td>250%이하</td><td>400%이하</td><td>•비주거시설 적용</td></tr>
</table>
※ 1.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오피스텔(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 등 주거시설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5조 및 제55조 제4항의 규정 적용
2. 준공업지역 내 산업재생형 및 주거재생형 적용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의2 및 「2030 준공업지역종합발전계획」에 따름
3.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비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생활숙박시설 관리방안 수립」(2020.11.9.)에 따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3-4-2(3)에 따라 지상부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함
4.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노선상업지역에 일부 걸치는 건축물 포함)
5.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이상의 대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 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은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적용하며, 이면부로 위치가 변경되는 대지는 인접한 이면부용적률 적용
6. 하나의 대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
7. 장기전세주택 및 관광숙박시설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따름</td></tr>
</table>

○ 관악구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table>
<tr><th>구분</th><th>기정</th><th>변경</th></tr>
<tr><td>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2)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td><td>
1)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불허용도</th><th>비고</th></tr>
<tr><td rowspan="5">변경</td><td>U1
(일반상업지역
간선가로변)</td><td>• 미관지구 불허용도
• 숙박시설 (관광호텔제외)
• 기숙사, 종교집회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제외)</td><td></td></tr>
<tr><td>U2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및 내부)</td><td>•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장례식장</td><td></td></tr>
<tr><td>U3
(주거지역
간선가로변)</td><td>• 미관지구 불허용도
• 기숙사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td><td></td></tr>
<tr><td>U4
(주거지역
이면부 및
내부1)</td><td>•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장례식장
• 주택(1층) (신원시장 연접필지에 한함)
• 청소년보호법 제2조5호 가목 7)내지9)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td><td></td></tr>
<tr><td>U5
(주거지역
이면부 및
내부2)</td><td>•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장례식장
•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도료류판매소
• 자동차관련시설 중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 주택(1층) (문화의 거리변에 한함)
• 청소년보호법 제2조5호 가목7)내지 9)의 청소년 입·고용금지업소</td><td></td></tr>
</table>
주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참조
주2) 미관지구 불허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주3)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적용 (가구번호 47, 48, 49에 해당하는 필지 미적용)
– 다만 입지특성과 공공기여(기부채납 10%이상 등)를 감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용적률의 10% 이상 계획 가능
– 용적률 10% 이상의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 남부순환로, 신림로변에 접한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 건축 시 1~2층은(간선도로에 접한 동에 한함)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로 설치할 것
주4) 문화의 거리변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호선에 접한 단위대지
주5) 신원시장 연접필지 : 가구 47, 48, 49호에 해당하는 단위대지
※ 전 구역을 대상으로 건축물 지하층의 주거용도 불허
※ 가구번호 47,48,49에 해당하는 필지(신원시장 일대)의 건축물 용도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U4)를 제외한 용도에 한하여 가능
</td><td>
1)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불허용도</th><th>비고</th></tr>
<tr><td rowspan="5">변경</td><td>U1
(일반상업지역
간선가로변)</td><td>• 미관지구 불허용도
• 숙박시설 (관광호텔제외)
• 기숙사, 종교집회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제외)</td><td></td></tr>
<tr><td>U2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및 내부)</td><td>•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장례식장</td><td></td></tr>
<tr><td>U3
(주거지역
간선가로변)</td><td>• 미관지구 불허용도
• 기숙사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td><td></td></tr>
<tr><td>U4
(주거지역
이면부 및
내부1)</td><td>•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장례식장
• 주택(1층) (신원시장 연접필지에 한함)
• 청소년보호법 제2조5호 가목 7)내지9)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td><td></td></tr>
<tr><td>U5
(주거지역
이면부 및
내부2)</td><td>•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장례식장
•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도료류판매소
• 자동차관련시설 중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 주택(1층) (문화의 거리변에 한함)
• 청소년보호법 제2조5호 가목7)내지 9)의 청소년 입·고용금지업소</td><td></td></tr>
</table>
주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참조
주2) 미관지구 불허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주3)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적용 (가구번호 47, 48, 49에 해당하는 필지 미적용)
– 다만 입지특성과 공공기여(기부채납 10%이상 등)를 감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용적률의 10% 이상 계획 가능
– 용적률 10% 이상의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 남부순환로, 신림로변에 접한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 건축 시 1~2층은(간선도로에 접한 동에 한함)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로 설치할 것
주4) 문화의 거리변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호선에 접한 단위대지
주5) 신원시장 연접필지 : 가구 47, 48, 49호에 해당하는 단위대지
※ 전 구역을 대상으로 건축물 지하층의 주거용도 불허
※ 가구번호 47,48,49에 해당하는 필지(신원시장 일대)의 건축물 용도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U4)를 제외한 용도에 한하여 가능
</td></tr>
</table>

○ 관악구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기정	변경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 계획	○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20m이상 도로에 접한 필지에 한함)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계획 – 용적률 10% 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 – 다만, 입지특성과 공공기여(기부채납 10% 이상 등)를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자치구 포함)를 통해 허용용적률의 10%이상 계획가능	○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20m이상 도로에 접한 필지에 한함)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계획 – 용적률 10% 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 – 다만, 입지특성과 공공기여(기부채납 10% 이상 등)를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자치구 포함)를 통해 허용용적률의 10%이상 계획가능

○ 관악구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2)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기정

2) 용적률 결정(변경)

구분	용도지역	분 류		용적률 기준 용적률	용적률 허용 용적률	용적률 상한 용적률	비고
기정	일반상업	남부순환도로		300% 이하	600% 이하	–	–
		난곡로	20M 도로변	300% 이하	600% 이하	–	–
			15M 도로변	300% 이하	550% 이하	–	–
		이면부	8M 도로변	300% 이하	500% 이하	–	–
			6M 도로변	300% 이하	450% 이하	–	–
변경	일반상업	간 선 부		300% 이하	630% 이하 (740% 이하)	800% 이하 (960% 이하)	–
		이 면 부		300% 이하	500% 이하 (580% 이하)		전후면 통합개발 적용시 간선부 지침 적용
	제3종일반주거지역	남부순환도로		230% 이하	250% 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주1) 공동개발 해제시 이면부 필지는 변경된 필지 접도조건에 따른 기준/허용용적률 적용
주2)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권장용도 중 관광숙박시설 도입시 ( )의 허용·상한용적률 적용
주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른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건축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용적률 완화 적용
주4)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의 경우,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제한 기준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연면적의 70%이하 적용
주5)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계획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변경

2) 용적률 결정(변경)

구분	용도지역	분 류		용적률 기준 용적률	용적률 허용 용적률	용적률 상한 용적률	비고
기정	일반상업	남부순환도로		300% 이하	600% 이하	–	–
		난곡로	20M 도로변	300% 이하	600% 이하	–	–
			15M 도로변	300% 이하	550% 이하	–	–
		이면부	8M 도로변	300% 이하	500% 이하	–	–
			6M 도로변	300% 이하	450% 이하	–	–
변경	일반상업	간 선 부		300% 이하	630% 이하 (740% 이하)	800% 이하 (960% 이하)	–
		이 면 부		300% 이하	500% 이하 (580% 이하)		전후면 통합개발 적용시 간선부 지침 적용
	제3종일반주거지역	남부순환도로		230% 이하	250% 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주1) 공동개발 해제시 이면부 필지는 변경된 필지 접도조건에 따른 기준/허용용적률 적용
주2)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권장용도 중 관광숙박시설 도입시 ( )의 허용·상한용적률 적용
주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른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건축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용적률 완화 적용
주4)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의 경우,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제한 기준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연면적의 70%이하 적용
주5)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계획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 서초구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table>
<tr><th>구분</th><th>기정</th><th>변경</th></tr>
<tr><td>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td><td>■ 건축물 비주거용도 비율 제한
<table>
<tr><th>구분</th><th>가구</th><th>용도지역</th><th>비주거용도 비율</th><th>비고</th></tr>
<tr><td rowspan="2">신설</td><td>GC 29~38</td><td>기정 일반상업지역</td><td>- 계획용적률의 10%이상(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적용</td><td>-</td></tr>
<tr><td>GC 1~28</td><td>상향지역('99)</td><td>- 계획용적률의 10%이상(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적용
-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을 전체연면적의 70%이하로 적용</td><td>-</td></tr>
</table>
주1) 단, 입지특성과 공공기여(기부채납 10%이상 등)을 감안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주거용도를 허용용적률의 10%이상 적용 가능
주2)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함</td><td>■ 건축물 비주거용도 비율 제한
<table>
<tr><th>구분</th><th>가구</th><th>용도지역</th><th>비주거용도 비율</th><th>비고</th></tr>
<tr><td rowspan="2">신설</td><td>GC 29~38</td><td>기정 일반상업지역</td><td>- 계획용적률의 10%이상(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적용</td><td>-</td></tr>
<tr><td>GC 1~28</td><td>상향지역('99)</td><td>- 계획용적률의 10%이상(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적용
-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을 전체연면적의 70%이하로 적용</td><td>-</td></tr>
</table>
주1) 단, 입지특성과 공공기여(기부채납 10%이상 등)을 감안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주거용도를 허용용적률의 10%이상 적용 가능
주2)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함</td></tr>
</table>

Ⅲ. 관계도면 : 변경없음(붙임 참조)

Ⅳ.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시청 도시관리과(☎ 2133-8385) 및 자치구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과 등) 관련부서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붙임] 관계도면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연번	자치구	구역명	비고
1	종로구	세종로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2	종로구	대학로	비주거용도 변경
3	종로구	율곡로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4	종로구	종로4·5가	상한용적률 변경
5	종로구	운현궁 주변	비주거용도 변경
6	종로구	조계사 주변	비주거용도 변경
7	종로구	북촌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8	종로구	숭인2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9	종로구	숭인	상한용적률 변경
10	종로구	인사동	비주거용도 변경
11	종로구	종로2·3가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12	종로구	성균관대 주변	상한용적률 변경
13	종로구	경복궁서측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14	종로구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상한용적률 변경
15	종로구	혜화명륜동	상한용적률 변경
16	종로구	사직1	상한용적률 변경
17	종로구	이화동일대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18	종로구	정동일대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19	중구	퇴계로변	상한용적률 변경
20	중구	약수	상한용적률 변경
21	중구	회현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22	중구	명동관광특구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23	중구	주교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24	중구	북창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25	중구	서울시청사부지	상한용적률 변경
26	중구	남대문시장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27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28	중구	장충동 일대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29	용산구	숙명여대주변	상한용적률 변경
30	용산구	용산	상한용적률 변경
31	용산구	한남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32	용산구	이태원로 주변	상한용적률 변경
33	용산구	서계동 일대	상한용적률 변경
34	용산구	유엔사부지	상한용적률 변경
35	성동구	금호 지구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36	성동구	왕십리 광역중심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37	성동구	뚝섬	상한용적률 변경
38	성동구	뚝섬주변지역	상한용적률 변경
39	성동구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상한용적률 변경

연번	자치구	구역명	비고
40	성동구	청계천로변구역	상한용적률 변경
41	성동구	행당 도시개발구역	상한용적률 변경
42	광진구	건대입구역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43	광진구	군자역지구 (구 중곡)	상한용적률 변경
44	광진구	화양1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45	광진구	화양2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46	광진구	자양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47	광진구	아차산역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48	광진구	중곡역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49	광진구	구의사거리	상한용적률 변경
50	광진구	광나루역	상한용적률 변경
51	광진구	구의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52	광진구	구의 · 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9존치관리	상한용적률 변경
53	광진구	구의 · 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1존치정비	상한용적률 변경
54	동대문구	경희대앞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55	동대문구	배봉생활권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56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주변지역	상한용적률 변경
57	동대문구	신설	상한용적률 변경
58	동대문구	신이문생활권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59	동대문구	이문동 22-2번지 일대	상한용적률 변경
60	동대문구	이문생활권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61	동대문구	전농지구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62	동대문구	회기구역	상한용적률 변경
63	동대문구	휘경동주거환경관리사업	상한용적률 변경
64	동대문구	장안평일대	상한용적률 변경
65	중랑구	망우동 83번지 일대(소규모 단절토지)	상한용적률 변경
66	중랑구	망우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67	중랑구	면목생활권	상한용적률 변경
68	중랑구	면목지구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69	중랑구	묵동지구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70	중랑구	상봉생활권	상한용적률 변경
71	중랑구	신내동 385번지 일대(소규모 단절토지)	상한용적률 변경
72	중랑구	안새우개 · 새우개	상한용적률 변경
73	중랑구	중화생활권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74	중랑구	중화 존치관리구역	상한용적률 변경
75	성북구	길음	상한용적률 변경
76	성북구	동덕여대 주변지역	상한용적률 변경
77	성북구	동선지구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78	성북구	동소문동2가	상한용적률 변경
79	성북구	미아지구상세계획구역	상한용적률 변경
80	성북구	보문생활권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연번	자치구	구역명	비고
81	성북구	석관지구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82	성북구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83	성북구	성신여대 주변지역	상한용적률 변경
84	성북구	월곡생활권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85	성북구	장수마을	상한용적률 변경
86	성북구	장월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87	성북구	정릉3동	상한용적률 변경
88	성북구	정릉생활권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89	성북구	정릉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상한용적률 변경
90	성북구	서울 정릉공공주택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91	강북구	4.19사거리	상한용적률 변경
92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주변	상한용적률 변경
93	강북구	미아역 일대	상한용적률 변경
94	강북구	삼양사거리	상한용적률 변경
95	강북구	서울휴먼타운(능안골)	상한용적률 변경
96	강북구	수유 · 번동	상한용적률 변경
97	도봉구	도봉생활권	상한용적률 변경
98	도봉구	도봉역세권	상한용적률 변경
99	도봉구	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	상한용적률 변경
100	도봉구	방아골	상한용적률 변경
101	도봉구	방학역세권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102	도봉구	새동네 · 안골	상한용적률 변경
103	도봉구	쌍문생활권	상한용적률 변경
104	도봉구	쌍문지구중심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105	도봉구	창동2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106	도봉구	서울창동	상한용적률 변경
107	노원구	공릉	상한용적률 변경
108	노원구	공릉1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109	노원구	공릉2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110	노원구	공릉공공주택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111	노원구	광운대주변	상한용적률 변경
112	노원구	노원구역	상한용적률 변경
113	노원구	상계1 · 2단계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114	노원구	상계2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115	노원구	상계3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116	노원구	상계역주변	상한용적률 변경
117	노원구	상계 · 장암 도시개발구역	상한용적률 변경
118	노원구	수락구역	상한용적률 변경
119	노원구	월계1지구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120	노원구	월계3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121	노원구	월계4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연번	자치구	구역명	비고
122	노원구	월계5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123	노원구	월계6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124	노원구	월계생활권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125	노원구	중계택지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126	노원구	중계본동	상한용적률 변경
127	노원구	상계4동	상한용적률 변경
128	노원구	상계동 공공주택사업	상한용적률 변경
129	노원구	중계2택지	상한용적률 변경
130	은평구	응암역생활권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131	은평구	구청생활권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132	은평구	응암지구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133	은평구	구산생활권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134	은평구	신사생활권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135	은평구	연신내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136	은평구	수색 · DMC역 주변지역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137	은평구	독바위	상한용적률 변경
138	은평구	불광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139	은평구	역촌역세권	상한용적률 변경
140	은평구	연서로	상한용적률 변경
141	은평구	응암로	상한용적률 변경
142	은평구	수색1존치관리구역	상한용적률 변경
143	은평구	증산 공공주택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144	서대문구	서대문구청주변	상한용적률 변경
145	서대문구	개미마을	상한용적률 변경
146	서대문구	천연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147	서대문구	충정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148	서대문구	서울 휴먼타운(북가좌동)	상한용적률 변경
149	서대문구	가재울	상한용적률 변경
150	서대문구	아현	상한용적률 변경
151	서대문구	북아현	상한용적률 변경
152	서대문구	홍제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153	서대문구	신촌지구일대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154	서대문구	충현	상한용적률 변경
155	마포구	마포지구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156	마포구	공덕지역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157	마포구	성산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158	마포구	대흥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159	마포구	상수역세권 주변	상한용적률 변경
160	마포구	마포구 청사 이전부지	상한용적률 변경
161	마포구	상암 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162	마포구	상암2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163	마포구	서울 휴먼타운(연남동)	상한용적률 변경

연번	자치구	구역명	비고
164	마포구	합정지구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165	마포구	아현1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166	마포구	아현2지구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167	마포구	경의선 공덕역 복합역사개발	비주거용도 변경
168	마포구	마포 디자인 · 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169	마포구	공덕동 행복주택	상한용적률 변경
170	마포구	경의선 서강대역 복합역사개발	상한용적률 변경
171	양천구	목동중심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172	양천구	신월 생활권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173	양천구	신정 생활권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174	양천구	김포가도(양천)	상한용적률 변경
175	양천구	목동오거리	상한용적률 변경
176	양천구	신정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177	양천구	신정2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178	양천구	신투리 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179	양천구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상한용적률 변경
180	양천구	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상한용적률 변경
181	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상한용적률 변경
182	양천구	서울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183	양천구	신정 도시개발	상한용적률 변경
184	강서구	공항로	상한용적률 변경
185	강서구	우장산역생활권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186	강서구	목동사거리생활권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187	강서구	화곡역지구중심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188	강서구	까치산역지구중심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189	강서구	공항지구중심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190	강서구	가양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191	강서구	방화1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192	강서구	방화2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193	강서구	등촌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194	강서구	화곡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195	강서구	서울발산지구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196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상한용적률 변경
197	강서구	공항동 군부대 이적지	상한용적률 변경
198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사업	상한용적률 변경
199	구로구	개봉역	상한용적률 변경
200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상한용적률 변경
201	구로구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202	구로구	온수역 일대	상한용적률 변경
203	구로구	온수동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상한용적률 변경
204	구로구	구로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상한용적률 변경
205	구로구	구로구 개봉3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상한용적률 변경

연번	자치구	구역명	비고
206	구로구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상한용적률 변경
207	구로구	구로동 CJ공장부지	상한용적률 변경
208	구로구	취락지구(연지마을)	상한용적률 변경
209	구로구	서울천왕2(국민임대주택)	상한용적률 변경
210	구로구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211	구로구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212	구로구	천왕도시개발구역	상한용적률 변경
213	구로구	서울개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214	금천구	시흥 생활권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215	금천구	금천구심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216	금천구	문성 생활권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217	금천구	정심 생활권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218	금천구	독산	상한용적률 변경
219	금천구	가산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220	금천구	시흥 박미사랑마을	상한용적률 변경
221	금천구	시흥박미사랑마을(Ⅱ단계)	상한용적률 변경
222	금천구	석수역세권	상한용적률 변경
223	금천구	시흥생활권	상한용적률 변경
224	영등포구	영등포1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225	영등포구	신길동	상한용적률 변경
226	영등포구	대림광역중심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227	영등포구	대림2생활권	상한용적률 변경
228	영등포구	방림부지	상한용적률 변경
229	영등포구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230	영등포구	당산지구중심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231	영등포구	영등포구 문래동5가 10번지 일대	상한용적률 변경
232	영등포구	당산동4가 80번지일대	상한용적률 변경
233	영등포구	강남성심병원	상한용적률 변경
234	영등포구	신길지구중심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235	영등포구	신풍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236	영등포구	신길1생활권	상한용적률 변경
237	영등포구	신길6생활권	상한용적률 변경
238	영등포구	서울문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239	영등포구	선유도역 주변	상한용적률 변경
240	동작구	상도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241	동작구	대림지구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242	동작구	사당이수	상한용적률 변경
243	동작구	신대방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244	동작구	노량진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245	동작구	원불교부지	상한용적률 변경
246	관악구	대림 지역중심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247	관악구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연번	자치구	구역명	비고
248	관악구	난곡생활권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249	관악구	은천생활권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250	관악구	낙성대생활권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251	관악구	신림지구중심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252	관악구	봉천지역중심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253	관악구	서울대주변	상한용적률 변경
254	관악구	봉천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255	관악구	신림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256	관악구	낙성대주변	상한용적률 변경
257	관악구	남부순환로(시흥IC)주변	상한용적률 변경
258	관악구	미림생활권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259	서초구	서초로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260	서초구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상한용적률 변경
261	서초구	양재택지	상한용적률 변경
262	서초구	양재지구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263	서초구	잠원동 66-2 일대	상한용적률 변경
264	강남구	개포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265	강남구	논현	상한용적률 변경
266	강남구	청담	상한용적률 변경
267	강남구	대치	상한용적률 변경
268	강남구	테헤란로2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269	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270	강남구	양재 지구중심	상한용적률 변경
271	강남구	대치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272	강남구	수서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273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상한용적률 변경
274	강남구	926정거장주변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275	강남구	아랫반고개마을	상한용적률 변경
276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상한용적률 변경
277	강남구	역삼	상한용적률 변경
278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상한용적률 변경
279	송파구	거여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280	송파구	삼전	상한용적률 변경
281	송파구	송파대로 제1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282	송파구	방이	상한용적률 변경
283	송파구	개롱	상한용적률 변경
284	송파구	위례성길	상한용적률 변경
285	송파구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286	송파구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287	송파구	풍납	상한용적률 변경
288	송파구	거여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289	송파구	장지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290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연번	자치구	구역명	비고
291	송파구	거여2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292	송파구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293	송파구	문정 도시개발구역	상한용적률 변경
294	송파구	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상한용적률 변경
295	송파구	마천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296	송파구	서울동남권유통단지	상한용적률 변경
297	송파구	송파대로 제2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298	강동구	성내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299	강동구	암사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300	강동구	천호지구	상한용적률, 비주거용도 변경
301	강동구	고덕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302	강동구	굽은다리	상한용적률 변경
303	강동구	강일2택지개발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304	강동구	둔촌동역 주변	상한용적률 변경
305	강동구	강동구청 주변	상한용적률 변경
306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상한용적률 변경
307	강동구	강일도시개발구역	상한용적률 변경

1.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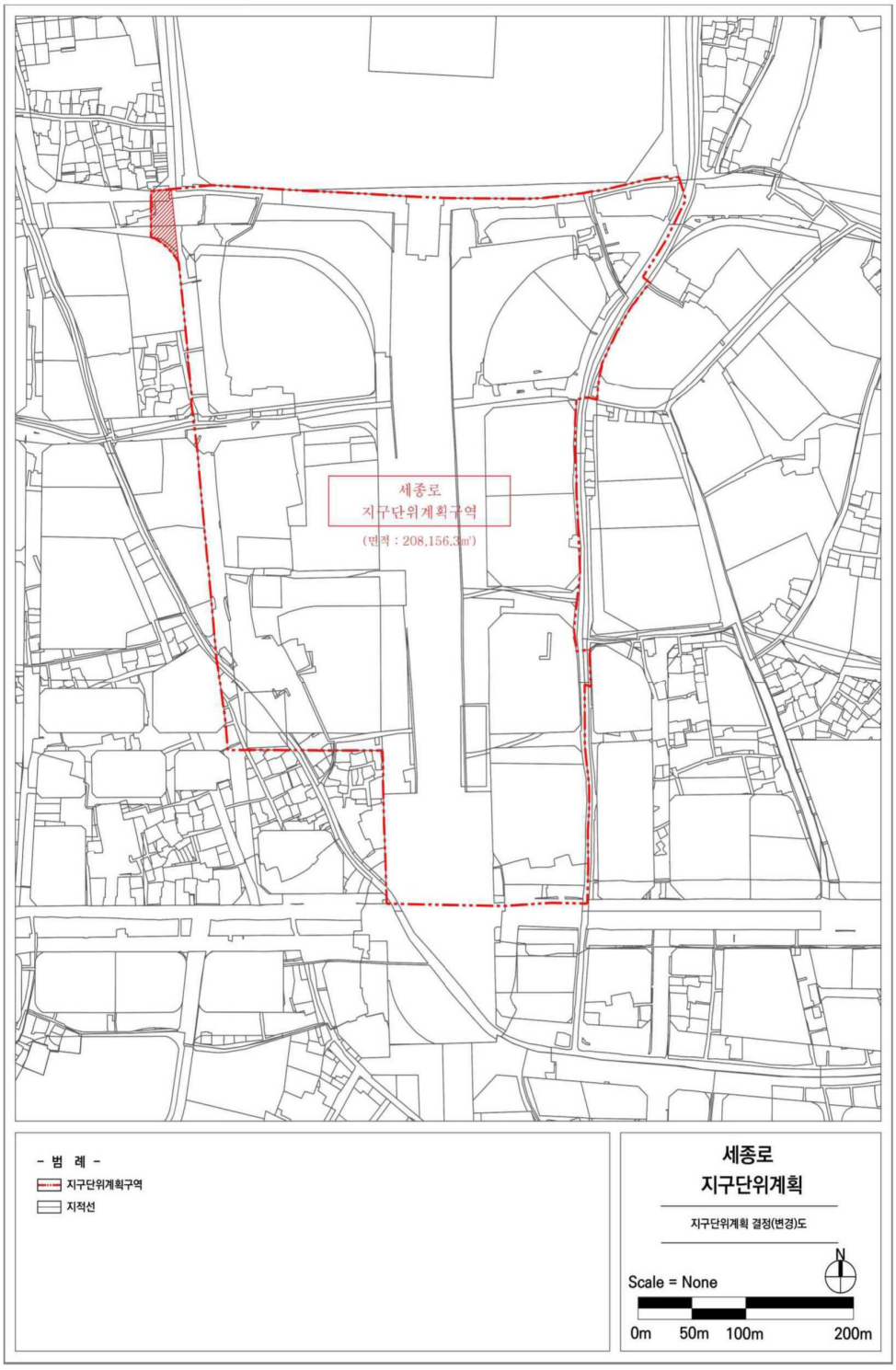

2.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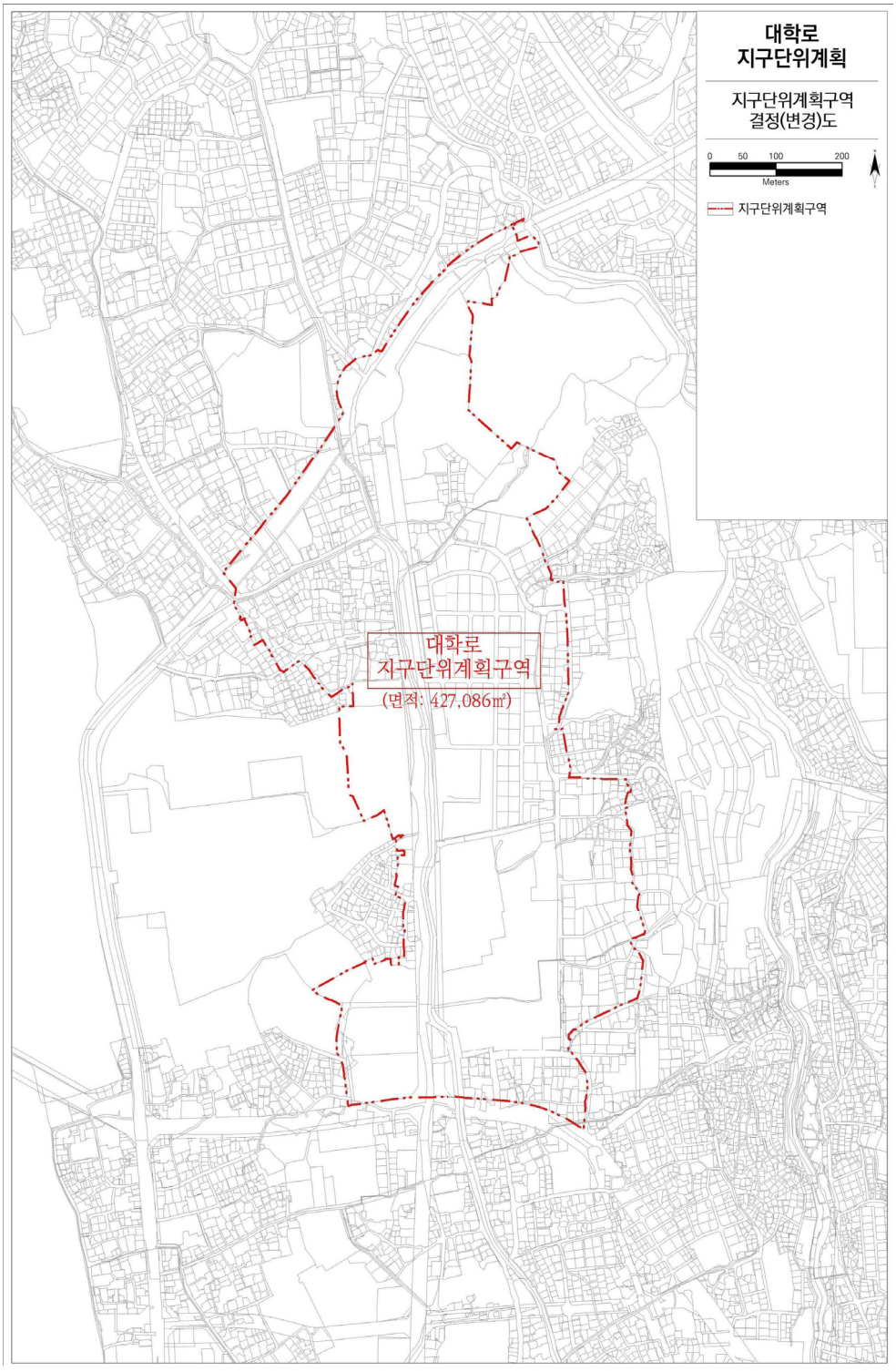

3. 율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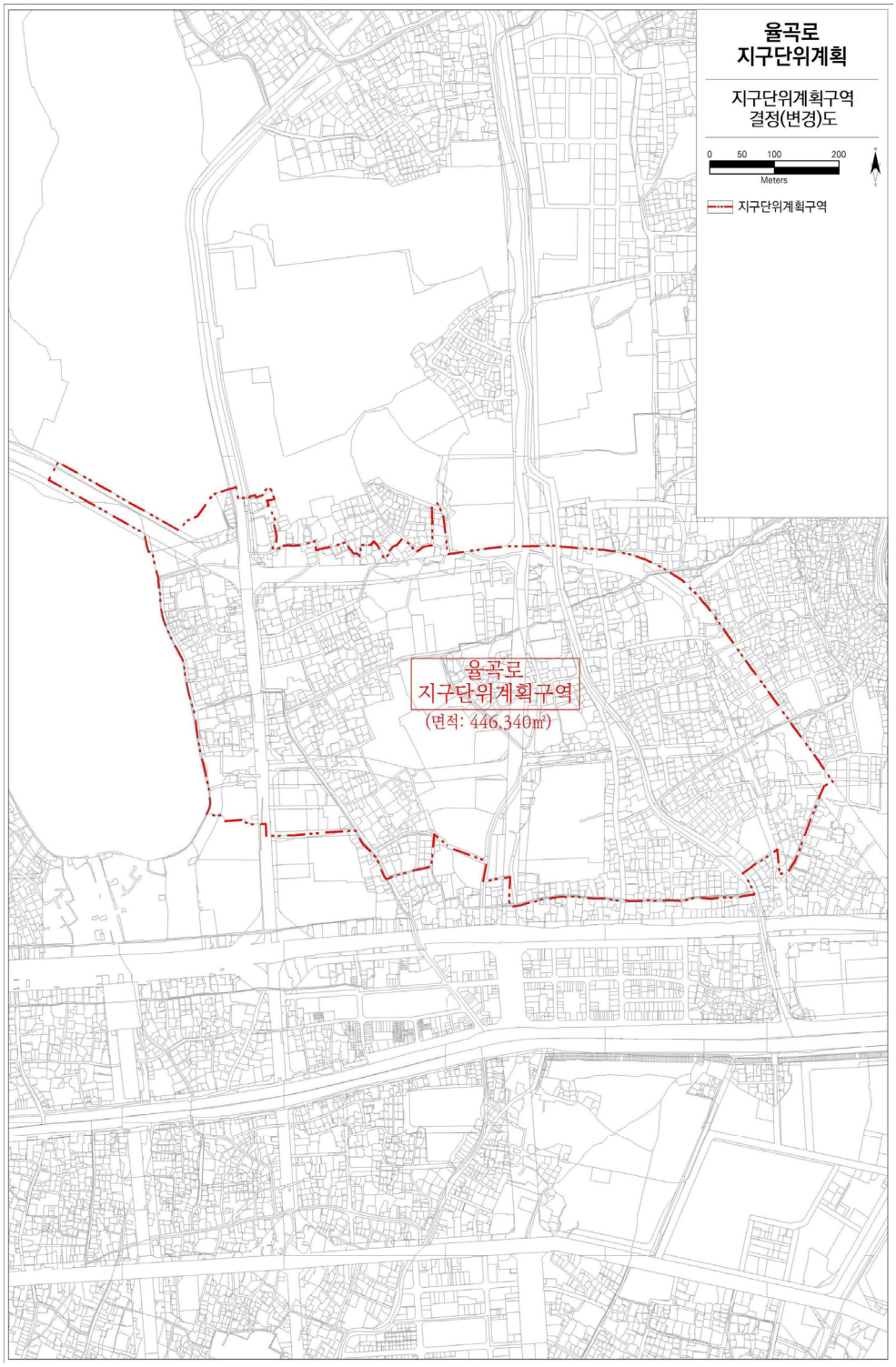

4. 종로4 · 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5.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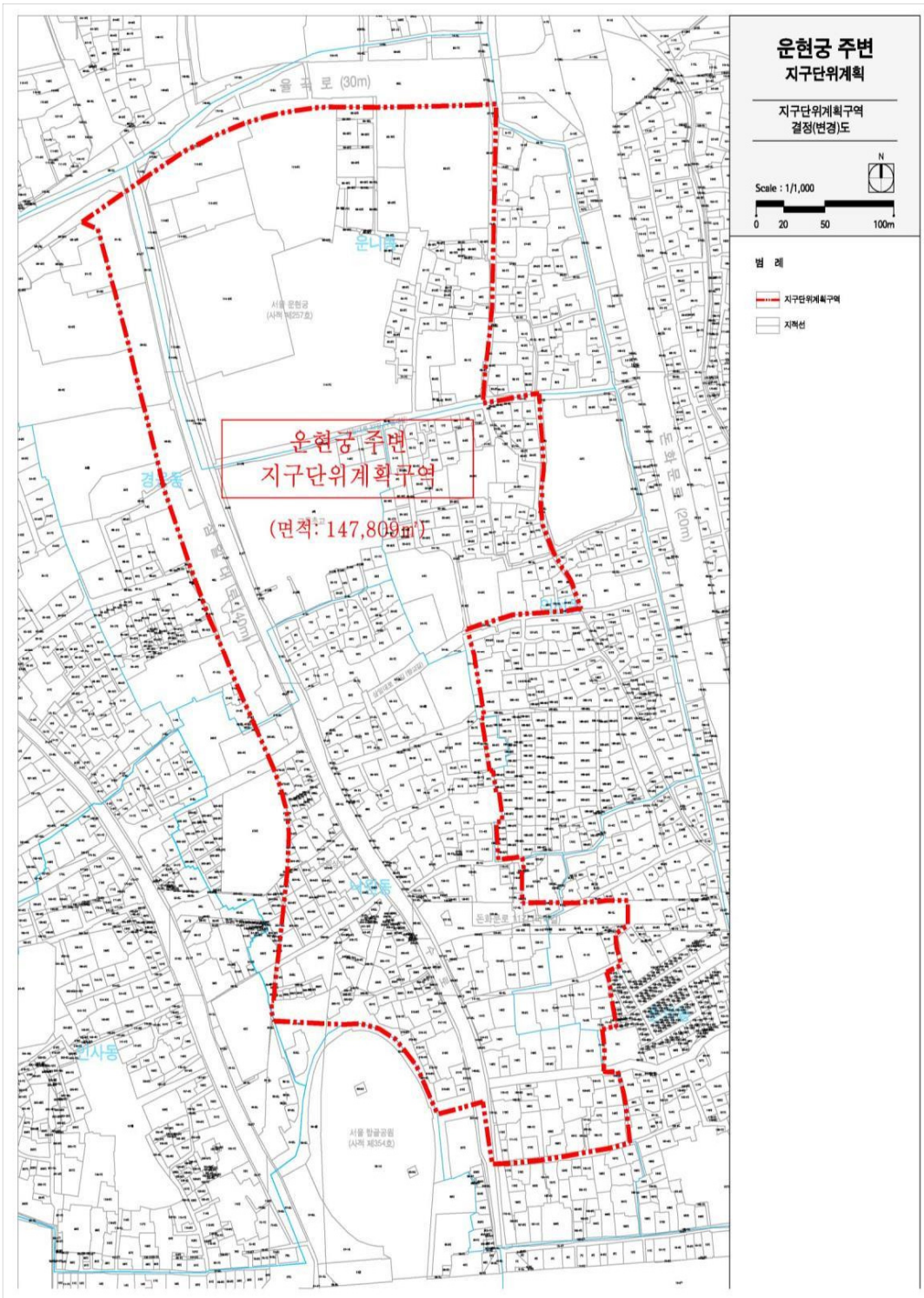

6.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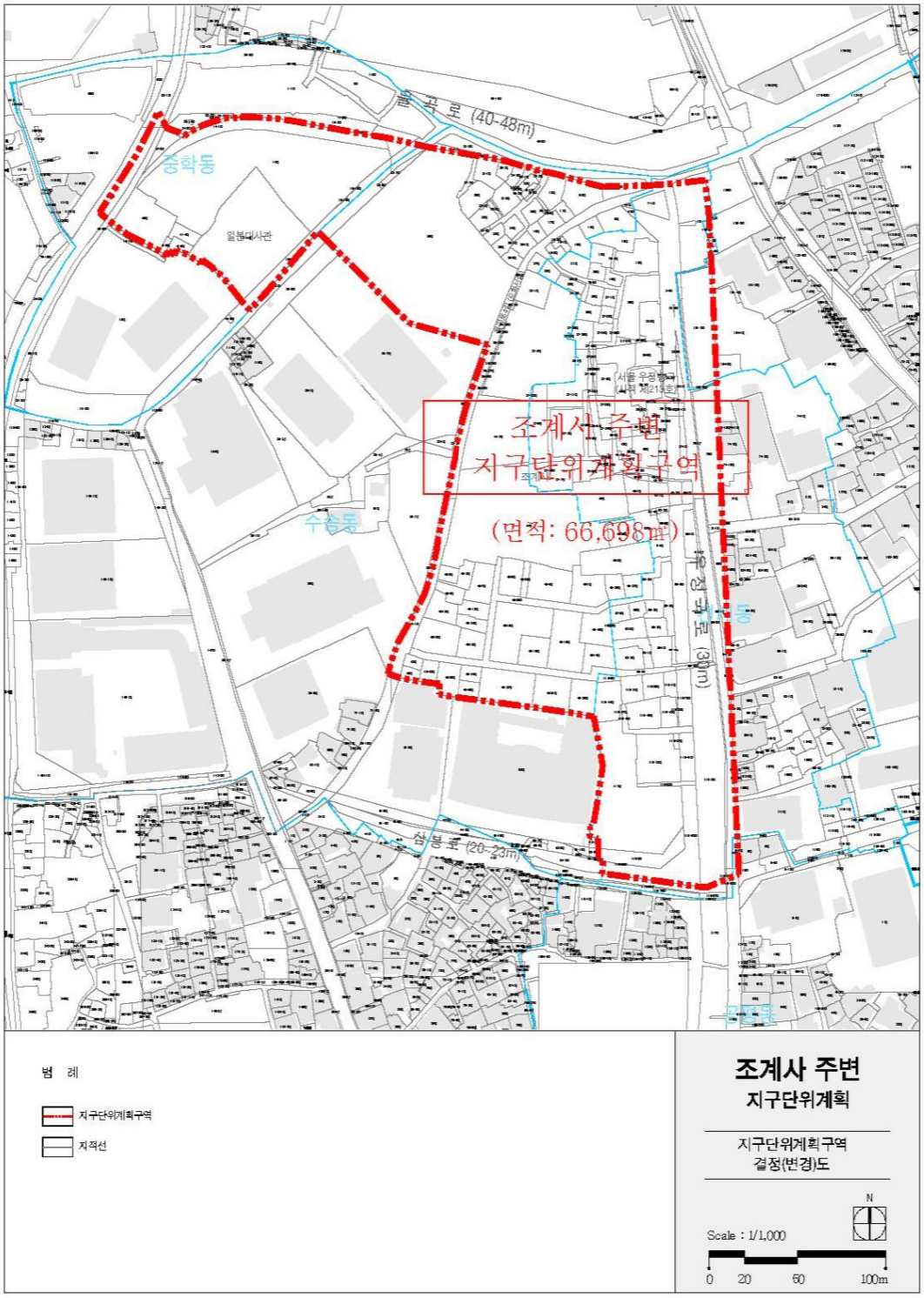

7.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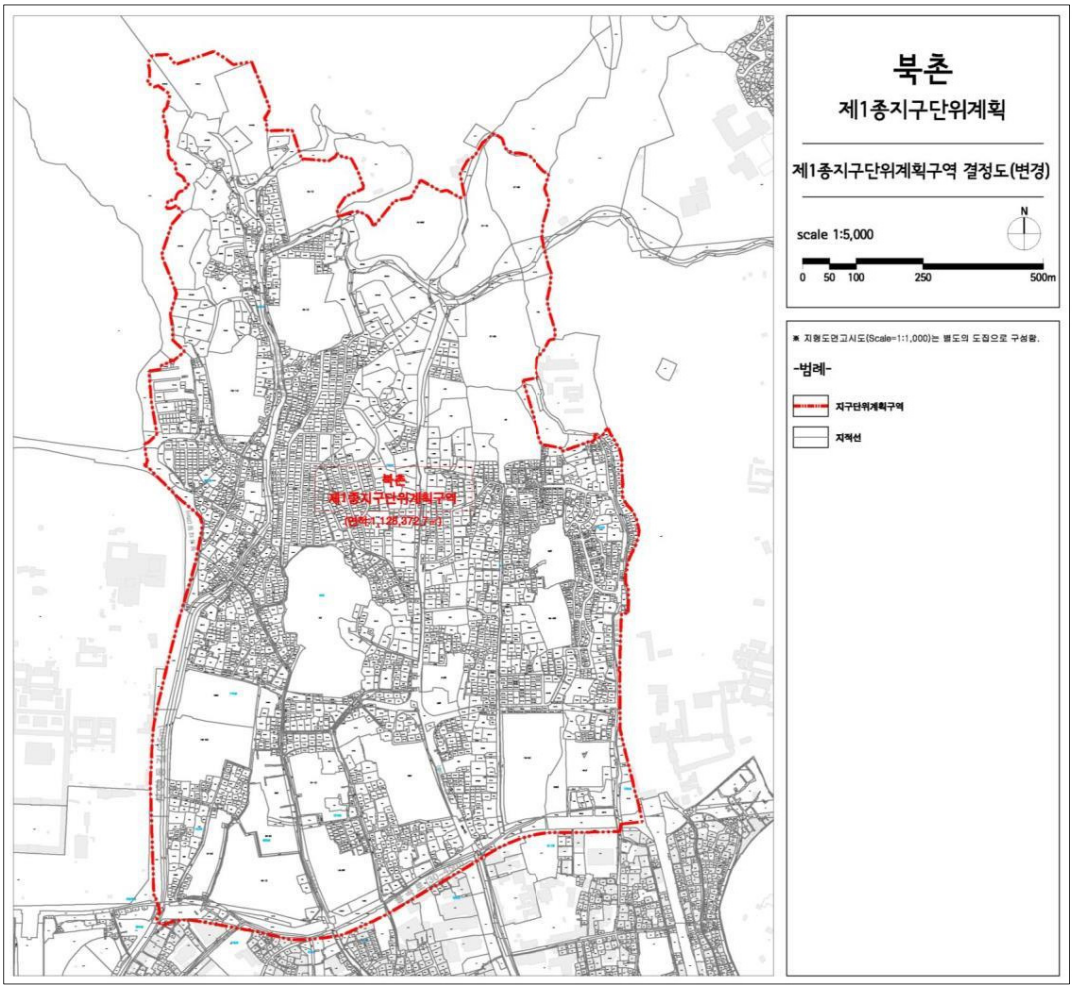

8. 숭인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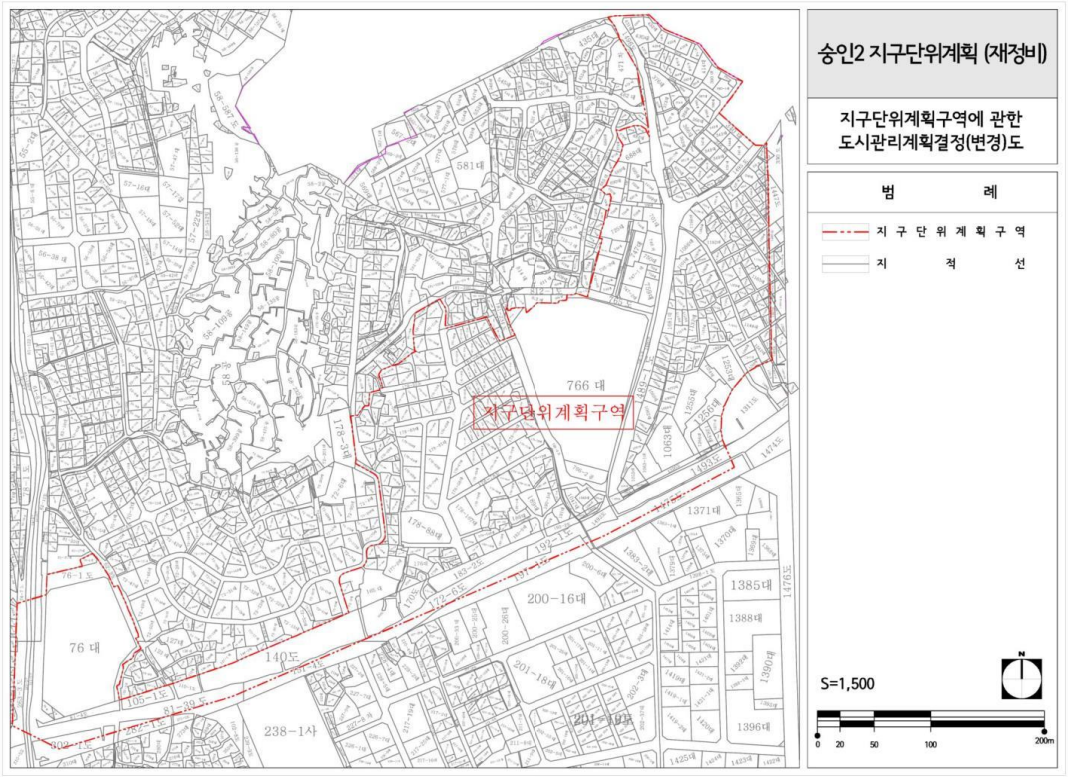

9. 숭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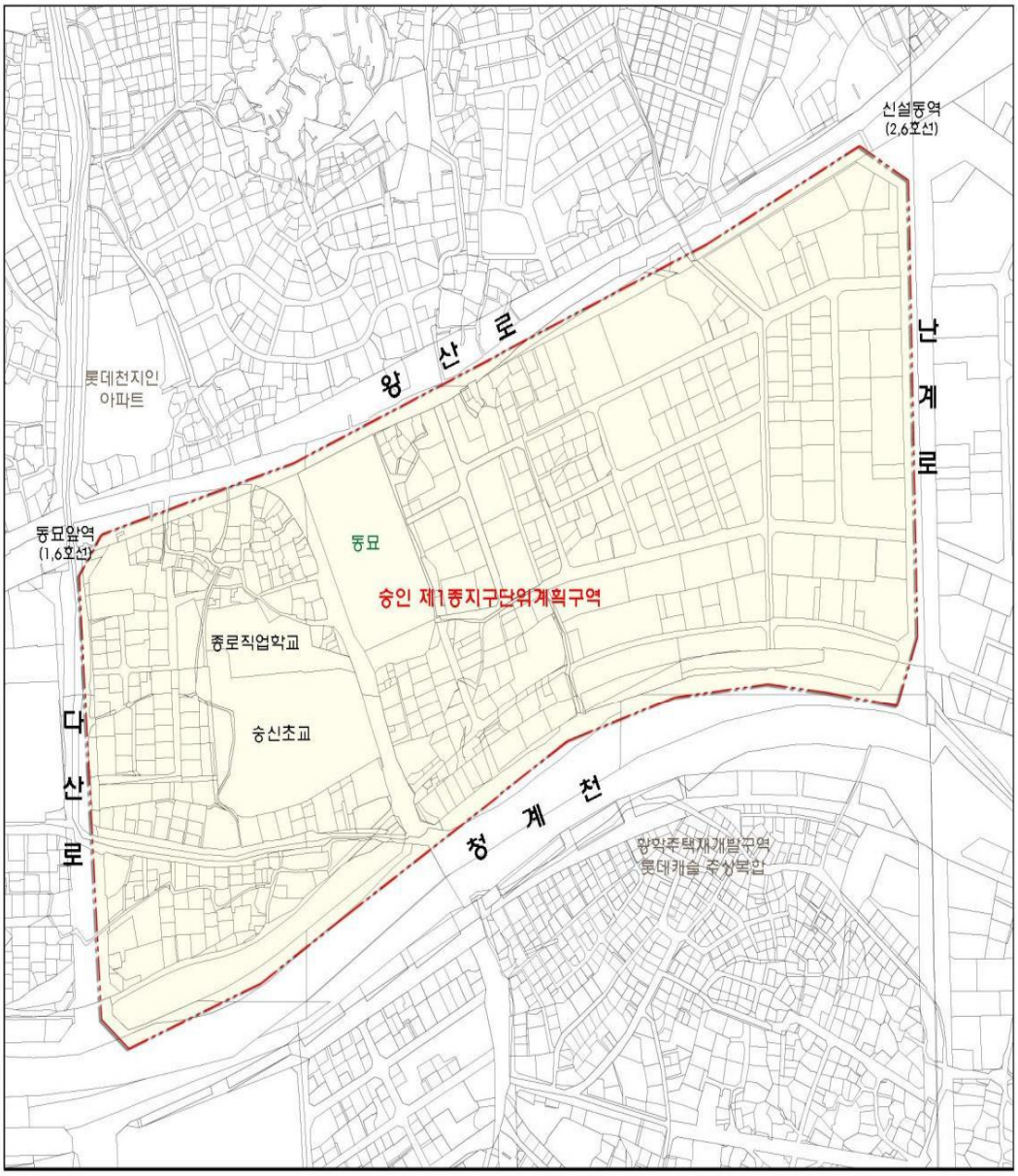

10.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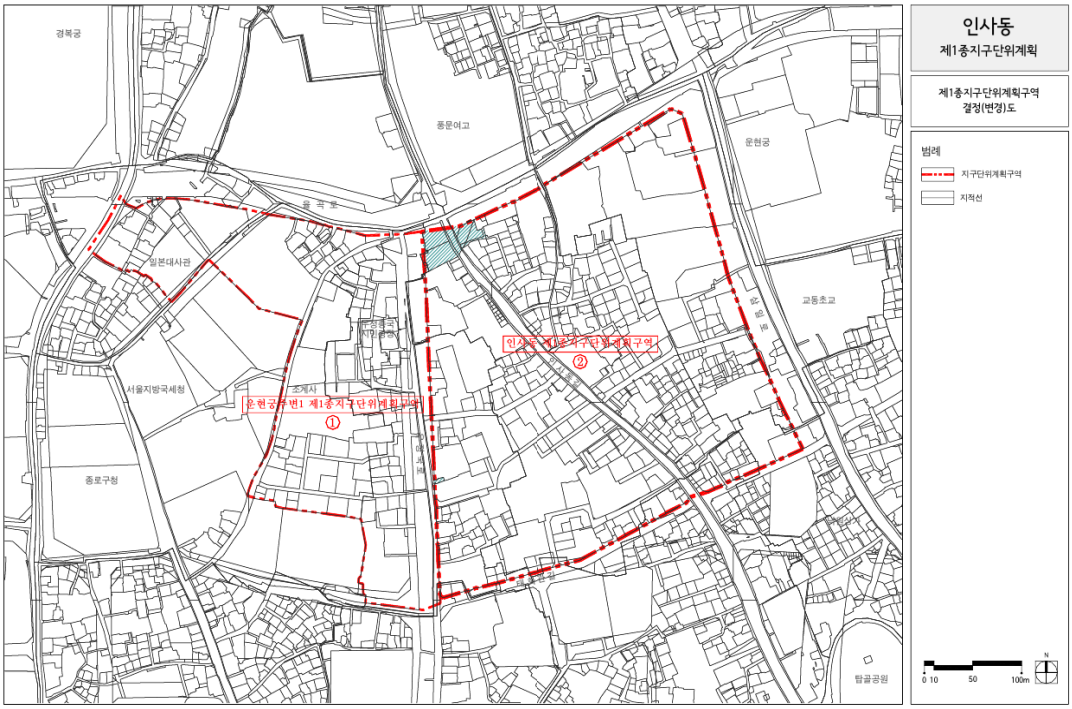

11. 종로2 · 3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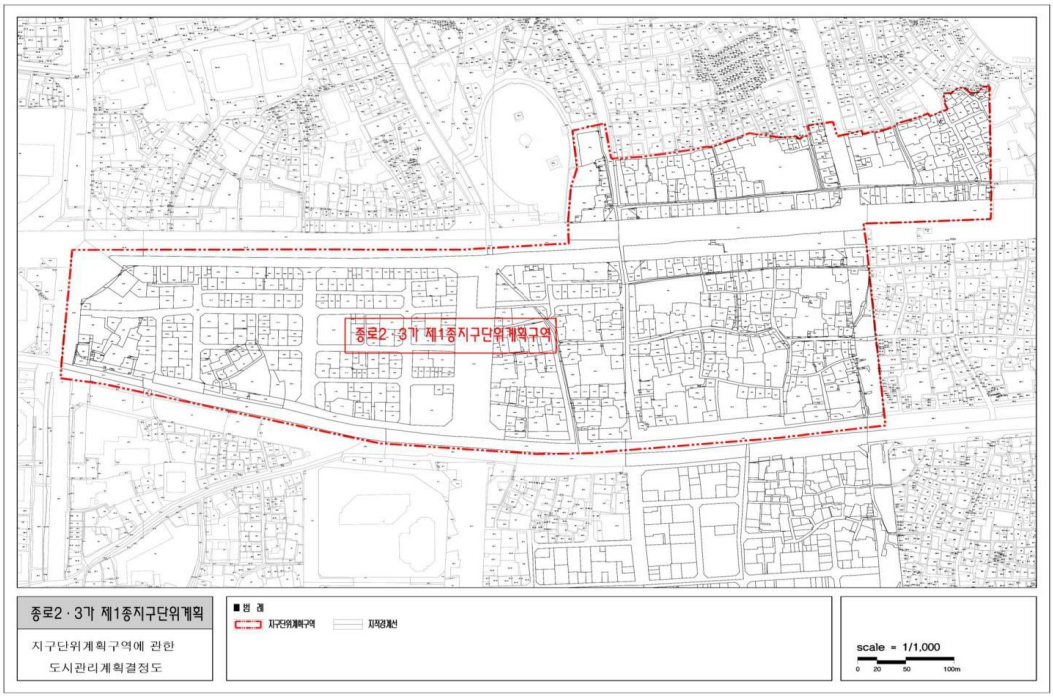

12. 성균관대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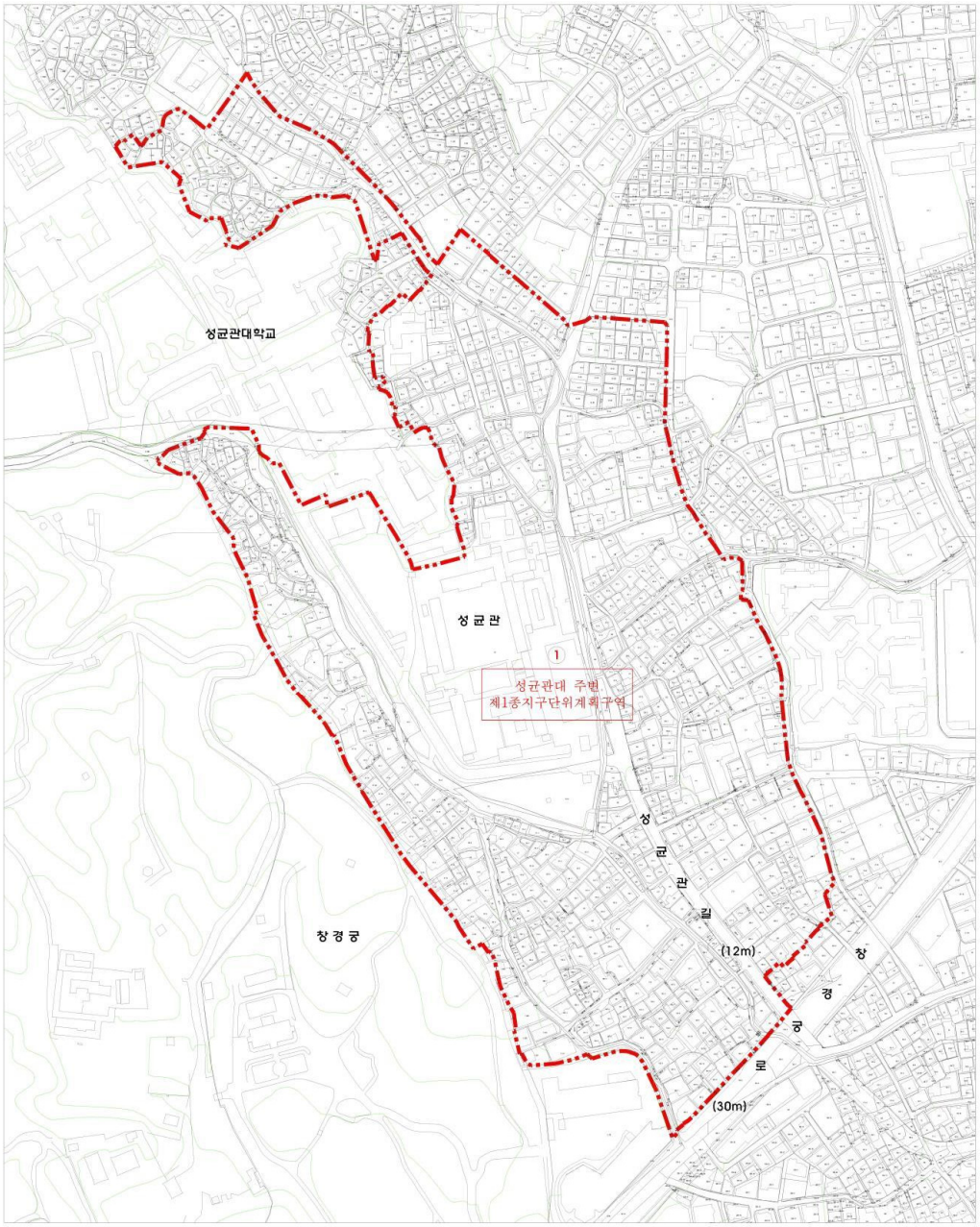

13.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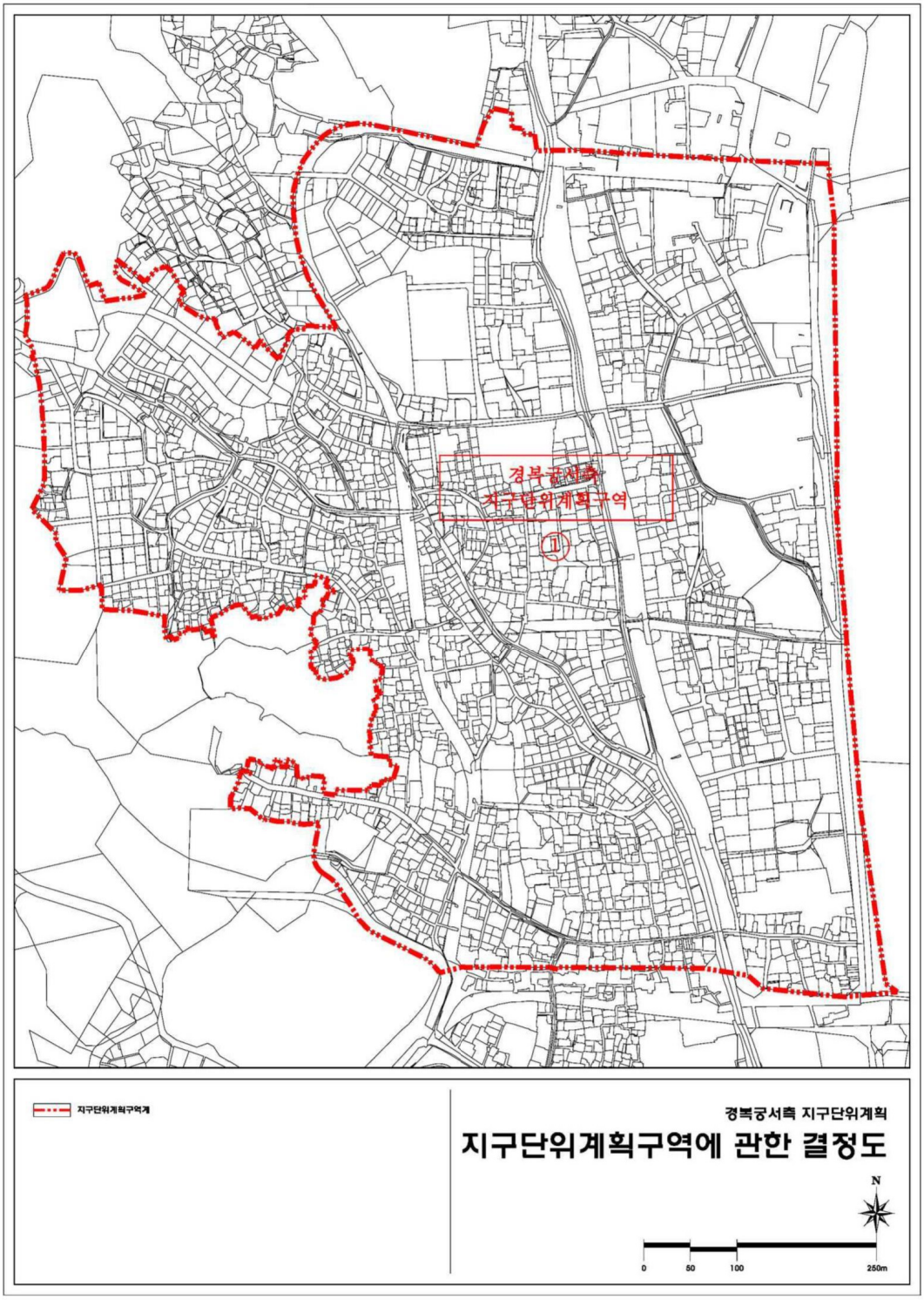

14.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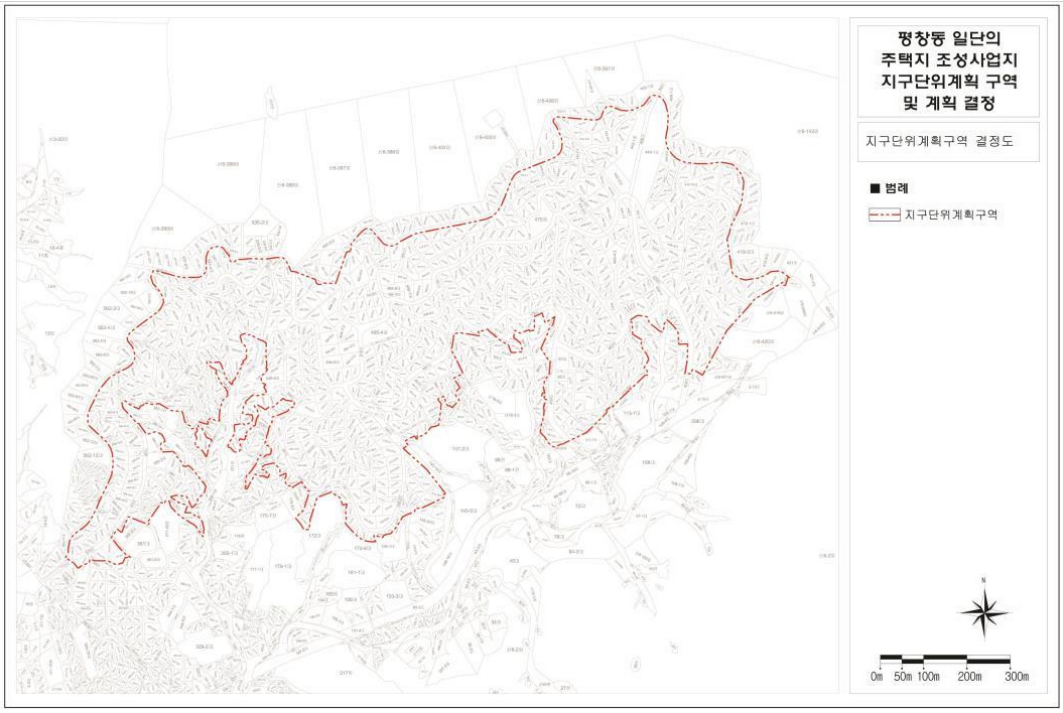

15.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6. 사직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7. 이화동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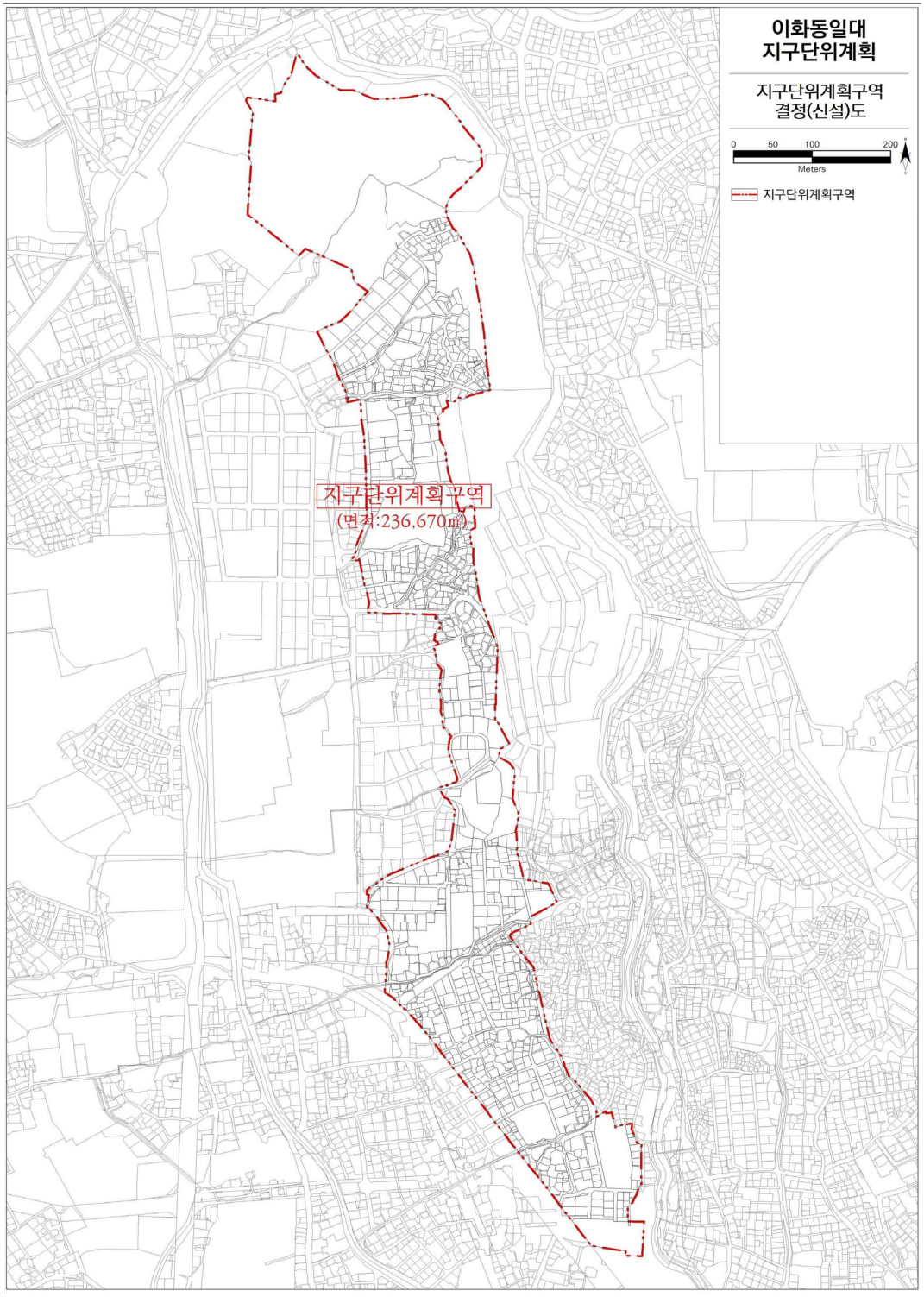

18. 정동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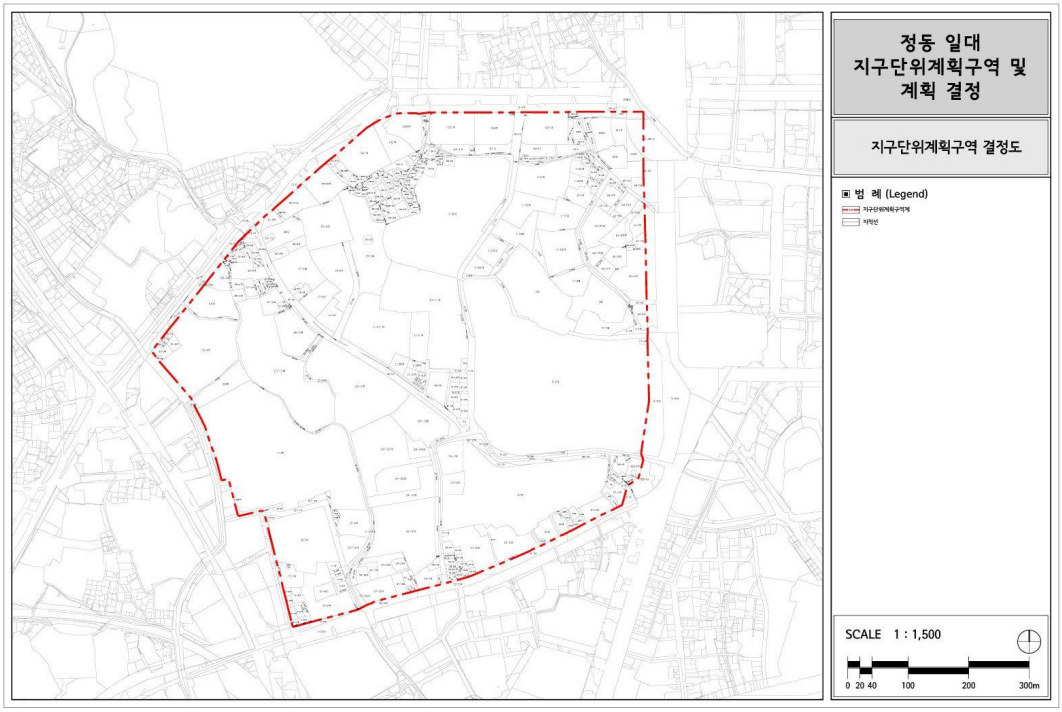

19.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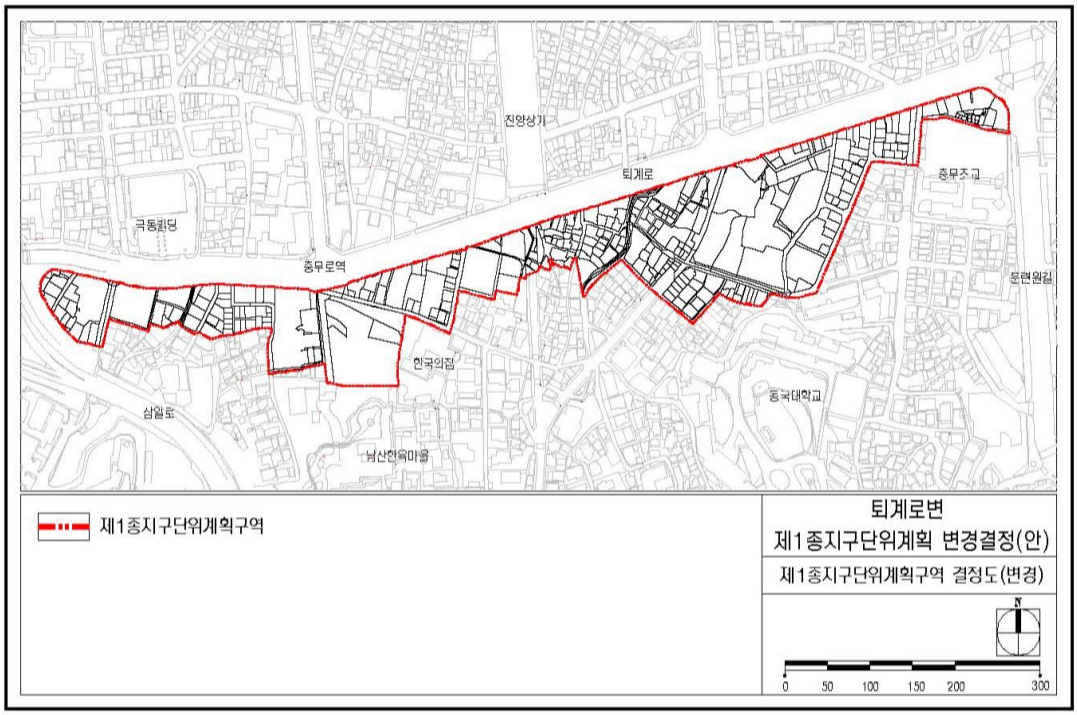

20. 약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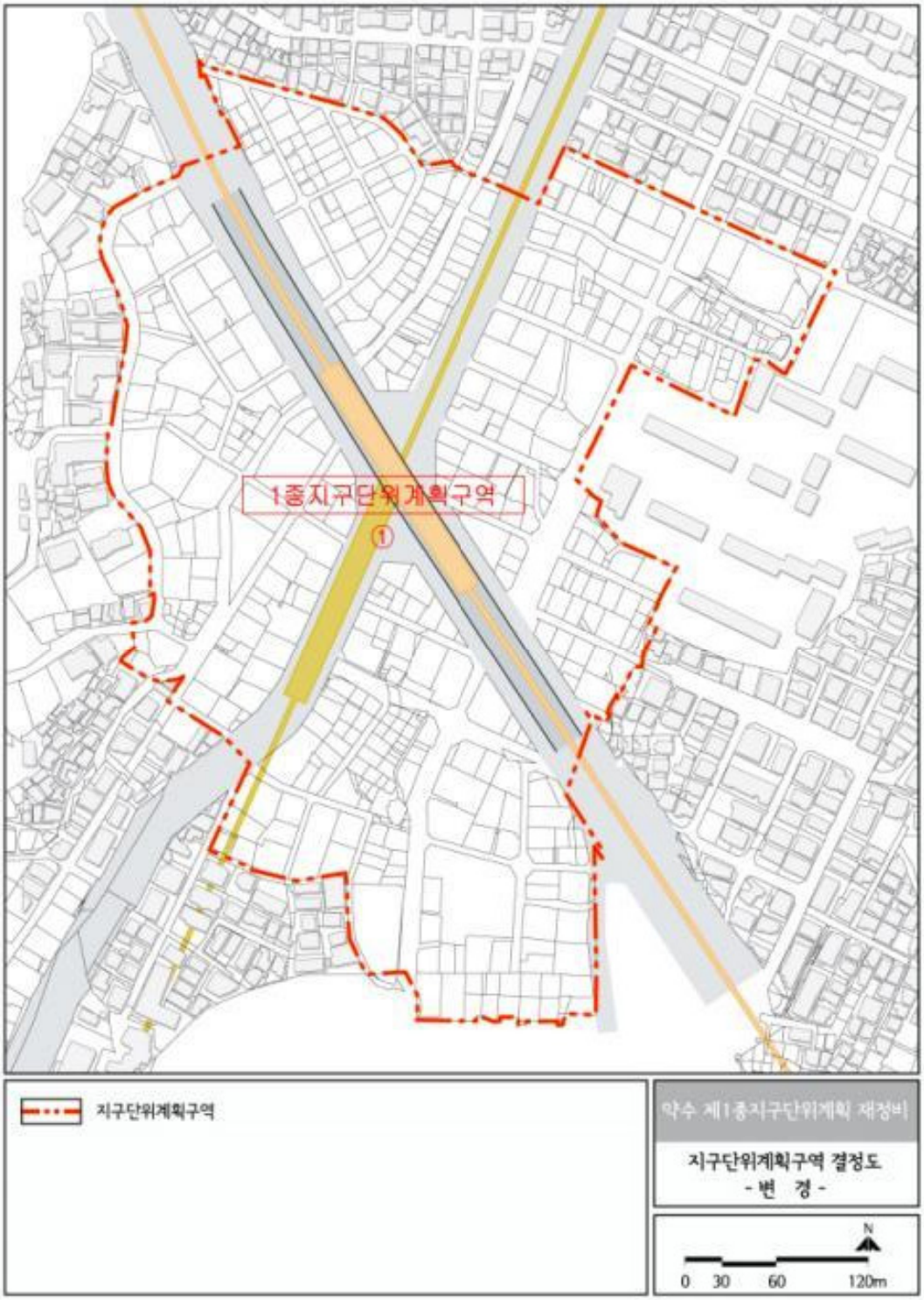

21. 회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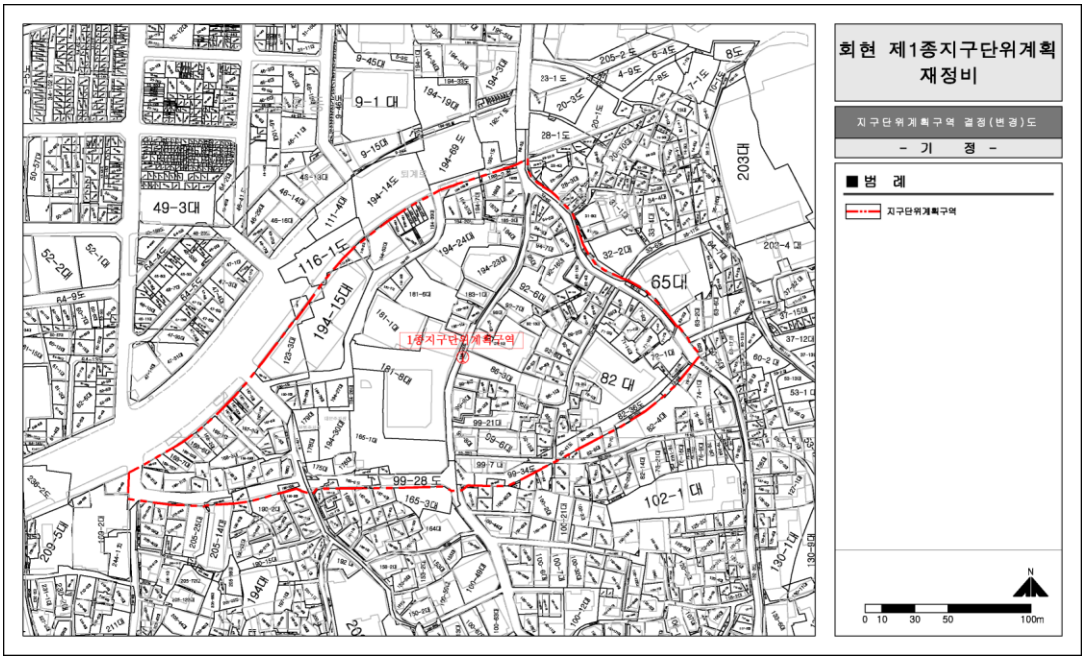

22.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3. 주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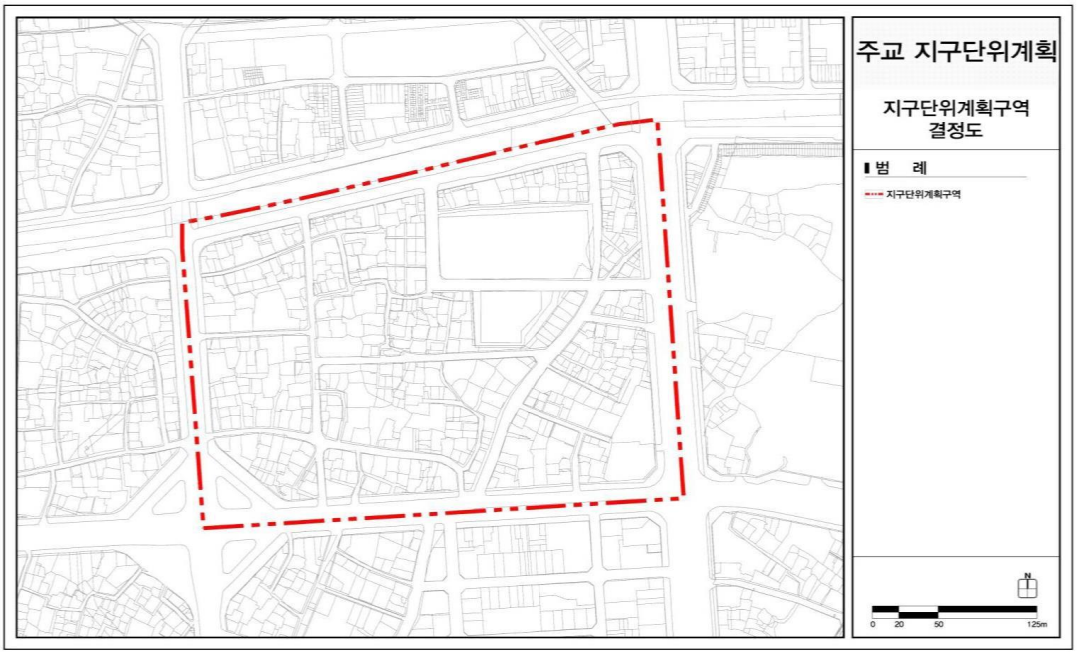

24. 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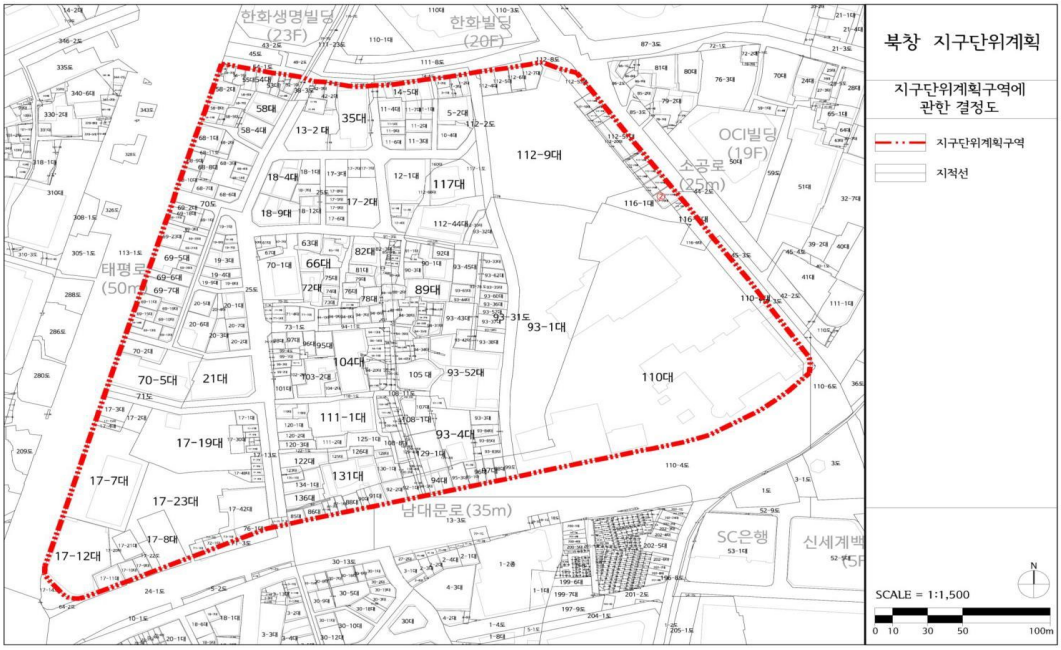

25. 서울시청사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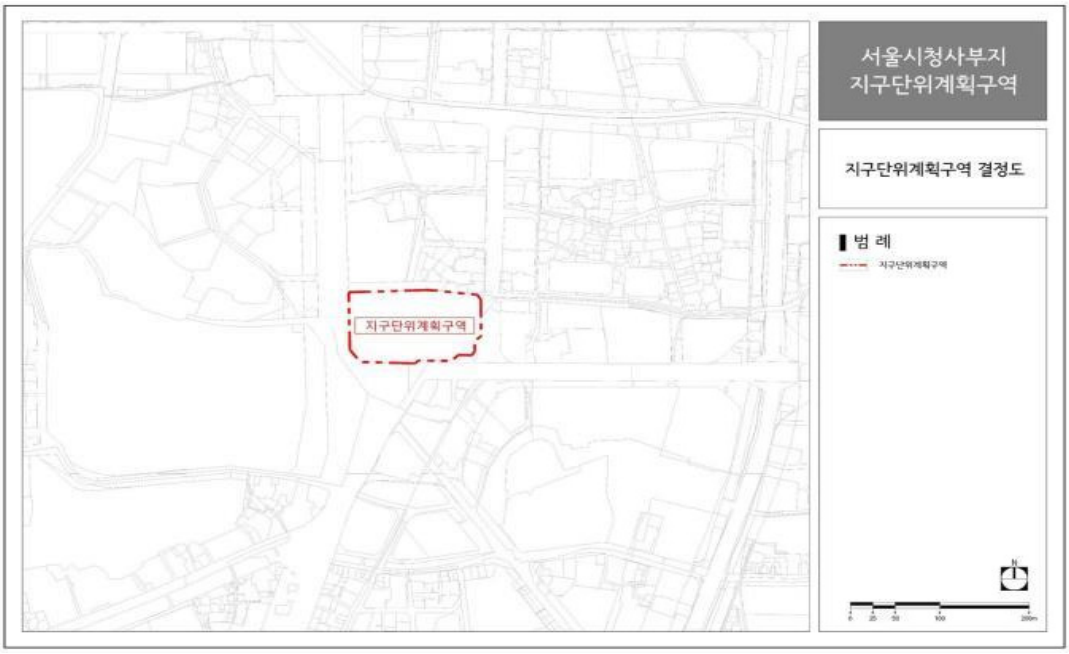

26. 남대문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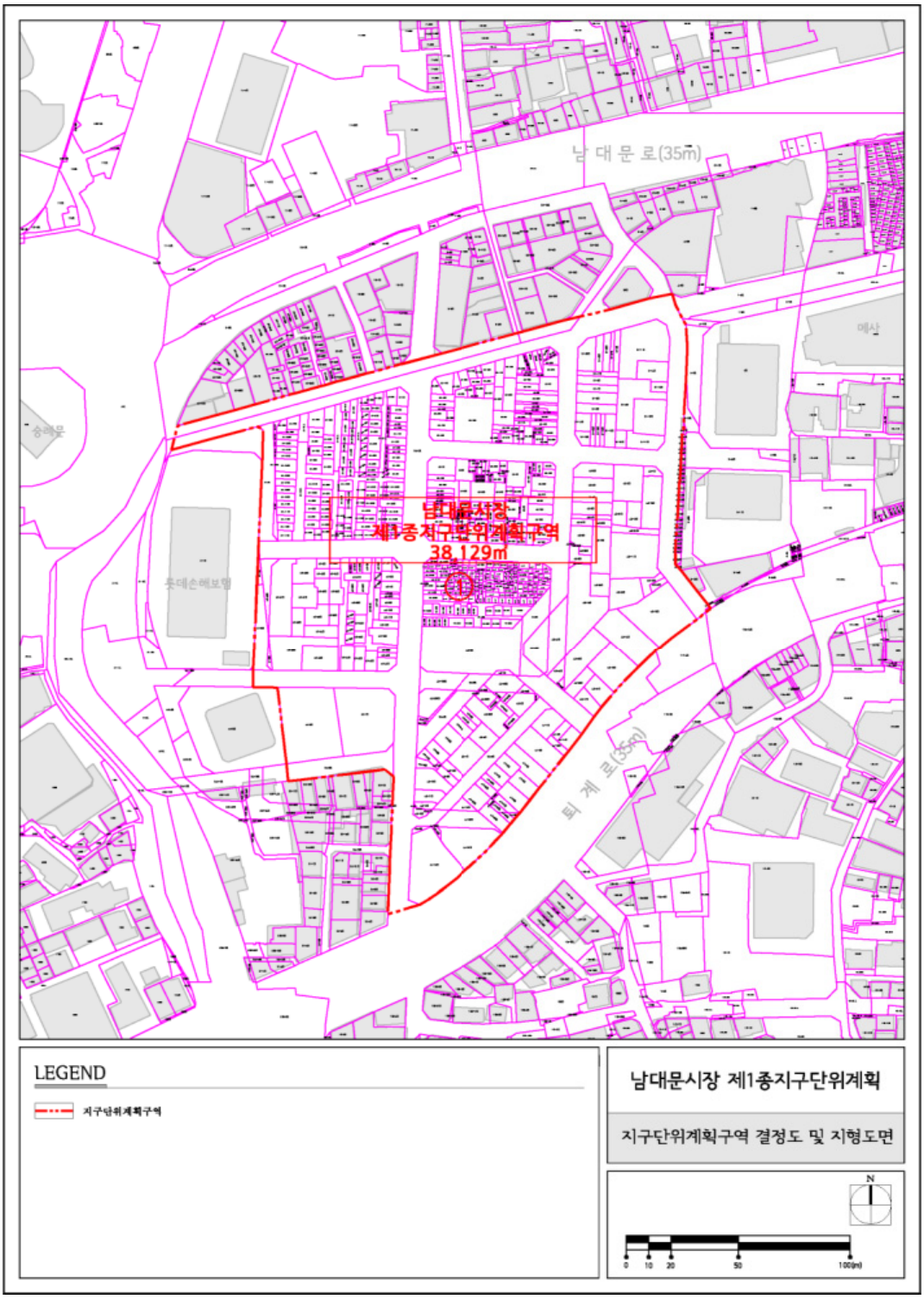

27.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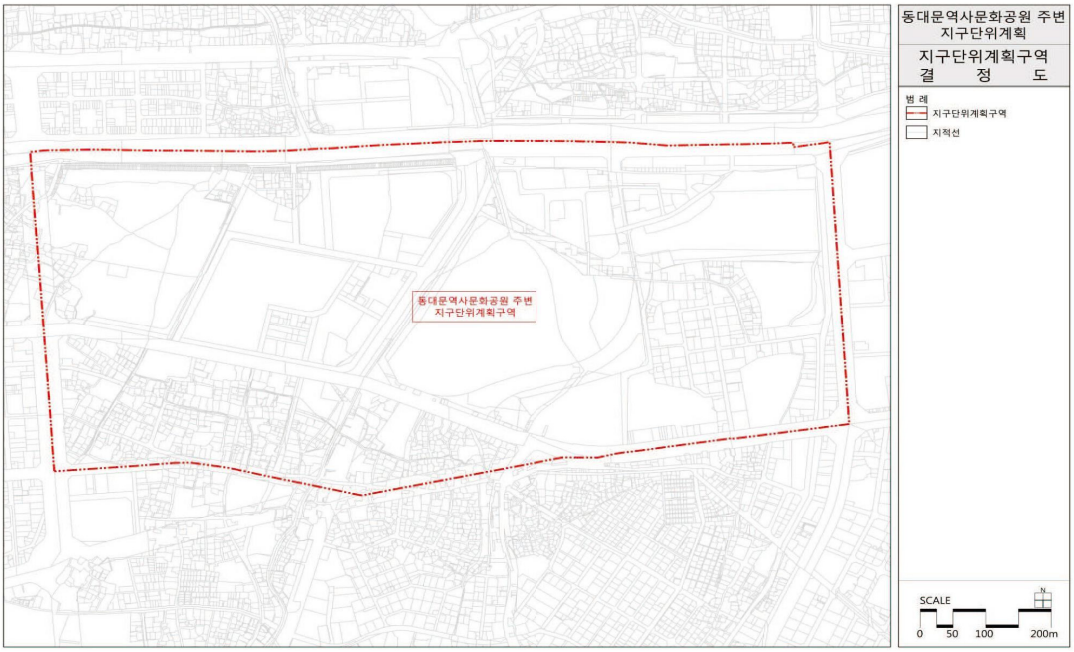

28.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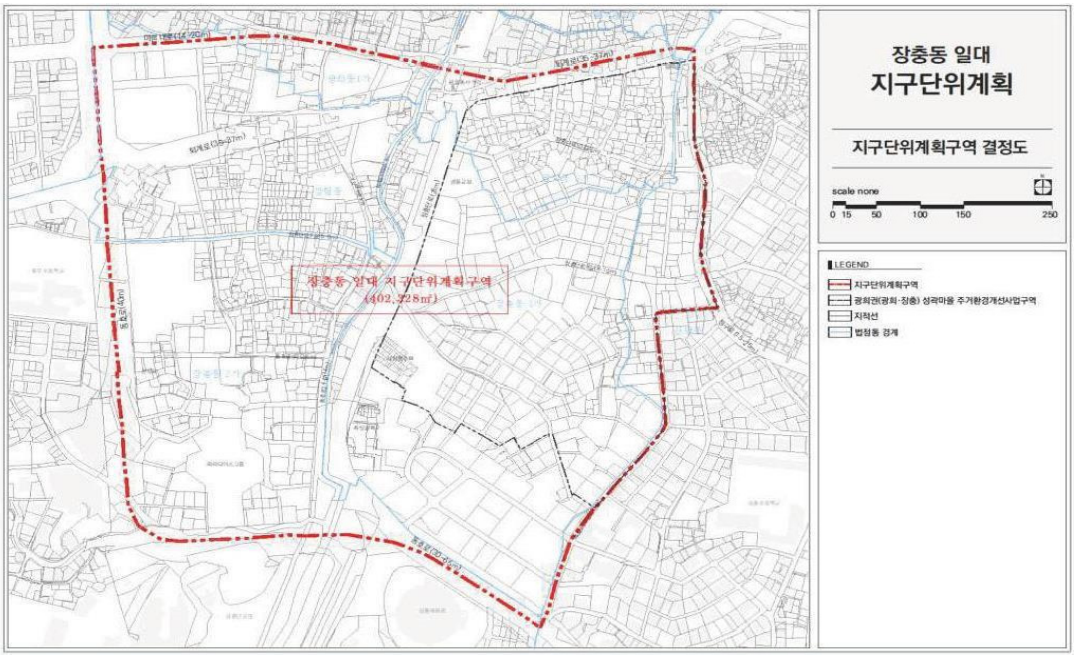

29. 숙명여대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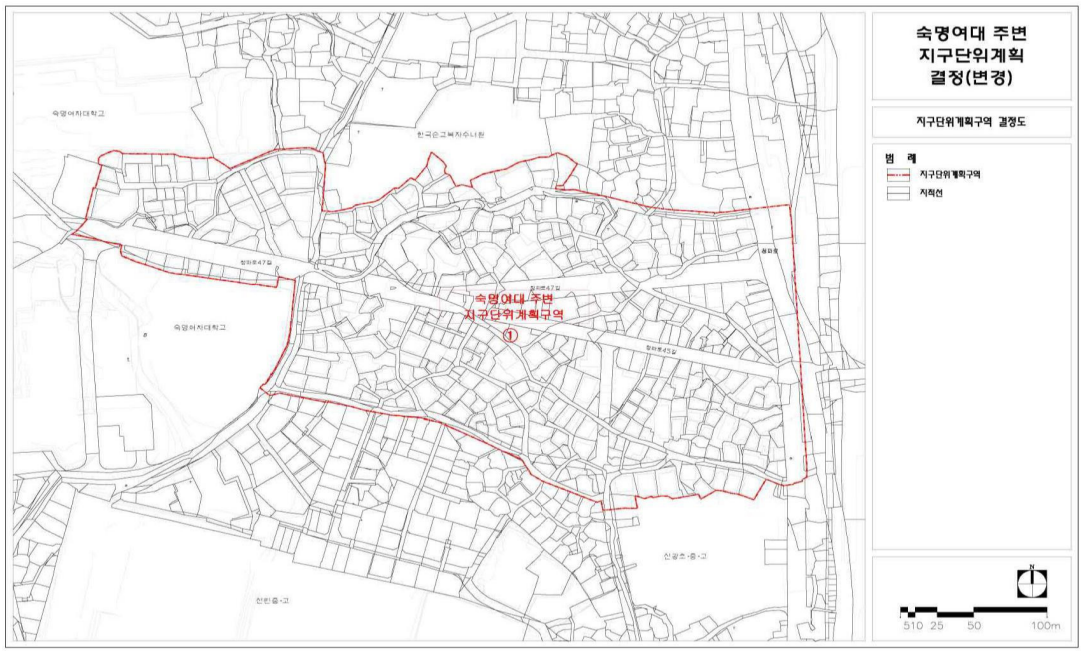

30.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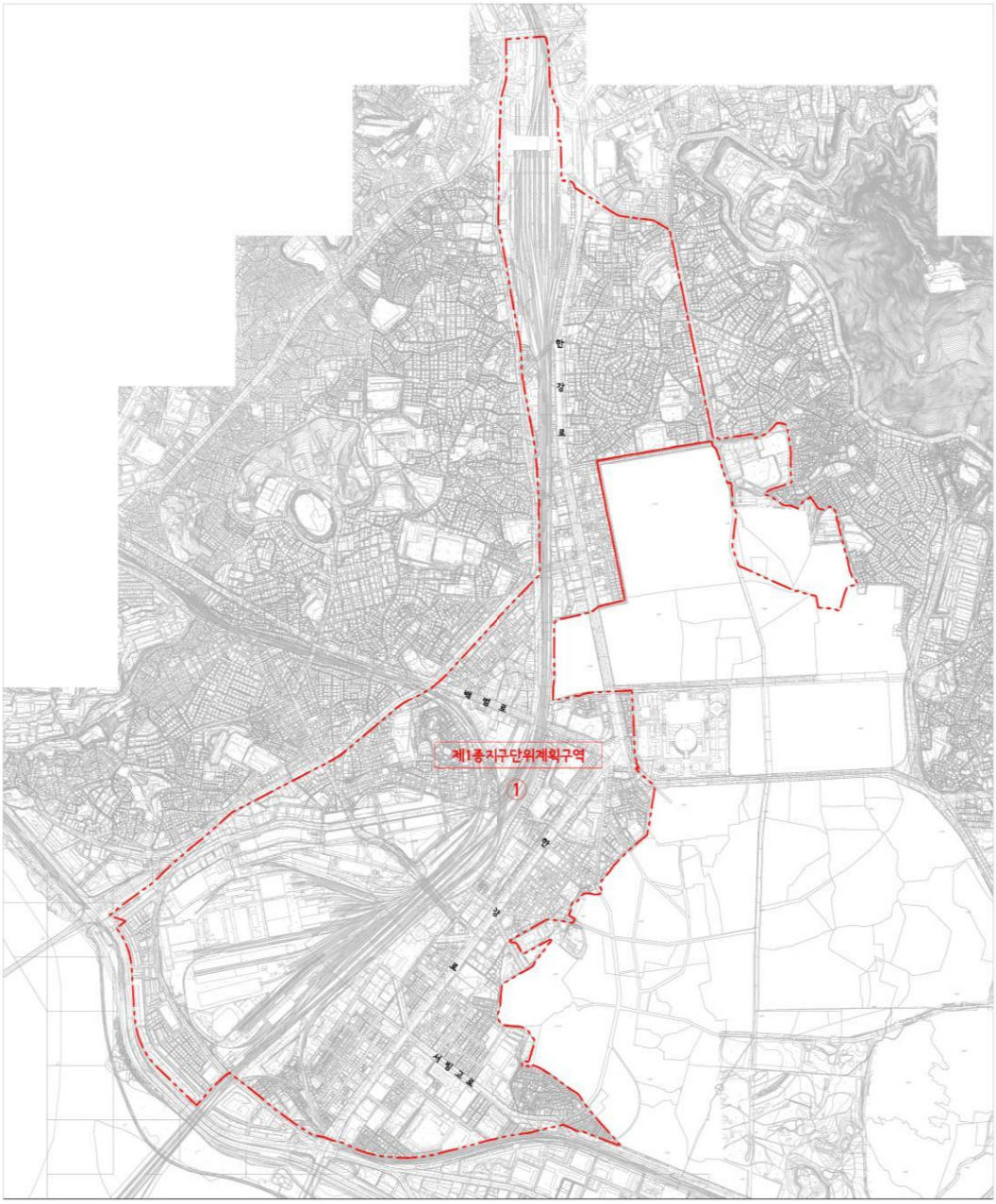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N S=1:5,000 0 100 200 400 800m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31.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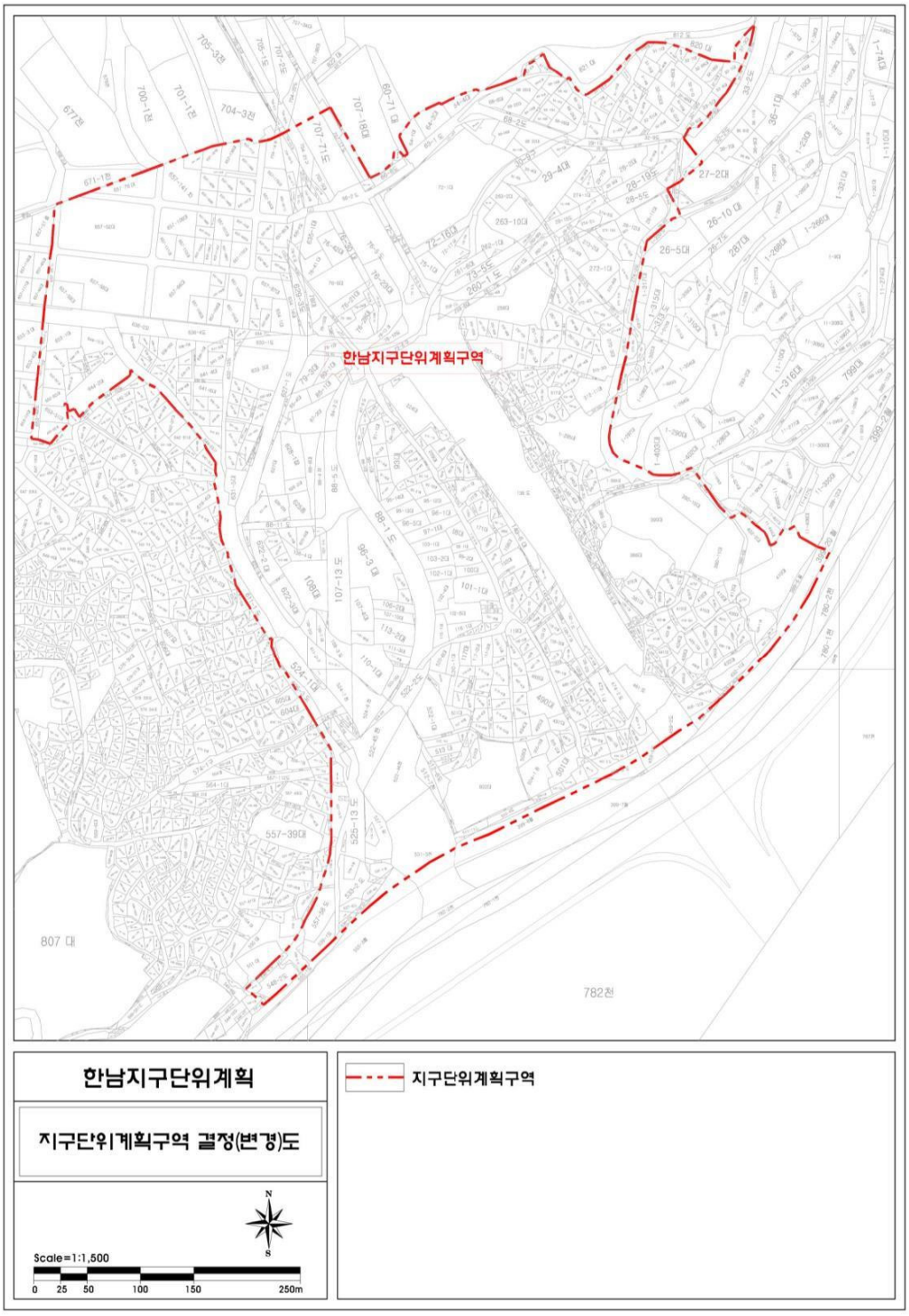

32.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33.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34. 유엔사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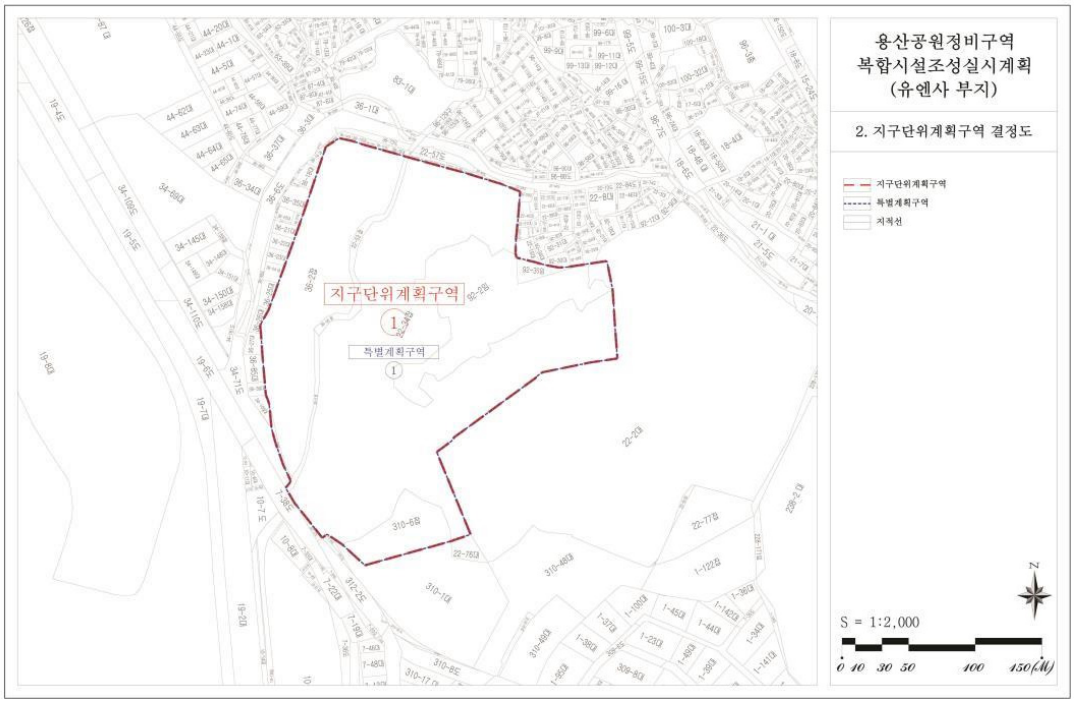

35. 금호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36.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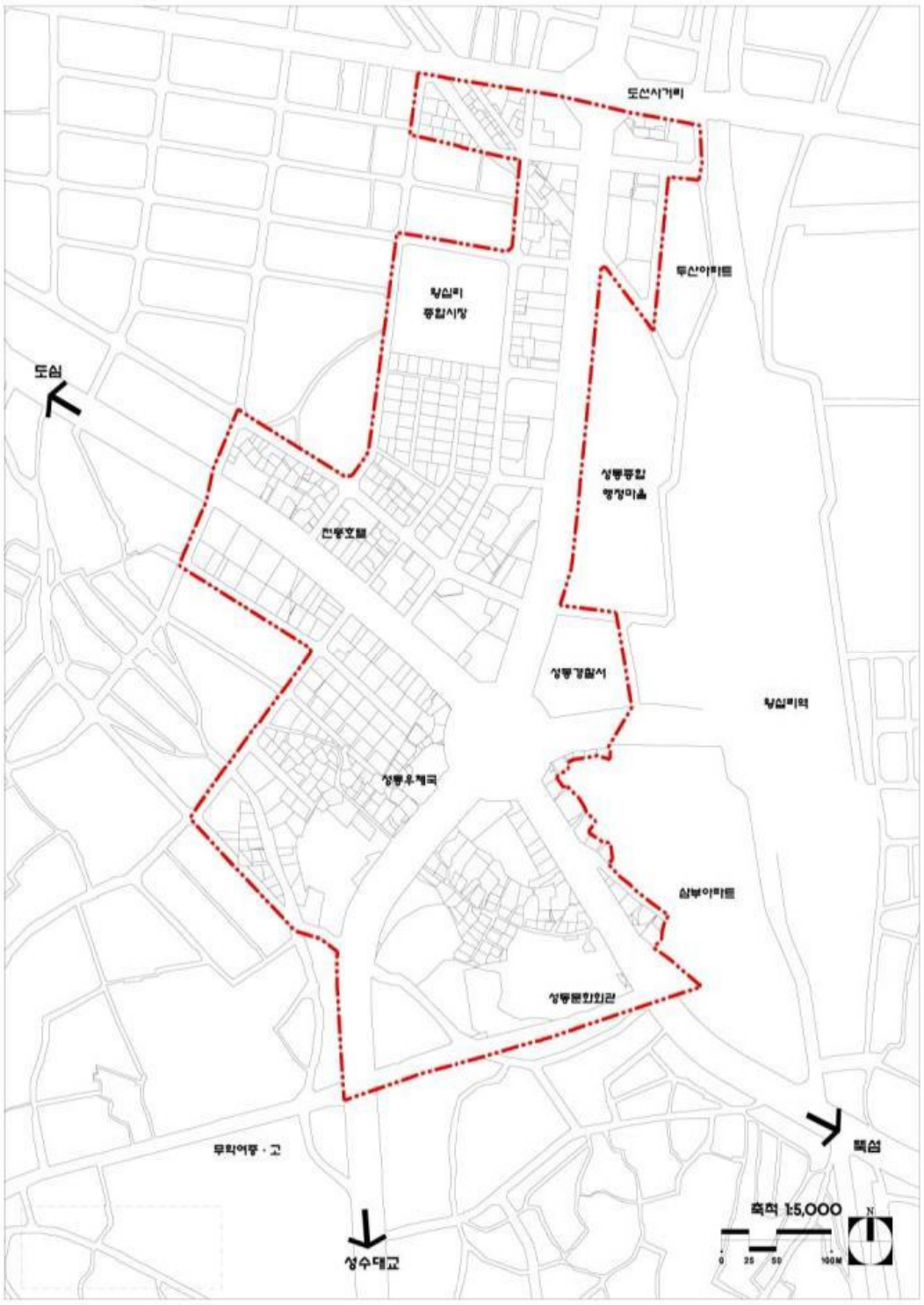

37.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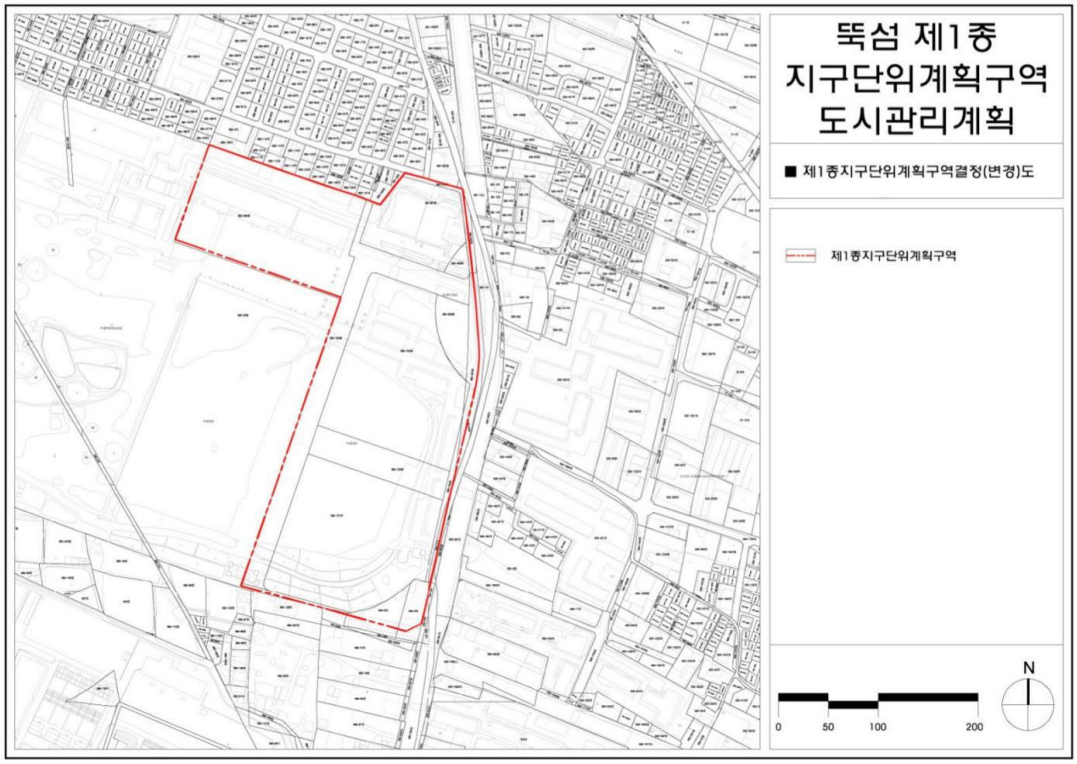

38.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39.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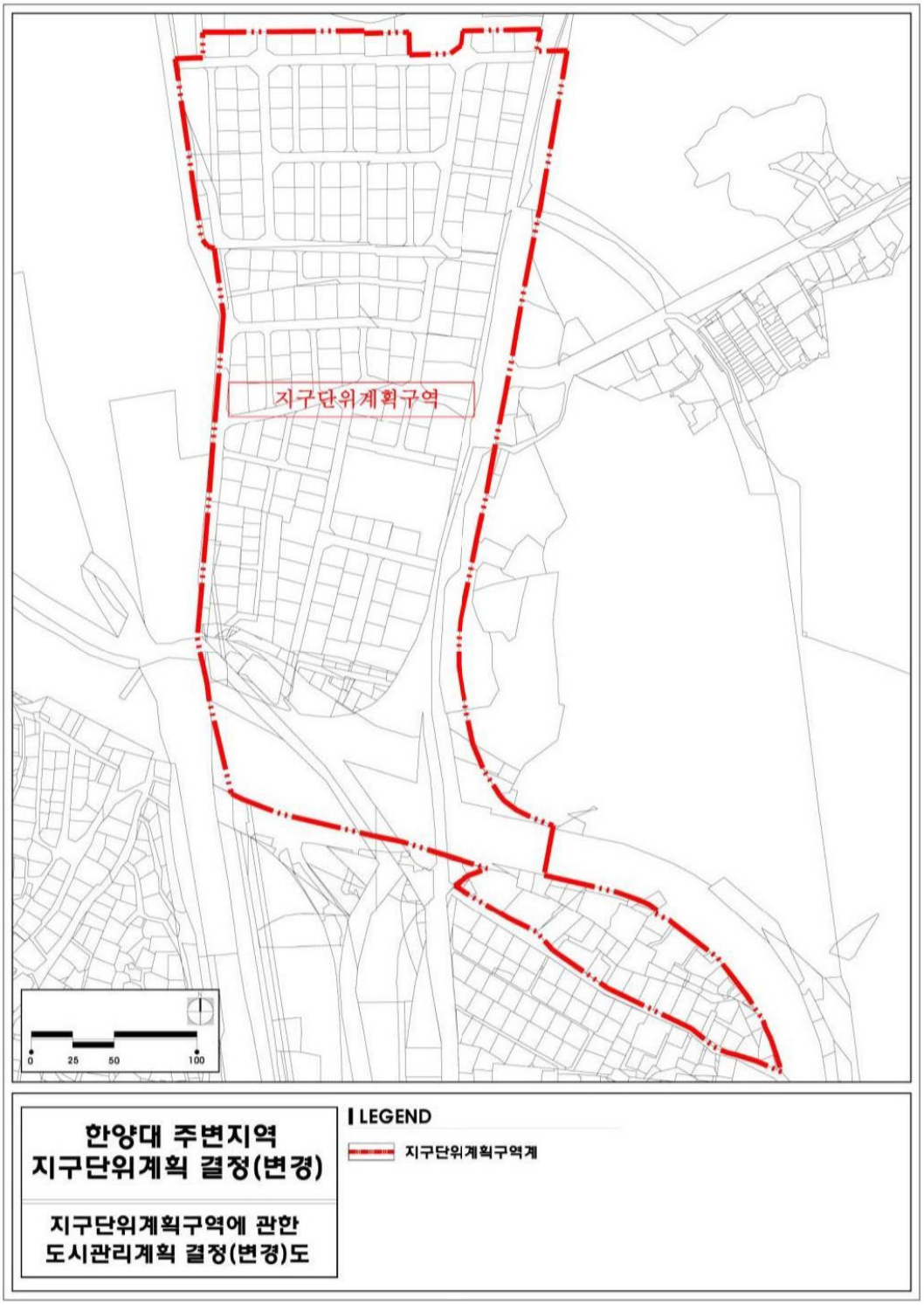

40. 청계천로변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41. 행당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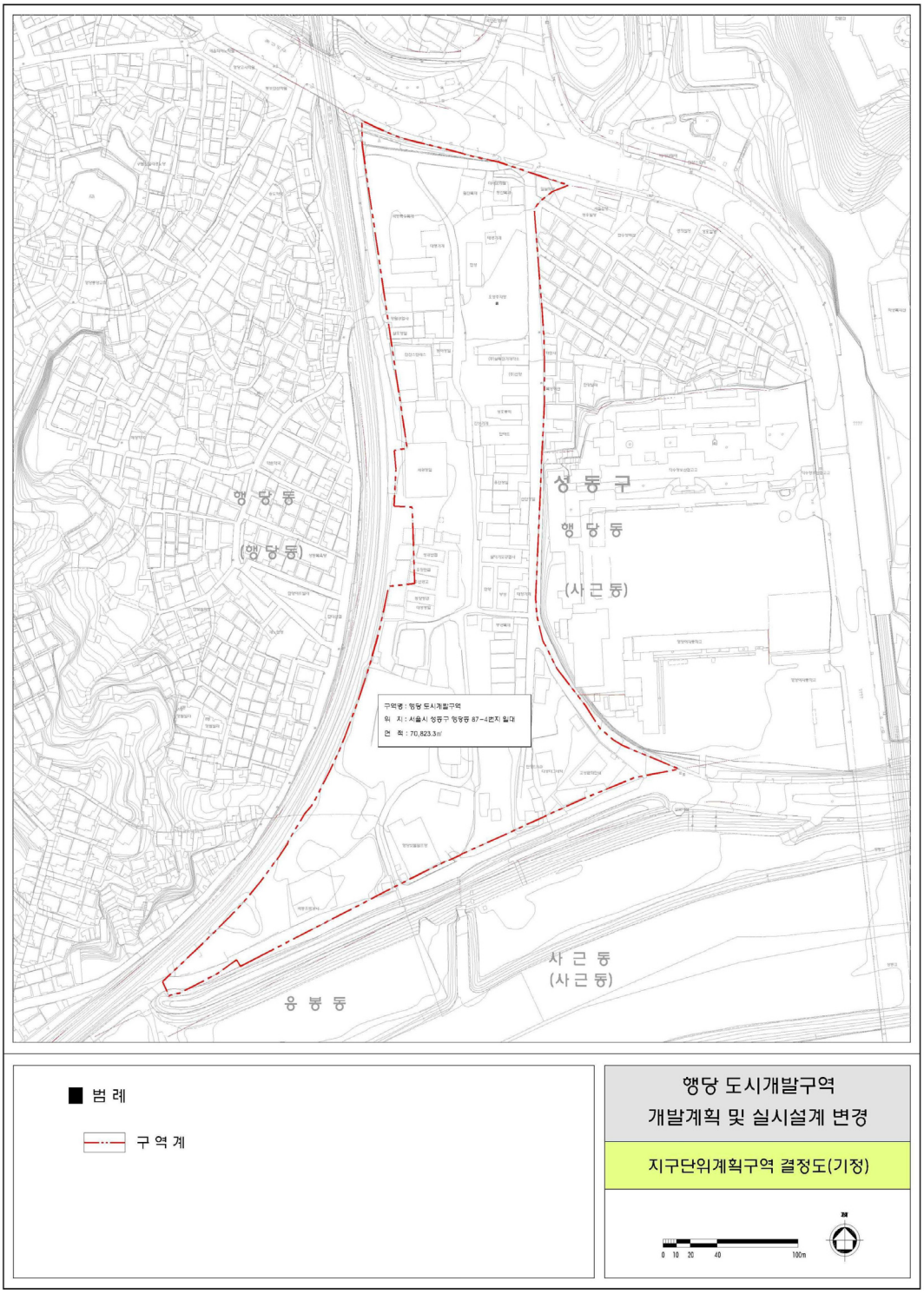

42.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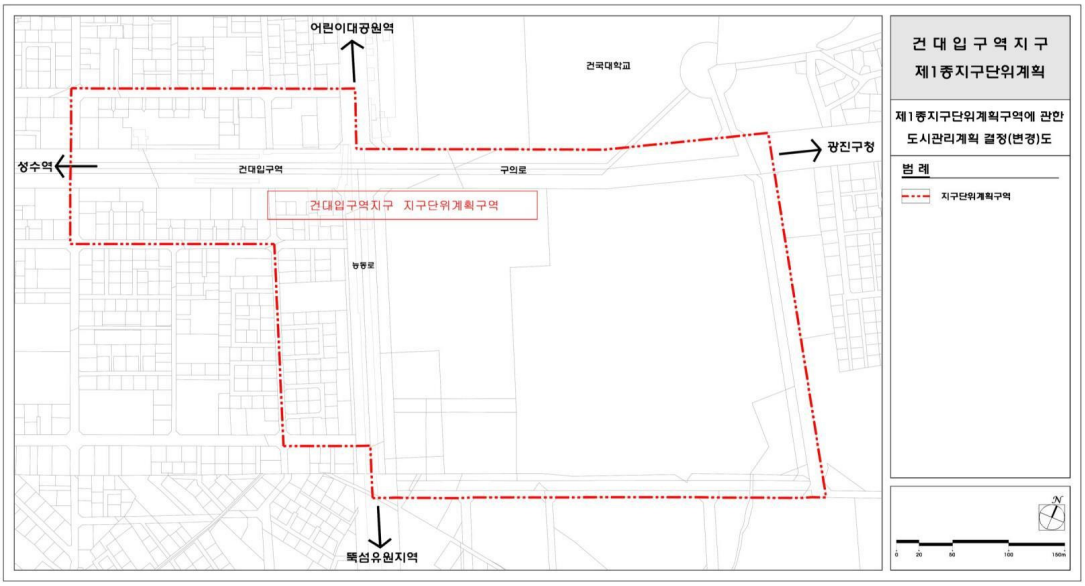

43. 군자역지구 (구 중곡)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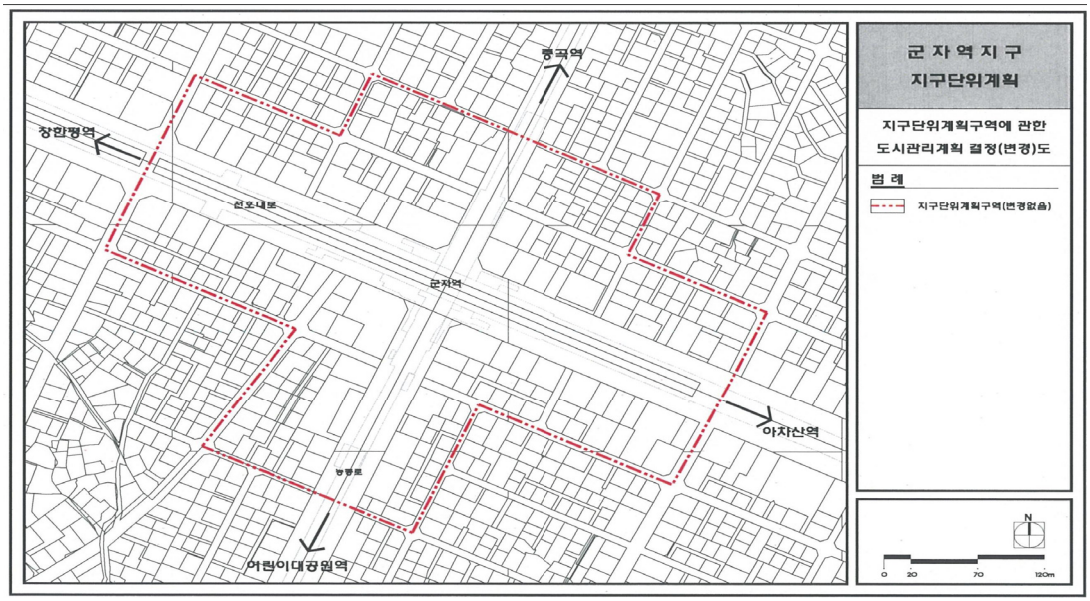

44.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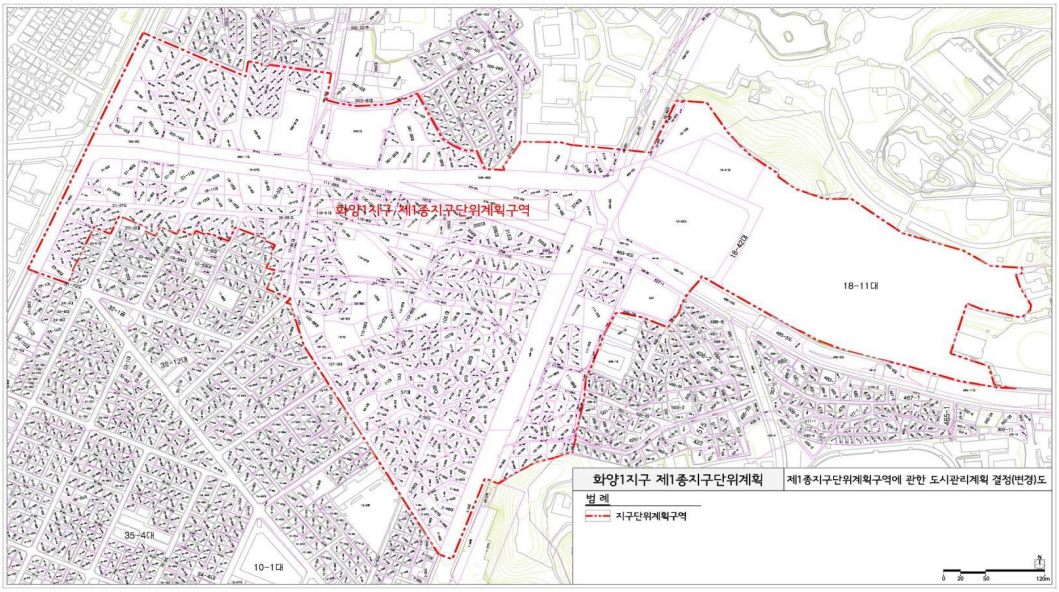

45.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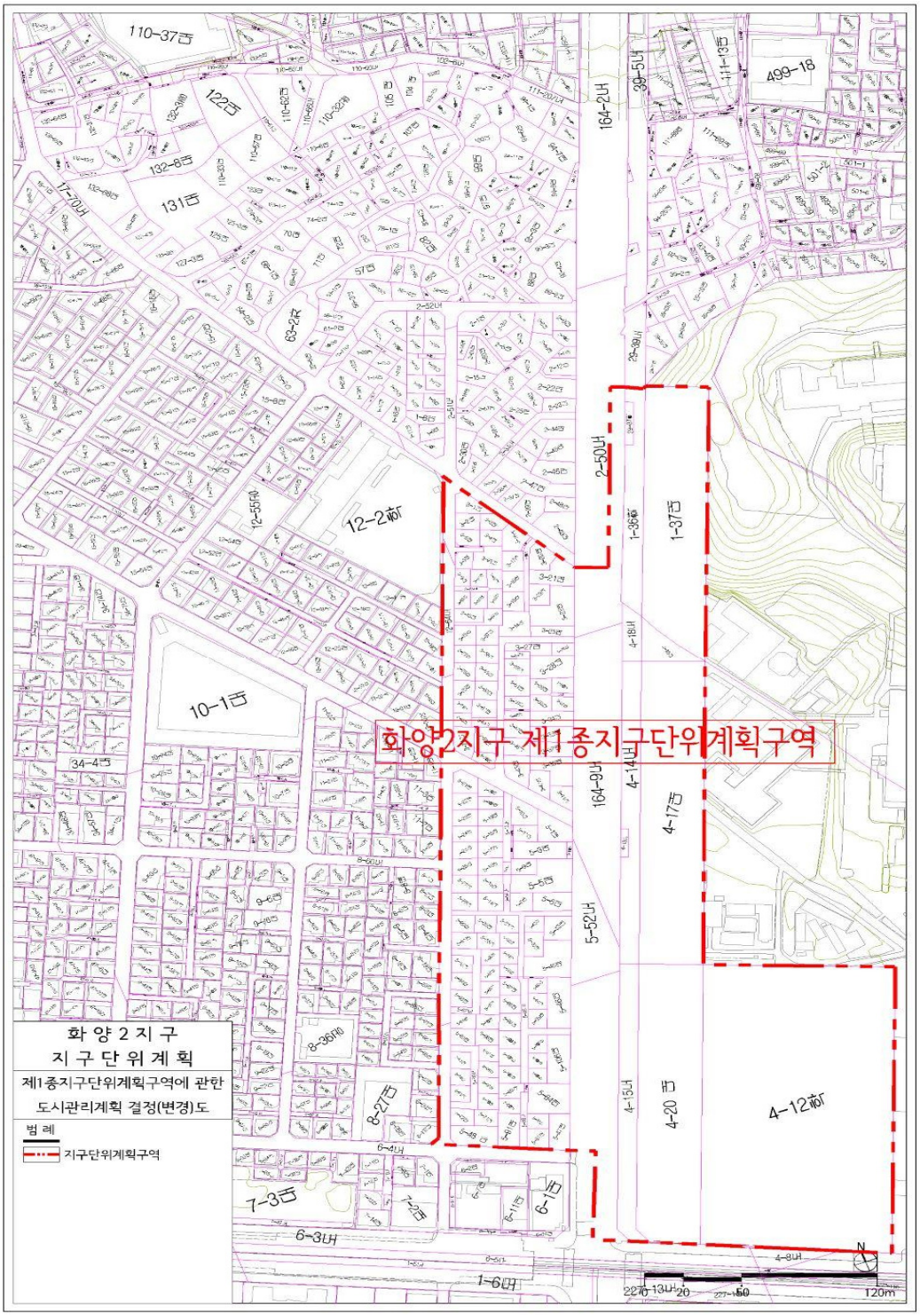

46.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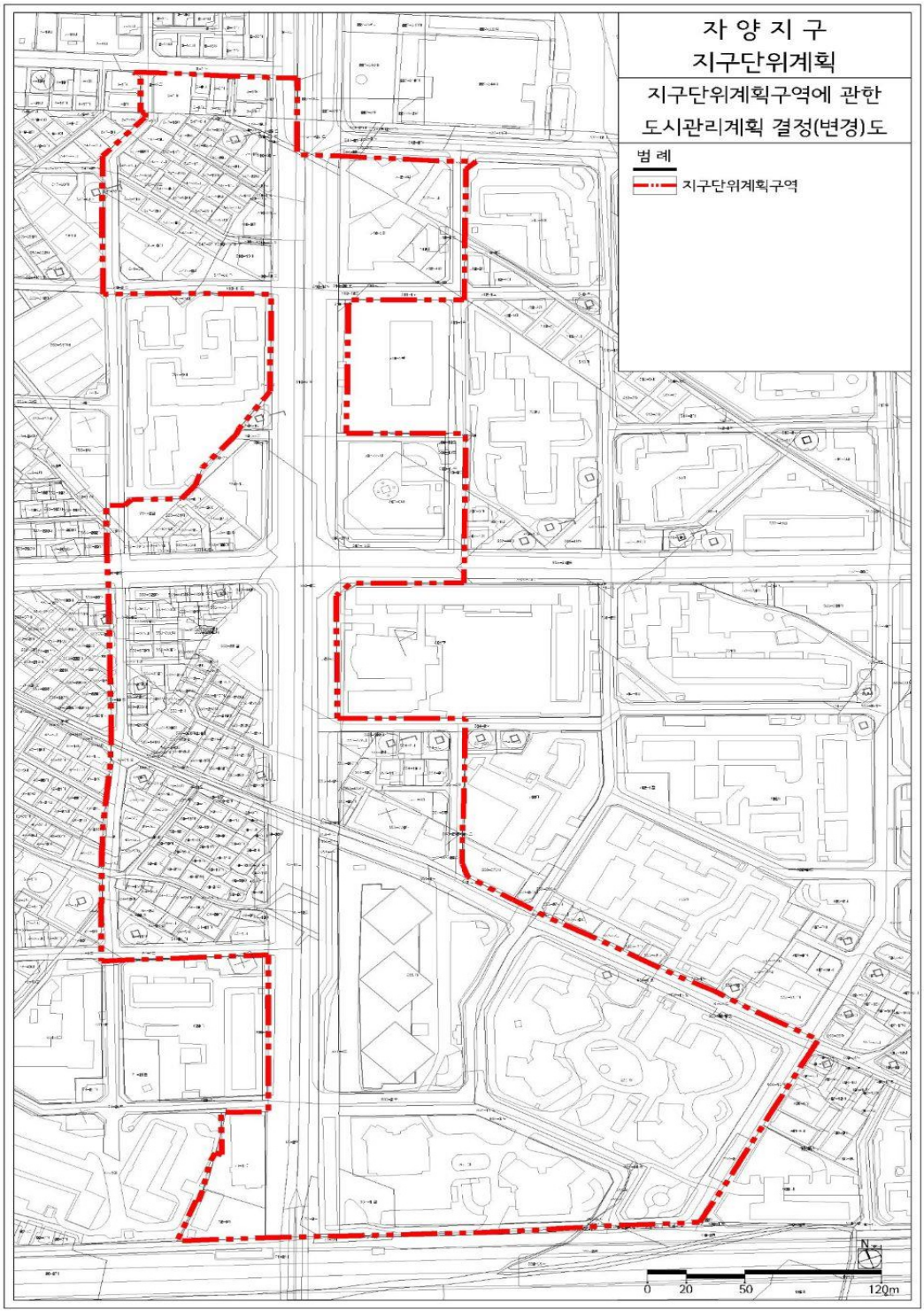

47. 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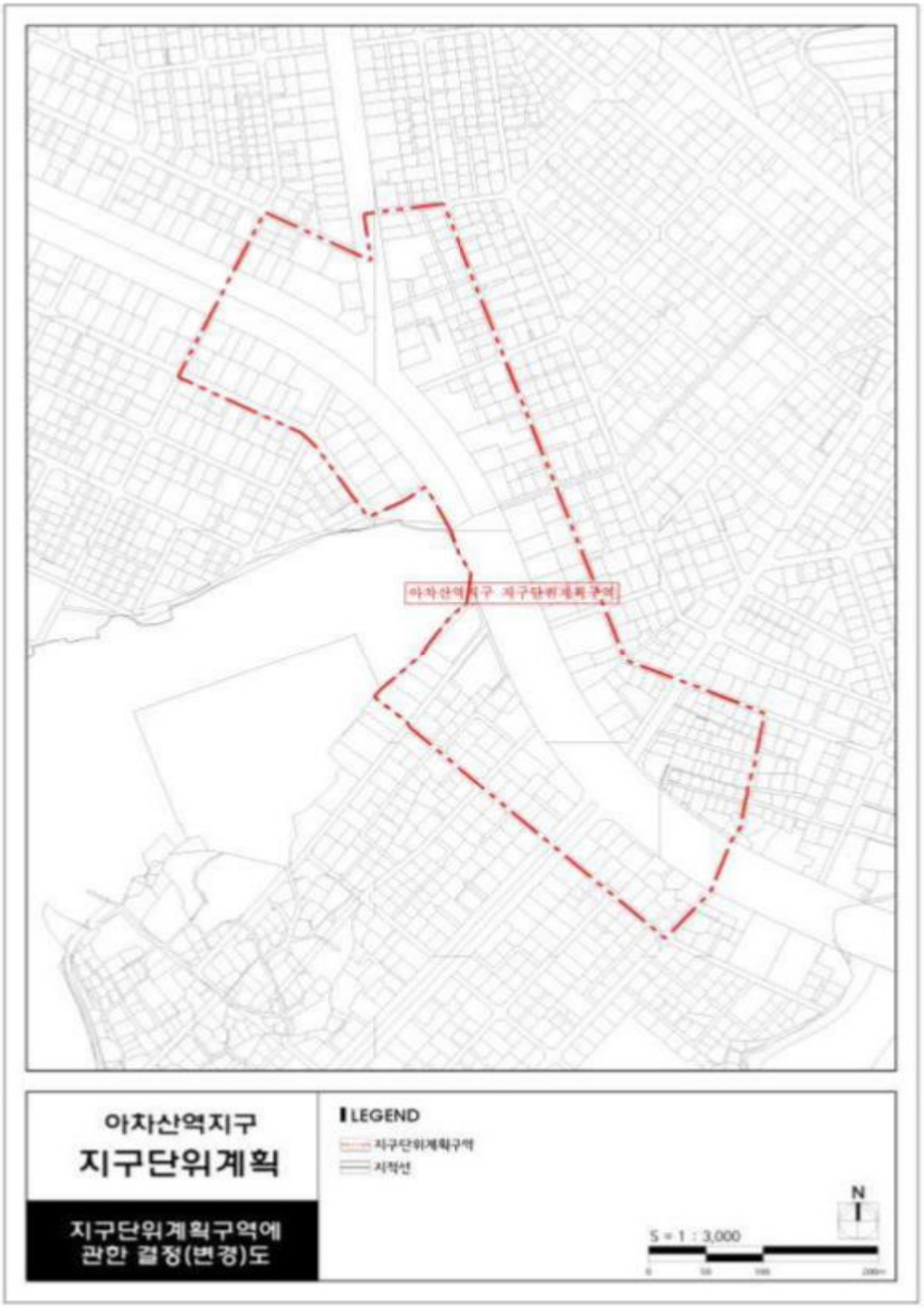

48.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49. 구의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50. 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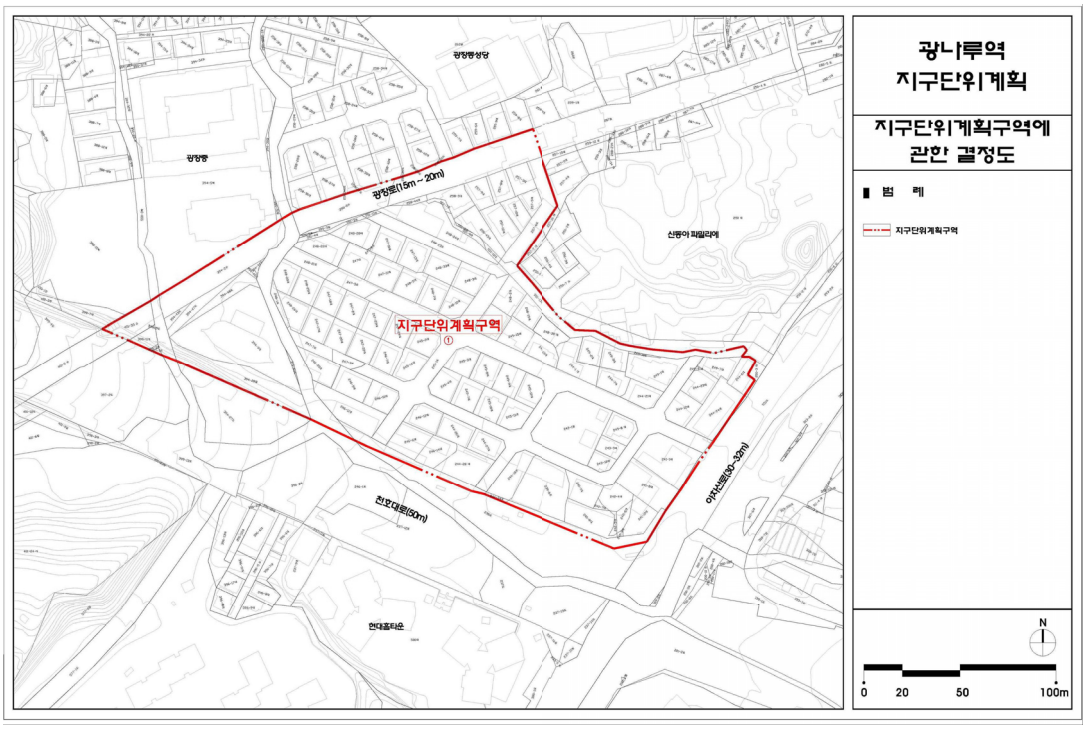

51. 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52. 구의 · 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9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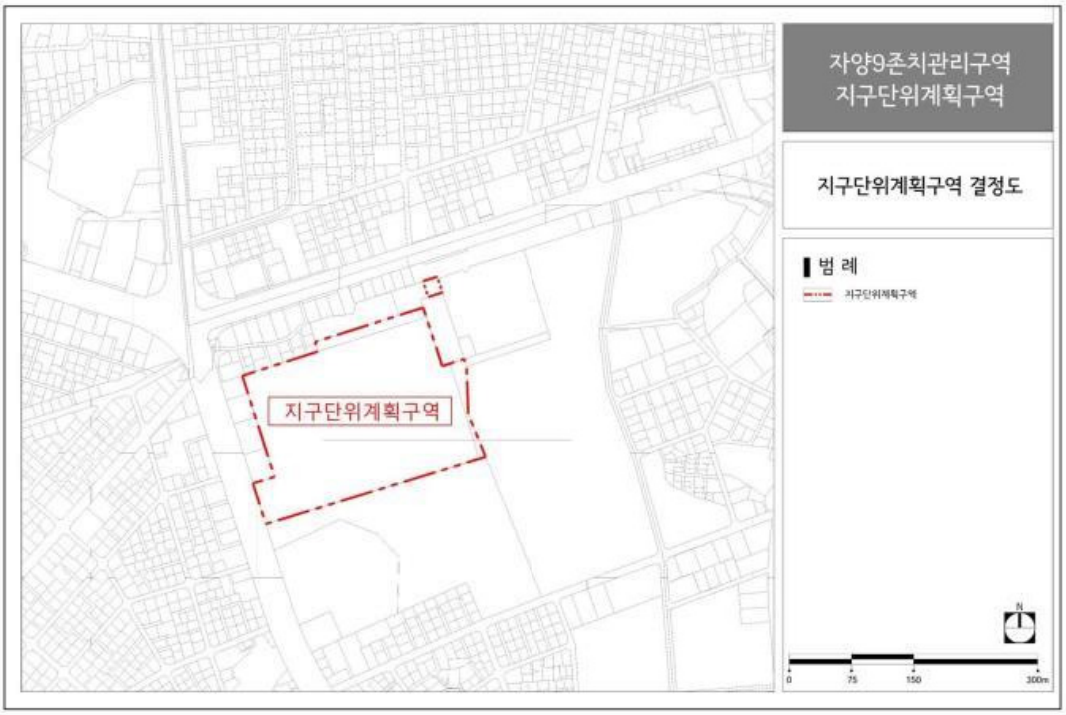

53. 구의 · 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1존치정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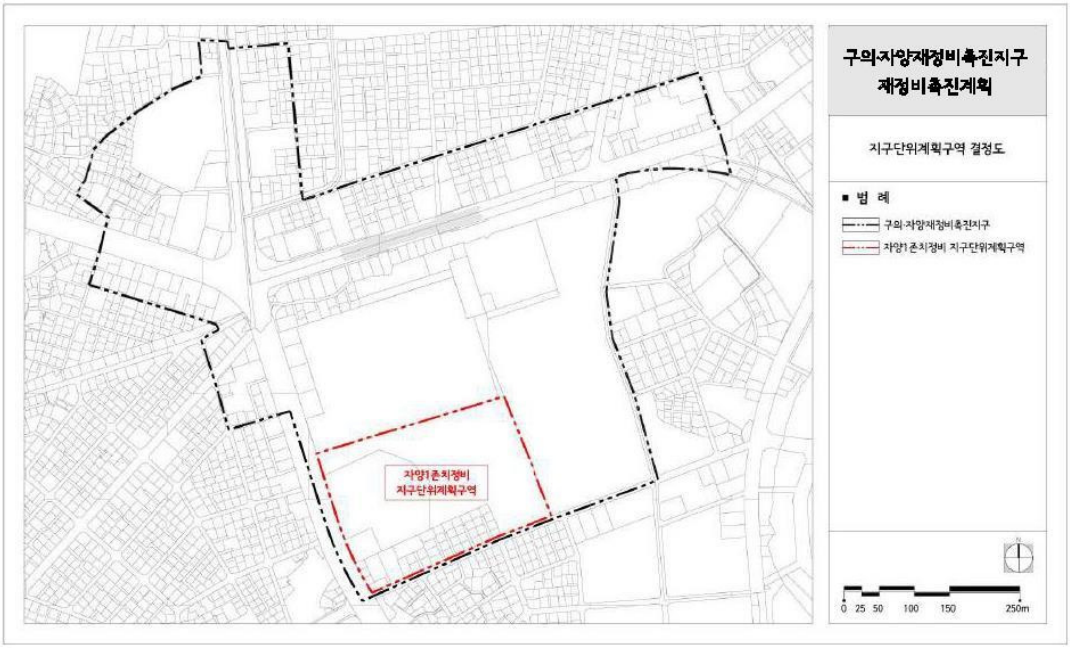

54. 경희대앞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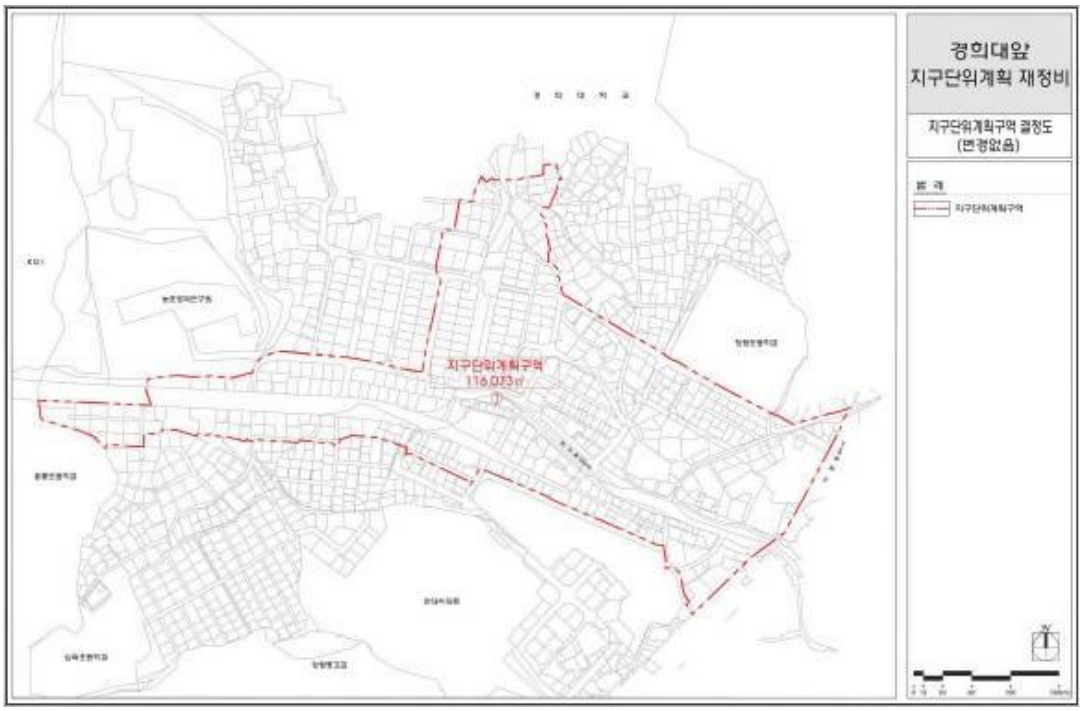

55.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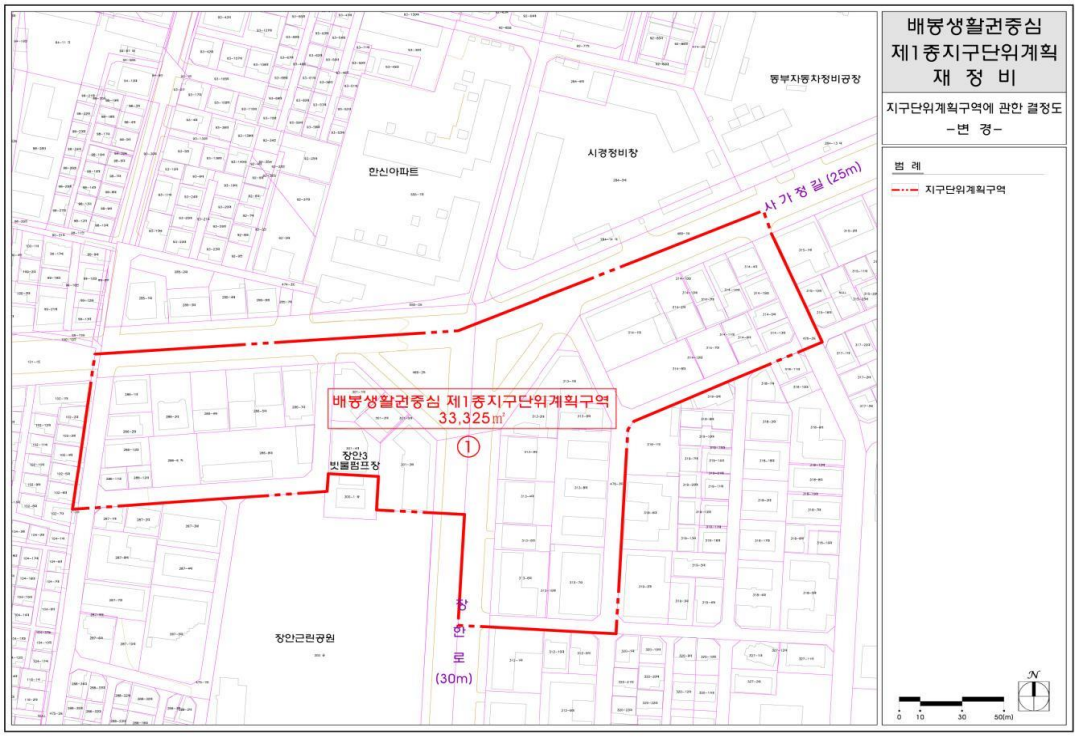

56. 서울시립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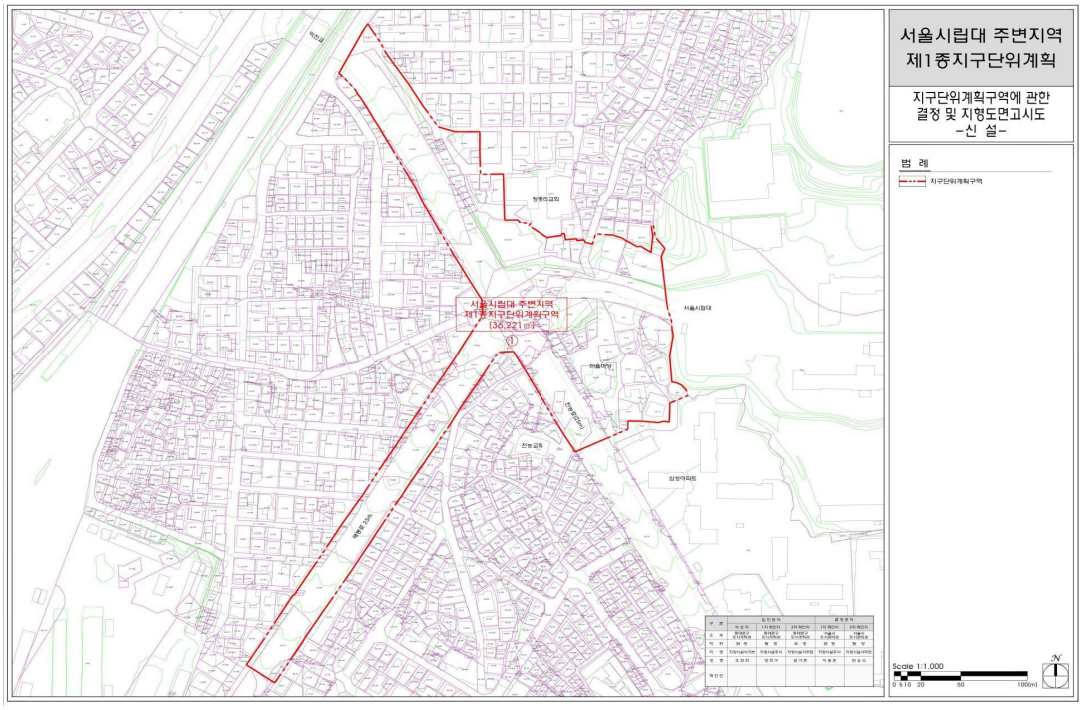

57.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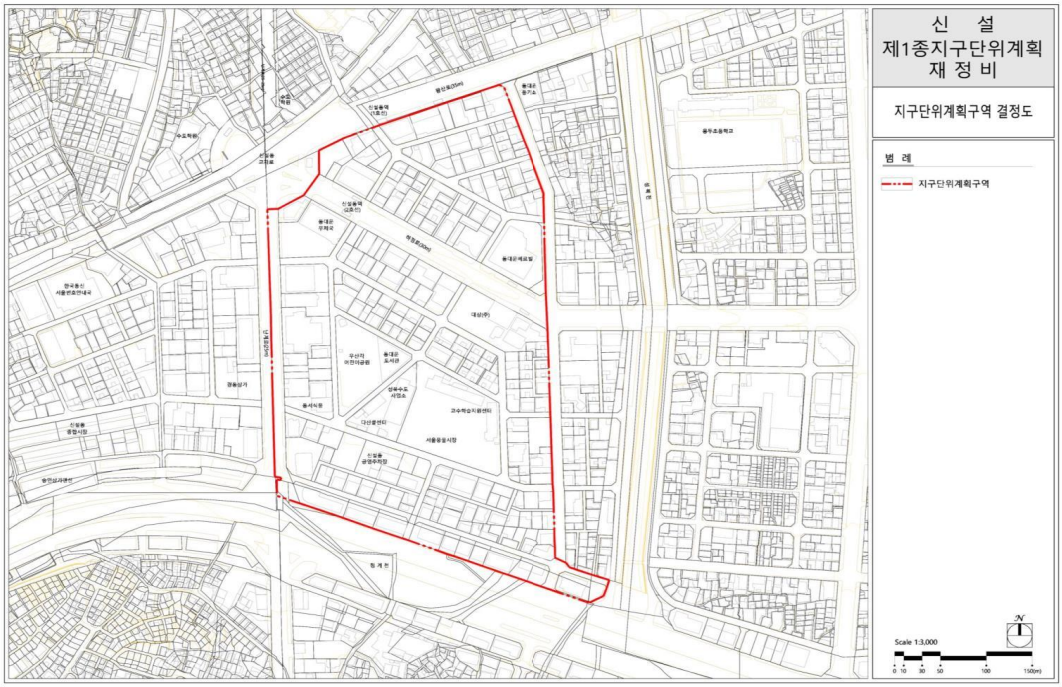

58. 신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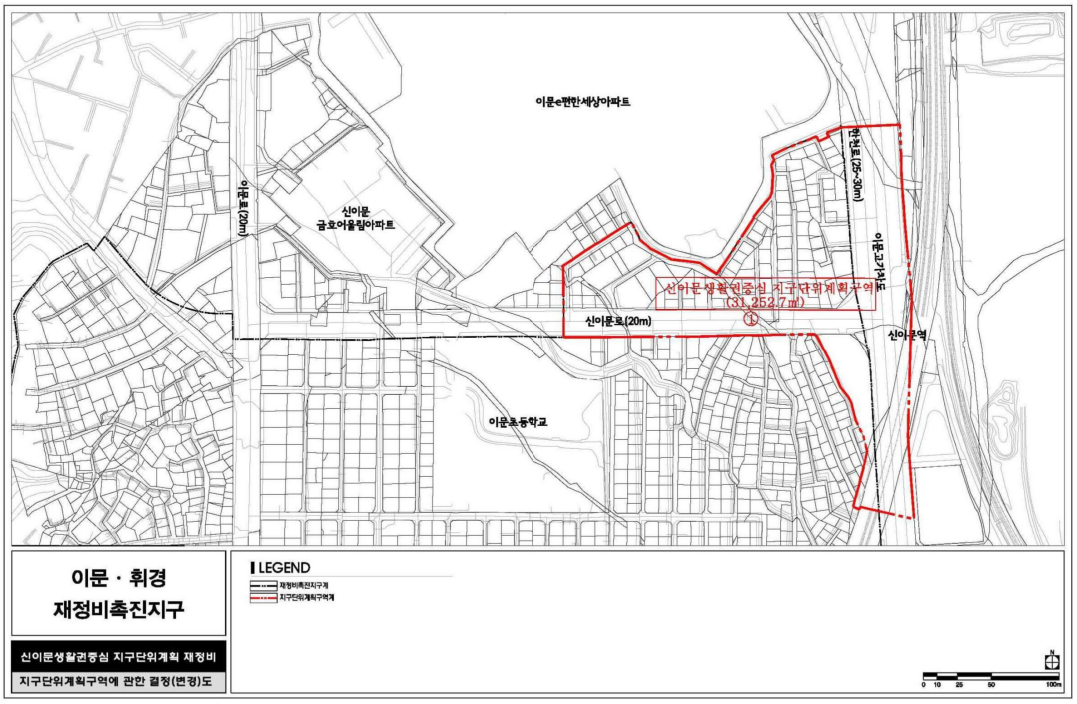

59. 이문동 22-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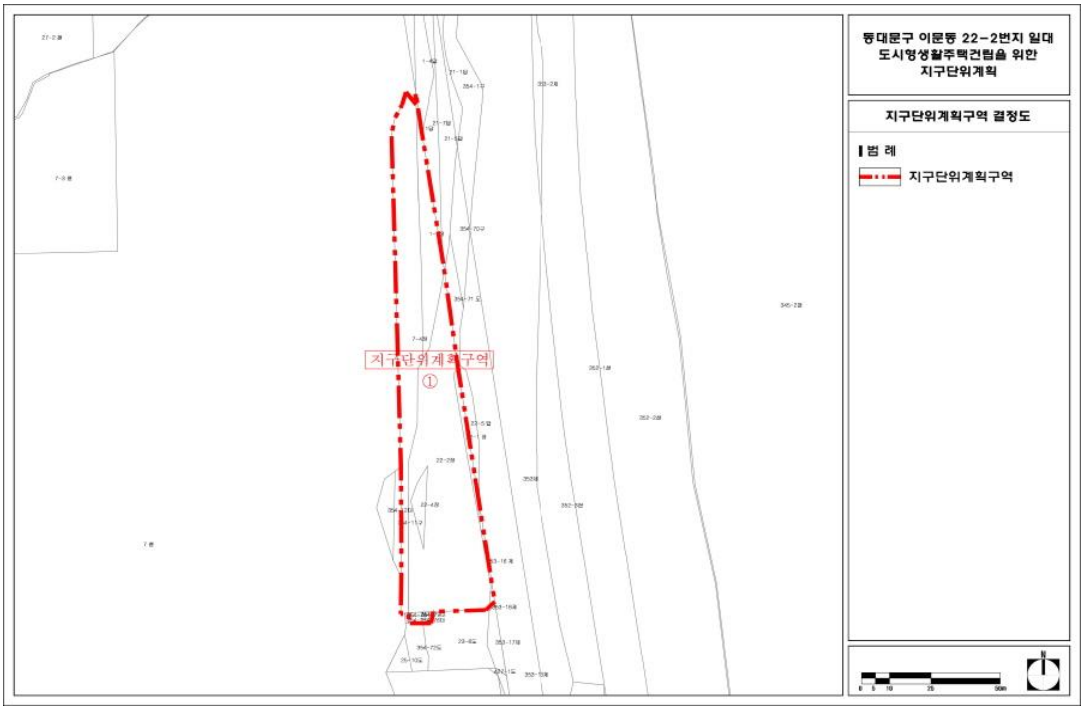

60. 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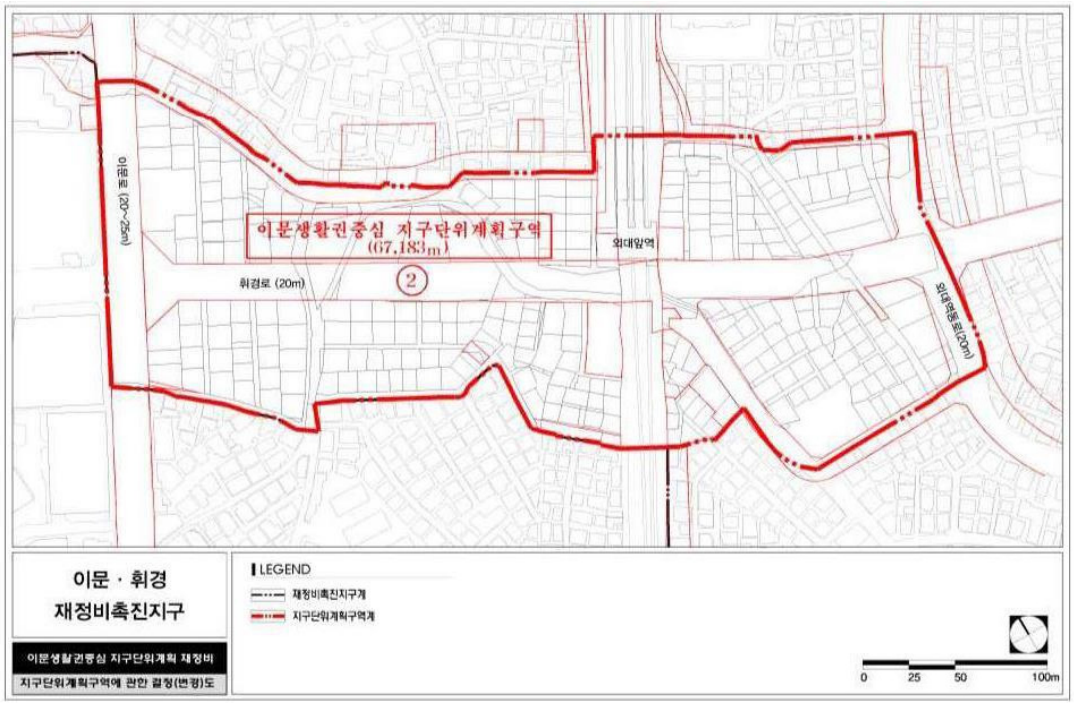

61. 전농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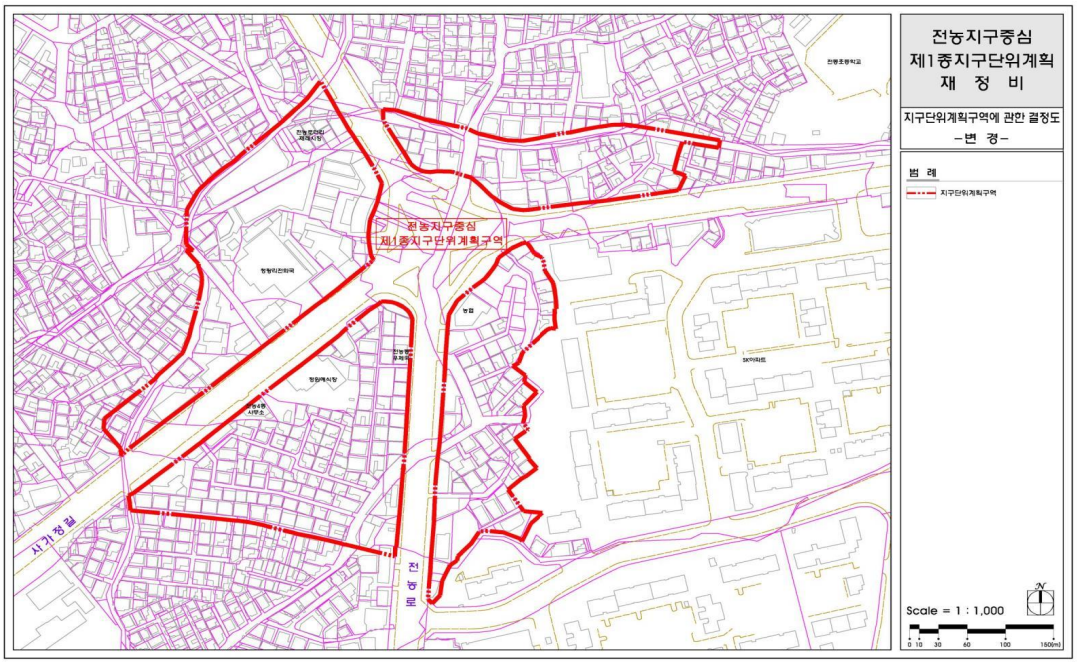

62.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63. 휘경동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64.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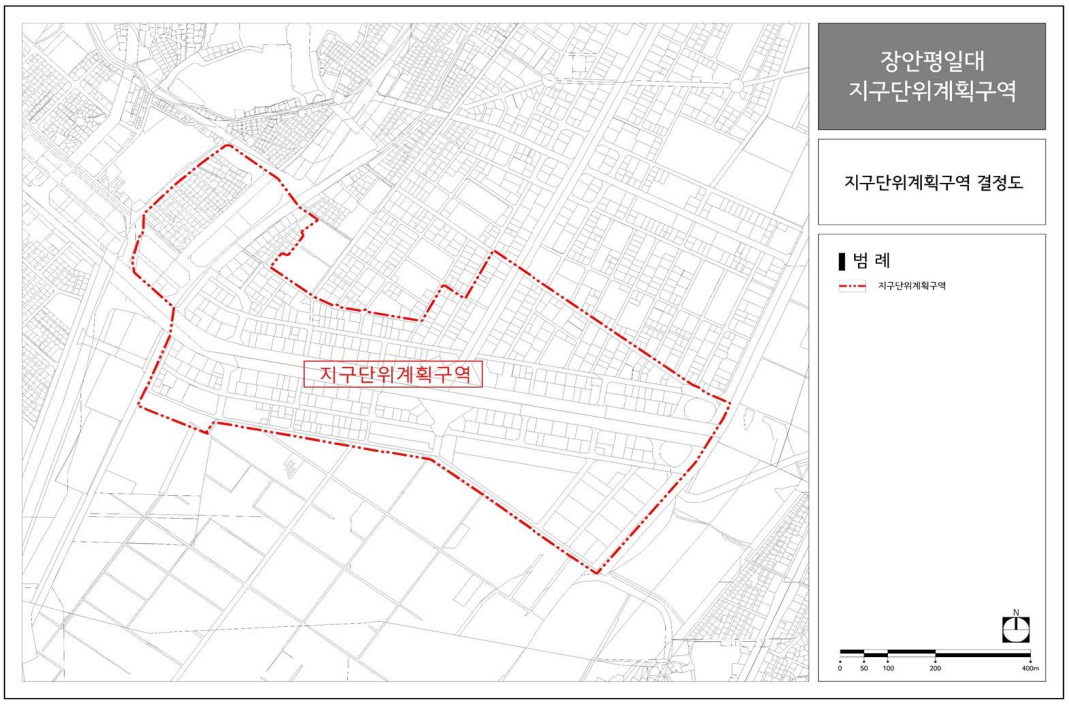

65. 망우동 83번지 일대(소규모 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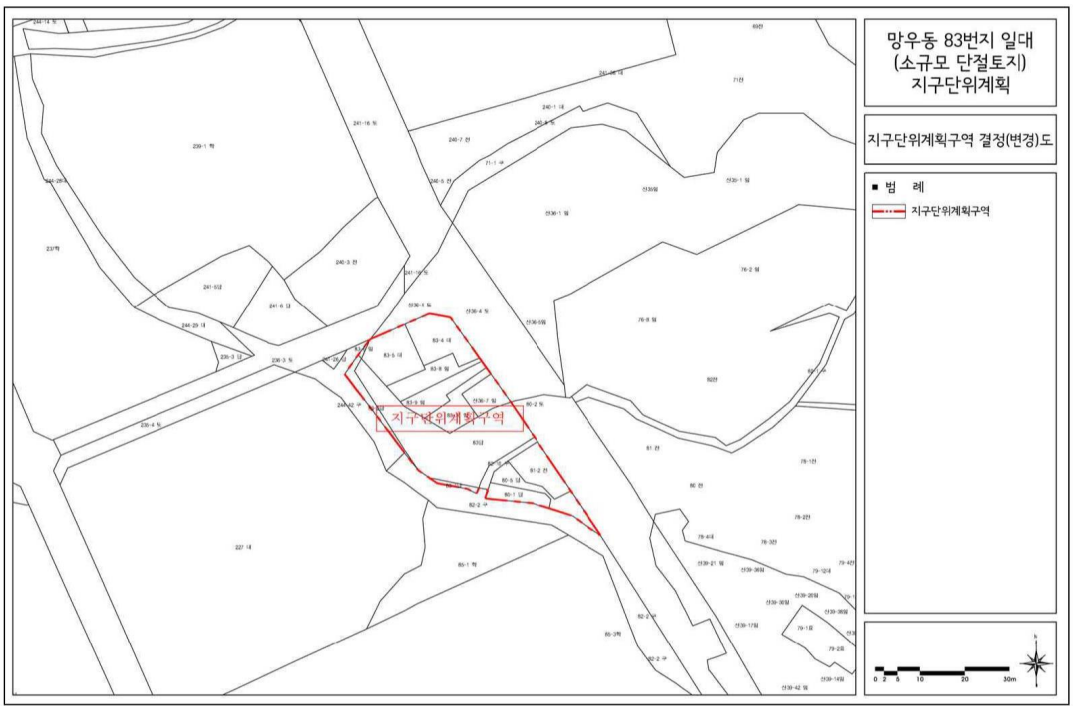

66. 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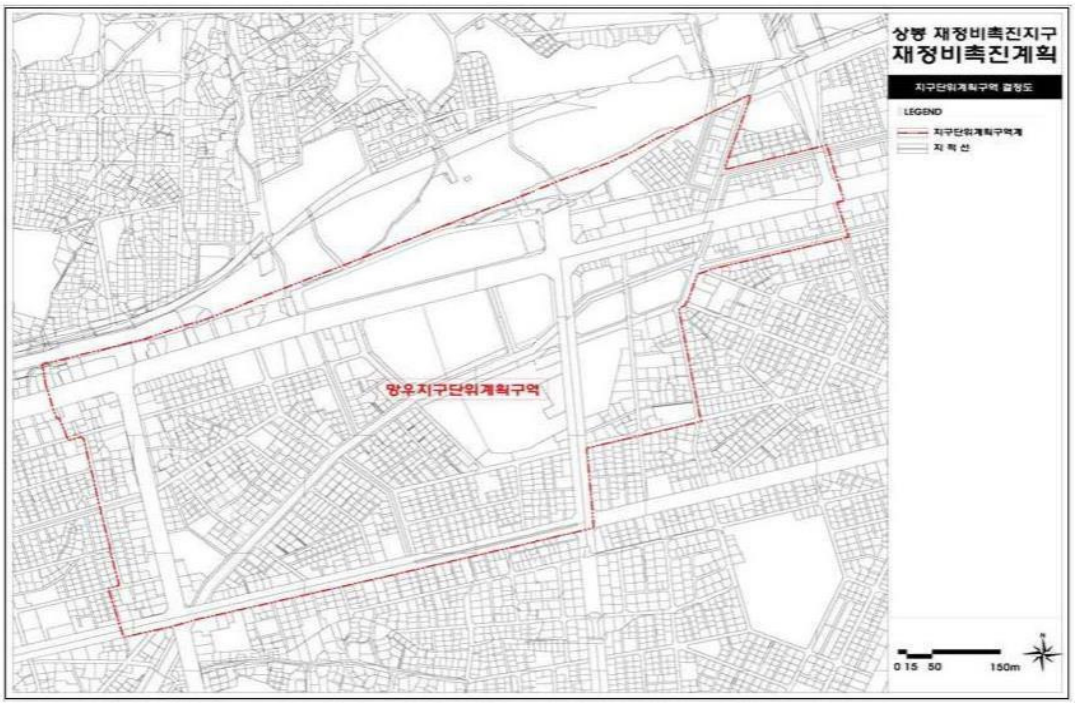

67. 면목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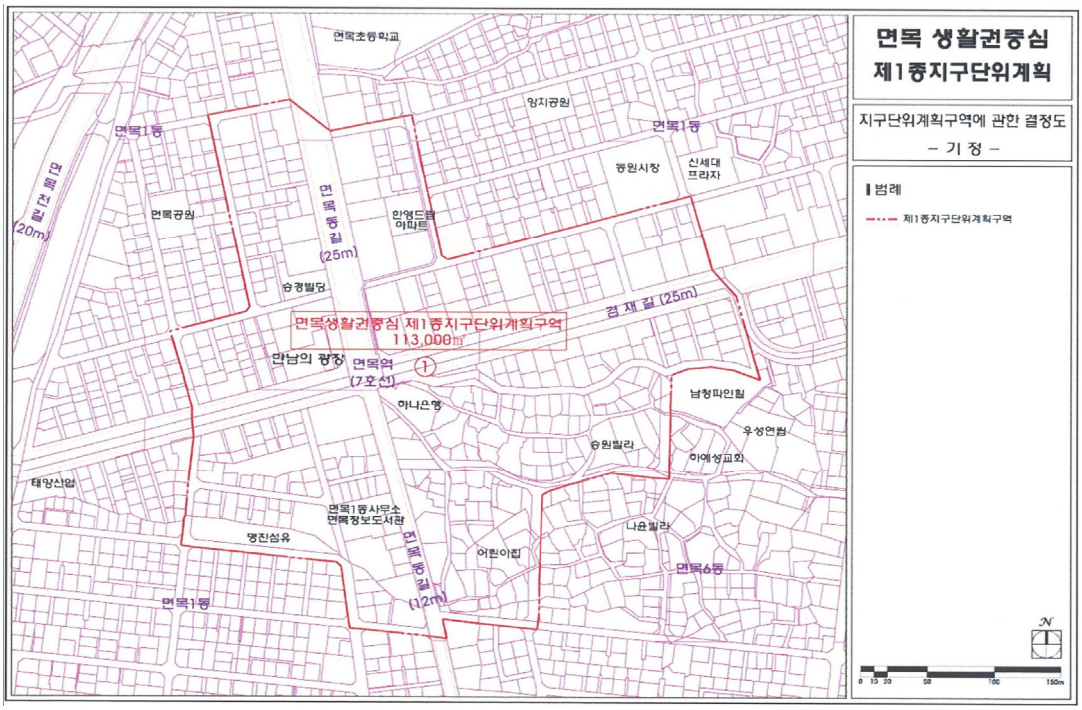

68.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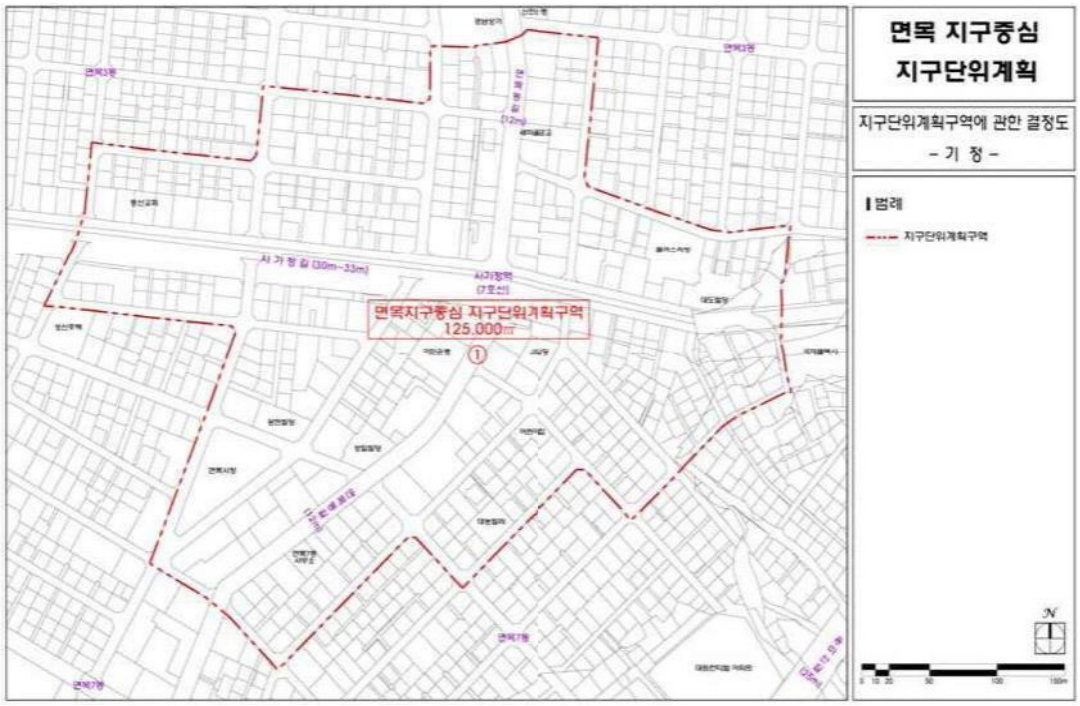

69. 묵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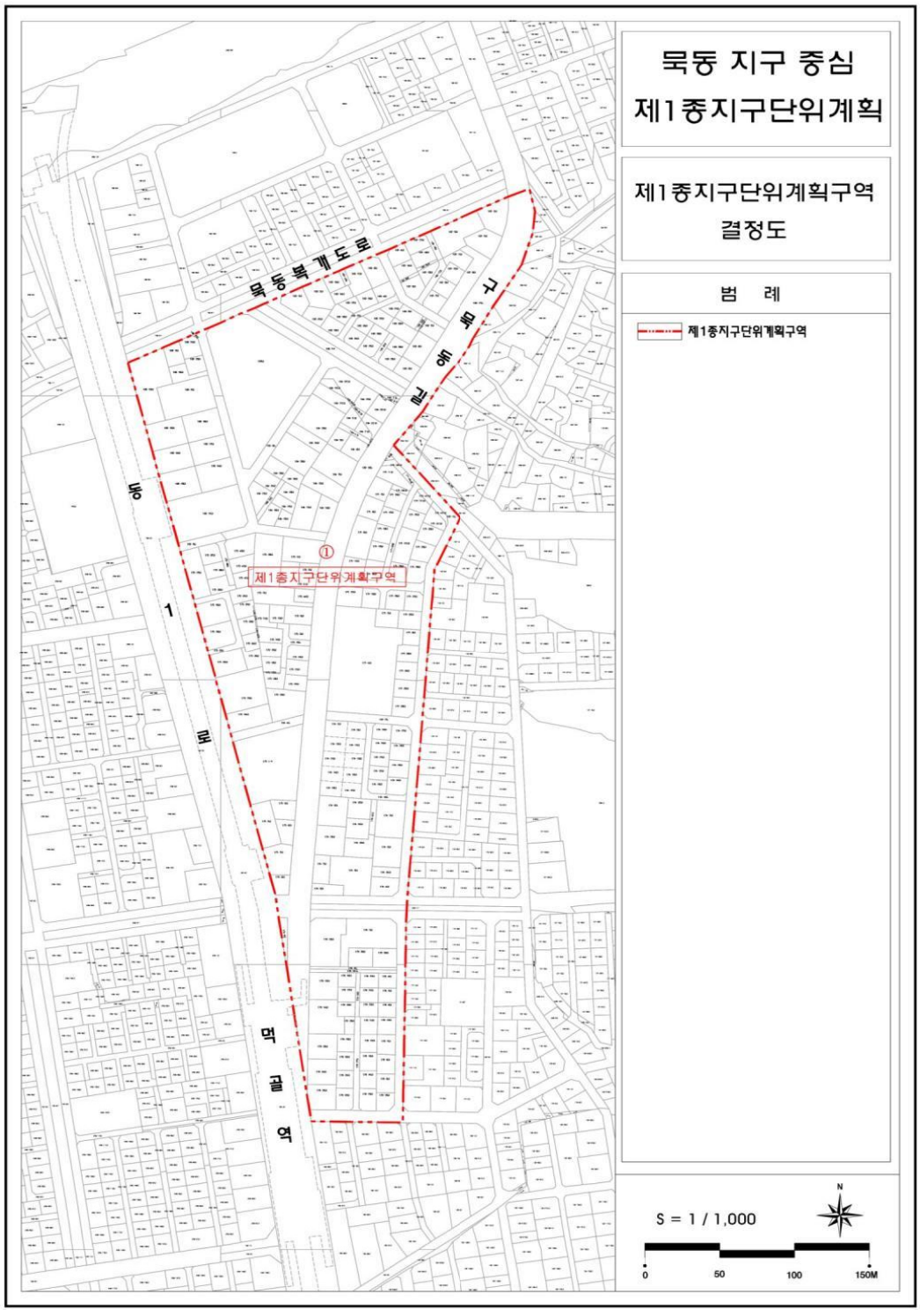

70. 상봉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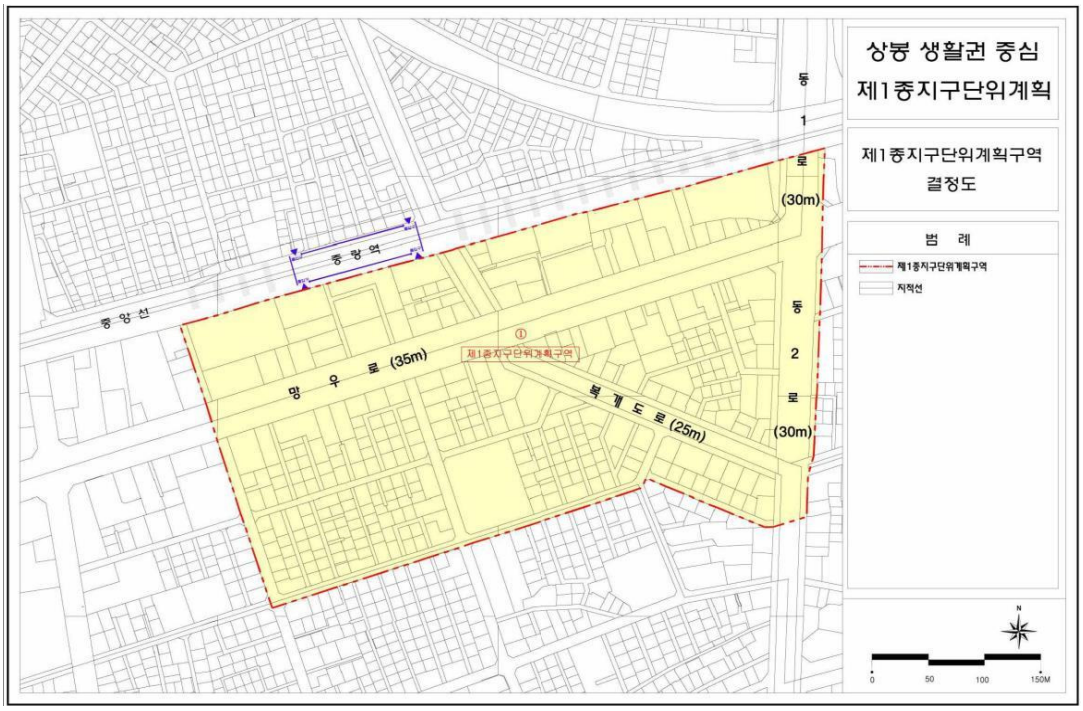

71. 신내동 385번지 일대(소규모 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72. 안새우개 · 새우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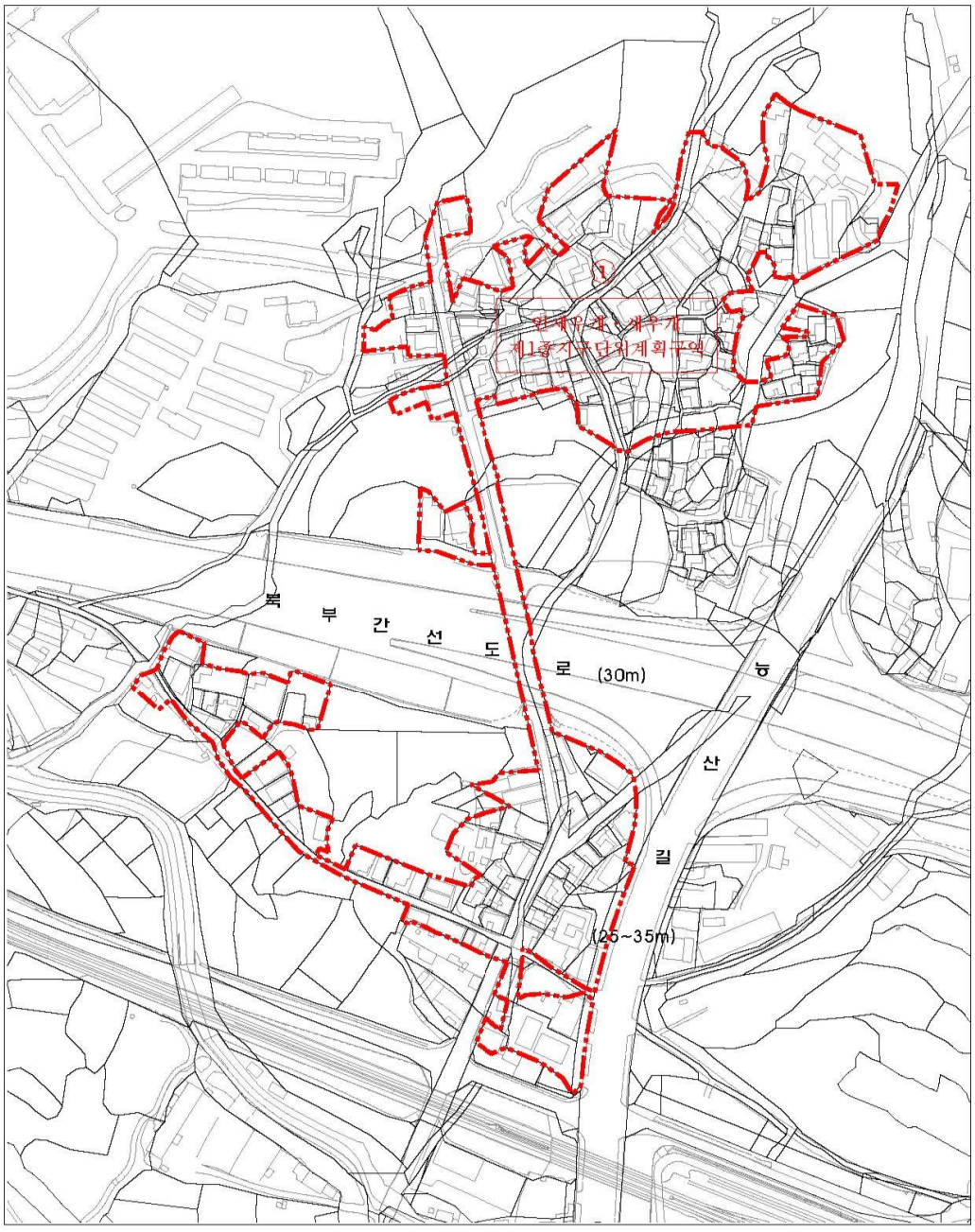

73. 중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74. 중화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75. 길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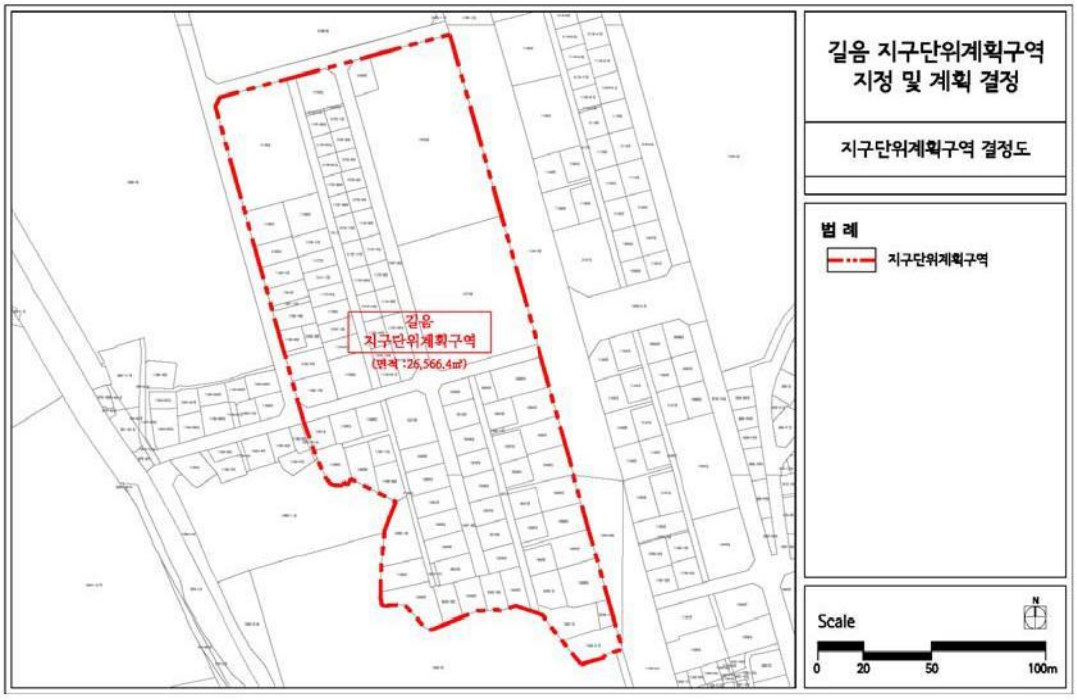

76. 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77. 동선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78. 동소문동2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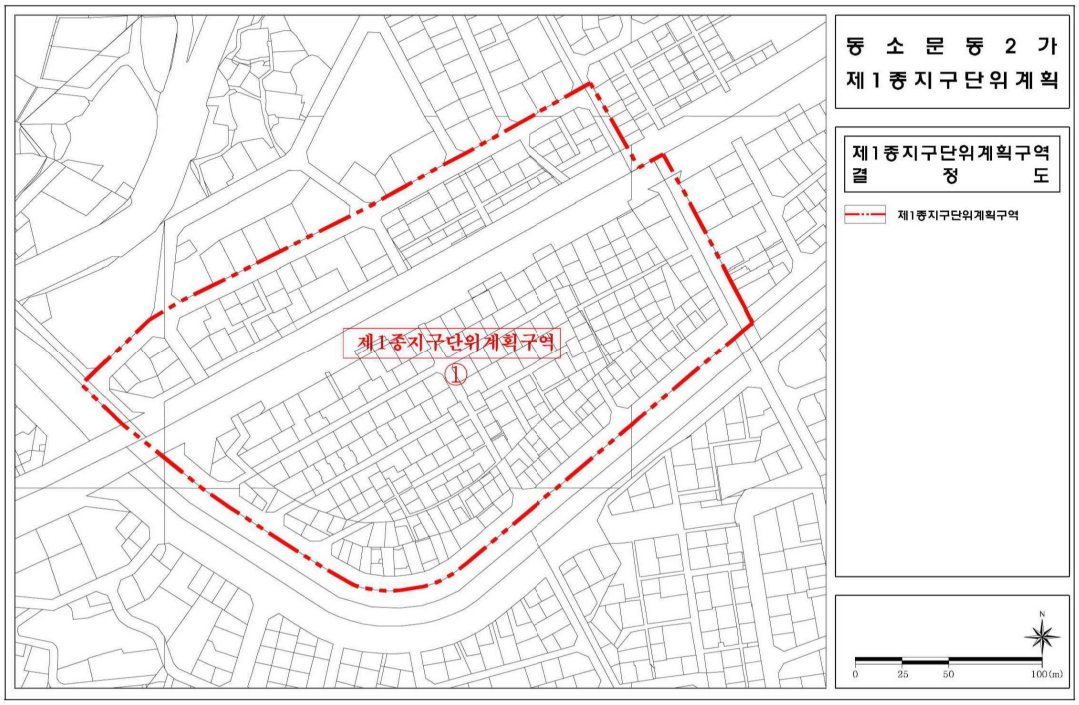

79. 미아지구상세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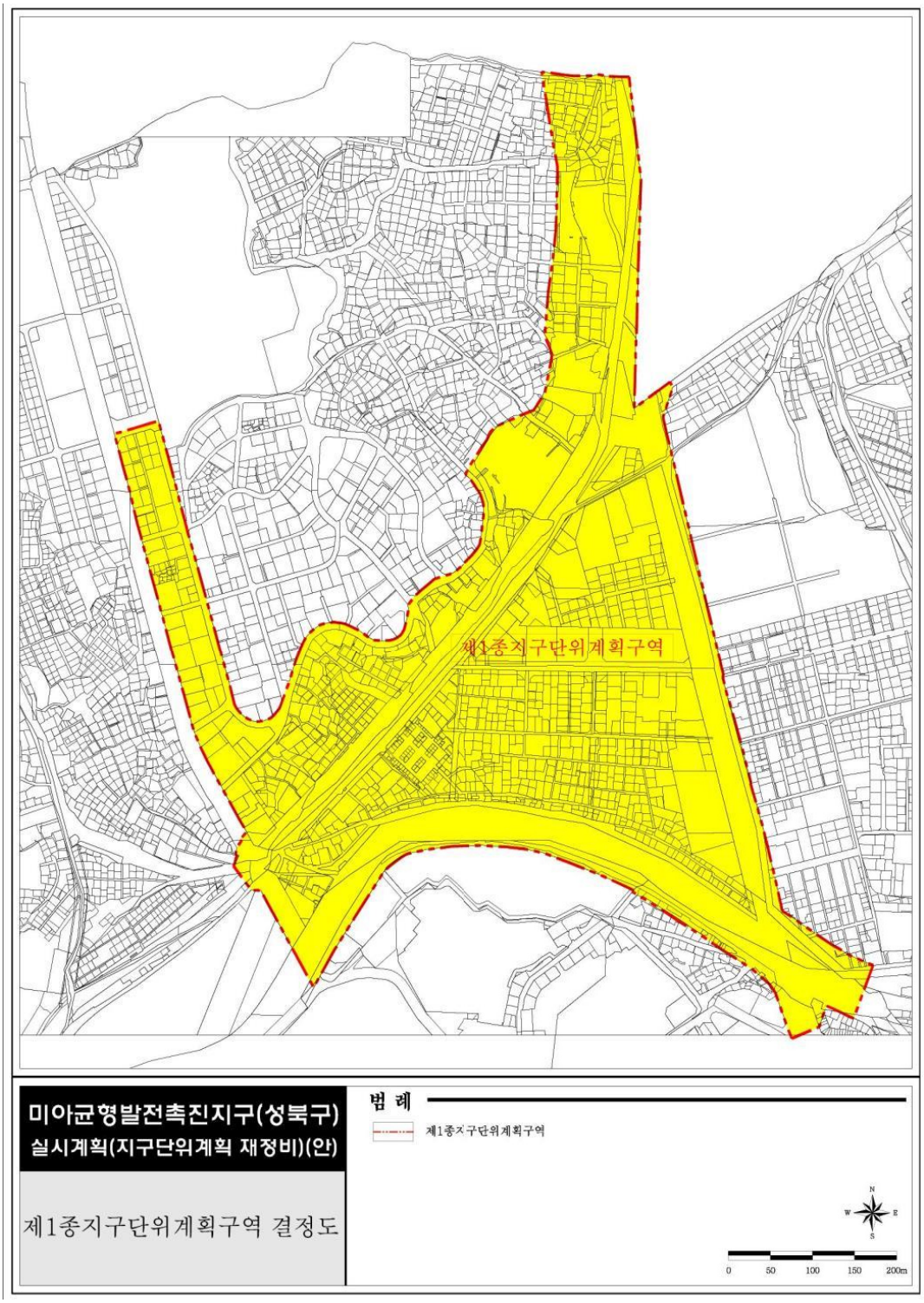

80. 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81.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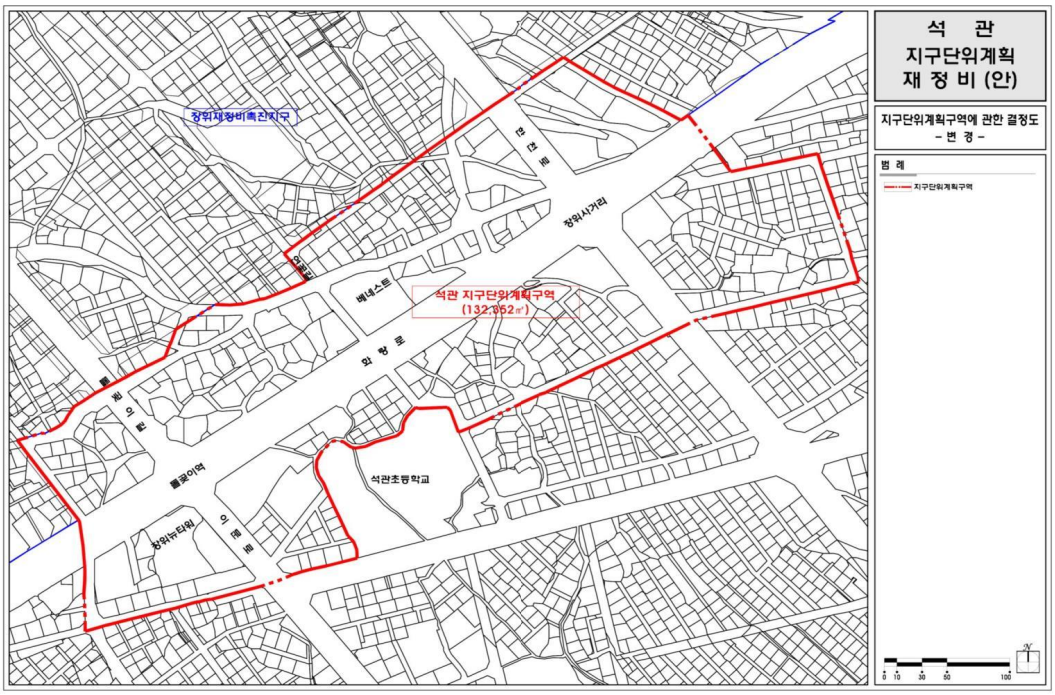

82.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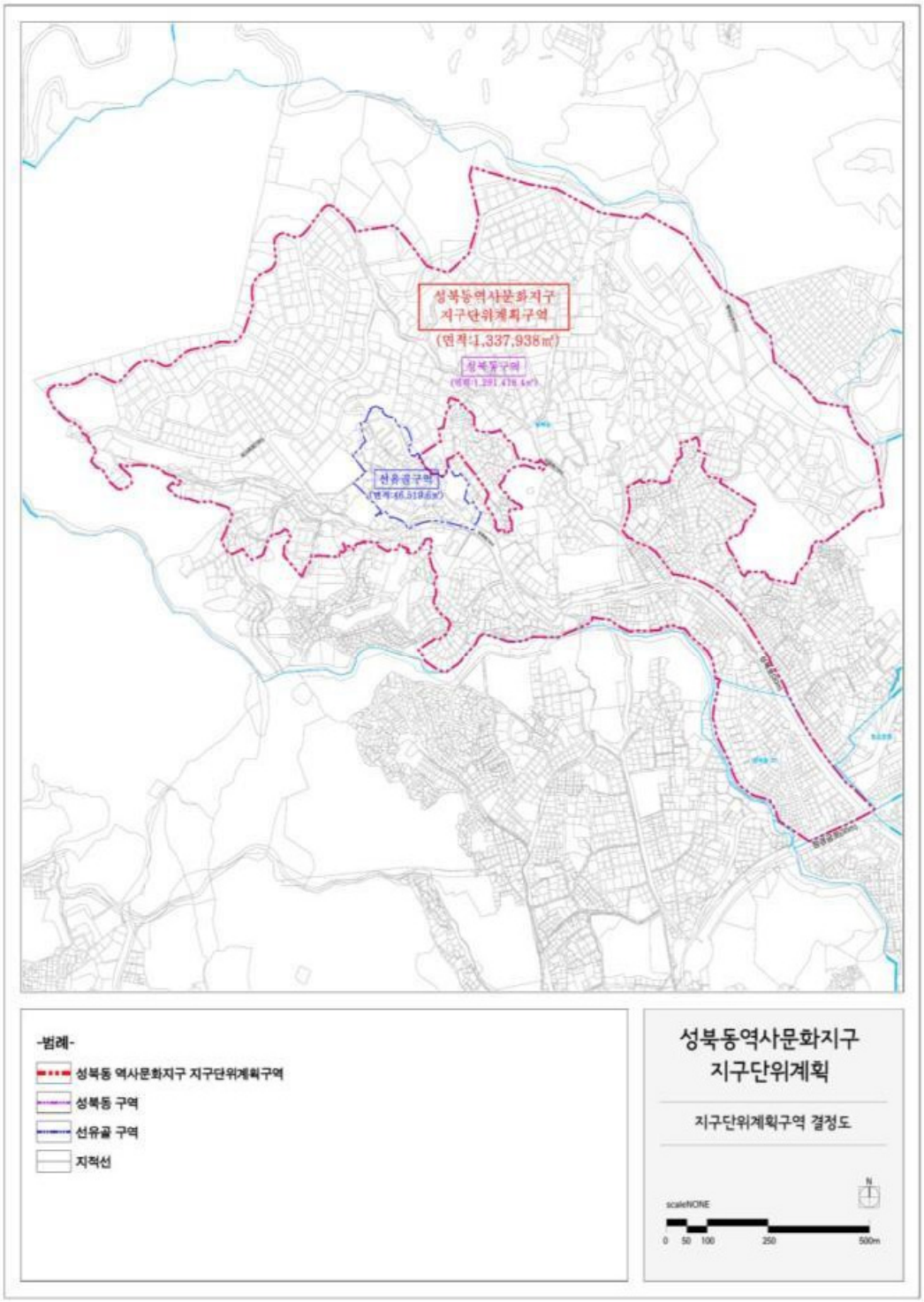

83. 성신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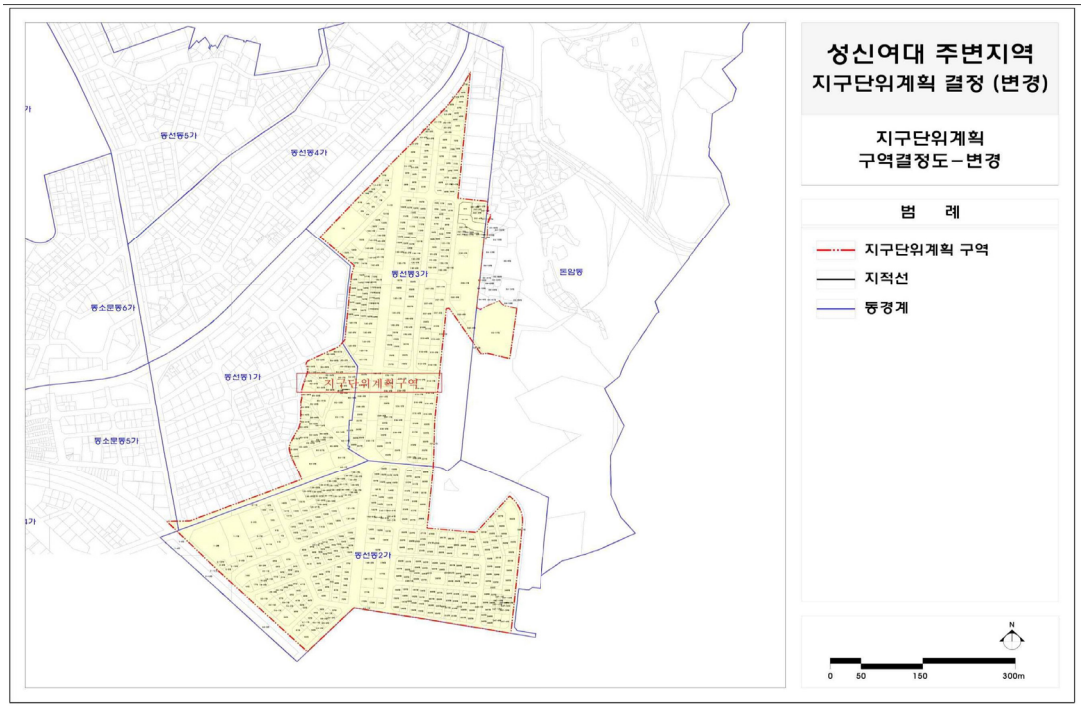

84. 월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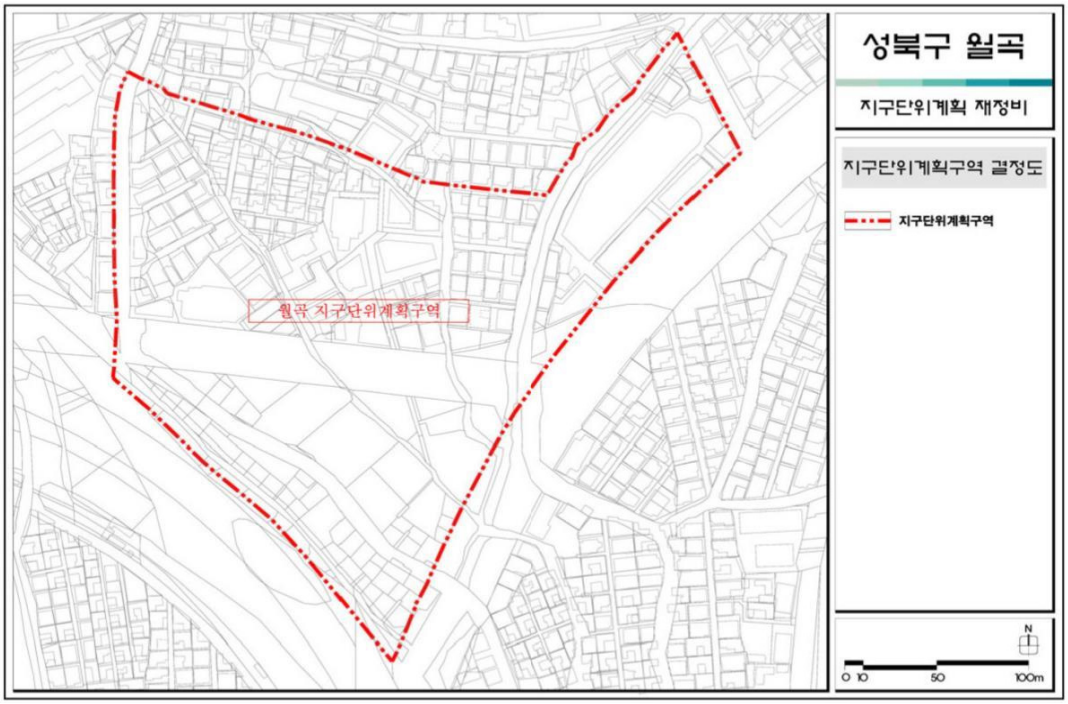

85. 장수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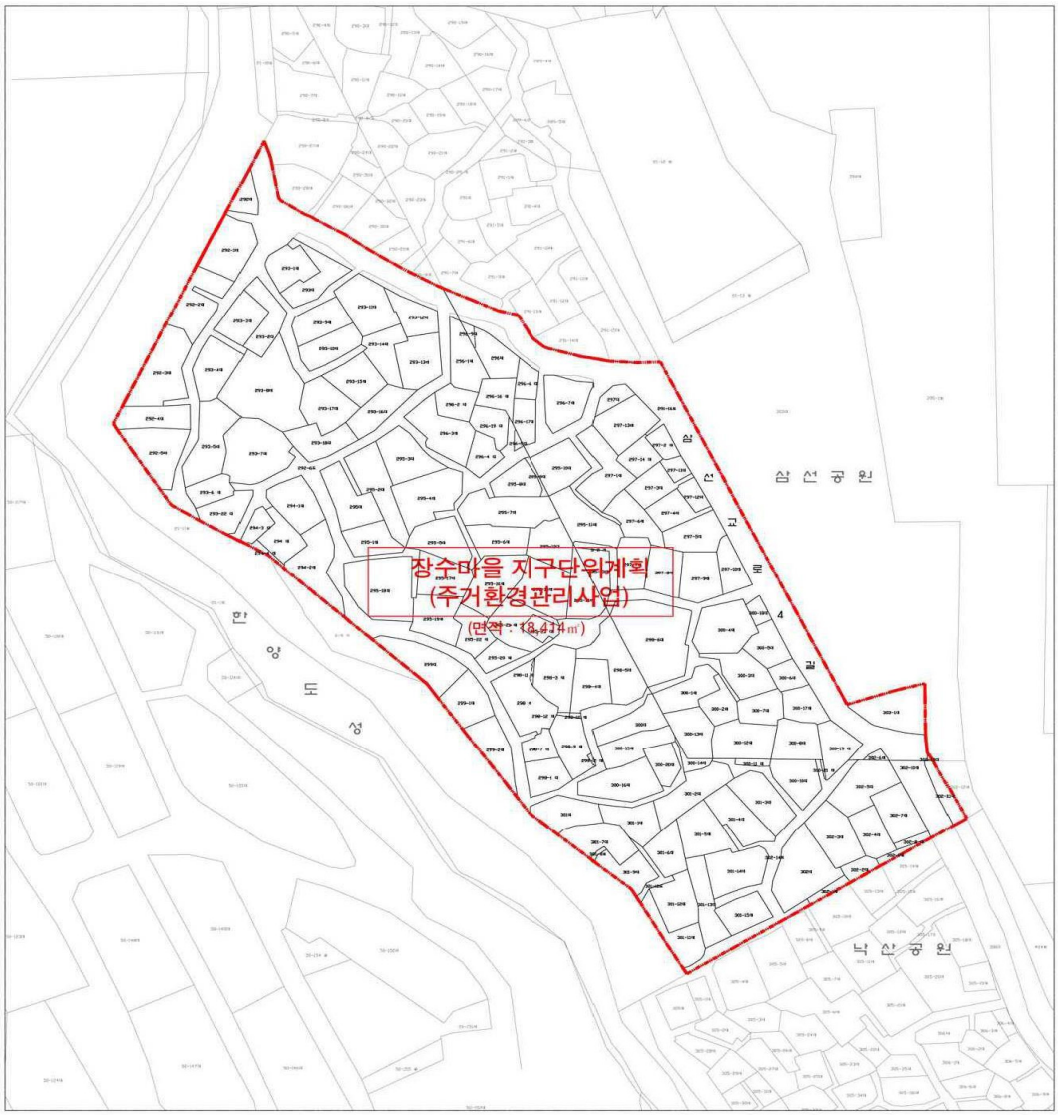

범 례

지구단위계획구역

장수마을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N

0 10 25 50 80m

86. 장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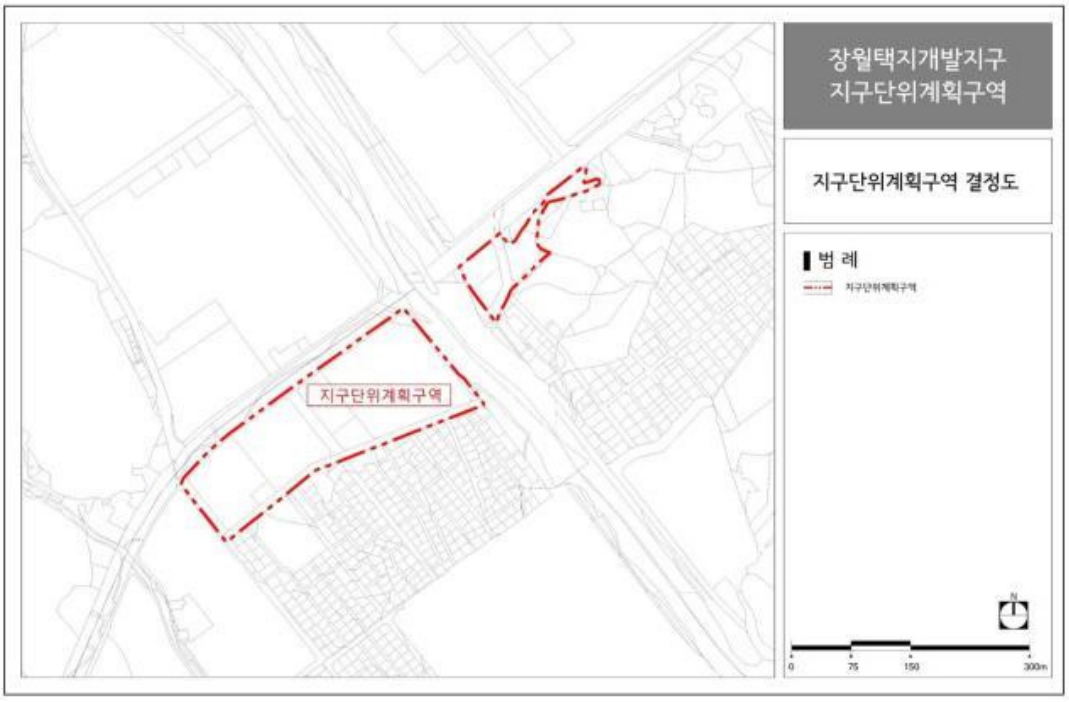

87. 정릉3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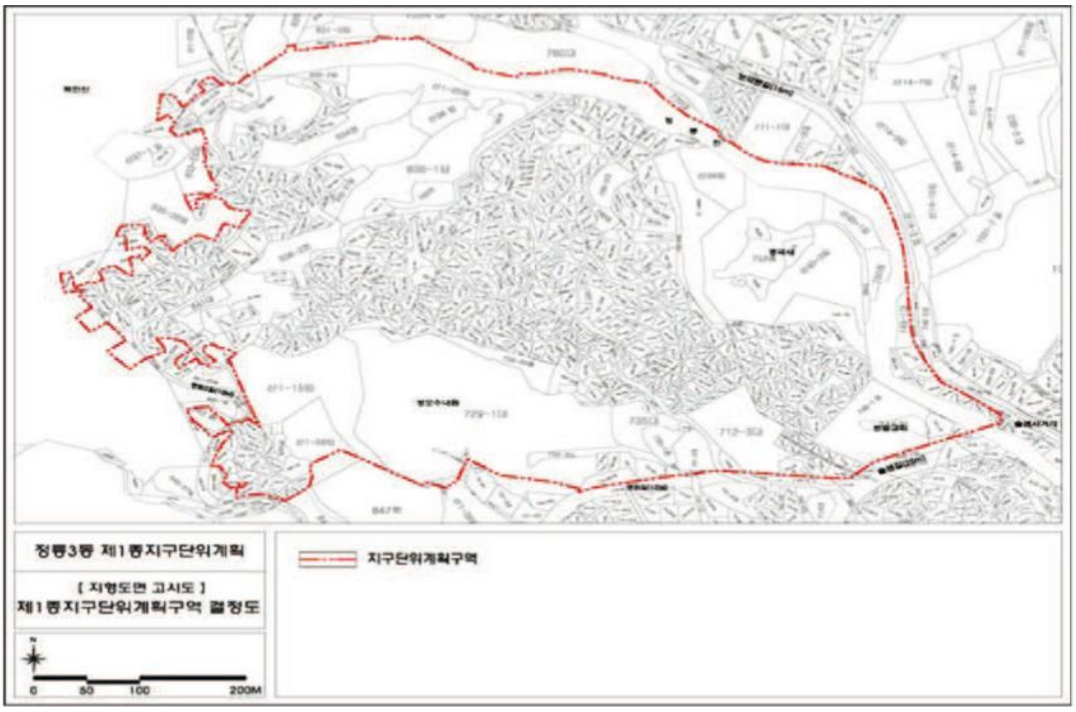

88. 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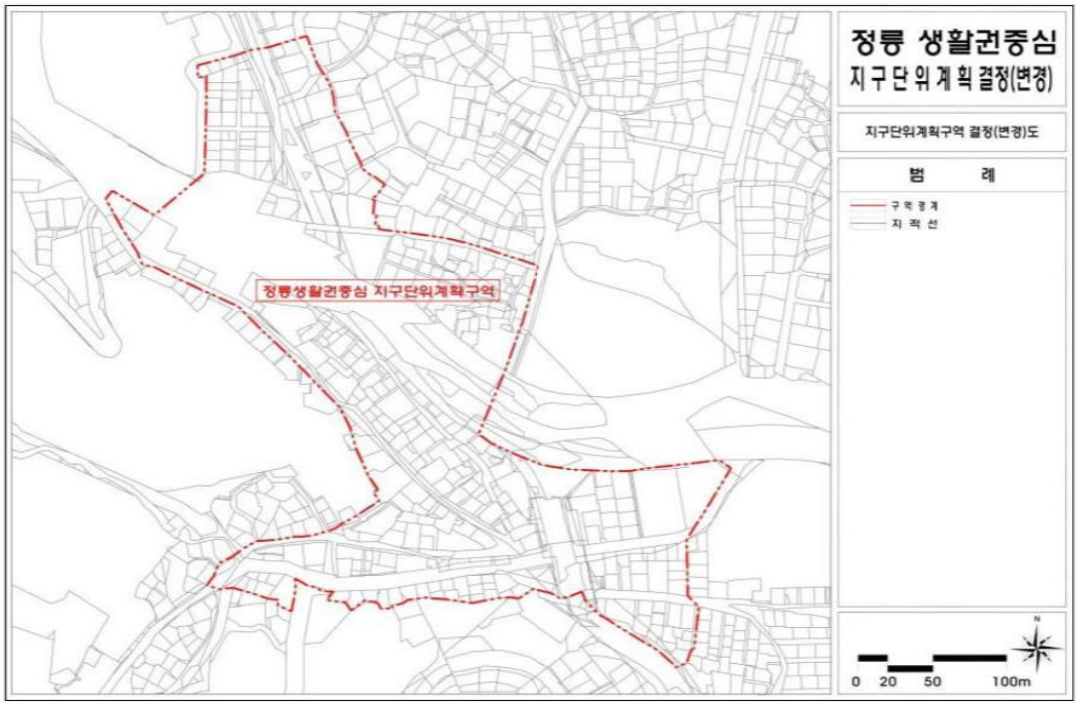

89. 정릉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90. 서울 정릉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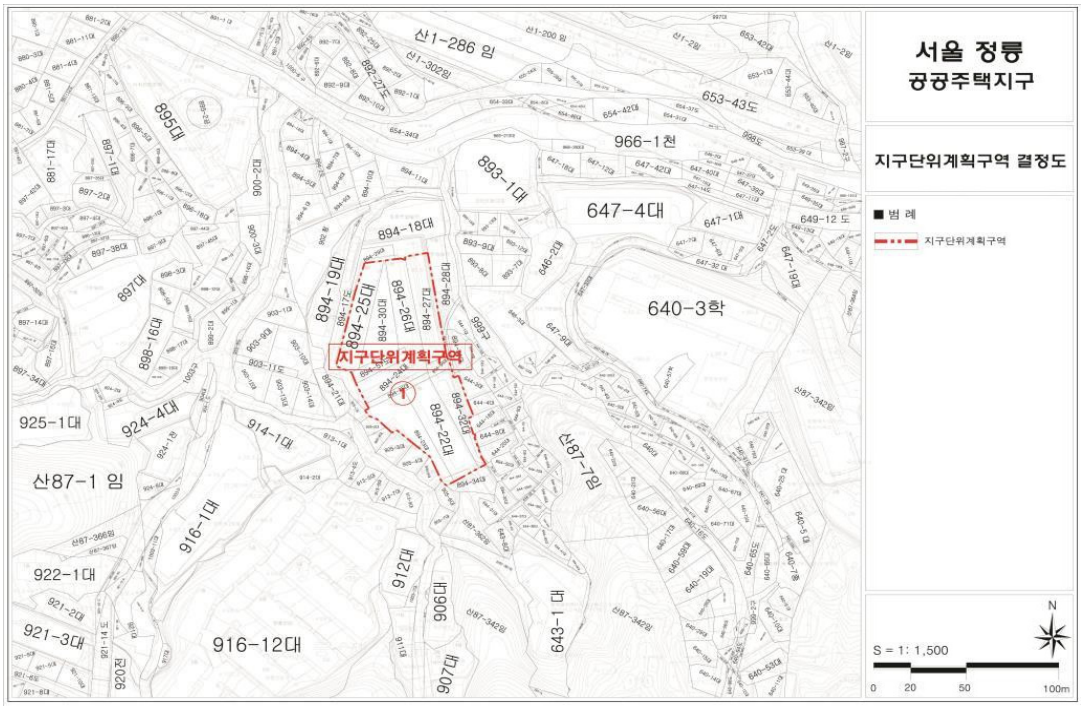

91.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92. 미아사거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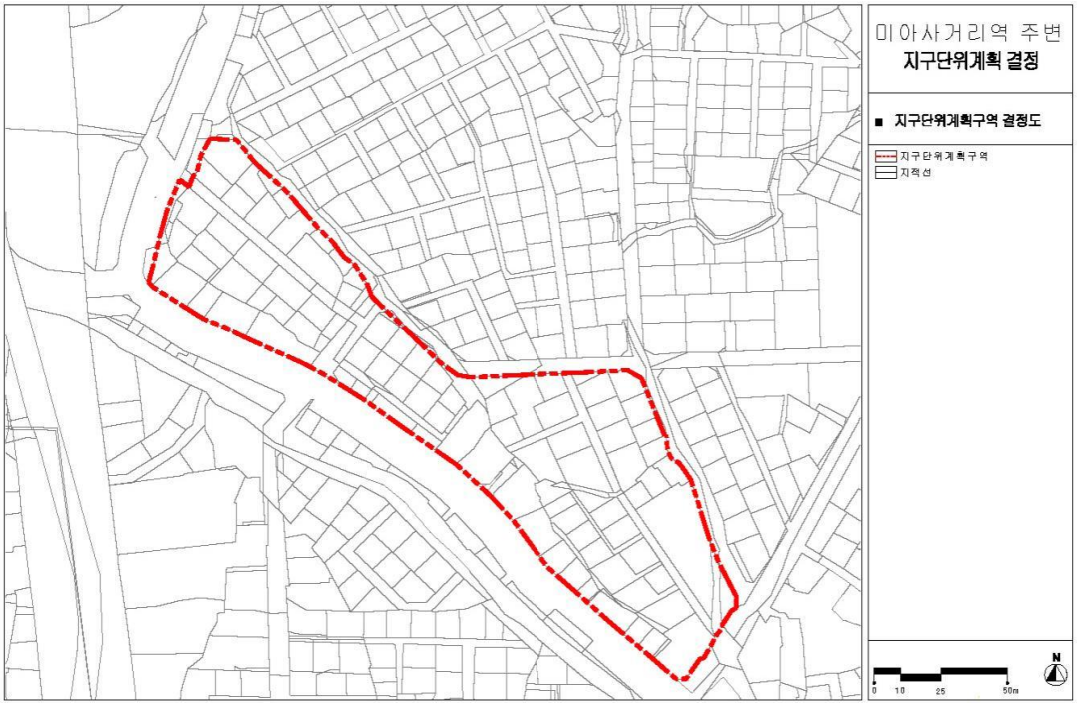

93.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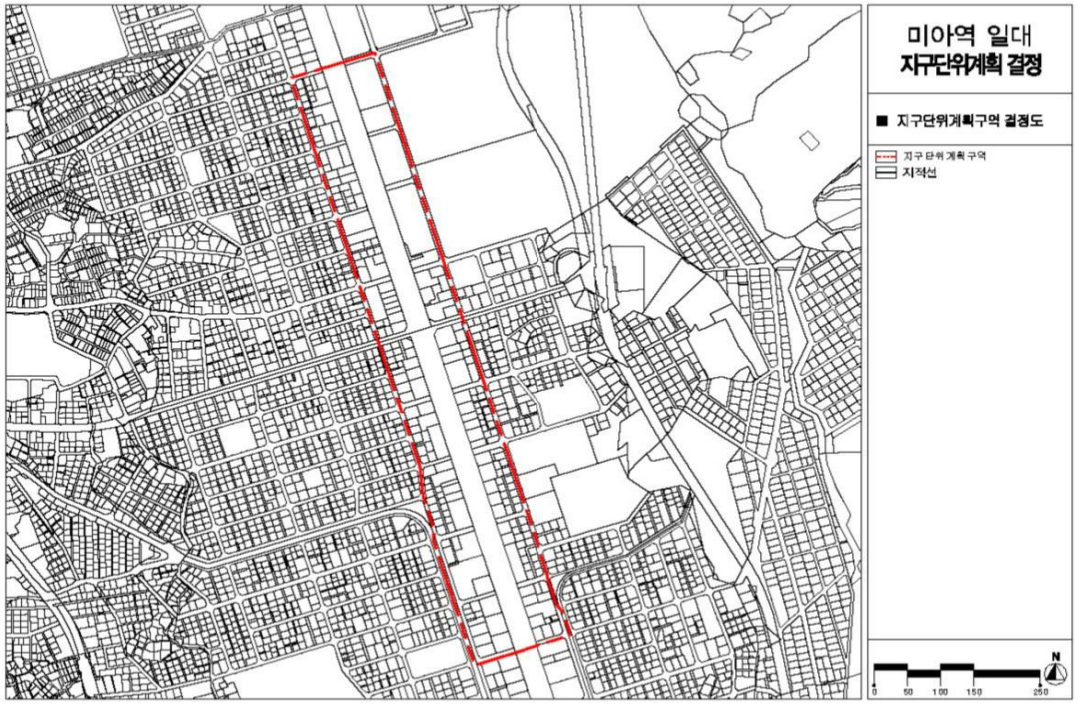

94.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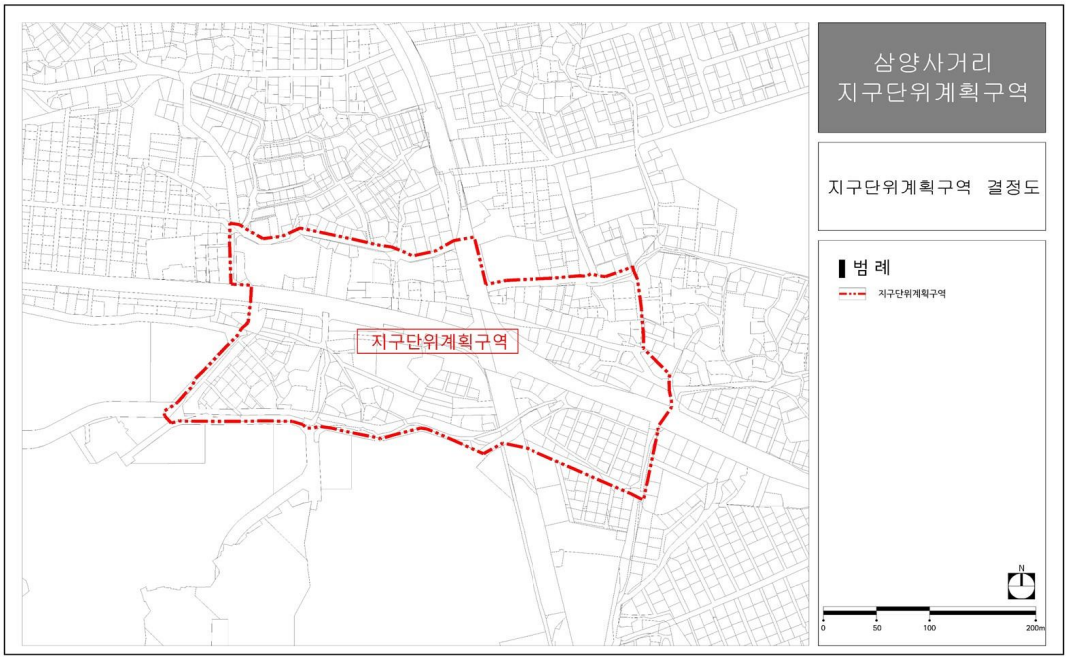

95. 서울휴먼타운(능안골)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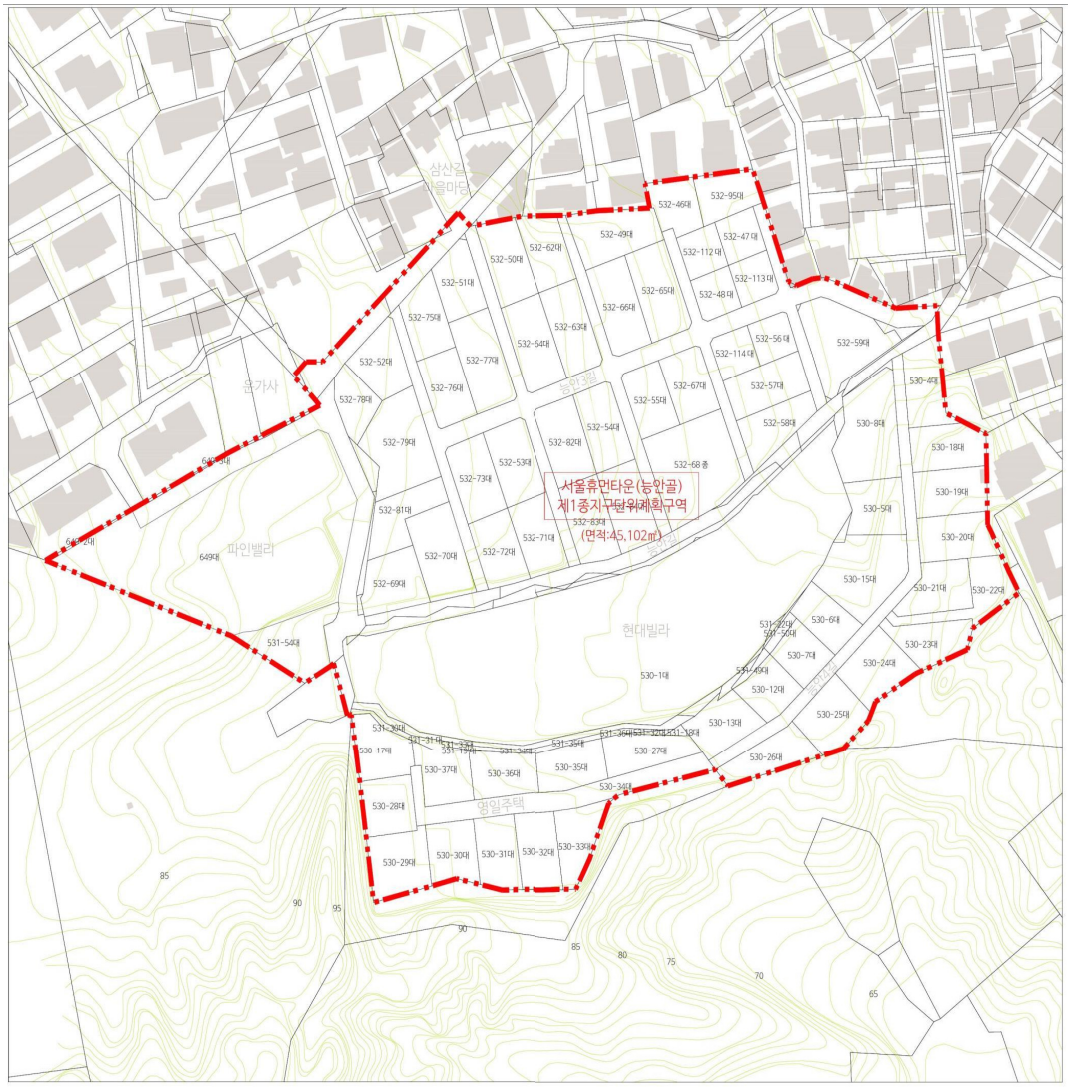

-범 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적

서울휴먼타운(능안골)
제1종지구단위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scale 1:2,000

N

0 5 15 30 50 80m

96. 수유 · 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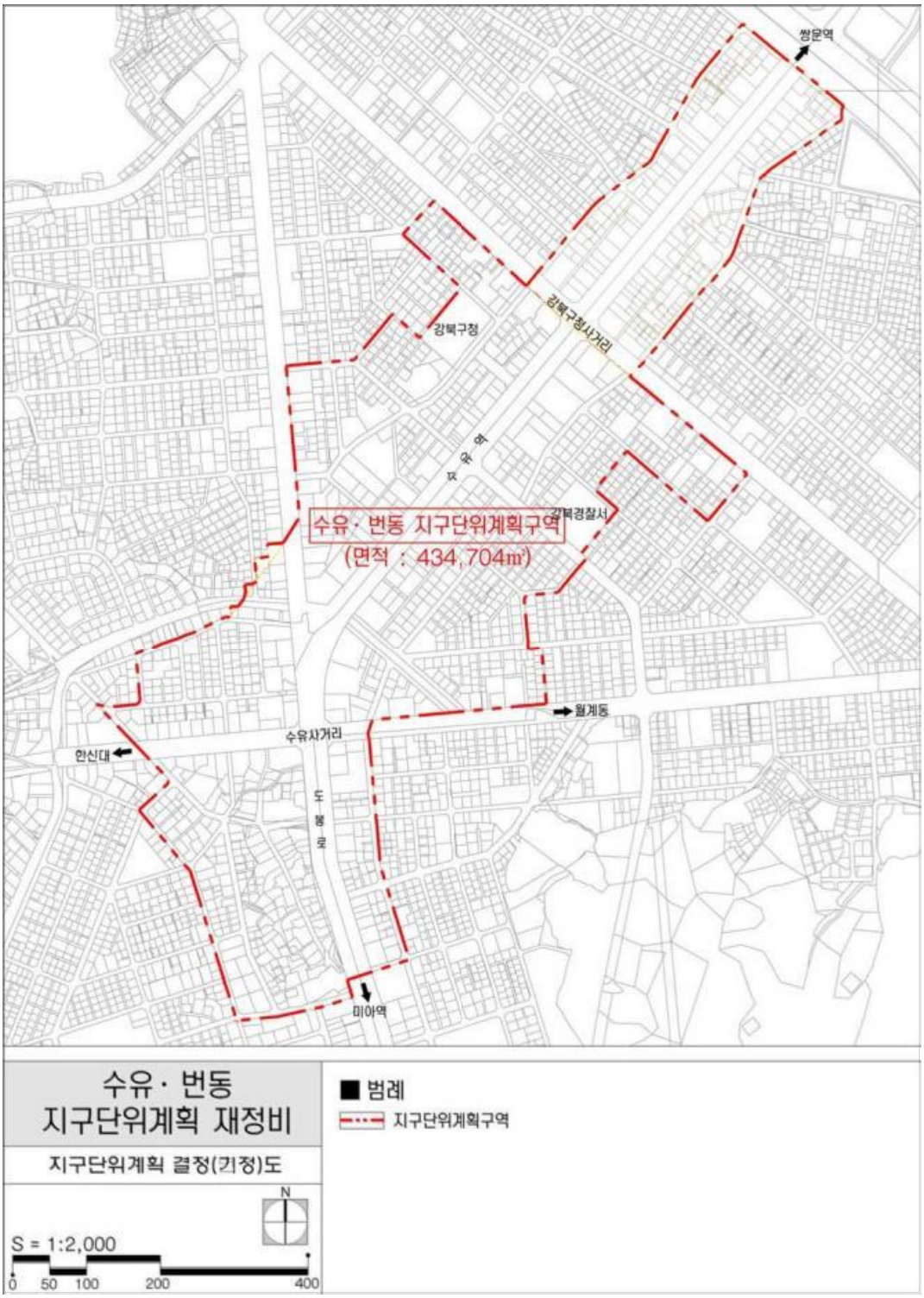

97. 도봉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98.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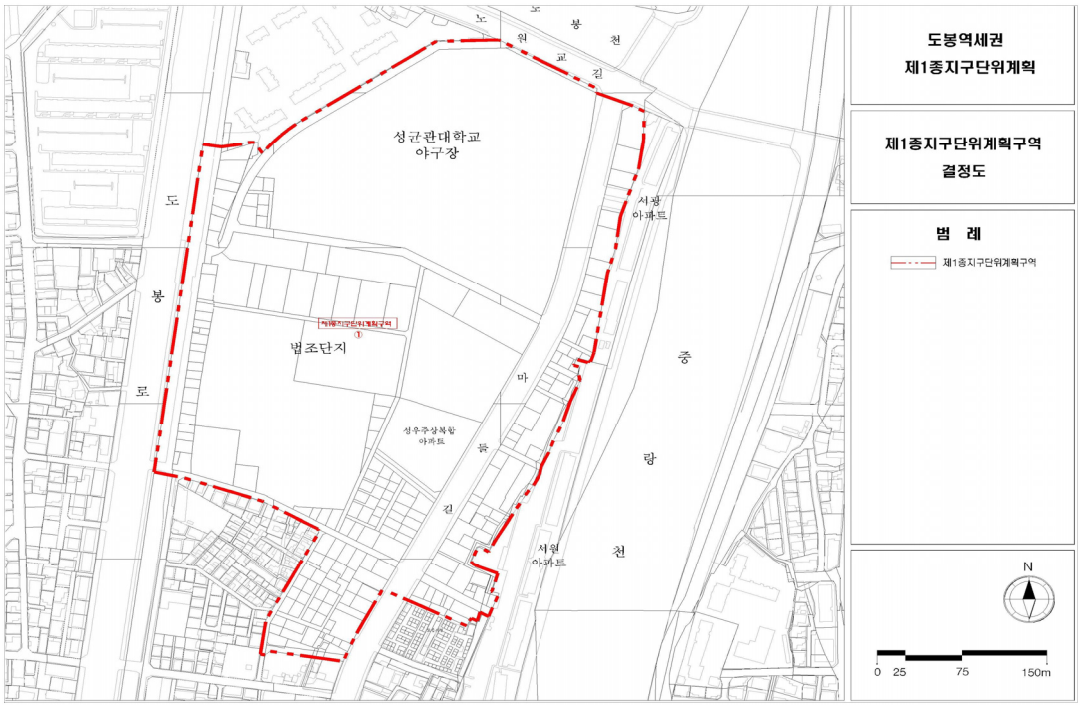

99. 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00. 방아골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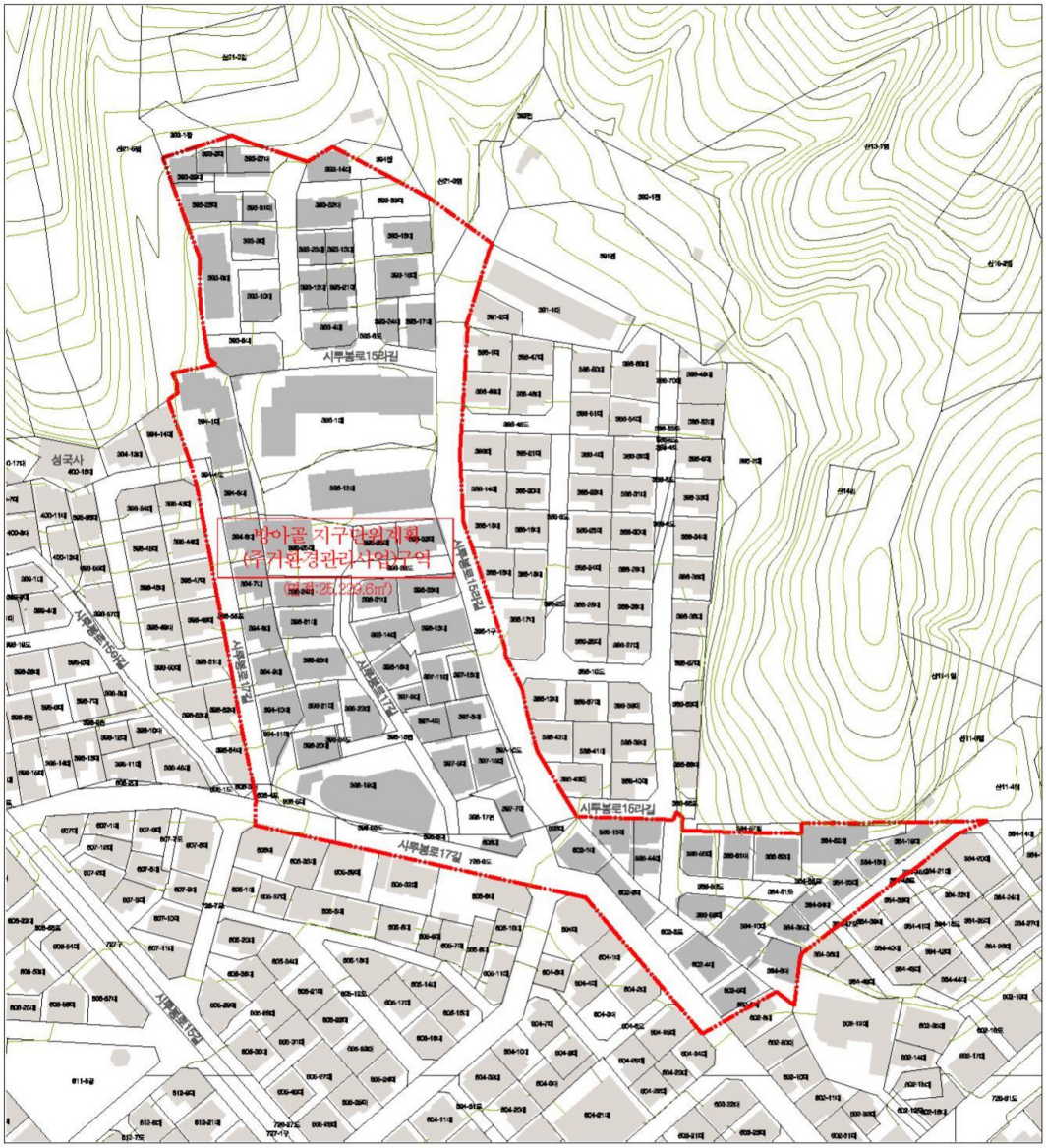

101.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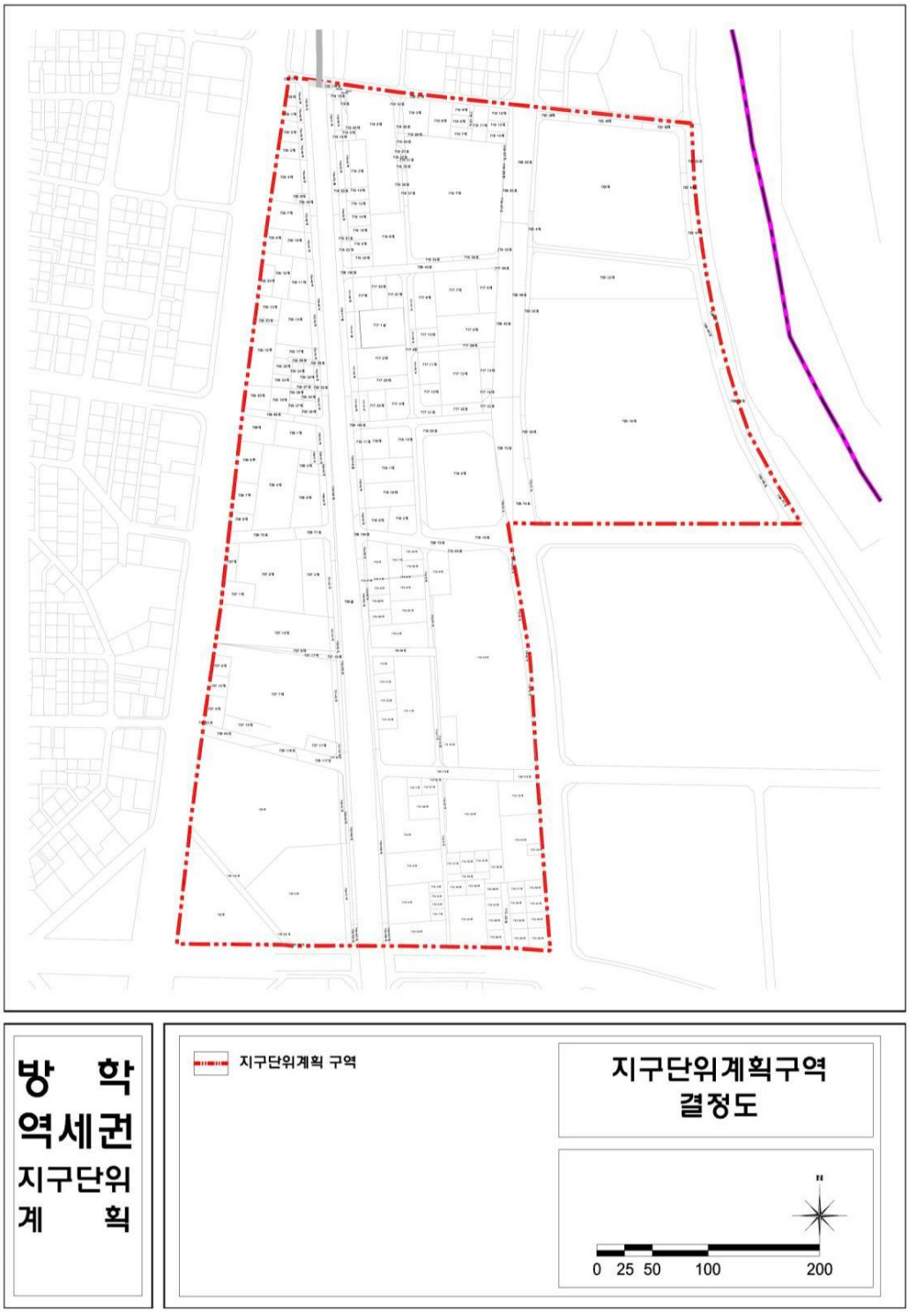

102. 새동네 · 안골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03. 쌍문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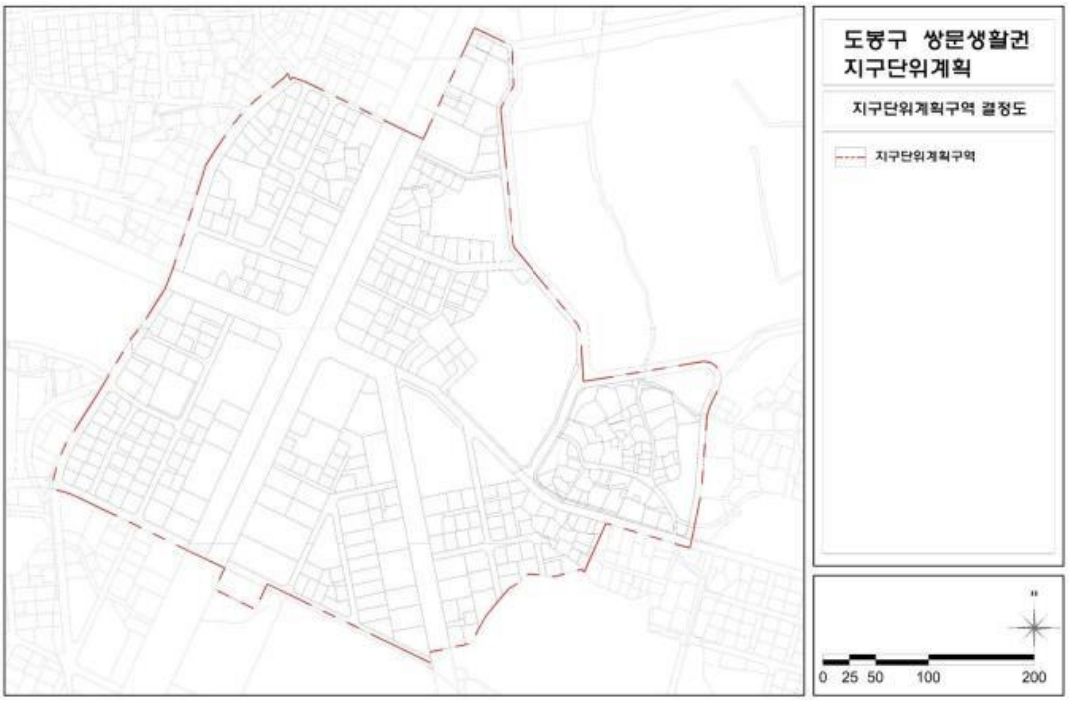

104.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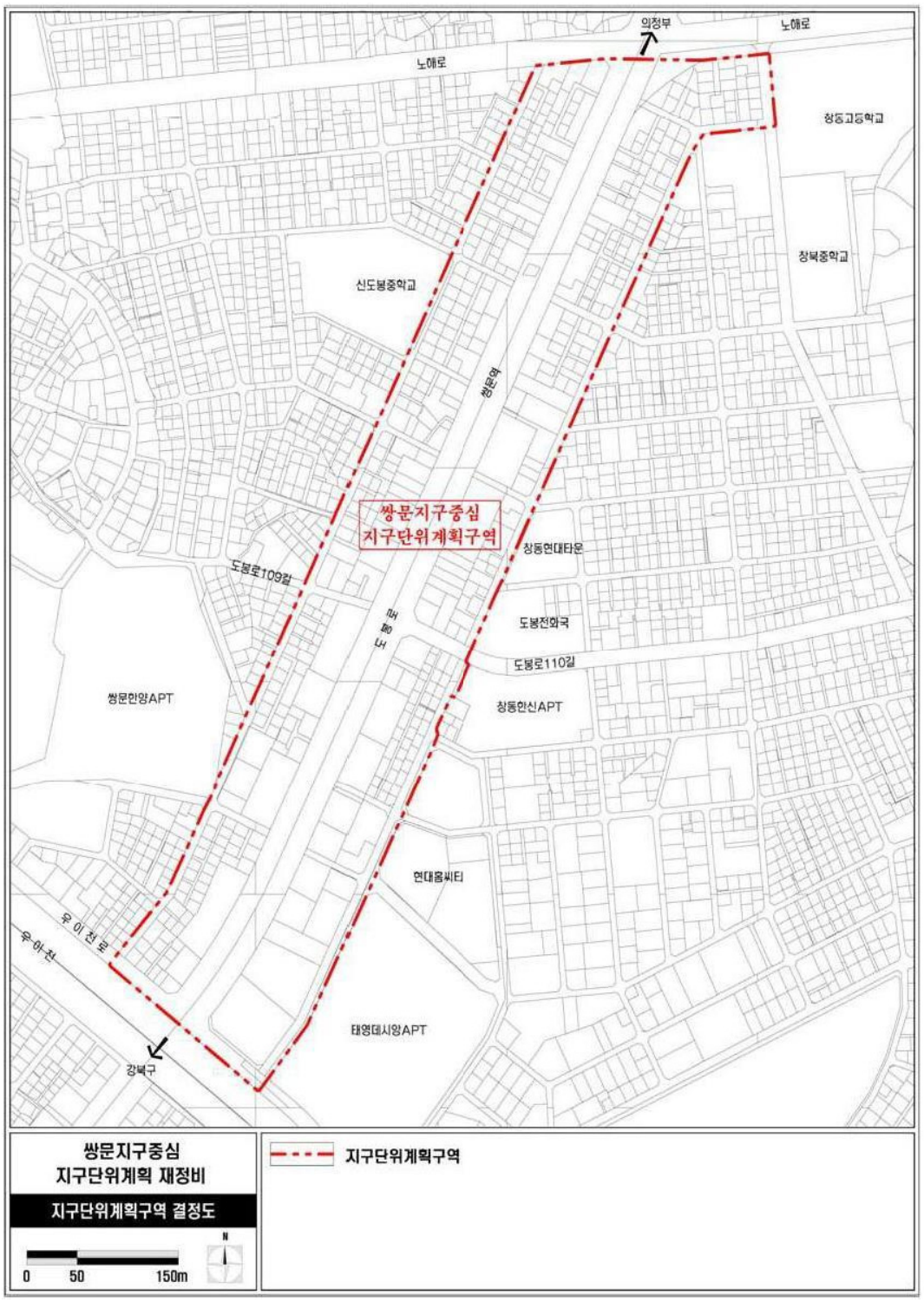

105. 창동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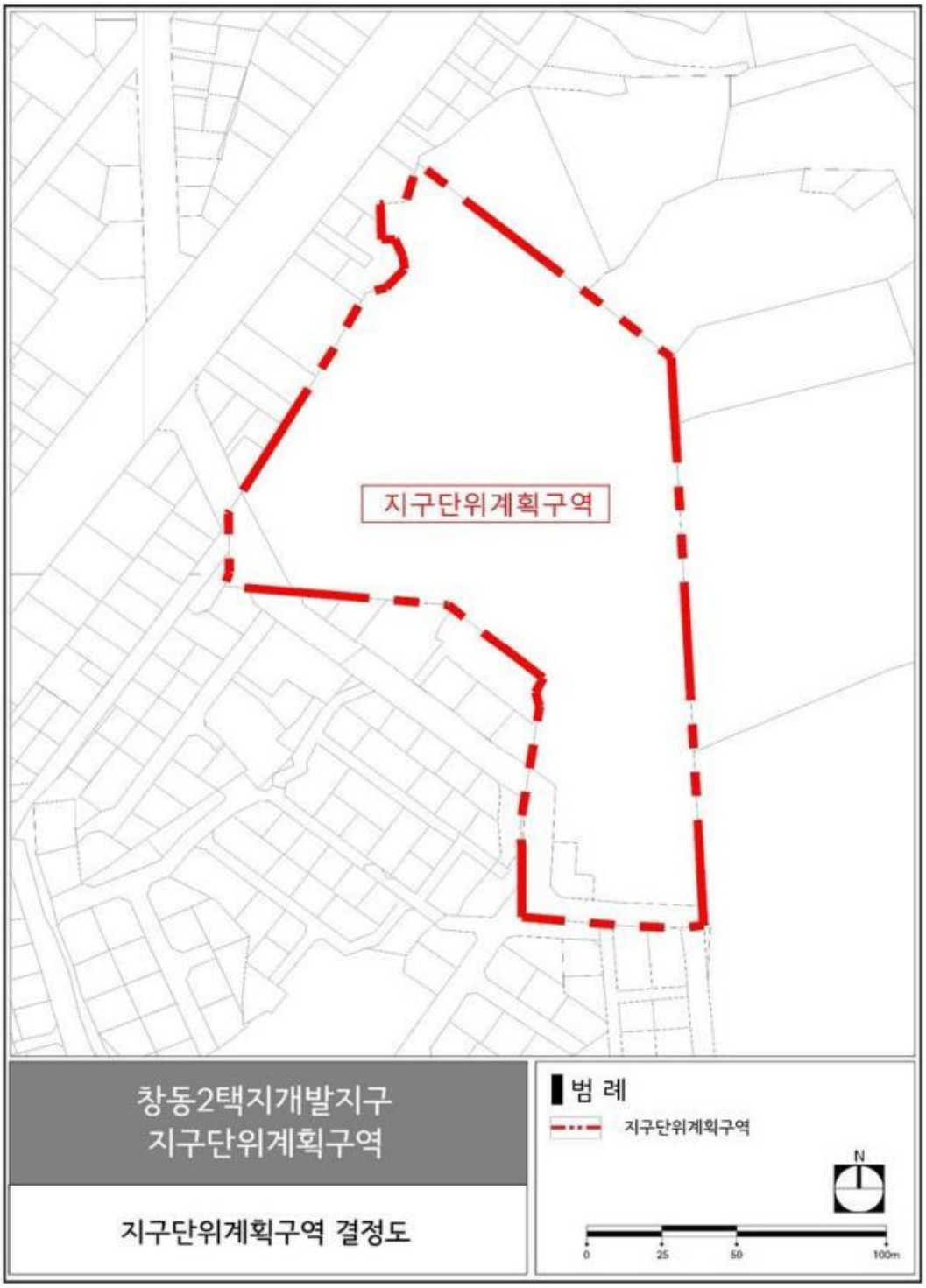

106. 서울창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07. 공릉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08. 공릉1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09. 공릉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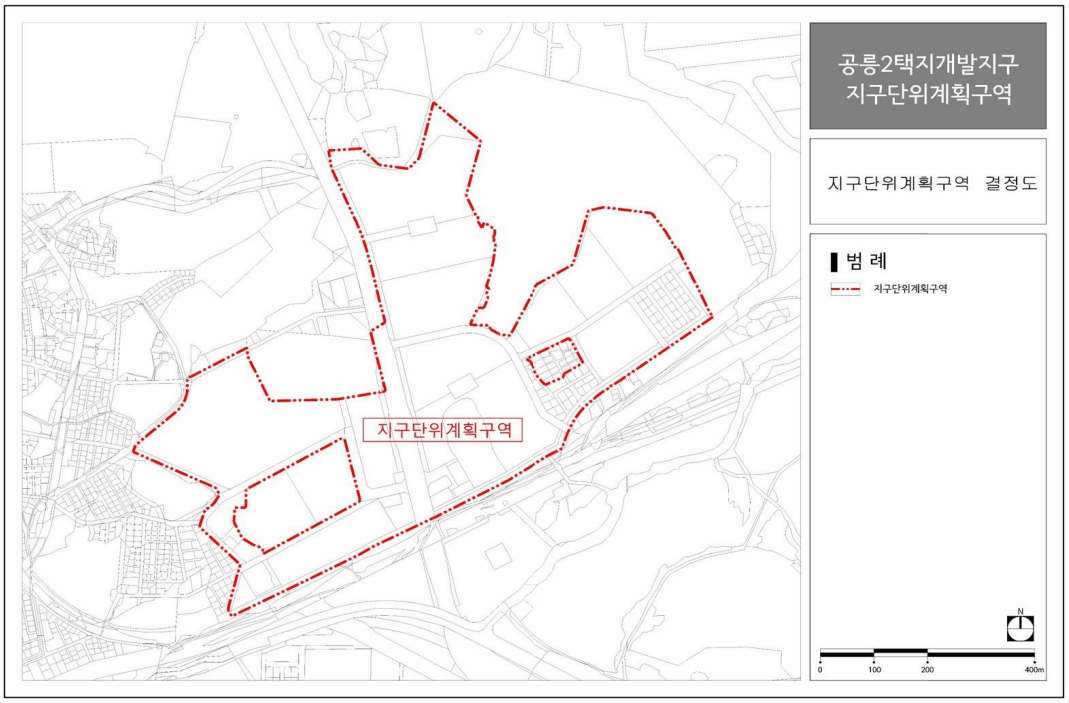

110. 공릉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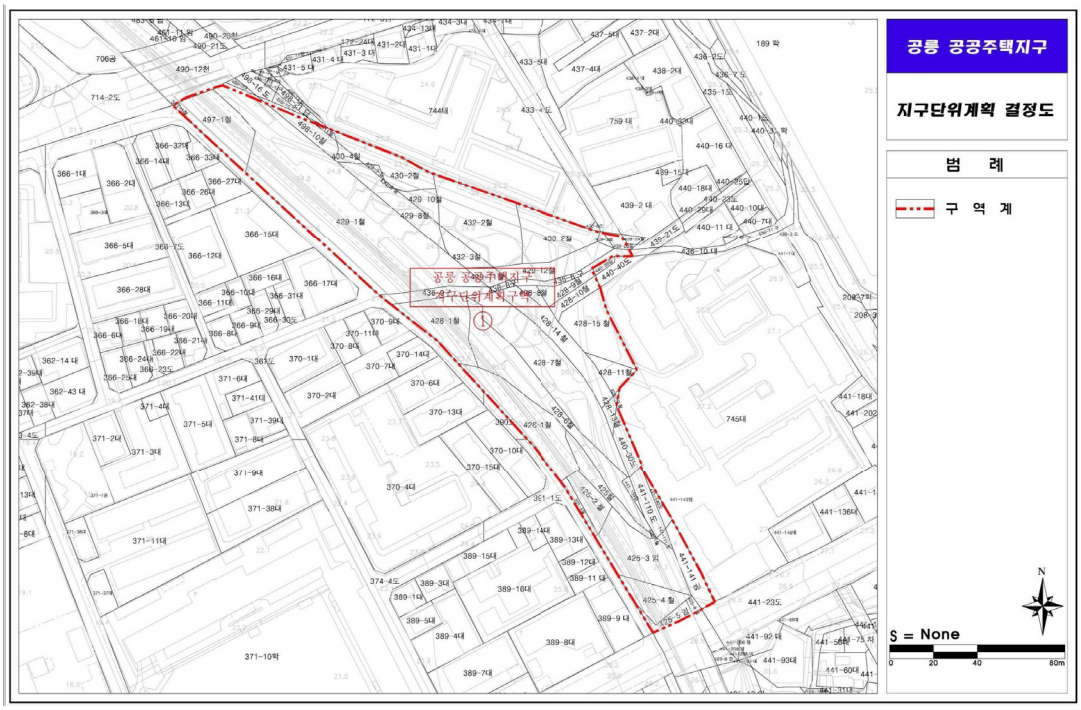

111. 광운대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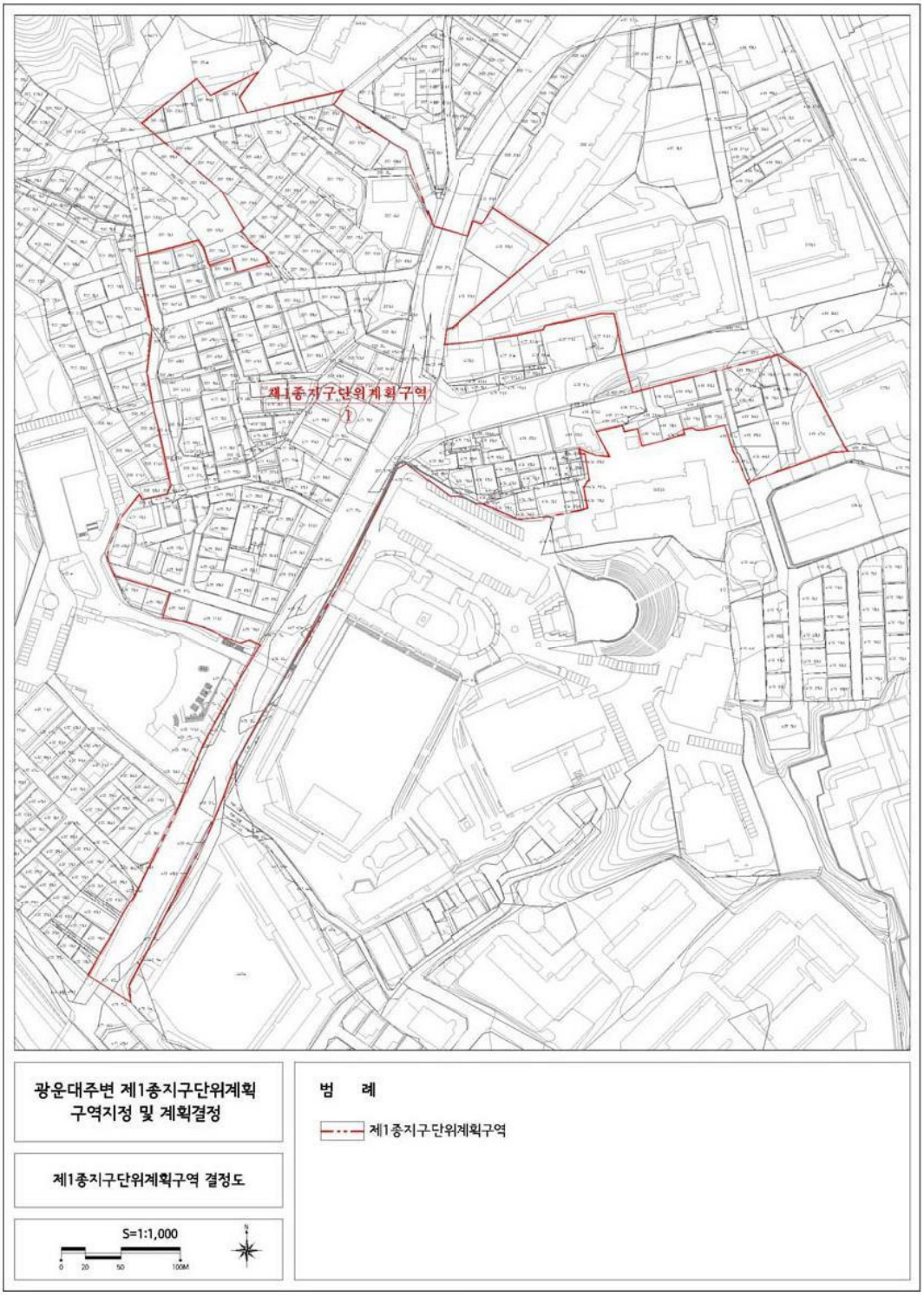

112.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13. 상계1 · 2단계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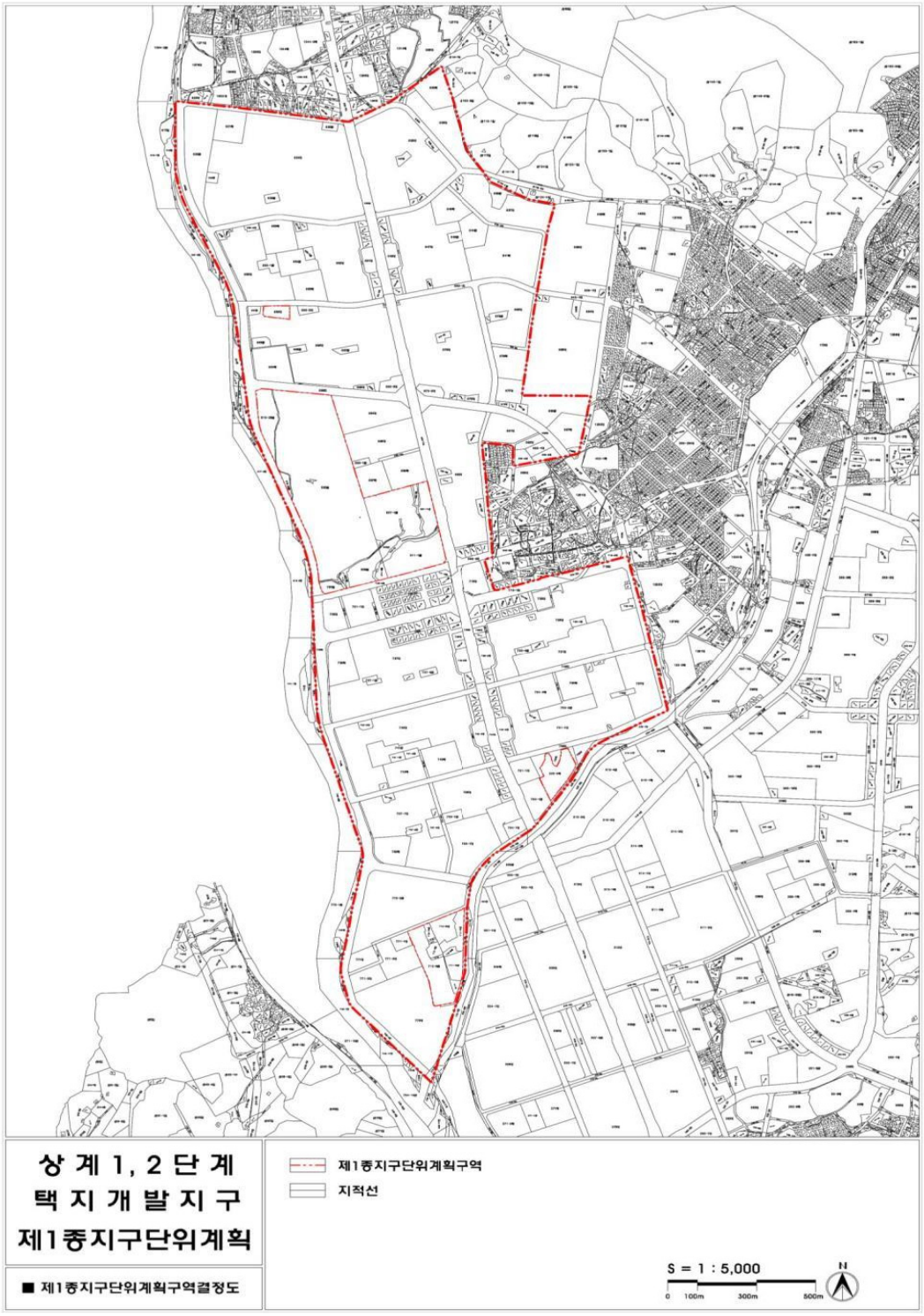

114. 상계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15. 상계3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16. 상계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17. 상계 · 장암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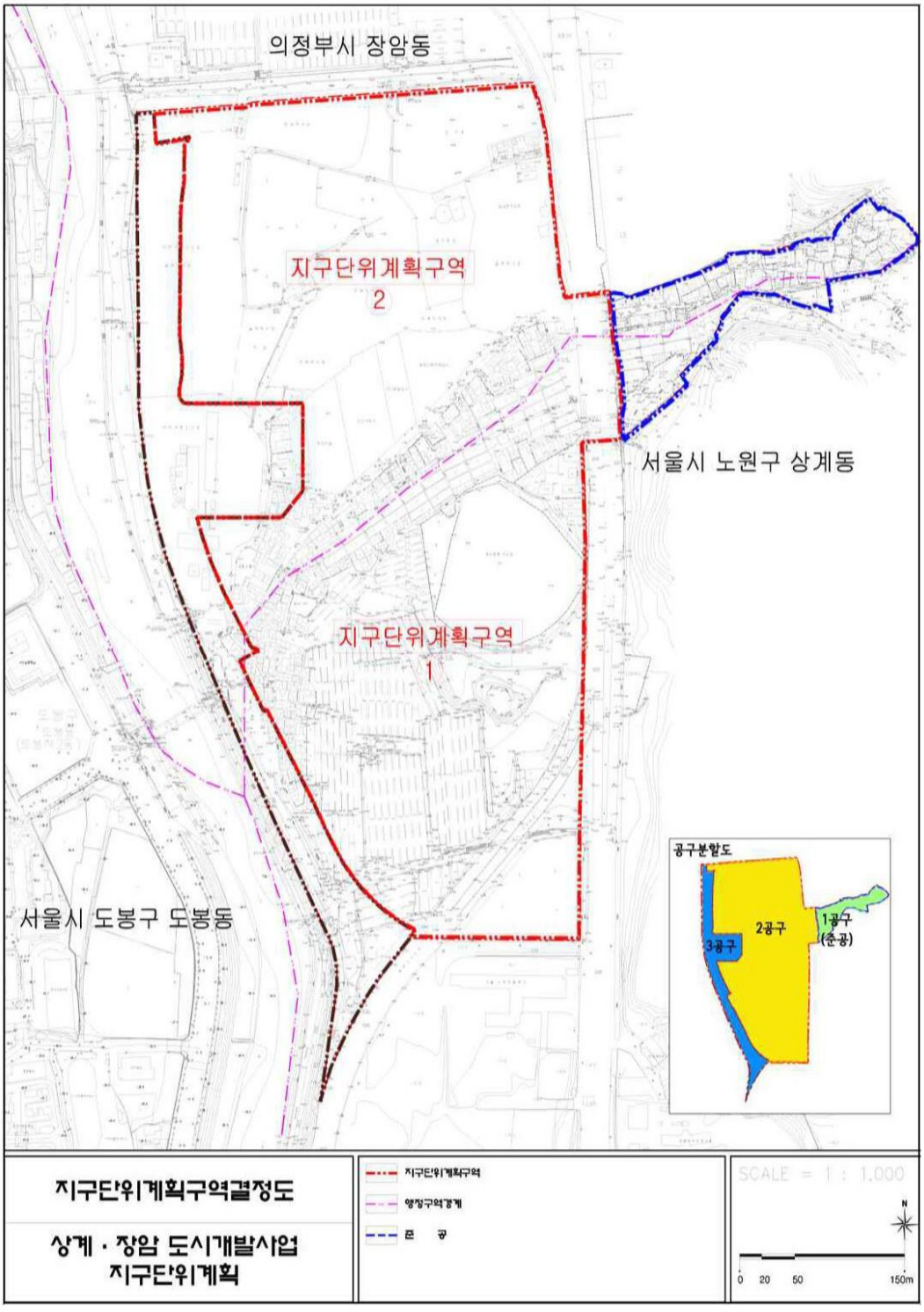

118.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19. 월계1지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20. 월계3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21. 월계4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22. 월계5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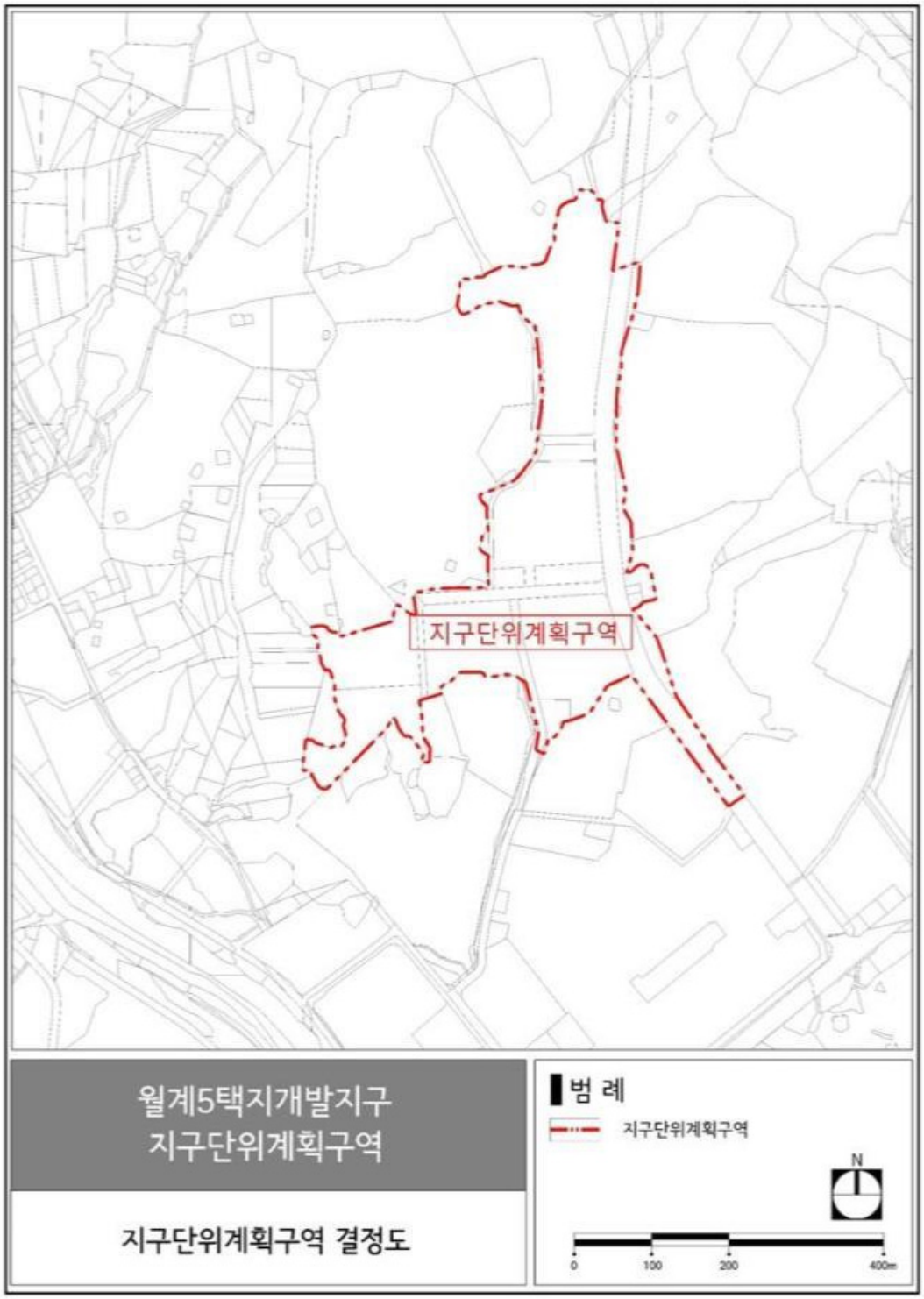

123. 월계6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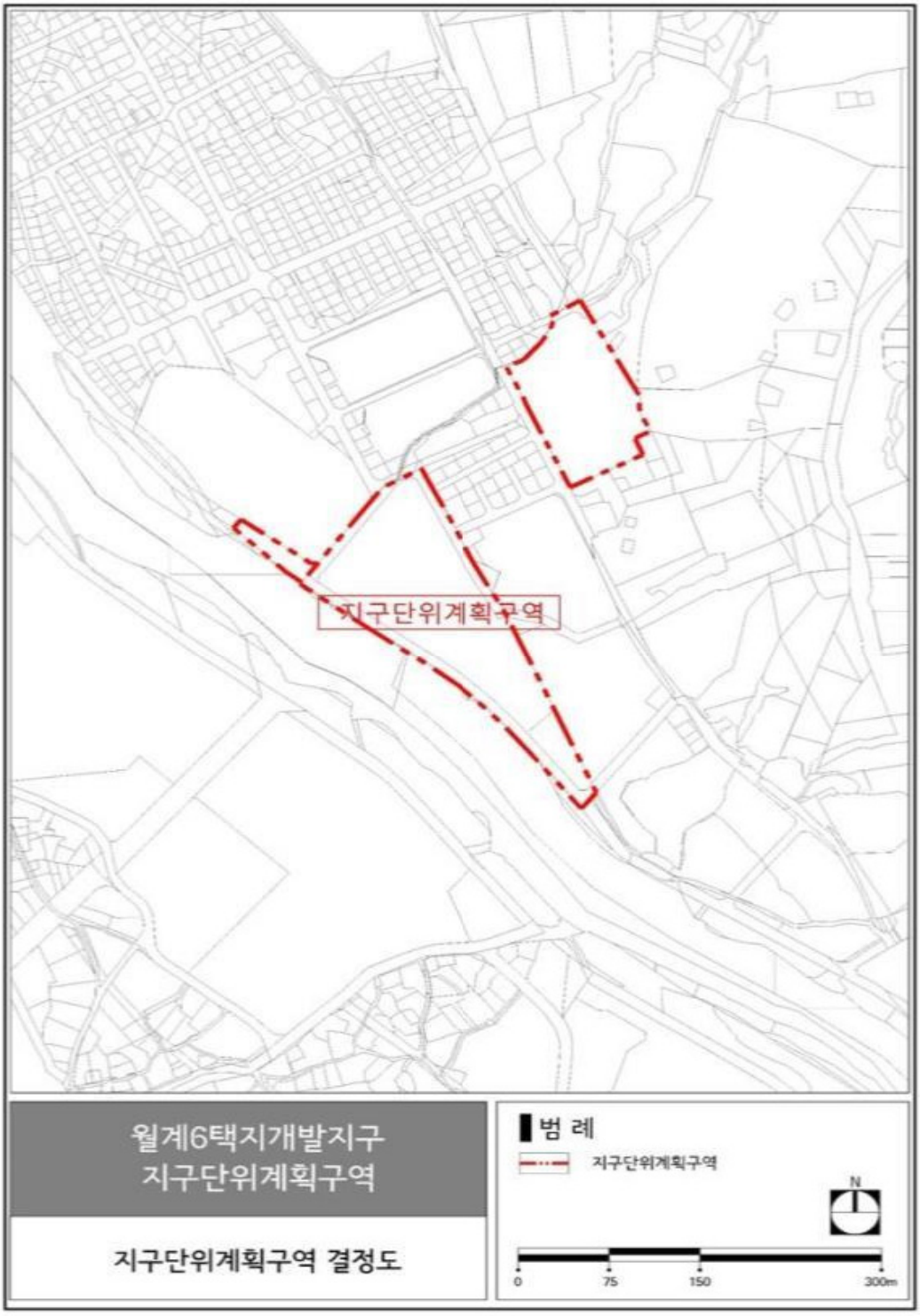

124.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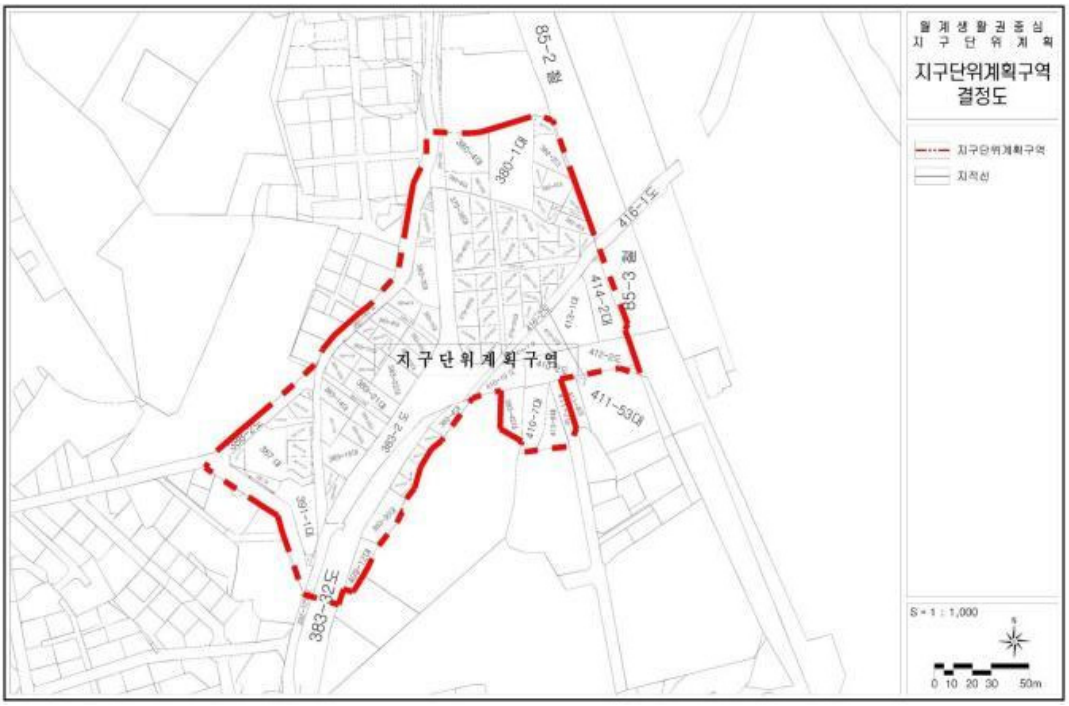

125. 중계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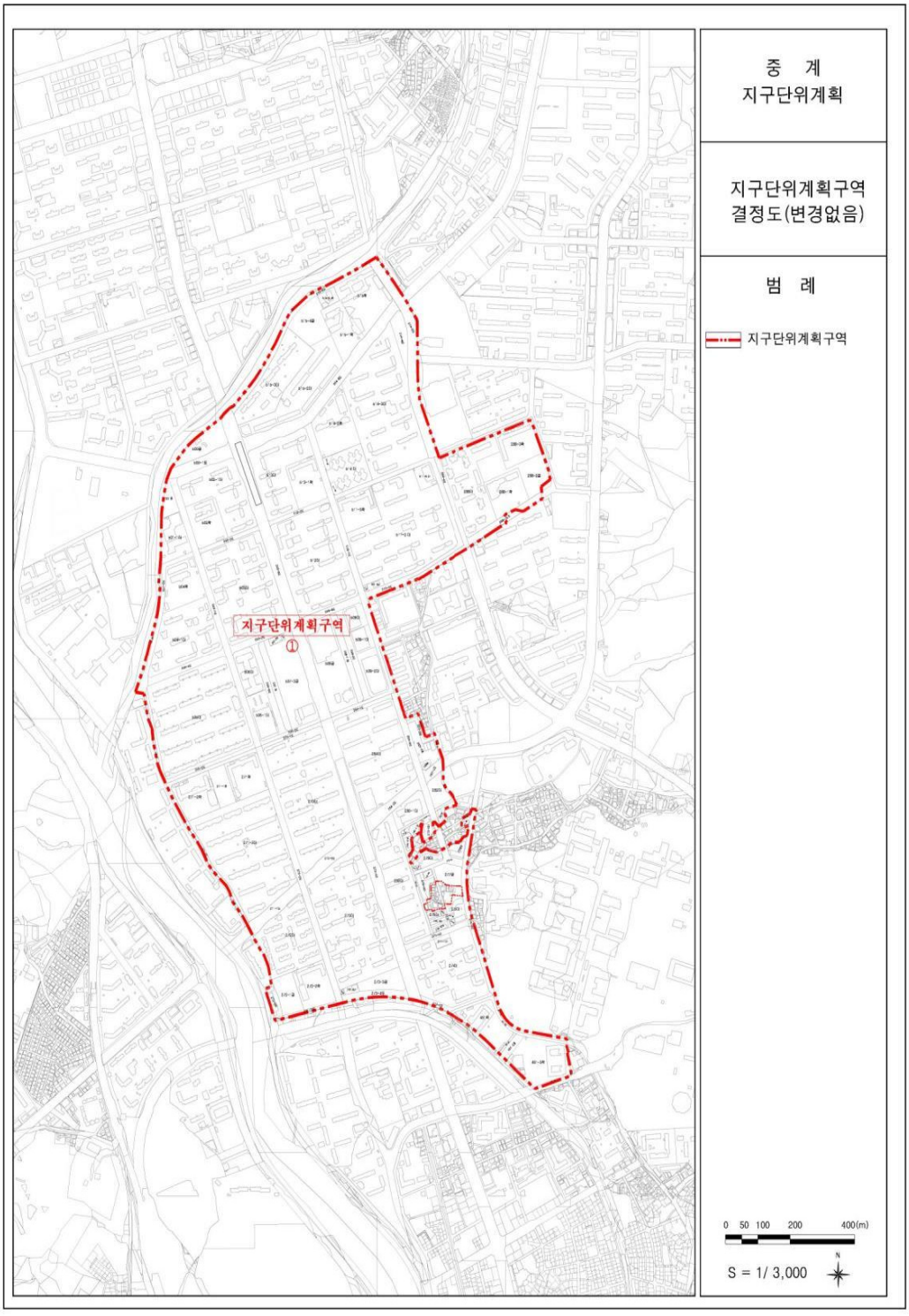

126. 중계본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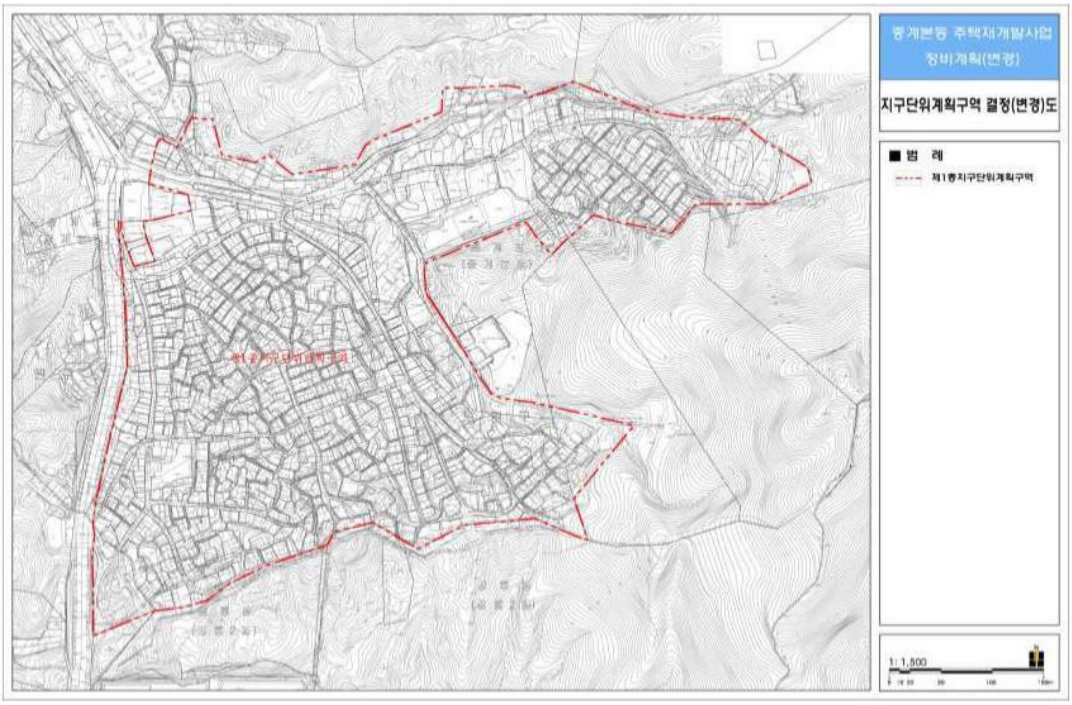

127. 상계4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28. 상계동 공공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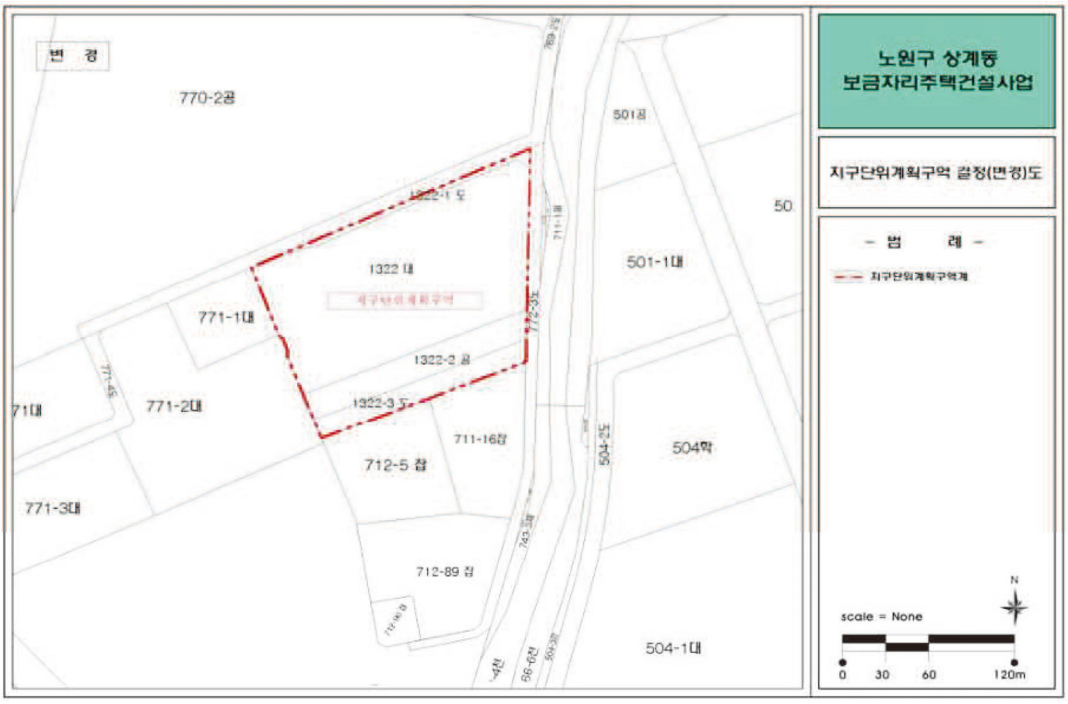

129.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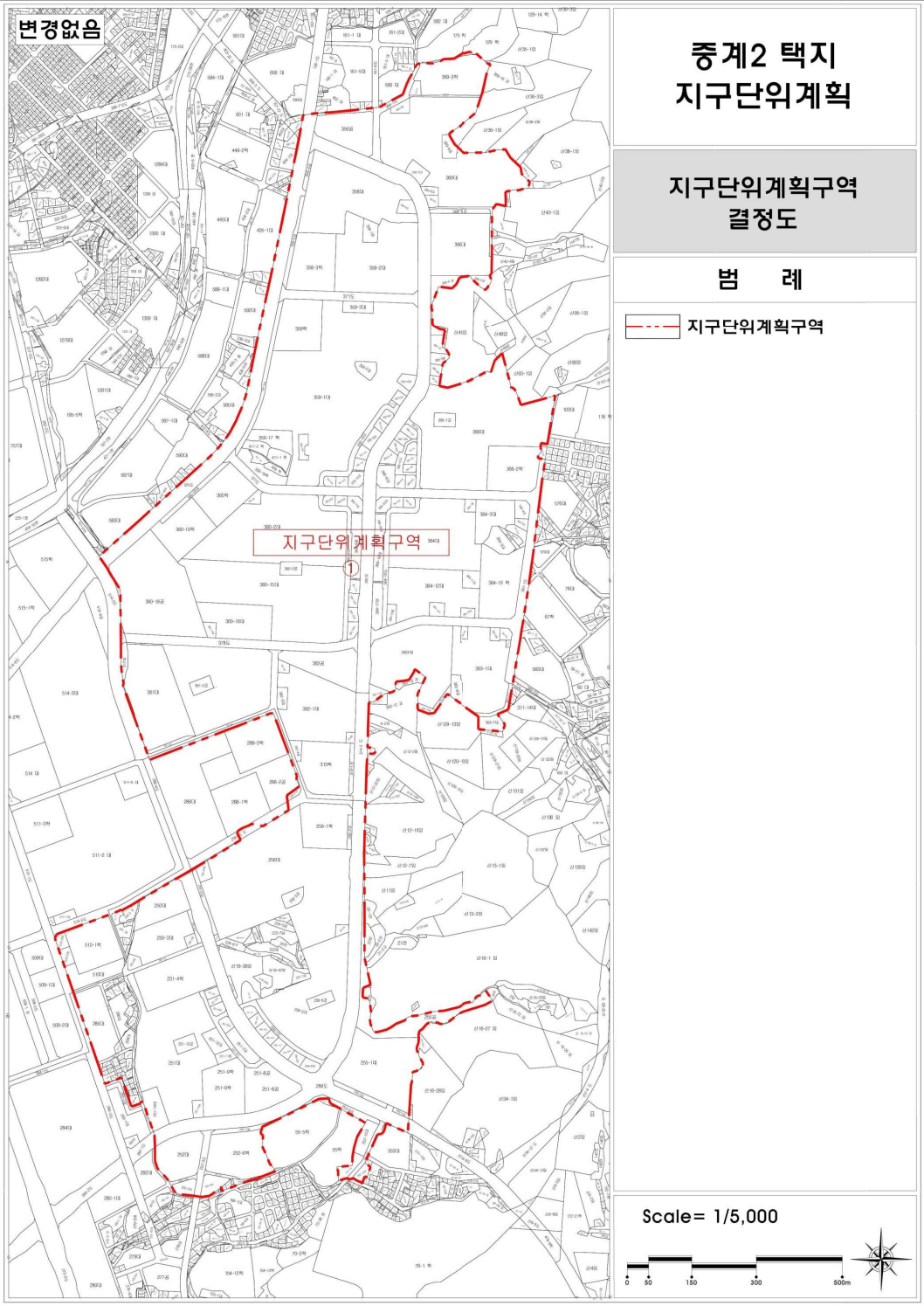

130. 응암역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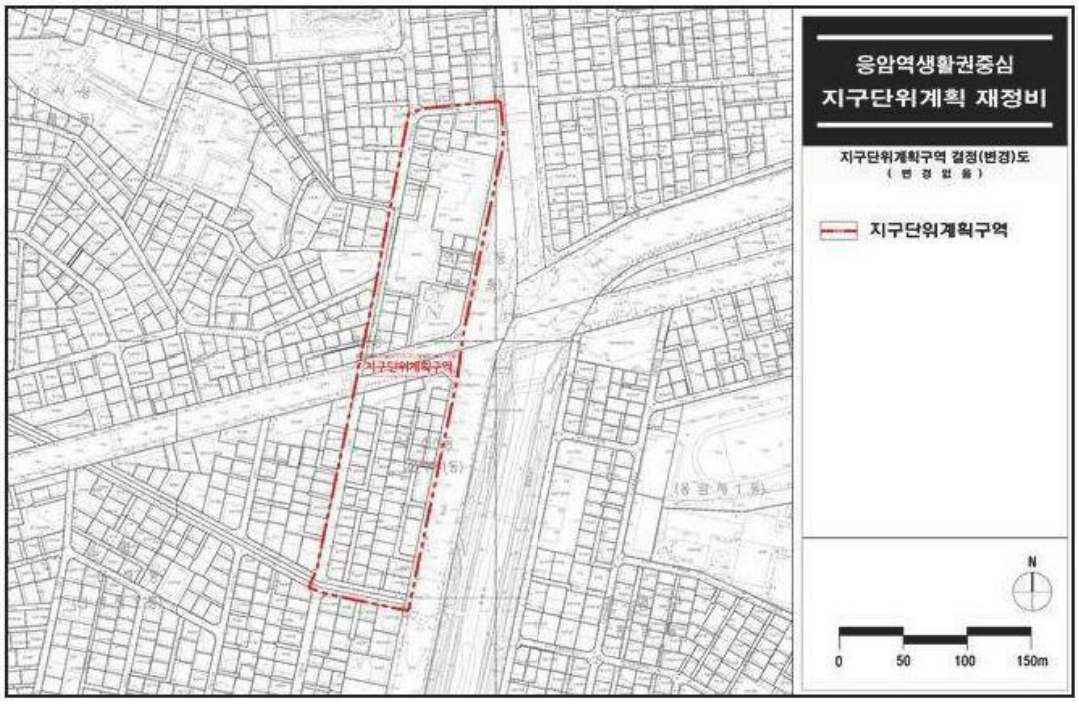

131. 구청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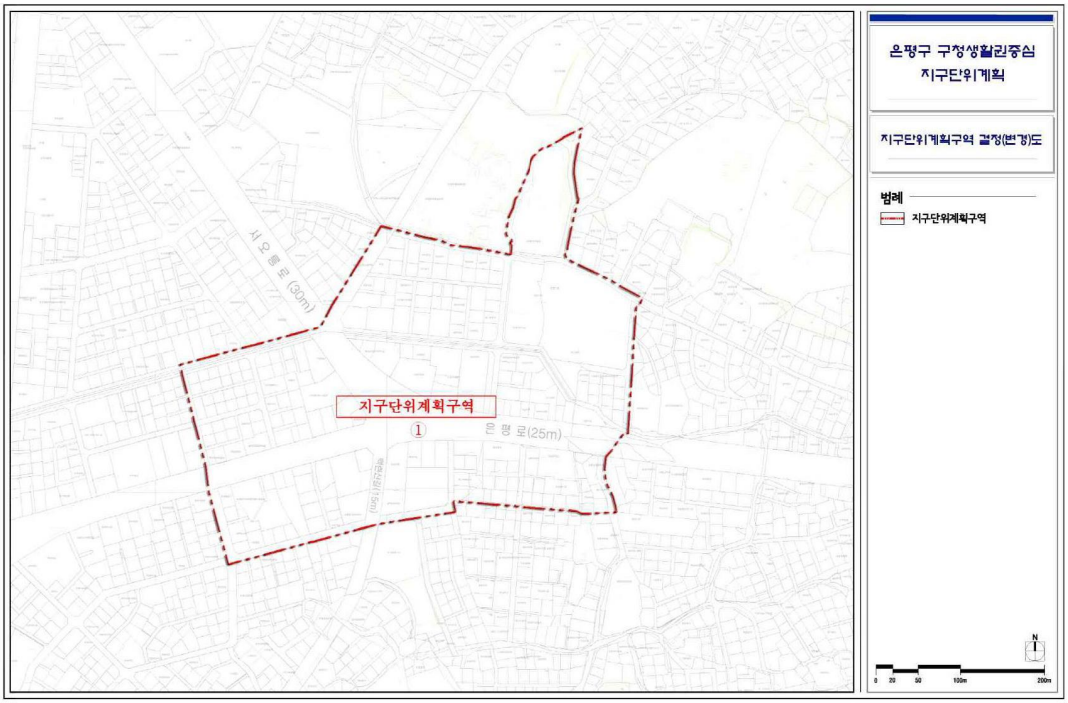

132. 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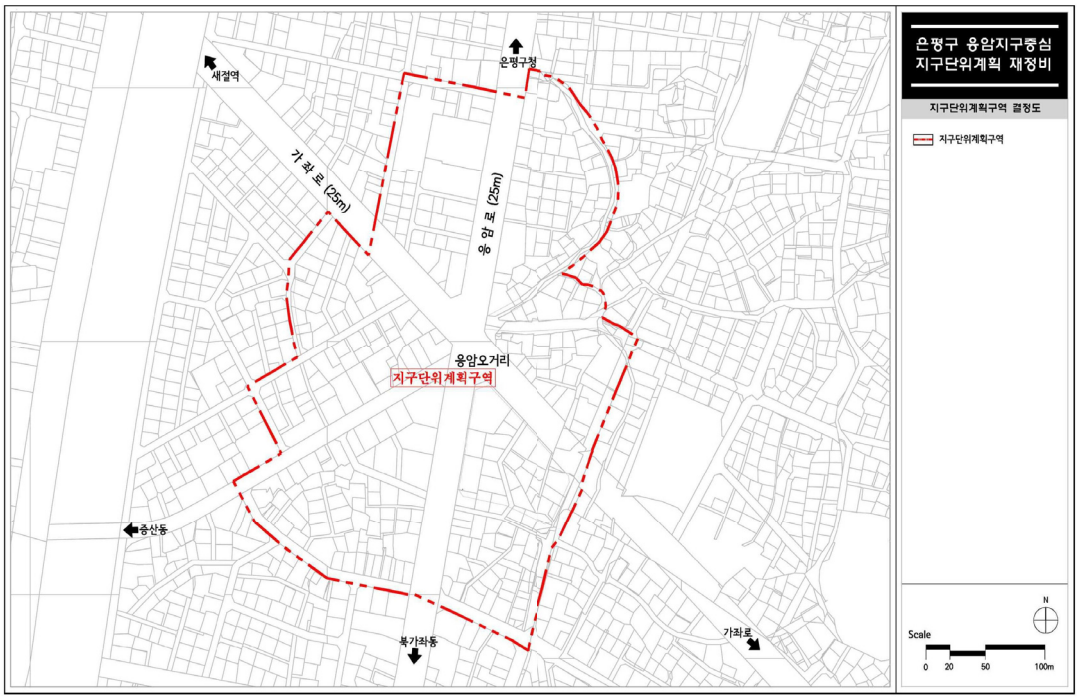

133. 구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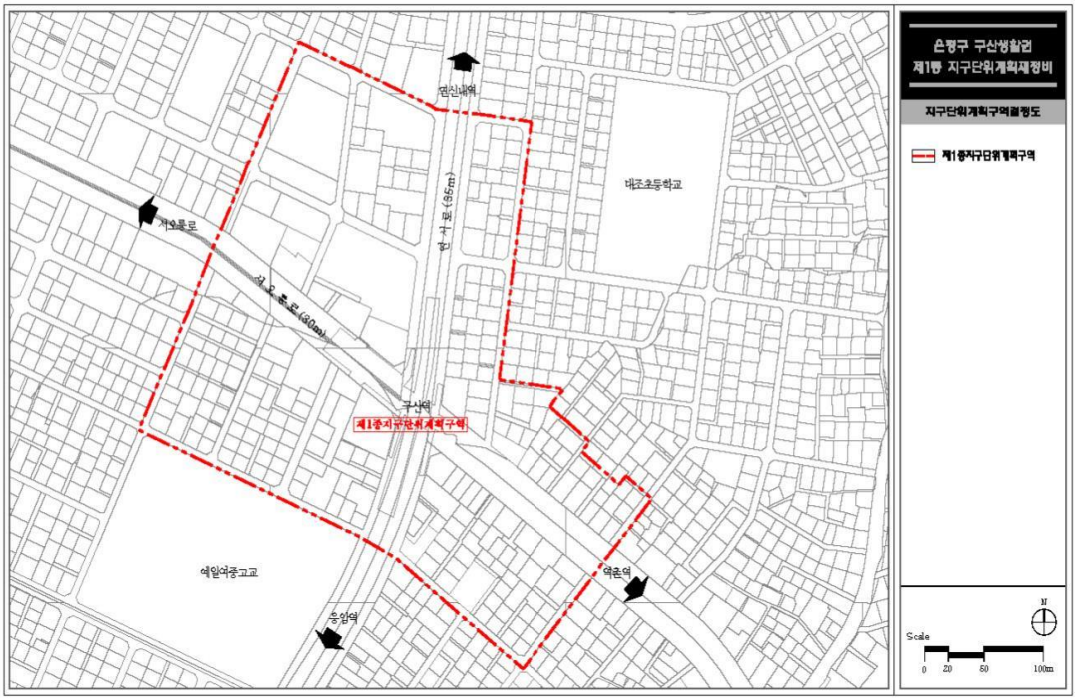

134. 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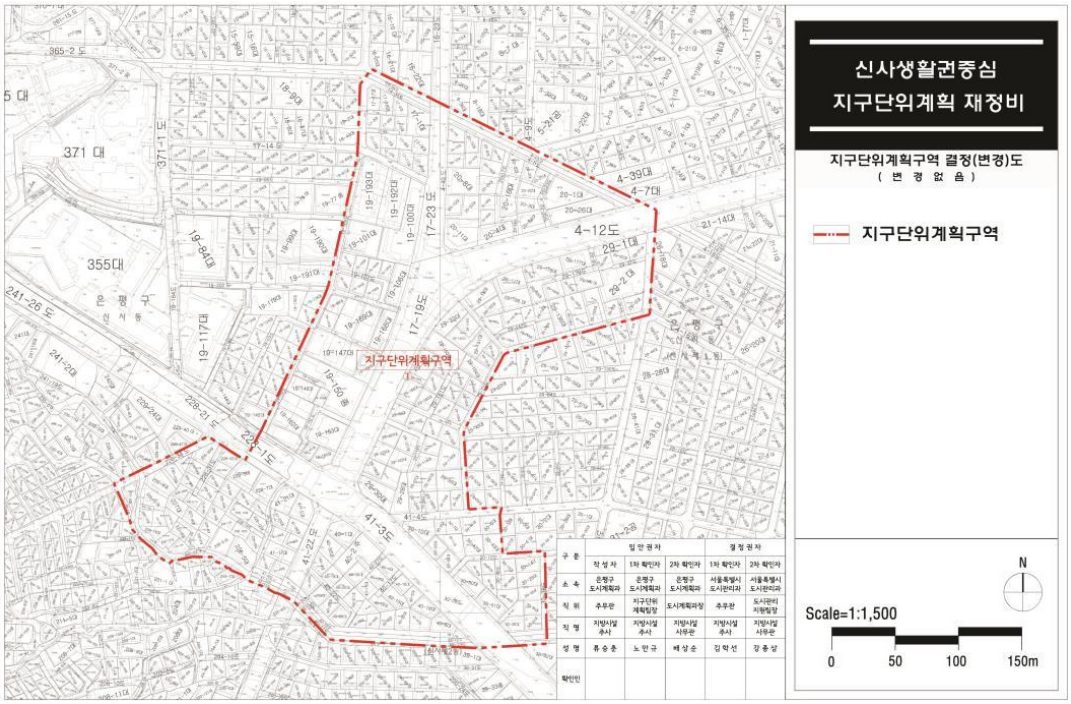

135. 연신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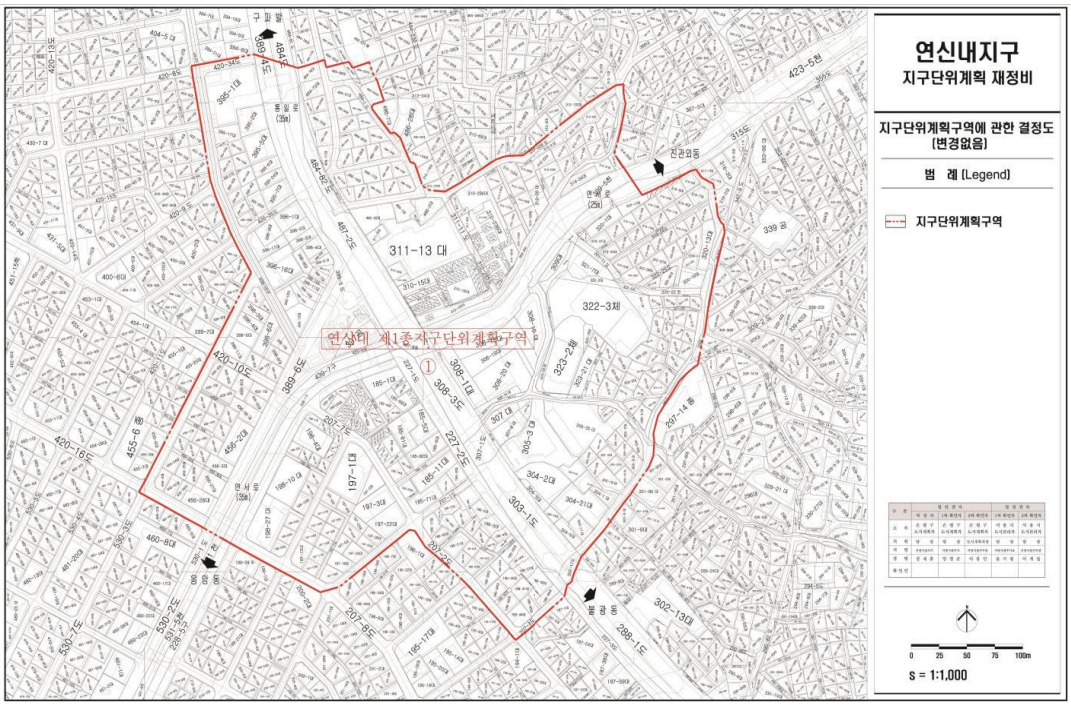

136. 수색 · 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37. 독바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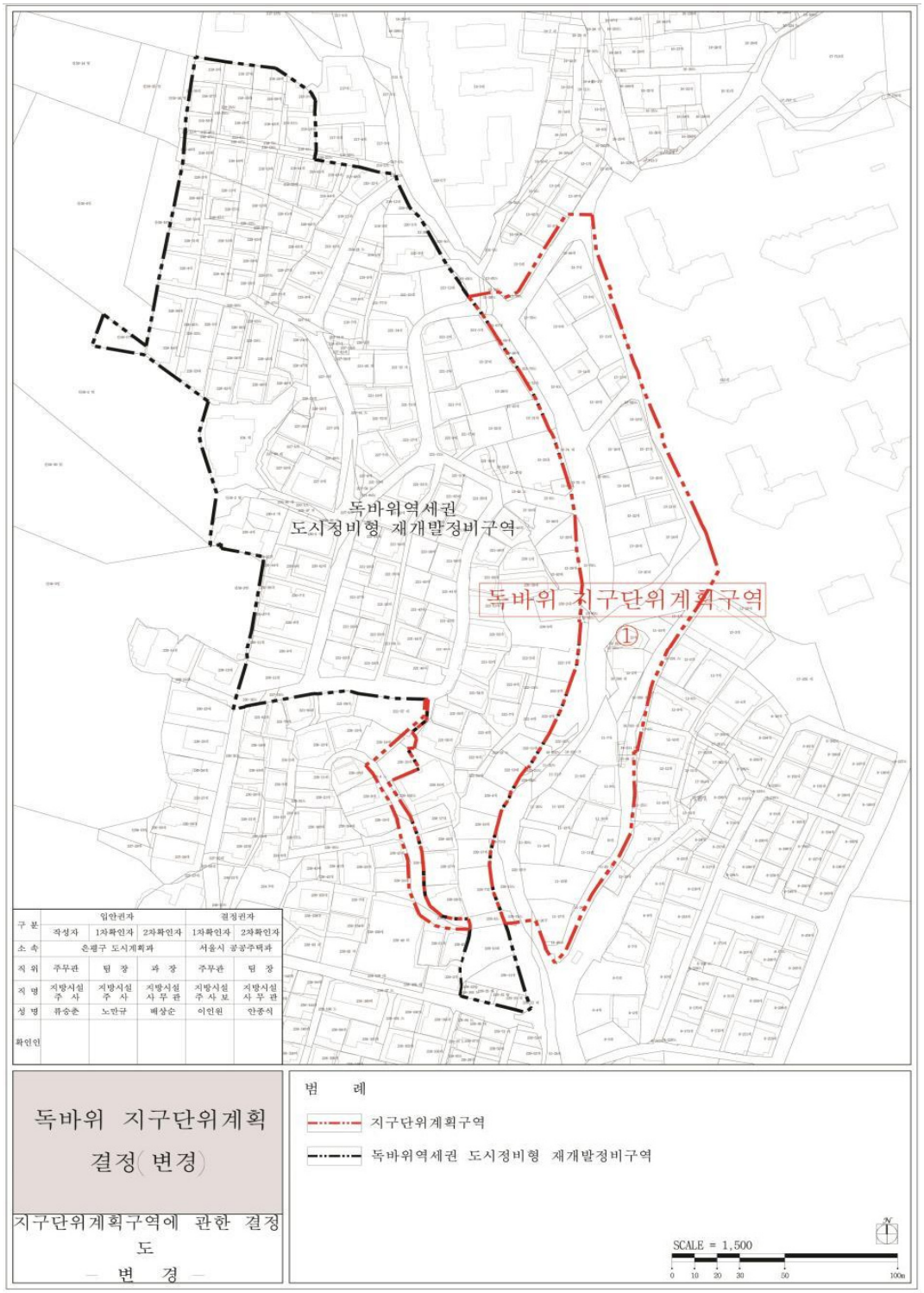

138. 불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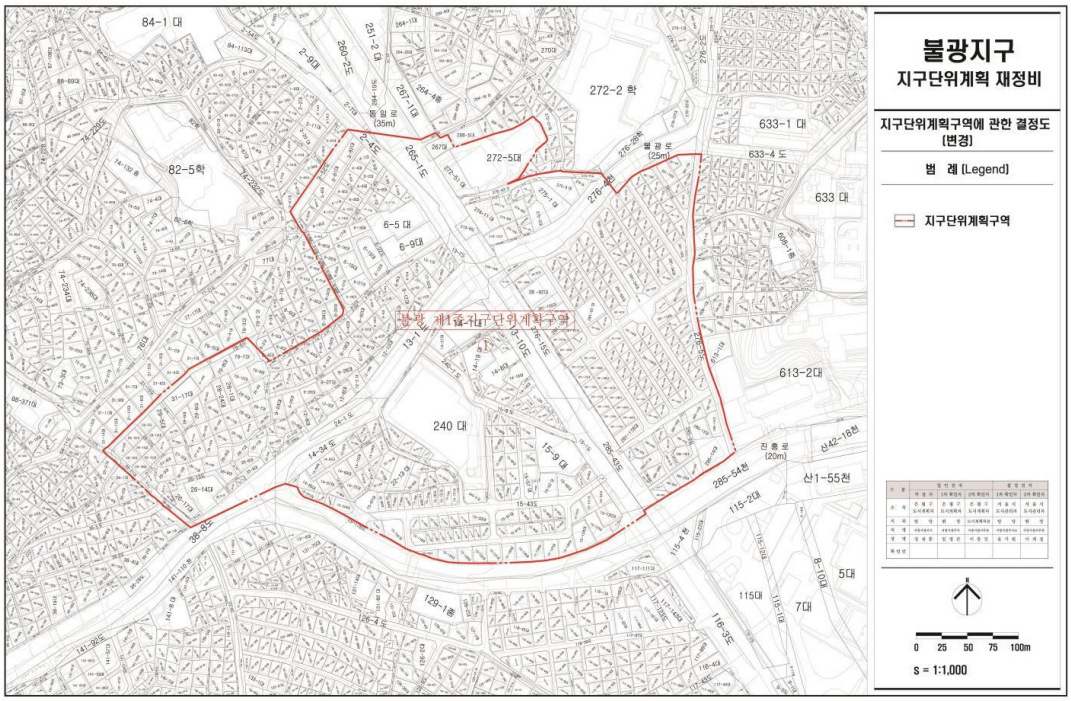

139.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40. 연서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41. 응암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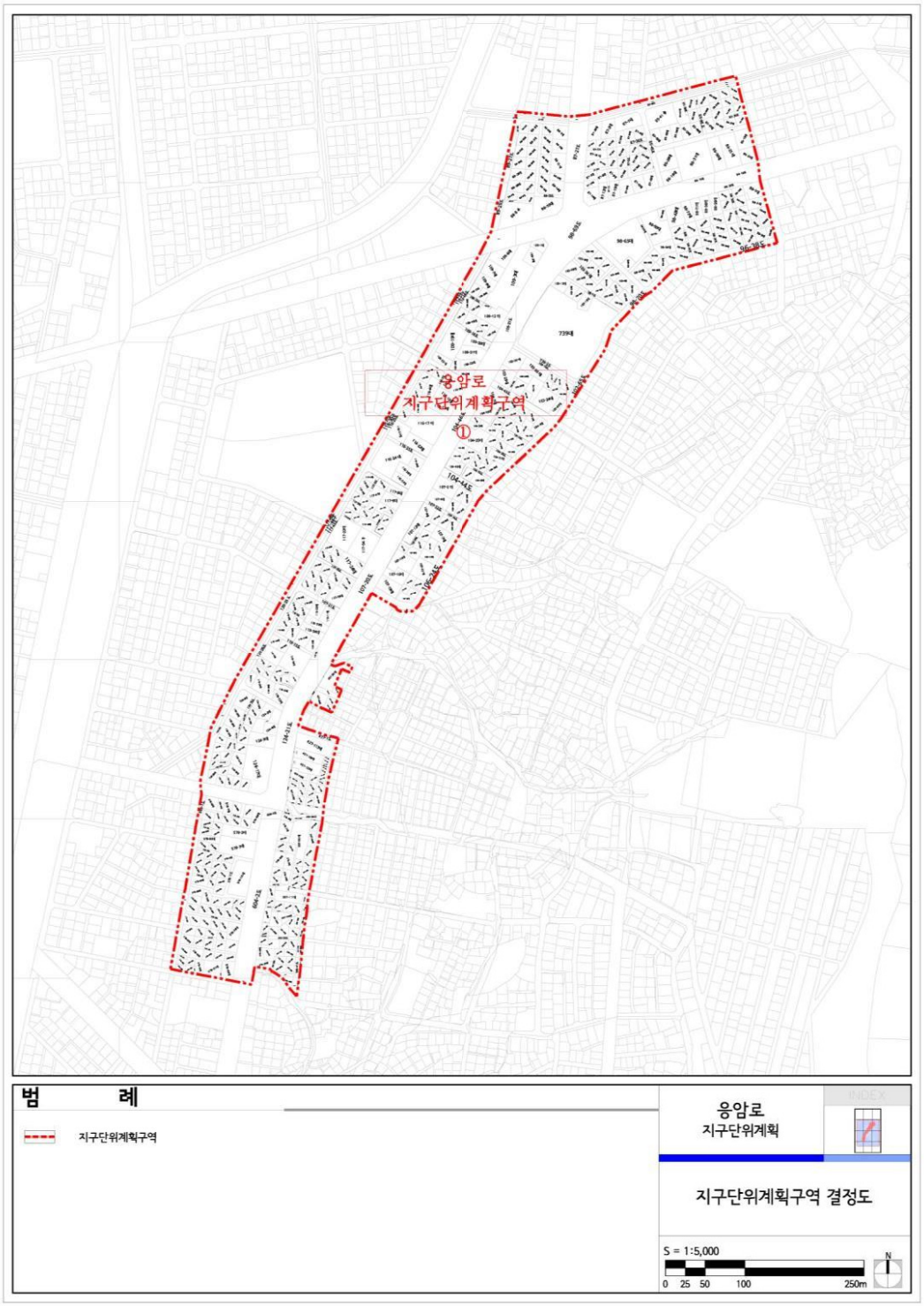

142. 수색1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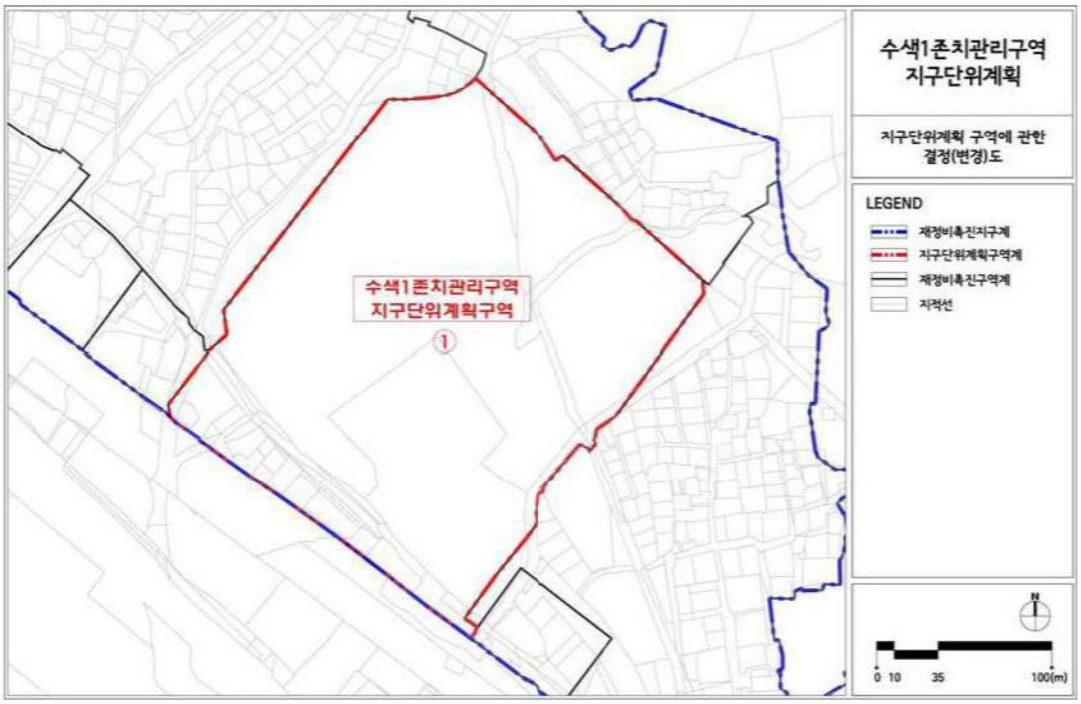

143. 증산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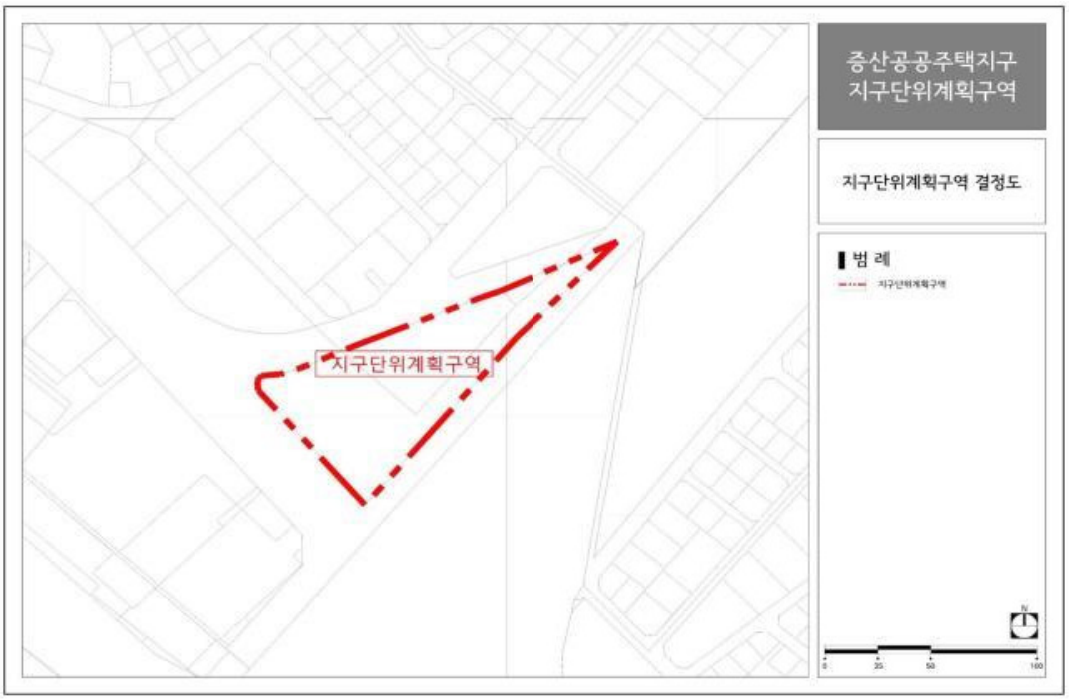

144. 서대문구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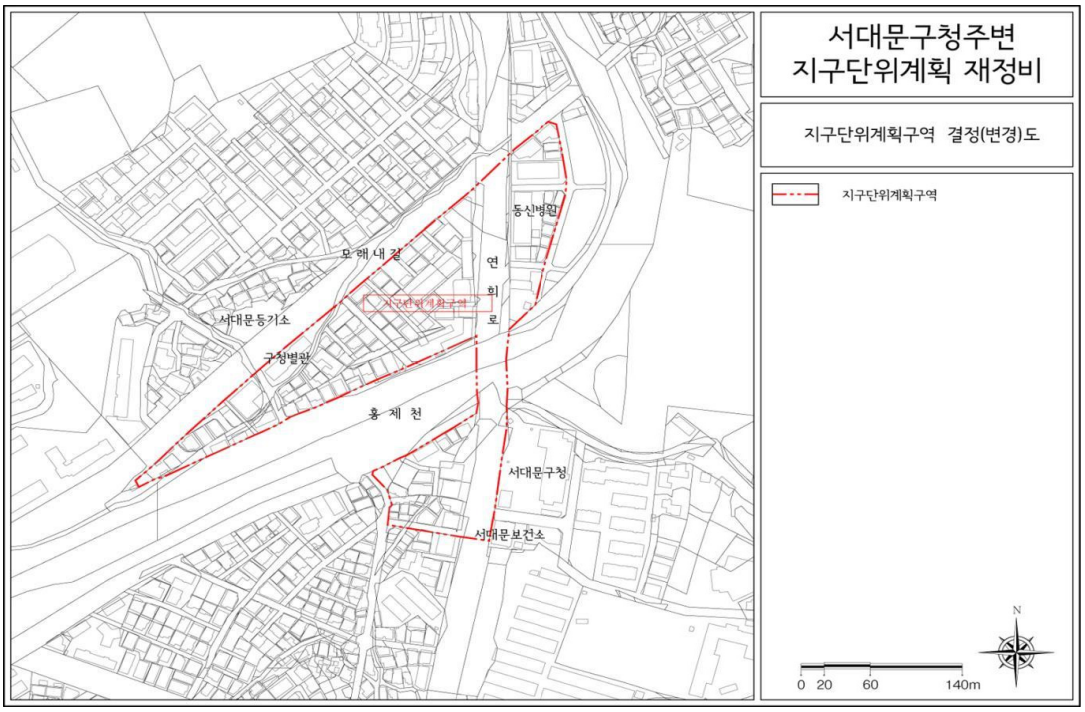

145. 개미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46. 천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47. 충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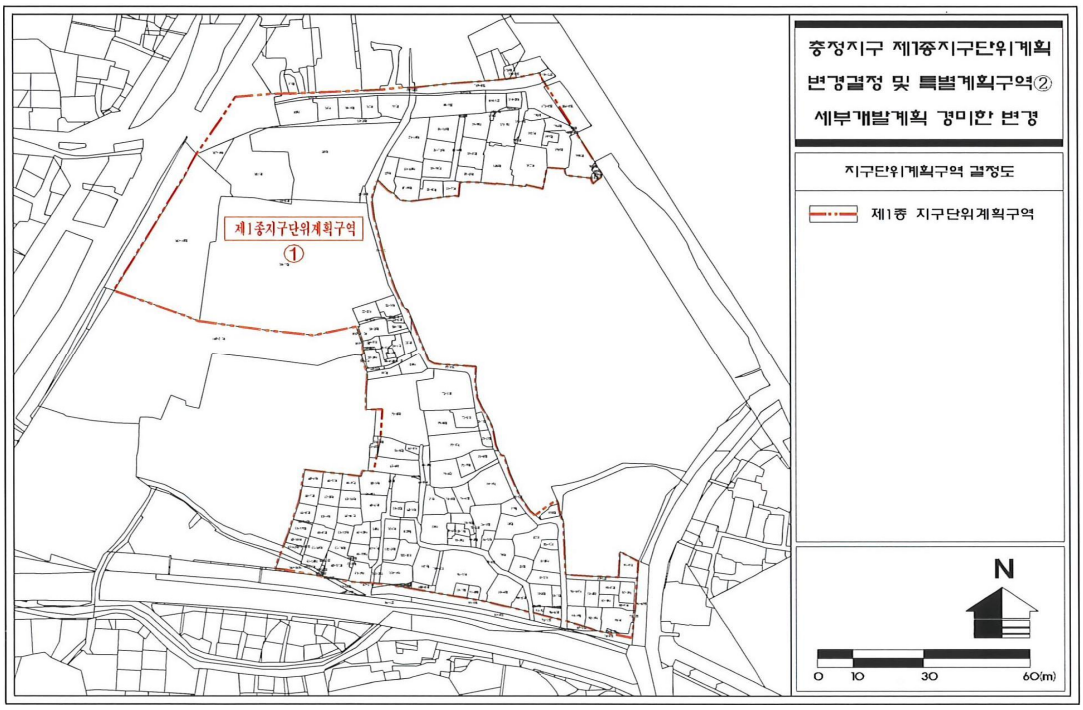

148. 서울 휴먼타운(북가좌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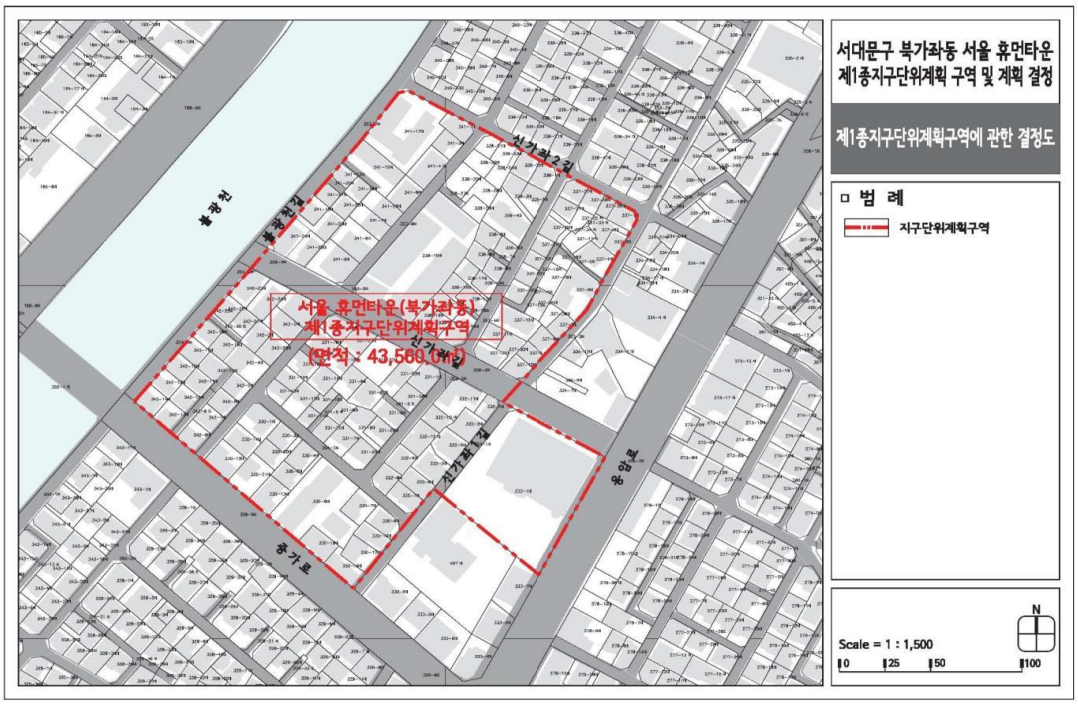

149. 가재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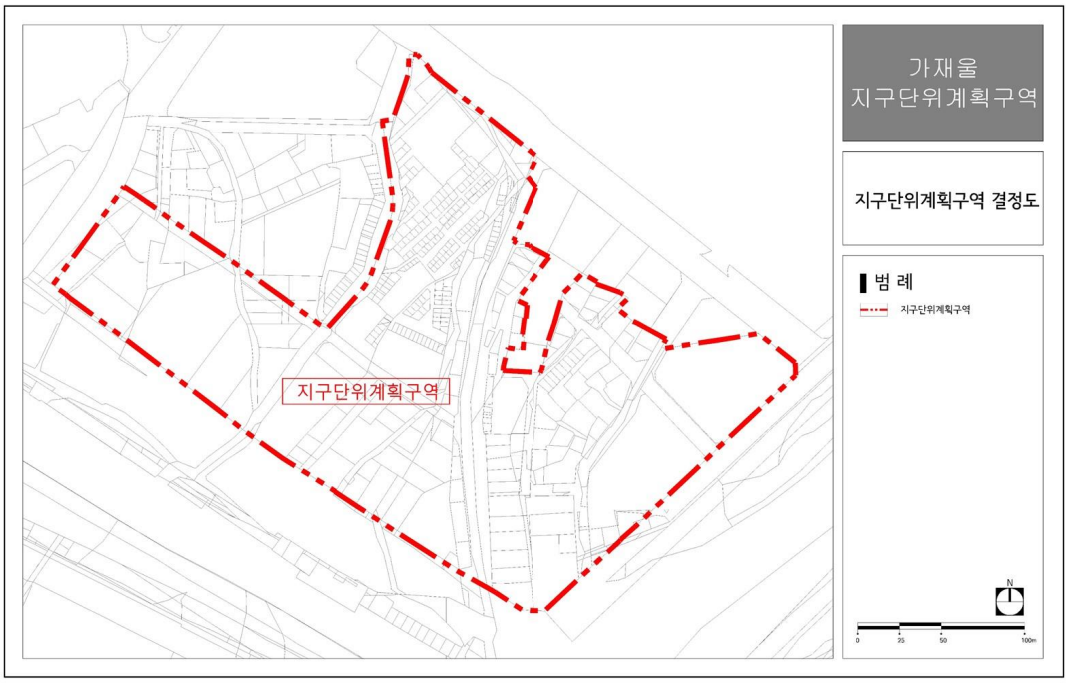

150. 아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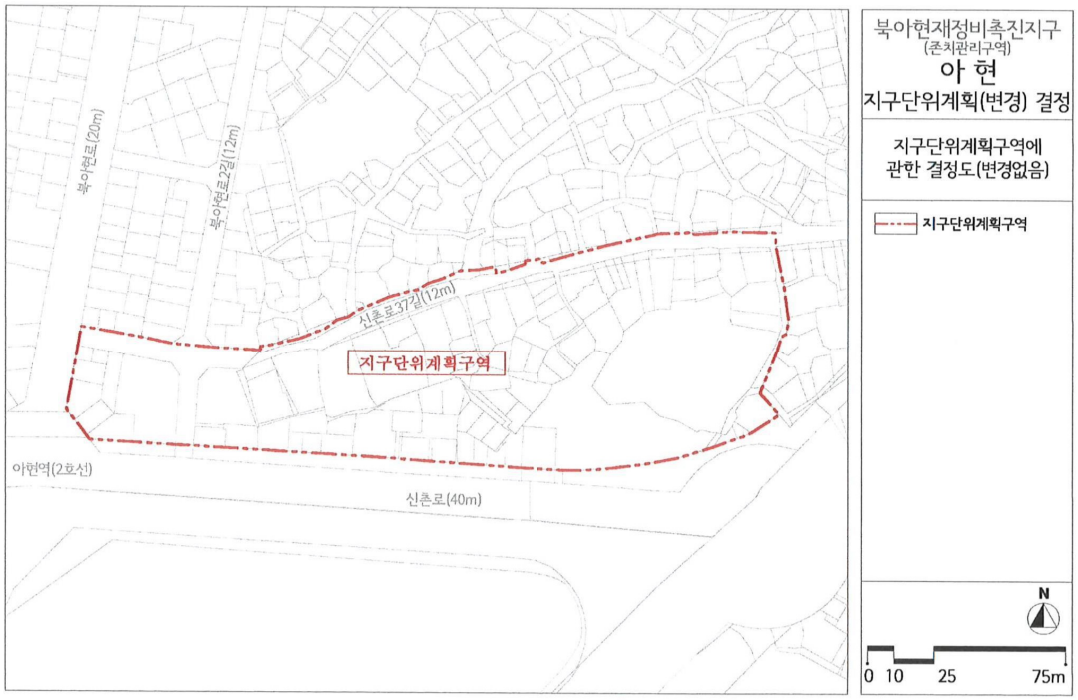

151. 북아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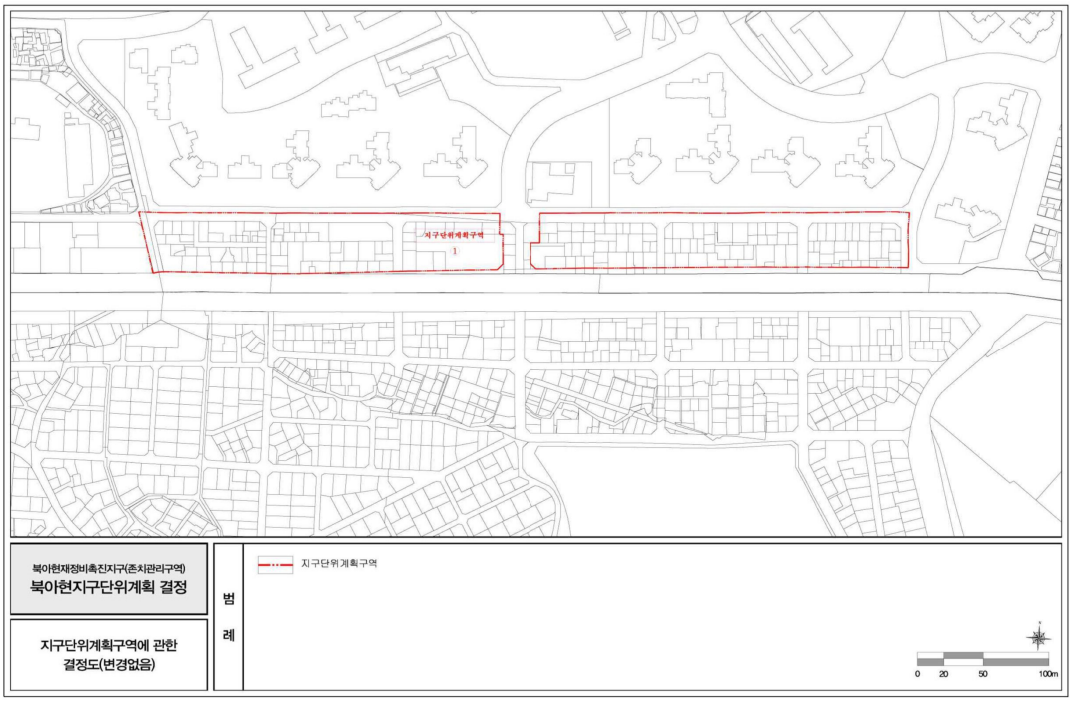

152. 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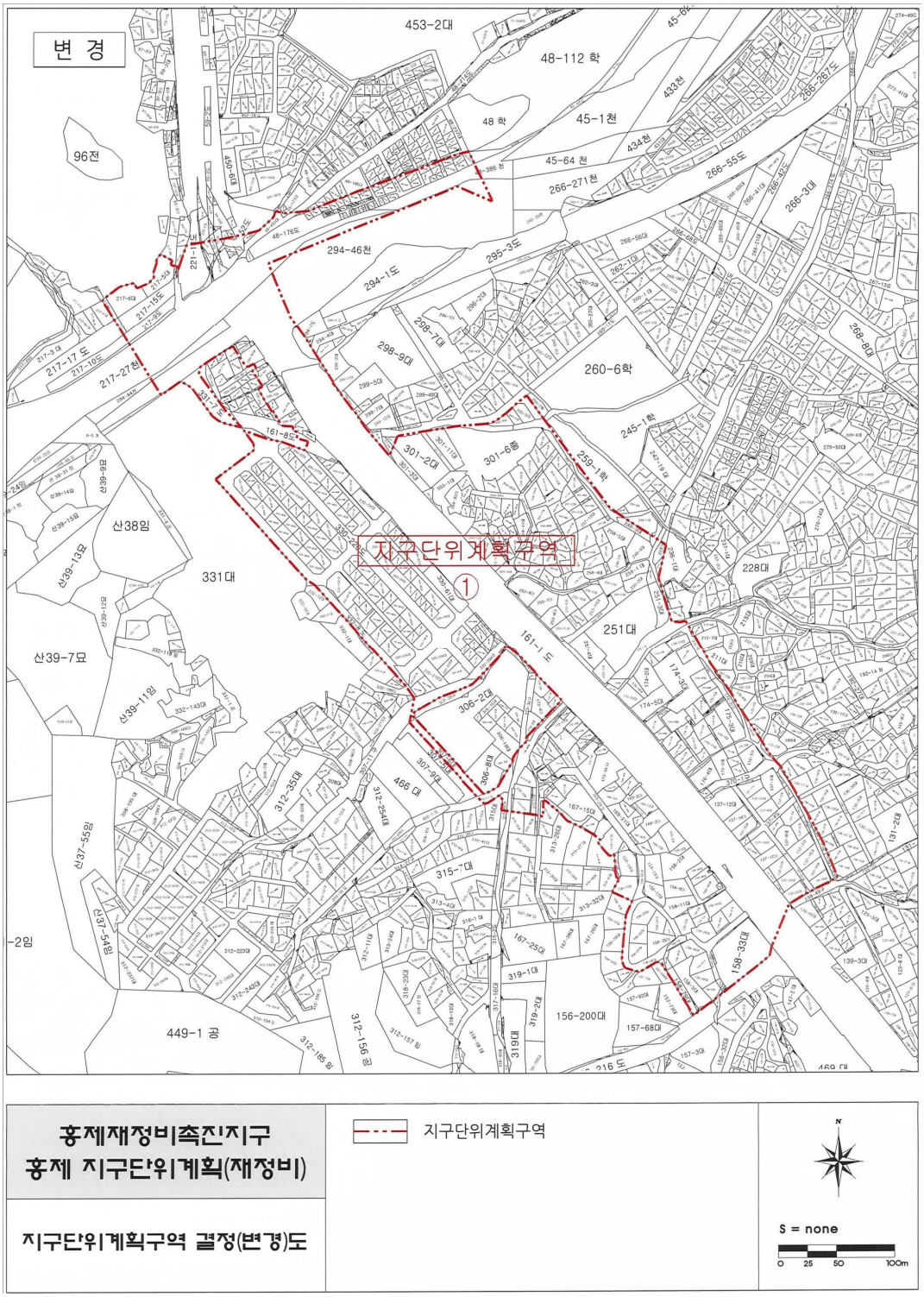

153.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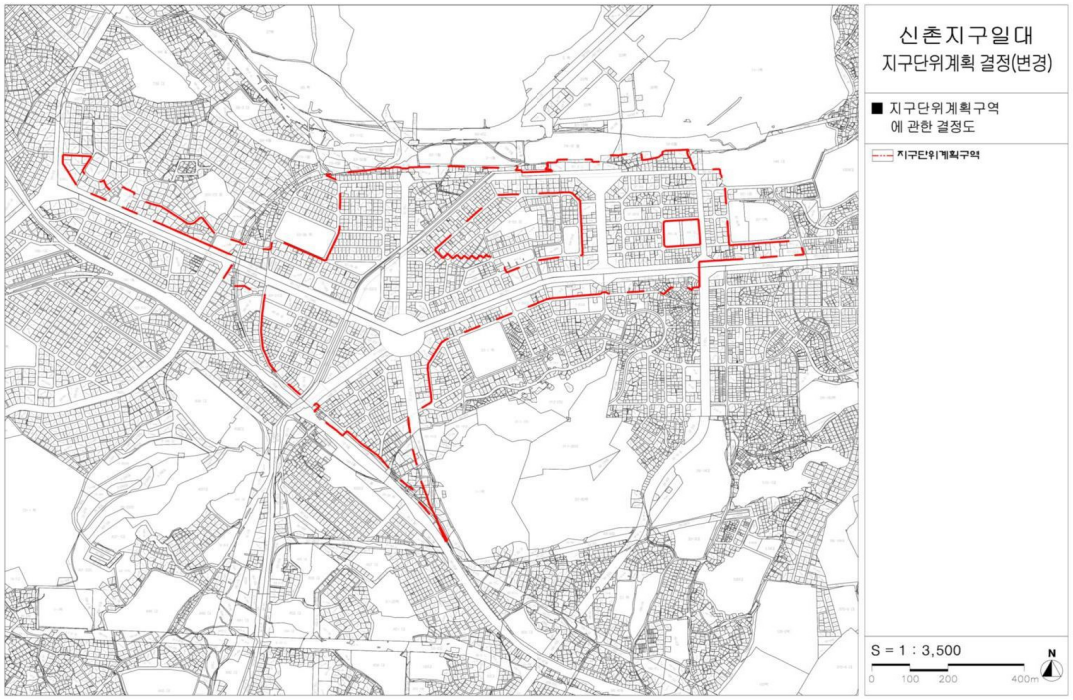

154. 충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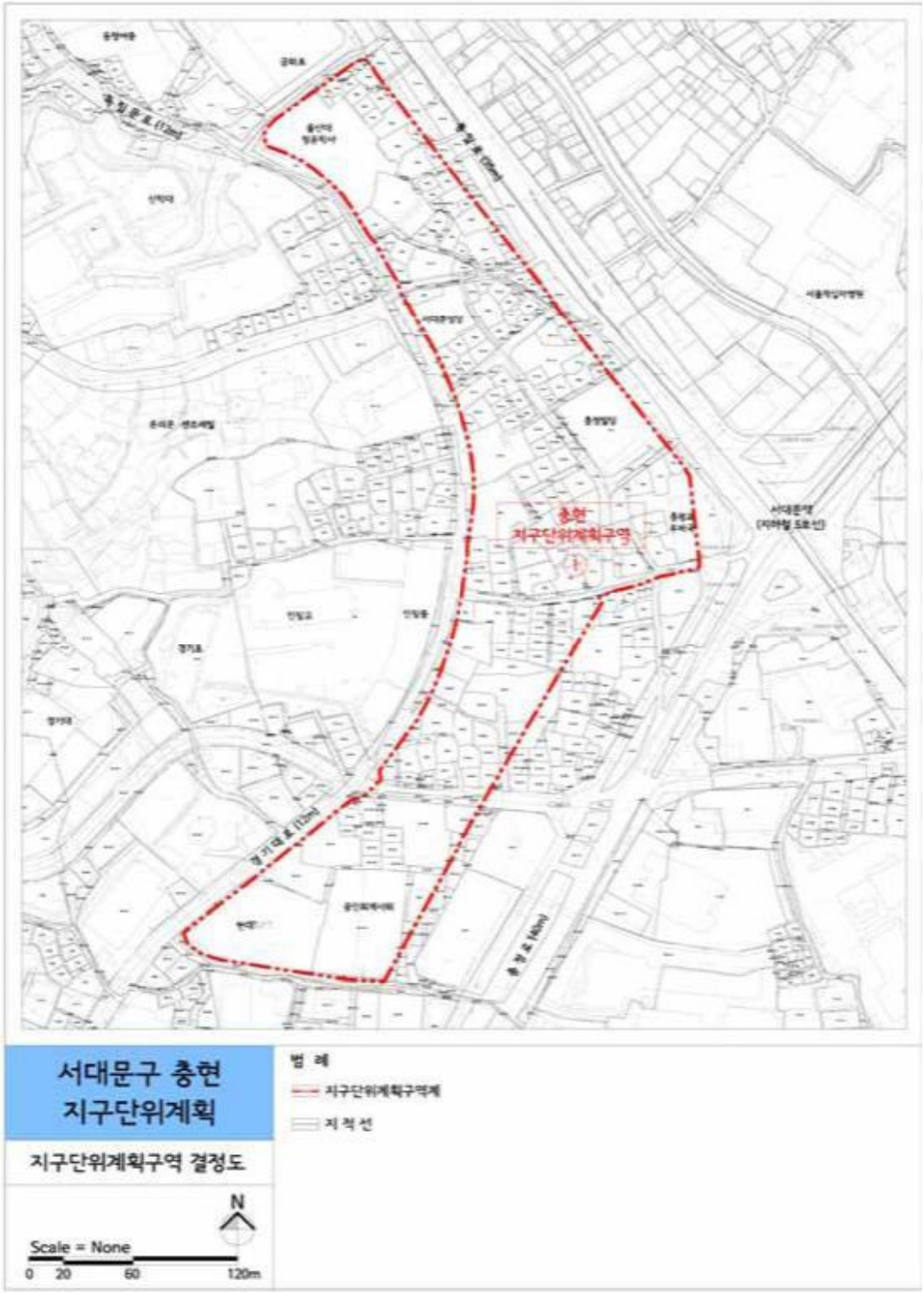

155.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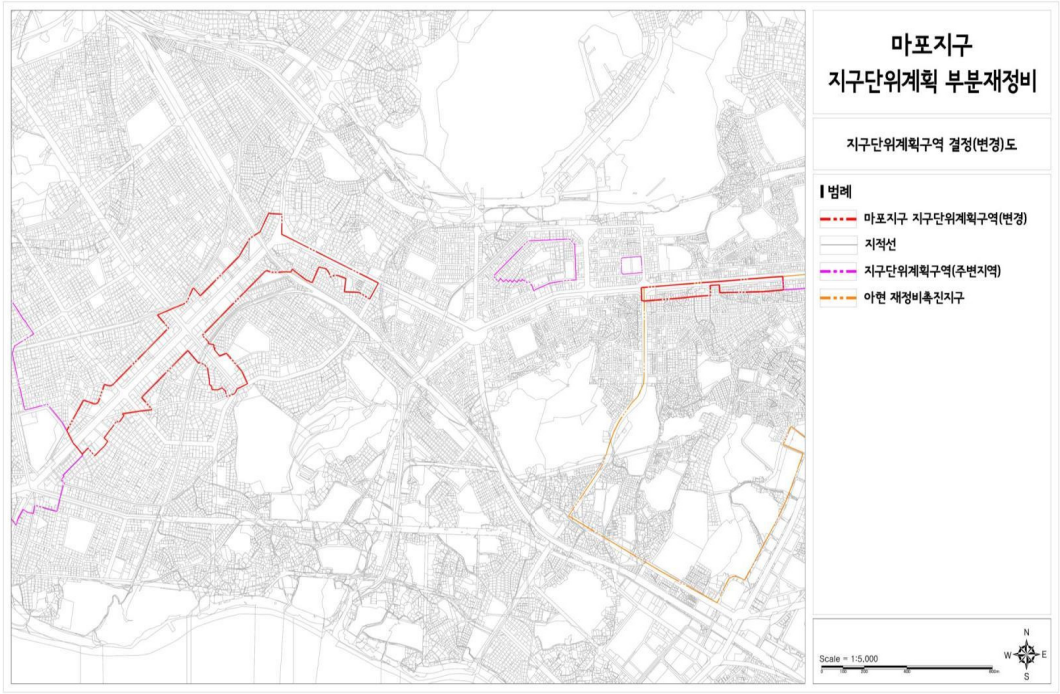

156. 공덕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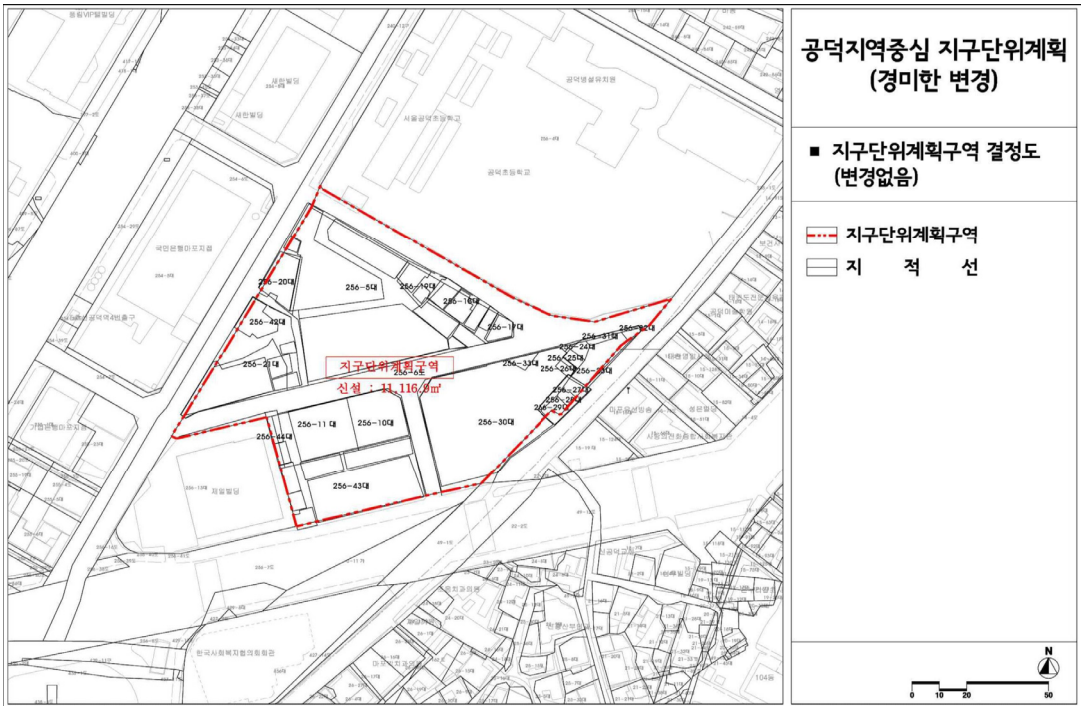

157. 성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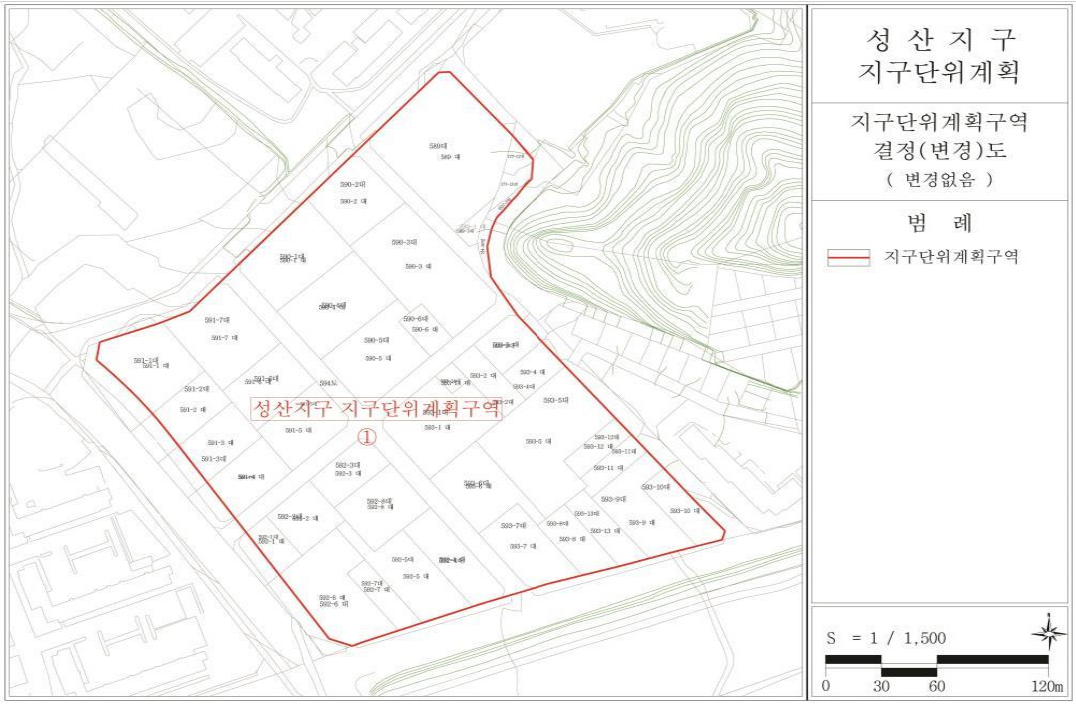

158. 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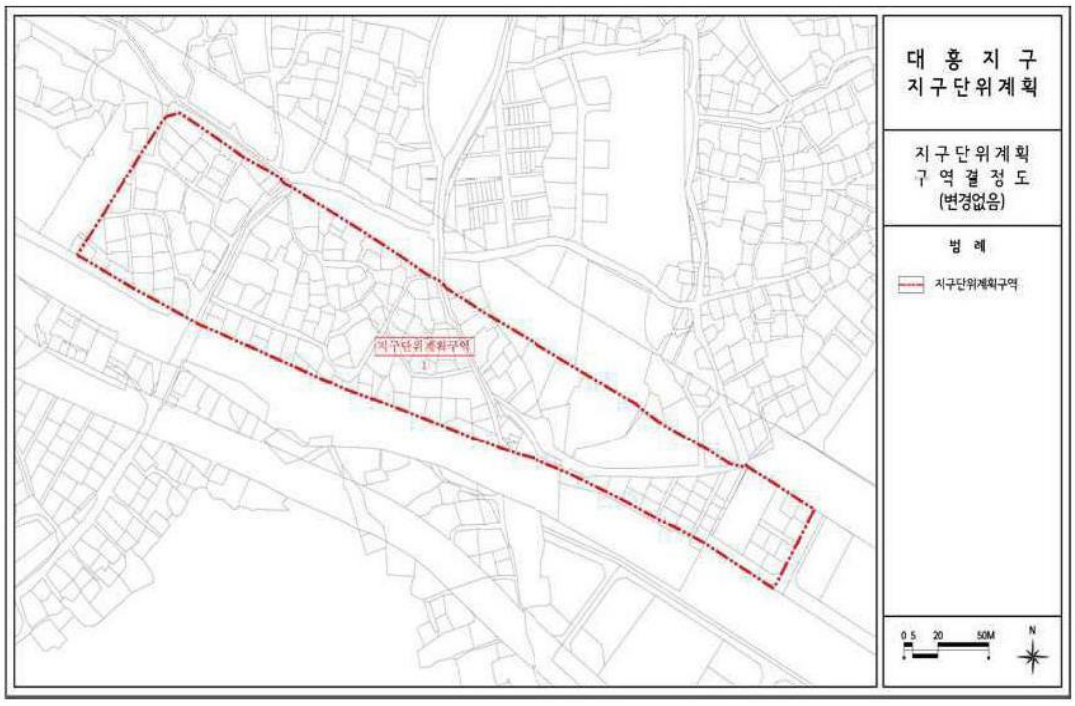

159. 상수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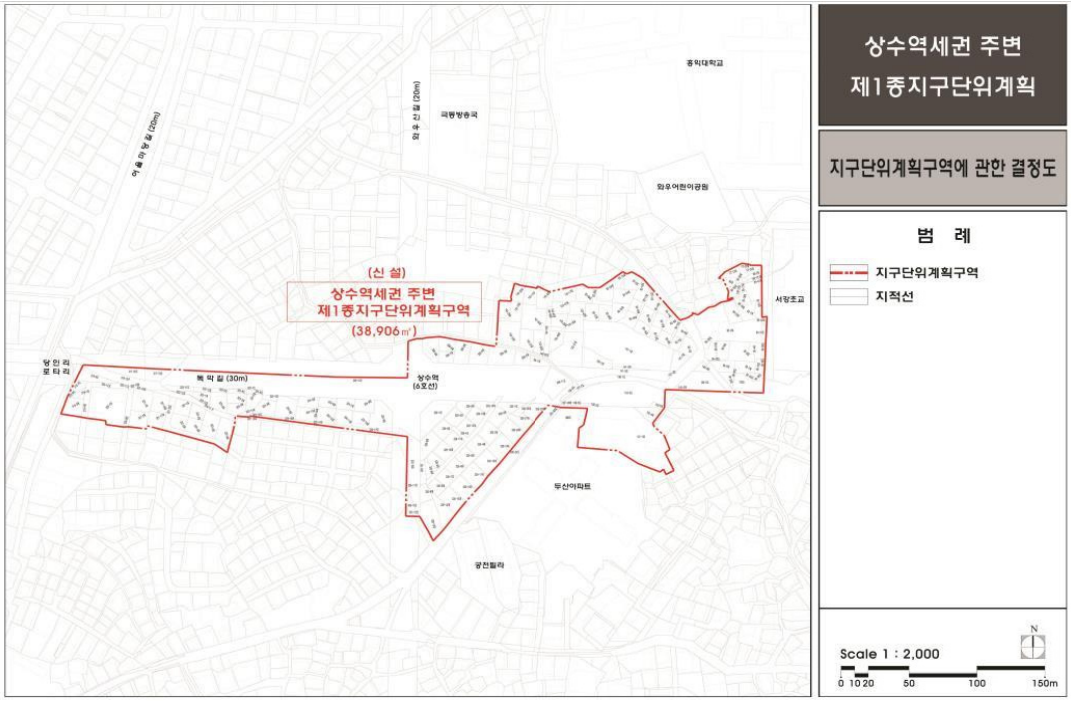

160. 마포구 청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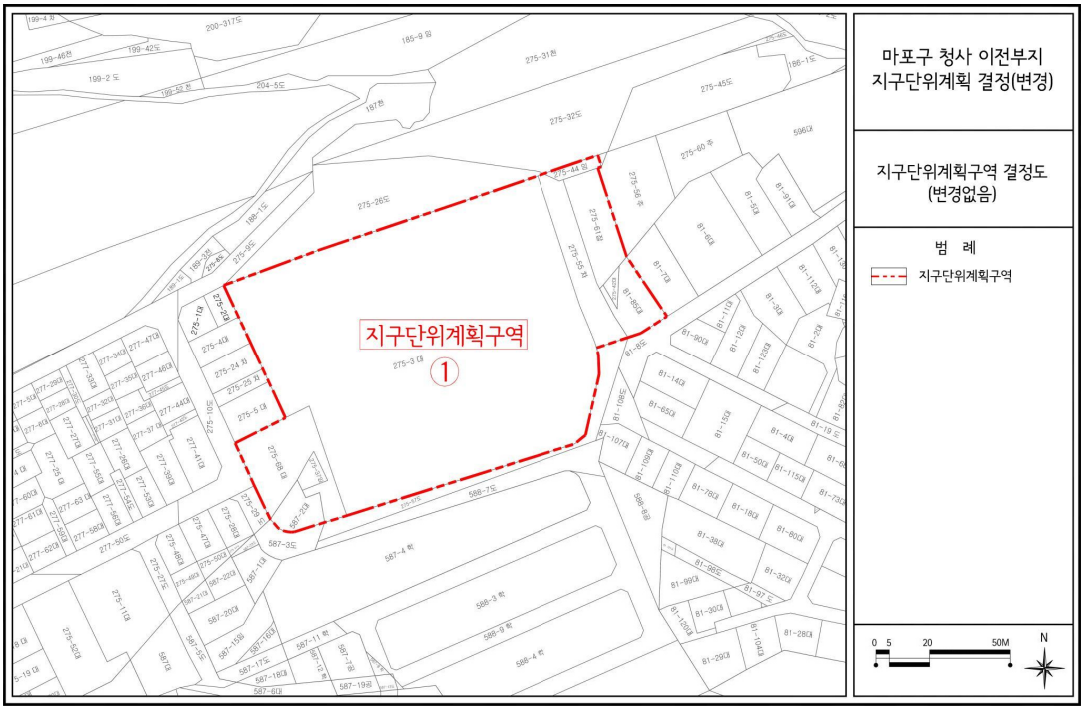

161. 상암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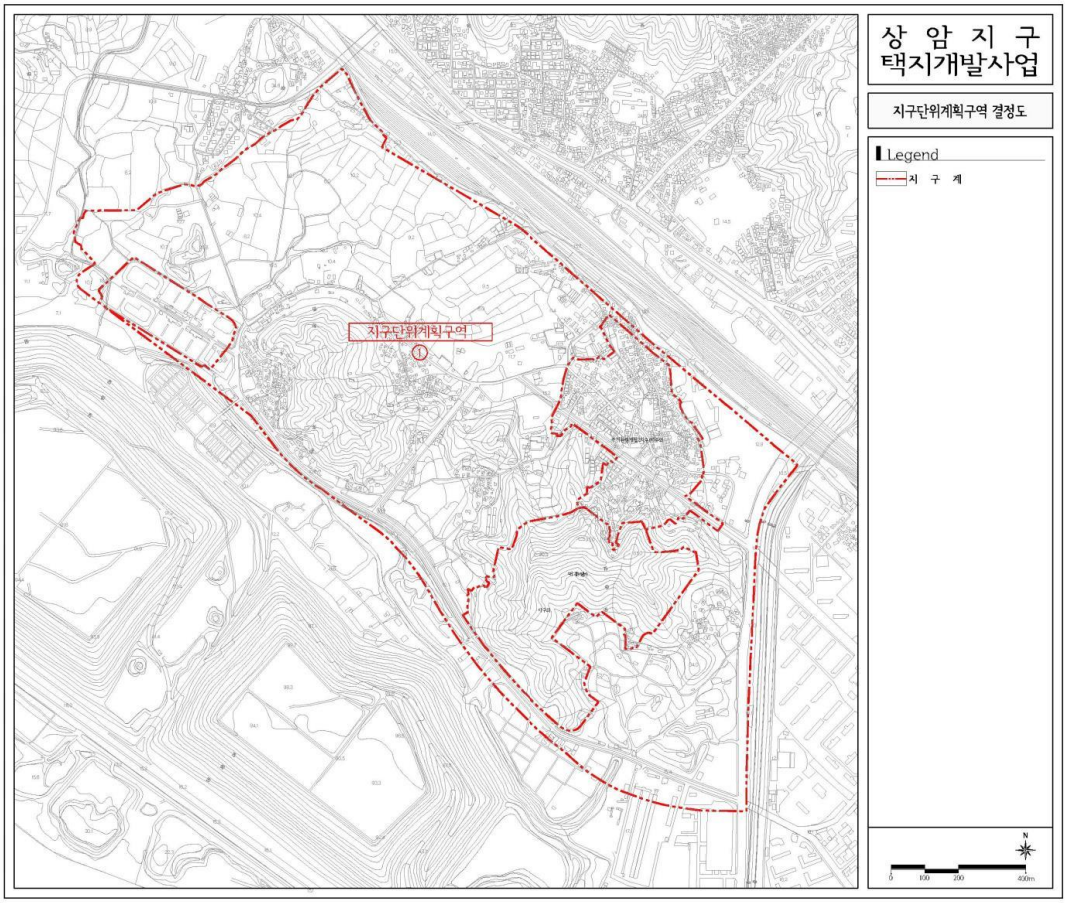

162. 상암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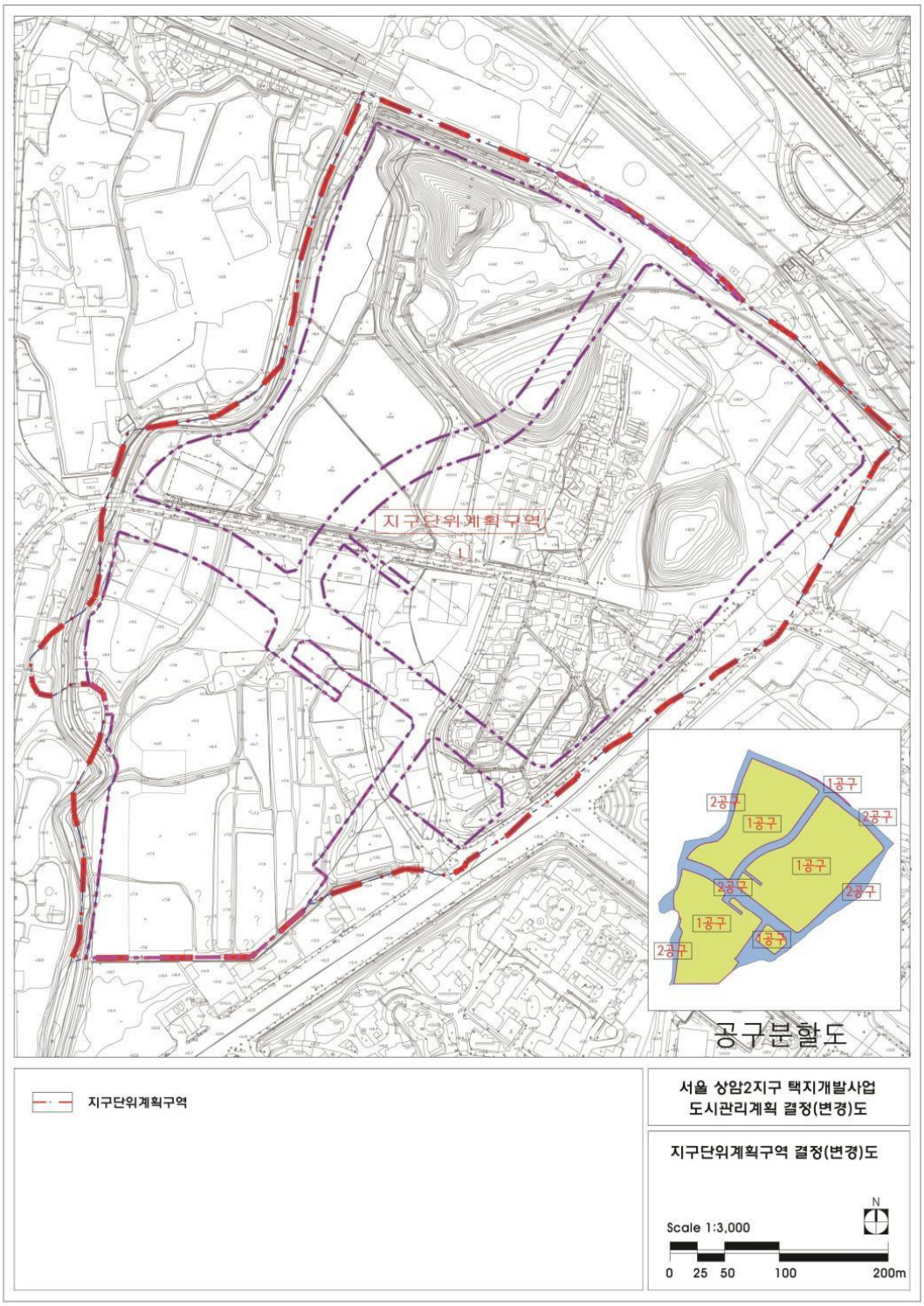

163. 서울 휴먼타운(연남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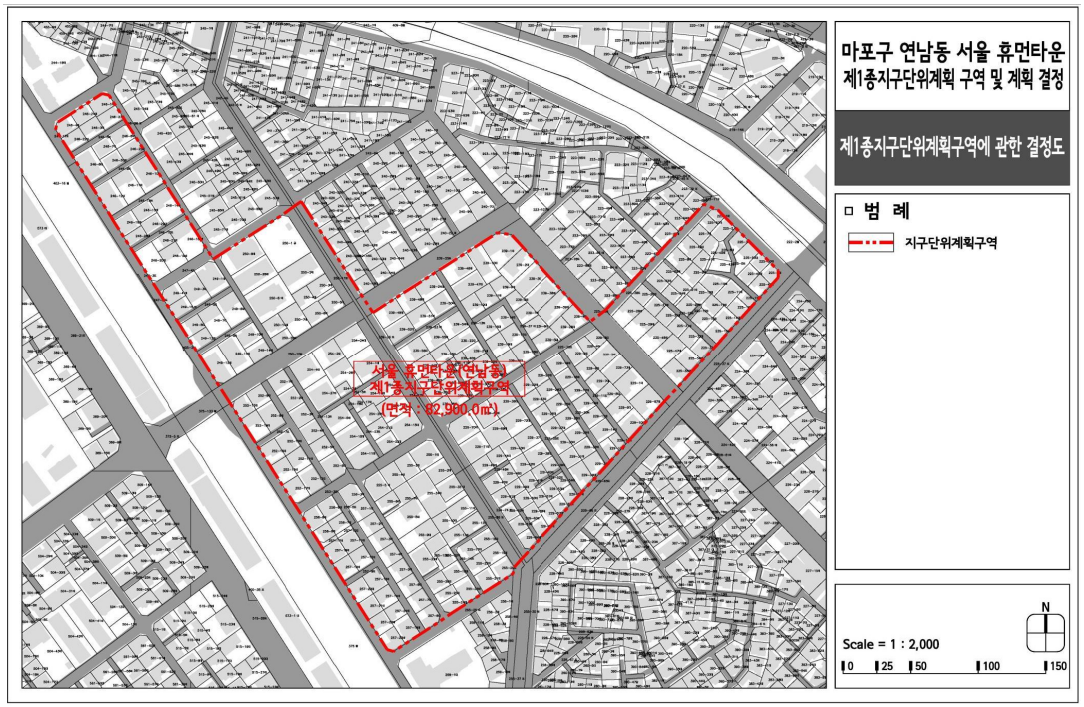

164.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65. 아현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66. 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67. 경의선 공덕역 복합역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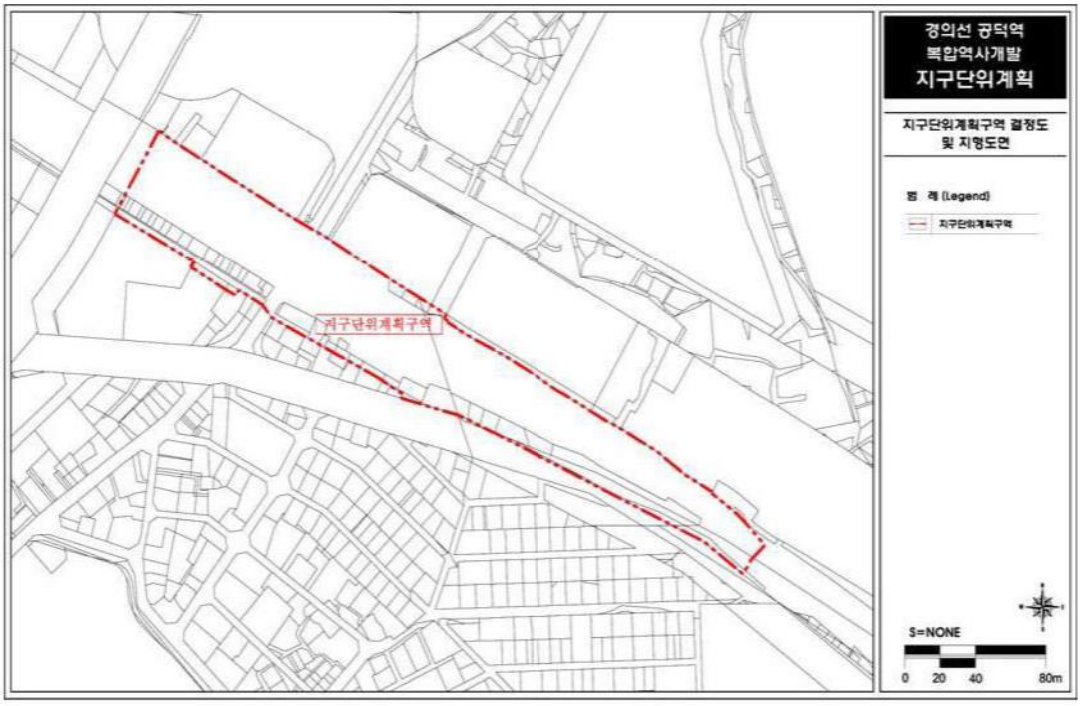

168. 마포 디자인 · 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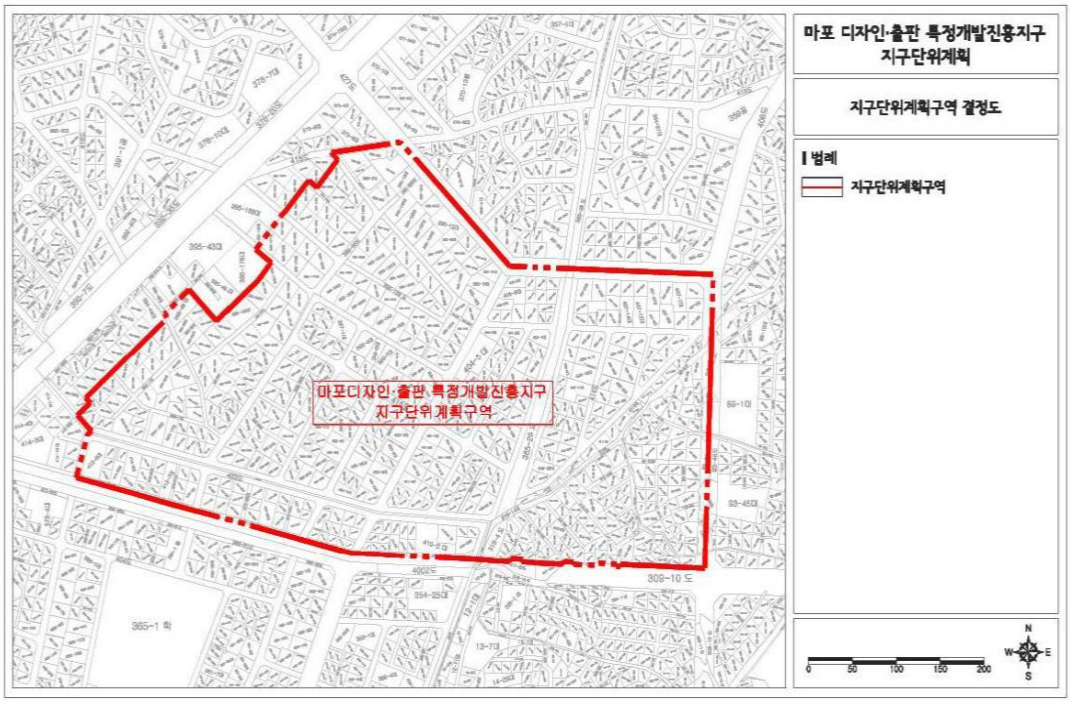

169. 공덕동 행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70. 경의선 서강대역 복합역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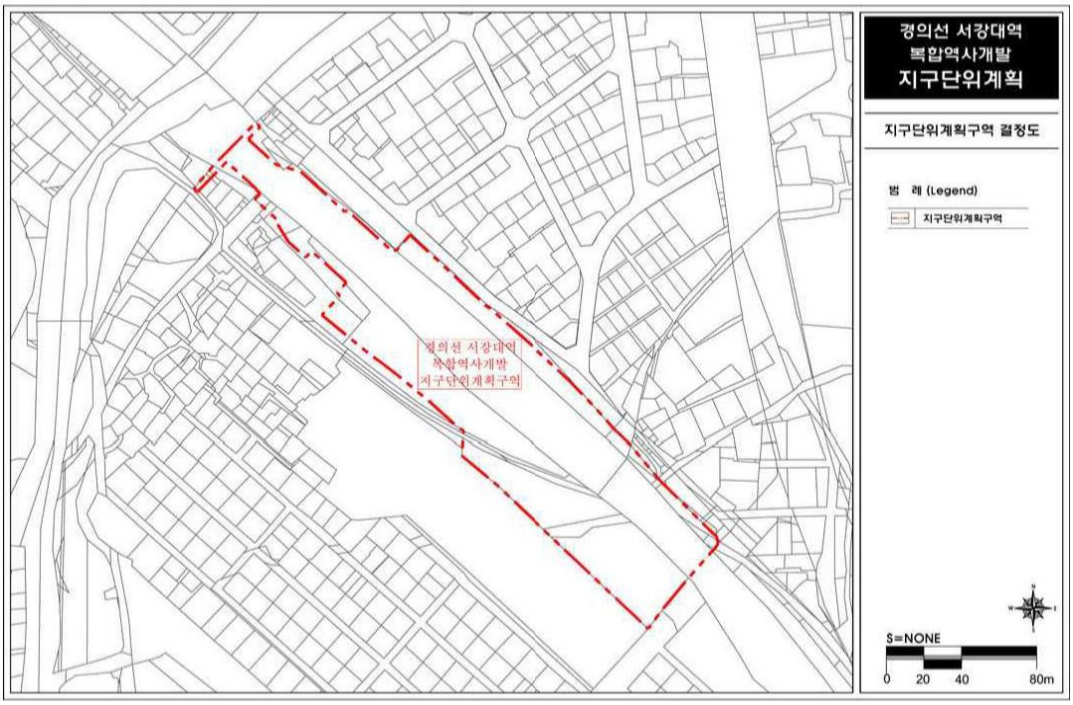

171.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72. 신월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73. 신정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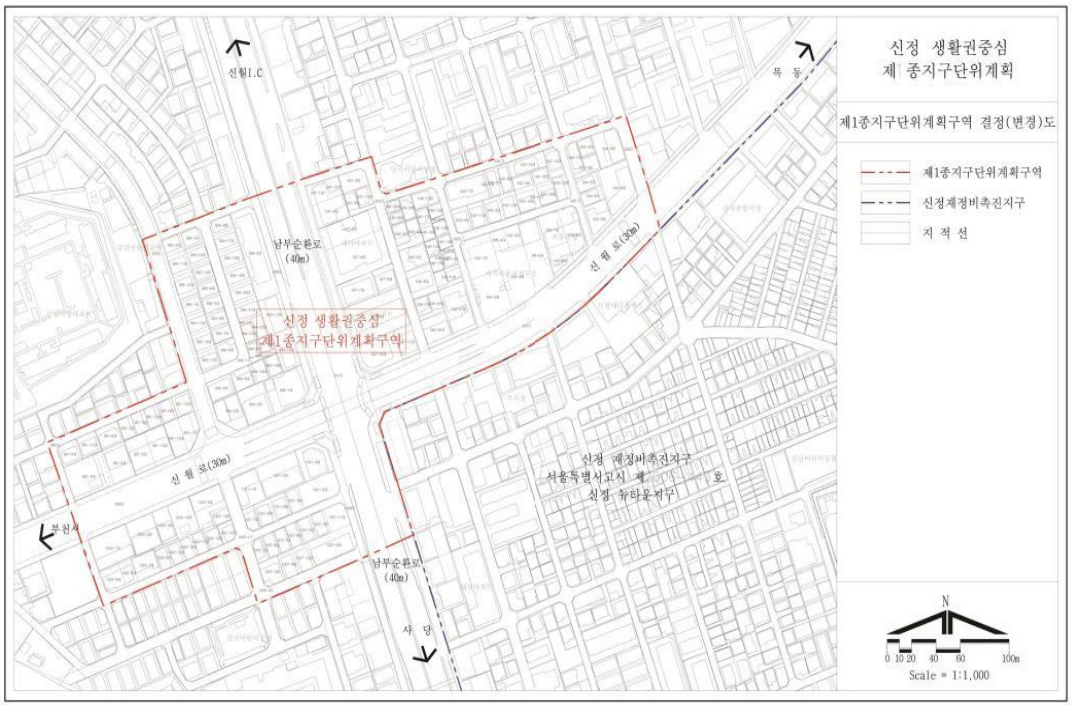

174.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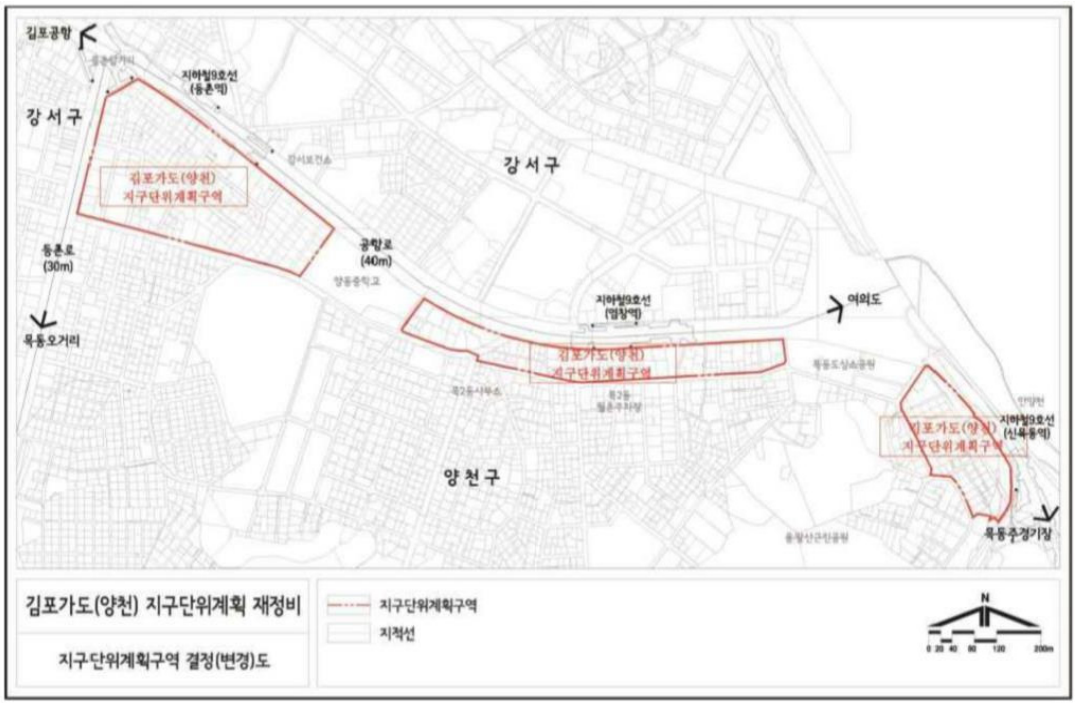

175.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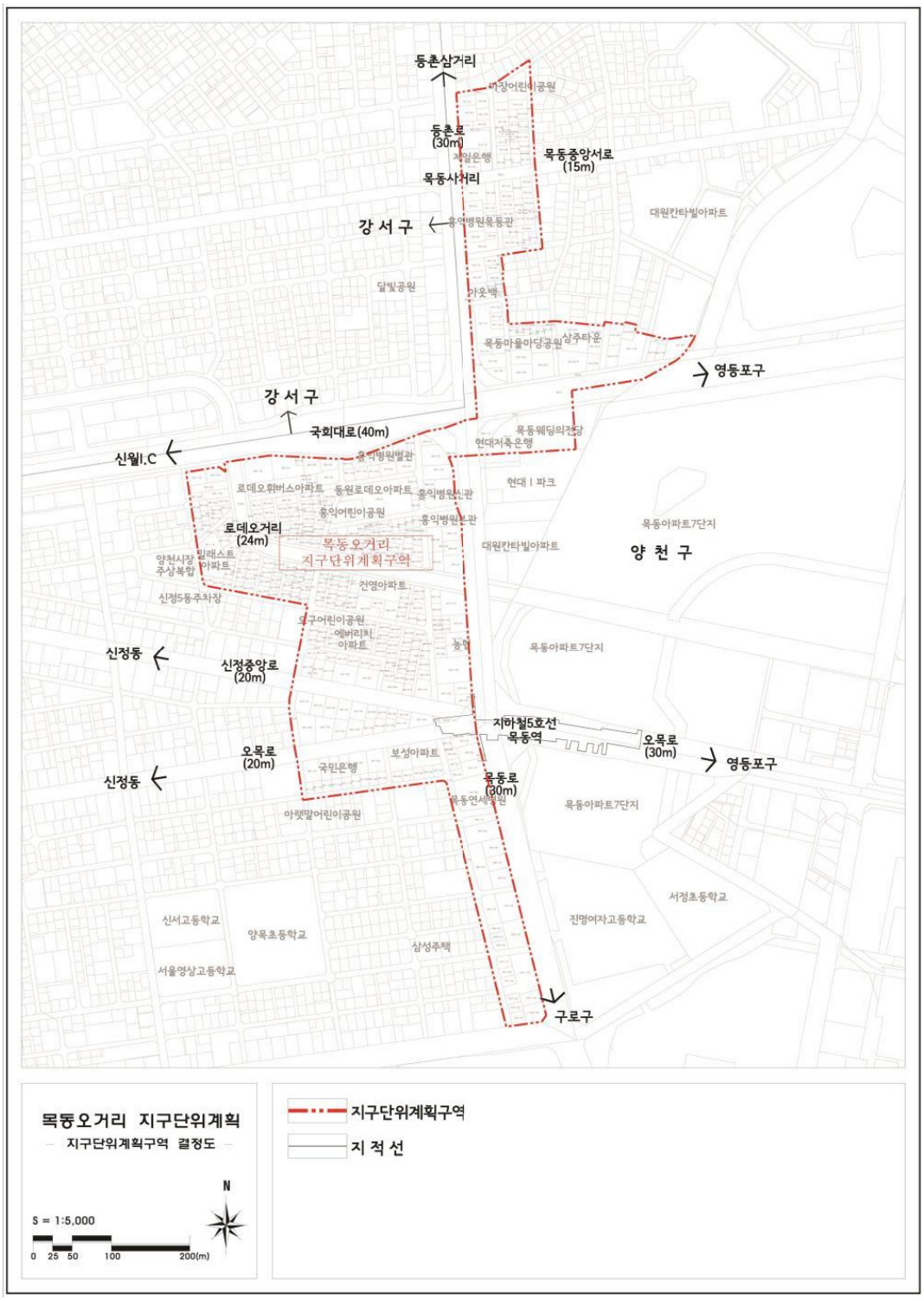

176. 신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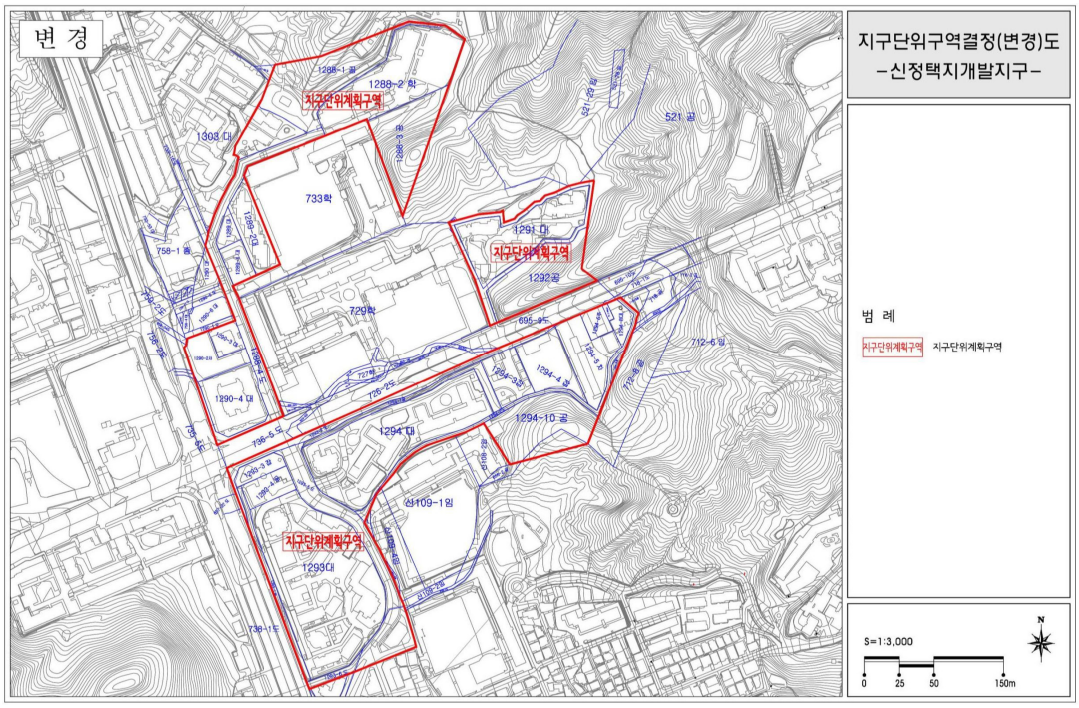

177. 신정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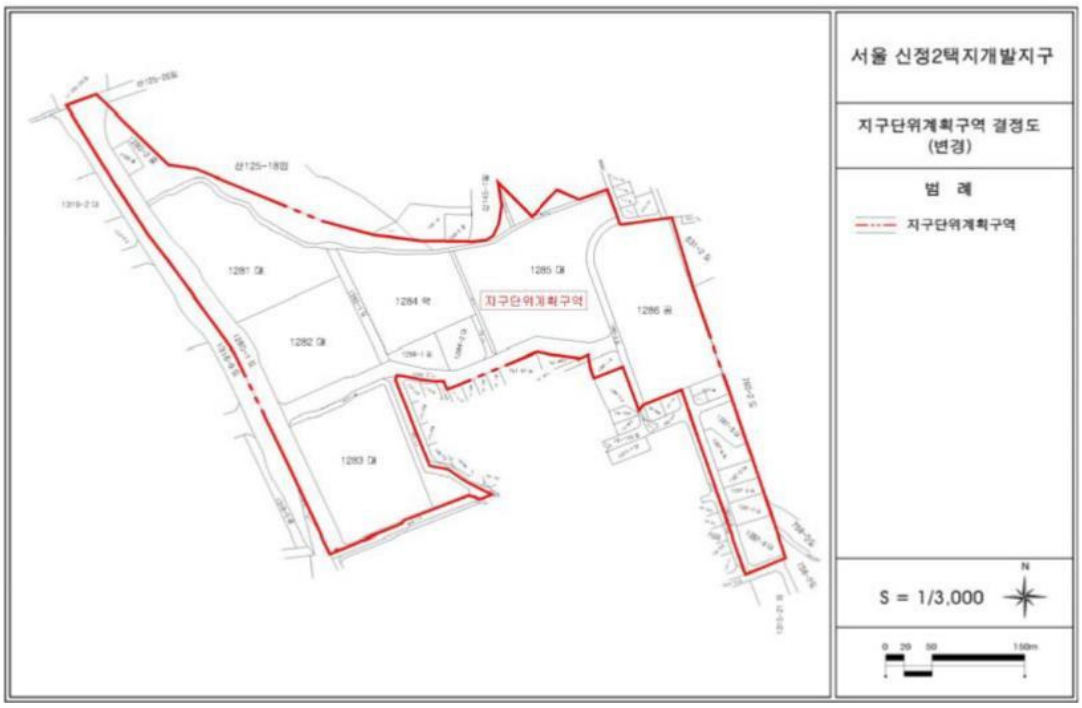

178. 신투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79.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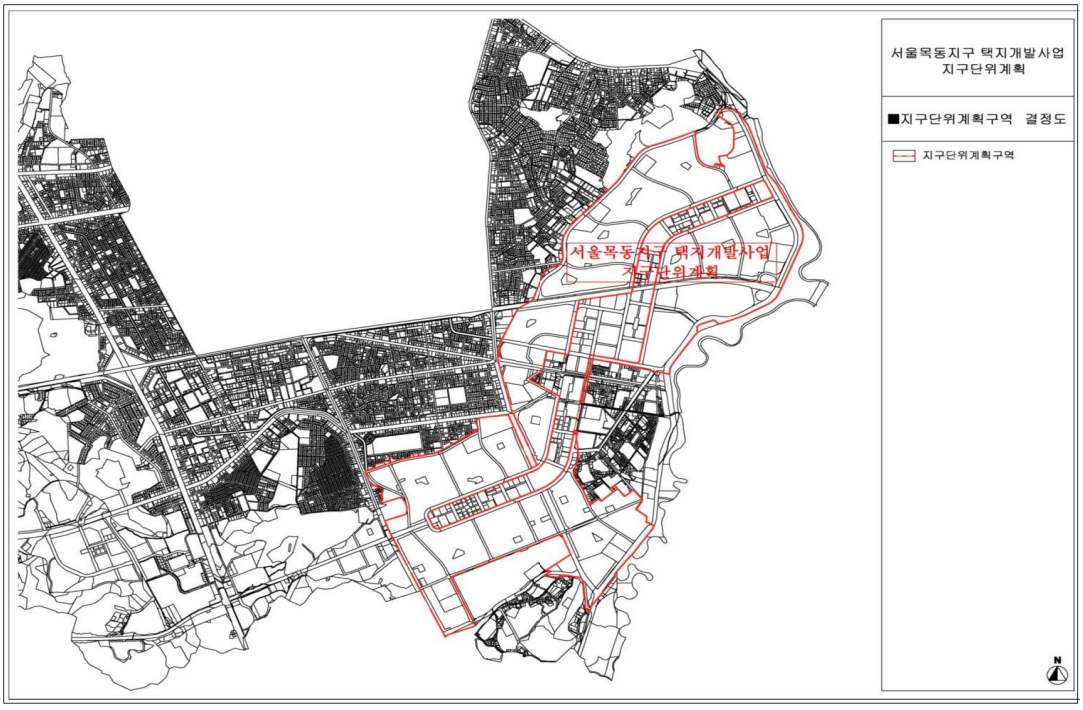

180. 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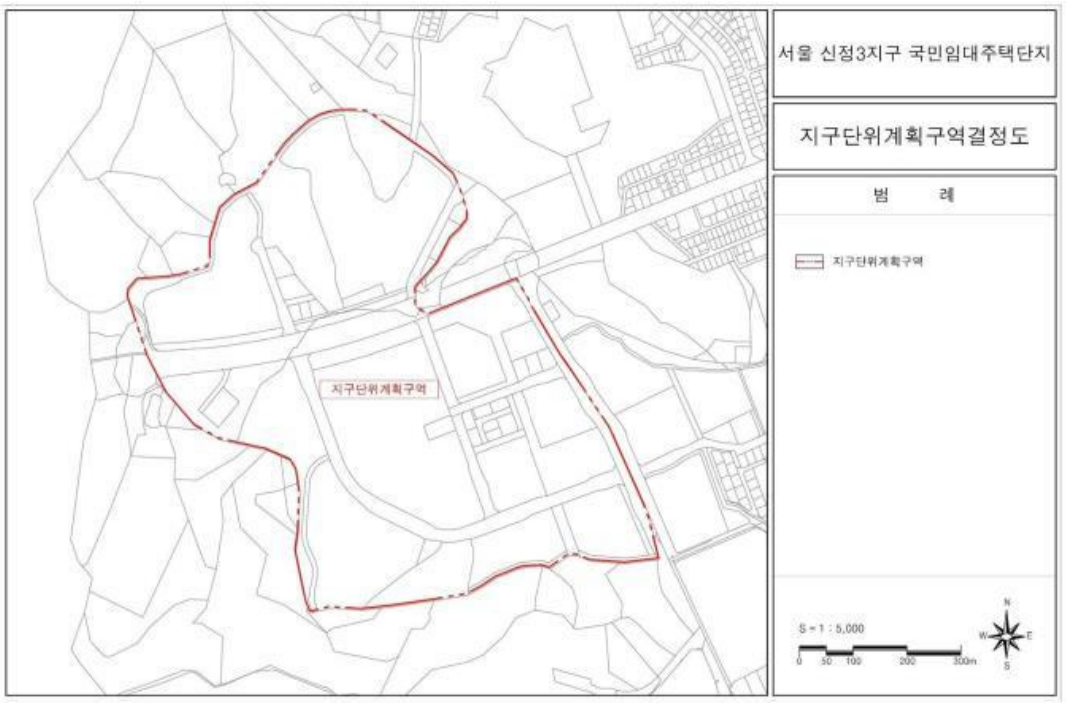

181.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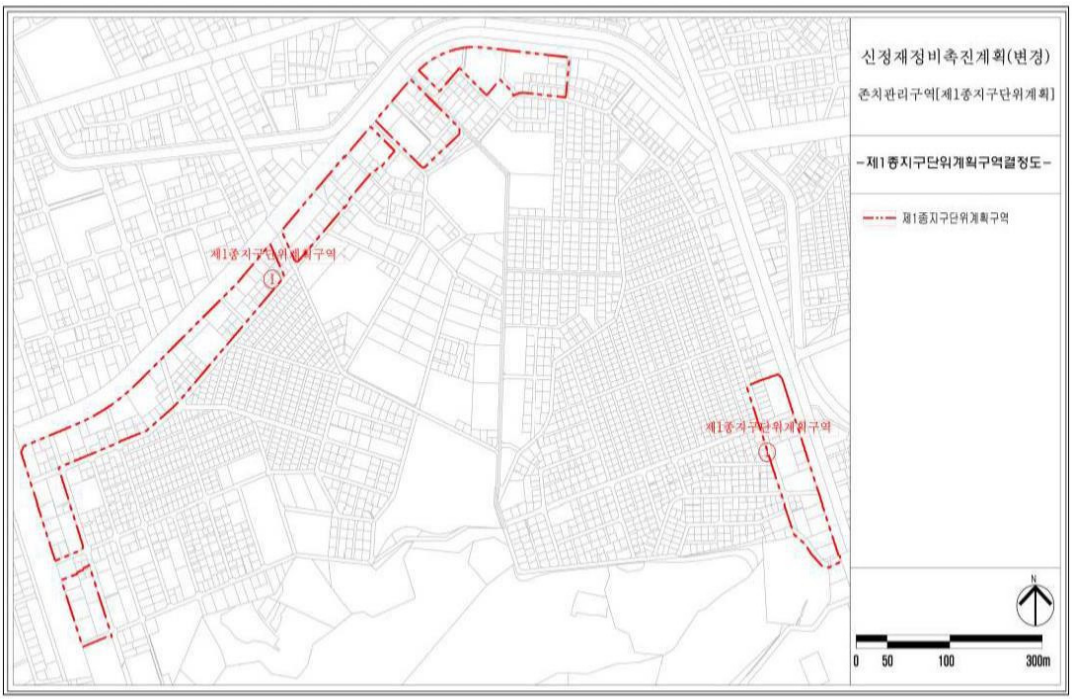

182. 서울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83. 신정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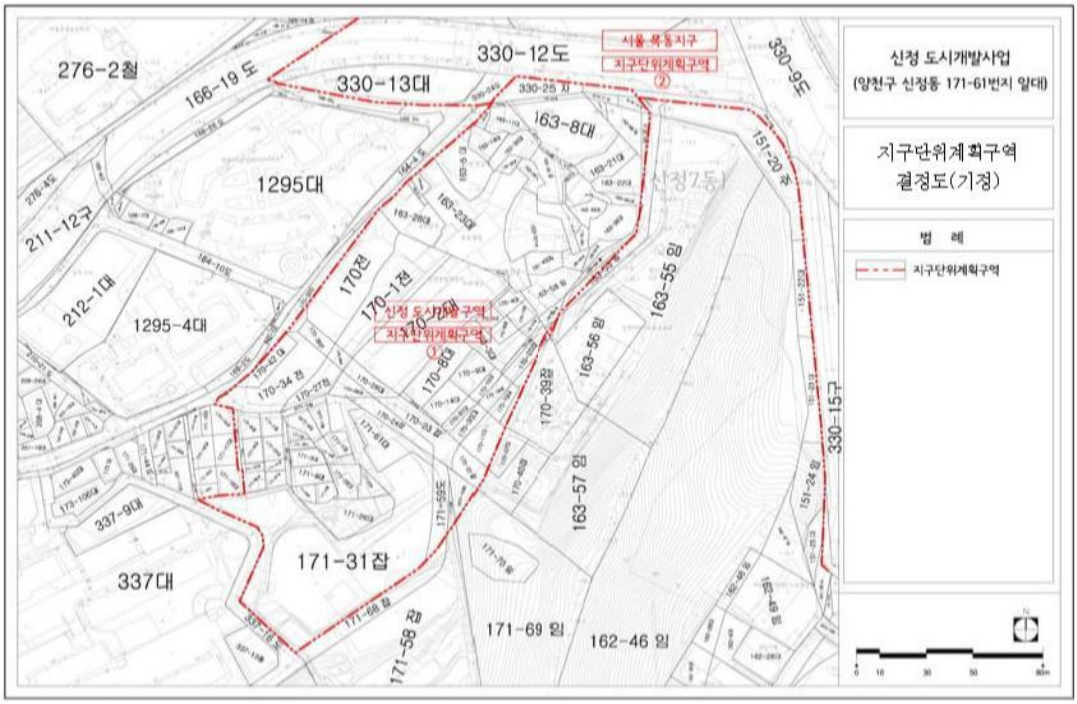

184. 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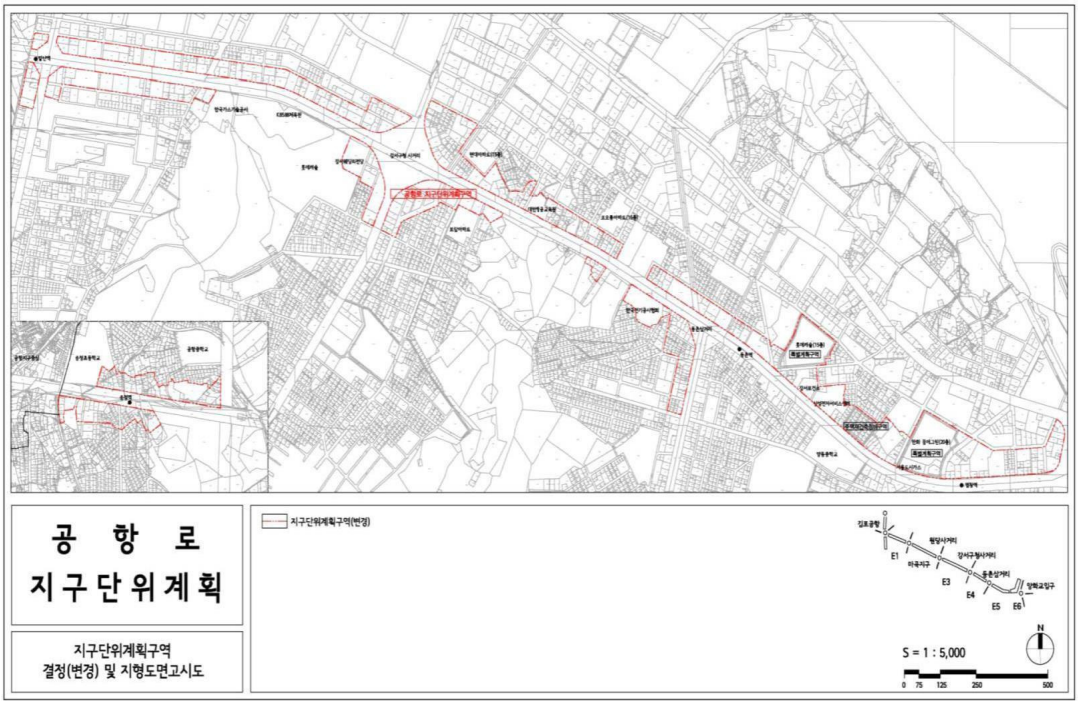

185. 우장산역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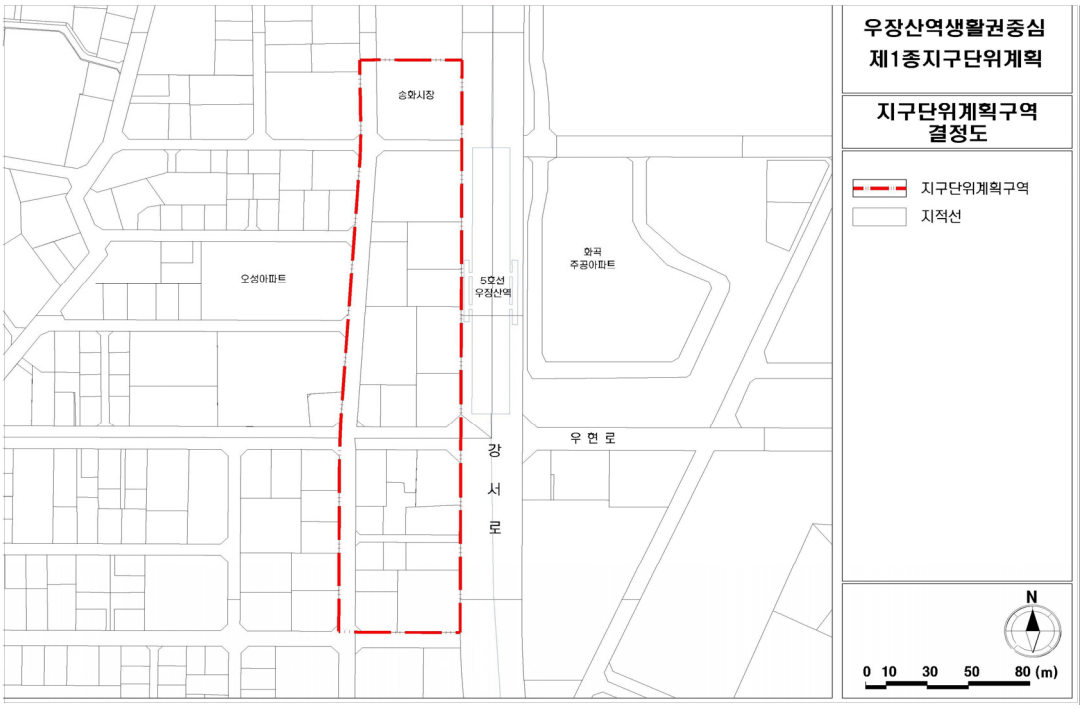

186. 목동사거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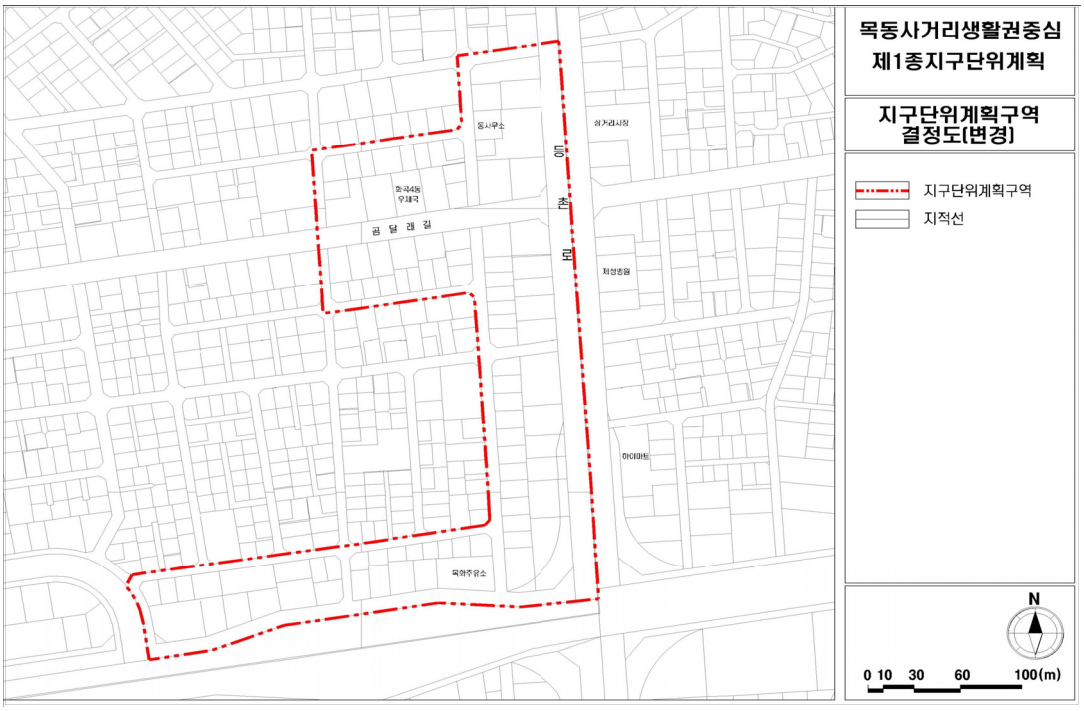

187.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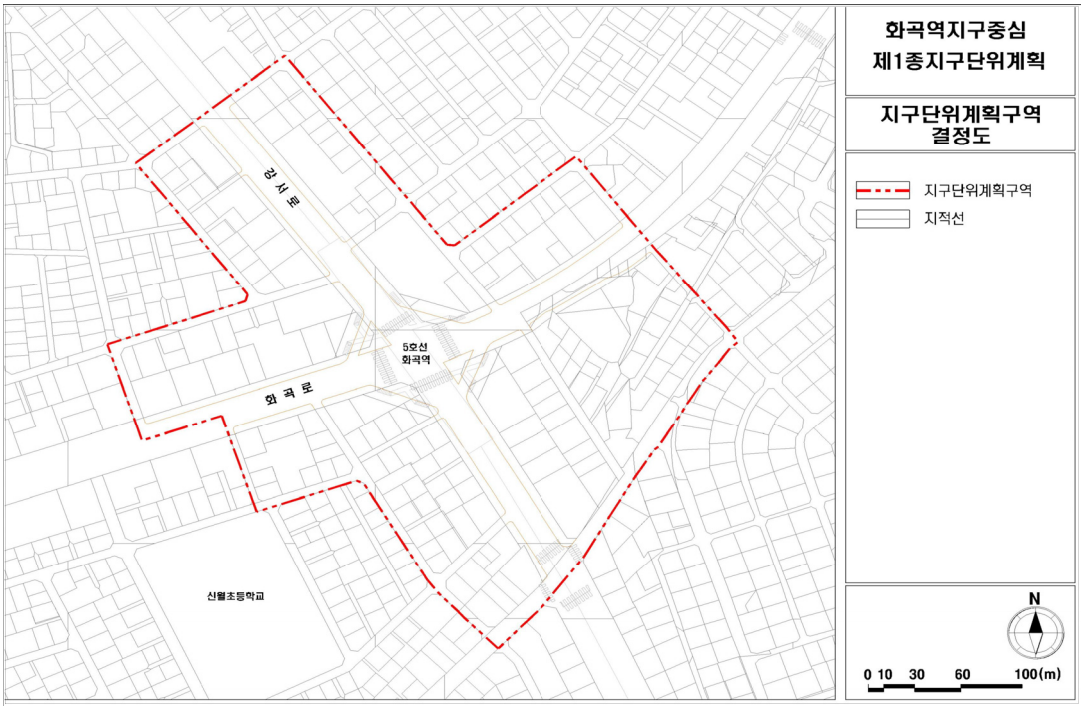

188. 까치산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89.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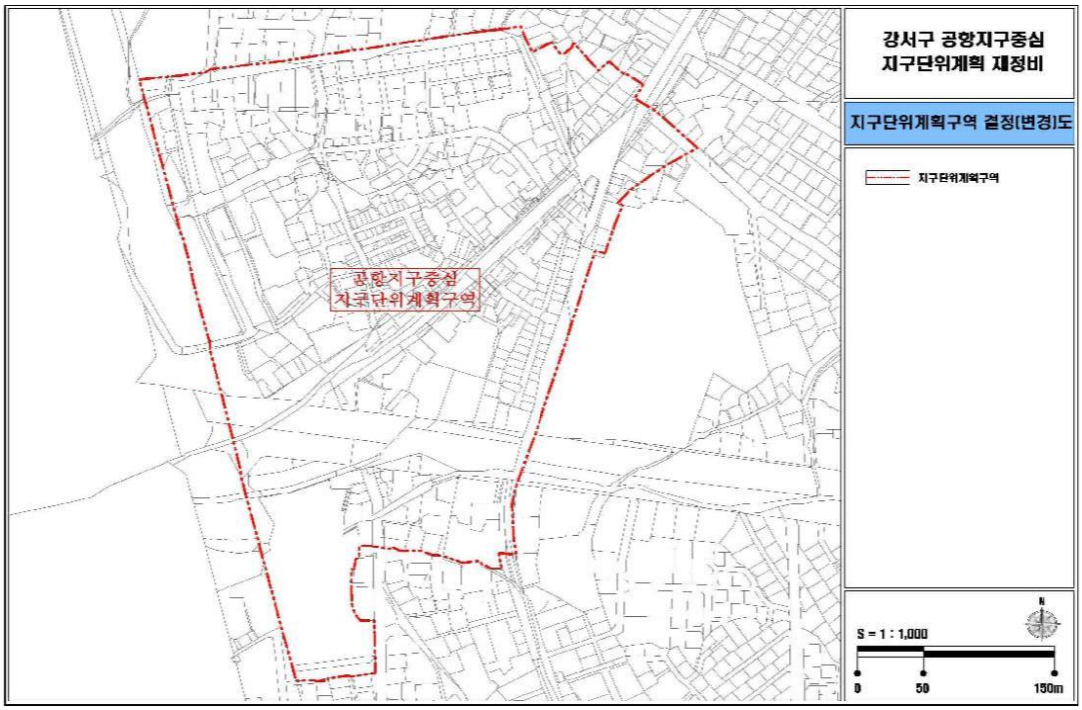

190. 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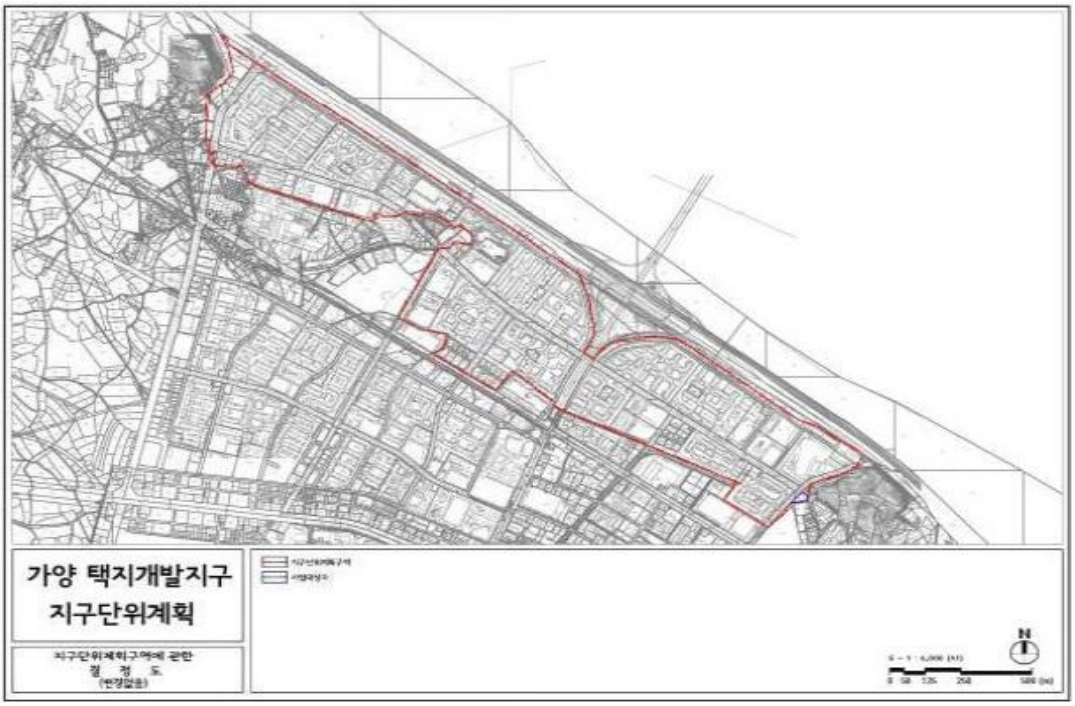

191. 방화1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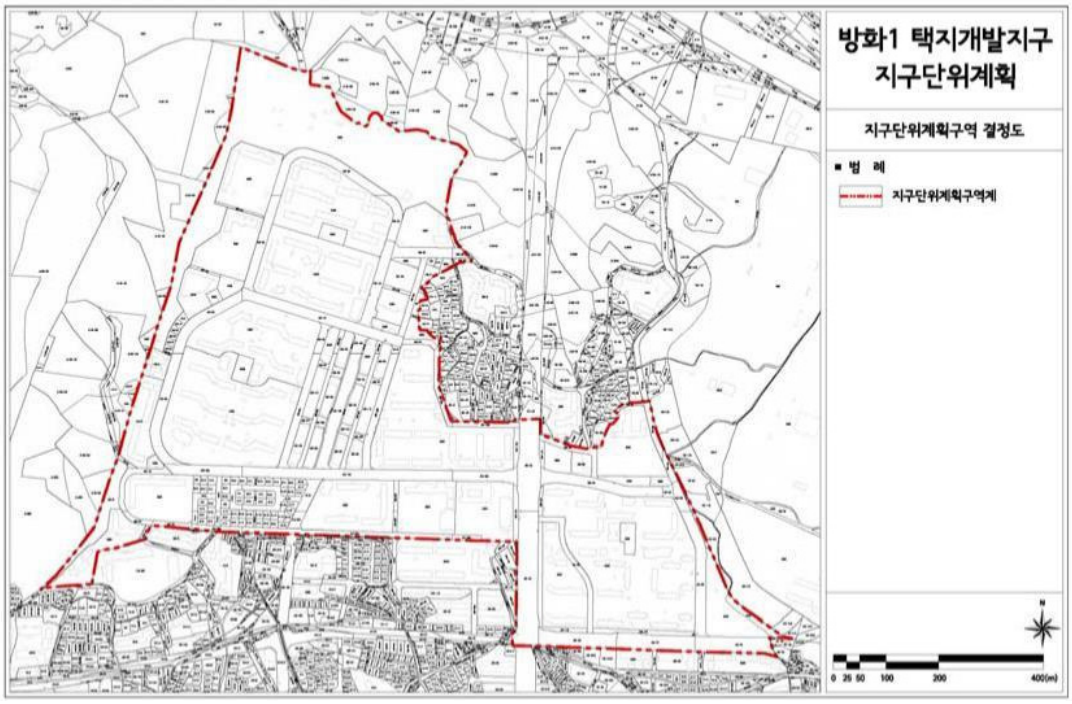

192. 방화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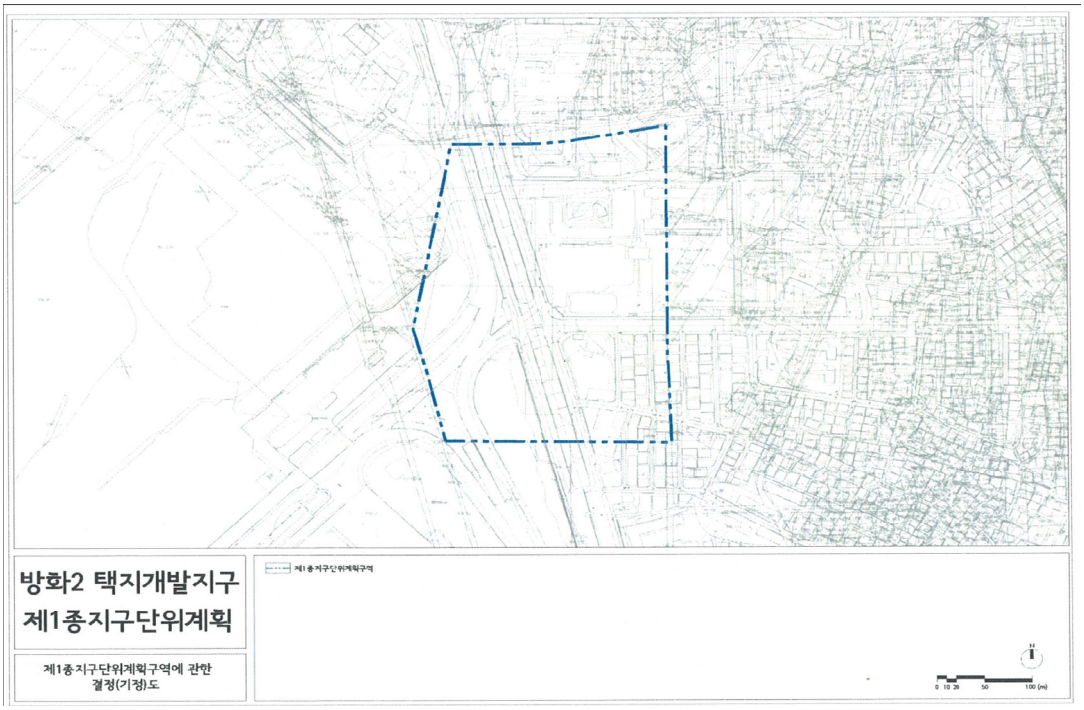

193.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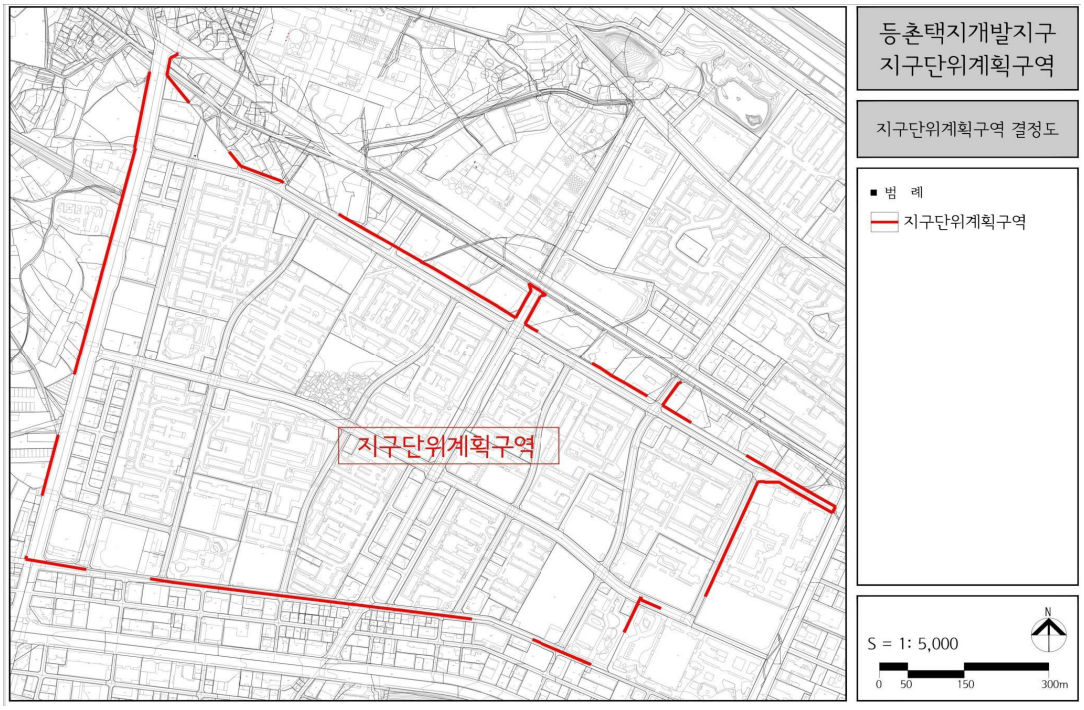

194. 화곡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95. 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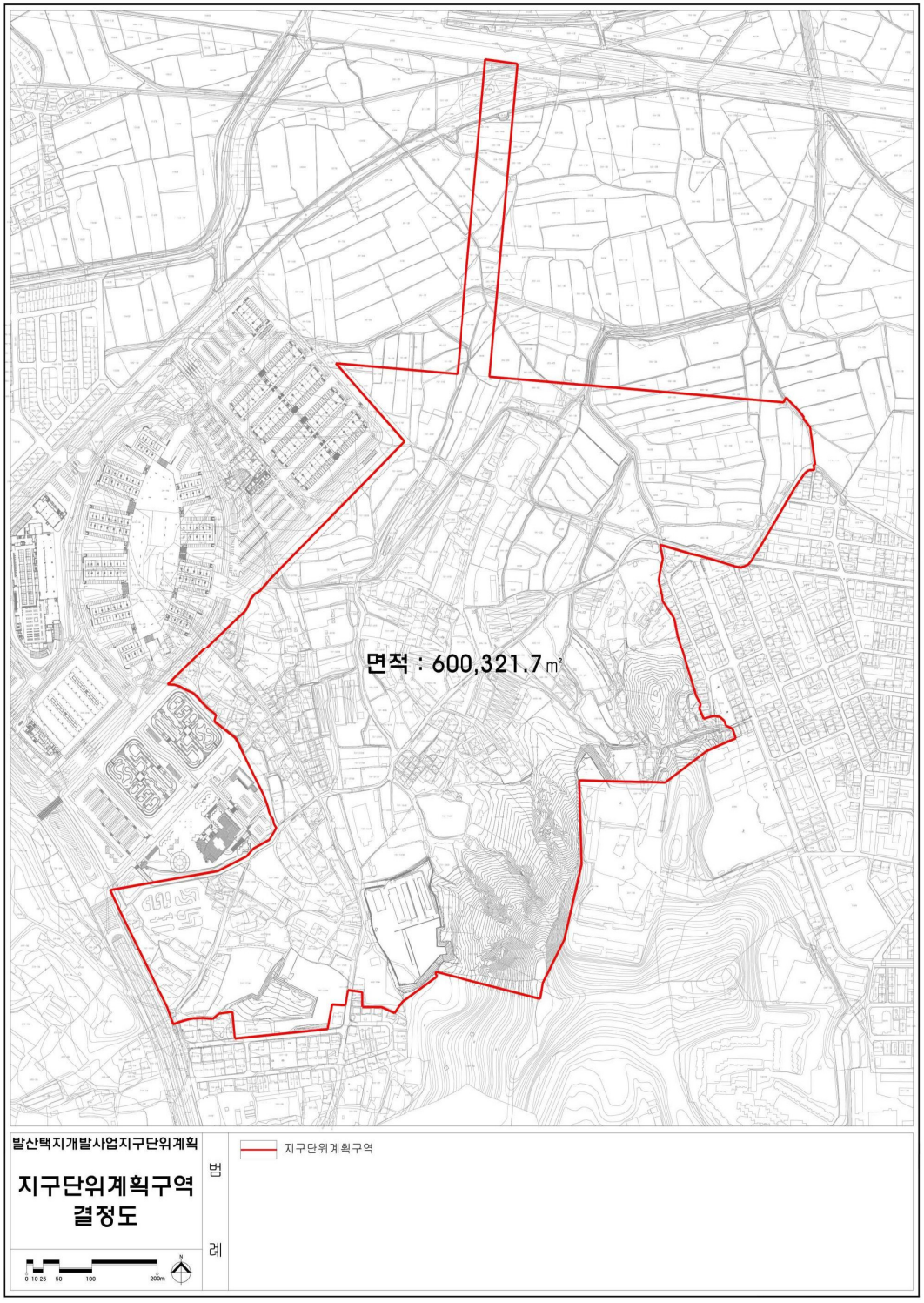

196.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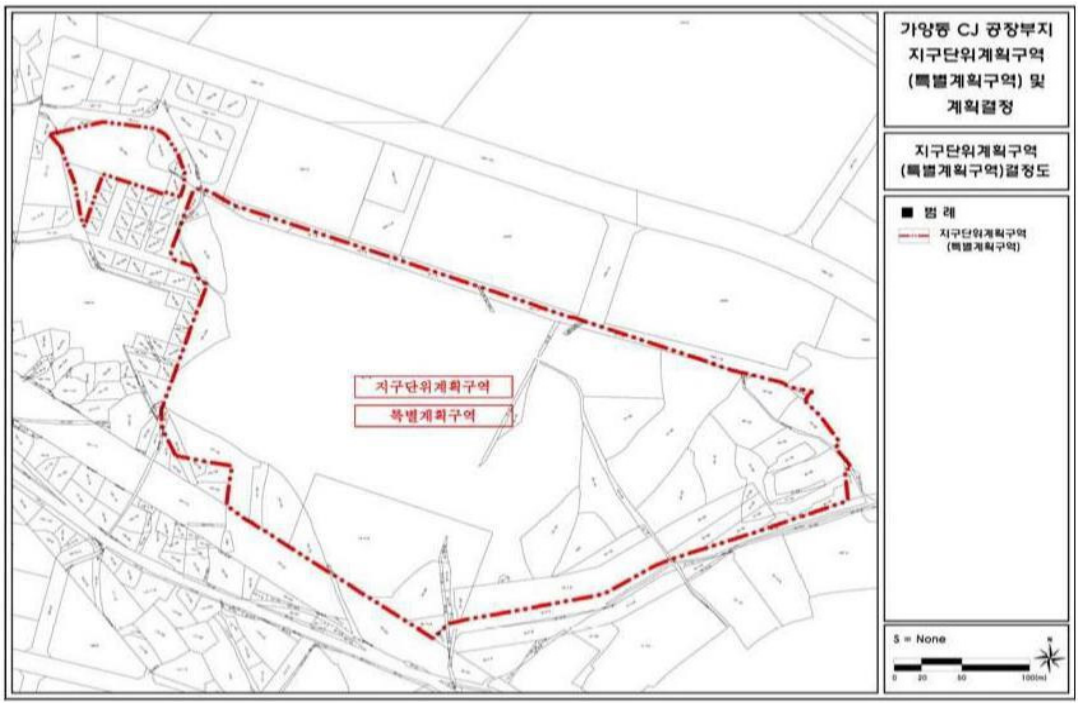

197. 공항동 군부대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98.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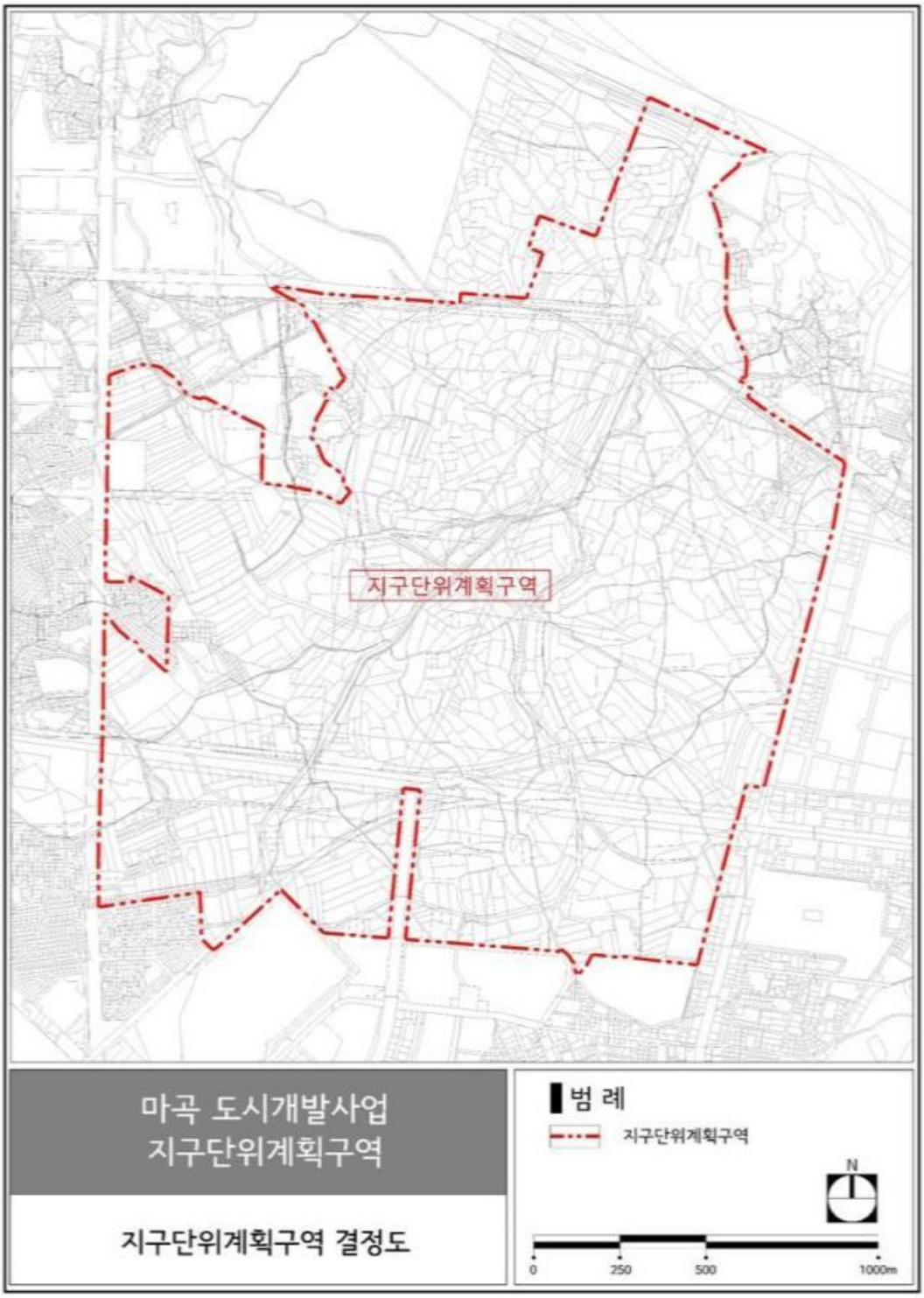

199. 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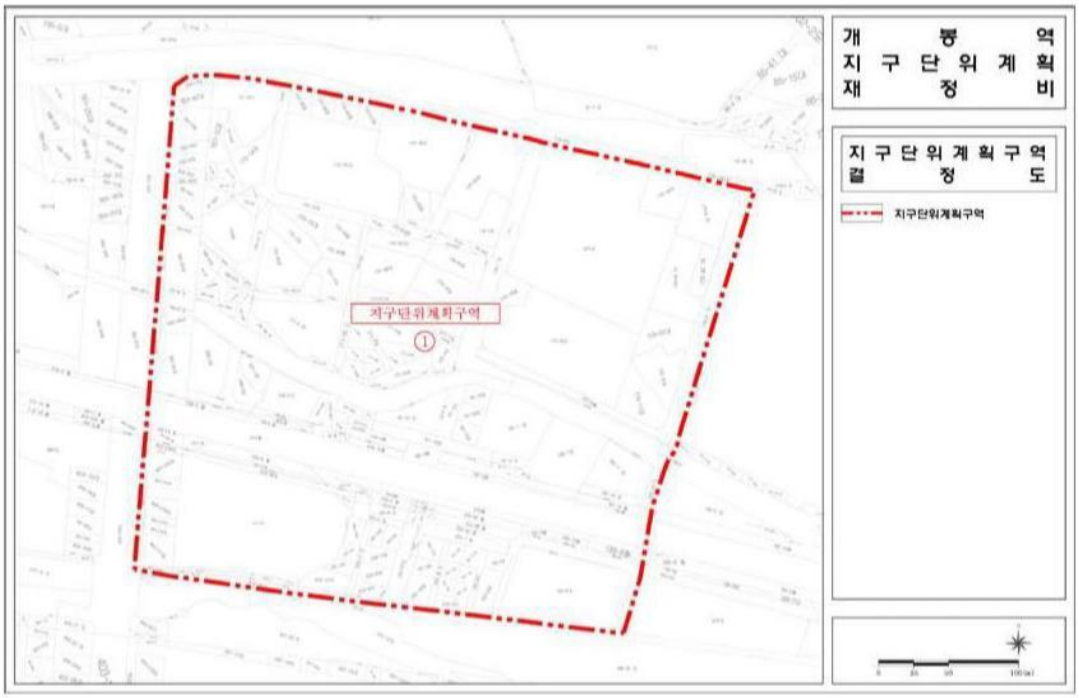

200. 구로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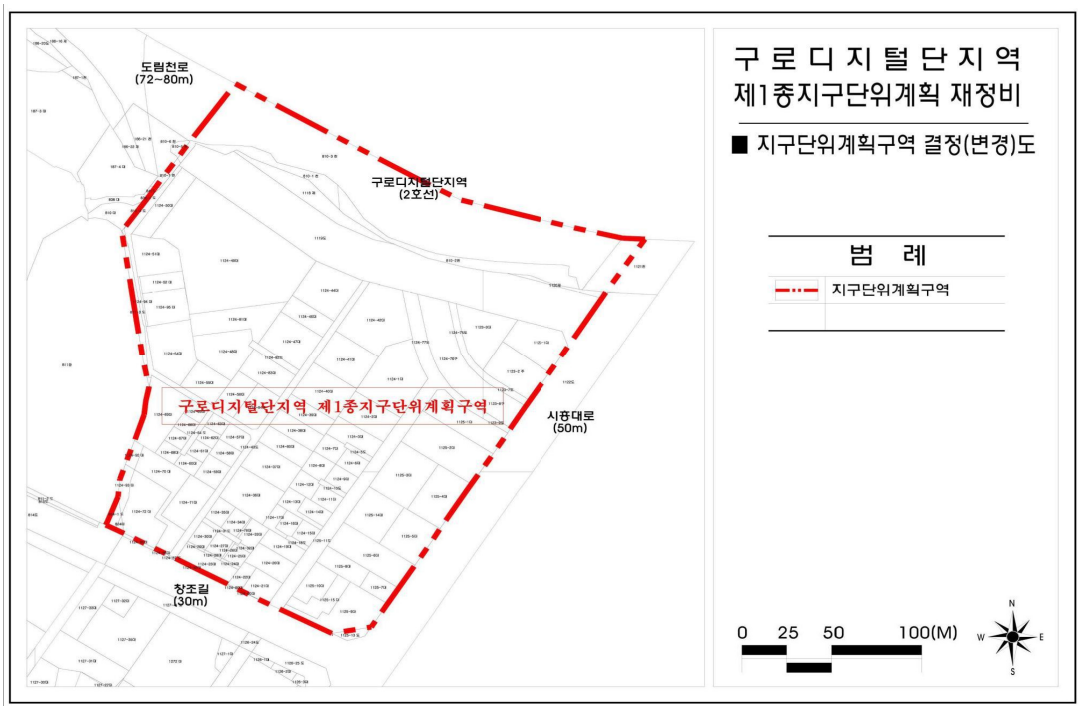

201.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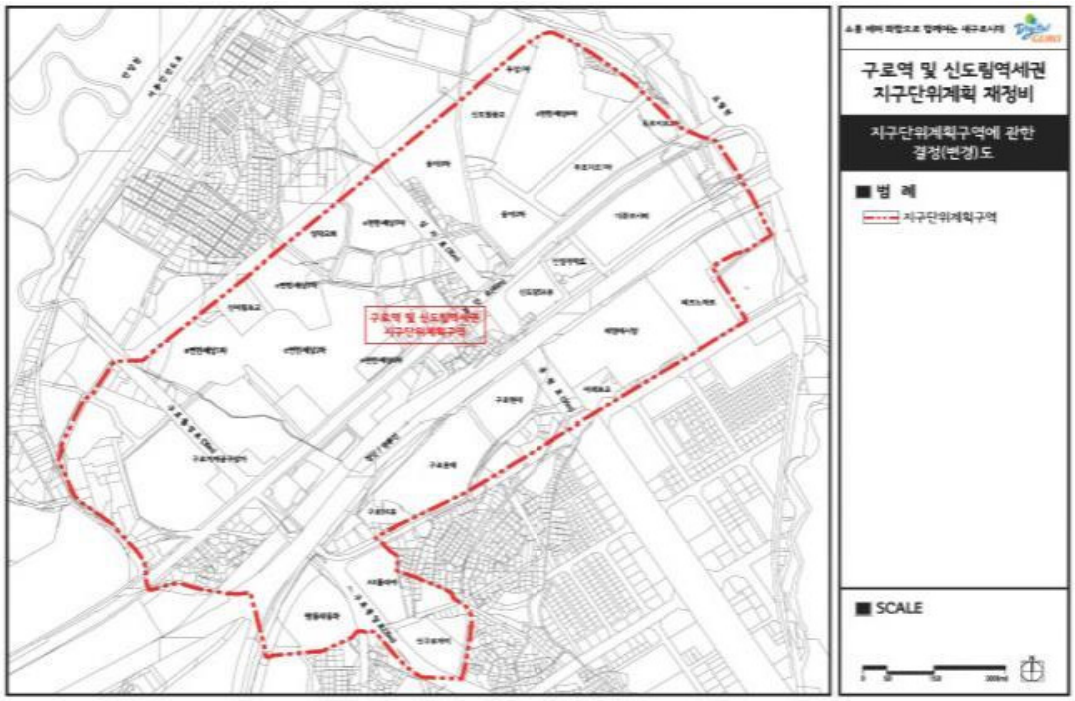

202.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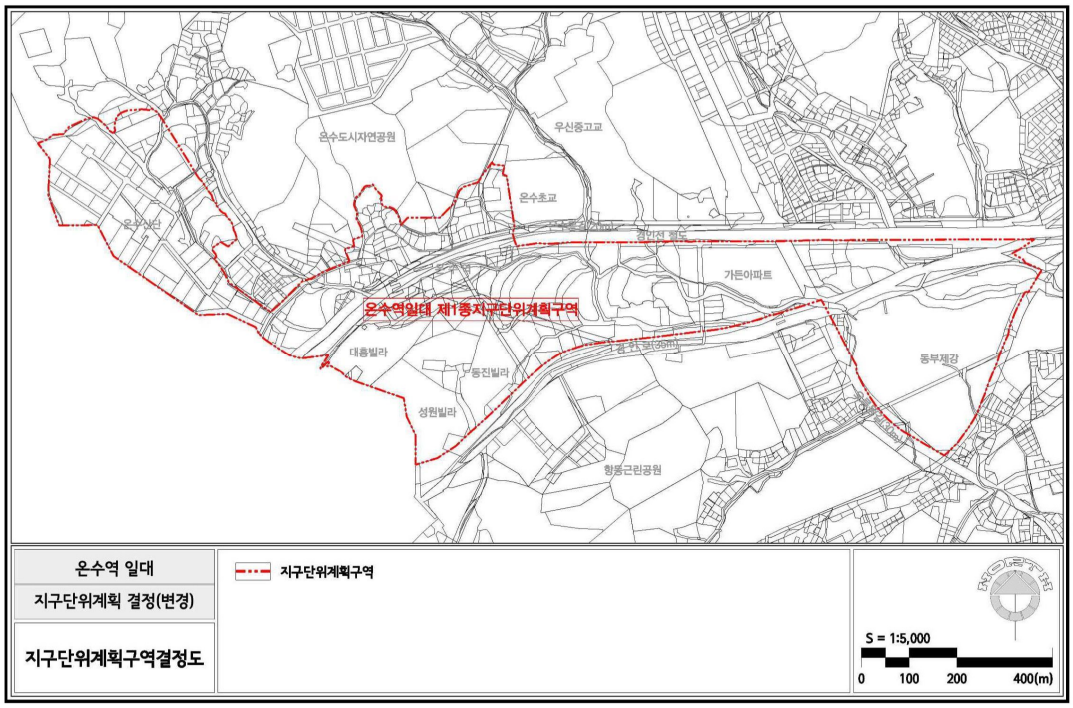

203. 온수동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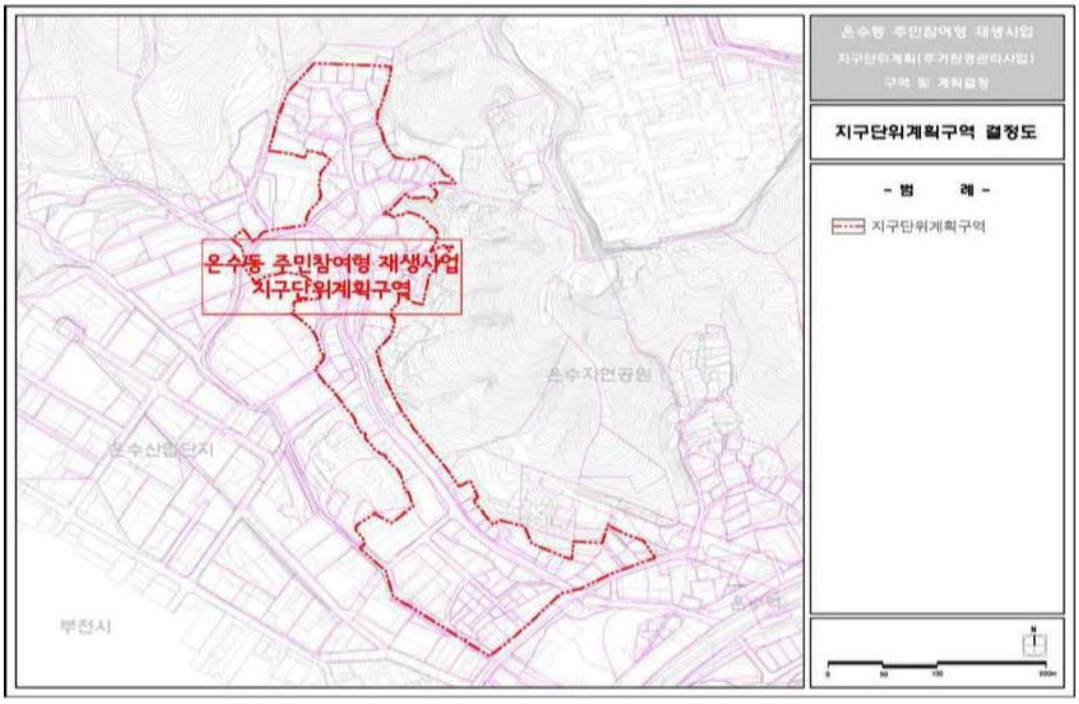

204. 구로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05. 구로구 개봉3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06.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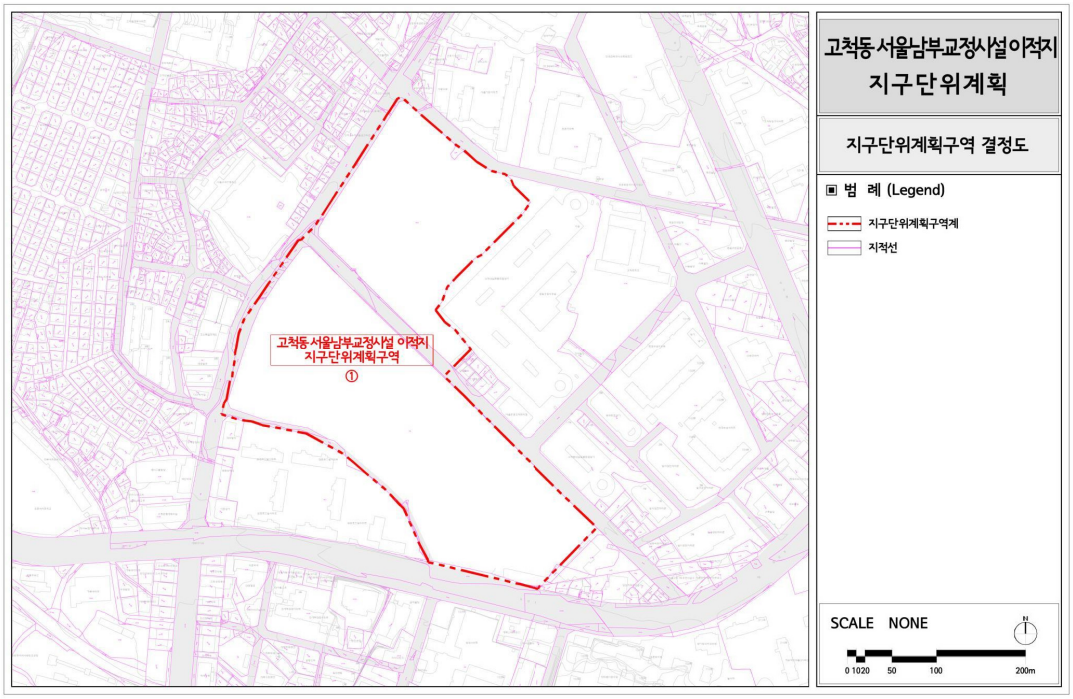

207. 구로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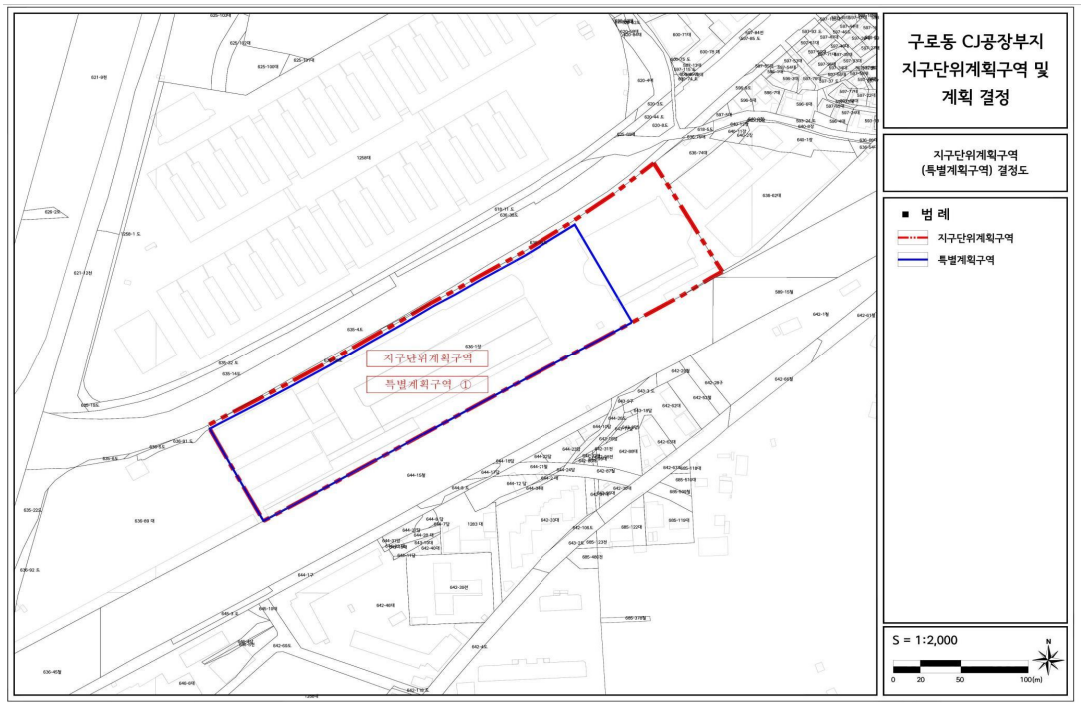

208. 취락지구(연지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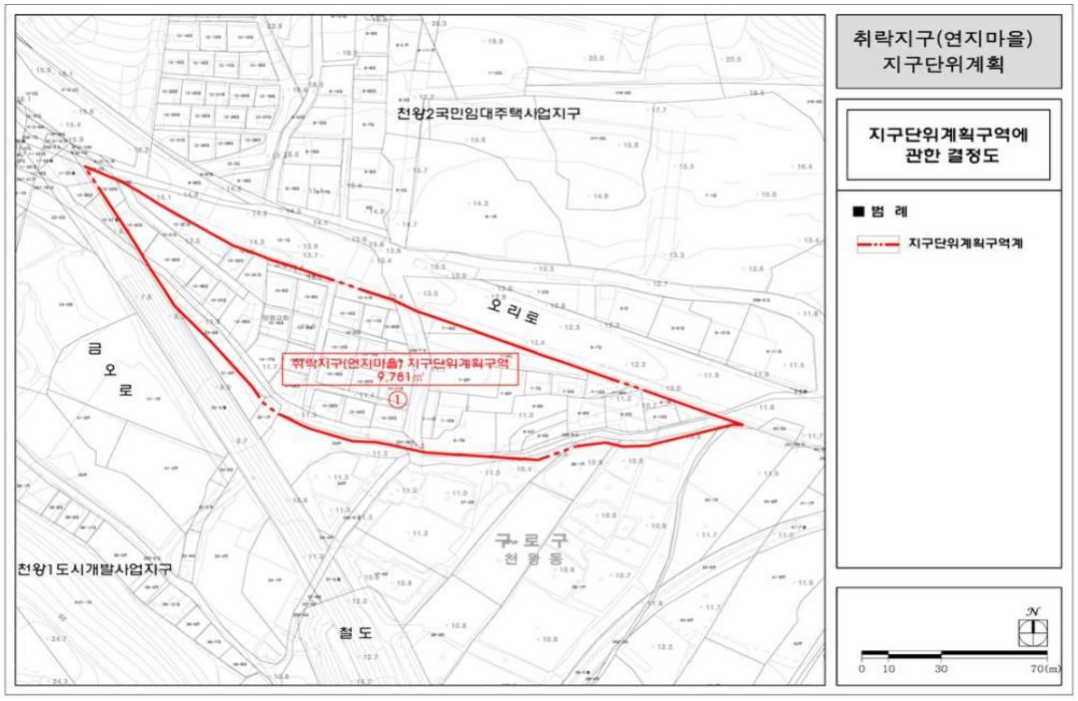

209. 서울천왕2(국민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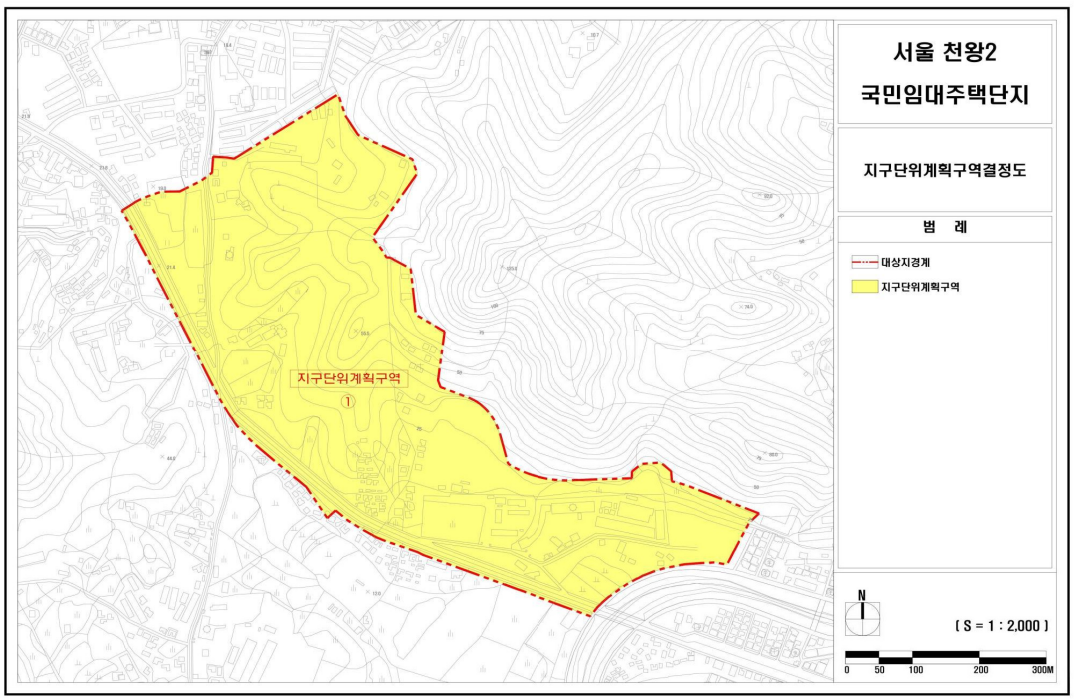

210.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11.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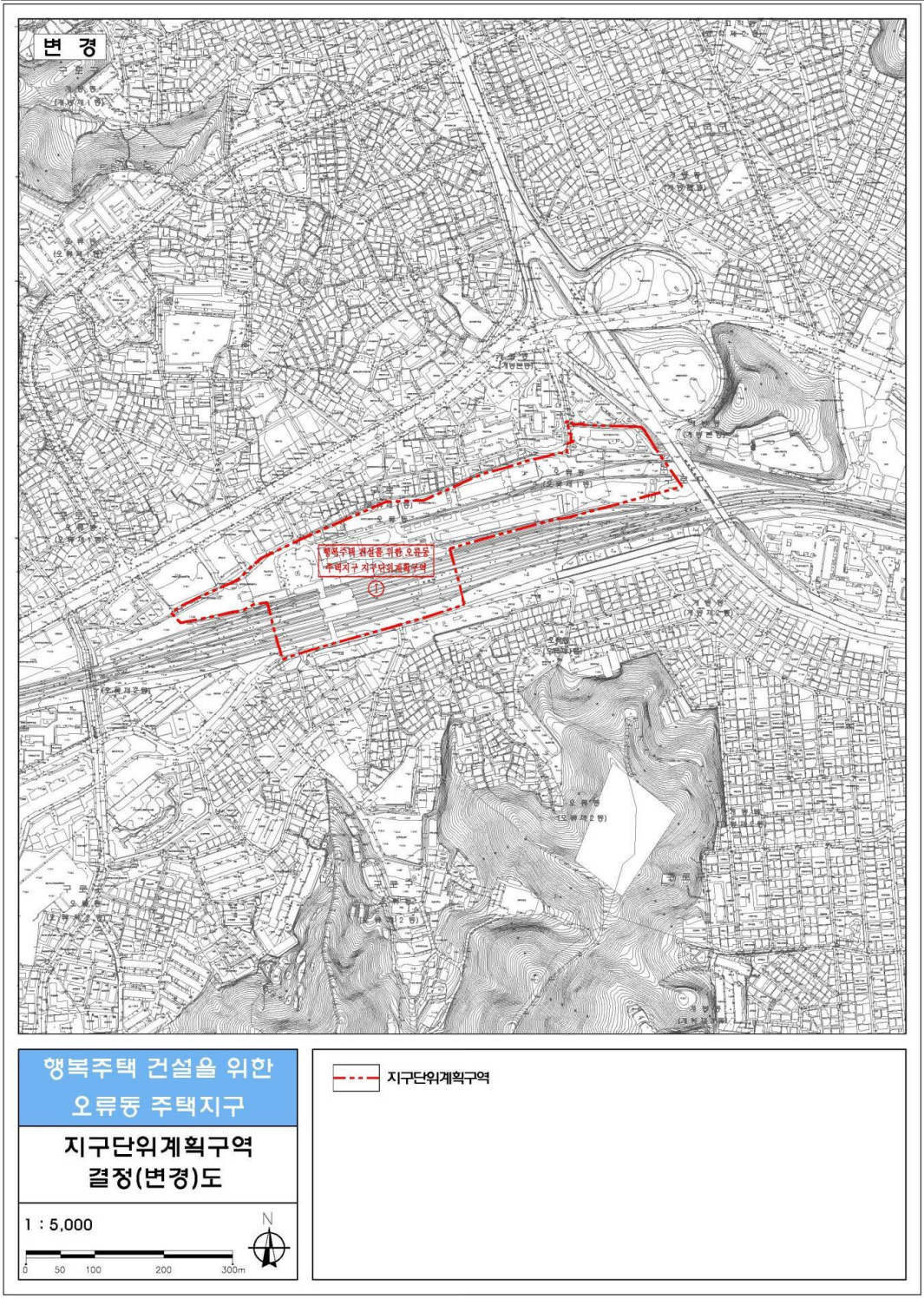

212. 천왕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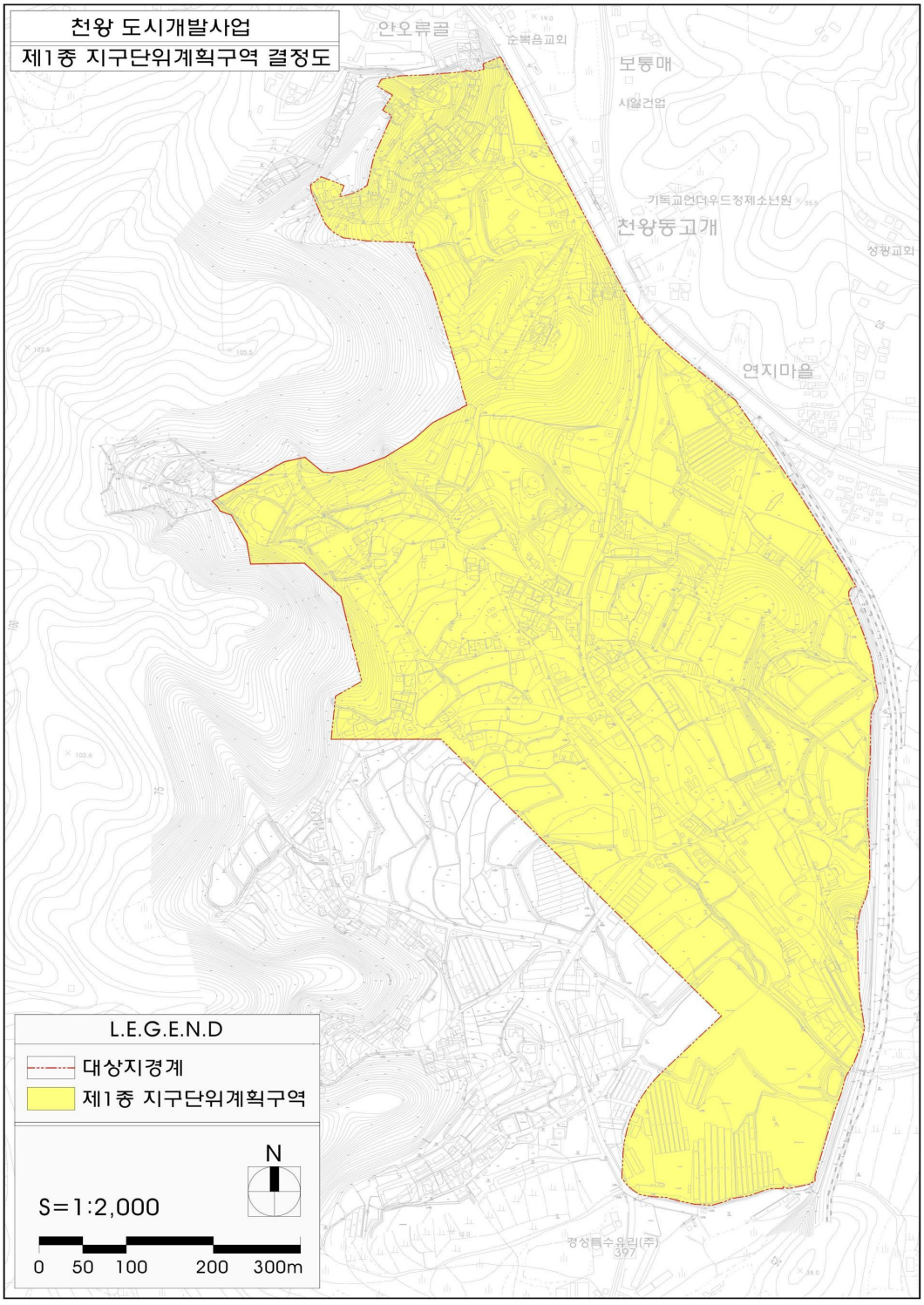

213. 서울개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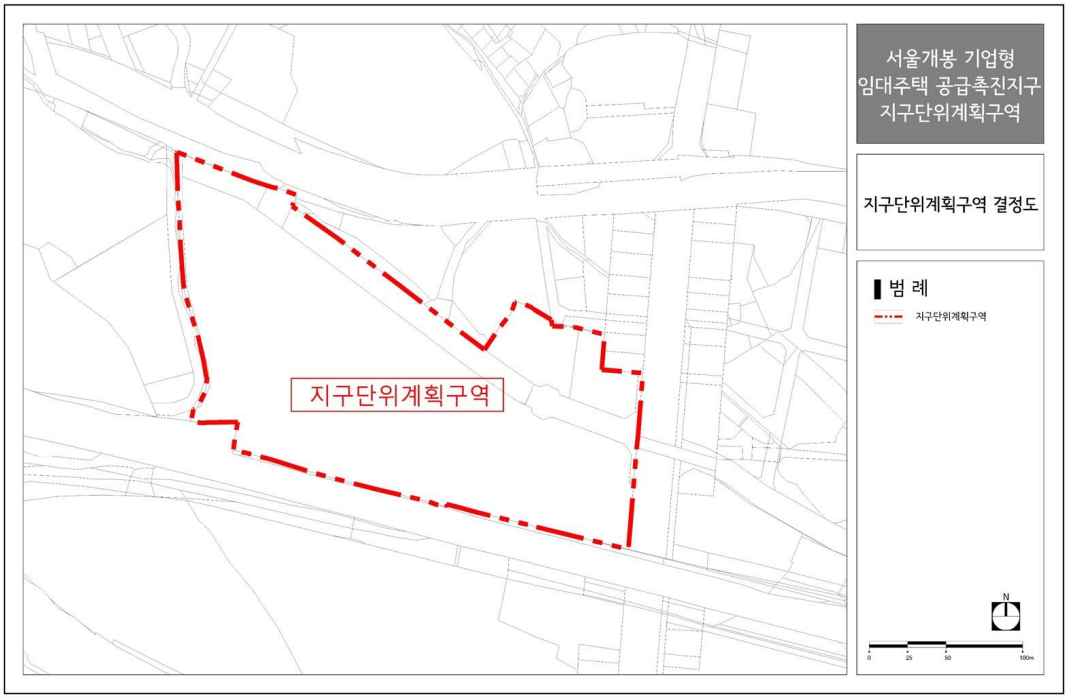

214. 시흥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15.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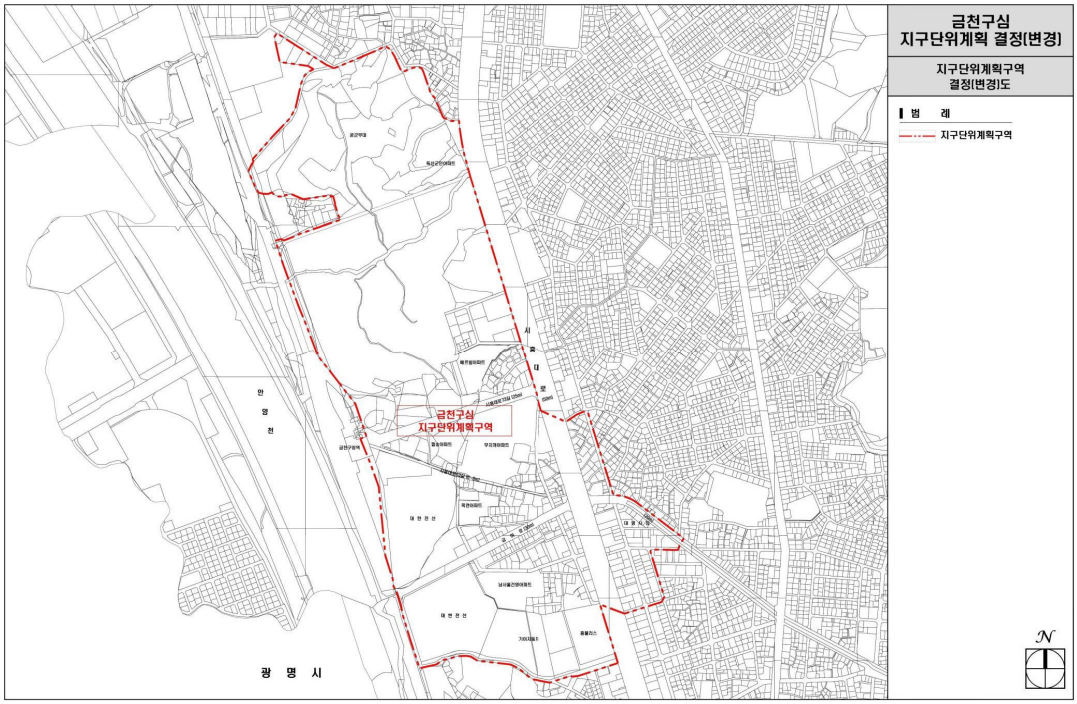

216. 문성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17. 정심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18.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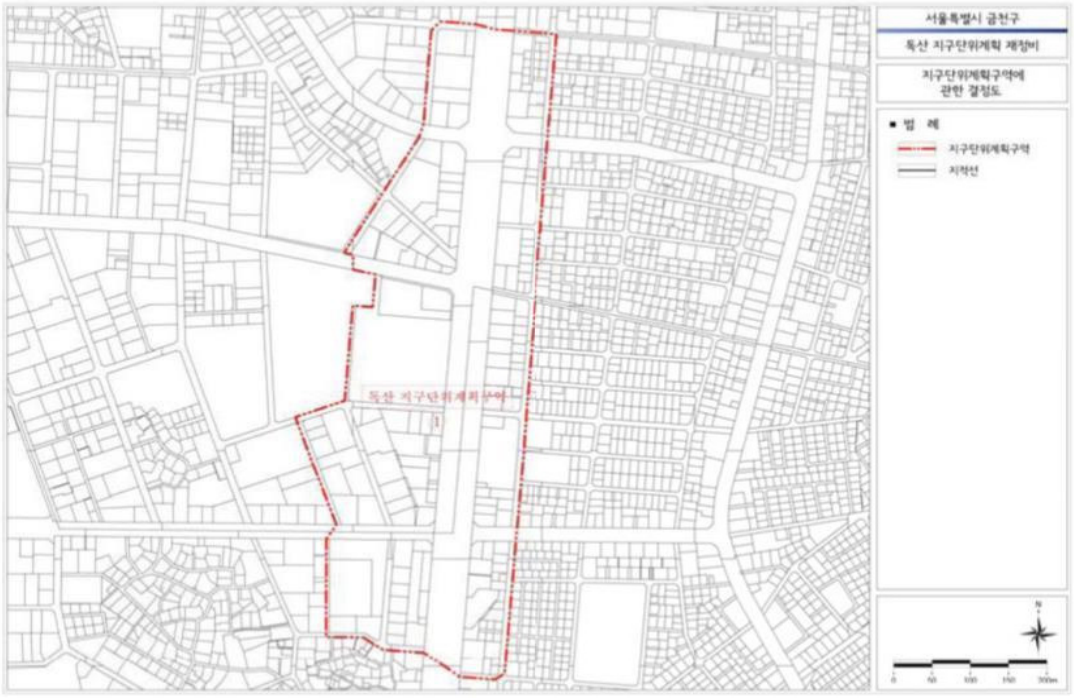

219. 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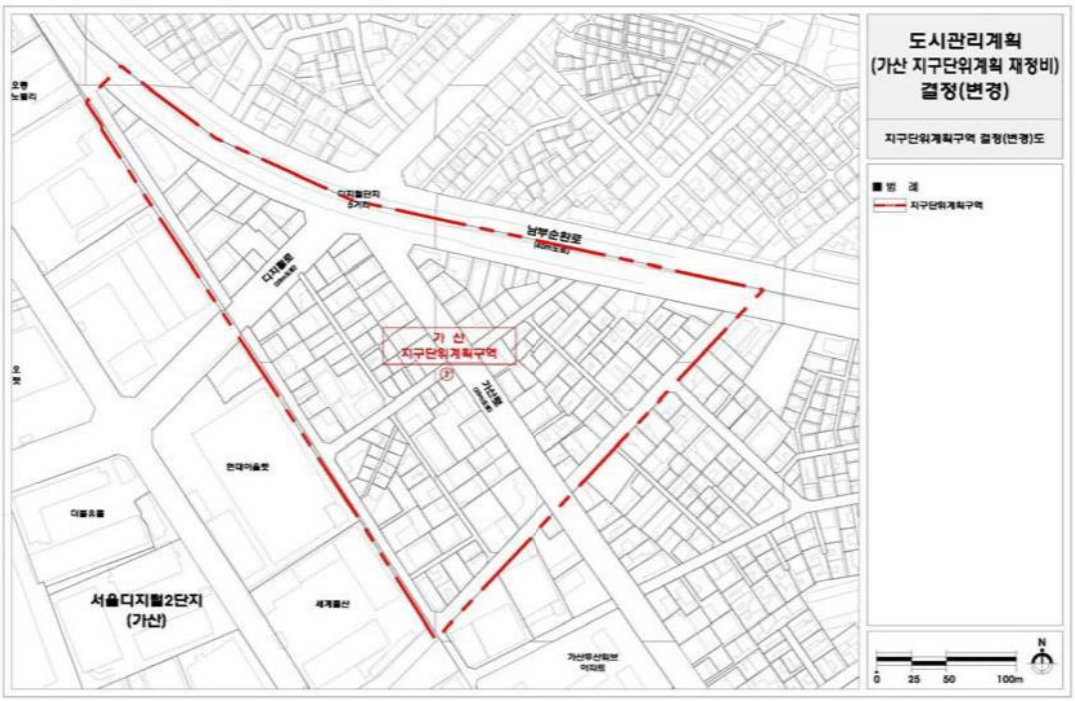

220. 시흥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21. 시흥박미사랑마을(Ⅱ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22.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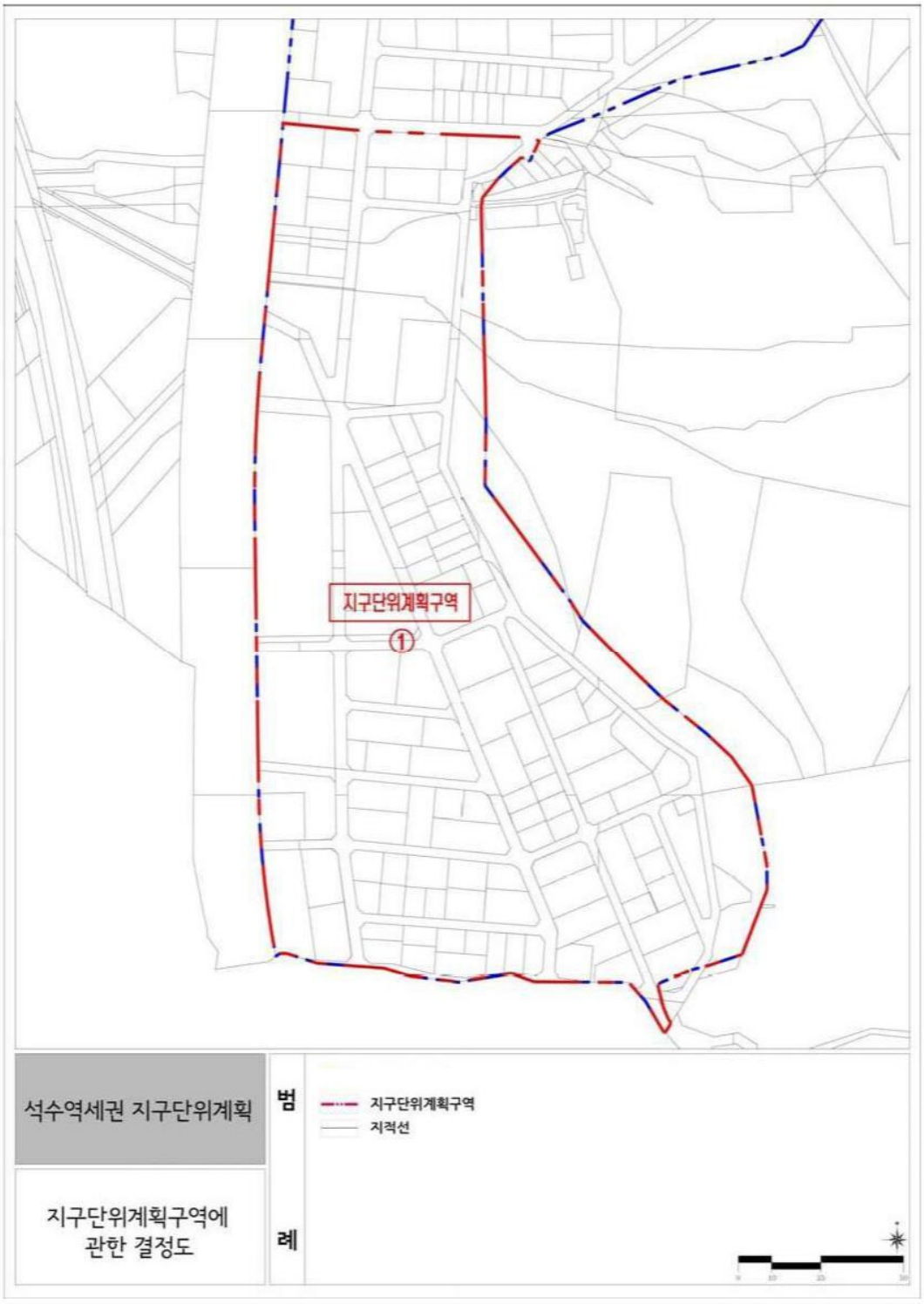

223. 시흥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24.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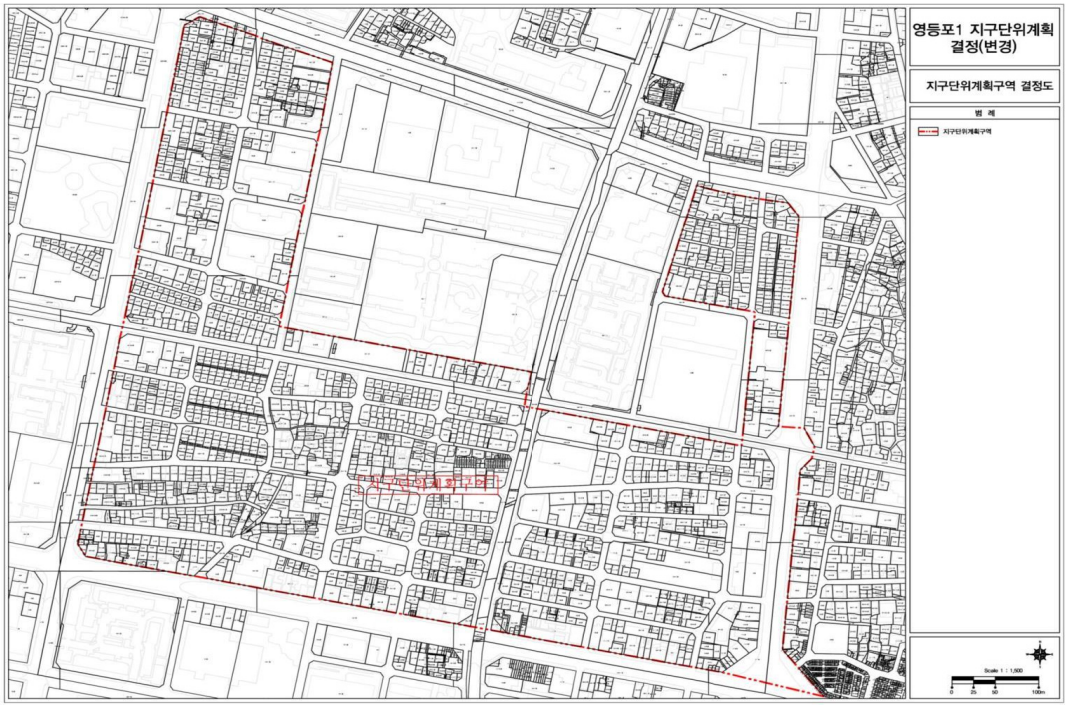

225. 신길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26.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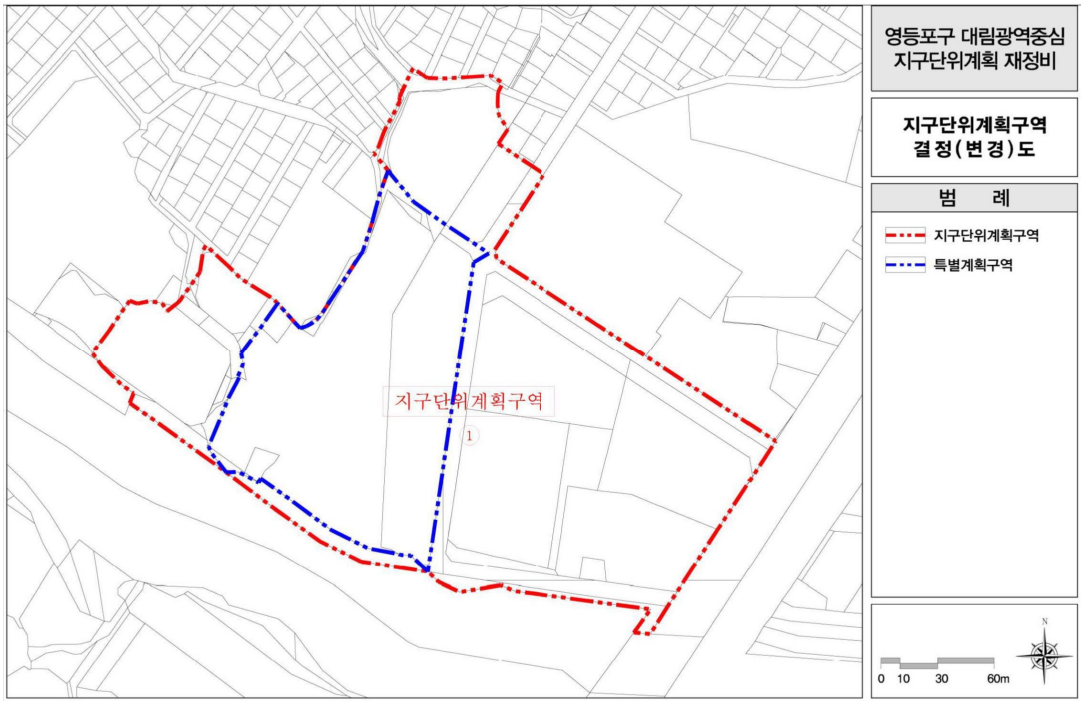

227.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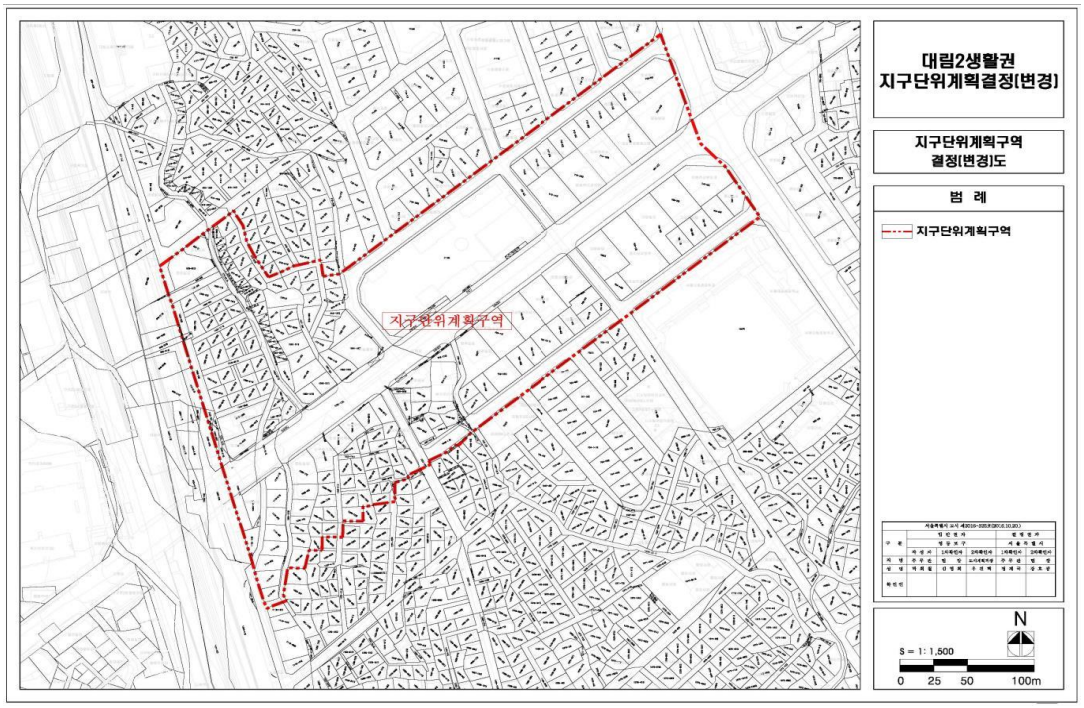

228. 방림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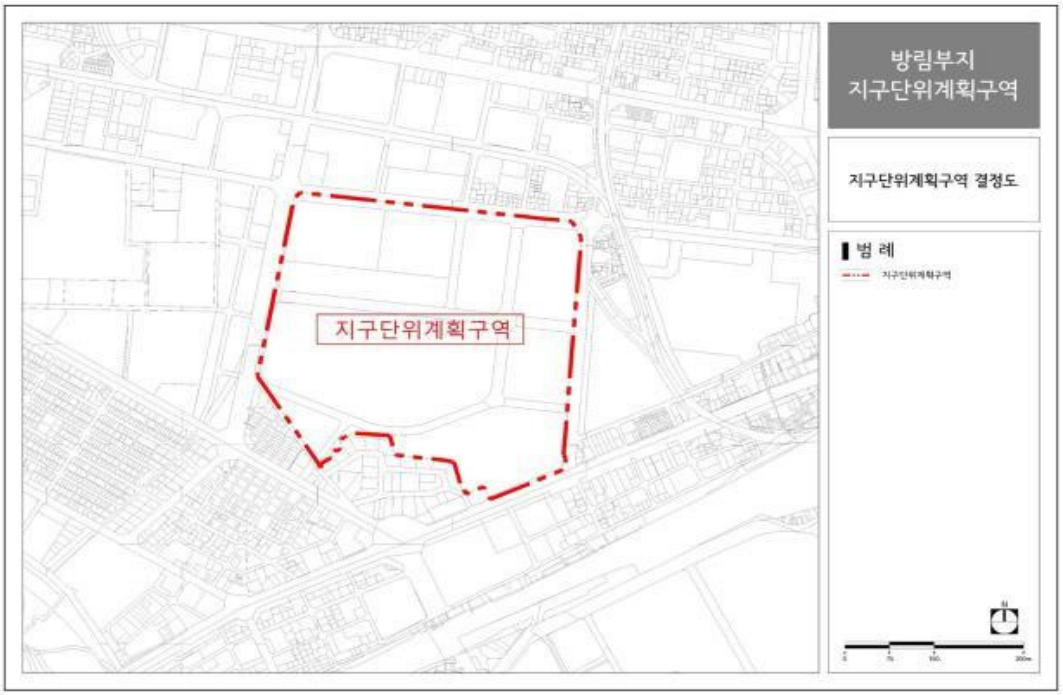

229.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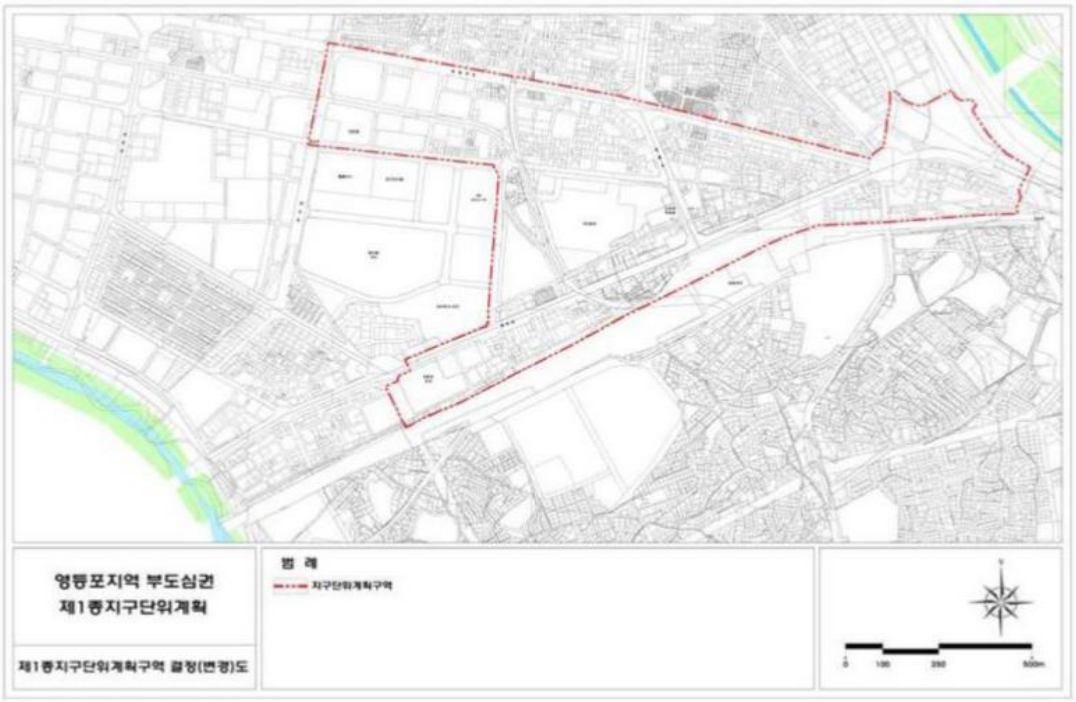

230.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31. 문래동5가 1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32. 당산동4가 80번지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33. 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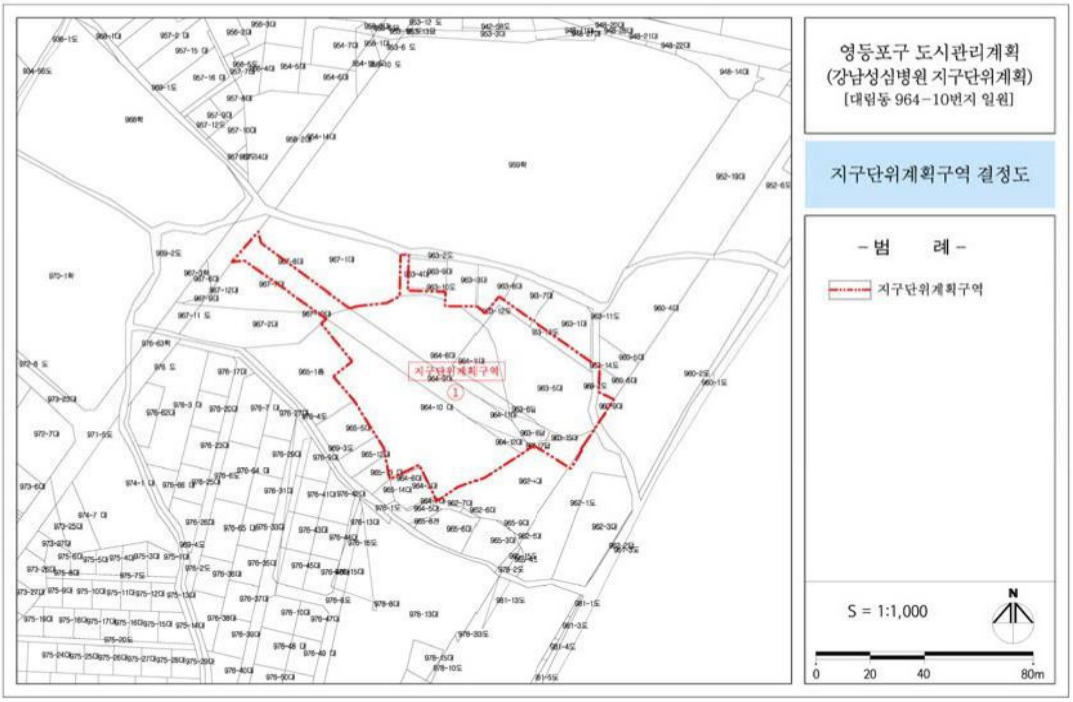

234. 신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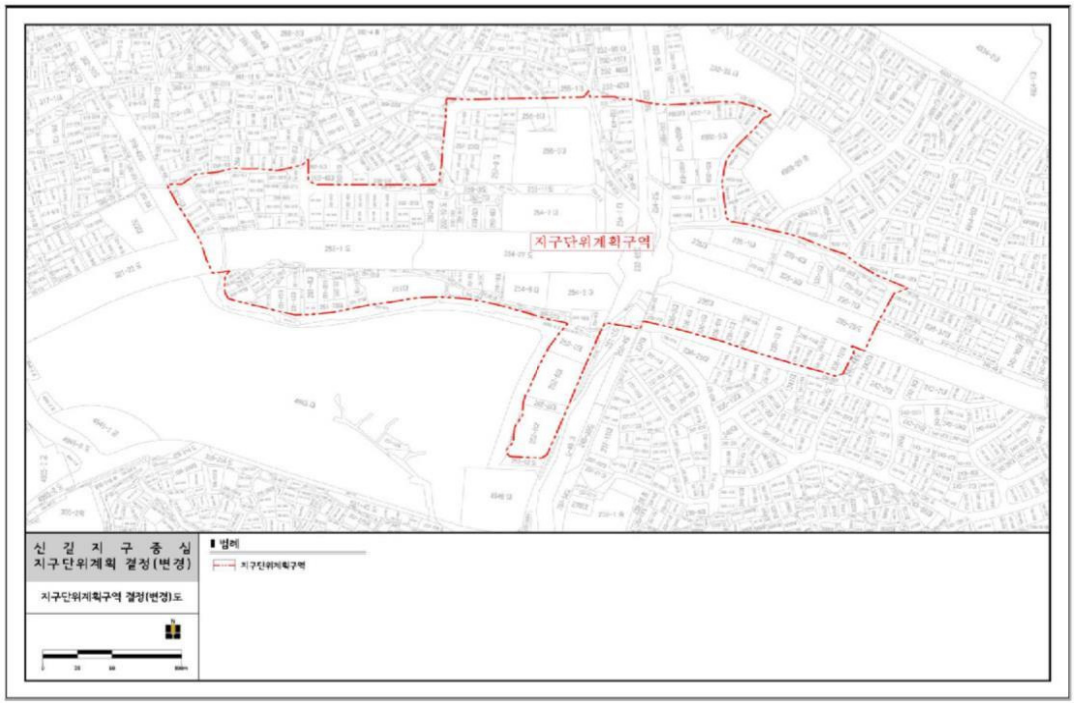

235. 신풍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36. 신길1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37. 신길6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38. 서울문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39. 선유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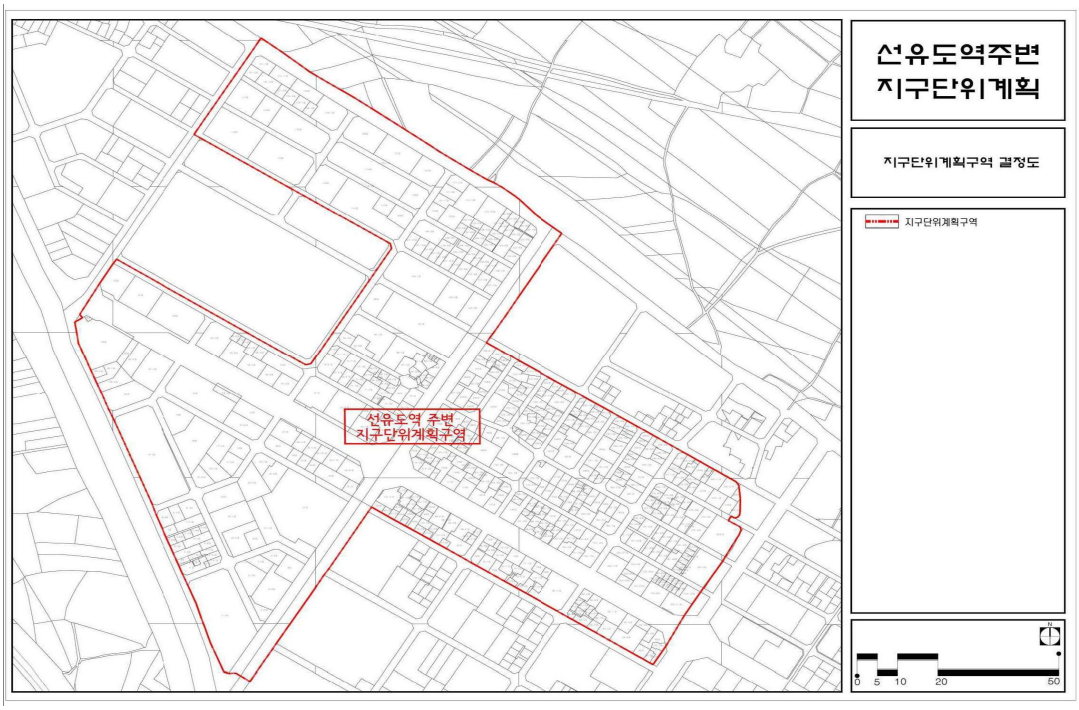

240.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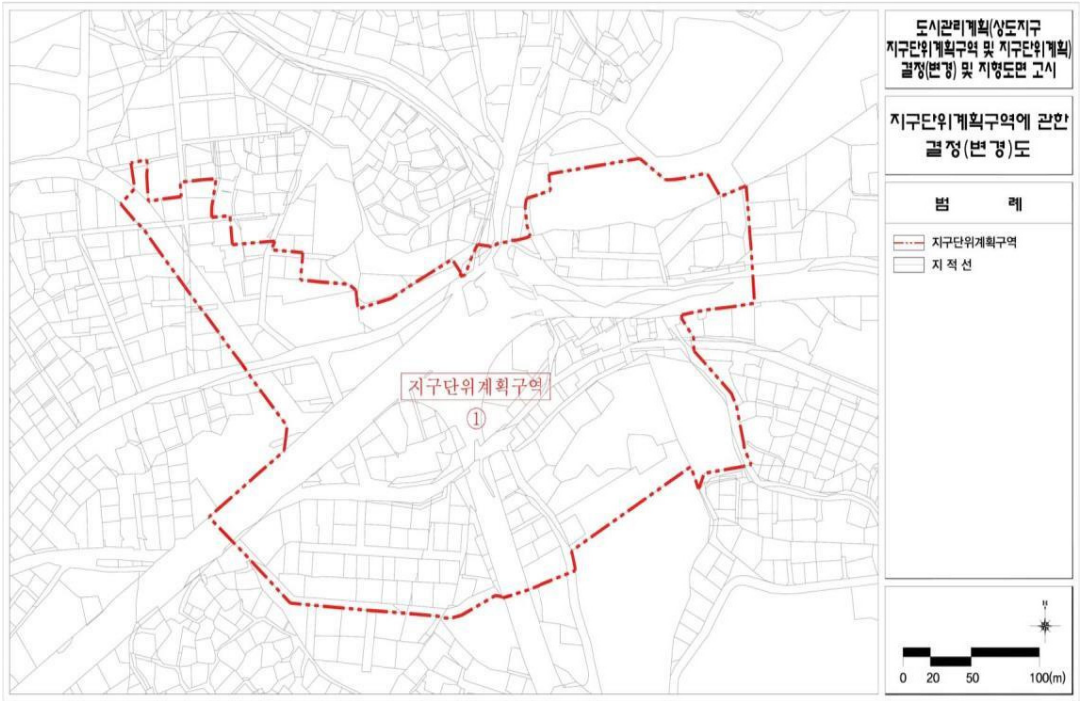

241.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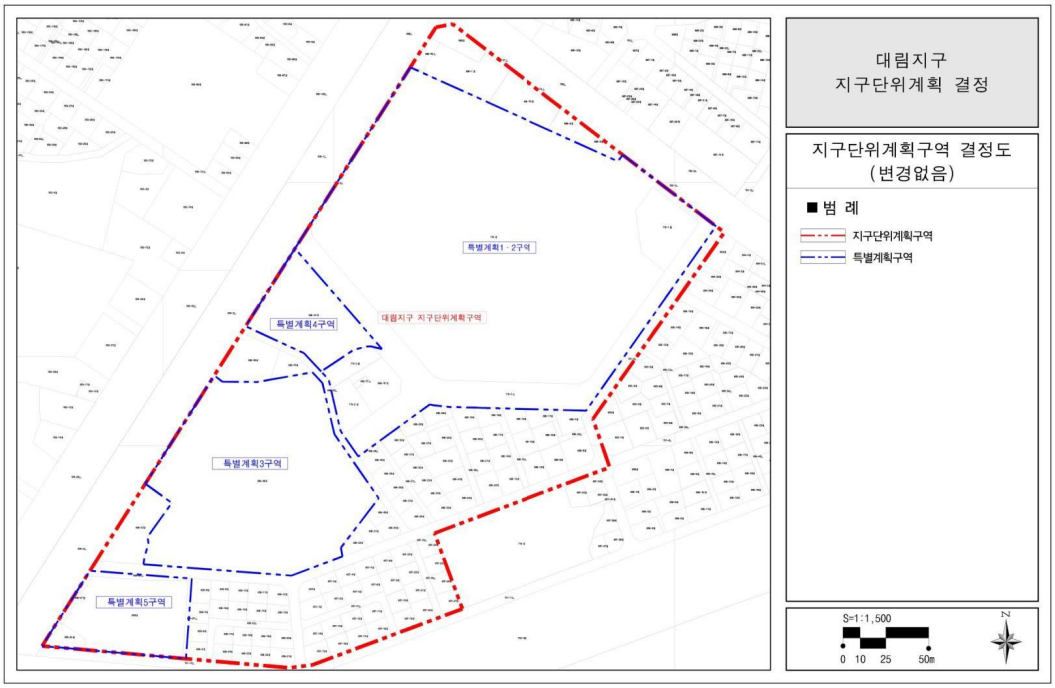

242.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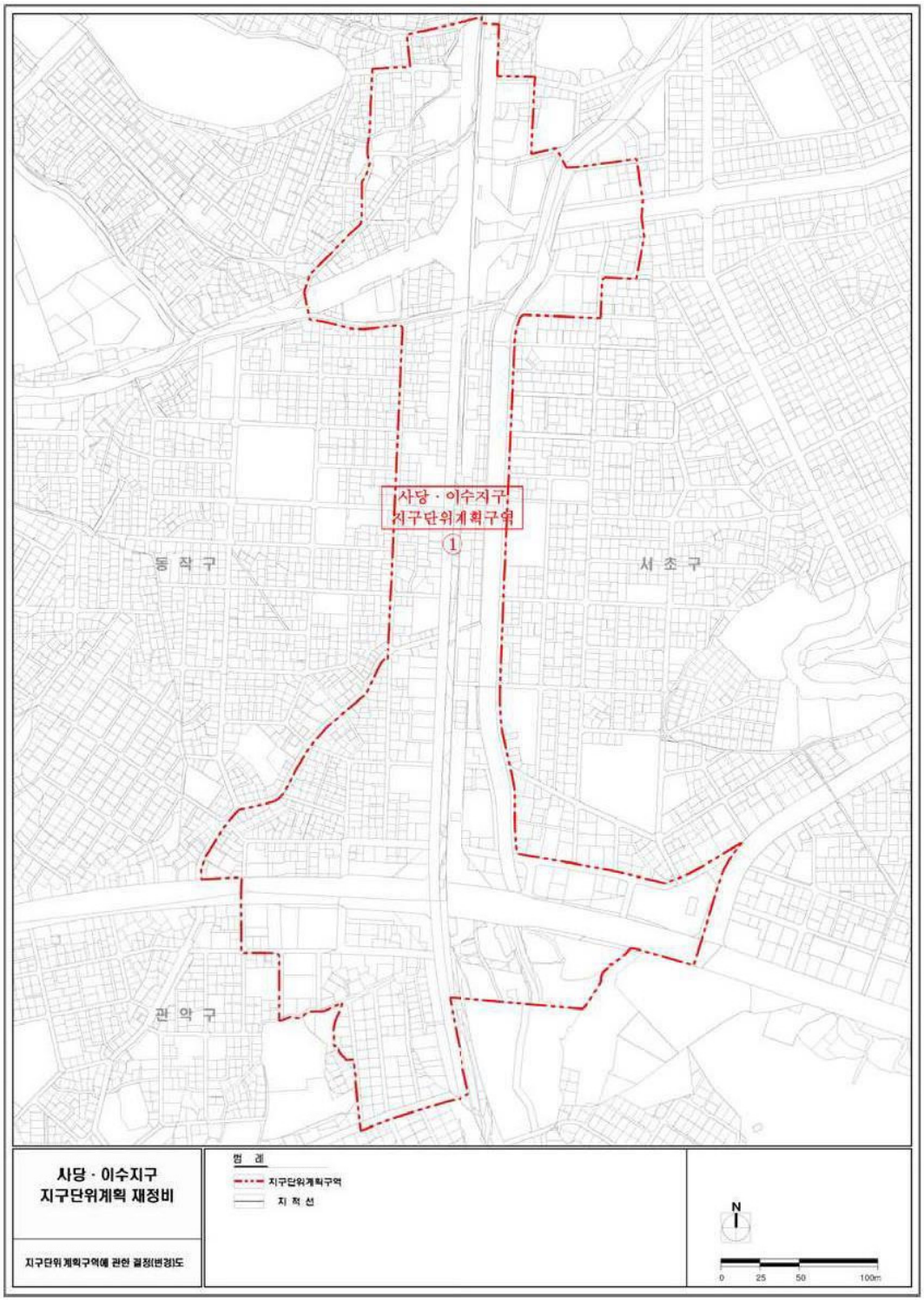

243.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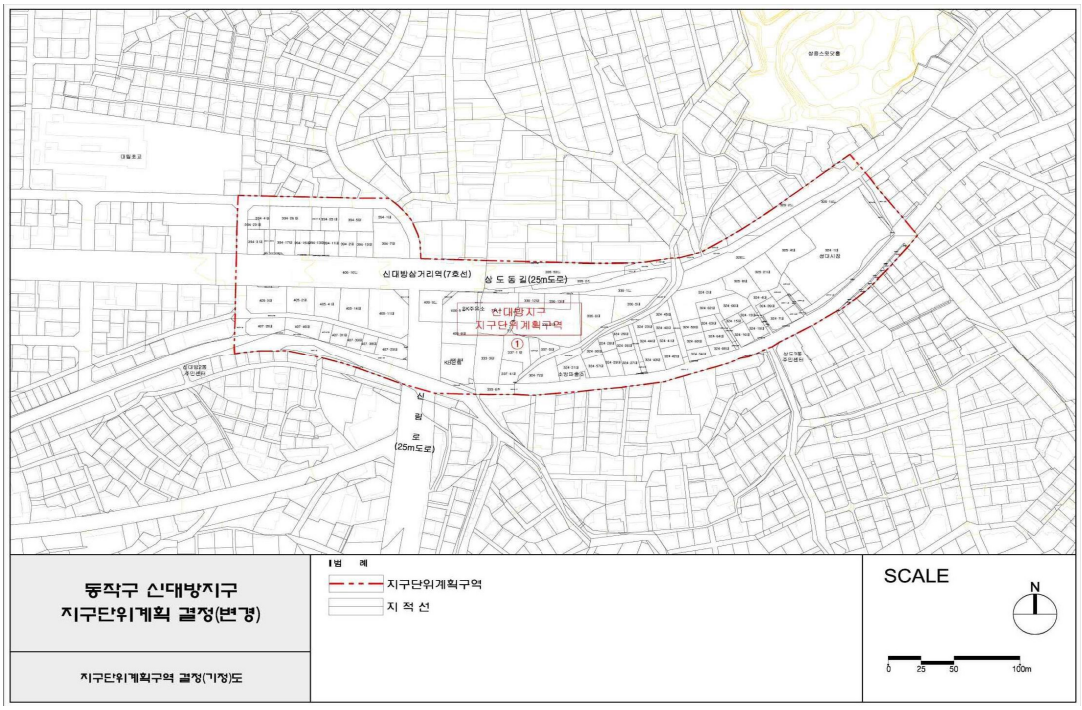

244.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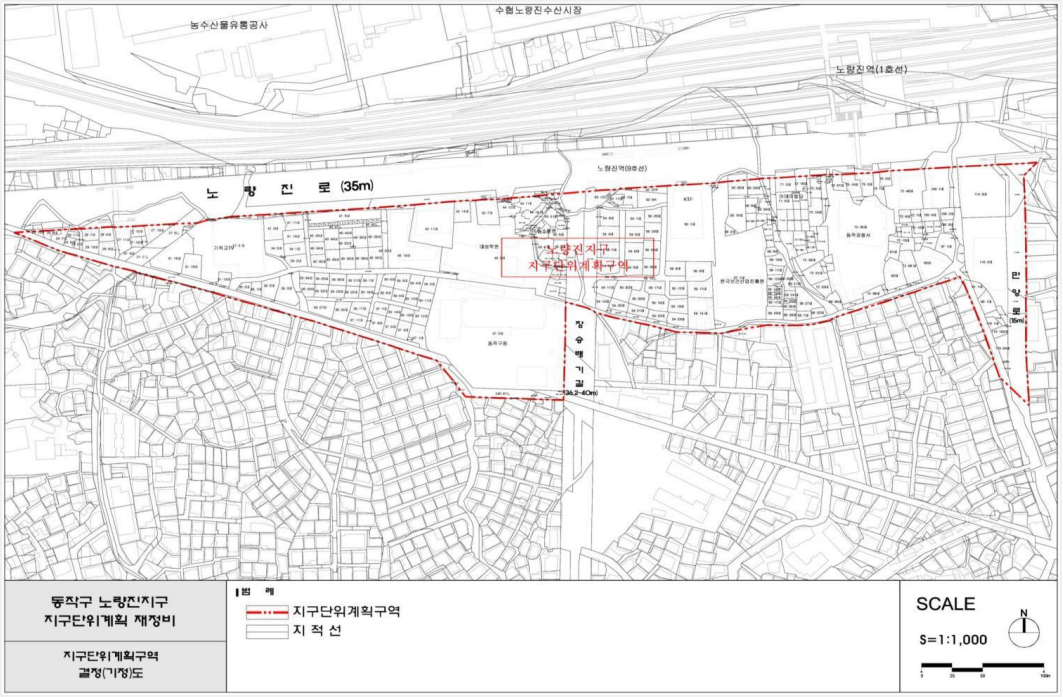

245. 원불교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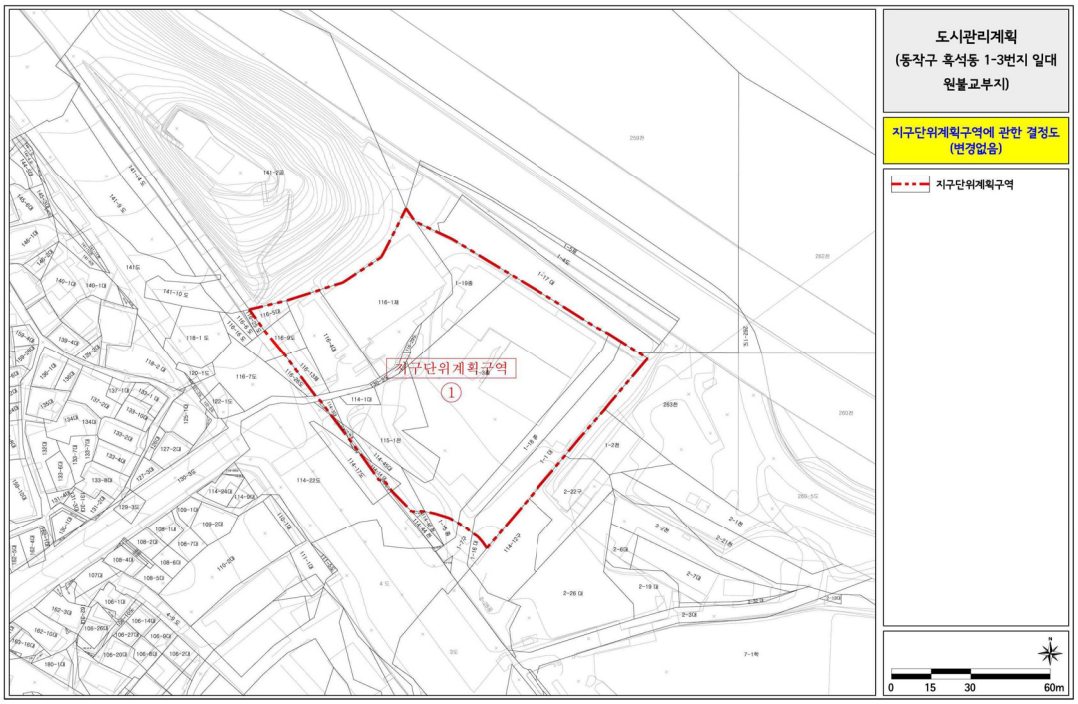

246. 대림 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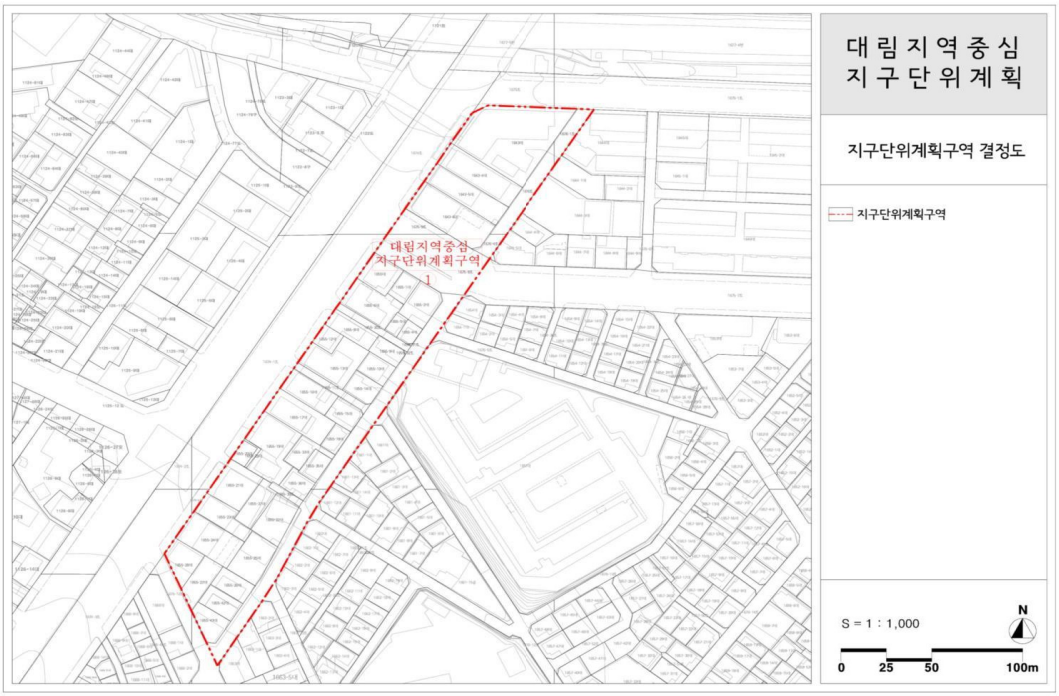

247.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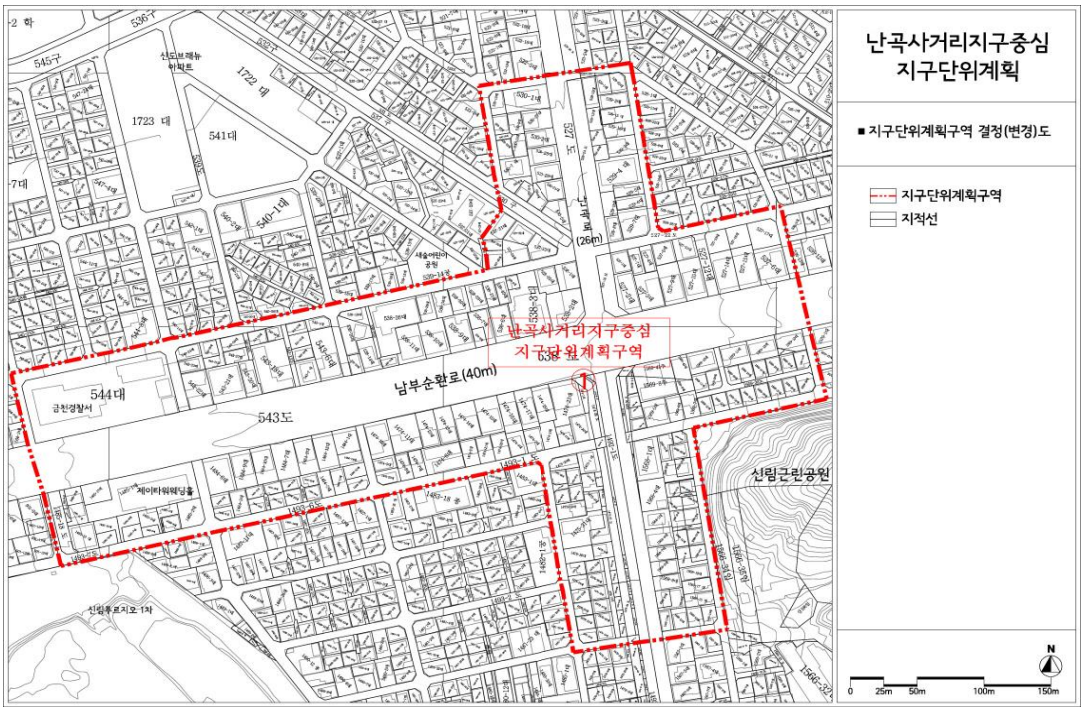

248.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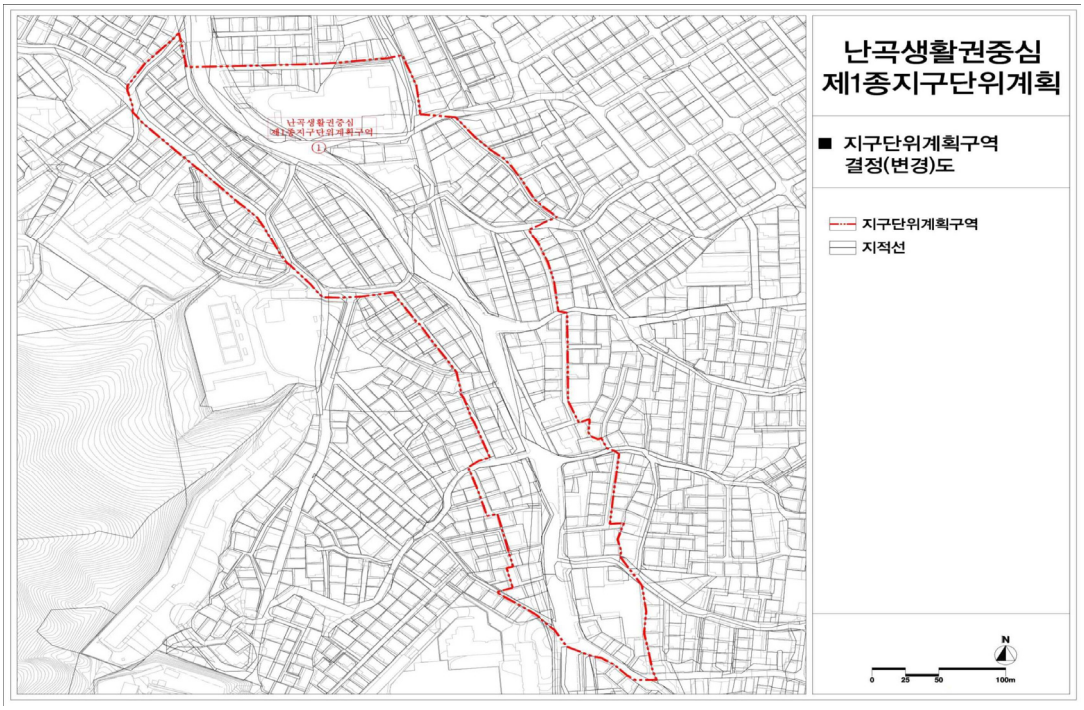

249. 은천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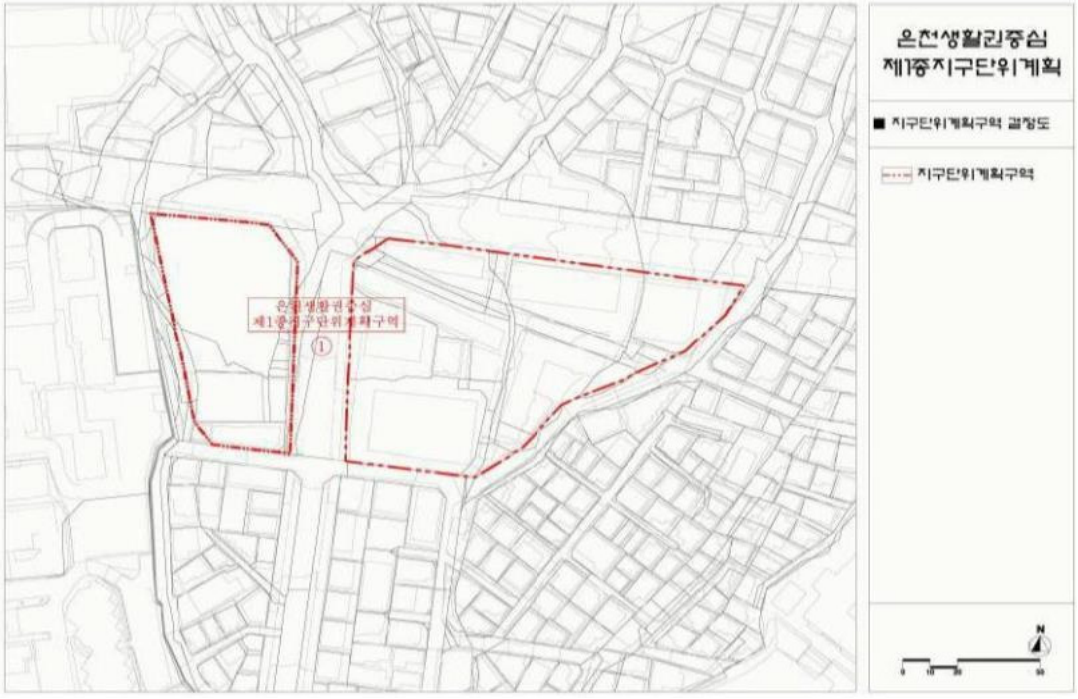

250. 낙성대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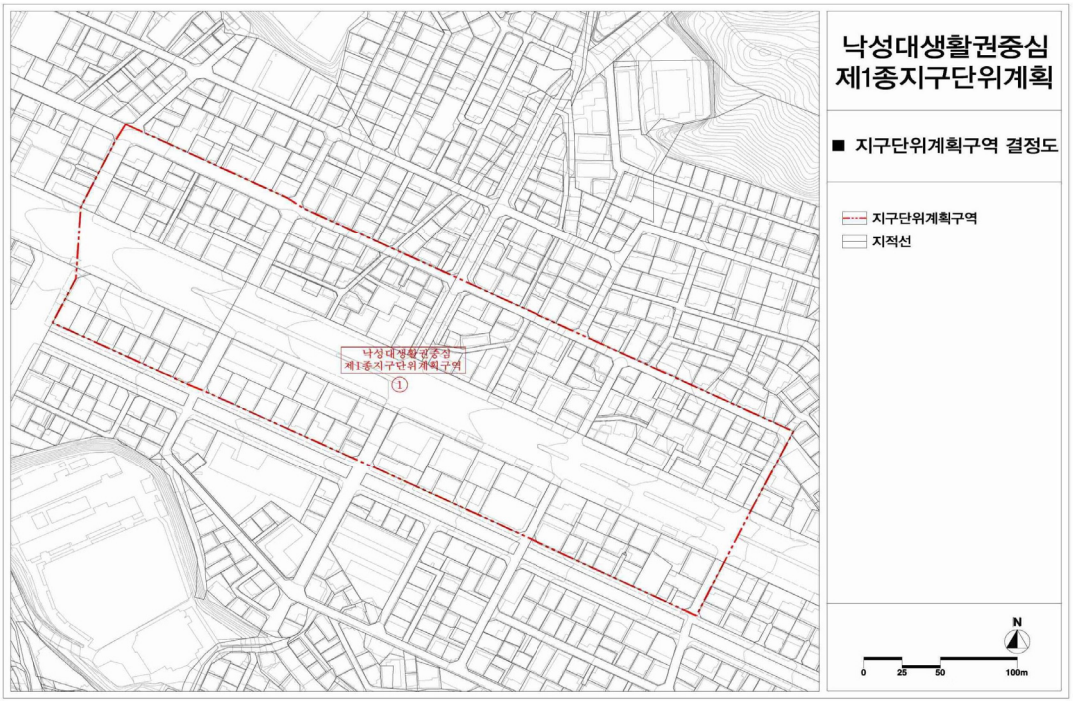

251.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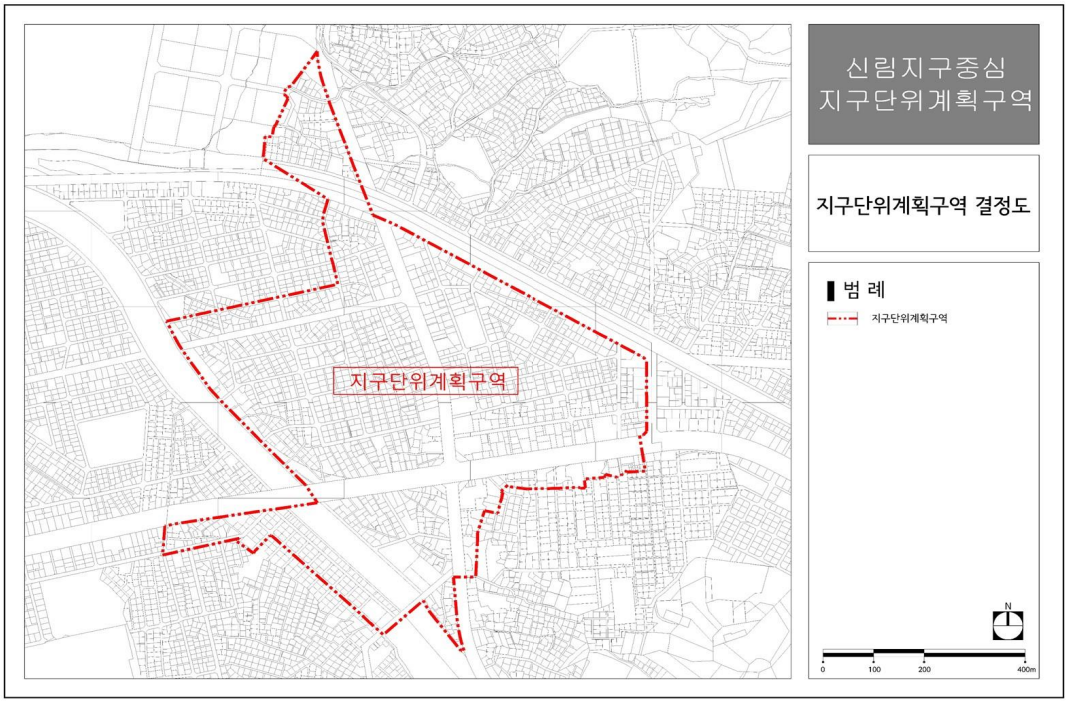

252.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53. 서울대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54. 봉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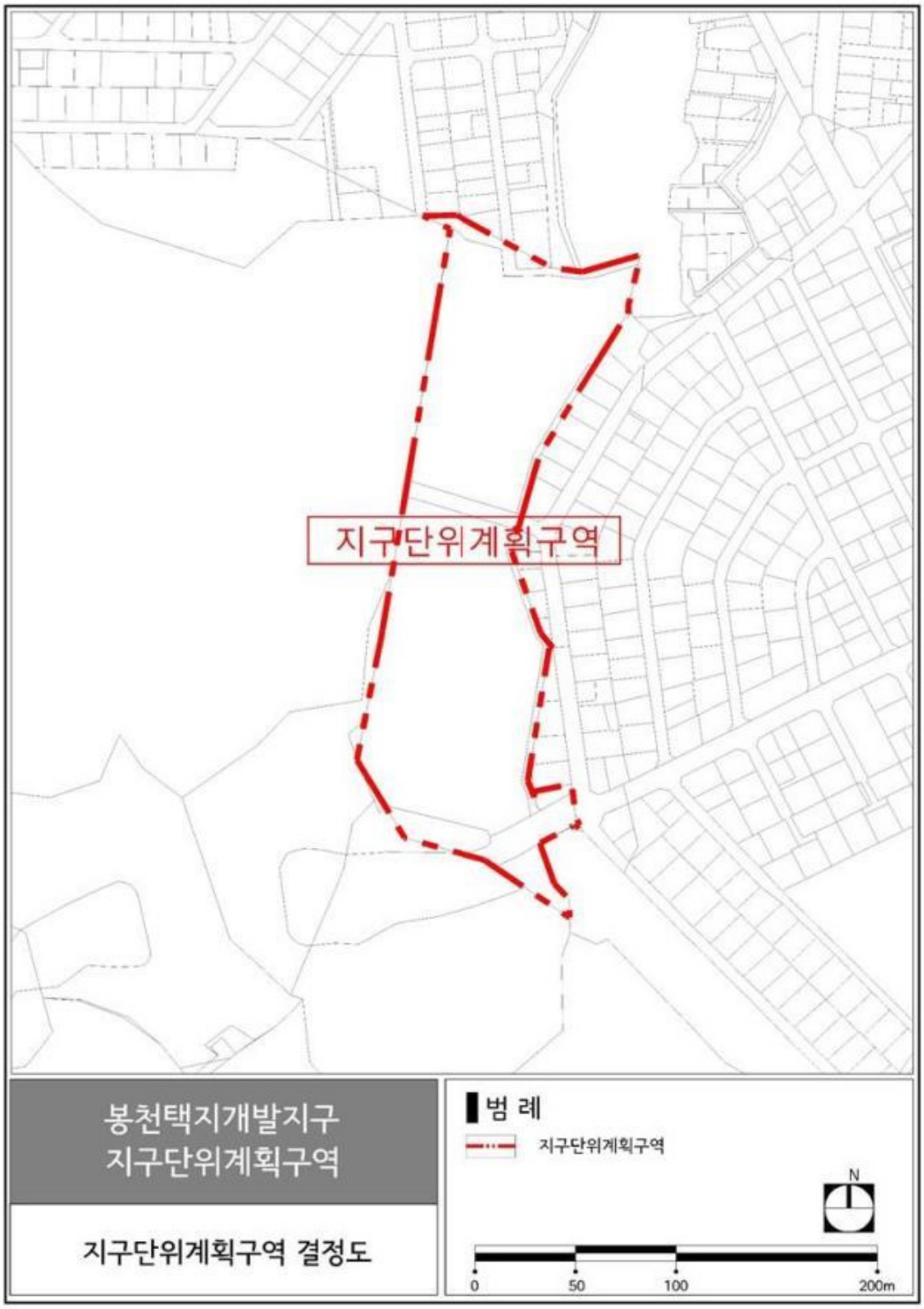

255. 신림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56. 낙성대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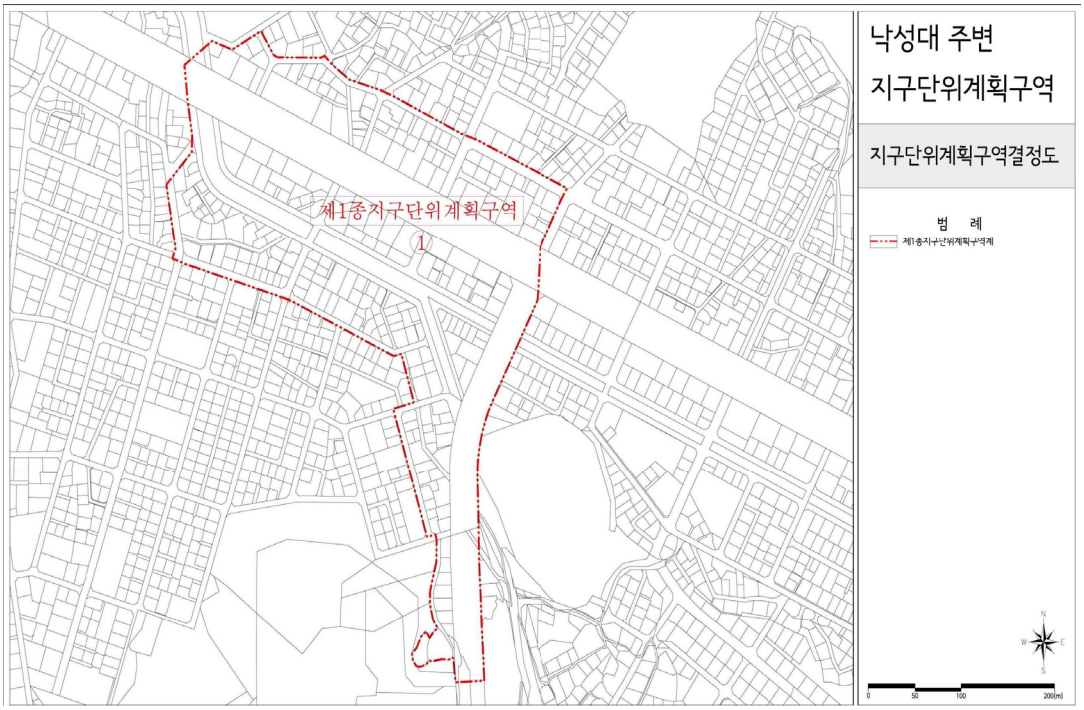

257. 남부순환로(시흥IC)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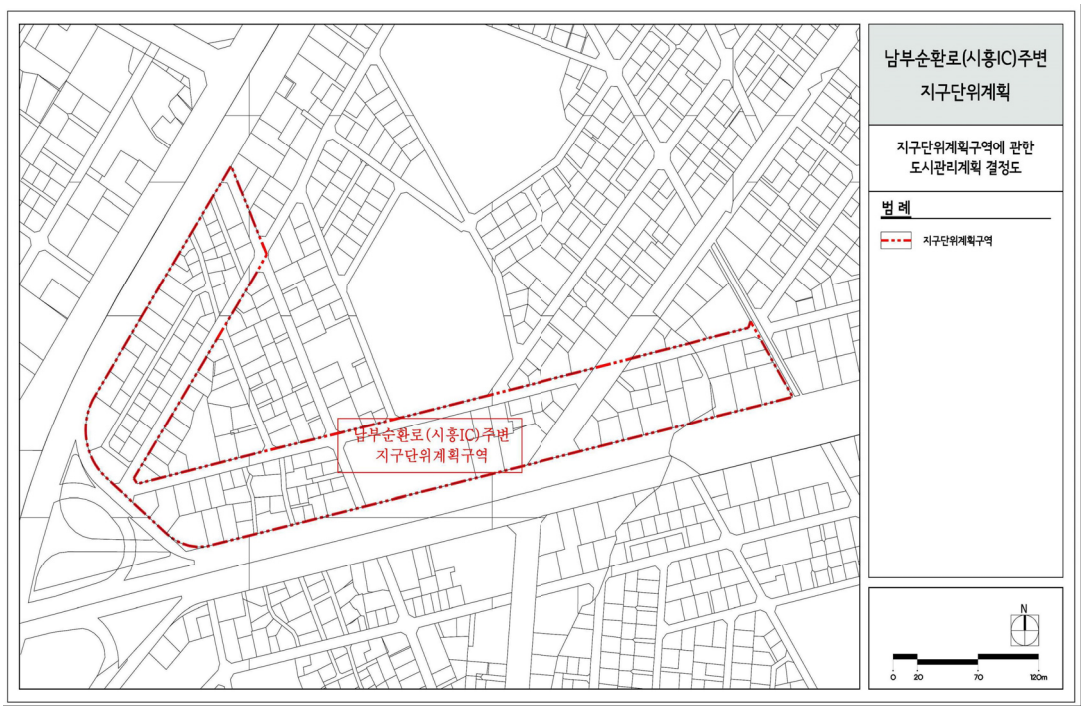

258. 미림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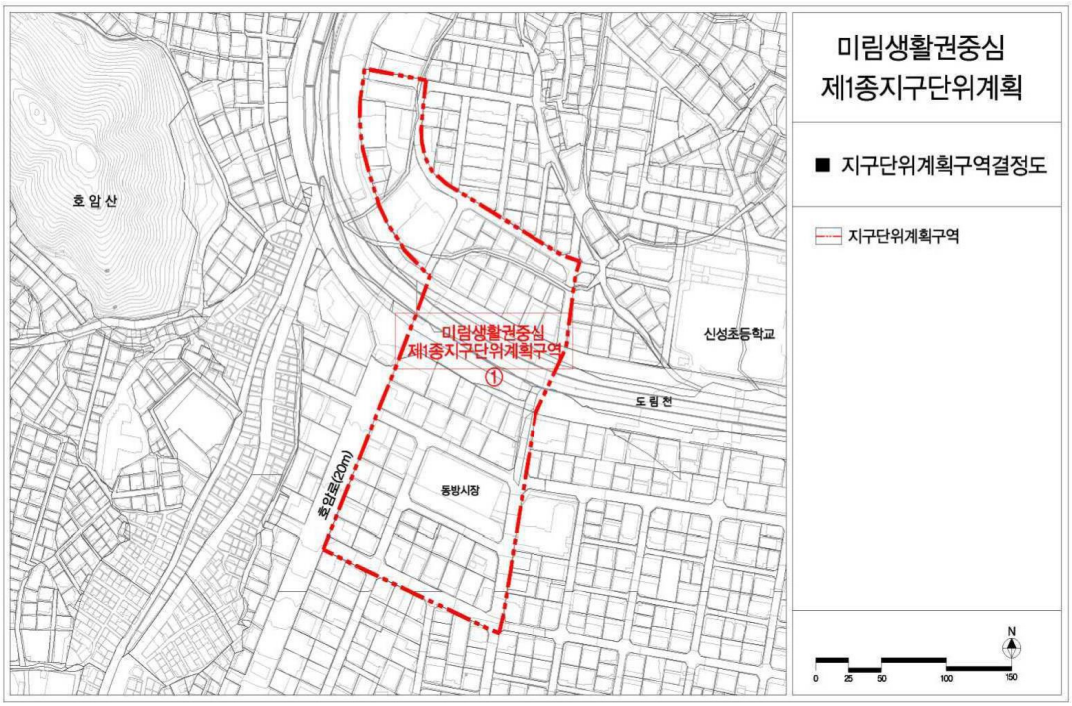

259.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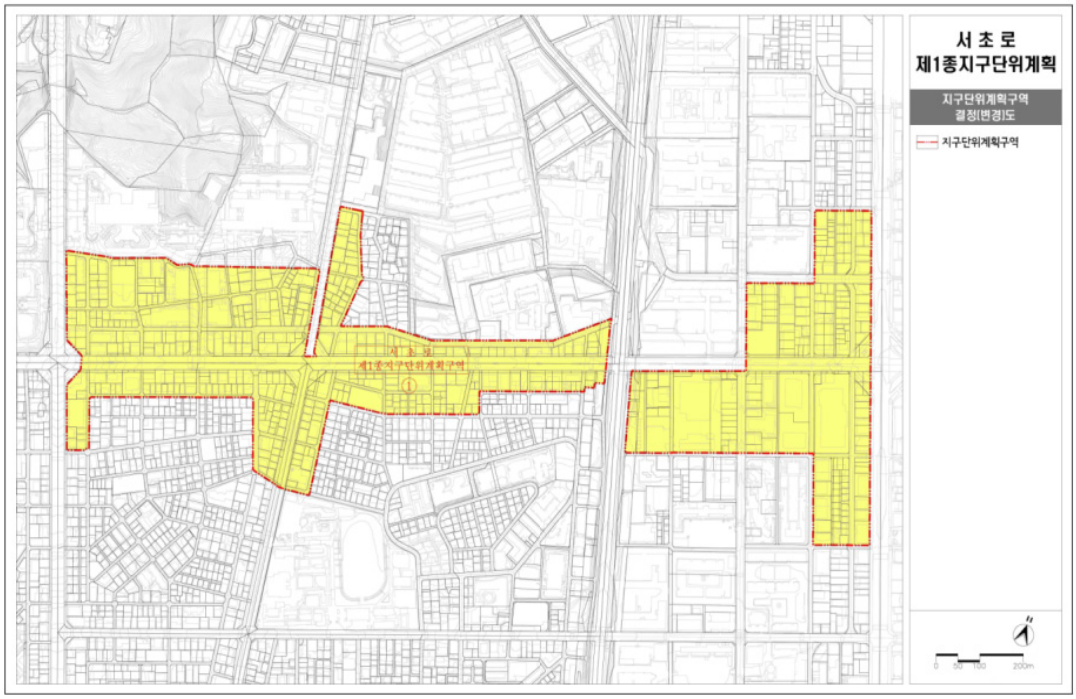

260.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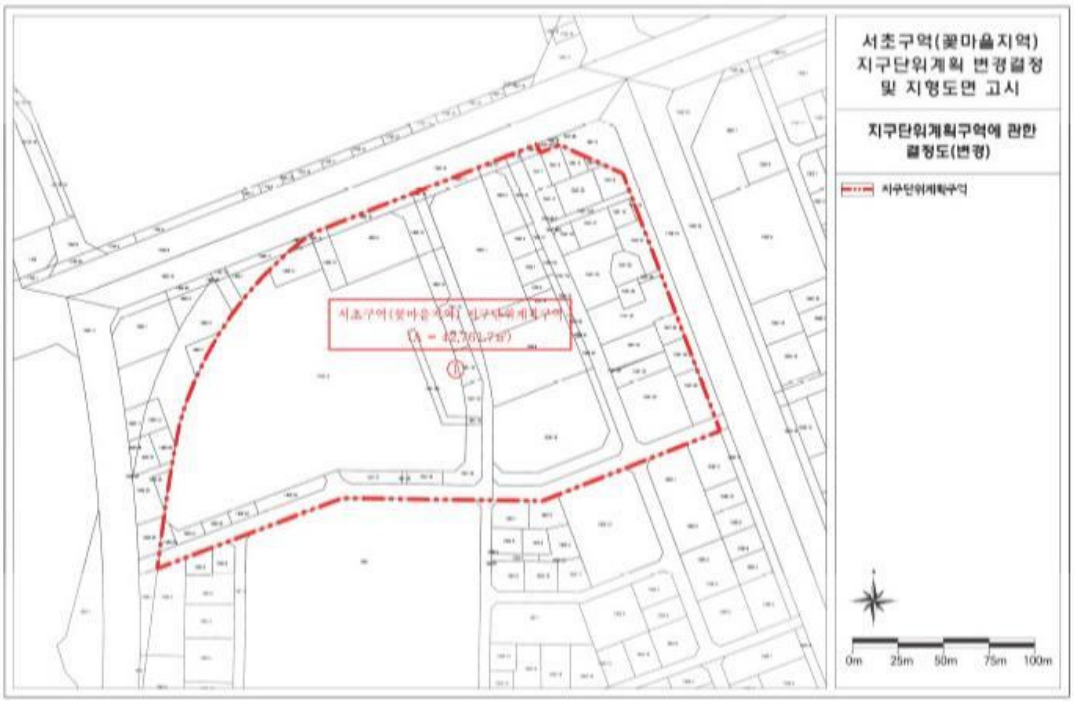

261.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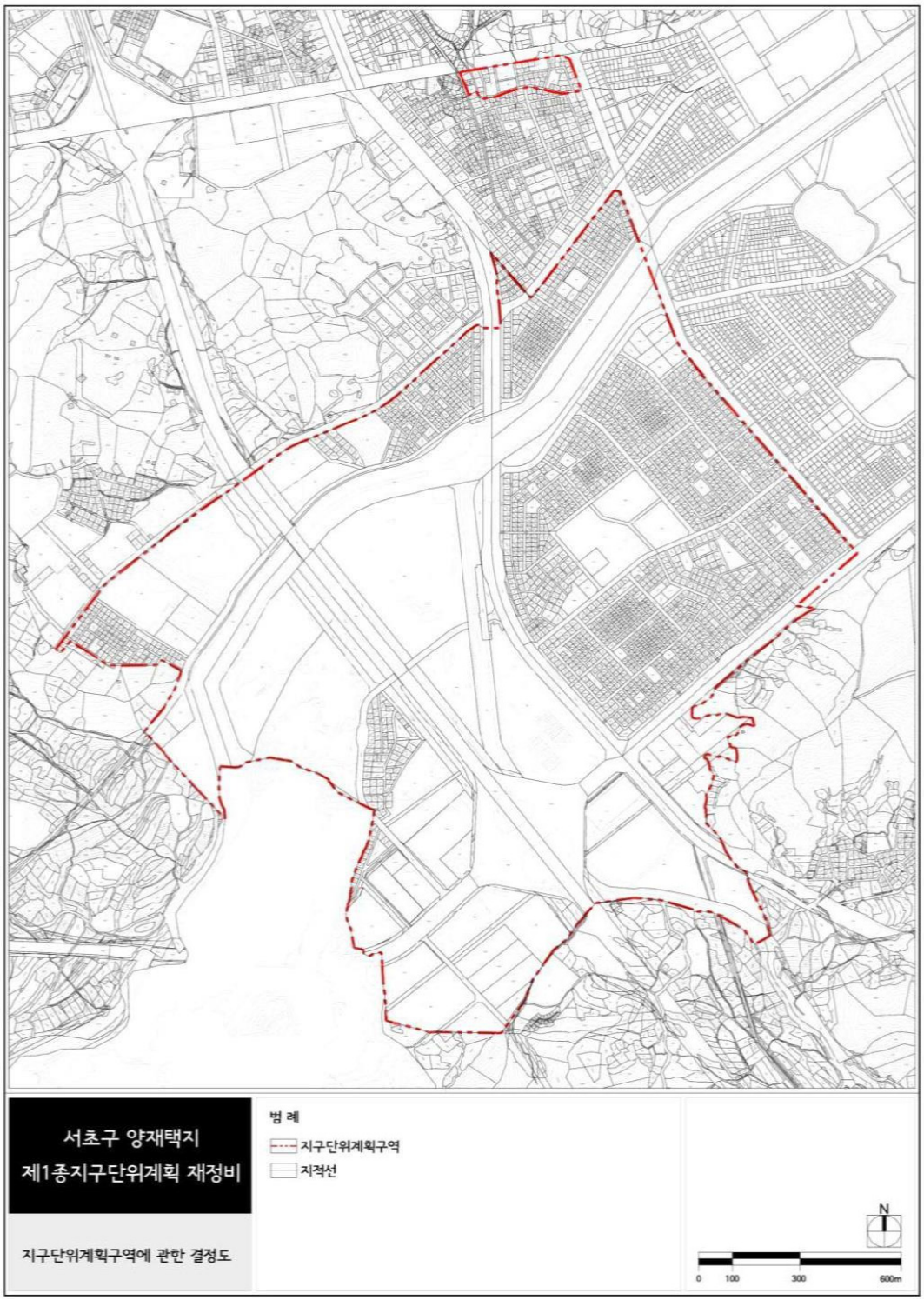

262.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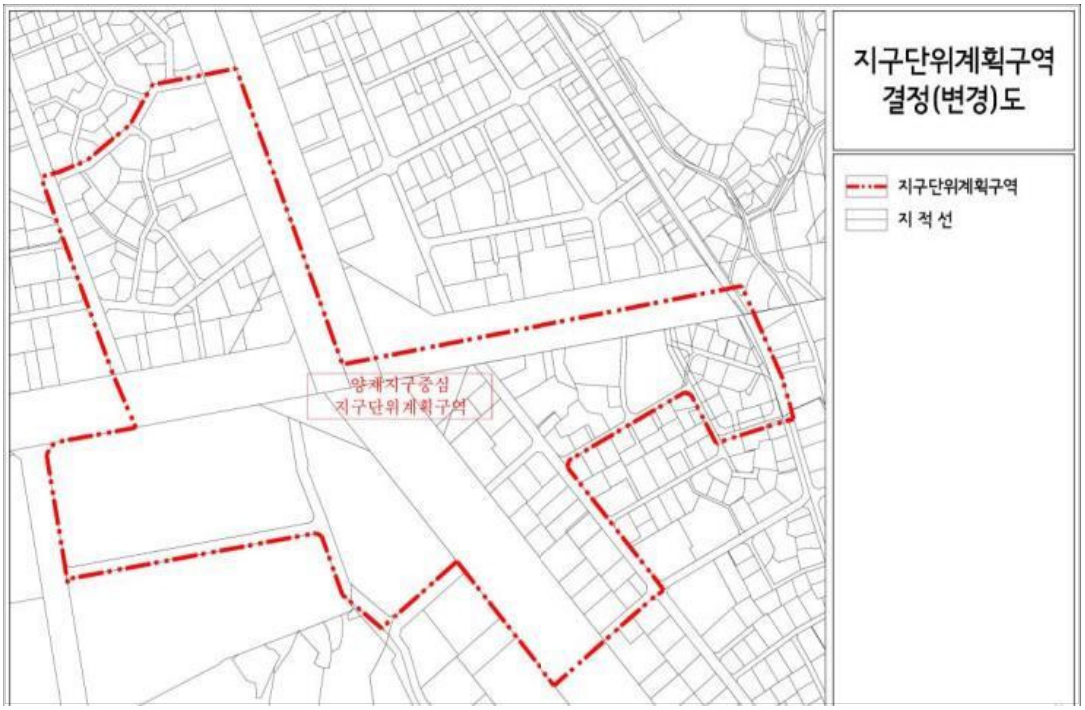

263. 잠원동 66-2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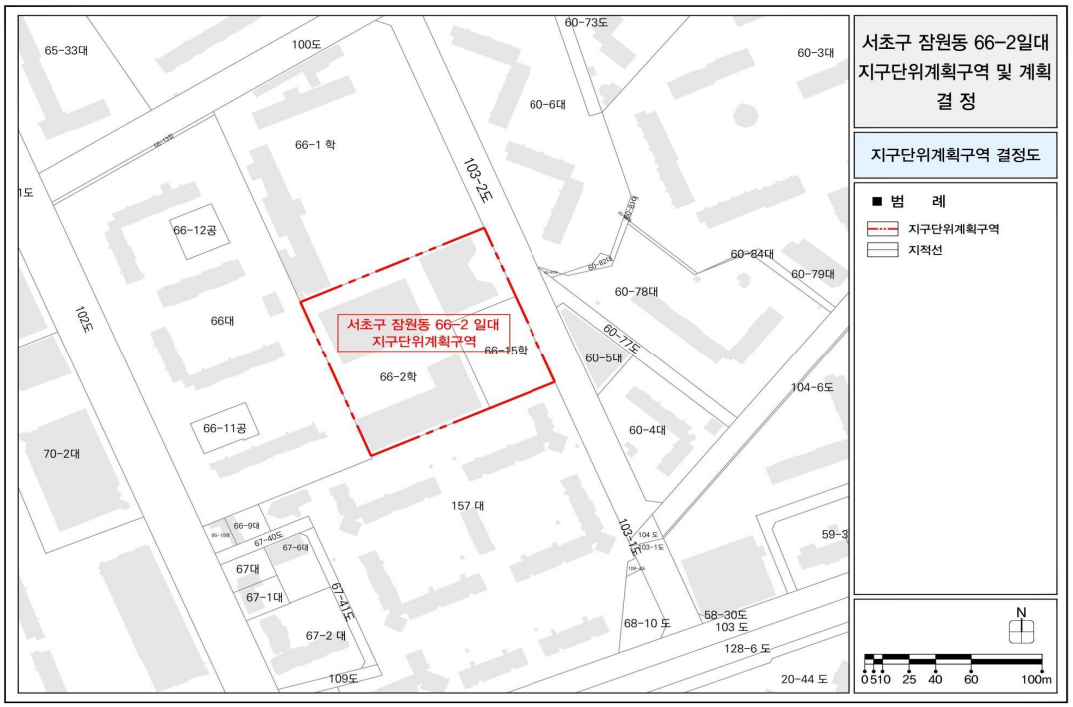

264.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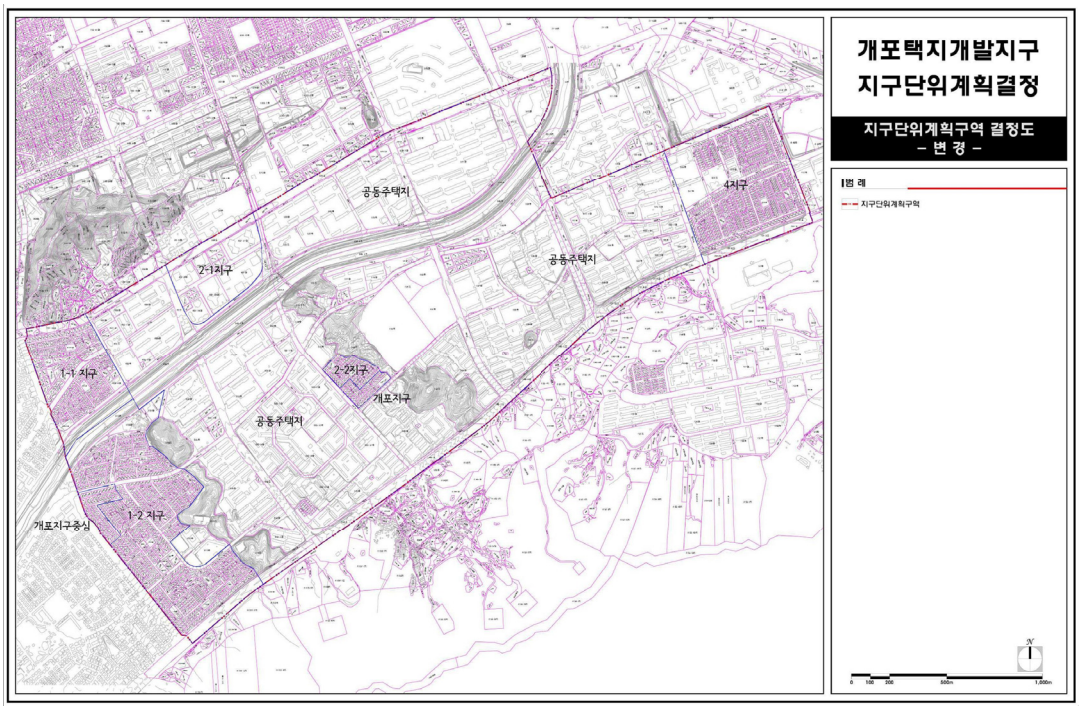

265. 논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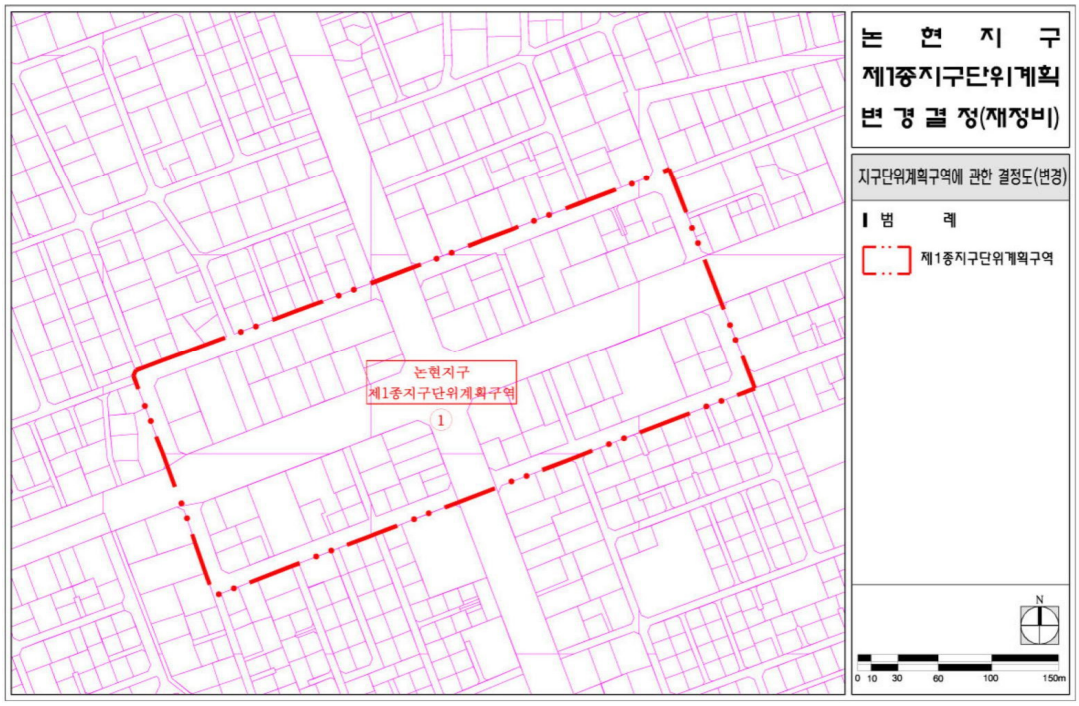

266. 청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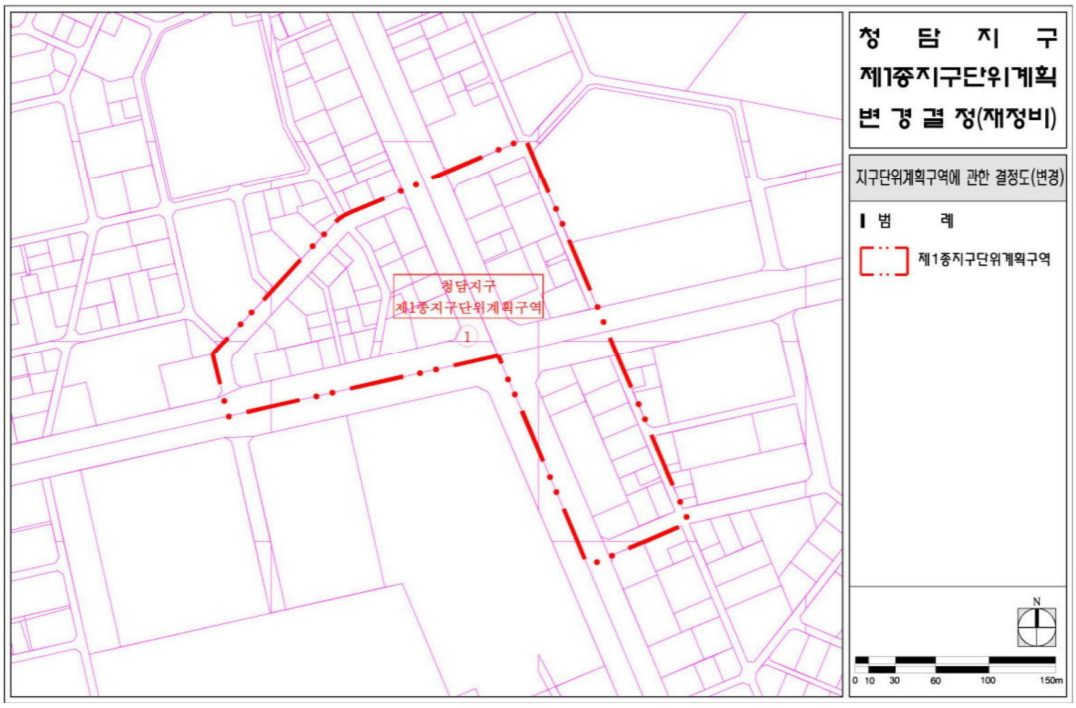

267. 대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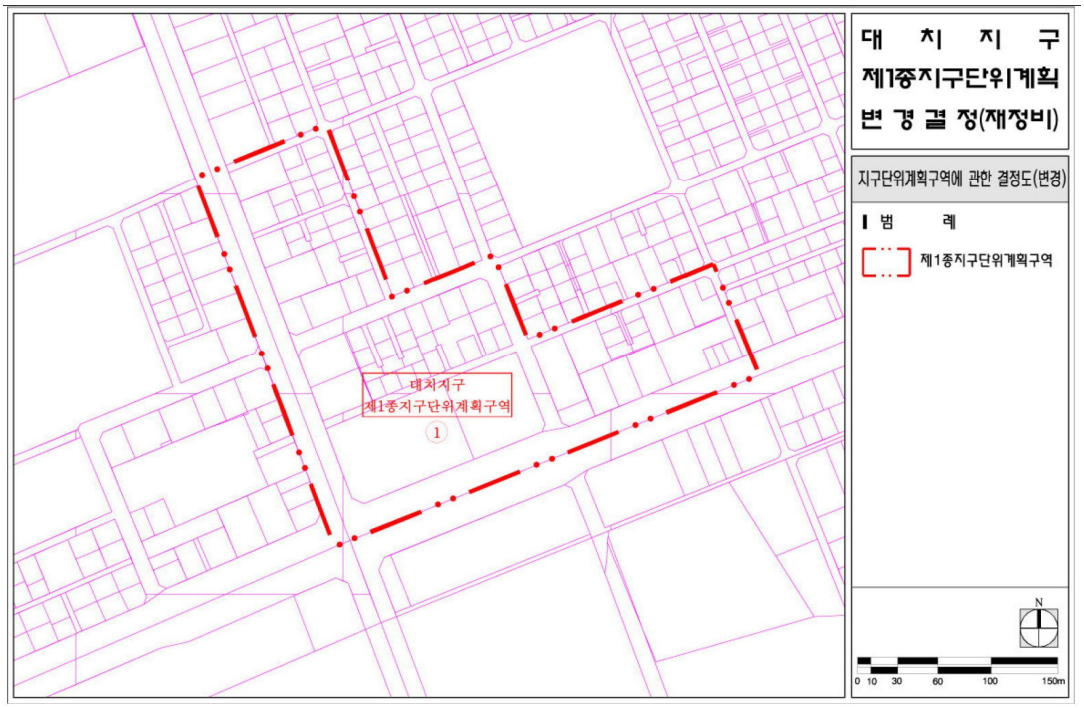

268. 테헤란로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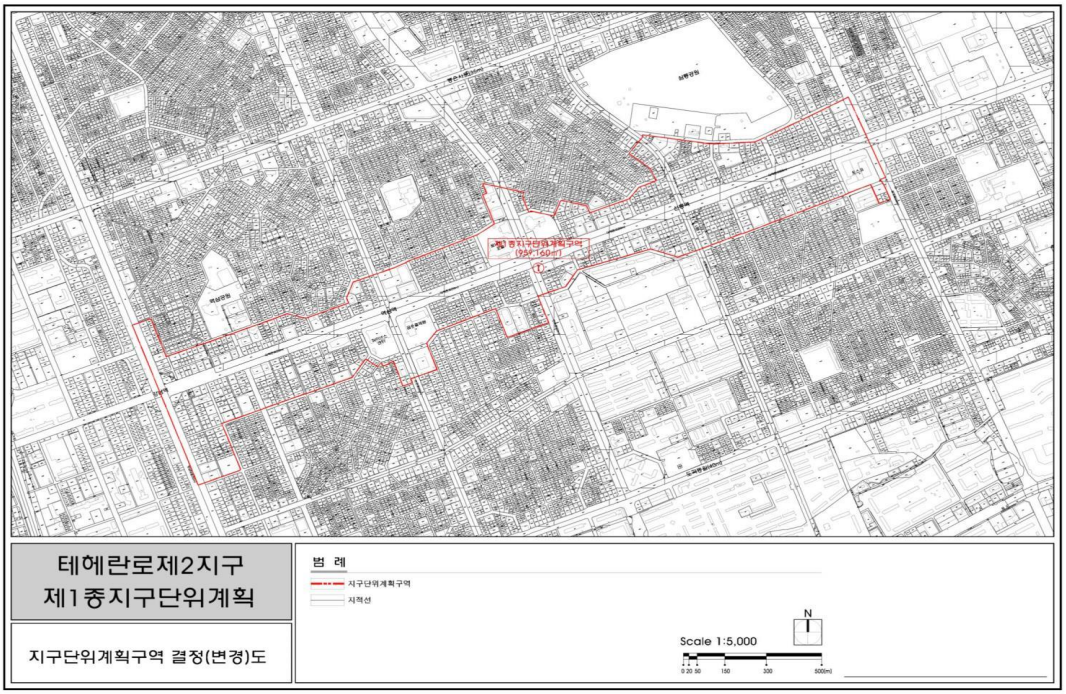

269.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70. 양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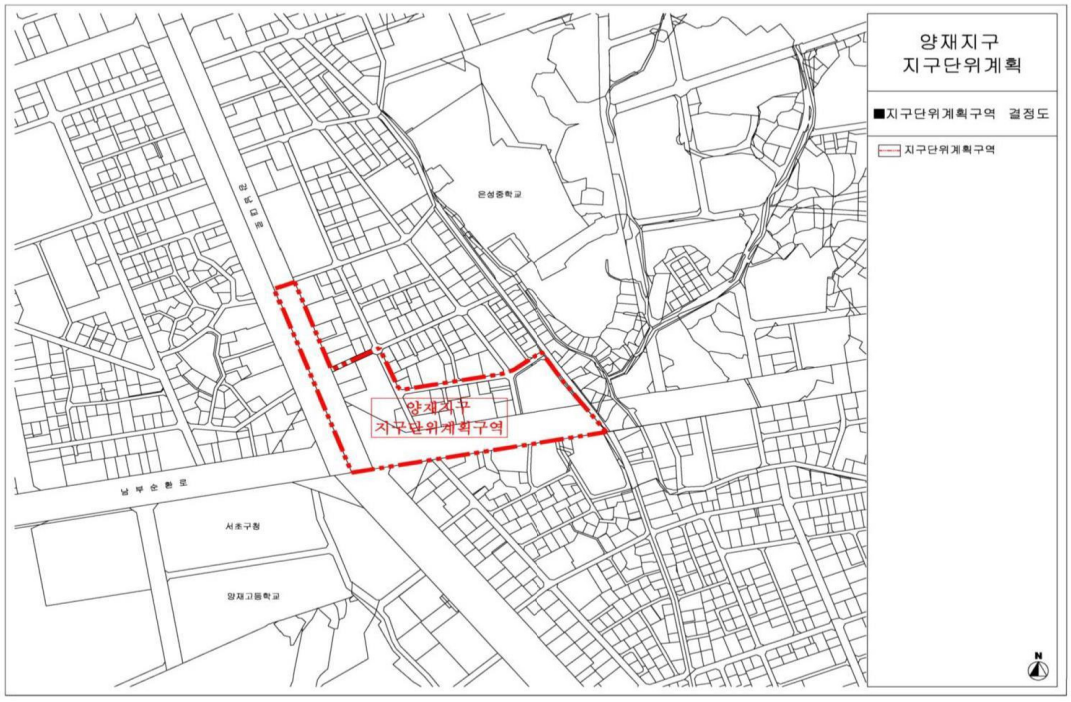

271. 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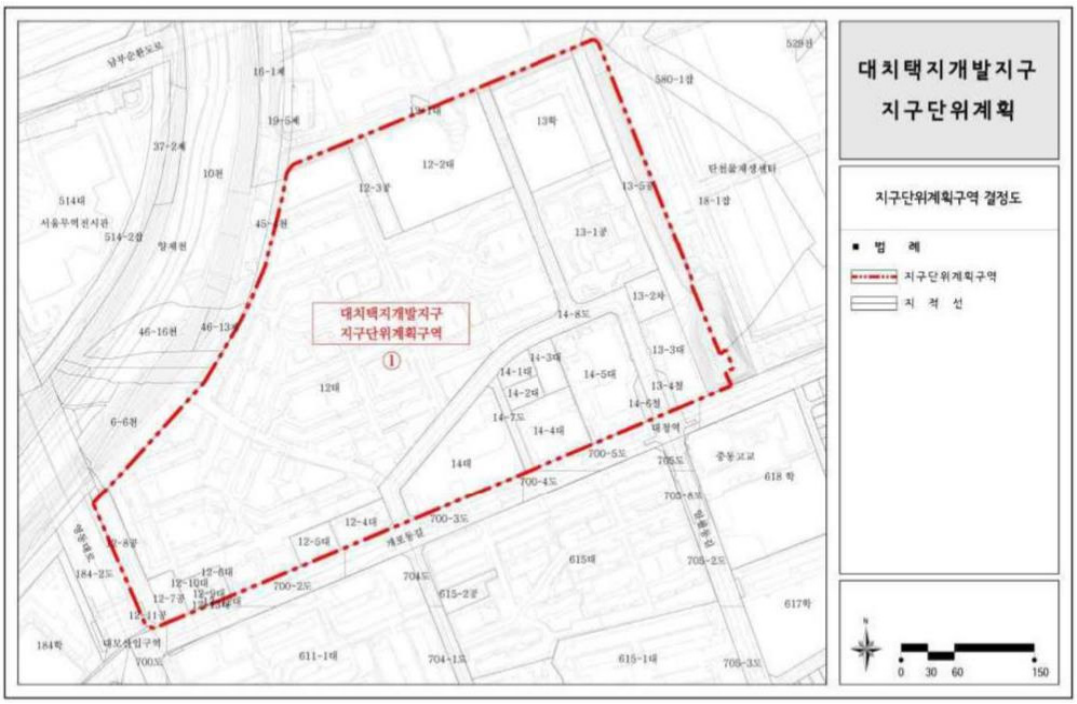

272.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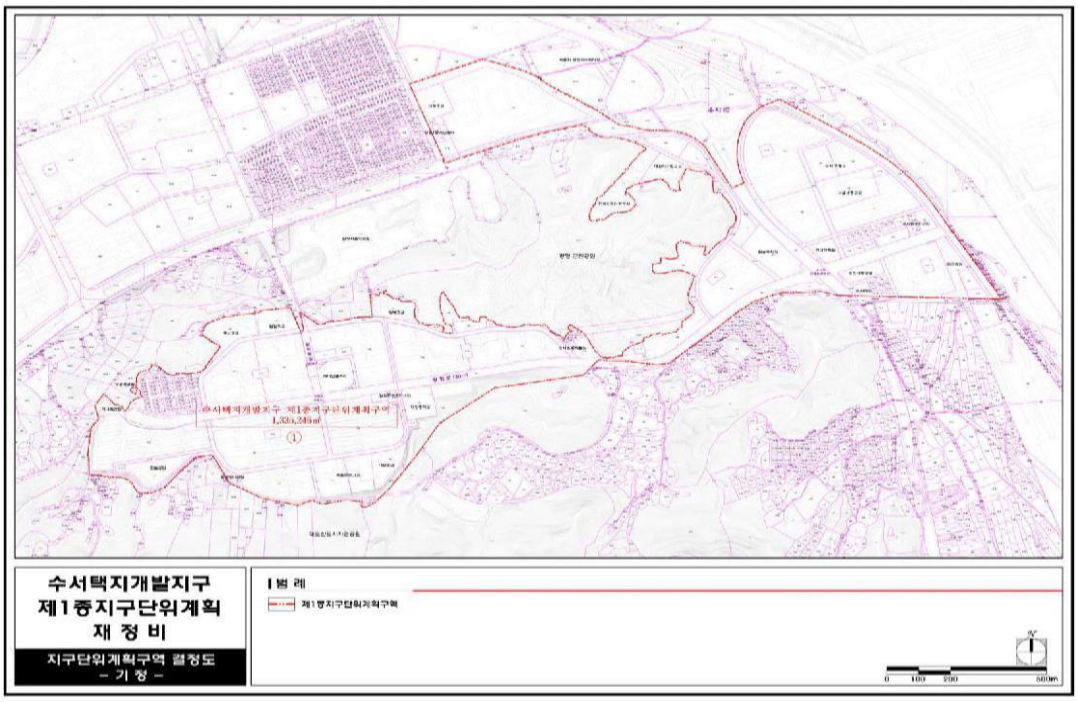

273. 대치동 구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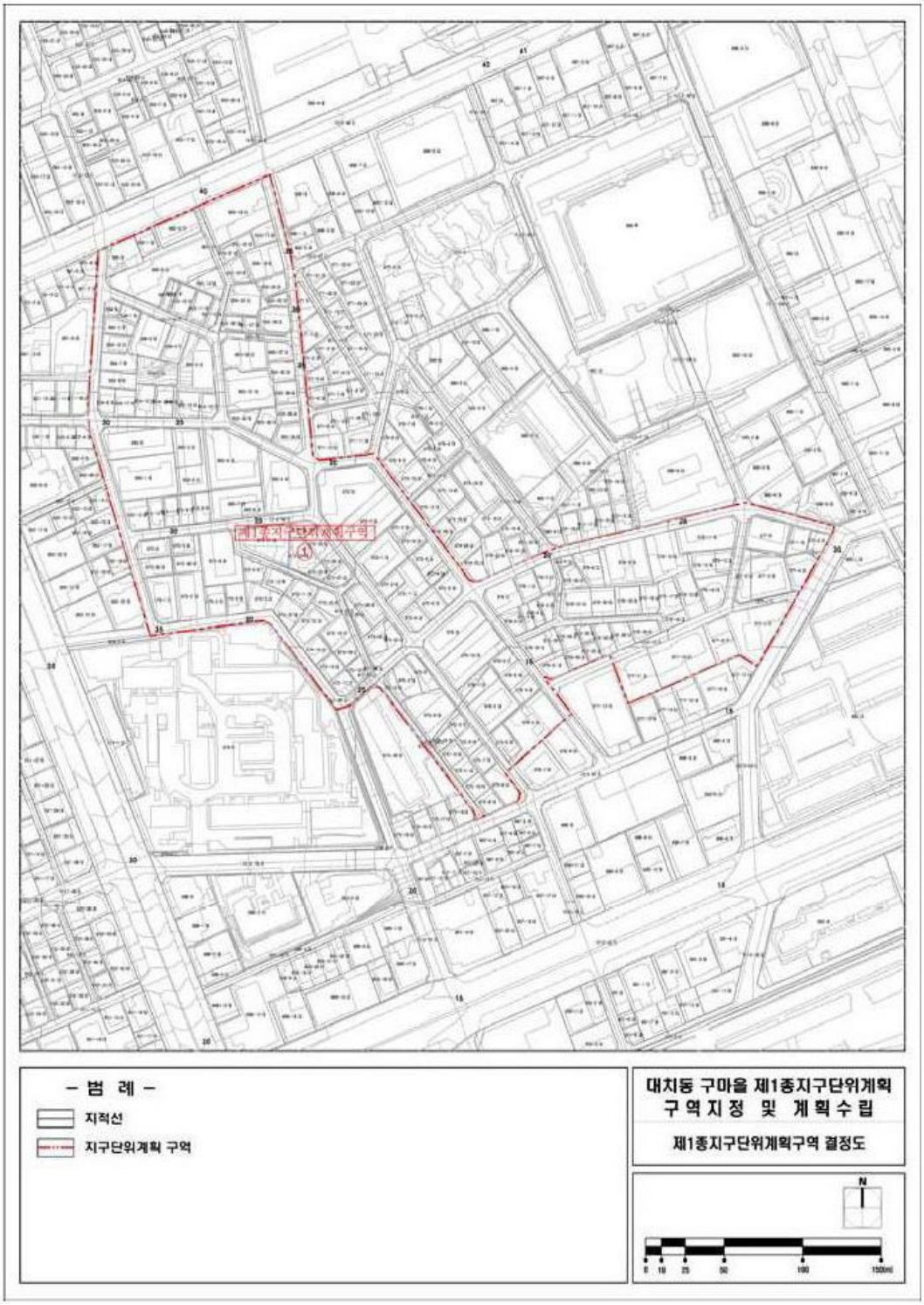

274. 926정거장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75. 아랫반고개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76. 한국과학기술회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77. 역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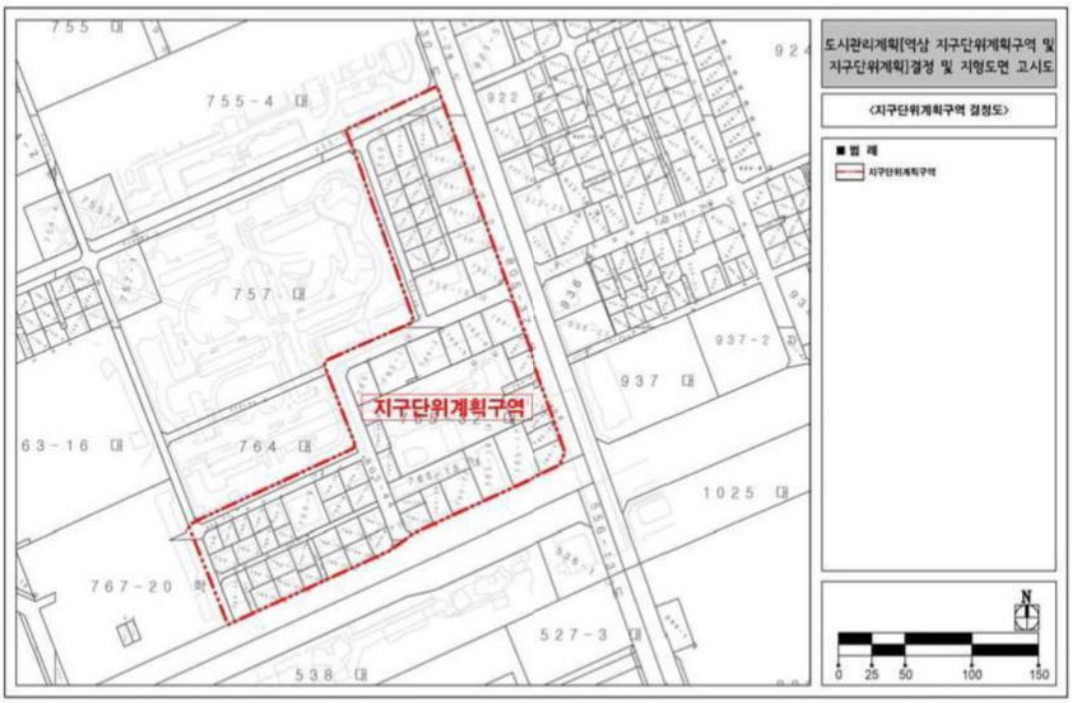

278. 강남세브란스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79.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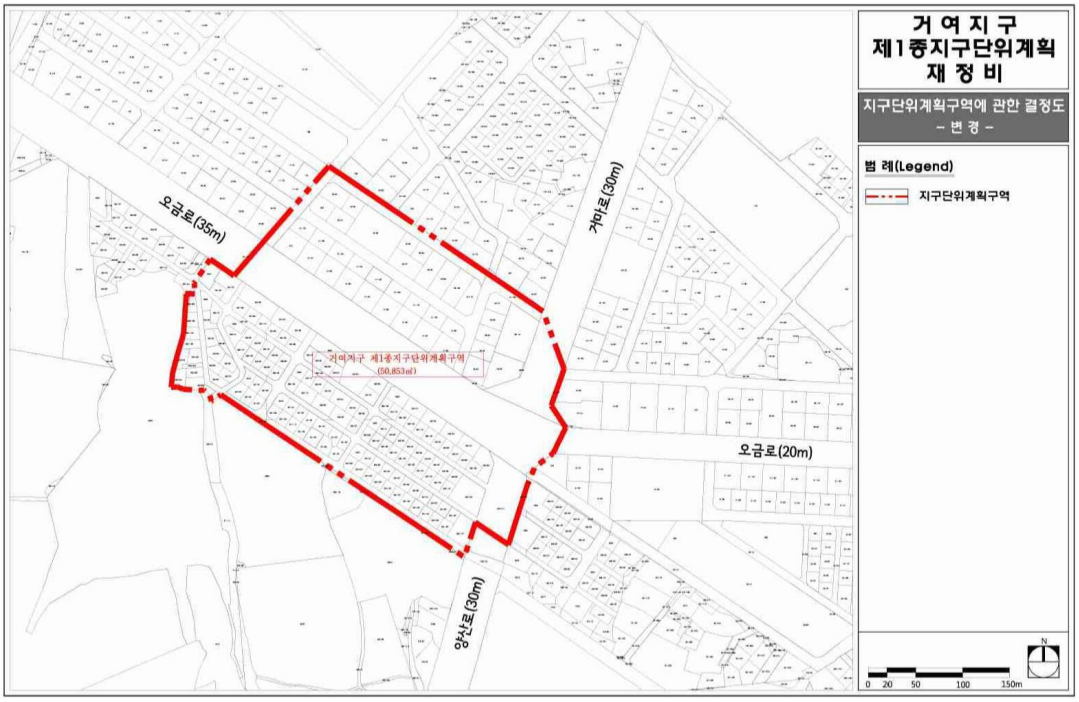

280. 삼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81. 송파대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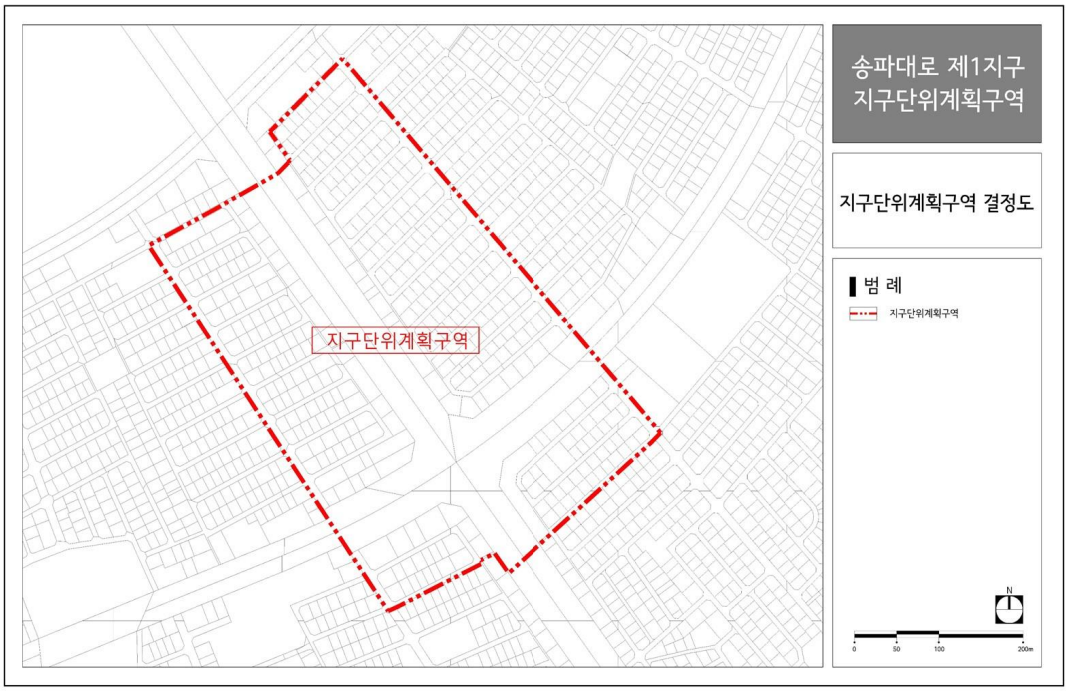

282. 방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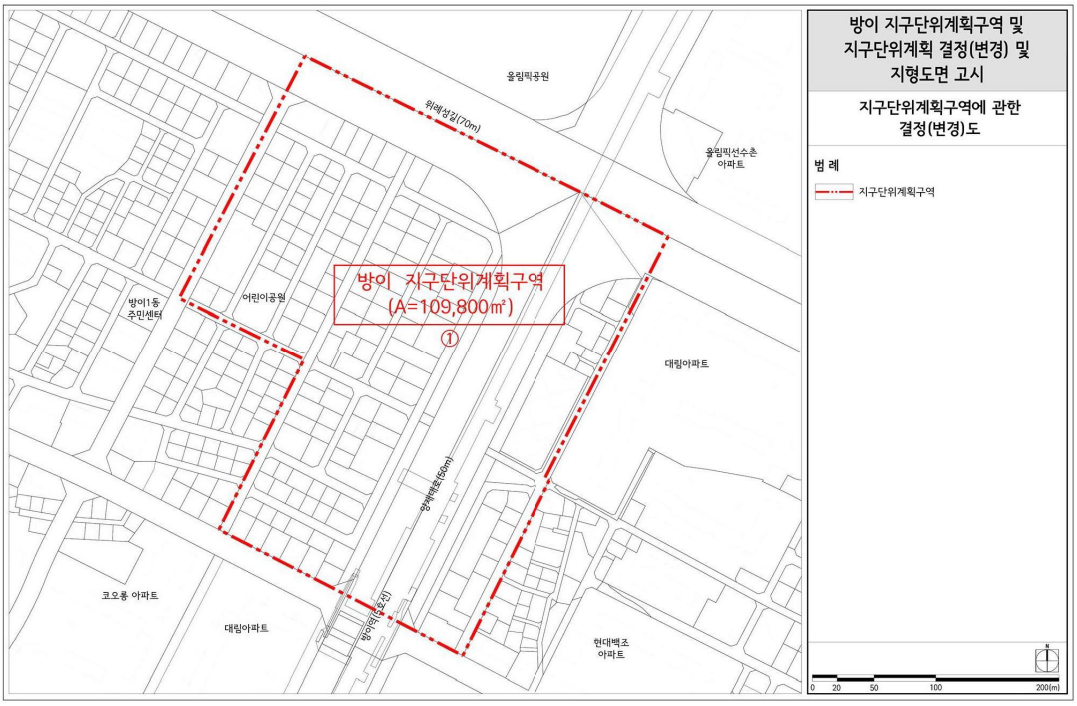

283. 개롱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84. 위례성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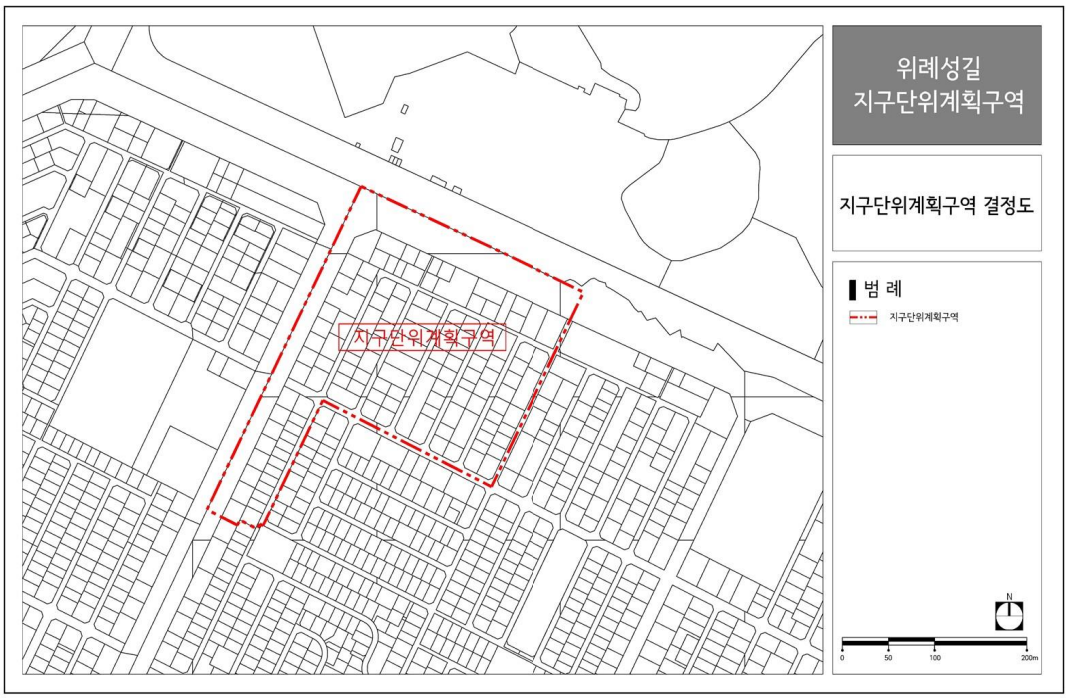

285.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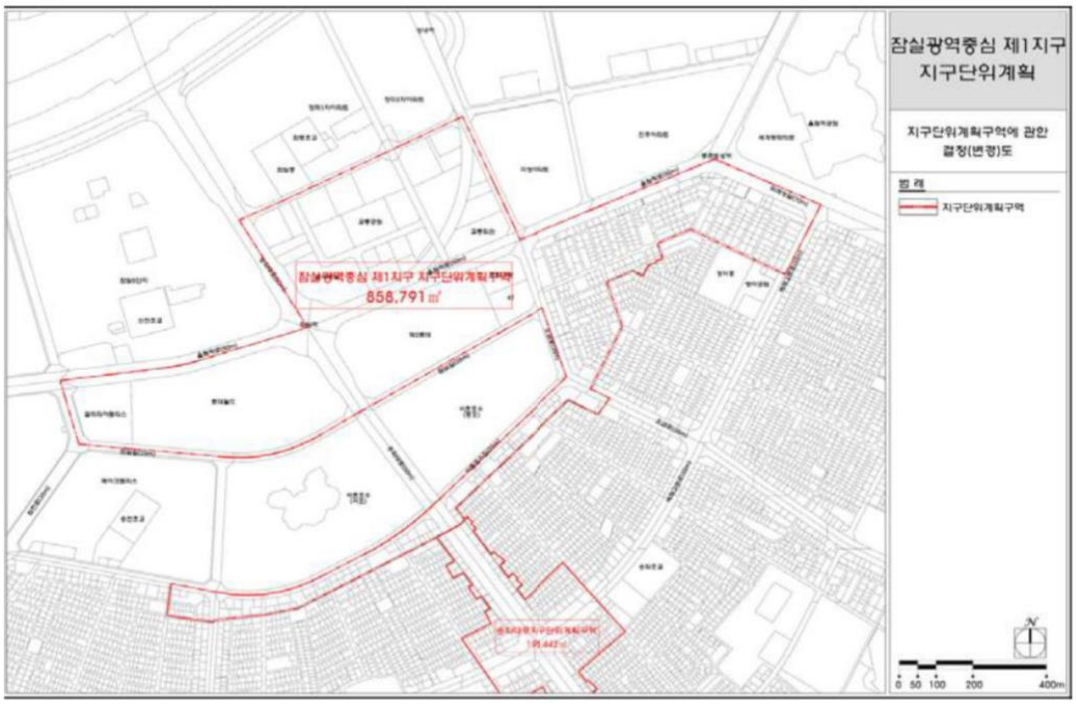

286.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87. 풍납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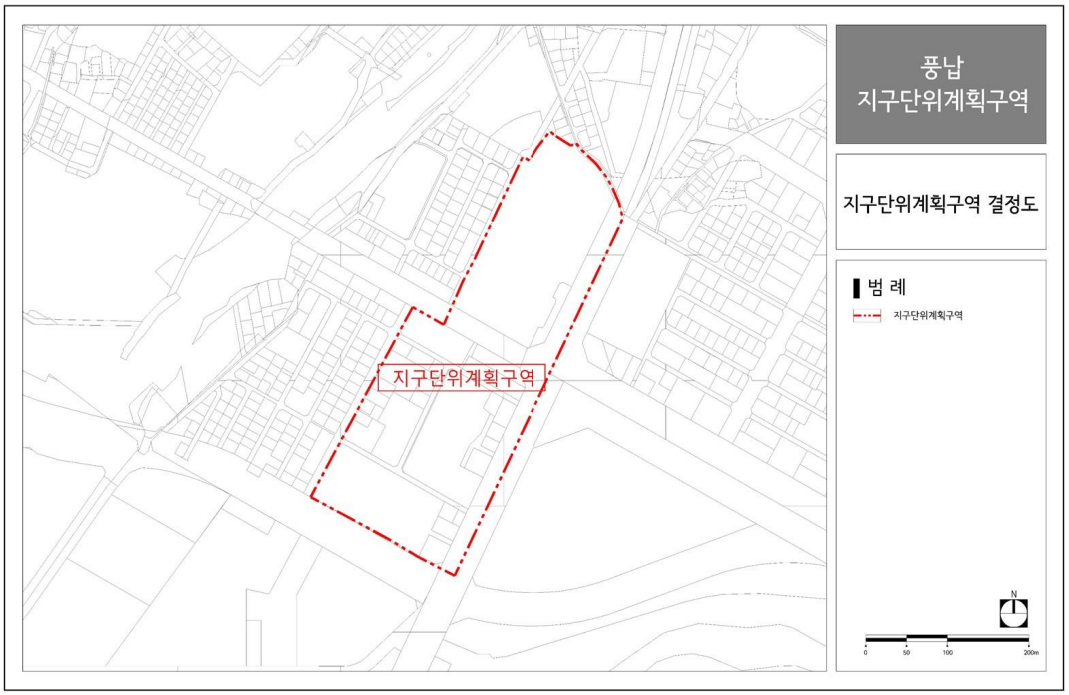

288. 거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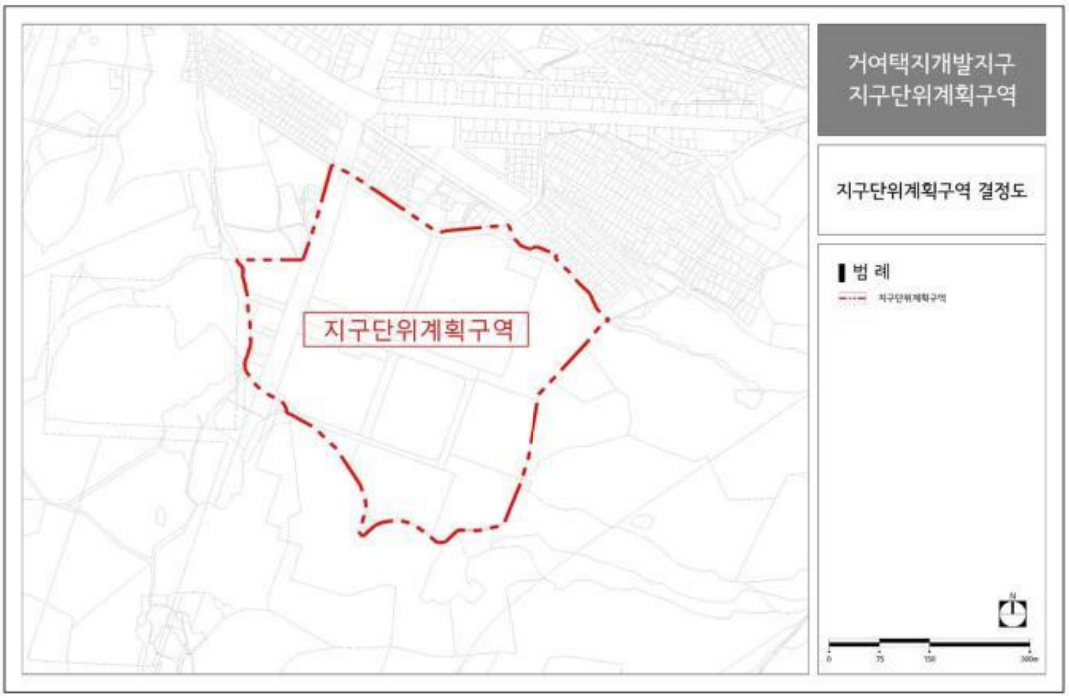

289. 장지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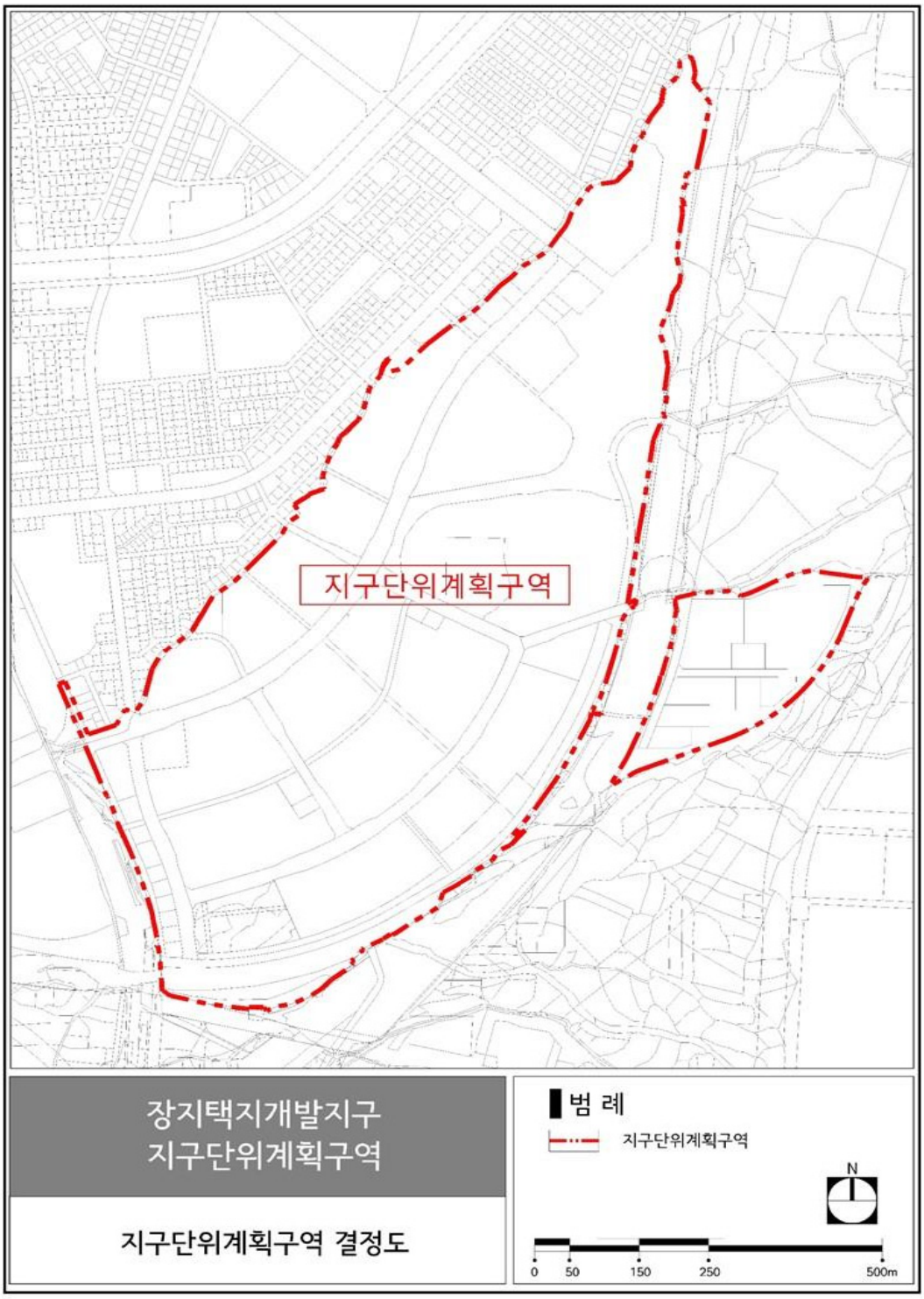

290. 위례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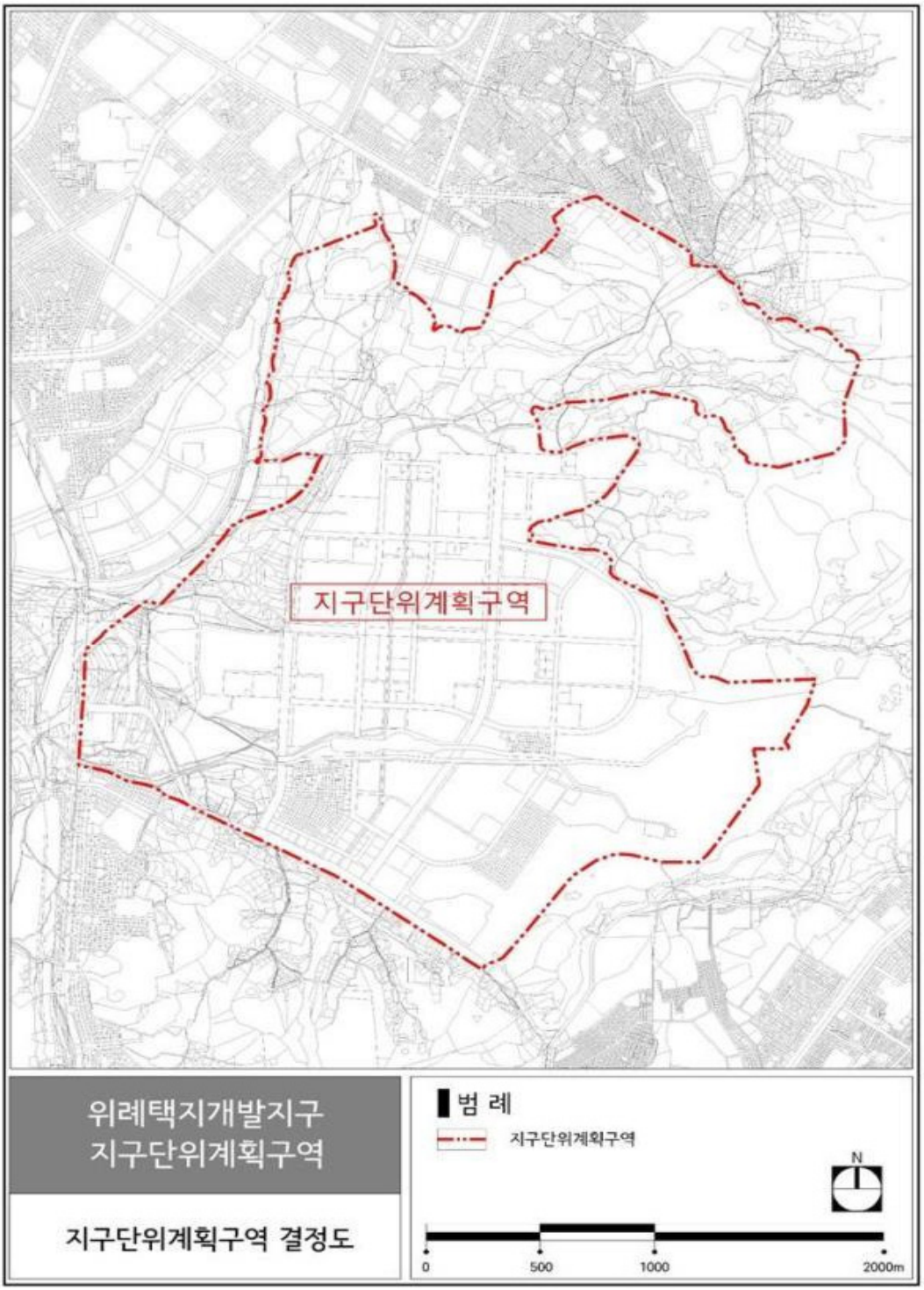

291. 거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92.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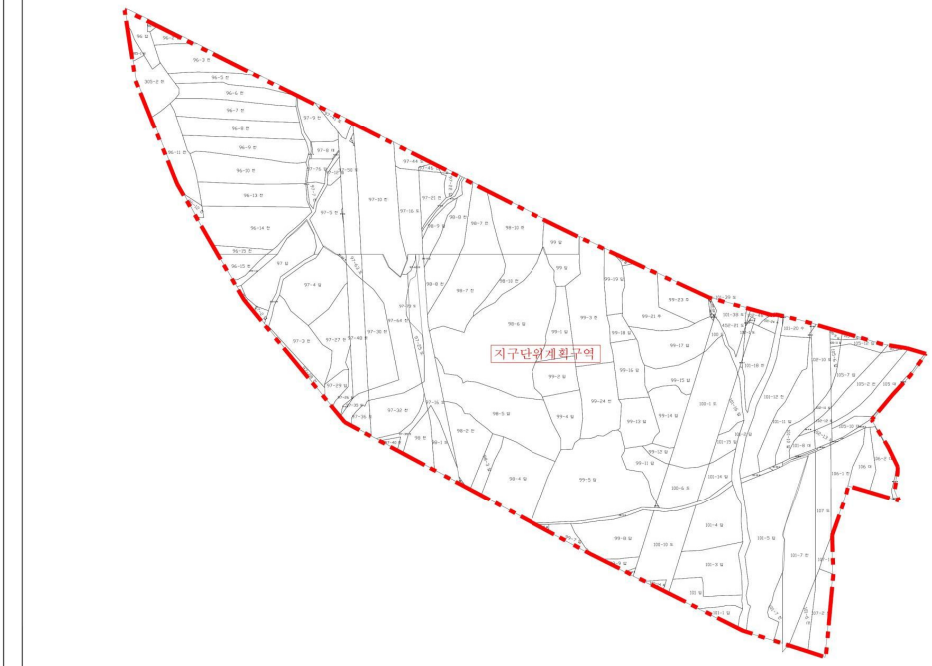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N

S =1 : 3,000

0 50 100 150 300M

지구단위계획구역경계

지적선

293. 문정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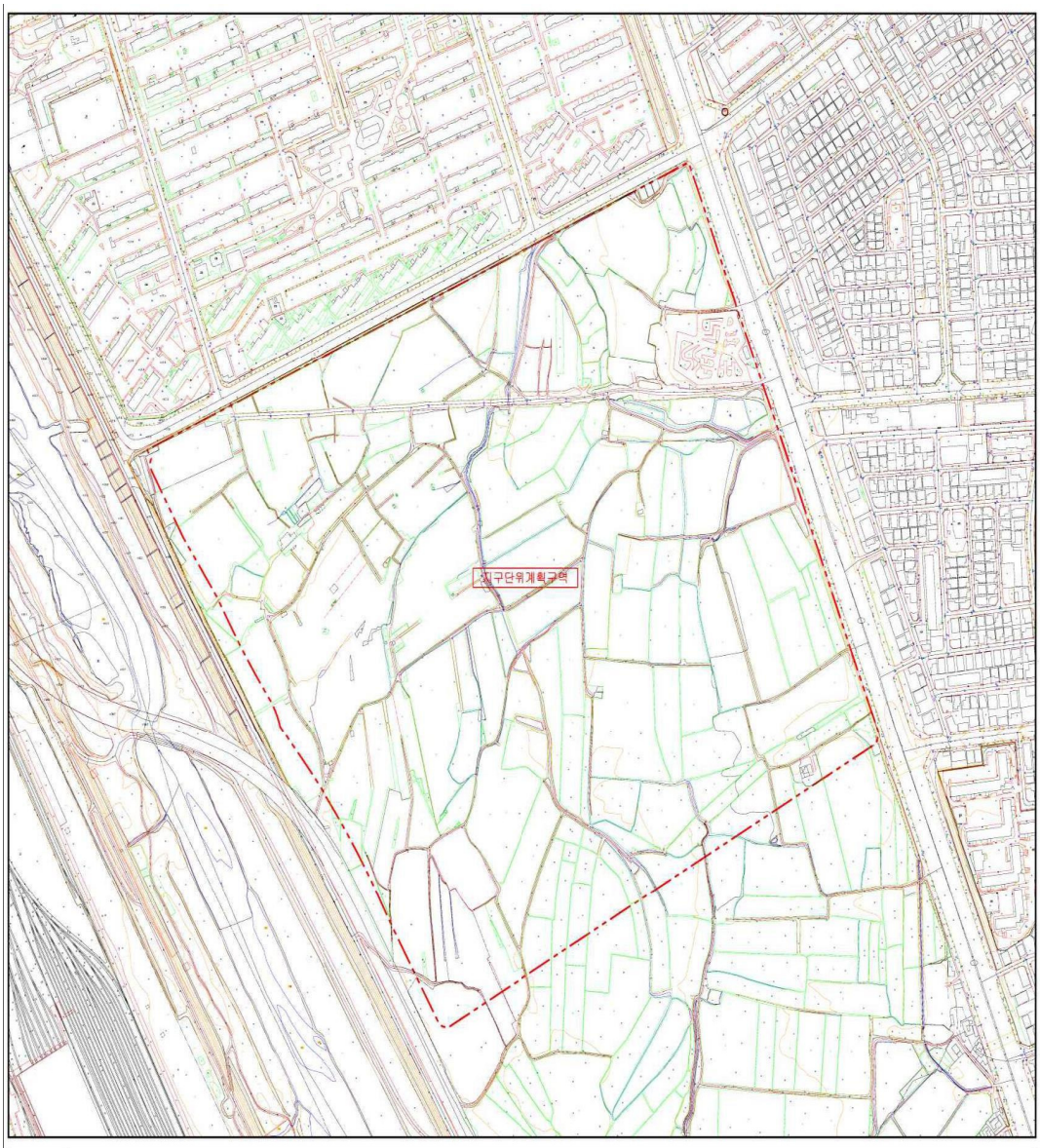

294. 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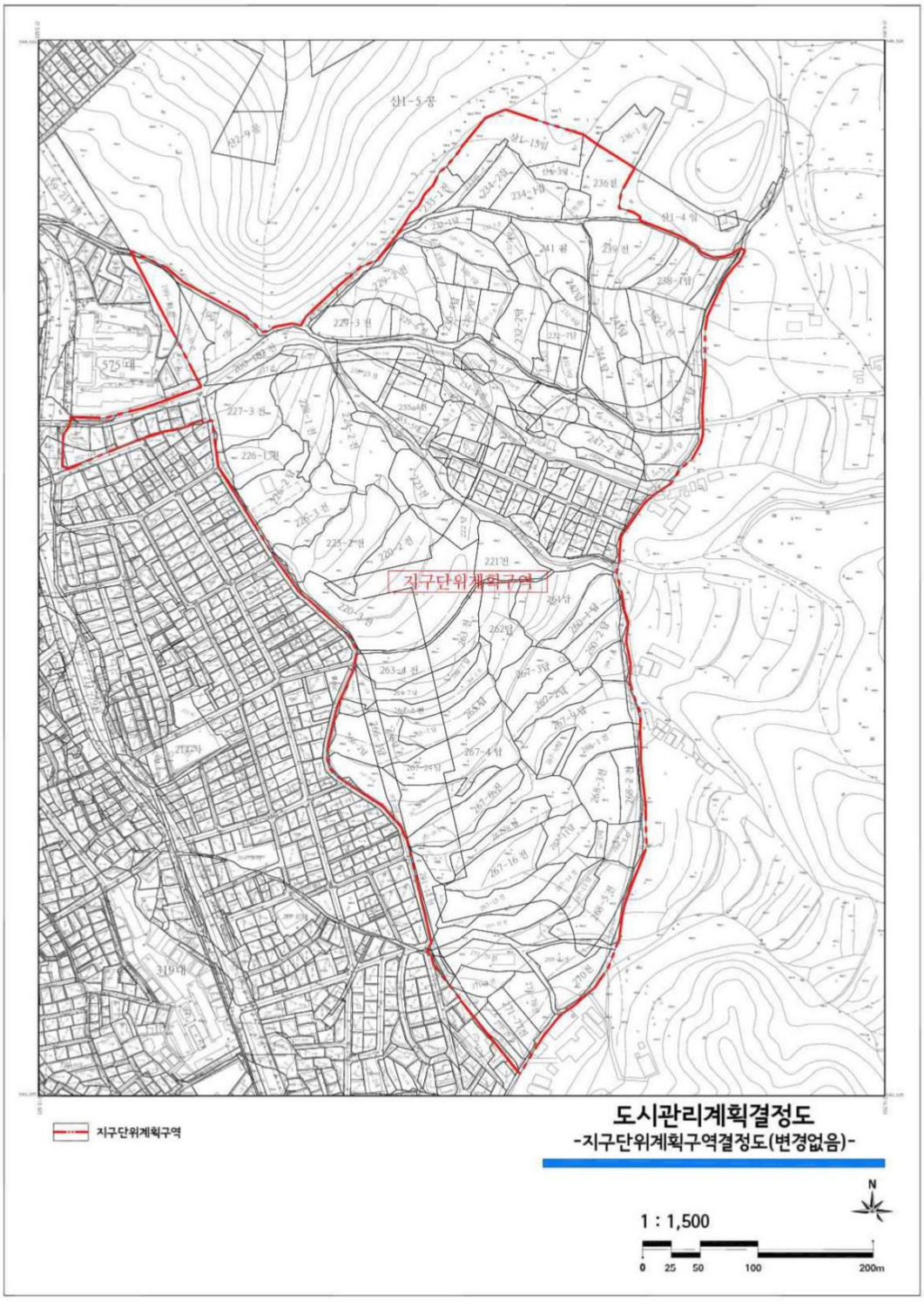

295. 마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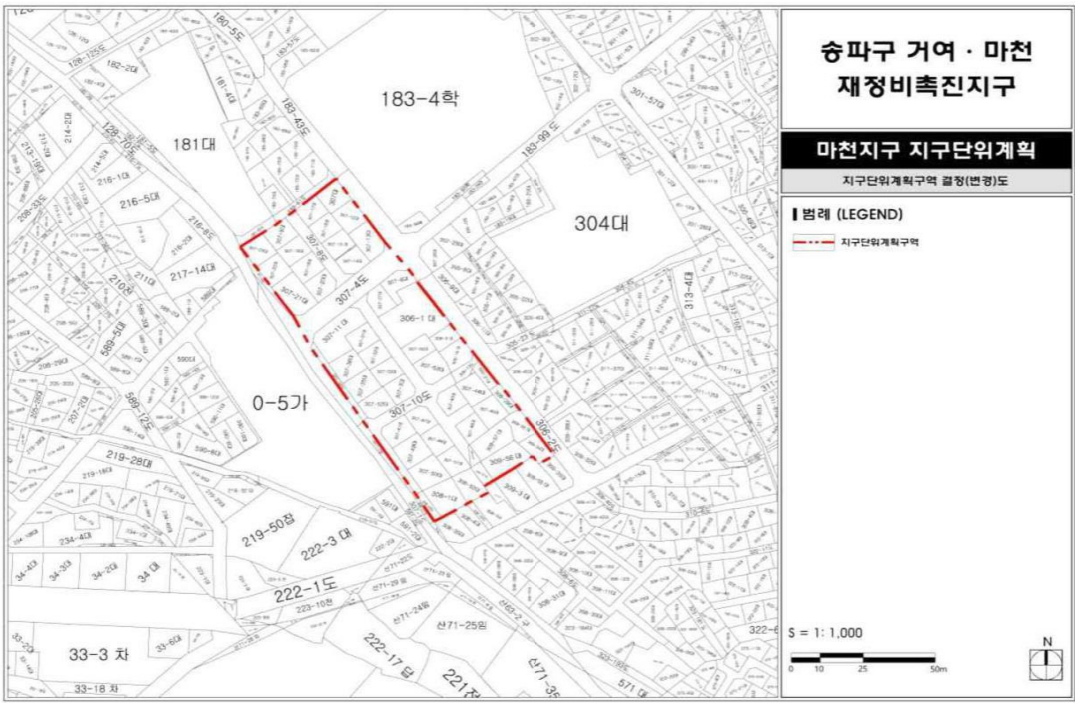

296. 서울동남권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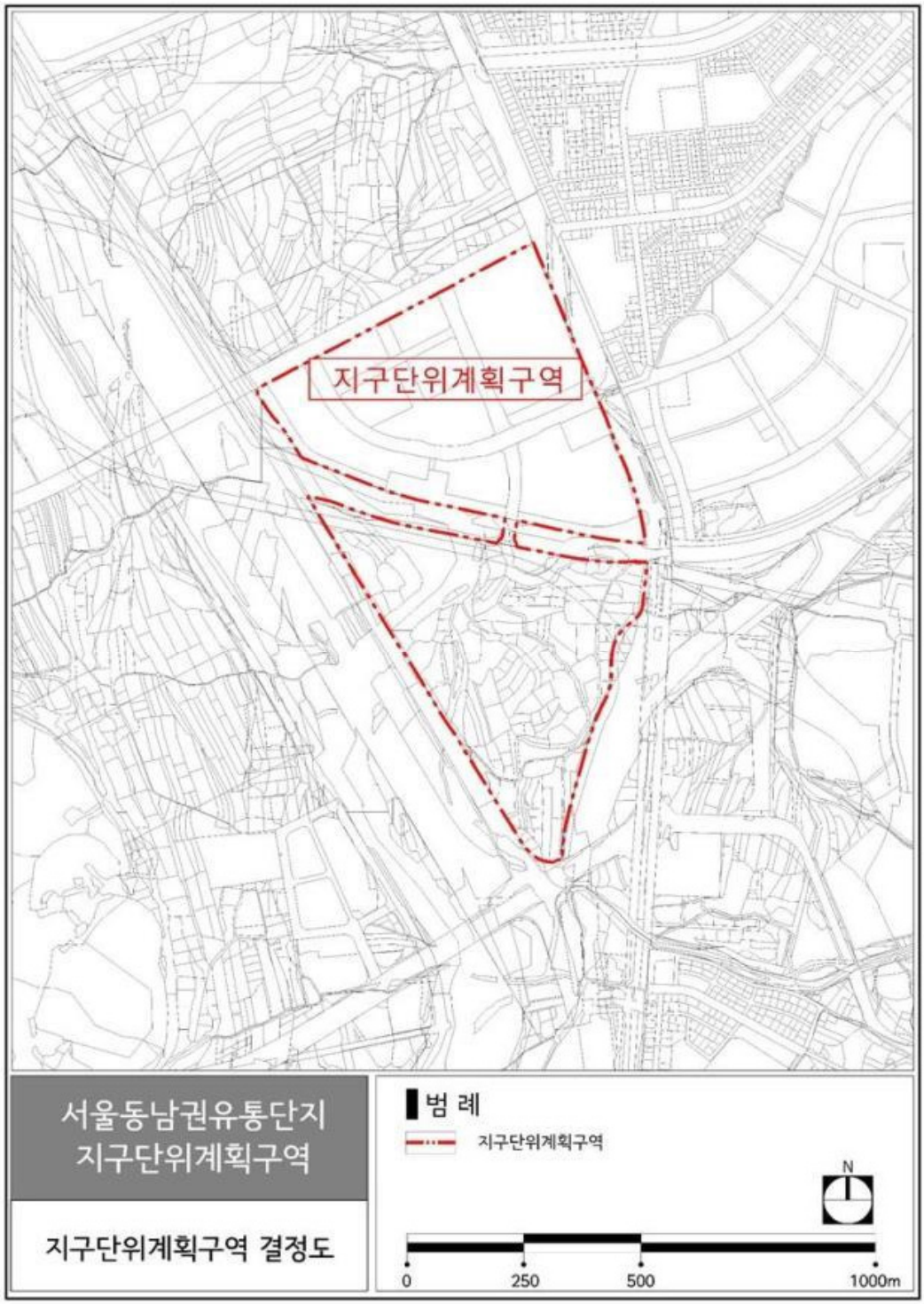

297.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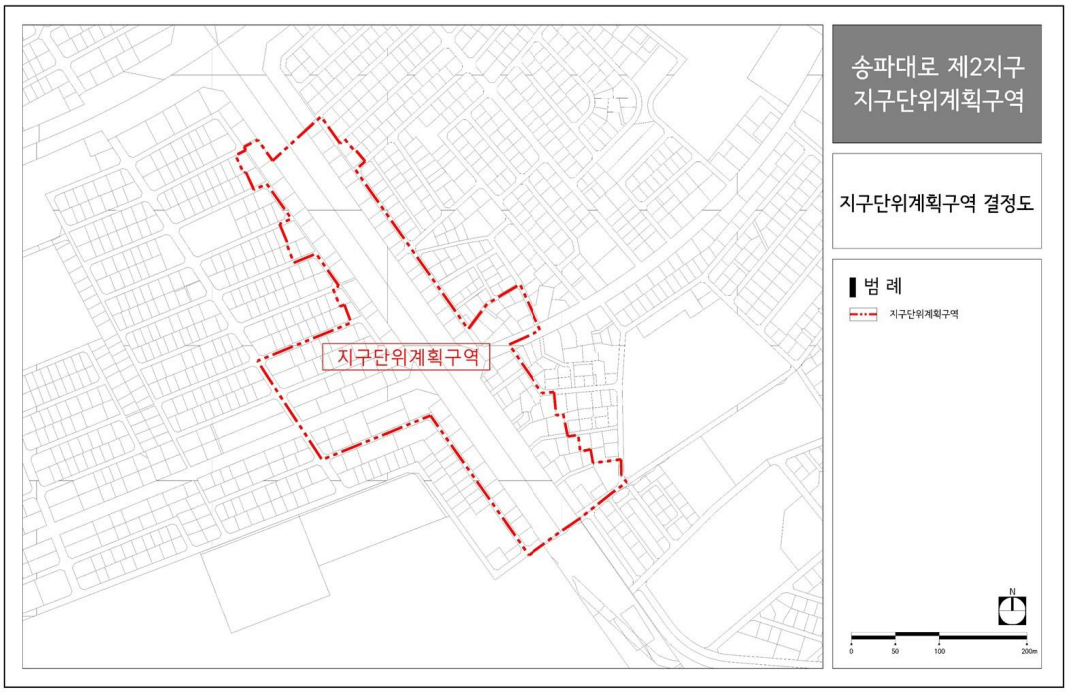

298. 성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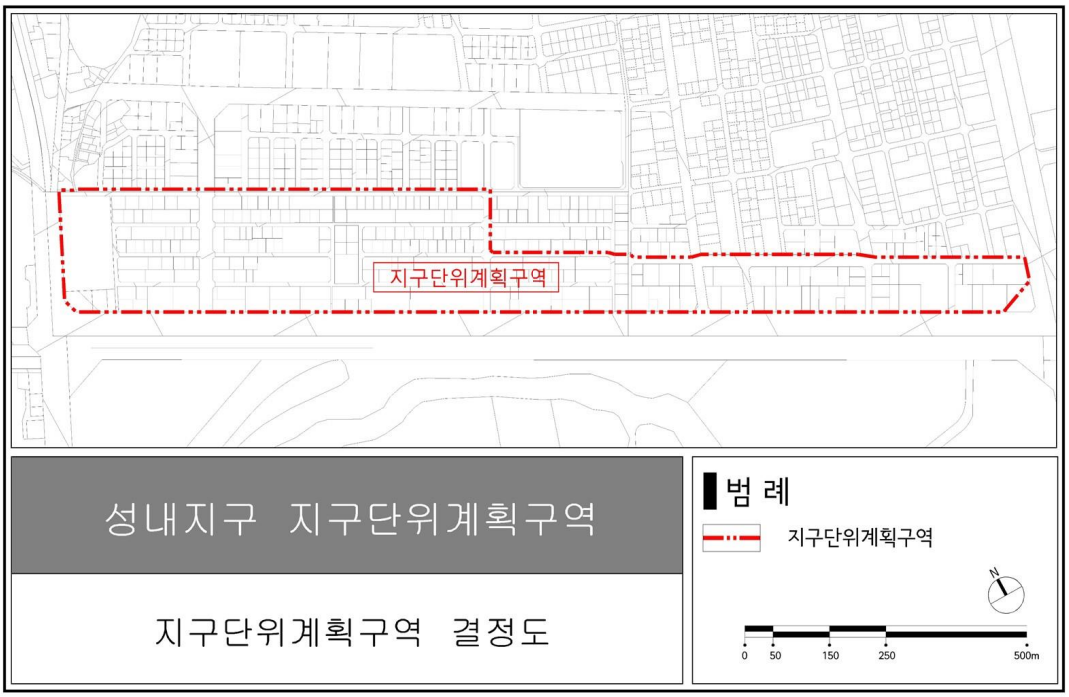

299.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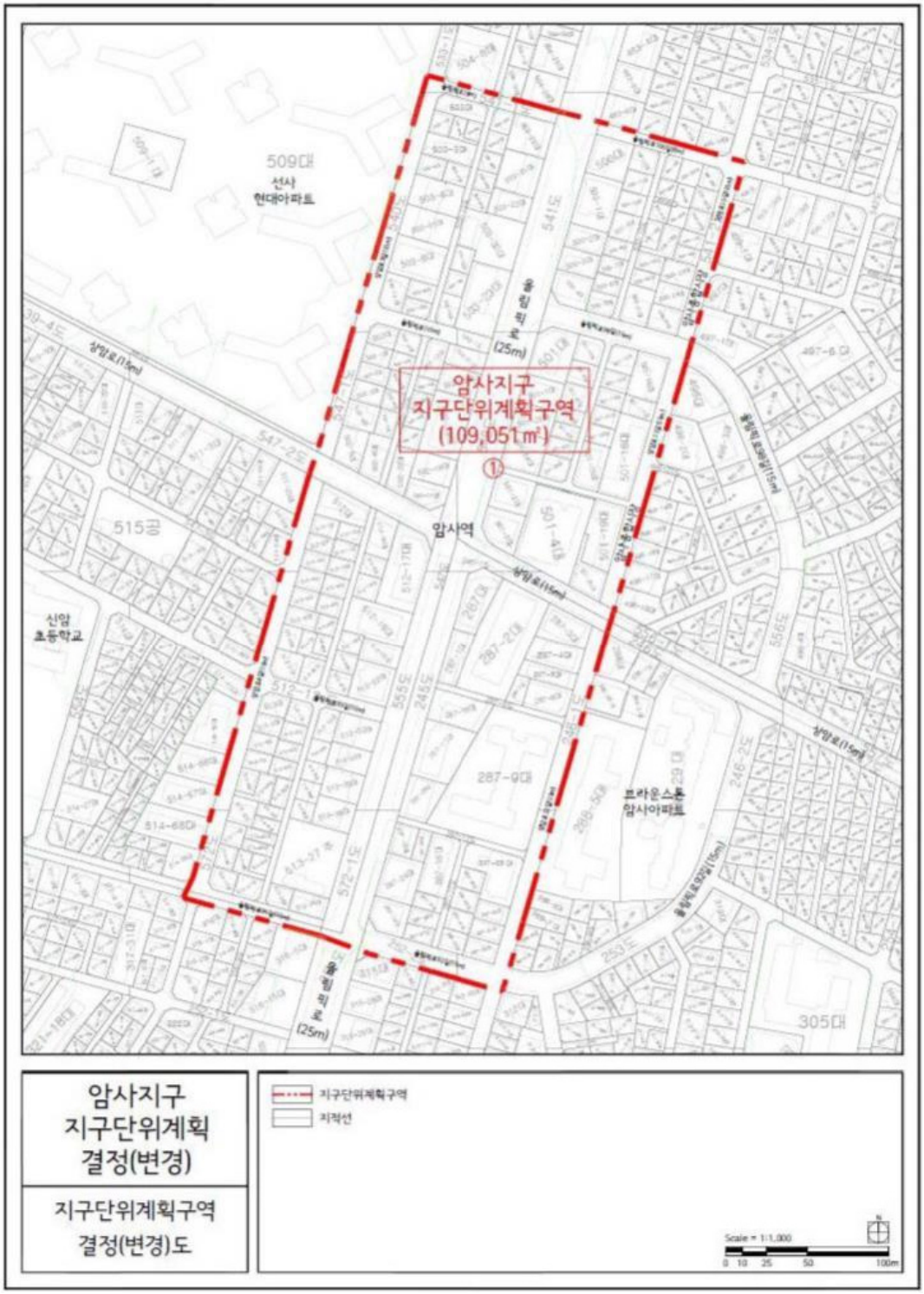

300.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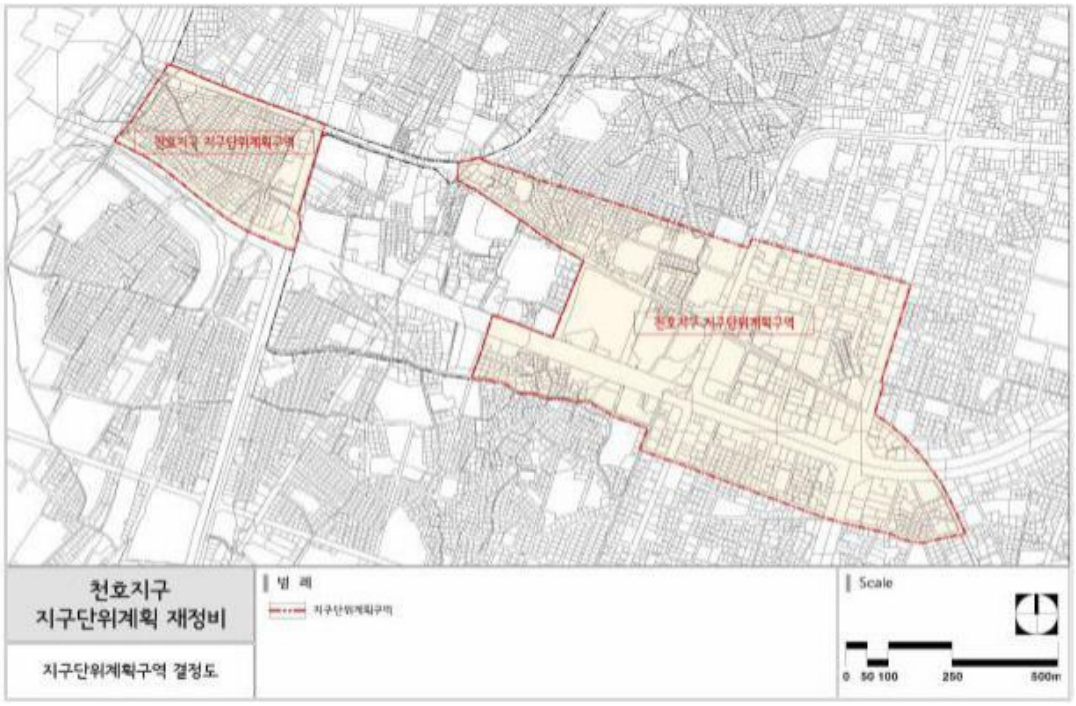

301. 고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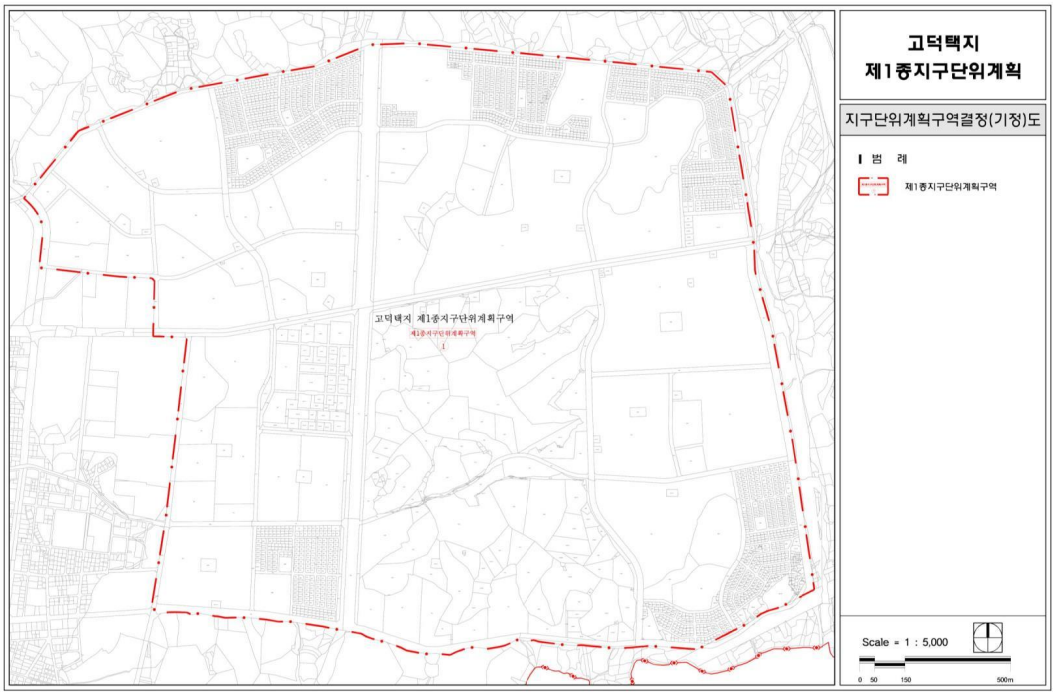

302. 굽은다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303. 강일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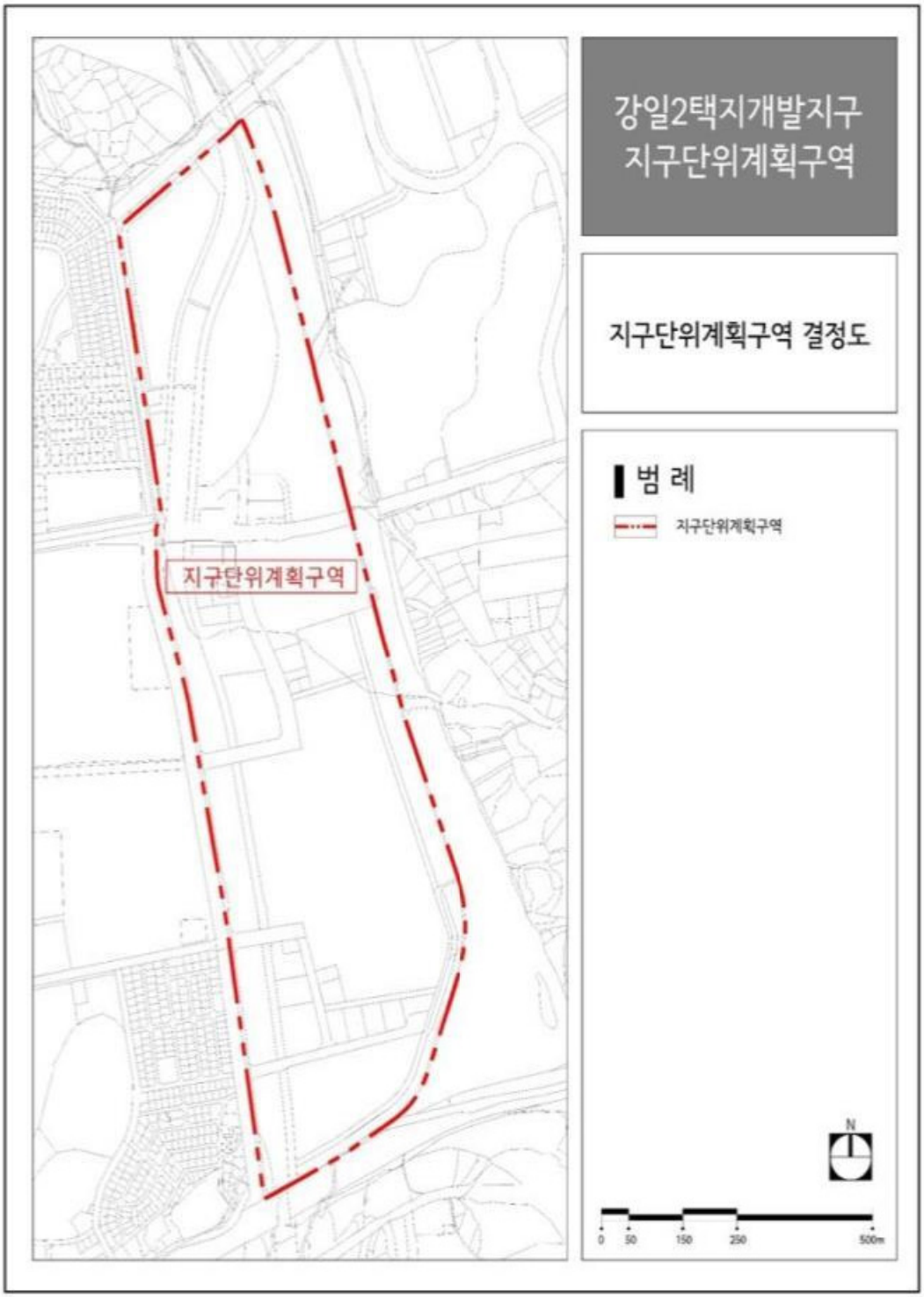

304. 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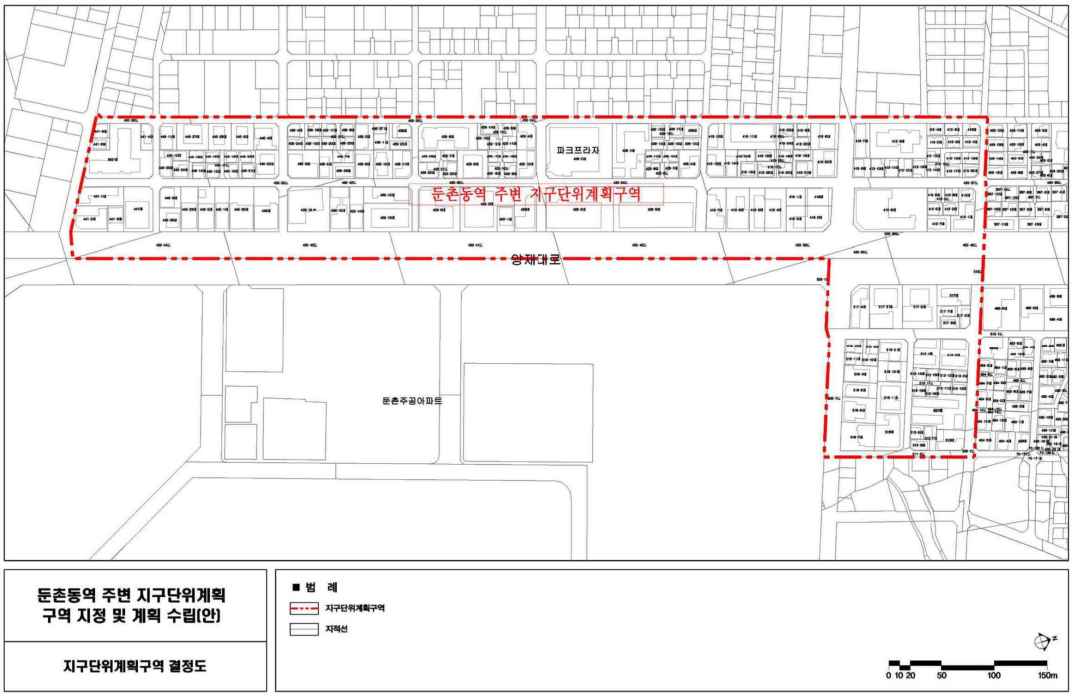

305.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306.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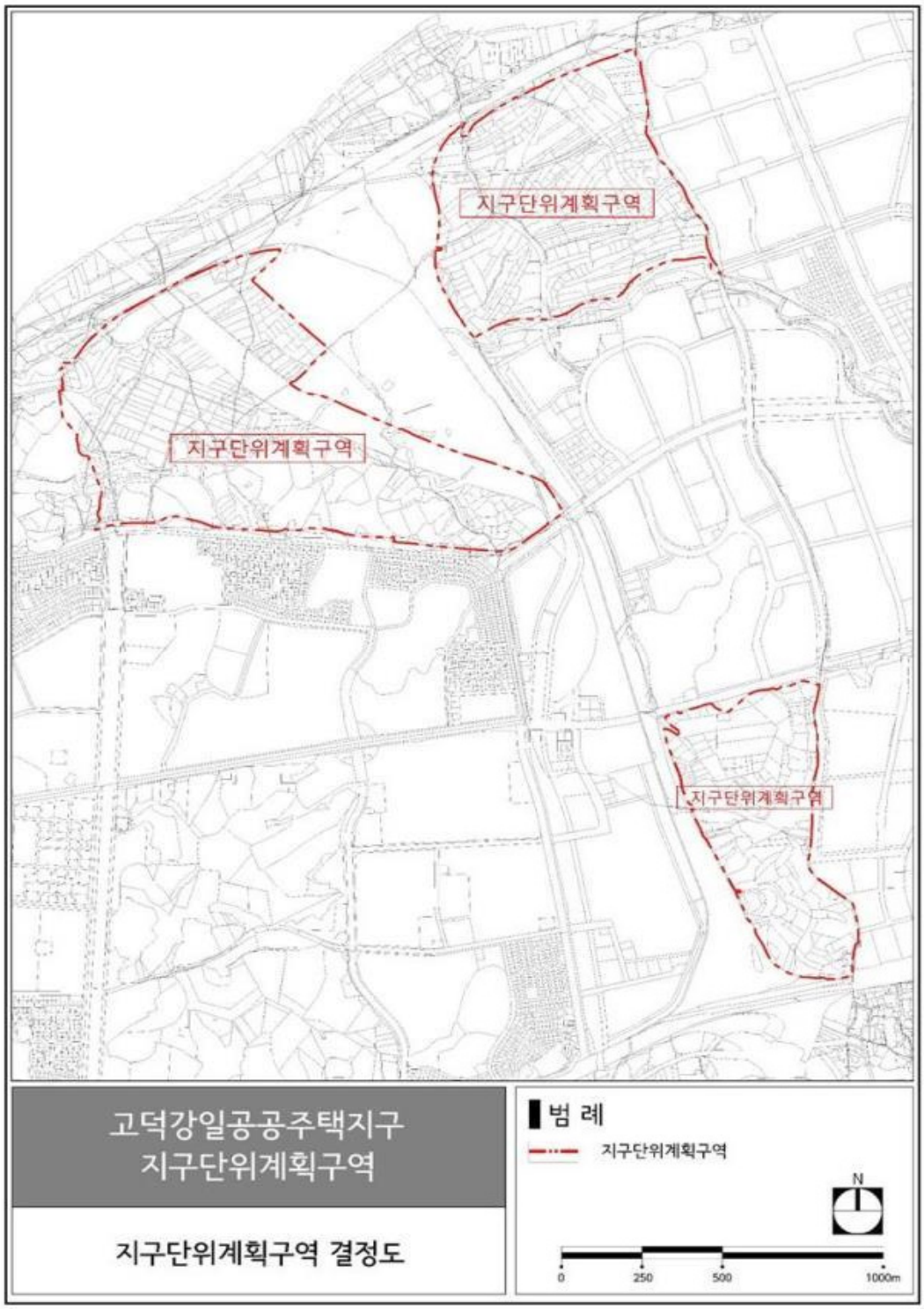

307. 강일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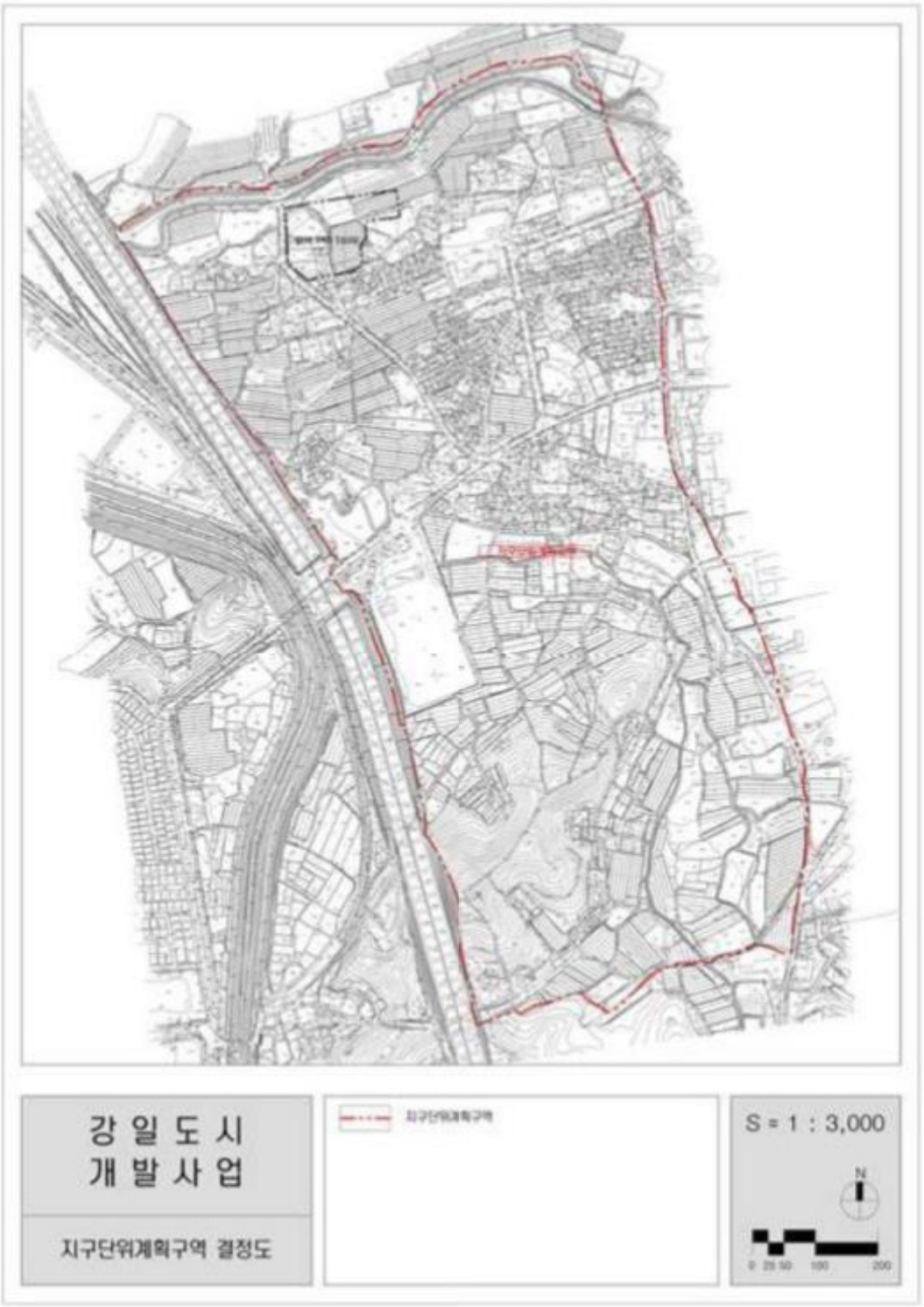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93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 성내동 19-1번지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가칭)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 외 130필지
   다. 면 적 : 21,612.9㎡
2. 권리산정기준일 : 2021. 2. 19.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고자 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02-2133-8318) 또는 강동구 도시계획과(☎02-3425-8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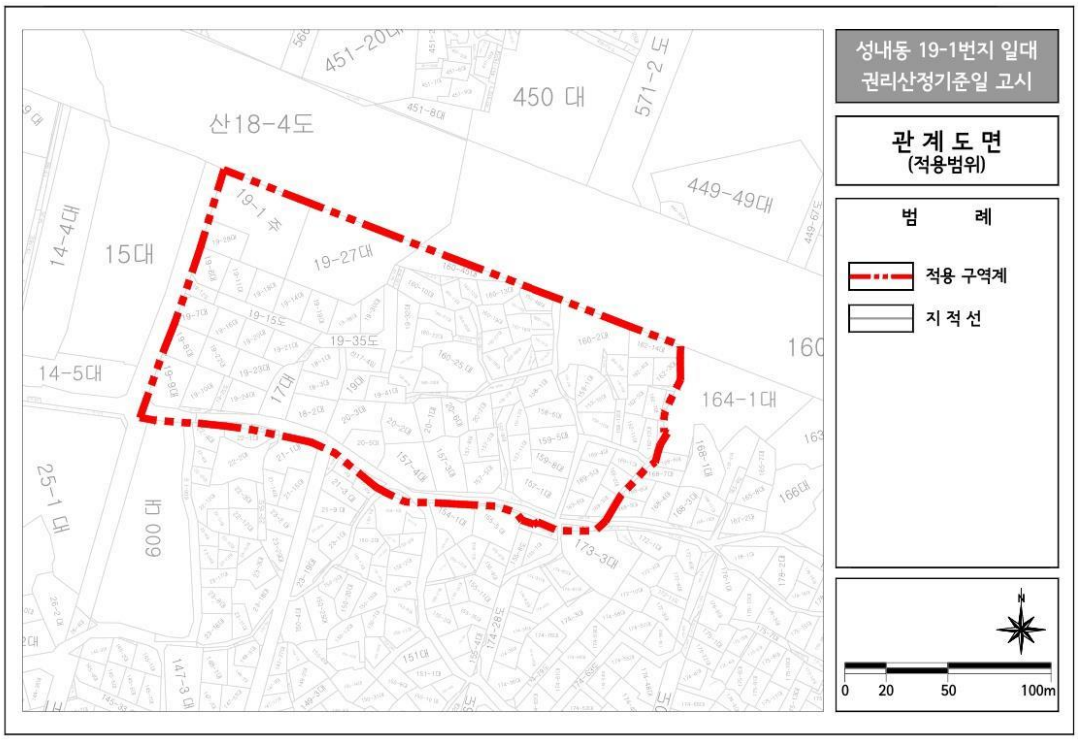
성내동 19-1번지 일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관 계 도 면
(적용범위)
범 례
적용 구역계
지 적 선
0 20 50 100m
산18-4도
450 대
451-20대
571-2 도
449-49대
14-4대
15대
19-1 주
19-27대
19-35도
14-5대
17대
164-1대
25-1 대
600 대
173-3대
166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94호

마포로1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로 최초 재개발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146호(1980.5.19.)로 도심지역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80호(2008.8.1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0-13호(2010.4.1.)로 정비구역변경 지정된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변경)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마포로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마포구 공덕동 255-1번지 일대	249,777.4	증) 97.2	249,874.6	건설부 고시 제345호 ('79.9.21)

- 정비구역 변경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마포로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재개발구역 면적 변경 (97.2㎡증가) 249,777.4㎡ → 249,874.6㎡	· 마포로1구역 28·29지구내 지적분할 ('11.7)에 따른 면적 증가

나. 지구지정(변경) 조서

구분	지구명	위 치	시행면적(㎡)	구 분		비고
				획지(㎡)	정비기반시설(㎡)	
기정	마포로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8·29지구	마포구 마포동 195-1번지 일대	3,749.1	2,878.0	871.1	-
변경	마포로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8·29지구	마포구 마포동 195-1번지 일대	3,678.2	2,975.2	703.0	-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3,749.1	감) 70.9	3,678.2	100.0	-
정비기반시설	소 계	871.1	감) 168.1	703.0	19.1	-
	도로	256.8	감) 180.4	76.4	2.1	-
	주차장	95.2	-	95.2	2.6	소로1-9 (29.6㎡)일부포함
	공공공지	519.1	증) 12.3	531.4	14.4	-
택지(획지)	소 계	2,878.0	증) 97.2	2,975.2	80.9	-
	대 지	2,878.0	증) 97.2	2,975.2	80.9	-

나.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계	3,749.1	감) 70.9	3,678.2	100.0	-
일반상업지역	3,749.1	감) 70.9	3,678.2	100.0	-

※ 금회 대상지내 편입필지(292-112도, 292-113도)의 면적조정(지적분할)에 따른 사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사항 없음

다. 정비기반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1)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사용형태	연장(m)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2	10	집산도로	일반도로	97	도화동 292-21번지	도화동 543번지	-	건설부고시 345호(79.9.21)	-
기정	소로	1	9	10	국지도로	일반도로	189	도화동 179-3번지	도화동 179-1번지	-	건설부고시 146호(80.5.24)	-

※ 소로1-12내 마포동 183-1, 마포동 182, 마포동 185는 시행지구 내 편입(편입면적 183-1 : 5.9㎡, 182 : 0.2㎡, 185 : 70.3㎡)
※ ( )는 토지부담(도화동181-50) 95.2㎡중 29.6㎡에 해당하는 사항임

2)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도화2 주차장	주차장	도화동 181-47 일대	914.3	-	914.3 (65.6)	건설부고시 146호(80.5.24)	-

※ ( )는 제28 · 29지구 시행지구에 포함되는 면적임
※ ( )는 토지부담(도화동181-50) 95.2㎡중 65.6㎡에 해당하는 사항임

3)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	공공공지	공덕동255-6 일대	1,606.2	-	1,606.2 (531.4)	서울특별시고시 제315호 (19.9.19)	-

※ ( )는 제28 · 29지구 시행지구에 포함되는 면적임

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계획

1)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사업 지구	시행지구 면적 (㎡)	대지 면적 (㎡)	정비기반 시설면적 (㎡)	계획기반 시설내 기존공공 용지 (㎡)	대지내 폐지 국공유지 (㎡)	추가부담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	순부담률(%)			비고
							기반시설 (토지)	추가부담 (㎡,건축물)	합계	
제28 · 29 지구	3,678.2	2,975.2	703.0	-	56.5	-	17.8	-	17.8	기결정 부담률 16.3%

2) 정비기반시설 설치(확보)계획

▶ 정비기반시설 부담량 : 703.0㎡ (17.8%)
①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부담면적 : 703.0㎡
- 기결정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 부담 : 76.4㎡
- 기결정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일부 부담 : 95.2㎡
- 기결정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일부 부담 : 531.4㎡
② 획지내 국공유지 무상양도 : 56.5㎡
- 마포구 소관 : 41.1㎡
- 서울시 소관 : 15.4㎡

구 분		면적(㎡)			비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871.1	감) 168.1	703.0	100.0	-
토지	도로	256.8	감) 180.4	76.4	10.9	-
	주차장	95.2	-	95.2	13.5	소로1-9(29.6㎡) 일부포함
	공공공지	519.1	증) 12.3	531.4	75.6	-

마.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지상/지하)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마포로1 구역 제28·29지구	3,749.1	-	2,878.0	마포동 195-1번지 일대	업무	50이하	800이하	90이하	20/5	-
변경	마포로1 구역 제28·29지구	3,678.2	-	2,975.2	마포동 195-1번지 일대	업무 (오피스텔)	60이하	800이하	110이하	20/7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규모 : 전용면적 85㎡이하
· 건설비율

구분		호	비율(%)
합계		294	-
분양	소계	254	100.0
	A type (전용 48.13㎡)	171	67.4
	B type (전용 70.18㎡)	16	6.3
	C type (전용 41.84㎡)	8	3.1
	D type (전용 56.18㎡)	17	6.7
	E type (전용 74.24㎡)	9	3.5
	F type (전용 72.38㎡)	8	3.1
	G type (전용 25.81㎡)	25	9.9
임대	소계	40	100.0
	A type (전용 48.13㎡)	7	17.5
	D type (전용 56.18㎡)	1	2.5
	E type (전용 74.24㎡)	1	2.5
	G type (전용 25.81㎡)	31	77.5

용적률 계획

용적률	· ① + ② + ③ = 800.0%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400%(`08.08 기결정 고시 적용)
② 허용용적률	·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준수 : 200%

구분	인센티브 대상	완화량
친환경개발	녹색건축물인증,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신재생에너지	100%(1등급)
보행가로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	50%
	무장애도시조성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30%
도시경제활성화	창업지원센터 등 도입	21.5%
합계		201.5%

③ 상한용적률	· 정비기반시설 제공 : 213.4%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 600%×(1.3×1.26×0.2172) = 213.4% ▶ 200% 적용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마포대로변 3m

※ 임대 오피스텔 :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업무시설(오피스텔) 중 일부(40호)를 임대 오피스텔로 공급

바.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토지 등 소유자	오피스텔 294호 - 오피스텔(분양) : 254호, 오피스텔(임대) : 40호

사. 임대주택(오피스텔) 및 소형주택(오피스텔)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동)	연면적(㎡)	세대수(호)	세대규모(전용)	비 고
마포구 마포동 195-1번지 일대	2,975.2	-	1,893.4	40	85㎡이하	임대

※ 임대 오피스텔 :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업무시설(오피스텔) 중 일부(40호)를 임대 오피스텔로 공급

3.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마포로1구역 제28 · 29지구에 대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지정하는 사항임

4.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정비구역 결정도 및 정비계획결정도

○ 기타 자세한 내용을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 참조

5.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02-2133-4636)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02-33153-936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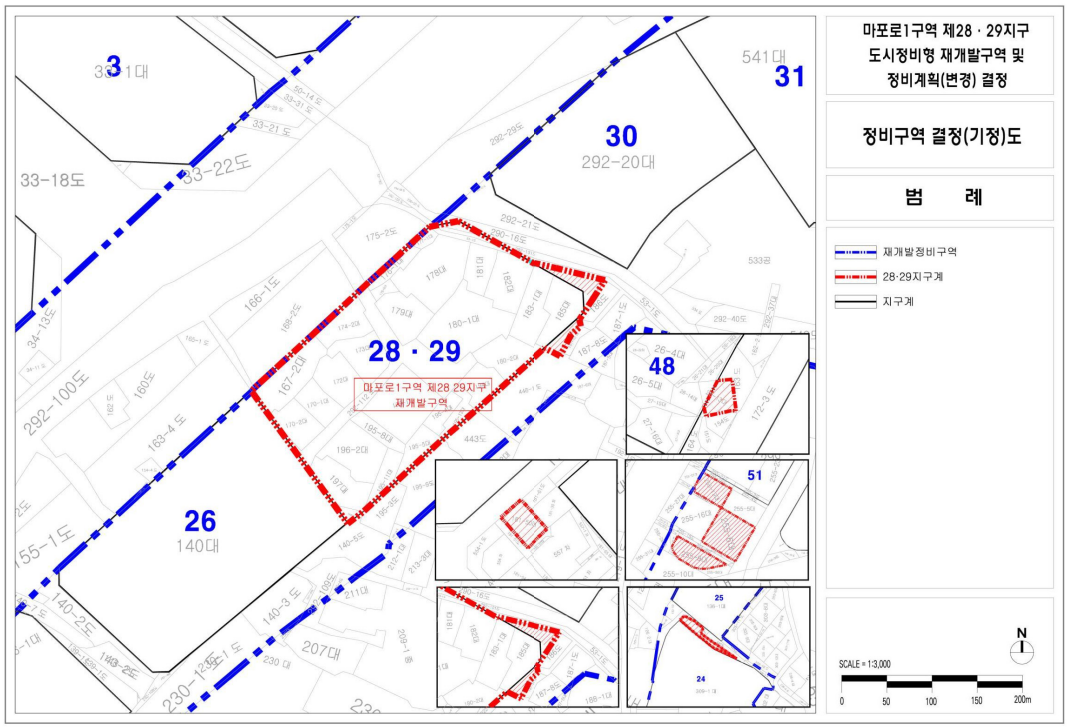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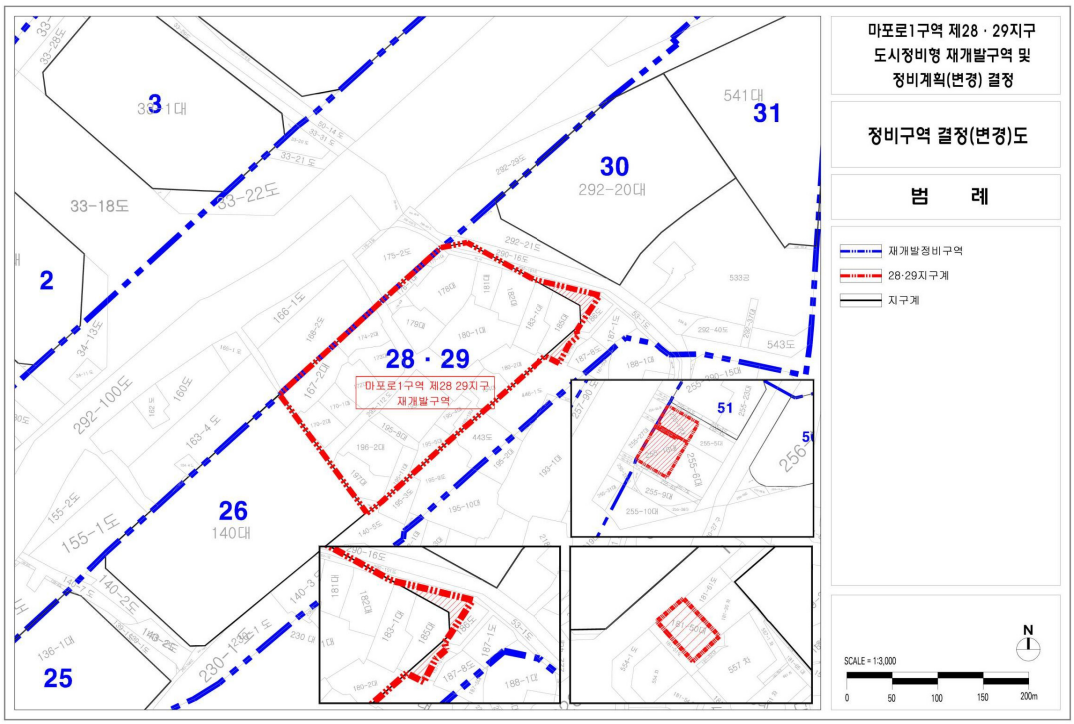

▌용도지역 · 용도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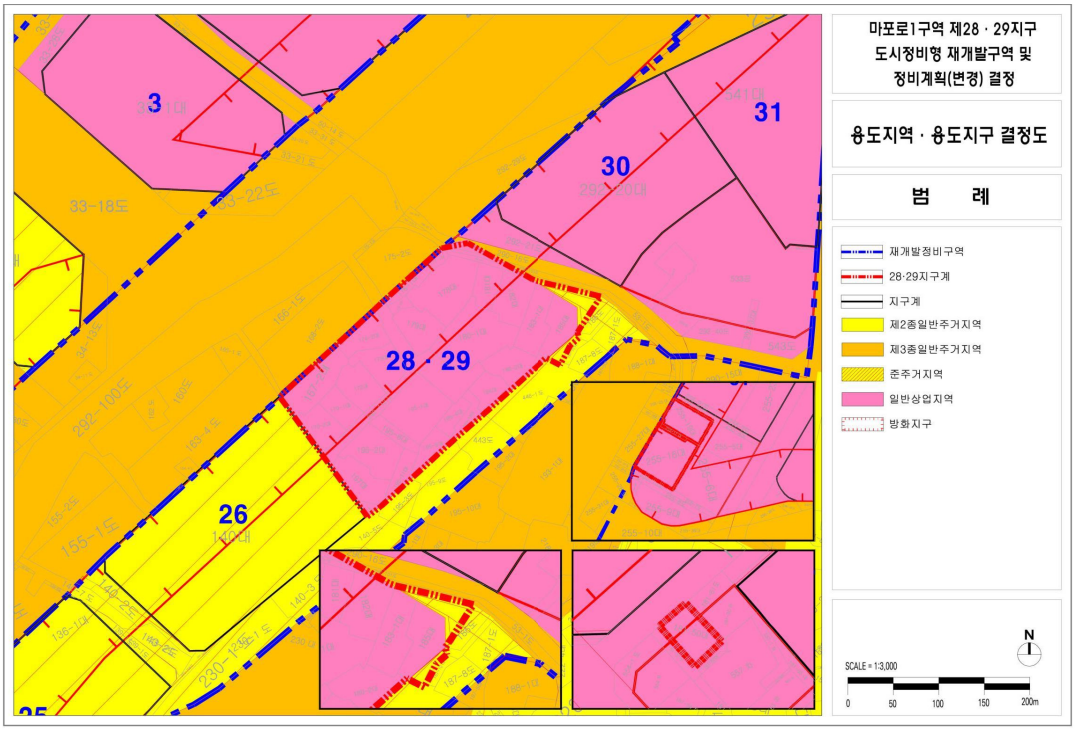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 · 군계획시설 결정도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결정도



▌건축물의 건축선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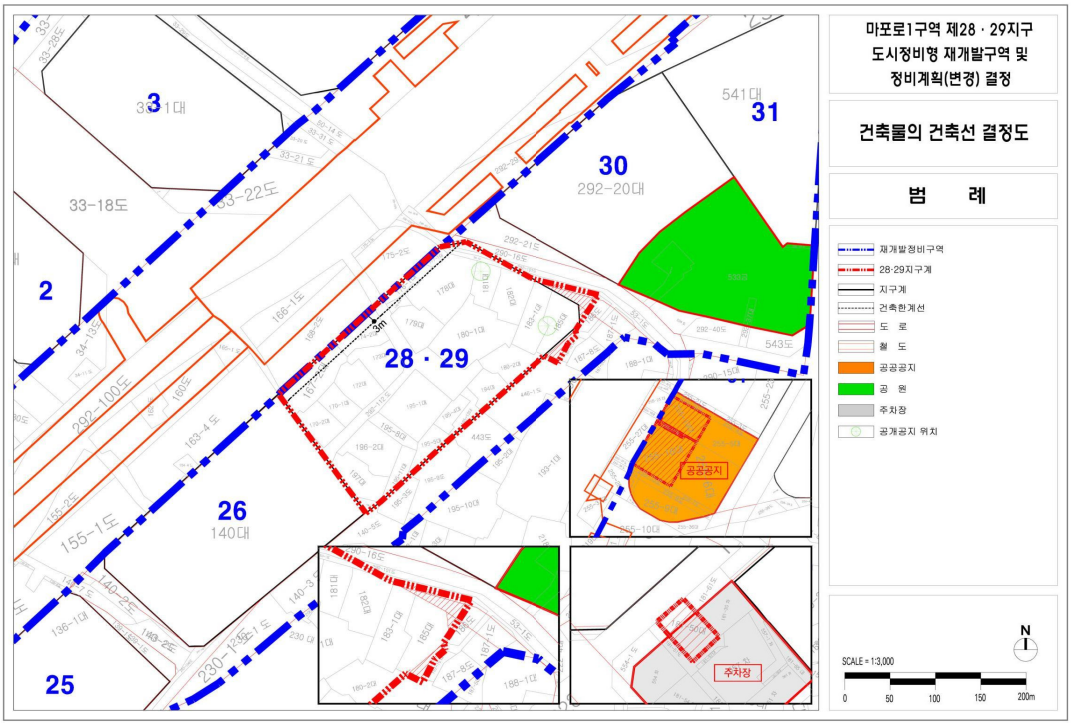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375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직인등록사유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분임징수관 지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2.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소관부서	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사용개시일	비고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분임징수관	훈민정음체 2㎝×2㎝		2021. 2.2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수입금출납원	훈민정음체 1.8㎝×1.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379호

시유재산 변상금 납부 독촉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의거하여 부과한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체납에 대한 납부독촉고지를 납부 대상자에게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시유재산 변상금 납부 독촉 공고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 채헌석 등 2명 <붙임>
4. 공고기간 : 2021. 2. 18. ~ 2021. 3. 11. (15일간)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에서 변상금 고지(가상계좌)를 발부받아 농협 및 시중은행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의제기 안내 : 상기 납부대상자께서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및 공매처분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의견제출 기관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강북구 한천로 935)
7. 의견제출 기한 : 2021. 3. 11. 까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02-3146-3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시유재산 체납 및 변상금 내역

연 번	시유재산 무단점유 정보				등기 송달주소	발송 상태
	시유재산 소재지	점유자 성명	점유기간	변상금 (연체금 포함)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0-22 제가동호	채헌석	2015.02.15. ~2015.12.31.	6,197,220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658 102동 304호	수취인 주소불명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0-22 제가동호	채헌석	2016.01.01. ~2016.12.31.	21,999,210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658 102동 304호	수취인 주소불명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0-22 제가동호	채헌석	2017.01.01. ~2017.12.31.	20,215,410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658 102동 304호	수취인 주소불명
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0-22 제가동호	채헌석	2018.01.01. ~2018.12.31.	17,593,440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658 102동 304호	수취인 주소불명
5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0-22 제가동호	채헌석	2019.01.01. ~2019.01.01.	44,260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658 102동 304호	수취인 주소불명
6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0-22 제나동호	채상희	2015.02.15. ~2015.12.31.	1,180,620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1571번길 6 (마전동)	수취인 주소불명
7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0-22 제나동호	채상희	2016.01.01. ~2016.12.31.	7,773,580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1571번길 6 (마전동)	수취인 주소불명
8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0-22 제나동호	채상희	2017.01.01. ~2017.12.31.	7,143,250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1571번길 6 (마전동)	수취인 주소불명
9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0-22 제나동호	채상희	2018.01.01. ~2018.12.31.	6,216,760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1571번길 6 (마전동)	수취인 주소불명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0-22 제나동호	채상희	2019.01.01. ~2019.12.31.	5,709,560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1571번길 6 (마전동)	수취인 주소불명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0-22 제가동호	㈜미준	2019.01.02. ~2019.12.31	15,148,100	노원구 상계로23다길 13-8(노원아이파크 상가)	수취인 주소불명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384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전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일시: 2020-12-10 16:17 위반장소: 동일로(청량리-잠실) 내용: 서울98바7218 (트레일러5축, 폭초과(실측값:2.78m, 초과값:0.28m), 적재물:기중기)	처분일: 2021. 1. 25. 과태료: 30만원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21. 3. 20.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며, 또한 납부 전용(가상)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납부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해당 행정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이의제기 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2210-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385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제117조제1항,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정홍길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일시: 2020-09-23 05:58 위반장소: 왕십리로(잠실-홍은동) 내용: 서울07가8266 (크레인5축, 폭초과(실측값2.78m, 초과값:0.28m), 적재물:기중기)	처분일: 2020. 10. 26 과태료: 30만원 최초납기일: 2020.12.31 독촉일: 2021. 1. 15.
박창엽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오류동길	일시: 2020-09-08 15:34 위반장소: 북부간선로(선단-전남진도) 내용: 전북98사3477 (트레일러6축, 폭초과(실측값2.78m, 초과값:0.28m), 적재물:어초)	처분일: 2020. 10. 26 과태료: 30만원 최초납기일: 2020.12.31 독촉일: 2021. 1. 15.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21. 3. 20.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관허사업,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2210-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390호

2020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두 차례 사전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명: 2020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대 상

연번	상호	영업표지	등록번호	부과예정금액 자진납부금액	본사주소	반송사유
1	더가루	더가루	20190719	1,000,000원 800,000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23길 15 제1호 601호(가락동)	폐문 부재
2	카츠젠	카츠젠	20170903	1,000,000원 800,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4길 99 205호 (능동)	폐문 부재
3	(주)네일닥터	네일닥터 (Nail Doctor)	20150736	1,000,000원 800,000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70길 11 2층	수취인 불명
4	(주)모셀	모셀두피항노화센터	20170315	1,000,000원 800,000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43 코오롱싸이언스밸리1차508호	수취인 불명
5	(주)바로쿡닷컴	바로쿡스파게티스토리	20171297	1,000,000원 800,000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A동 1205호(양재동, 삼호물산빌딩)	이사감
6	(주)성운에프씨	명동칼국수	20150682	1,000,000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1길 31 아세아빌딩 3층	주소 불분명

연번	상호	영업표지	등록번호	부과예정금액 자진납부금액	본사주소	반송사유
				800,000원		
7	(주)슈슈코스메틱	슈슈앤쎄씨	20181024	1,000,000원 800,000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50 한남동, 신동빌딩 6층	폐문 부재
8	(주)씨에프	브릭버거	20180604	1,000,000원 800,000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5길 16 101호(논현동,아트빌)	수취인 불명
9	(주)카페에이전시	앤디스커피 (ANDYS COFFEE)	20181073	1,000,000원 800,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41 우동 2층 오르세(육영재단어린이회관)	수취인 불명
10	㈜프로그 에프앤비	한양껍데기	20190739	1,000,000원 800,000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11길 28 1,2,3층	폐문 부재
11	마초F&B	빨간마초닭발	20171060	1,000,000원 800,000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B1층 c-22호(서초동, 로이어즈타워)	이사감
12	엘지이홀딩스(주)	아모르데헬렌	20170401	1,000,000원 800,000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50 1층	수취인 불명

4. 기 간 : 2021. 2. 18. ~ 3. 4.(14일간)

5. 내 용

가. 위 공시송달 대상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기재시항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규정에 해당할 경우, 변경된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수차례 걸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이행촉구 등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음.

나. 아울러, 위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 사전납부통지 및 의견제출 공문을 두 차례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여 본 공시송달을 시행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1. 2. 18. ~ 3. 4.(14일간)

나.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별첨 '의견제출서' 서식 참고), 의견제출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제출방법 : 이메일 khh1212@seoul.go.kr / 팩스 02-768-8852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02-2133-51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체납 시 불이익 】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60개월 한도)이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감치

<붙임 : 의견제출서>

예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1. 제출자 일반현황

○ 상 호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법인사업자일 경우)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일 경우) :

○ 주 소 : (연락처 : 전화 , 핸드폰)

2. 과태료 부과통지 금액 : 금 원(₩)

3. 위반행위 내용

4.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

(별지로 작성 가능)

근거자료 :

상기와 같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 .

대표자 (회사명) (직책)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중

<예시| 근거자료>

확 인 서

☞ 2019. 12. 31. 당시 운영 중인
가맹본부 ( )의
매출총액은 ( )원,
영업표지명 ( )의 가맹점수는 ( )개,
직영점수는 ( )개 임을 확인합니다.

(※ 직영점과 가맹점수가 없을때는 반드시 0개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 첨부서류 1. 가맹점 리스트 (O, X)
2. 직영점 리스트 (O, X)
3. 2019.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확정신고서 (O, X)
4. (법인)인감증명서 (O, X)

20 년 월 일

가맹본부(상호) :
영업표지(브랜드)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연락처(휴대폰번호) :
대표이사 : (인)

※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후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서울특별시장 귀중

■ 첨부1 가맹점 목록

번호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계약체결일
1					
2					
3					
4					
5					
……					

■ 첨부2 직영점 목록

번호	직영점명	주소	연락처	영업개시일	비고
1					
2					
3					
4					
5					
……					

■ 첨부3 2019.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확정증명서

■ 첨부4 (법인)인감증명서

과태료 납부관련 유의사항 안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감경규정 등이 적용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맹사업법 적용배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다만,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억원(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함)]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 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에는 2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통지서와 함께 송부한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의견제출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나면 감경되지 않은 고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 (감경고지서 수납확인 후 송부)
-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되지 않습니다.

○ 자진납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 고지됩니다.

- 지정된 기일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과태료 부과고지 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 및 중가산금 매월 1.2%로 60개월까지 72%가 가산부과됩니다.

○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관허사업의 제한(제52조) :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제공 등(제53조)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신용정보업자 등의 요청에 의해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제54조) :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30일의 범위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궁금하신 점은 서울시청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412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폐업 사실이 확인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1. 2.18.~2021. 3. 4.(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인창에프앤씨 (한주형)	토목건축공사업 01-04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15가길 2 (도림동)	사업자등록(113-81-89839) 폐업 - 폐업일자 : 2020. 9.30.	등록말소 (2021. 3. 5.)	법 제83조 제12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26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419호

2021년도 제2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심의일시: 2021. 2. 4.(목) ~ 2. 8.(월)
나. 심의방법: 서면심의(사유: 코로나19)
다. 심의대상: 일반안건 총 7건 8작품
라. 심의결과: 승인 6작품, 부결 2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Gud/Committee_guide_list.jsp#list/1) 홈페이지 내 '2021년 제2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결과'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 고
				승인	부결	
1	은평구 응암동 8번지 일대 힐스테이트 녹번역	조각	A sweet illusion-사랑을 꿈꾸다		o	
2-1	송파구 거여동 204-123번지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조각	Soul Sprout	o		
2-2		조각	숲에 이는 바람처럼		o	
3	강동구 고덕동 98-7일원 도드람 통합사옥	조각	Fifth Avenue	o		
4	강남구 논현동 211-21외 4필지 논현동 펜트힐	조각	Urban Stream (도시의 흐름)	o		
5	강남구 일원동 611-1번지 일대 디에이치 자이 개포	조각	Forest of Flowers	o		
6	강남구 테헤란로 137 코레이트 타워	조각	Body	o		
7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Y22 개발사업	조각	하루하루 -13월 1일	o		

※ 승인된 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421호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의무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3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2월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명: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의무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등 공시송달
2. 근 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대 상

연번	상호	영업표지	성명	주소	체납금액(원)	위반연도	반송사유
1	(주)어웨이크플러스	캐리키즈카페	박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 11층1101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5차)	1,293,600	2019년도	폐문부재
2	본다빈치(주)	리틀다빈치	박상흥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1길 18-7 (삼성동)	1,293,600	2019년도	이사불명
3	(주)인더키친코리아	치킨인더키친	이용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9길 4-42 2층 (서교동)	1,293,600	2019년도	폐문부재
4	(주)오케이푸드파트너스	경석이네 쌀통닭분식	조경석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21번길 114 1층 (가좌동)	1,705,600	2019년도	폐문부재
5	(주)와츠	와츠	이용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4길 5-63층 (가락동)	1,279,200	2019년도	이사불명
6	(주)면역공방	면역공방	김원중, 문준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비-804호 (문정동, 엠스테이트)	1,279,200	2019년도	이사불명
7	㈜수상한사람들	수상한포차	이준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337 나동 2층 201호 (대치동, 송도빌딩)	1,705,600	2019년도	이사불명
8	(주)대만친구	대만락 카스텔라	심성욱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280-13층 (상도1동, 태현빌딩)	1,066,000	2019년도	폐문부재
9	㈜더블유와이파트너스	청춘포차	가만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205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12차)	1,705,600	2019년도	수취인불명
10	비전워크코리아(주)	위트니영어	김영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5 1004호, 1005호(가산동, 백상스타타워2차)	551,000	2016년도	수취인불명

4. 기　간 : 2021. 2. 18. ~ 3. 5.(15일간)

5. 내　용

가. 위 공시송달 대상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기재시항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규정에 해당할 경우, 변경된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인 경우 180) 이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수차례 걸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이행촉구 등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음.

나. 아울러, 위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 사전납부통지 및 의견제출 공문을 두 차례 발송 및 과태료 부과 통지서, 체납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여 본 공시송달을 시행함.

다. 위 공고기간까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에서 체납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라. 문의사항: 체납금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 ☎ 02-2133-5154)

【 과태료 체납 시 불이익 】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60개월 한도)이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감치

과태료 납부관련 유의사항 안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감경규정 등이 적용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맹사업법 적용배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다만,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억원(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함.)]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 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에는 2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통지서와 함께 송부한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의견제출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나면 감경되지 않은 고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 (감경고지서 수납확인 후 송부)
-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되지 않습니다.

○ 자진납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 고지됩니다.

- 지정된 기일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과태료 부과고지 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 및 중가산금 매월 1.2%로 60개월까지 72%가 가산부과됩니다.

○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관허사업의 제한(제52조):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제공 등(제53조)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신용정보업자 등의 요청에 의해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제54조) :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30일의 범위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궁금하신 점은 서울시청 공정경제담당관(02-2133-5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4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 목 :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보
2. 공고기간 : 2021.2.18. ~ 2021.3.4.(15일간)
3.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이*순 포함 22명 (내역서 별첨)
5.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1팀(☎ 02-2133-3491, 3468, 3492)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 내역서 1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공시송달 내역서(2021년 2월)

연번	과세번호	세목명	주민/법인명	발송일자	주소	공시송달사유	공시송달일자	세액(원)
1	590-140003-202002-2-670-500001	법인지방소득세	이*순	2021.02.0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41길 9 ***호(동작동, 런던빌)	수취인불명	2021.02.18.	11,313,990
2	590-140003-202002-2-670-500002	법인지방소득세	이*순	2021.02.0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41길 9 ***호(동작동, 런던빌)	수취인불명	2021.02.18.	18,227,430
3	590-140003-202002-2-670-500003	법인지방소득세	이*순	2021.02.0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41길 9 ***호(동작동, 런던빌)	수취인불명	2021.02.18.	3,683,800
4	590-140004-202005-2-670-500001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이*순	2021.02.0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41길 9 ***호(동작동, 런던빌)	수취인불명	2021.02.18.	20,428,580
5	590-140004-202005-2-670-500002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이*순	2021.02.0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41길 9 ***호(동작동, 런던빌)	수취인불명	2021.02.18.	29,366,730
6	680-140003-202007-2-650-100060	법인지방소득세	이*준	2021.02.0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109번길 17 ***호	폐문부재	2021.02.18.	48,376,500
7	560-140003-202006-2-540-100113	법인지방소득세	이*은	2021.02.08.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77번길 19-45 ****호(상동)	폐문부재	2021.02.18.	20,971,370
8	140-104003-201808-1-665-000124	주민세(법인균등분)	정*부	2021.02.02.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81길	폐문부재	2021.02.18	257,500
9	140-104003-201908-1-665-000114	주민세(법인균등분)	정*부	2021.02.02.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81길	폐문부재	2021.02.18	64,370
10	140-140003-202007-2-665-500001	법인지방소득세	정*부	2021.02.02.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81길	폐문부재	2021.02.18	19,524,900
11	140-140004-201801-2-665-100018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부	2021.02.02.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81길	폐문부재	2021.02.18	181,040
12	140-140004-201801-2-665-100019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부	2021.02.02.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81길	폐문부재	2021.02.18	9,190
13	140-140004-201802-2-665-100013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부	2021.02.02.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81길	폐문부재	2021.02.18	153,240
14	140-140004-201803-2-665-100008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부	2021.02.02.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81길	폐문부재	2021.02.18	205,980
15	140-140004-201804-2-665-100012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부	2021.02.02.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81길	폐문부재	2021.02.18	204,270
16	140-140004-201806-2-665-100005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부	2021.02.02.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81길	폐문부재	2021.02.18	121,480
17	710-101501-202009-2-642-000002	취득세(부동산)	공*배	2021.02.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폐문부재	2021.02.18	7,501,720
18	710-101501-202009-2-642-000003	취득세(부동산)	공*배	2021.02.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폐문부재	2021.02.18	7,915,140
19	710-104003-202008-1-642-002501	주민세(법인균등분)	공*배	2021.02.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폐문부재	2021.02.18	32,830
20	710-106001-202009-2-642-200004	자동차세(자동차세)	공*배	2021.02.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폐문부재	2021.02.18	66,170
21	710-140004-202003-2-642-100287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공*배	2021.02.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폐문부재	2021.02.18	55,010
22	710-140004-202006-2-642-100276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공*배	2021.02.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폐문부재	2021.02.18	98,690
23	710-140004-202006-2-642-100277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공*배	2021.02.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폐문부재	2021.02.18	9,480
24	710-140004-202008-2-642-100095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공*배	2021.02.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폐문부재	2021.02.18	100,390
25	710-140004-202010-2-642-100101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공*배	2021.02.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폐문부재	2021.02.18	10,930
26	710-101501-202009-2-642-000002	취득세(부동산)	김*숙	2021.02.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폐문부재	2021.02.18	3,680,140

연번	과세번호	세목명	주민/법인명	발송일자	주소	공시송달사유	공시송달일자	세액(원)
27	710-101501-202009-2-642-000003	취득세(부동산)	김*숙	2021.02.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폐문부재	2021.02.18	3,882,960
28	710-104003-202008-1-642-002501	주민세(법인균등분)	김*숙	2021.02.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폐문부재	2021.02.18	16,080
29	710-106001-202009-2-642-200004	자동차세(자동차세)	김*숙	2021.02.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폐문부재	2021.02.18	32,410
30	710-140004-202003-2-642-100287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김*숙	2021.02.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폐문부재	2021.02.18	26,970
31	710-140004-202006-2-642-100276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김*숙	2021.02.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폐문부재	2021.02.18	48,410
32	710-140004-202006-2-642-100277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김*숙	2021.02.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폐문부재	2021.02.18	4,630
33	710-140004-202008-2-642-100095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김*숙	2021.02.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폐문부재	2021.02.18	49,240
34	710-140004-202010-2-642-100101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김*숙	2021.02.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폐문부재	2021.02.18	5,350
35	680-104003-201908-1-650-001772	주민세(법인균등분)	황*배	2021.02.02.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2길	폐문부재	2021.02.18	64,370
36	680-140003-201906-2-650-100108	법인지방소득세	황*배	2021.02.02.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2길	폐문부재	2021.02.18	7,644,740
37	680-140003-202007-2-650-100035	법인지방소득세	황*배	2021.02.02.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2길	폐문부재	2021.02.18	32,419,960
38	680-140004-202001-2-650-100178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황*배	2021.02.02.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2길	폐문부재	2021.02.18	171,370
39	680-140003-202006-2-610-100012	법인지방소득세	김*일	2021.02.0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6길	폐문부재	2021.02.18	19,662,220
40	230-140003-202006-2-536-100013	법인지방소득세	조*식	2021.02.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이사불명	2021.02.18	47,514,170
41	680-140003-202002-2-610-500007	법인지방소득세	길*용	2021.02.08.	인천광역시 남동구 모래내로24번길	폐문부재	2021.02.18	14,410,260
42	680-140004-201803-2-590-100193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이*석	2021.02.02.	인천광역시부평구광장로4번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178,670
43	680-140004-201804-2-590-100332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이*석	2021.02.02.	인천광역시부평구광장로4번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291,320
44	680-140003-201904-2-590-500001	법인지방소득세	이*석	2021.02.02.	인천광역시부평구광장로4번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49,659,970
45	680-140003-202002-2-565-500006	법인지방소득세	문*자	2021.02.02.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5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147,832,600
46	680-140003-202006-2-590-100037	법인지방소득세	박*해	2021.02.02.	경기도오산시오산로160번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21,599,030
47	680-140003-202006-2-590-100037	법인지방소득세	김*종	2021.02.0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안길 4*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10,799,500
48	710-106001-201604-2-641-500001	자동차세 자동차	김*삼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132번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76,840
49	710-140004-201605-2-641-100027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김*삼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132번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534,160

연번	과세번호	세목명	주민/법인명	발송일자	주소	공시송달사유	공시송달일자	세액(원)
50	710-140003-201606-2-641-100040	법인지방소득세	김*삼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132번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1,789,890
51	710-104003-201608-1-641-000012	주민세 법인균등분	김*삼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132번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64,370
52	710-106001-201612-1-641-002597	자동차세 자동차	김*삼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132번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11,460
53	710-140004-201705-2-641-100028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김*삼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132번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84,190
54	710-140003-201706-2-641-100047	법인지방소득세	김*삼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132번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14,172,590
55	710-106001-201706-1-641-002569	자동차세 자동차	김*삼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132번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27,880
56	710-140004-201708-2-641-100010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김*삼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132번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713,820
57	710-140004-201708-2-641-100065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김*삼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132번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782,950
58	710-104003-201708-1-641-000159	주민세 법인균등분	김*삼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132번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64,370
59	710-140003-201804-2-999-100001	법인지방소득세	김*삼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132번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27,115,150
60	710-140004-201804-2-641-100023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김*삼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132번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61,630
61	710-106001-201806-1-641-000829	자동차세 자동차	김*삼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132번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27,880
62	710-140003-201903-2-641-500006	법인지방소득세	김*삼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132번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2,693,690
63	710-106001-201906-1-641-003792	자동차세 자동차	김*삼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132번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24,310
64	170-140003-201804-2-625-100001	법인지방소득세	김*호	2021.02.04.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안1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107,129,700
65	170-140003-201806-2-625-100030	법인지방소득세	김*호	2021.02.04.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안1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1,105,230
66	170-104003-201808-1-625-001177	주민세 법인균등분	김*호	2021.02.04.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안1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64,370

연번	과세번호	세목명	주민/법인명	발송일자	주소	공시송달사유	공시송달일자	세액(원)
67	650-140003-201701-2-530-100002	법인지방소득세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3,402,260
68	650-140003-201703-2-530-100020	법인지방소득세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8,871,020
69	650-140004-201803-2-530-500005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7,979,600
70	650-140004-201803-2-530-500006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12,066,860
71	650-140004-201803-2-530-500007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14,242,190
72	650-140004-201803-2-530-500008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2,199,510
73	650-140004-201803-2-530-500009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2,711,740
74	650-140004-201803-2-530-500010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11,522,200
75	650-140004-201803-2-530-500011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3,361,470
76	650-140004-201803-2-530-500012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3,519,700
77	650-140004-201803-2-530-500013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2,433,480
78	650-140004-201803-2-530-500014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6,493,620
79	650-140004-201803-2-530-500015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21,126,470
80	650-140004-201803-2-530-500016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5,308,770
81	650-140004-201803-2-530-500017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28,544,800
82	650-140004-201803-2-530-500018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1,923,720
83	650-140004-201803-2-530-500019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713,820

연번	과세번호	세목명	주민/법인명	발송일자	주소	공시송달사유	공시송달일자	세액(원)
84	650-140004-201803-2-530-500020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8,271,730
85	650-140004-201803-2-530-500021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6,608,870
86	650-140004-201803-2-530-500022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2,330,530
87	650-140004-201803-2-530-500023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26,041,410
88	650-140004-201803-2-530-500024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2,343,920
89	650-140004-201803-2-530-500025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3,080,670
90	650-140004-201803-2-530-500026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5,305,360
91	650-140004-201803-2-530-500027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4,918,980
92	650-140004-201803-2-530-500028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2,898,540
93	650-140004-201803-2-530-500029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9,533,100
94	650-140004-201803-2-530-500030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3,951,890
95	650-140004-201803-2-530-500031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6,141,880
96	650-140004-201803-2-530-500032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정*옥	2021.0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453,650
97	680-140003-201607-2-640-100477	법인지방소득세	최*선	2021.02.04.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12-*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1,125,122,920
98	680-140003-201703-2-640-100059	법인지방소득세	최*선	2021.02.04.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12-*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11,959,040
99	680-140003-201703-2-640-100060	법인지방소득세	최*선	2021.02.04.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12-*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11,234,520
100	680-140003-201803-2-640-100019	법인지방소득세	최*선	2021.02.04.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12-*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8,558,790

연번	과세번호	세목명	주민/법인명	발송일자	주소	공시송달사유	공시송달일자	세액(원)
101	680-140003-201803-2-640-100029	법인지방소득세	최*선	2021.02.04.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12-*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3,493,520
102	680-140003-201805-2-640-100030	법인지방소득세	최*선	2021.02.04.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12-*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37,337,370
103	680-140003-201807-2-640-100025	법인지방소득세	최*선	2021.02.04.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12-*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572,439,820
104	680-104003-201608-1-630-000288	주민세 법인균등분	황*순	2021.02.04.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 16*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38,630
105	680-140003-201610-2-630-100005	법인지방소득세	황*순	2021.02.04.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 16*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72,784,120
106	380-101501-201802-2-580-000026	취득세부동산	고*혁	2021.02.04.	서울특별시용산구유엔빌리지3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327,134,520
107	440-140003-202006-2-555-100050	법인지방소득세	오*근	2021.02.04.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중앙로27다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18,887,570
108	650-140004-202001-2-540-100173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한*열	2021.02.09.	서울특별시마포구홍익로3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2,268,670
109	650-140004-202003-2-540-100044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한*열	2021.02.09.	서울특별시마포구홍익로3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44,730
110	650-140004-202004-2-540-100178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한*열	2021.02.09.	서울특별시마포구홍익로3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108,040
111	650-140004-202005-2-540-100179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한*열	2021.02.09.	서울특별시마포구홍익로3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193,590
112	650-140003-202006-2-540-500027	법인지방소득세	한*열	2021.02.09.	서울특별시마포구홍익로3길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2021.02.18	73,808,21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433호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사실 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의4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해당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 통지문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이사(주소 확인 불가) 등 사유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시송달 대상 : (주)꼬레뱅 등 52개 가뱅본부 [57개 영업표지]
   ※ 붙임 [공시송달 대상 목록(영업표지 기준) 참조]

2. 제목: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사실 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3. 공시송달 기간 : 2021. 2. 18. ~ 2021. 3. 5.(15일간)

4. 내용
   ※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3 등에 따라 가맹본부는 각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중요사항의 (정기) 변경 등록을 기한 내[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나(만일 가맹점 모집의사가 없거나 가맹사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위 기한 내 정보공개서의 자진 등록취소 신청을 하여야 함),

   ※ 가맹사업법령상 (정기) 변경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사업법 제6조의4 제1항 제3호 · 제4호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나(등기우편발송), 수취인 불명 및 이사(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문서 송달이 불가능한바 본 공시송달을 시행함

   ※ (정기)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사용하여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희망자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33조 · 제35조 · 제41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 과징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 동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을, 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을 제기할 수 있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02-2133-5354)

[붙임 – 공시송달 대상 목록]

연번	상호	영업표지	업종	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 등록상태	공시송달사유
1	(주)꼬레뱅	보나베띠	외식	20080100337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6길 12 자운빌딩 6층	폐업 (2019. 10. 4.)	수취인불명
2	(주)난다푸드	난다곱창	외식	201808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127 지하2층 비201호		이사불명
3	(주)네일닥터	네일닥터(Nail Doctor)	서비스	2015073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70길 11 2층		수취인불명
4	(주)다산푸드	소왔쏘	외식	2019030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5길 5-4 5층	폐업 (2020. 4. 13.)	수취인불명
5	(주)다산푸드	고기소	외식	201914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5길 5-4 5층	폐업 (2020. 4. 13.)	수취인불명
6	(주)다올에프씨	샤브애샐러드바	외식	2014019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9길 1 5층	폐업 (2020. 5. 31.)	수취인불명
7	(주)대종컴퍼니	썬데이반점	외식	20170798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88 9층	폐업 (2020. 9. 10.)	수취인불명
8	(주)더블유앤제이홀딩스	쏘닭	외식	201410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47길 20 201호	폐업 (2019. 7. 18.)	수취인불명
9	(주)디알앤코	키프레시	외식	2018090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길 43 2002호		수취인불명
10	(주)뮤토트레이딩	뮤토랍스타	외식	20190309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천로 448 201동 807호	폐업 (2019. 9. 24.)	폐문부재
11	(주)비어	비어(beer)365	외식	2020008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66 314호		폐문부재
12	(주)비어	더떠블	외식	20200095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66 314호		폐문부재
13	(주)샤브향	포램	외식	2012010057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3길 33 지층		수취인불명
14	(주)성박	티케	도소매	201903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2가길 18	폐업 (2019. 12. 31.)	이사불명
15	(주)성운에프씨	명동칼국수	외식	2015068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1길 31 3층	휴업	폐문부재
16	(주)슈슈코스메틱	슈슈앤쎄씨	서비스	20181024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50 신동빌딩 6층		수취인불명
17	(주)스팀보이게러지	스팀보이게러지	서비스	20190225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 196-1	폐업 (2019. 8. 12.)	수취인불명

연번	상호	영업표지	업종	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 등록상태	공시송달사유
18	(주)쌔카에스	쌔카스팀세차	서비스	20150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중앙로 20 2층	폐업 (2019. 12. 10.)	이사불명
19	(주)씨에프	브릭버거	외식	20180604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5길 16 101호		수취인불명
20	(주)아이지푸드	돼지연구소	외식	20180105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20가길 3 2층		폐문부재
21	(주)와이에스에프엔비	방콕익스프레스	외식	201606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17 203호		수취인불명
22	(주)인성에프앤비	김밥공감	외식	20180867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92 1026호	폐업 (2019. 11. 30.)	수취인불명
23	(주)카페에이전시	앤디스커피(ANDYS COFFEE)	외식	2018107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41 오르세빌딩 2층		이사불명
24	(주)케이앤디이노베이션	마마롤	외식	2019008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301 제1층 제104호	폐업 (2020. 3. 23.)	수취인불명
25	(주)케이에스글로벌	빅보울	외식	20190922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6 116호		수취인불명
26	(주)퀴클리코리아	퀴클리(Quickly)	외식	2016009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51길 3 1층	폐업 (2020. 7. 31.)	이사불명
27	(주)퀴클리코리아	야경면선	외식	2018013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51길 3 1층	폐업 (2020. 7. 31.)	이사불명
28	(주)크라이오존	크라이오존	서비스	20190135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24 3층	폐업 (2020. 9. 30.)	폐문부재
29	(주)팩토리엔	아오리라멘	외식	2017062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42길 36 2층	폐업 (2020. 6. 30.)	수취인불명
30	(주)프렌즈리	세프리푸드트럭	외식	201709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26 203호		수취인불명
31	(주)프렌즈리	세븐스테이크	외식	201907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26 203호		수취인불명
32	(주)프로그에프앤비	한양껍데기	외식	20190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11길 28 1,2,3층		이사불명
33	(주)피플푸드	한살짜리 꼬마김밥	외식	20190979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21 1층 102호	폐업 (2020. 9. 30.)	이사불명
34	(주)핑거네일투고	핑거네일투고	도소매	201711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43 1층		이사불명
35	(주)해피빌리어드	해피빌(happybil)	서비스	20190333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30 206동 318호	폐업 (2020. 1. 3.)	수취인불명

연번	상호	영업표지	업종	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 등록상태	공시송달사유
36	(주)홀륭	콩툰만화카페	서비스	20151208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43 1층		이사불명
37	더봉스코리아	알뽕달뽕	외식	20170141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4 3층	폐업 (2019. 6. 1.)	수취인불명
38	마초F&B	빨간마초닭발	외식	2017106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B1층 c-22호	폐업 (2020. 12. 29.)	수취인불명
39	밸런스버거	밸런스버거	외식	201001002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19길 6 3층	폐업 (2019. 12. 31.)	이사불명
40	스미스이노베이션	허브스미스(Herbsmith)	외식	20181100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48길 25 1층	폐업 (2020. 7. 7.)	수취인불명
41	엘지이홀딩스(주)	아모르데헬렌	도소매	201704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50 1층	휴업	수취인불명
42	이태원더고깃집	이태원더고깃집	외식	2019022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19길 9-4 1층		폐문부재
43	제스트에프씨(주)	제스트PC방	서비스	201914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2동 605호	폐업 (2020. 2. 20.)	이사불명
44	㈜한상에소두마리	한상에소두마리	외식	201507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8길 77 1층	폐업 (2020. 3. 31.)	이사불명
45	진미찜&탕	아낌없이 주는 진미찜&탕	외식	20181379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1길 3 1층	폐업 (2020. 8. 14.)	수취인불명
46	진진&몬스터	진진 닭발&곱창	외식	20190637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70 그레이스힐 108호	폐업 (2020. 4. 30.)	수취인불명
47	진진&몬스터	몬스터떡볶이	외식	20190362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70 그레이스힐 108호	폐업 (2020. 4. 30.)	수취인불명
48	(주)모셀	모셀두피항노화센터	도소매	20170315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43 1차 508호		이사불명
49	(주)바로쿡닷컴	바로쿡스파게티스토리	외식	20171297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A동 1205호		수취인불명
50	(주)에이치앤에스 이노베이션	아름다운사람들	서비스	2015064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501호		이사불명
51	(주)타마스시	타마	외식	201808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20 B110-1호		수취인불명
52	(주)파스타리코	파스타리코	외식	201508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34-1 303호		수취인불명
53	(주)퍼스트스노우	바론 캐쥬얼푸드&카페	외식	2018117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47 411호		이사불명

연번	상호	영업표지	업종	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 등록상태	공시송달사유
54	스타에프앤씨(주)	KSTAR PC CAFÉ	서비스	2019008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2동 605호	폐업 (2021. 1. 7.)	이사불명
55	와이에스	야꼬닭바베큐 &취향저격안심탕수육	외식	20180787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28가길 24		폐문부재
56	㈜씨티씨푸드	루안바오	외식	2018133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73 15층(서초동)		수취인불명
57	㈜리싱	코리아 택시(KOREA TAXI)	서비스	20181329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비동 2208-2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이사불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1-3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정이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 재원(안 제3조제1항)은 법 제 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함
나. 기금의 용도(안 제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라.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6조 내지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기금의 조성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교육시설안전과)
O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O 연락처 : 전화 02-399-9648, FAX 02-399-9761

O 이메일 : gaggai0504@sen.go.kr

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새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 입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금액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교육행정국장
2. 기금출납원 : 시설기획담당 사무관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감이 수립·작성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교육시설안전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 : 기금 운용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및 지

역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시설기획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78호, 2019. 12. 3, 제정]

교육부(교육시설과) 044-203-6302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

③ 교육감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성 명 :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제(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0조(00)	제0조(00)	○ -

2021. . .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1-4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대통령령 제30018호, 2019. 8. 6.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근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통하여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사항 정기 또는 수시 점검
   나. 적극행정위원회 (안 제3조)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다.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안 제4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민간위원은 위원의 2분의 1이상)
      -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함
      - 위원은 공공·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해야 함
   라. 위원회의 운영 (안 제5조)
      -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회의소집, 위원장의 직무대리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이상 위원으로 구성 성별·민간위원수(2분의 1이상) 고려
      -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으로 심의·의결 가능
   마. 위원의 임기 (안 제6조)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 한차례만 연임가능
   바.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안 제7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사. 간사 (안 제8조)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적극행정 업무담당 서기관(사무관)으로 한다.

아. 비밀보호 (안 제8조)
- 위원의 비밀보호에 관한 사항

자. 운영세칙 (안 10조)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 총무과)

O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O 연락처 : 전화 02-399-9232, FAX 02-399-9735

O 이메일 : dlrudals71@sen.go.kr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부. 끝.

[별첨]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교육감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관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⑤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 서기관(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성 명 :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제(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0조(00)	제0조(00)	○ -

2020년 월 일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1-4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 이유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7754호, 2021.6.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상위 법령 개정 등으로 불일치 된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민간위원 확대 : 7명 → 9명 (전체위원 11명 → 13명) (안 제2조)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 위원회 회의 비공개 조항 신설 (안 제6조제5항)
-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6조의2)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6조의3)
다.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에 따른 정비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교육청(담당부서 : 감사관)
o 주 소 :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신문로 2가)
o 연락처 : 전화 02-399-9049, FAX 02-399-9732
o 이메일 : cozmos@sen.go.kr

4. 개정 조례안 : 붙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를 “「공직자윤리법」”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에 따라”로 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 위원회“를 ”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11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7명”을 “9명”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7명”을 “9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대한 등록사항 ”을 “재산등록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은 “「공직자윤리법」(이하 ” 법 “이라 한다)”로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후단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령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 및”을 “4급 이하 공무원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 중 “회의등”을 “회의 등”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 “2이상”을 “2 이상”으로 한다.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을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로,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에 따른”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를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부터 제28조 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을 “제6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으로,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을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로 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

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중 “간사등”을 “간사 등”으로 한다.

제8조 중 “수당등”을 “수당 등”으로 한다.

제9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 6. 23. 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직자윤리법」 ---------- 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원 중 7명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 2명을 포함하여 법률전문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7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생 략)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13명----------. 1. ---------- 9명 ----------. 2.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

현 행	개 정 안
	1 . ---------- 9명 ----------.
	2.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생 략)	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1. 재산 ----------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 다)----------에 따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4 . ---------- 에 따라 ----------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 4급 이하 공무원과 - ----------.
제3조의2(심사기준) (생 략)	제3조의2(심사기준)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 ---------- 한 차례만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총괄---.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 2 이상 ----------. 1. ----------에 따른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3. ----------에 따른 ----------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부터 제28조 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 ③ (삭 제)
<신 설>	④ 제6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

현 행	개 정 안
	-----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수당등)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 등)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에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성 명 :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제(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0조(00)	제0조(00)	○ –

2021년 월 일

구 고 시

◈ 중랑구고시 제2021-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433호(1998.12.31.)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변경)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2월 18일
중 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86-39 ~ 103-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중화동 286-39 ~ 103-2간 도로확장사업
다. 사업의규모 : 도로확장 B=3→6m, L=8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중랑구청장(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1.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중랑구청 도로과(☎02-2094-2693)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 업 명 : 중화동 286-39~103-2간 도로확장공사

연번	소재지(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중화동	103-2	건물(지층)	철근콘크리트조	16.0	문정일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36길 26(중화동)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중화역지점)	근저당권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13.0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조	13.0						
			건물(3층)	철근콘크리트조	13.0						
			건물(4층)	시멘트벽돌조	13.0						
			담장		5.0						
2	중화동	103-4	건물(지층)	연와조	30.0	박순남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23다길 31, 102호(북가좌동)				
						김수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0, 305동 2003호(판교동,판교원마을)				
			건물(1층)	연와조	29.0	김윤정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1길 53, 1303동 803호(청계동,롯데캐슬알바트로스)				
			건물(2층)	연와조	30.0	권양숙	서울시 강남구 헌릉로571길 20, 104동 804호(세곡동,강남엘에이치1단지)				
			건물(옥탑)		7.0	공동소유					
3	중화동	103-5	건물(1층)	시멘트블록조	40.0	유성순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103-5	조흥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 (중화동 지점)	근저당권	
			가건물		3.0						

영업권 조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 업 명 : 중화동 286-39~103-2간 도로확장공사

연번	소재지	상호명	업종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중화동 103-2	대야창호	창호업	권기섭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36길 26, 1층	
2	중화동 102-2	성림	봉재업	김상규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36길 26,지하1층	
3	중화동 103-5	제영슈퍼	판매업	유성순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9길 5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 업 명 : 중화동 286-39~103-2간 도로확장공사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중화동	103-2	대지	235.0	41.0	문정일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36길 26 (중화동)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중화역지점)	근저당권	
2	중화동	103-3	대지	155.0	35.0	심정임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195-2 우성타운 7-203				
3	중화동	103-4	대지	129.0	50.0	박순남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23다길 31, 102호(북가좌동)				
						김윤정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1길 53, 1303동 803호(청계동,롯데캐슬알바트로스)				
						김수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0, 305동 2003호(판교동,판교원마을)				
						권양숙	서울시 강남구 헌릉로571길 20, 104동 804호(세곡동,강남엘에이치1단지)				
								신미애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853	근저당권	
4	중화동	103-5	대지	60.0	31.0	유성순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103-5	조흥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 (중화동 지점)	근저당권	

▢ 위 치 도


현대슈퍼
뱀엘슈퍼
대림빌라트
장미빌라타운
석영빌라
코사마트
중화역청광
플러스원아파트
삼진아트빌라
미스터피자
예쁜집
인테리어
공영
사랑나눔요양
보호사교육원
태능성모의원
윤피부과
청원다미소
삼우연립
예은교회
광진연립
CU
GS25
배스킨라빈스
중화역
교차로
봉화산로
신한은행
삼흥맨숀주택
다앤에프병원
어깨동무
한의원
벼룩시장
중화1
치안센터
중화제1동
주민센터
대농연립
푸른솔몬테소리
어린이집
힐아트빌
로얄아파트
반석주택2차

▢ 현황사진


봉화산 부동산
434-9800

◈ 중랑구고시 제2021-3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47호(1974.04.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9-131호(2019.12.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중화동159-2~158-8간』,「중화동 157-1~154-57간」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변경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 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중랑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2월 18일
중 랑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내용

구분	사업위치	사업종류 및 명칭	사 업 규 모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일자	사 업 시행자
당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59-2~ 158-8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중화동159-2~158-8간 도로사업	면적 1,176m^2	인가일로부터 2020.12.31. 까지	서울특별시고시 제47호 (1974.04.20.)	•성명 :중랑구청장 •주소 :서울시중랑구 봉화로179(신내동)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인가일로부터 2021.12.31. 까지	변경없음	변경없음
당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57-1~ 154-57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중화동157-1~154-57간 도로사업	면적 1,176m^2	인가일로부터 2020.12.31. 까지	서울특별시고시 제47호 (1974.04.20.)	•성명 :중랑구청장 •주소 :서울시중랑구 봉화로179(신내동)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인가일로부터 2021.12.31. 까지	변경없음	변경없음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

다.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의함

라. 열람장소 : 중랑구청 도로과(전화 : 2094 -2692~7)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 위 치 도



▢ 현황사진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 업 명 : 중화동 159-2~158-8간 도로사업, 중화동 157-1~154-57간 도로사업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중화동	159-2	대	43.0	43.0	여형수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209번길 20-36(평내동)				
2	중화동	157-16	대	96.0	96.0	최광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화동 145-1	성북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3	압류	
3	중화동	158-5	전	519.0	519.0	곽준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156,3동 405호 (옥수동, 한남하이츠아파트)				
						박규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0가길 10-24, 102호(응암동)				
						여인환	미합중국 뉴저지주 부리스 오드리코트 5				
4	중화동	158-8	전	241.0	241.0	여정훈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51, 510동 104호(인창동, 신일아파트)				
						박규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0가길 10-24, 102호(응암동)				
						여인환	미합중국 뉴저지주 부리스 오드리코트 5				
5	중화동	154-30	대	66.0	65.0	여동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03동 1001호(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6	중화동	154-85	임야	212.0	212.0	현연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봉동 310	중랑구청	봉화산로 179	압류	

◈ 성북구고시 제2021-30호

도시관리계획(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34호(2014.06.26.)로 결정된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성 북 구 청 장

가. 변경 취지: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에 의거 가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나. 도시관리계획(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 가구계획 변경

3)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가구번호	가구면적(㎡)	대지면적			비 고
				위치	공부면적(㎡)	편입면적(㎡)	
기정	-	B2	180	석관동 220-6	279	180	단독개발
변경	-	B2	279	석관동 220-6	279	279	단독개발

다.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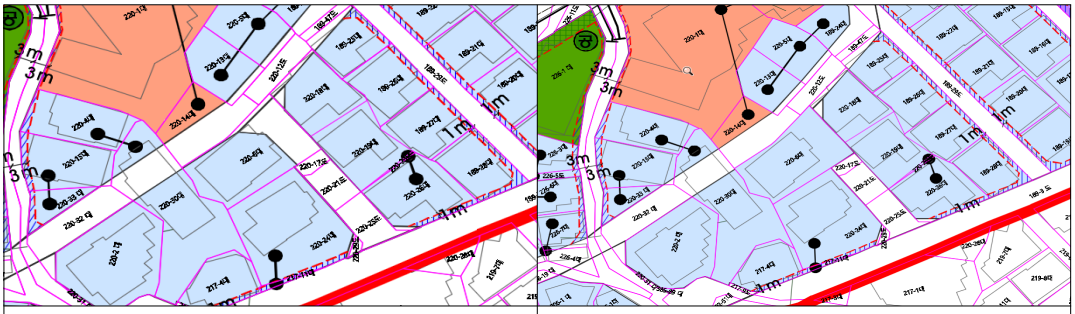

기 정 | 변 경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도시계획과(☎02-2241-26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대문구고시 제2021-2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2181호(1966.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최종 변경되었으며, 건설부고시 제20호(1990.4.25.)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78호(2015.3.19.)로 최종 변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0-116호(2020.6.29.)로 최초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0-186호(2020.10.29.)로 최종 변경인가 된 백련근린공원에 대하여
2. 수용 또는 사용할 면적의 토지분할로 인하여 변경된 지번 및 보상내역(물건조서)의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3. 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2월 18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11-314 등 1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 조성
다. 사업의 면적 : 15,428㎡
라. 사업의 내용 : 토지보상 15,428㎡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바.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사.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 ~ 2022. 12. 31까지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별도첨부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02-330-19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현황	지분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내용	
	계	11필지	15,428	15,428								
1	홍은동 산11-314	임야	3,695	3,695	임야 대지	1	박*열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64길 15, ***동 ***호(이촌동 엘지한강자이아파트)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	지상권	일부 대지
2	홍은동 204-39	대지	28	28	대지	1	이*영	서울시 성북구 대사관로13길 ***				
3	홍은동 265-493	임야	176	176	임야	1	이*기	서울시 성북구 대사관로13길 ***				
4	홍은동 산26-134	임야	977	977	임야	1	학교법인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361-**	중부**서	서울시 중구 소공로 **	압류	
									한국사학** **	대구시 동구 혁신대로 ***	가압류	
5	홍은동 산26-133	임야	857	857	대지	1	김*식	서울시 서대문구 백련사길 **				
6	홍은동 310-2	전	16	16	대지	1	김*식	서울시 서대문구 백련사길 **				
7	홍은동 산26-183	학교	43	43	대지	1	김*식	서울시 서대문구 백련사길 **				
8	홍은동 312-1	대지	60	60	도로	1	재단법인 **** ****	서울시 서대문구 백련사길 170-**				
9	홍은동 산11-3	임야	3	3	임야	1	이*용	서울시 경성부권노동 **				
10	홍은동 산11-333	임야	2,926	2,926	임야	1	이*영	서울시 성북구 대사관로13길 ***	한국산업**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	근저당권 근저당권	
									유한회사 동원****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	지상권 지역권	
									주식회사하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	근저당권	
									주식회사국 *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	근저당권	
									주식회사신 *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	근저당권	
11	홍은동 265-443	임야	6,647	6,647	임야	4733/7991	이*영	서울시 성북구 대사관로13길 ***	유한회사 동원****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	지상권 지역권	
						3258/7991	유한회사 동원****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	한국산업**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	근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주식회사하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	근저당권	
									주식회사국 *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	근저당권	
									주식회사신 *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	근저당권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또는 면적	실제이용 현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내용	
1	홍은동 산11-314	기존무허가 건물	시멘조	142㎡	주거용	조*라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48, 우장산힐스테이트 123동 1***호	홍*기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29-26	거주자	대장상 면적과 상이
		담장		1식							
		대문		1식							
		기존무허가 건물	시멘조	99㎡	주거용	박*은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2*-**				
		기존무허가 건물	시멘조	140㎡	주거용	변*우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6다길 ***,101동 ***호	김*복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26-36	거주자	
								채*선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26-36	거주자	
								이*순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26-36	거주자	
								김*현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26-36	거주자	
		기존무허가 건물	가건물 및 시멘조	76㎡	주거용	장*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상북로 11-17 청구가든 D동 ***호	박*태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45-15	거주자	망자
2	홍은동 산26-133	무허가건물	1동	12㎡	화장실	김*식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26-***				
		무허가건물	1동	21㎡	영업용						
		무허가건물	1동	30㎡	영업용						
		무허가건물	1동	39㎡	영업용						
		무허가건물	1동	85㎡	영업용 주거용						기존 무허가 등재, 일부 주거용
		창고	1동	3㎡							
		창고	1동	5㎡							
		창고	1동	4㎡							
		통로(가추)	1식	143㎡							
		대문	목재 등	2개							
		울타리		1식							
		가스저장훼스		1식							
		데크		1식							
		동산		1식							동산 이전비
3	홍은동 310-2	무허가건물	1식	3㎡	주거용						
4	홍은동 산26-183	무허가건물	1동	19㎡							
		무허가건물	1식	4㎡	주거용						

◈ 강서구고시 제2021-1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서구 화곡동 42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강 서 구 청 장

Ⅰ. 결정취지

○ 화곡동 42번지 일대 개발행위(토지 형질변경) 허가의 공공기여로서 주변지역에 심각한 주차난 완화를 위해 건축물 중 일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활용토록 함

○ 단지 진입부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녹지대로 유지하여 주요 가로인 까치산로18다길에서의 경관 부영향을 줄이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주차장	강서구 화곡동 42-29 일대	-	증)580.16	580.16	-	입체적 결정 (EL 38~41m)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구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주차장	강서구 화곡동 42-29 일대	면적	-	증) 580.16㎡	580.16㎡	-	입체적 결정 (EL 38~41m)
			높이	-	해수면기준 38m ~ 41m	해수면기준 38m ~ 41m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공공공지	강서구 화곡동 42-25 일대	-	증) 281.00	281.00	-	제1종일반 주거지역

Ⅲ. 지형도면: 붙임문서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세부 내용은 강서구청 도시계획과(☎2600-684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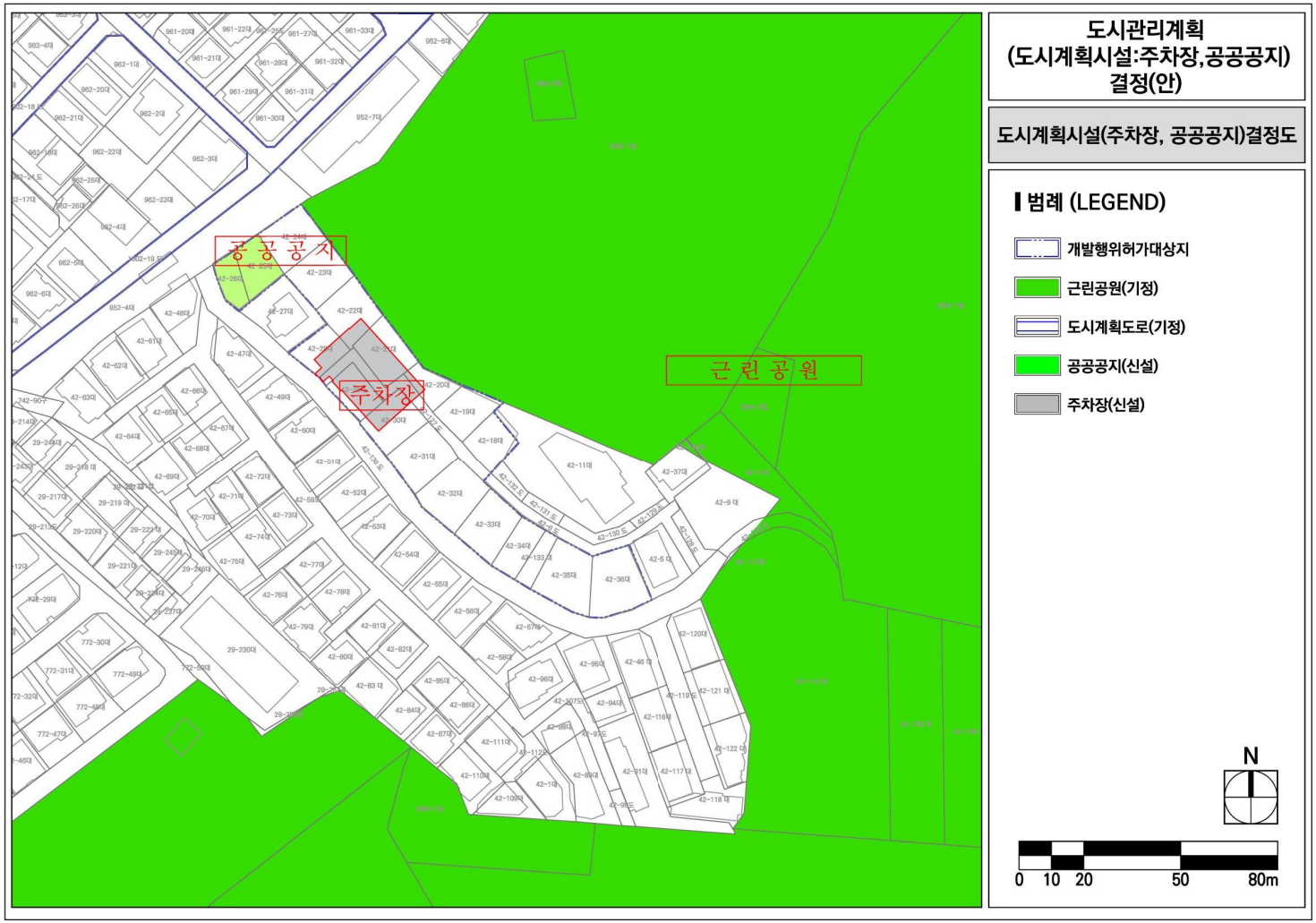
공 공 공 지
주차장
근 린 공 원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공공지)
결정(안)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공지)결정도
범례 (LEGEND)
개발행위허가대상지
근린공원(기정)
도시계획도로(기정)
공공공지(신설)
주차장(신설)
N
0 10 20 50 80m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안)

A – A'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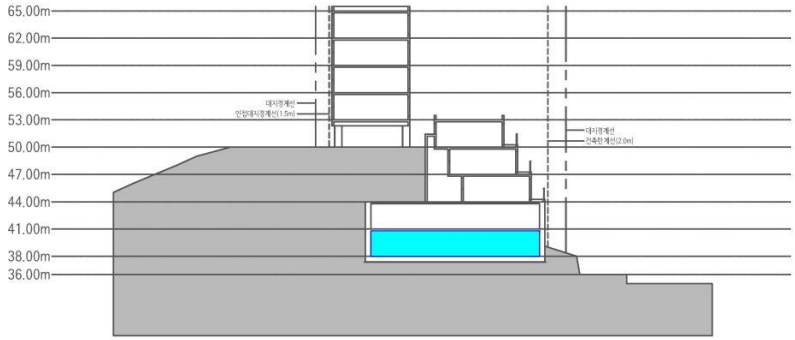

B – B'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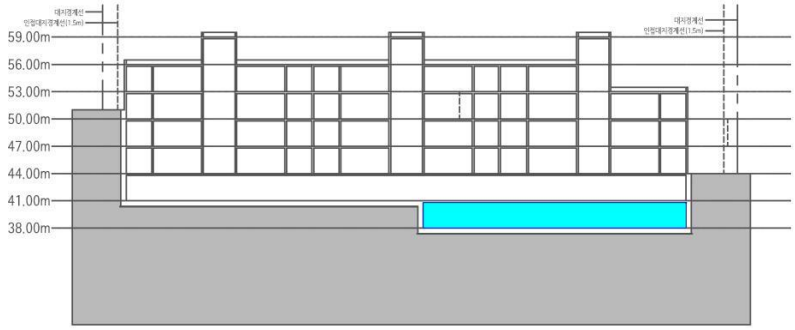

화곡동 42-18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도
- 입체적 결정도(단면도) -

범례 (LEGEND)

입체적 결정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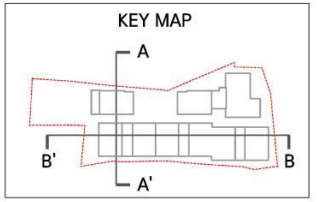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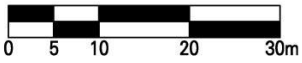

◈ 영등포구고시 제2021-2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70-32호(’ 70.07.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9-175호('19.11.21.)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19.12.26.)한 『대림동 1116-15 ~ 705-2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변경사항(지번분할 및 지장물 제외)이 발생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도로과(☎ 2670-3814)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21년 2월 18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변경없음)

나.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사업의 명칭	사업 위치	사 업 규 모	비 고
대림동 1116-15 ~ 705-2간 도로개설공사	대림동 1059-53 ~ 1047-3번지	폭 8m, 연장 270m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 명 : 영등포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라.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5년(변경없음)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 별첨

바. 변경사항 : 지번분할(3필지), 지장물 제외(4건)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로과(☎ 02-2670-3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현황사진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장

■ 사업의 명칭 : 대림동 1116-15 ~ 705-2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구분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 고
						성명	주 소	권리 종류	성 명	주 소	
1	대림동 1057-36	당초	답	7	7	박미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변경	변경없음								
2	대림동 1057-88	당초	대	8	8	최원홍 , 이창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근저당권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모번지 대림동1057-9
		변경	대	변경없음							
3	대림동 1057-37	당초	대	89	89	윤묘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변경	변경없음								
4	대림동 1057-80	당초	대	45	45	이원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두곶4길				
						정한식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변경	변경없음								
5	대림동 1057-87	당초	대	32	32	박홍점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근저 당권	대창신용협 동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59	모번지 대림동1057-7
		변경	대	변경없음							
6	대림동 1057-19	당초	답	304	298	조진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도림동	압류	영등포구(세무관리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분할 대림동1057-89
		변경	답	298	298	변경없음					
7	대림동 1058-50	당초	도	390	20	강신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모번지 대림동1058-4

연번	소재지	구분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 고
						성명	주 소	권리 종류	성 명	주 소	
		변경	도	20	20	변경없음					
8	대림동 1058-32	당초	잡	261	240	전영환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분할 대림동1058-51
		변경	잡	240	240	변경없음					
9	대림동 1048-7	당초	답	33	33	김기희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김상희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변경	변경없음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구 분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성 명	주 소	
1	대림동 1057-9	당초	철기둥 및 간판		1식	최원홍,이창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근저당권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변경	변경없음								
2	대림동 1057-20 외 1필지	당초	사무소(1층)	철근콘크리트	1	장영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제2종 근린생활시설(2층)		1						
			(3층)		1						
			제1종 근린생활시설(4층)		1						
			주차장 입구		1식						
		변경	변경없음								

◈ 동작구고시 제2021-29호

사당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호(2011.1.6)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3-98호(2013.8.22),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4-72호(2014.7.10),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5-80호(2015.11.05), 동작구고시 제2016-34호(2016.04.21), 동작구고시 제2019-89호(2019.11.21)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81번지 일대 사당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구역(경미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동 작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사당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사당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81번지 일대	49,449.3	-	49,449.3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9,449.3	-	49,449.3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6.3	-	46.3	0.1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69.4	-	69.4	0.1	
	제2종일반주거지역	49,333.6	-	49,333.6	99.8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9,449.3	-	49,449.3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10,394.3	감)7.8	10,386.5	21.0
	도 로	4,705.3	감)7.8	4,697.5	9.5
	소공원 1	1,695.5	-	1,695.5	3.4
	소공원 2	3,720.1	-	3,720.1	7.5
	공공공지	227.1	-	227.1	0.5
	학 교	46.3	-	46.3	0.1
획지	소 계	39,055.0	증)7.8	39,062.8	79.0
	획 지 (공동주택용지)	39,055.0	증)7.8	39,062.8	79.0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 로 :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001	10	집산 도로	69.8	사당동 189-8	사당동 181-188	일반 도로	-	서고2011-2호 (11.01.06)	
기정	중로	3	1002	10~20	집산도로	295.7	사당동 190-146	사당동 181-365	일반 도로	-	서고2011-2호 (11.01.06)	
기정	소로	2	1003	8	국지 도로	33.7	사당동 189-20	사당동 189-9	일반 도로	-	서고2011-2호 (11.01.06)	
변경	소로	2	1003	8	국지 도로	32.8	사당동 189-20	사당동 189-9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	6~ 15	국지 도로	409.3 (136.6)	사당동 188-1	사당동 190-133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15.0	상도동 111-5	상도동 410-1	일반 도로	-	동고2013-98호 (13.08.22)	

주 1) ( )안은 지구 내 확폭 연장임

※ 소로2-1003호선, 소로3(6~15m)호선 도로기능 오기사항 정정 반영(기타도로→국지도로)

나) 철 도 : 변경없음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 점	종 점				
기정	도시 철도	도시 철도	도봉동 16번지 일대	가산동 안양천 (광명시경계)	43,760	-	서고제1999-353 (99.10.25)	

다) 공 원 : 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공원	소공원1	사당동 181-376번지 일원	1,695.5	-	1,695.5	서고2011-2호 (11.01.06)	
기정	공원	소공원2	사당동 181-221번지 일원	3,720.1	-	3,720.1	서고2011-2호 (11.01.06)	도시철도 중복지정

라) 공공공지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사당동 181번지 일대	227.1	-	227.1	서고2011-2호 (11.01.06)	

마) 학 교 : 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학교	중학교	사당동 181-20번지 일원	20,010 (46.3)	-	20,010 (46.3)	서고 399호 (79.08.08)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법 정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공동 이용 시설	관리사무소	획지	192.0148	-	192.0148	
	경 로 당		259.1487	-	259.1487	
	어린이놀이터		1,174.2000	-	1,174.2000	
	주민공동시설		2,043.8499	-	2,043.8499	
	문고시설		269.5879	-	269.5879	
	주민운동시설		167.9500	-	167.9500	
	보육시설		352.1742	-	352.1742	
	근린생활시설		790.6662	-	790.6662	
	휴게시설		3개소	-	3개소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 이주	
기정	사당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49,449.3	획지	39,055.0	동작구 사당동 181번지 일대	227	-	-	227	-	
변경		49,449.3		39,062.8 (증 7.8)							

나) 건축시설계획

<table>
<tr><th rowspan="2">결정
구분</th><th colspan="2">획지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주된 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rowspan="2">용적률
(%)</th><th rowspan="2">높이(m)
/최고층수</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r>
<tr><td>기정</td><td rowspan="2">사당2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td><td>49,449.3</td><td>획지</td><td>39,055.0</td><td rowspan="2">동작구 사당동
181번지 일대</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25%
이하</td><td>245%
이하</td><td>60m이하
/최고18층</td></tr>
<tr><td>변경</td><td>49,449.3</td><td>획지</td><td>39,062.8
(증 7.8)</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25%
이하</td><td>245%
이하</td><td>60m이하
/최고18층</td></tr>
<tr><td colspan="3">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7">○ 건립규모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기 정</th><th rowspan="2">변 경</th><th colspan="2">변 경 후</th></tr>
<tr><th>세대수</th><th>비율(%)</th><th>세대수</th><th>비율(%)</th></tr>
<tr><td>계</td><td>959</td><td>100.0</td><td>-</td><td>959</td><td>100.0</td></tr>
<tr><td>60㎡이하</td><td>468</td><td>48.8</td><td>-</td><td>468</td><td>48.8</td></tr>
<tr><td>60~85㎡이하</td><td>488</td><td>50.9</td><td>-</td><td>488</td><td>50.9</td></tr>
<tr><td>85㎡초과</td><td>3</td><td>0.3</td><td>-</td><td>3</td><td>0.3</td></tr>
</table>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99.7% (기준 50%이상)</td></tr>
<tr><td colspan="3">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td><td colspan="7">○ 층수완화 : 최고 18층</td></tr>
<tr><td colspan="3">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td><td colspan="7">○ 북쪽 미관지구와 접하는 부분 : 건축한계선 3m</td></tr>
<tr><td colspan="3">기타사항
(변경없음)</td><td colspan="7">○ 단지 내 보차혼용통로 : 6m</td></tr>
</table>

6)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주택재건축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사당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 499세대 계획) 959세대	-

2. 지형도면 : 붙임 첨부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전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관계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동작구 주택과(☎02-820-1382)에 관련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형도면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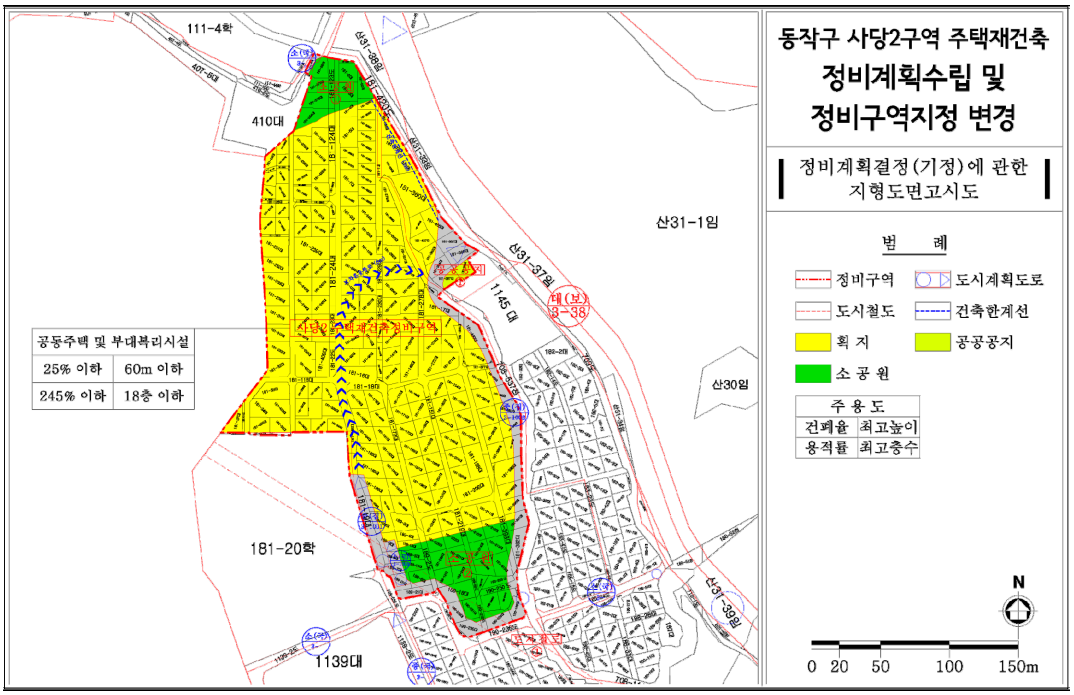
111-4학
410대
산31-1임
산31-37임
1145 대
대(보)
3-38
산30임
181-20학
1139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 이하 60m 이하
245% 이하 18층 이하
동작구 사당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정비계획결정(기정)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
범 례
정비구역
도시계획도로
도시철도
건축한계선
획 지
공공공지
소 공 원
주 용 도
건폐율 최고높이
용적률 최고층수
N
0 20 50 100 150m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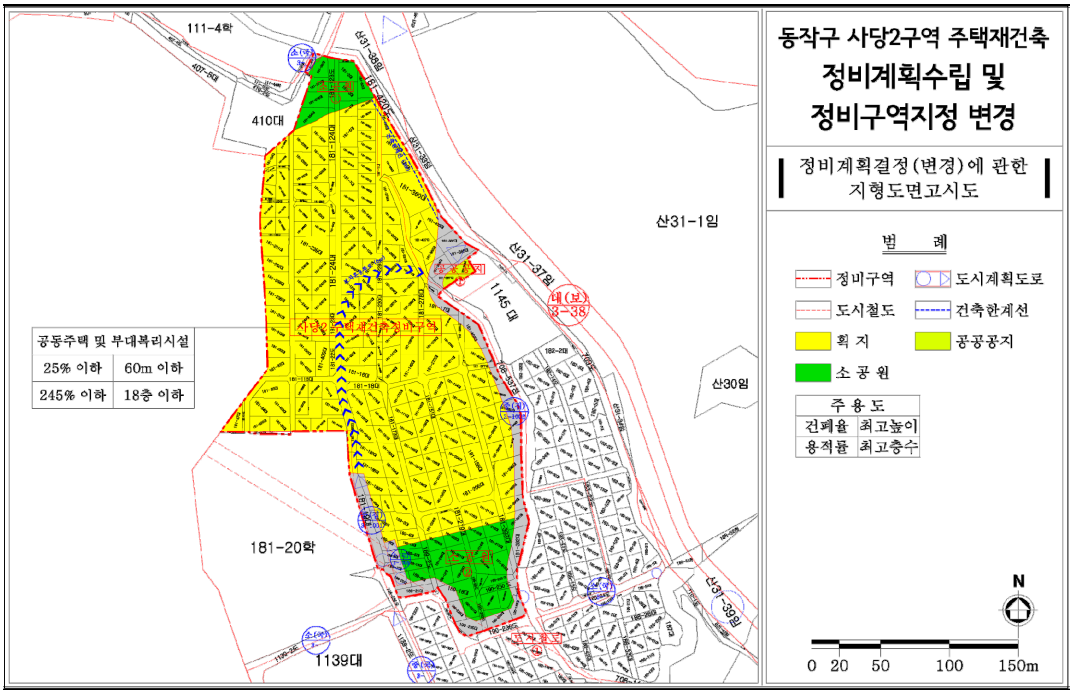
111-4학
410대
산31-1임
산31-37임
1145 대
대(보)
3-38
산30임
181-20학
1139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 이하 60m 이하
245% 이하 18층 이하
동작구 사당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정비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
범 례
정비구역
도시계획도로
도시철도
건축한계선
획 지
공공공지
소 공 원
주 용 도
건폐율 최고높이
용적률 최고층수
N
0 20 50 100 150m

구 공 고

◈ 중랑구공고 제2021-20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안)

1. 중랑구고시 제88호(2001.11.24.)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0-40호(2020.05.0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 공고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합니다.
3.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 날부터 14일간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리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8일
중 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67-11 ~ 61-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상봉동 67-11 ~ 61-4 간 도로사업
다. 사업의규모 : 도로개설(폭 12m, 연장 52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중랑구청장(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중랑구청 도로과(☎02-2094-2695)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 업 명 : 망우동 상봉동 67-11 ~ 61-4간 도로사업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상봉동	56-9	잡	318	317	김현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3 꿈마을아파트 205-1601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14-5 (북부지점)	근저당권 (채무자 김현재)	
2	상봉동	67-8	전	139	139	김현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3 꿈마을아파트 205-1601				
3	상봉동	61-4	잡	309	309	김현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3 꿈마을아파트 205-1601				
4	상봉동	56-13	잡	40	30	김현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3 꿈마을아파트 205-1601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	
5	상봉동	56-11	잡	473	29.82	민양호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54-3 평거1차현대아파트 101-704				
						홍영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495 동부아파트 101-1907				
						김종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495 동부아파트 101-1907				
						김미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59 152-1301(상현동 상현마을금호 베스트빌 1단지 아파트)				
6	상봉동	67-11	전	150	54.75	김현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3 꿈마을아파트 205-1601				
7	상봉동	56-14	잡	456	456	김정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155-1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상봉동 67-11~61-4간 도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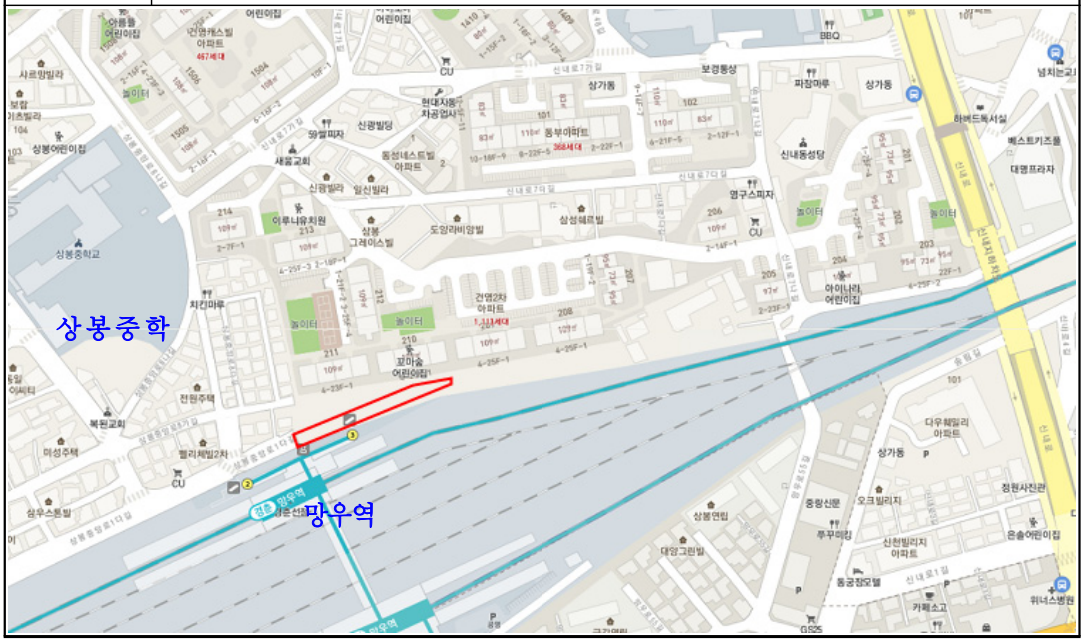

내 용	현황사진



◈ 강북구공고 제2021-181호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7.9.)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49호(2018.6.7.)로 조성계획 (변경)결정된 강북구 번동 산23-1 일대 오동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며, 본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8일
강 북 구 청 장

가.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산23-1 일대
나. 오동근린공원(강북) 면적: 684,366.4㎡
다. 공원조성계획 변경내용
 - 위　치 : 강북구 번동 산23-1 일대
 - 내　용 :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 반영 등
라. 열람장소 : 강북구청 5층 공원녹지과(☎ 02-901-6925)
마.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18:00)
바. 관계도서 : 조성계획도,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강 북 구 청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위치 : 서울시 강북구 번동 산28-6일대)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532,959.4	353,266.74	27	19,300.25	44,111.99	151	1,259,273.8	335,154.84	27	18,950.25	43,761.99	154	감) 18,111.9㎡
기반시설	소 계	134,324	109,436					118,419.9	102,697.9					감) 6,738.1㎡
	도 로	113,702	88,814					97,032.0	81,310.0 (15,722.0)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오동교	200	200					200.0	200.0					
	광 장	20,422	20,422					21,187.9	21,187.9					
조경시설		57,322	57,322	1	3,786.05	9,726.01	52	58,526.5	58,526.5	1	3,786.05	9,726.01	67	증) 1,204.5㎡
휴양시설		18,191	18,191	2	244.8	244.8	11	18,746.4	18,746.4	2	244.80	244.80		증) 555.4㎡
유희시설		12,887	12,887		650	650	2	12,951.6	12,951.6		300.00	300.00	1	증) 64.6㎡
운동시설		68,082.12	62,652.12	4	6,275.76	13,039.68	84	53,868.12	52,438.12	4	6,275.76	13,039.68	84	감) 10,214.0㎡
교양시설		72,351	72,351	6	4,932.04	15,712.25	1	64,712.4	64,712.4	6	4,932.04	15,712.25	1	감) 7,638.6㎡
편익시설		18,145.62	17,878.62	9	2,454.2	2,956.92	1	22,684.02	22,417.02	9	2,454.20	2,956.92	1	증) 4,538.4㎡
관리시설		2,549	2,549	5	957.4	1,782.33		2,664.9	2,664.9	5	957.40	1,782.33		증) 115.9㎡
녹지 및 기타		1,149,107.66						906,699.96						감) 242,407.7㎡
공원시설율 (법정40%)		(353,266.74㎡ / 1,532,959.4㎡) × 100% = 23.04 %						(335,154.84㎡ / 1,259,273.8㎡) × 100% = 26.61%						
건폐율(10%)		(19,300.25㎡ /1,532,959.4㎡) × 100% = 1.26 %						(18,950.25㎡ /1,259,273.8㎡) × 100% = 1.50%						
도서관,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관,운동시설 (법정 20%)		(69,526.12㎡ / 353,266.74㎡) × 100 = 19.68%						(59,312.12㎡ / 335,154.84㎡) × 100 = 17.70%						

※ 총괄표(지구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계	1,532,959.4	353,266.74	27	19,300.25	44,111.99	151	1,259,273.8	335,154.84	27	18,950.25	43,761.99	154	
“가” 지구	665,190	195,552.68	12	9,851.81	22,313.8	69	684,156.6	195,552.68	12	9,851.81	22,313.80	67	
“나” 지구	241,948	40,057	1	1,249	5,574	30	115,490.2	22,783.7	1	1,249.0	5,574.0	30	
“다” 지구	442,418.4	49,451.06	3	3,121	9,239.91	50	238,748.7	53,927.36	3	3,121.0	9,239.91	49	
“라” 지구	183,403	68,206	11	5,078.44	6,984.28	2	220,878.3	62,891.1	11	4,728.44	6,634.28	8	

1. “나” 지구

가. 시설별 총괄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241,948	40,057	1	1,249	5,574	30	115,490.2	22,783.7	1	1,249.0	5,574.0	30	감)17,273.3m2
기반시설	소 계	25,072	10,867					16,530.3	7,970.3					감)2,896.7m2
	도 로	(23,556)	(9,351)					14,501.0	5,941.0 (8,560.0)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미포함
	광 장	(1,516)	(1,516)					2,029.3	2,029.3					
조경시설		-	-				13	433.5	433.5				16	증)433.5m2
휴양시설		574	574				3	1,417.9	1,417.9					증)843.9m2
유희시설		2,776	2,776					1,143.2	1,143.2					감)1,632.8m2
운동시설		4,632	4,632				14	2,879.2	2,879.2				14	감)1,752.8m2
교양시설		19,797	19,797	1	1,249	5,574		5,736.7	5,736.7	1	1,249.0	5,574.0		감)14,060.3m2
편익시설		1,411	1,411					3,087.0	3,087.0					증)1,676.0m2
관리시설		-	-					115.9	115.9					증)115.9m2
녹지 / 기타		187,686						84,146.5						감)103,593.5m2
공원시설율 (법정40%)		(40,057㎡ / 241,948㎡) × 100% = 16.56%						(22,783.7㎡ / 115,490.2㎡) x 100% = 19.73%						
건폐율(10%)		(1,249㎡ / 241,948㎡) × 100% = 0.52%						(1,249.0㎡ / 115,490.2㎡) × 100% = 1.08%						
도서관,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관,운동시설 (법정 20%)		(6,352㎡ / 40,057㎡) × 100 =15.86%						(4,599.2㎡ / 22,783.7㎡) × 100 = 20.19%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 계				241,948	40,057		1	1,249	5,574				115,490.2	22,783.7		1	1,249.0	5,574.0		
기반시설	소 계			25,072	10,867								16,530.3	7,970.3						
	도 로			23,556	9,351								14,501.0	5,941.0 (8,560.0)						
	광 장	가	4개소	1,516	1,516						가	2개소	2,029.3	2,029.3						
		가-1	번2동 산27-108일대	(318)	(318)						가-1	번2동 산27-108일대	(1,813.1)	(1,813.1)						
		가-2	번2동 산27-117일대	(217)	(217)						가-2	번2동 산27-117일대	(216.2)	(216.2)						
		가-3	번2동 산27-8일대	(91)	(91)															
		가-4	번2동 산27-8일대	(890)	(890)															
조경시설	소 계			-	-					13			433.5	433.5					16	
	파고라	①	전지역	-	-					13	①	전지역							13	
	정자										③	미아9동 산25-46일대	25.2	25.2						
	연못										④	번2동 산27-108일대	408.3	408.3						
	정 자	②	전지역			목재				3	②	전지역			목재				3	
		②-1	미아9동 산25-50일대			목재 (팔각)				(1)	②-1	미아9동 산25-50일대			목재 (팔각)				(1)	
		②-2	미아9동 산25-1일대			목재 (육각)				(1)	②-2	미아9동 산25-1일대			목재 (육각)				(1)	
		②-3	번2동 산27-120일대			목재 (사각)				(1)	②-3	번2동 산27-120일대			목재 (사각)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휴양시설	소계			574	574					3			1,417.9	1,417.9						
	휴게소	나	4개소	574	574						나	7개소	1,417.9	1,417.9						
		나-1	번2동 산27-120일대	(240)	(240)						나-1	번2동 산27-120일대	(363.8)	(363.8)						
		나-2	번2동 산27-8일대	(90)	(90)															폐지
		나-3	미아9동 산25-1일대	(158)	(158)															폐지
		나-4	번2동 산27-108일대	(86)	(86)							번2동 산27-108일대	(68.0)	(68.0)						
											나-5	번2동 산27-8일대	(12.0)	(12.0)						신규
											나-6	번2동 산27-108일대	(433.4)	(433.4)						신규
											나-7	번2동 산27-5일대	(453.2)	(453.2)						신규
											나-8	번2동 산27-108일대	(37.2)	(37.2)						신규
											나-9	번2동 산 27-108일대	(50.3)	(50.3)						신규
유희시설	소계			2,776	2,776								1,143.2	1,143.2						
	어린이 놀이터	다	4개소	2,776	2,776						다	2개소	1,143.2	1,143.2						
		다-1	미아9동 산25-43일대	(446)	(446)						다-1	미아9동 산25-43일대	(223.7)	(223.7)						
		다-2	번2동 산 27-108일대	(1,000)	(1,000)						다-2	번2동 산 27-108일대	(919.5)	(919.5)						
		다-3	번2동 산27-5일대	(950)	(950)															폐지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다-4	미아9동 산25-28일대	(380)	(380)															폐지
운동시설	소계			4,632	4,632		-	-	-	14			2,879.2	2,879.2					14	
	체력단련장	라	2개소	3,021	3,021						라	5개소	1,524.9	1,524.9						
		라-1	미아9동 산25-52일대	(2,320)	(2,320)						라-1	미아동 산25-52	(249.6)	(249.6)						
		라-2	미아9동 산34-2일대	(701)	(701)						라-2	미아동 산34-9	(440.5)	(440.5)						
											라-3	번2동 산27-8일대	(66.9)	(66.9)						신규
											라-4	미아동 산25-52	(707.9)	(707.9)						신규
											라-5	미아동 산25-11	(60.0)	(60.0)						신규
	다목적운동장	마	미아9동 산25-46일대	515	515															
	배드민턴장	바	번2동 산25-1일대	1,096	1,096						바	3개소	782.4	782.4						
											바-1	미아9동 산25-46일대	(242.0)	(242.0)						신규
											바-2	미아동 산25-62	(290.1)	(290.1)						신규
											바-3	번동 122-43	(250.3)	(250.3)						신규
	체력단련시설	전지역								14	하	2개소	209.5	209.5					14	신규
											하-1	미아9동 산25-43일대	(63.2)	(63.2)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하-2	미아9동 산25-46일대	(146.3)	(146.3)						
	게이트볼장										거	미아동 산25-5	362.4	362.4						신규
교양시설	소 계			19,797	19,797		1	1,249	5,574				5,736.7	5,736.7		1	1,249	5,574		
	도서관	1	번2동 산27-108일대	1,720	1,720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지하1층 지상4층	1,249	5,574		1	번2동 산27-108일대	1,720.0	1,720.0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지하1층 지상4층	1,249	5,574		
	관목원	사	미아9동 산25-1일대	538	538															폐지
	자연학습장	아	번2동 122-55일대	921	921						아	번동 산27-126	129.1	129.1						
	보태닉가든	자	번2동 122-42일대	3,888	3,888						자	번동 122	3,887.6	3,887.6						
	생태습지원	차	번2동 122-10일대	12,730	12,730															폐지
편의시설	소 계			1,411	1,411								3,087.0	3,087.0						
	약수터	카	번2동 123-4일대	164	164															
	주차장	타	3개소	1,247	1,247						타	2개소	3,083.0	3,083.0						
		타-2	미아9동 산25-32일대	(307)	(307)															폐지
		타-3	번3동 산27-108일대	(940)	(940)						타-3	번2동 산27-108일대	(528.7)	(528.7)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타-4	번동 122-10	(2,554.3)	(2,554.3)						신규
	화장실										갸	미아동 산25-69	4.0	4.0						신규
관리시설	소 계												115.9	115.9						신규
	관리사무소										파	번동 122-10	115.9	115.9						
녹지 및 기타				187,686									84,146.5							

2. “다” 지구

가. 시설별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계		442,418.4	49,451.06	3	3,121	9,239.91	50	238,748.7	53,927.36	3	3,121.0	9,239.91	49	증)4,476.3m2
기반시설	소 계	32,344	21,661					21,092.6	18,141.6					감)3,519.4m2
	도 로	31,089	20,406					19,315.0	16,364.0 (2,951)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광 장	1,255	1,255					1,777.6	1,777.6					
조경시설		-	-				4	52.3	52.3				10	증)52.3m2
휴양시설		1,323	1,323				7	1,073.9	1,073.9					감)249.1m2
유희시설		3,696	3,696					3,084.1	3,084.1					감)611.9m2
운동시설		21,783	18,783	2	3,027.77	9,146.68	39	20,153.6	20,153.6	2	3,027.77	9,146.68	39	증)1,370.6m2
교양시설		-	-					6,421.7	6,421.7					증)6,421.7m2
편익시설		4,255.06	3,988.06	1	93.23	93.23		5,267.16	5,000.16	1	93.23	93.23		증)1,021.1m2
녹지 / 기타		379,017.34						181,603.34						감)197,414.0m2
공원시설율 (법정40%)		(49,451.06㎡ / 442,418.4㎡) × 100% = 11.18 %						(53,927.36㎡ / 238,748.7㎡) × 100% = 22.59 %						
건폐율(10%)		(3,121㎡ / 442,418.4㎡) × 100% = 0.71 %						(3,121.0㎡ / 238.748.8㎡) × 100% = 1.31 %						
도서관,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관,운동시설 (법정 20%)		(18,783.0㎡ / 49,451.06㎡) × 100 = 37.98%						(20,153.6㎡ / 53,927.36㎡) × 100 = 37.37%						

나. 시 설 조 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 축 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442,418.4	49,451.06		3	3,121	9,239.91	50			238,748.7	53,927.36		3	3,121.0	9,239.91	49	
기반시설	소 계			32,344	21,661								21,092.6	18,141.6						
	도 로		전지역	31,089	20,406								19,315.0	16,364.0 (2,951)						
	광 장	가	4개소	1,255	1,255						가	5개소	1,777.6	1,777.6						
		가-1	번2동 148-383일대	(177)	(177)						가-1	번2동 148-383일대	(250.4)	(250.4)						
		가-2	번2동 산12일대	(103)	(103)						가-2	번2동 산12일대	(352.4)	(352.4)						
		가-3	번2동 산25-2일대	(124)	(124)						가-3	번2동 산25-2일대	(124.4)	(124.4)						
		가-4	미아동 산1-5일대	(379)	(379)						가-4	미아동 산1-5일대	(379.2)	(379.2)						
		가-5	번2동 산5일대	(472)	(472)						가-5	번2동 산5일대	(472.6)	(472.6)						
		가-6										번2동 314일대	(198.6)	(198.6)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조경시설	소계												52.3	52.3					10	
	파고라	①	전지역	-	-					4										
											③	3개소	52.3	52.3					3	
											③-1	번2동 314일대	(16.0)	(16.0)					(1)	
											③-2	번2동 314일대	(16.0)	(16.0)					(1)	
											③-3		(20.3)	(20.3)					(1)	
	정자	②				목재				7	②				목재				7	
		②-1	번2동 산16일대			목재(사각)				(1)	②-1	번2동 산16일대			목재(사각)				(1)	
		②-2	미아3동 산25-44일대			목재(사각)				(1)	②-2	미아3동 산25-44일대			목재(사각)				(1)	
		②-3	휴게소내(다-1)			목재(육각)				(1)	②-3	휴게소내(다-1)			목재(육각)				(1)	
		②-4	번2동 산23일대			목재(팔각)				(1)	②-4	번2동 산23일대			목재(팔각)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②-5	체력단련장내(라)			목재(사각)				(2)	②-5	체력단련장내(라)			목재(사각)				(2)	
		②-6	휴게소내(다-9)			목재(사각)				(1)	②-6	휴게소내(다-9)			목재(사각)				(1)	
휴양시설	소 계			1,323	1,323								1,073.9	1,073.9						
	휴게소	나	12개소	1,323	1,323						나	10개소	1,073.9	1,073.9						
		나-1	번2동 산20-1일대	(608)	(608)						나-1	번2동 산20-1일대	(551.5)	(551.5)						
		나-2	미아3동 산25-14일대	(143)	(143)															폐지
		나-3	번2동 336-2일대	(124)	(124)															폐지
		나-4	번2동 산25-2일대	(135)	(135)						나-4	번2동 산25-2일대	(106.5)	(106.5)						
		나-5	번2동 314일대	(126)	(126)															폐지
		나-6	미아9동 산25-21일대	(107)	(107)						나-6	미아9동 산25-21일대	(110.7)	(110.7)						
		나-7	미아9동산25-51일대	(8)	(8)						나-7	미아9동산25-51일대	(8.0)	(8.0)						
		나-8	미아9동산25-51일대	(8)	(8)						나-8	미아9동산25-51일대	(8.0)	(8.0)						
		나-9	미아9동산25-51일대	(40)	(40)						나-9	미아9동산25-51일대	(57.9)	(57.9)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나-10	미아3동산25-38일대	(8)	(8)						나-10	미아3동산25-38일대	(8.0)	(8.0)						
		나-11	미아3동산25-38일대	(8)	(8)						나-11	미아3동산25-38일대	(8.0)	(8.0)						
		나-12	미아3동산25-38일대	(8)	(8)						나-12	미아3동산25-38일대	(8.0)	(8.0)						
유희시설	소 계			3,696	3,696								3,084.1	3,084.1						
	어린이놀이터	다	5개소	3,696	3,696						다	5개소	3,084.1	3,084.1						
		다-1	번2동 산5일대	(494)	(494)						다-1	번2동 산5일대	(494.4)	(494.4)						
		다-2	미아3동 산25-44일대	(1,010)	(1,010)						다-2	미아3동 산25-44일대	(732.7)	(732.7)						
		다-3	미아9동 산9-3일대	(1,085)	(1,085)						다-3	미아9동 산9-3일대	(1,085.0)	(1,085.0)						
		다-4	번2동 산23일대	(422)	(422)						다-4	번2동 산23일대	(413.1)	(413.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 축 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다-5	번2동 산25-2일대	(685)	(685)						다-5	번2동 산25-2일대	(358.9)	(358.9)						
운동시설	소 계			21,783	18,783		2	3,027.77	9,146.68	39			20,153.6	20,153.6		2	3,027.77	9,146.68	39	
	체력단련장	라	미아3동 산25-14일대	621	621								840.1	840.1						
	다목적운동장	마	4개소	16,054	13,054			(441)	(441)		마	4개소	12,544.3	12,544.3			(441)	(441)		
		마-1	번2동 산23-1일대	(15,000)	(12,000)			(441)	(441)	4	마-1	번2동 산23-1일대	(11,731.8)	(11,731.8)			(441)	(441)	4	
		마-2	번2동 산5일대	(266)	(266)						마-2	번2동 산5일대	(266.7)	(266.7)						
		마-3	번2동 산17일대	(545)	(545)						마-3	번2동 산17일대	(545.8)	(545.8)						
		마-4	번2동 산23일대	(243)	(243)															폐지
	족구장										마	번동 산23-16	362.6	362.6						신규
	체력단련시설		전지역							35		전지역							35	
	종합운동장	사	번동 산23-1일대	3,688	3,688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지하3층지상2층	1,778.49	7,141.27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사	번동 318	3,688.0	3,688.0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지하3층지상2층	1,778.49	7,141.27		
	실내배드민턴장	아	번2동 산17-8일대	1,420	1,420	SRC조	지하1층지상2층	1,249.28	2,005.41		아	번2동 산17-8일대	1,420.0	1,420.0	SRC조	지하1층지상2층	1,249.28	2,005.41		
	꿈의숲족구장										타	번동 산23-17	490.4	490.4						신규
	배드민턴장										거		808.2	808.2						신규
											거-1	번동 508-2	(292.8)	(292.8)						
											거-2	번동 산19-11	(515.4)	(515.4)						
교양시설	소계												6,421.7	6,421.7						신규
	유아숲체험장										파	번동 산13임	1,318.7	1,318.7						
	유아숲체험장2										겨	번동 336-2	4,015.7	4,015.7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율곡꽃샘체험마당										갸	번동 산20-6	857.0	857.0						
	유아동네숲터										하	번동 산19-10	230.3	230.3						
편의시설	소 계			4,255.06	3,988.06		1	93.23	93.23				5,267.16	5,000.16		1	93.23	93.23		
	약수터	자	4개소	382	382						자	2개소	251.8	251.8						
		자-1	번2동 산16일대	(83)	(83)						자-1	번2동 산16일대	-	-						폐지(도자구역)
		자-2	번2동 산14-1일대	(178)	(178)						자-2	번2동 산14-1일대	(204.5)	(204.5)						
		자-3	번2동 산17-1일대	(57)	(57)						자-3	번2동 산17-1일대	(47.3)	(47.3)						
		자-4	번2동 산23-14일대	(64)	(64)															폐지
	주차장	차	5개소	3,502	3,235						차	4개소	3,461.0	3,194.0						
		차-1	번2동 317일대	(2,037)	(1,770)						차-1	번2동 317일대	(2,037.0)	(1,770.0)						
		차-2	번2동 315-15일대	(282)	(282)						차-2	번2동 315-15일대	(282.0)	(282.0)						
		차-3	번2동 314일대	(604)	(604)						차-3	번2동 314일대	(594.7)	(594.7)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 축 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차-4	번2동 23-14일대	(368)	(368)						차-4	번2동 23-14일대	(547.3)	(547.3)						
		차-6	미아동 산1-5일대	(211)	(211)															폐지
	화장실	카		371.06	371.06	철근조	지상 1층	93.23	93.23		카	미아3동 산25-44일대	371.06	371.06	철근조	지상 1층	93.23	93.23		
	오동자락길 데크로드										고	번동 336-2	671.6	671.6						신규
	데크 로드										교	미아동 산19-80	311.7	311.7						신규
	데크 쉼터										④		200.0	200.0						신규
											④-1	번동 336-2공	(100.0)	(100.0)						
											④-2	번동 336-2공	(100.0)	(100.0)						
녹지 및 기타				379,071.34	-								181,603.34							

다. 도로조서

"나" 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5,159	9,351 (14,205)				
변경	합 계				3,519	5,941 (8,560)				
당초	중로	소 계			605	(11,828)				
변경		소 계			557	(6,633)				
당초		1류	1	20	571	(11,420)	도시계획도	습지생태원 차	주차장 타-2	
변경		1류	1	20	544	(6,455)	도시계획도	주차장 타-4	산책로19	
당초		3류	1	12	34	(408)	도시계획도	광장 가-1	주차장 타-3	
변경		3류	1	12	13	(178)	도시계획도	번동 148-429도	광장 가-1	
당초	소로	소 계			827	1,500 (2,377)				
변경		소 계			560	865 (1,927)				
당초		3류	1	6	250	1,500	시설연결로	광장 가-3	광장 가-2	
변경		3류	1	6	162	661	시설연결로	소로 3-2	휴게소 나-7	
당초		3류	2	6	577	(2,377)	도시계획도	주차장 타-3	어린이놀이터 다-1	
변경		3류	2	6	357	(1,927)	도시계획도	중로 1-1	산책로9	
신규		3류	3	6	41	204	시설연결로	공원경계	산책로7	
당초	산책로	소 계			3,727	7,851				
변경		소 계			2,402	5,076				
당초			1	2	39	78	산책로	산책로2	어린이놀이터 다-3	
폐지										구역
당초			2	2	129	258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폐지										구역
당초			3	4	150	600	산책로	광장 가-3	어린이놀이터 다-3	
변경			3	4	126	343	산책로	소로3-1	휴게소 나-7	
당초			4	2.3	275	632	산책로	광장 가-3	번2동 산27-108	
폐지	산책로									구역
당초			5	2	107	214	산책로	산책로8	산책로4	
폐지										구역
당초			6	2	78	156	산책로	주차장 타-4	휴게소 나-2	
변경			6	2	58	110	산책로	소로3-3	산책로8	
당초			7	2	23	46	산책로	광장 가-4	휴게소 다-2	
변경			7	2	32	66	산책로	소로3-3	산책로8	
당초			8	2	351	702	산책로	휴게소 나-2	산책로9	
변경			8	2	230	459	산책로	주차장 타-3	산책로9	
당초			9	2	264	528	산책로	광장 가-3	체력단련장 라-1	
변경			9	2	268	590	산책로	소로3-2	산책로26	
당초			10	2	79	158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다-1	산책로9	
변경			10	2	82	164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다-1	산책로9	
당초			11	2	216	432	산책로	보태닉가든 자	산책로9	
변경			11	2	132	265	산책로	보태닉가든 자	산책로9	
당초			12	2	70	140	산책로	산책로11	보태닉가든 자	
변경			12	2	70	137	산책로	산책로11	보태닉가든 자	
당초			13	2	43	86	산책로	산책로11	산책로9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변경			13	2	22	64	산책로	122-59임	산책로9	
당초			14	2	55	110	산책로	소로 3-2	체력단련장 라-1	
변경			14	2	58	112	산책로	소로 3-2	체력단련장 라-4	
당초			15	2	193	386	산책로	산책로21	보태닉가든 자	
변경			15	2	14	30	산책로	도자구역	보태닉가든 자	
당초			16	1.5	24	36	산책로	습지생태원 차	산책로15	
폐지										구역
당초			17	1.5	24	36	산책로	습지생태원 차	산책로18	
폐지										구역
당초			18	1.5	86	129	산책로	산책로15	산책로15	
폐지	산책로									구역
당초			19	2~2.5	39	88	산책로	중로 1-1	어린이놀이터 다-4	
변경			19	2~2.5	57	123	산책로	중로 1-1	배드민턴장 마-1	
당초			20	2	321	642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다-4	산책로18	
변경			20	2	189	375	산책로	체력단련시설 하-2	도자구역	
당초			21	2	154	308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13	
변경			21	2	137	255	산책로	체력단련장 라-2	산책로26	
당초			22	2	42	84	산책로	산책로25	산책로26	
변경			22	2	48	62	산책로	산책로25	산책로26	
당초			23	2	21	42	산책로	산책로26	체력단련장 라-1	
변경			23	2	27	51	산책로	산책로26	산25-52공	
당초			24	2	22	44	산책로	산책로25	산책로26	
변경			24	2	28	51	산책로	산책로25	산책로26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25	2	143	286	산책로	관목원 사	산책로26	
변경			25	2	160	326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26	
당초			26	2	133	266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21	
변경			26	2	137	276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21	
당초			27	2	18	36	산책로	산책로25	산책로29	
변경			27	2	19	39	산책로	산책로25	산책로29	
당초			28	2	87	174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29	
변경			28	2	31	64	산책로	소로 3-2	산25-62묘	
당초			29	2	130	260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25	
변경			29	2	49	78	산책로	산책로27	산책로25	
당초			30	4	80	318	산책로	습지생태원 차	보태닉가든 자	
변경			30	4	88	327	산책로	강북오동골프클럽 하	보태닉가든 자	
당초			31	1	73	73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다-2	번2동 산27-108	
변경			31	1	73	73		휴게소 나-9	휴게소 나-8	
당초	산책로		32	1	13	13	산책로	광장 가-1	번2동 산27-108	
변경			32	1	13	13	산책로	광장 가-1	휴게소 나-8	
당초			33	2	3	6	산책로	휴게소 나-4	어린이놀이터 다-2	
변경			33	2	5	10	산책로	휴게소 나-4	어린이놀이터 다-2	
당초			34	2	242	484	산책로	광장2	휴게소 나-4	
변경			34	2	249	498	산책로	광장 가-2	휴게소 나-4	
신설			35		27	115	산책로	중로 3-1	광장 가-1	

다. 도로조서

"다" 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9,629	20,406 (10,683)				
변경	합 계				6,421	16,364 (2,951)				
당초	중로	소 계			659	(8,118)				
변경		소 계			178	(1,296)				
당초		3류	1	12~15	625	(7,710)	도시계획도	산1-4,공원경계	산13-1,공원경계	
변경		3류	1	12~ 15	144	(864)	도시계획도	산1-4,공원경계	도자구역	
당초		3류	2	12	34	(408)	도시계획도	광장 가-1	산책로57	
변경		3류	2	12	34	(433)	도시계획도	광장 가-1	소로2-1	
당초	소로	소 계			777	4,376 (2,565)				
변경		소 계			777	4,655 (1,553)				
당초		1류	1	10	190	1,900	진 입 로	번2동 637-7	번2동 산25-8	
변경		1류	1	10	190	1,931	진 입 로	번2동 637-7	번2동 산25-8	
당초		1류	2	11	20	220	진 입 로	소로 1-1	다목적운동장 마-1	
변경		1류	2	11	20	230	진 입 로	소로 1-1	다목적운동장 마-1	
당초		2류	1	9	285	(2,565)	도시계획도	중로 3-2종점	산책로1종점	
변경		2류	1	6	285	(1,654)	도시계획도	중로 3-2종점	산책로 1종점	
당초		2류	2	8	282	2,256	시설연결로	소로 3-1종점	중로 3-2시점	
변경		2류	2	8	282	2,494	시설연결로	소로 3-1종점	중로 3-2시점	
당초	산책로	소 계			8,193	16,030				
변경		소 계			5,466	11,647				
당초			1	2	619	1,238	산책로	광장 가-5	미아3동 산13-6	
변경			1	2	109	249	산책로	광장 가-4	도자구역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2	2	90	180	산책로	광장 가-5	산책로1	
변경			2	2	94	185	산책로	광장 가-4	산책로1	
당초			3	2	122	244	산책로	광장 가-5	부지경계	
변경			3	2	122	268	산책로	광장 가-4	부지경계	
당초	산책로		4	2	37	74	산책로	다목적운동장 마-2	산책로5	
변경			4	2	37	77	산책로	다목적운동장 마-2	산책로5	
당초			5	2	144	288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	
변경			5	2	148	301	산책로	부지경계	도자구역	
당초			6	2	155	31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	
변경			6	2	103	220	산책로	부지경계	도자구역	
당초			7	2	300	600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6	
변경			7	2	135	394	산책로	광장 가-2	도자구역	
당초			8	1.5	57	86	산책로	광장 가-2	산책로7	
변경			8	1.5	39	83	산책로	광장 가-2	산책로12	
당초			9	2	41	82	산책로	광장 가-2	산책로12	
변경			9	2	74	149	산책로	산책로 12	산책로7	
당초			10	2	163	326	산책로	산책로7	산책로12	
변경			10	2	55	112	산책로	산책로7	다목적운동장 마-3	
당초			11	2	182	364	산책로	산책로7	산책로12	
폐지										구역
당초			12	2	545	1,09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	
변경			12	2	394	809	산책로	부지경계	도자구역	
당초			13	2	208	416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변경			13	2	210	418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2	
당초			14	2	72	144	산책로	산책로13	배드민턴장 바-3	
변경			14	2	72	145	산책로	산책로13	배드민턴장 거	
당초			15	2	163	326	산책로	산책로31	배드민턴장 바-3	
변경			15	2	80	318	산책로	산책로31	배드민턴장 거	
당초			16	2	58	116	산책로	산책로15	산책로15	
변경			16	2	65	127				
당초			17	2	52	104	산책로	산책로18	산책로15	
변경			17	2	52	113				
당초			18	2	203	406	산책로	산책로31	약수터 아-3	
변경	산책로		18	2	73	132	산책로		도자구역	
당초			19	2	169	318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20	
폐지										구역
당초			20	2	520	1,040	산책로	산책로15	어린이놀이터 다-2	
변경			20	2	177	361	산책로	산책로13	소로 2-1	
당초			21	2	63	126	산책로	산책로12	산책로22	
변경			21	2	40	99	산책로	산책로12	산책로22	
당초			22	2	158	316	산책로	산책로23	산책로12	
변경			22	2	136	292	산책로	산책로23	산책로12	
당초			23	2	107	214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1	
변경			23	2	94	191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1	
당초			24	2	36	72	산책로	산책로23	배드민턴장 바-2	
변경			24	2	39	75	산책로	산책로23	배드민턴장 거-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25	2	76	152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23	
변경			25	2	75	132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23	
당초			26	2	61	122	산책로	산책로20	어린이놀이터 다-2	
변경			26	2	64	125	산책로	산책로20	어린이놀이터 다-2	
당초			27	2	292	584	산책로	산책로29	산책로20	
변경			27	2	33	66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20	
당초			28	2	122	244	산책로	배드민턴장 바-4	어린이놀이터 다-2	
변경			28	2	39	77	산책로	도자구역	어린이놀이터 다-2	
당초			29	2	335	670	산책로	산책로18	산책로37	
변경			29	2	8	16	산책로	산책로18	도자구역	
당초			30	2	87	174	산책로	산책로31	산책로29	
변경			30	2	47	92	산책로	산책로31	도자구역	
당초			31	2	14	28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32시점	
변경			31	2	13	4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32시점	
당초			32	2	47	94	산책로	산책로31	산책로29	
변경			32	2	30	69	산책로	산책로31	도자구역	
당초	산책로		33	2	18	36	산책로	산책로32	산책로30	
폐지										구역
당초			34	2	73	146	산책로	휴게소 나-3	산책로35	
변경			34	2	37	79	산책로	유아숲체험장 겨	도자구역	
당초			35	2	169	338	산책로	산책로32	산책로37	
변경			35	2	32	89	산책로	산책로32	도자구역	
당초			36	2	150	30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40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변경			36	2	85	168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40	
당초			37	2	454	908	산책로	산책로40	산책로28	
변경			37	2	378	788	산책로	산책로40	산책로54	
당초			38	2	40	80	산책로	산책로40	산책로37	
변경			38	2	40	81	산책로	산책로40	산책로37	
당초			39	2	38	76	산책로	산책로37	산책로40	
변경			39	2	38	78	산책로	산책로37	산책로40	
당초			40	2	549	1,098	산책로	종합체육관(사)	산책로54	
변경			40	2	549	1,098	산책로	강북웰빙 스포츠센터	산책로54	
당초			41	1.5	96	144	산책로	소로 1-1	광장 가-4	
변경			41	1.5	96	144	산책로	소로 1-1	광장 가-3	
당초			42	1.5	28	42	산책로	소로 1-1	휴게소 나-4	
변경			42	1.5	37	58	산책로	소로 1-1	산책로41	
당초			43	2	115	230	산책로	휴게소 나-5	어린이놀이터 다-5	
변경			43	2	140	294	산책로	주차장 차-3	대지경계	
당초			44	1.5	143	215	산책로	산책로43	산책로45	
변경			44	1.5	149	288	산책로	산책로43	산책로45	
당초			45	1.5	119	179	산책로	산책로40	부지경계	
변경			45	1.5	119	179	산책로	산책로40	산책로64	
당초			46	1.5	14	21	산책로	산책로45	다목적운동장 마-4	
변경			46	1.5	14	21	산책로	산책로45	족구장 마	
당초	산책로		47	1.5	20	30	산책로	다목적운동장 마-4	부지경계	
변경			47	1.5	20	30	산책로	족구장 마	산책로 6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48	2	50	100	산책로	산책로49	산책로40	
변경			48	2	55	109	산책로	산책로49	산책로40	
당초			49	1.5	95	143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48	
변경			49	1.5	151	226	산책로	산책로64	산책로48	
당초			50	1.5	19	29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48	
변경			50	1.5	21	32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48	
당초			51	2	45	9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52	
변경			51	2	44	87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52	
당초			52	2	99	198	산책로	산책로48	산책로53	
변경			52	2	99	196	산책로	산책로48	산책로53	
당초			53	2	36	72	산책로	산책로54	어린이놀이터 다-4	
변경			53	2	37	75	산책로	산책로54	어린이놀이터 다-4	
당초			54	2	96	192	산책로	산책로37	휴게소 나-2	
변경			54	2	100	175	산책로	산책로37	중로 3-2	
당초			55	2	63	126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다-2	체력단련장 라-1	
변경			55	2	65	142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다-2	체력단련장 라	
당초			56	2	14	28	산책로	산책로55	휴게소 나-1	
변경			56	2	19	35	산책로	산책로 55	휴게소 나-1	
당초			57	1.8	202	364	산책로	중로 3-2	휴게소 나-9	
변경			57	1.8	191	349	산책로	중로 3-2	휴게소 나-9	
당초			58	2	83	166	산책로	미아3동 산25-38	휴게소 나-6	
변경			58	2	92	183	산책로	산책로62	휴게소 나-6	
당초			59	1.8	17	31	산책로	휴게소 나-1	휴게소 나-2	
삭제										산53통합
당초			60	2	6	12	산책로	휴게소 나-2	중로 3-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삭제										산53 통합
당초			61	2	38	76	산책로	휴게소 나-9	미아3동 산25-38	
변경			61	2	38	67	산책로	후게소 나-9	미아3동 산25-38	
당초			62	2	6	12	산책로	285-110 차	산책로61	
변경			62	2	6	12	산책로	285-110 차	산책로 61	
신설			63	2	36	82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 26	
신설	산책로		64	3	121	433	산책로	산책로 49	주차장 차-4	
신설			65	3	110	342	산책로	미아동 258-56	산 19-106	
신설			66	2	22	44	산책로	산책로1	다목적운동장 마-2	

조성계획도(변경전)

오동근린공원("나"지구)

SCALE=1/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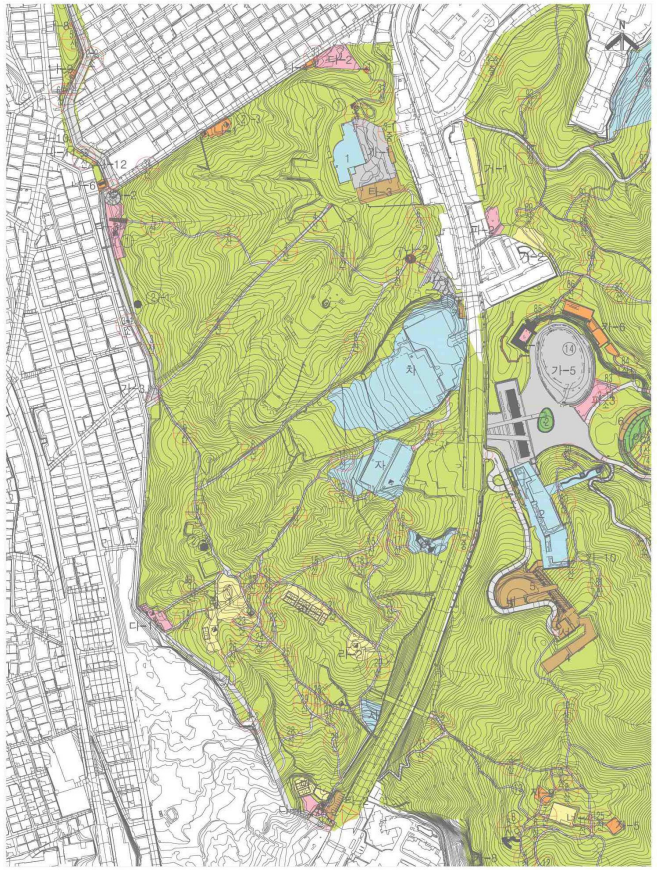

■ KEY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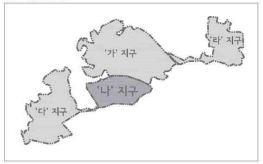

■ 범 례 ("나"지구)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241,948	40,057	30	
기반시설	소 계		25,072	10,867		
	도 로		23,556	9,351		
	광장	가	1,516	1,516		
		가-1	(318)	(318)		
		가-2	(217)	(217)		
		가-3	(91)	(91)		
		가-4	(890)	(890)		
조경시설	소 계				13	
	파고라	①			13	
휴양시설	소 계		574	574	3	
	휴게소	나	574	574		
		나-1	(240)	(240)		
		나-2	(90)	(90)		
		나-3	(158)	(158)		
		나-4	(86)	(86)		
	정 자	②			3	
		②-1			(1)	
		②-2			(1)	
		②-3			(1)	
유희시설	소 계		2,776	2,776		
	어린이 놀이터	다	2,776	2,776		
		다-1	(446)	(446)		
		다-2	(1,000)	(1,000)		
		다-3	(950)	(950)		
		다-4	(380)	(380)		
운동시설	소 계		4,632		14	
	체력단련장	라	3,021			
		라-1	(2,320)			
		라-2	(701)			
	다목적 운동장	마	515			
	배드민턴장	바	1,096			
	체력단련시설				14	
교양시설	소 계		19,797	19,797		
	도서관	1	1,720	1,720		
	관목원	사	538	538		
	자연학습장	아	921	921		
	보태녀가촌	자	3,888	3,888		
	생태습지원	차	12,730	12,730		
편익시설	소 계		1,411	1,411		
	약수터	키	164	164		
	주차장	타	1,247	1,247		
		타-2	(307)	(307)		
		타-3	(940)	(940)		
녹지및기타	소 계		187,686			
	녹 지		187,686			

조성계획도(변경전)

SCALE=1/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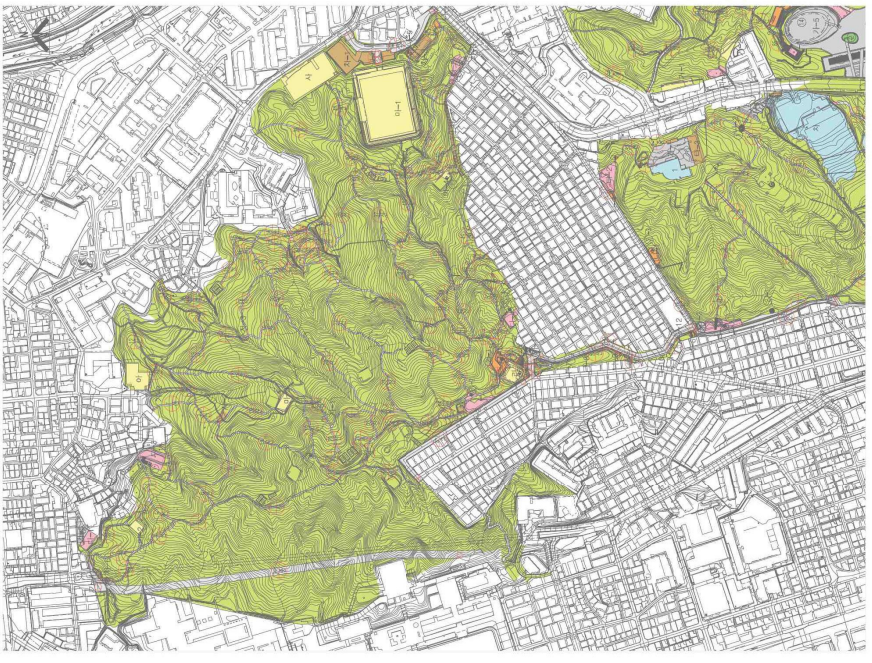

■ KEY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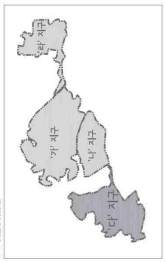

오동근린공원("다"지구)

■ 범 례 ("다"지구)

구분	시설명	부호	면적(㎡)	시설보호(㎡)	증감(기)	비고
기반시설	계		442,419.4	49,451.06	60	
	소계		32,344	27,881		
	도로		31,089	20,466		
	광장	가	1,255	1,255		
		가-1	(177)	(177)		
		가-2	(193)	(193)		
		가-3	(124)	(124)		
		가-4	(379)	(379)		
		가-5	(472)	(472)	4	
공공시설	소계				4	
	파고라	①			4	
유휴시설	소계		1,323	1,323		
	휴게소	나	1,323	1,323		
		나-1	(603)	(603)		
		나-2	(143)	(143)		
		나-3	(124)	(124)		
		나-4	(126)	(126)		
		나-5	(126)	(126)		
		나-6	(107)	(107)		
		나-7	(8)	(8)		
		나-8	(8)	(8)		
		나-9	(40)	(40)		
		나-10	(8)	(8)		
		나-11	(8)	(8)		
		나-12	(98)	(98)		
	잡 지	⑦			7	
		⑦-1			(1)	
		⑦-2			(1)	
		⑦-3			(1)	
		⑦-4			(1)	
		⑦-5			(2)	
		⑦-6			(1)	
녹지시설	소 계		3,696	3,696		
	어린이 놀이터	다	3,696	3,696		
		다-1	(494)	(494)		
		다-2	(1,111)	(1,111)		
		다-3	(1,085)	(1,085)		
		다-4	(422)	(422)		
		다-5	(584)	(584)		
운동시설	소 계		21,783	18,783	39	
	체육단련장	라	621	621		
	다목적 운동장	마	16,004	13,004	4	
		마-1	(10,000)	(10,000)	(4)	
		마-2	(266)	(266)		
		마-3	(545)	(545)		
		마-4	(243)	(243)	35	
	체육단련시설	사	3,688	3,688		
	종합운동장					
	야외트레이닝장	아	1,420	1,420		
경관시설	계		4,265	3,965	6	
	녹수대	자	382	382		
		자-1	(83)	(83)		
		자-2	(178)	(178)		
		자-3	(57)	(57)		
		자-4	(64)	(64)		
	주차장	차	3,602	3,335		
		차-1	(2,037)	(1,770)		
		차-2	(282)	(282)		
		차-3	(604)	(604)		
		차-4	(388)	(388)		
		차-5	(291)	(291)		
녹지대	계		371,106	371,106		
	녹지	가	379,071.34	379,071.34		
녹지대	계		379,071.34	379,07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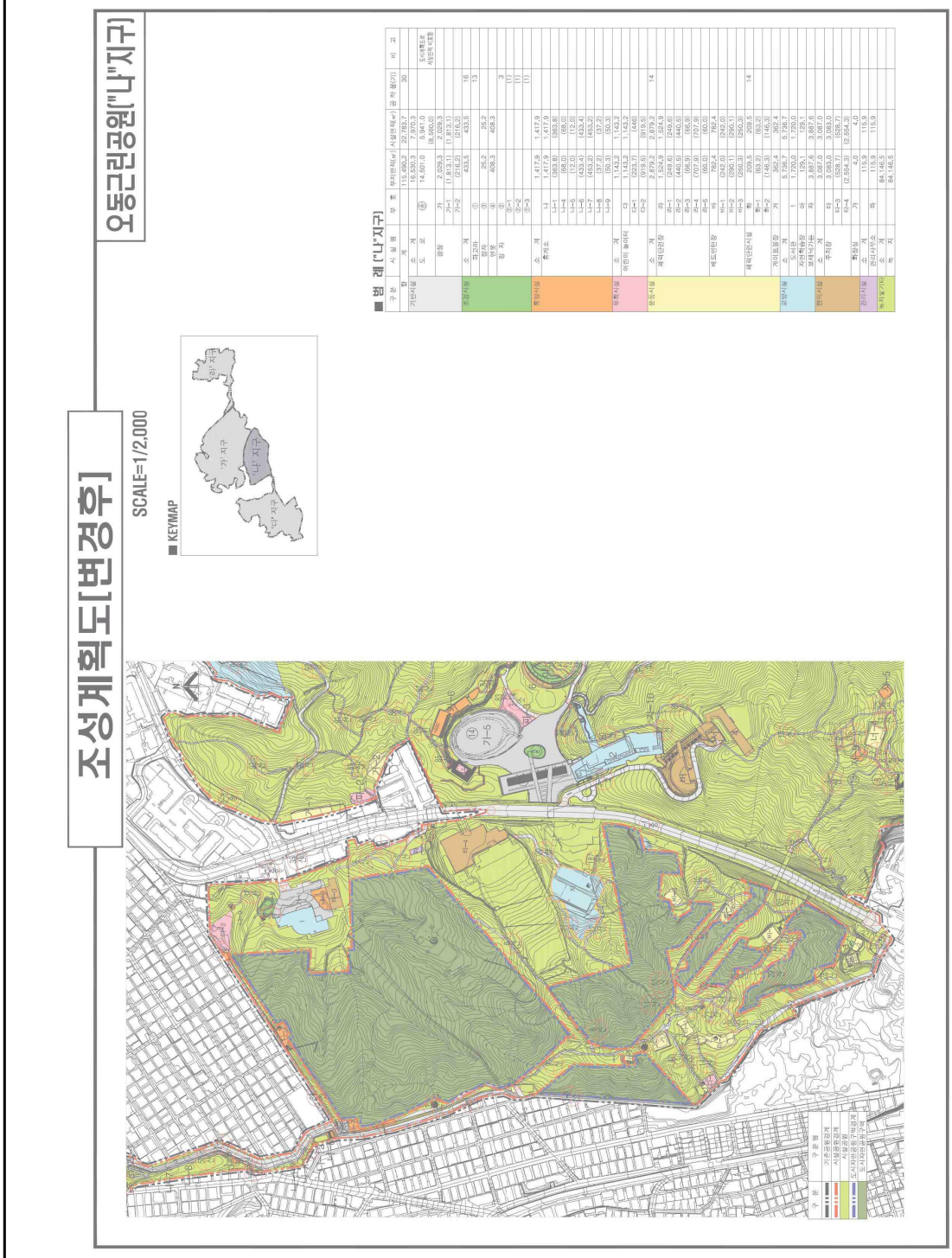
조성계획도[변경후]
SCALE=1/2,000
KEYMAP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
오동근린공원("나"지구)
범 례 ("나"지구)

조성계획도[변경후]

오동근린공원("다"지구)

SCALE=1/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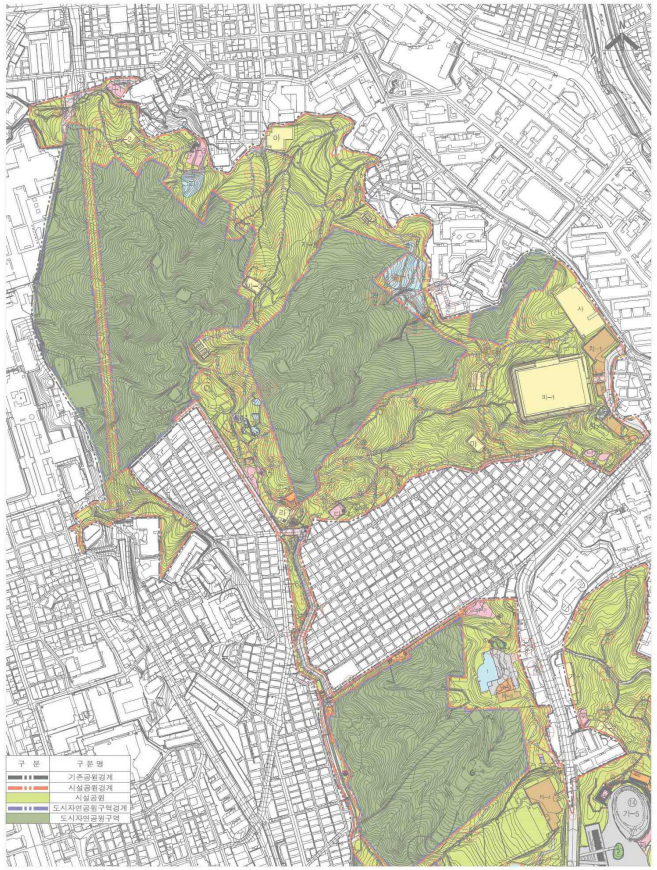

■ KEYMAP



■ 범 례 ("다"지구)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238,748.7	53,927.36	49	
기반시설	소 계		21,092.6	18,141.6		
	도 로	㉮	19,315.0	16,364.0 (2,951.0)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광장	가	1,777.6	1,777.6		
		가-1	(250.4)	(250.4)		
		가-2	(352.4)	(352.4)		
		가-3	(124.4)	(124.4)		
		가-4	(379.2)	(379.2)		
		가-5	(472.6)	(472.6)		
		가-6	(198.6)	(198.6)		
조경시설	소 계		52.3	52.3	10	
	화고라	③	52.3	52.3	3	
		③-1	(16.0)	(16.0)	(1)	
		③-2	(16.0)	(16.0)	(1)	
		③-3	(20.3)	(20.3)	(1)	
	정 자	②			7	
		②-1			(1)	
		②-2			(1)	
		②-3			(1)	
		②-4			(1)	
		②-5			(2)	
		②-6			(1)	
휴양시설	소 계		1,073.9	1,073.9		
	휴게소	나	1,073.9	1,073.9		
		나-1	(551.5)	(551.5)		
		나-4	(106.5)	(106.5)		
		나-6	(110.7)	(110.7)		
		나-7	(8.0)	(8.0)		
		나-8	(8.0)	(8.0)		
		나-9	(57.9)	(57.9)		
		나-10	(8.0)	(8.0)		
		나-11	(8.0)	(8.0)		
		나-12	(8.0)	(8.0)		
유희시설	소 계		3,084.1	3,084.1		
	어린이 놀이터	다	3,084.1	3,084.1		
		다-1	(494.4)	(494.4)		
		다-2	(732.7)	(732.7)		
		다-3	(1,085.0)	(1,085.0)		
		다-4	(413.1)	(413.1)		
		다-5	(358.9)	(358.9)		
운동시설	소 계		20,153.6	20,153.6	39	
	체력단련장	라	840.1	840.1		
	다목적 운동장	마	12,544.3	12,544.3	4	
		마-1	(11,731.8)	(11,731.8)	(4)	
		마-2	(266.7)	(266.7)		
		마-3	(545.8)	(545.8)		
	축구장	마	362.6	362.6		
	강북월드스포츠센터	사	3,688.0	3,688.0		
	실내배드민턴장	아	1,420.0	1,420.0		
	품목숲축구장	타	490.4	490.4		
	배드민턴장	거	808.2	808.2		
		거-1	(292.8)	(292.8)		
		거-2	(515.4)	(515.4)		
	체력단련시설				35	
교양시설	소 계		6,421.7	6,421.7		
	유아숲체험장	파	1,318.7	1,318.7		
	유아숲체험장2	게	4,015.7	4,015.7		
	율곡물생체험미당	가	857.0	857.0		
	유아동네숲터	하	230.3	230.3		
편익시설	소 계		5,267.16	5,000.16		
	약수터	자	251.8	251.8		
		자-2	(204.5)	(204.5)		
		자-3	(47.3)	(47.3)		
	주차장	차	3,461.0	3,194.0		
		차-1	(2,037.0)	(1,770.0)		
		차-2	(282.0)	(282.0)		
		차-3	(594.7)	(594.7)		
		차-4	(547.3)	(547.3)		
	화장실	카	371.06	371.06		
	오동자락실데크로드	고	671.6	671.6		
	데크로드	교	311.7	311.7		
	데크쉼터	④	200.0	200.0		
		④-1	(100.0)	(100.0)		
		④-2	(100.0)	(100.0)		
녹지및기타	소 계		181,603.34			
	녹 지		181,603.34			

◈ 강북구공고 제2021-184호

도시계획시설(북한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7.)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55호(2004.8.10.)로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로 변경된 강북구 미아동 산108-19 외 북한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며, 본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8일
강 북 구 청 장

가.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산108-19 외
나. 북한산근린공원(강북) 면적: 207,702.9㎡(강북구 북한산근린공원 22~37지구)
다. 공원조성계획 변경내용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산108-19 외
 - 내　용 :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 반영 등
라. 열람장소 : 강북구청 5층 공원녹지과(☎ 02-901-6925)
마.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18:00)
바. 관계도서 : 조성계획도,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산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2021. 01

요구부서 : 은평구청, 서대문구청, 종로구청, 성북구청, 강북구청

1. 북한산 근린공원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4,439,776.00	108,741.62	30	3,854.75	4,284.86	405	366,391.94	55,516.61	18	2,061.80	4,681.27	355	감 53,225.01㎡
공원시설구역	소 계	809,822.87	99,915.96	26	3,747.43	4,173.38	393	366,391.94	55,516.61	18	2,061.80	4,681.27	355	감 44,399.35㎡
	용화사지구	276,995.87	21,935.00	9	59.28	59.28	183	-	-	-	-	-	-	감 21,935.00㎡
	1지구	52,689.00	11,806.94	1	52.68	52.68	65	32,850.40	7,545.89	1	93.52	93.52	52	증 259.27㎡ (불광지구)
	2지구							18,488.70	4,520.32	1	18.18	18.18	6	
	3지구	-	-	-	-	-	-	753.80	28.79	-	-	-	-	증 28.79㎡
	4지구	-	-	-	-	-	-	1,521.60	55.44	-	-	-	-	증 55.44㎡
	5지구	-	-	-	-	-	-	1,138.20	-	-	-	-	-	
	6지구	-	-	-	-	-	-	482.80	-	-	-	-	-	
	7지구	-	-	-	-	-	-	5,202.50	1,306.54	-	-	-	-	증 1,306.54㎡
	8지구	-	-	-	-	-	-	351.00	7.06	-	-	-	-	증 7.06㎡
	9지구	193,208.00	17,792.00	2	134.00	134.00	17	68,700.00	8,931.11	1	86.63	86.63	59	감 8,860.89㎡ (호박골지구)
	10지구	121,000.00	5,660.98	8	3,098.54	3,524.49	77	17,617.30	3,792.96	5	709.74	3,334.69	21	감 1,868.02㎡ (종로평창지구)
	11지구	-	-	-	-	-	-	2,698.30	233.64	-	-	-	4	증 233.64㎡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12지구	-	-	-	-	-	-	20.20	7.98	-	-	-	-	증 7.98㎡
	13지구	-	-	-	-	-	-	28.60	5.19	-	-	-	-	증 5.19㎡
	14지구	165,930.00	42,721.04	6	402.93	402.93	51	6,338.50	1,697.97	1	96.37	90.89	16	감 41,023.07㎡ (배밭골지구)
	15지구	-	-	-	-	-	-	469.10	132.46	-	-	-	-	증 132.46㎡
	16지구	-	-	-	-	-	-	27.40	0.06	-	-	-	-	증 0.06㎡
	17지구	-	-	-	-	-	-	497.90	-	-	-	-	-	
	18지구	-	-	-	-	-	-	35.50	0.38	-	-	-	-	증 0.38㎡
	19지구	-	-	-	-	-	-	971.50	249.44	-	-	-	-	증 249.44㎡
	20지구	-	-	-	-	-	-	0.04	0.04	-	-	-	-	증 0.04㎡
	21지구	-	-	-	-	-	-	495.70	-	-	-	-	-	
	22지구	-	-	-	-	-	-	182,306.30	22,510.01	5	591.74	591.74	114	증 22,510.01㎡
	23지구	-	-	-	-	-	-	11,489.30	3,115.50	1	13.00	13.00	83	증 3,115.50㎡
	24지구	-	-	-	-	-	-	907.50	-	-	-	-	-	
	25지구	-	-	-	-	-	-	107.30	-	-	-	-	-	
	26지구	-	-	-	-	-	-	1,449.40	162.93	-	-	-	-	증 162.93㎡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27지구	-	-	-	-	-	-	56.80	-	-	-	-	-	
	28지구	-	-	-	-	-	-	343.40	-	-	-	-	-	
	29지구	-	-	-	-	-	-	821.30	212.52	-	-	-	-	증 212.52㎡
	30지구	-	-	-	-	-	-	1,318.00	-	-	-	-	-	
	31지구	-	-	-	-	-	-	4,758.60	497.21	1	198.62	198.62	-	증 497.21㎡
	32지구	-	-	-	-	-	-	36.60	-	-	-	-	-	
	33지구	-	-	-	-	-	-	1,350.30	185.47	-	-	-	-	증 185.47㎡ (도시계획도로 309.81)
	34지구	-	-	-	-	-	-	312.00	-	-	-	-	-	증 312.00㎡
	35지구	-	-	-	-	-	-	141.00	61.72	-	-	-	-	증 141.00㎡
	36지구	-	-	-	-	-	-	1,272.70	254.00	2	254.00	254.00	-	증 254.00㎡
	37지구	-	-	-	-	-	-	1,032.40	-	-	-	-	-	
시설지구외		3,629,923.13	8,825.66	4	107.32	111.48	12	-	-	-	-	-	-	감 8,825.66㎡
시설율 (법정40%)		110,410.58 / 4,439,776.00 x 100 = 2.49%						55,514.61 / 366,391.90 x 100 = 15.15%						
건폐율 (법정10%)		3,764.51 / 4,439,776.00 x 100 = 0.08%						2,061.80 / 366,391.90 x 100 = 0.56%						

북한산 근린공원 22지구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	182,306.30	22,510.01	5	591.74	591.74	114	
기반시설	소계	-	-	-	-	-	-	13,096.96	13,096.96	-	-	-	-	
	도로	-	-	-	-	-	-	12,296.96	12,296.96	-	-	-	-	
	광장	-	-	-	-	-	-	800.00	800.00	-	-	-	-	
조경시설		-	-	-	-	-	-	2,006.19	2,006.19	-	-	-	-	
휴양시설		-	-	-	-	-	-	2,851.57	2,851.57	-	-	-	62	
유희시설		-	-	-	-	-	-	1,694.73	1,694.73	-	-	-	17	
운동시설		-	-	-	-	-	-	1,219.52	1,219.52	-	-	-	35	
교양시설		-	-	-	-	-	-	473.50	473.50	2	473.50	473.50	-	
편익시설								171.15	171.15	2	103.04	103.04	-	
관리시설		-	-	-	-	-	-	996.39	996.39	1	15.20	15.20	-	
녹지 및 기타		-	-	-	-	-	-	159,796.29	-	-	-	-	-	

북한산 근린공원 22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기)	
합 계				-	-	-	-	-	-	-			182,306.30	22,510.01	철근콘	5	591.74	591.74	114	
기반시설	소 계			-	-	-	-	-	-	-			13,096.96	13,096.96	-	-	-	-	-	
	도 로			-	-	-	-	-	-	-			12,296.96	12,296.96	-	-	-	-	-	
	광장										가		800.00	800.00	-	-	-	-	-	
조경시설	소 계			-	-	-	-	-	-	-			2,006.19	2,006.19	-	-	-	-	-	
	잔디마당			-	-	-	-	-	-	-	나		793.11	793.11	-	-	-	-	-	
	생태연못										다		563.60	563.60	-	-	-	-	-	
	초회원			-	-	-	-	-	-	-	라		649.48	649.48	-	-	-	-	-	
휴양시설	소 계			-	-	-	-	-	-	-			2,851.57	2,851.57	-	-	-	-	62	
	휴게쉼터			-	-	-	-	-	-	-	마		2,851.57	2,851.57	-	-	-	-	-	
유희시설	소 계			-	-	-	-	-	-	-			1,694.73	1,694.73	-	-	-	-	17	
	어린이놀이터			-	-	-	-	-	-	-	바		681.66	681.66	-	-	-	-	-	
	숲놀이터			-	-	-	-	-	-	-	사		1,013.07	1,013.07	-	-	-	-	-	

구 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운동시설	소 계			-	-	-	-	-	-	-			1,219.52	1,219.52	-	-	-	-	35	
	체력단련장			-	-	-	-	-	-	-	아		636.45	636.45	-	-	-	-	-	
	배드민턴장			-	-	-	-	-	-	-	자		211.41	211.41	-	-	-	-	-	
교양시설	소 계			-	-	-	-	-	-	-			473.50	473.50	철근콘	2	473.50	473.50	-	
	생태체험관			-	-	-	-	-	-	-	1		441.55	441.55	철근콘	1	441.55	441.55	-	
	도서관			-	-	-	-	-	-	-	2		31.95	31.95	철근콘	1	31.95	31.95	-	
편익시설	소 계			-	-	-	-	-	-	-			171.15	171.15	철근콘	2	103.04	103.04	-	
	화장실			-	-	-	-	-	-	-	3		171.15	171.15	철근콘	2	103.04	103.04	-	
관리시설	소계												996.39	996.39	철근콘	1	15.20	15.20	-	
	주차장										차		249.42	249.42	-	-	-	-	-	
	배수지										4		746.97	746.97	철근콘	1동	15.20	15.20	-	
녹지및기타	소 계			-	-	-	-	-	-	-			159,796.29	-	-	-	-	-	-	
	녹 지			-	-	-	-	-	-	-			159,796.29	-	-	-	-	-	-	

북한산 근린공원 22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	-				
변 경					5,152.1	12,296.96				
당 초	소 로	계			-	-				
변 경					591.9	3,156.89				
신 설		3	1	2.0-5.0	58.70	193.59	진입로	공원경계	배수지 2	
신 설		3	2	4.0	140.40	562.36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5	
신 설		3	3	4.0-10.5	251.90	1,348.0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3	4	6.0-9.8	140.90	1,052.94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 초	산책로	계			-	-				
변 경					4,560.2	9,140.07				
신 설			1	1.5	94.9	140.25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2	2.0	41.1	83.02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3	
신 설			3	1.5	102.2	153.33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3	
신 설			4	1.5	75.7	114.36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3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5	1.5	16.5	24.74	연결로	소로 3-3	화장실 1-1	
신 설			6	1.5-4.0	121.7	329.61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 4	
신 설			7	1.5	37.5	57.47	산책로	산책로 11	산책로 11	
신 설			8	1.5	31.6	47.49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7	
신 설			9	1.5	47.2	72.27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1	
신 설			10	1.5	24.9	37.41	연결로	휴게쉼터 마-1	어린이놀이터 바-1	
신 설			11	1.5	82.4	123.82	연결로	소로 3-1	휴게쉼터 마-1	
신 설			12	1.5	90.0	138.37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3	
신 설			13	1.2	43.6	52.30	연결로	소로 3-3	생태체험관 1	
신 설			14	1.5	18.9	29.19	산책로	산책로 15	산책로 15	
신 설			15	2.0	30.3	60.81	연결로	소로 3-3	생태체험관 1	
신 설			16	1.5	13.1	35.38	산책로	산책로 15	산책로 15	
신 설			17	1.5	44.7	68.22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3	
신 설			18	2.0	11.0	29.52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9	
신 설			19	1.5-5.0	356.0	440.78	산책로	소로 3-3	산책로 69	
신 설			20	1.5	6.5	10.75	연결로	산책로 26	휴게쉼터 마-7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21	1.5	12.7	21.14	산책로	산책로 26	산책로 26	
신 설			22	1.5	63.4	97.14	산책로	산책로 26	산책로 24	
신 설			23	2.0	16.3	34.35	산책로	산책로 26	산책로 22	
신 설			24	2.0-4.0	128.0	479.73	산책로	산책로 26	산책로 19	
신 설			25	3.0	46.0	144.52	산책로	산책로 26	산책로 24	
신 설			26	1.5-4.8	247.7	489.93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9	
신 설			27	2.5-4.5	196.2	490.82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6	
신 설			28	1.5	42.9	64.75	연결로	진입광장 가-1	휴게쉼터 마-10	
신 설			29	1.0	15.6	15.66	연결로	산책로 26	숲놀이터 사-2	
신 설			30	1.5	67.2	100.51	연결로	휴게쉼터 마-9	휴게쉼터 마-10	
신 설			31	1.5	13.8	21.11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2	
신 설			32	2.0	13.8	29.64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45	
신 설			33	1.5	29.8	45.85	연결로	초화원 라	산책로 45	
신 설			34	1.5	154.4	231.08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2	
신 설			35	2.0-5.5	126.0	398.22	산책로	소로 3-5	진입광장 가-2	
신 설			36	2.0	29.9	59.78	산책로	산책로 46	산책로 48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37	2.0-4.8	81.3	171.80	연결로	진입광장 가-2	휴게쉼터 마-13	
신 설			38	1.5-4.0	113.6	340.44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48	
신 설			39	1.0	36.6	37.02	연결로	산책로 51	휴게쉼터 마-11	
신 설			40	2.0	90.6	182.03	연결로	산책로 46	휴게쉼터 마-12	
신 설			41	3.0	14.2	45.47	진입로	공원경계	휴게쉼터 마-12	
신 설			42	2.0-4.0	47.7	118.48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52	
신 설			43	2.0	37.8	75.96	연결로	산책로 57	휴게쉼터 마-13	
신 설			44	2.5	17.7	44.22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57	
신 설			45	1.5-3.0	68.3	205.0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60	
신 설			46	2.0	45.9	88.3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47	1.5	4.8	8.06	산책로	산책로 67	산책로 19	
신 설			48	1.5	114.0	170.97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49	1.0	60.3	60.27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69	
신 설			50	1.5-2.0	411.1	400.84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71	
신 설			51	1.5	19.1	30.16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69	
신 설			52	1.5	54.3	81.52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53	3.0-5.0	272.0	870.39	진입로	공원경계	진입광장 가-4	
신 설			54	3.0	9.5	36.1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72	
신 설			55	1.5-2.5	21.6	44.03	산책로	산책로 72	산책로 75	
신 설			56	1.5-5.0	189.2	403.17	진입로	공원경계	진입광장 가-5	
신 설			57	1.5	25.7	39.90	산책로	산책로 75	산책로 77	
신 설			58	1.0-1.5	79.0	110.62	연결로	진입광장 가-5	산책로 75	
신 설			59	4.0	107.0	430.65	산책로	산책로 75	산책로 79	
신 설			60	2.5	145.4	371.35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북한산 근린공원 23지구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	11,489.30	3,115.50	1	13.00	13.00	83	
기반시설	소계	-	-	-	-	-	-	917.00	917.00	-	-	-	-	
	도로	-	-	-	-	-	-	917.00	917.00	-	-	-	-	
휴양시설		-	-	-	-	-	-	388.50	388.50	-	-	-	57	
유희시설		-	-	-	-	-	-	194.00	194.00	-	-	-	3	
운동시설		-	-	-	-	-	-	1,596.00	1,596.00	-	-	-	11	
편익시설		-	-	-	-	-	-	20.00	20.00	1	13.00	13.00	-	
관리시설		-	-	-	-	-	-	-	-	-	-	-	12	
녹지 및 기타		-	-	-	-	-	-	8,373.80	-	-	-	-	-	

북한산 근린공원 23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합 계				-	-	-	-	-	-	-			11,489.30	3,115.50	-	1	13.00	13.00	83	
기반시설	소 계			-	-	-	-	-	-	-			917.00	917.00	-	-	-	-	-	
	도 로			-	-	-	-	-	-	-			917.00	917.00	-	-	-	-	-	
휴양시설	소 계			-	-	-	-	-	-	-			388.50	388.50	-	-	-	-	57	
	쉼터			-	-	-	-	-	-	-	가		388.50	388.50	-	-	-	-	-	
				-	-	-	-	-	-	-	가-1		(150.00)	(150.00)	-	-	-	-	-	
				-	-	-	-	-	-	-	가-2		(80.00)	(80.00)	-	-	-	-	-	
				-	-	-	-	-	-	-	가-3		(84.00)	(84.00)	-	-	-	-	-	
				-	-	-	-	-	-	-	가-4		(74.50)	(74.50)	-	-	-	-	-	
	파고라			-	-	-	-	-	-	-	①		-	-	-	-	-	-	7	
	평의자			-	-	-	-	-	-	-	②		-	-	-	-	-	-	50	
유희시설	소 계			-	-	-	-	-	-	-			194.00	194.00	-	-	-	-	3	
	어린이놀이터			-	-	-	-	-	-	-	나		194.00	194.00	-	-	-	-	-	
	회전놀이대			-	-	-	-	-	-	-	③		-	-	-	-	-	-	1	

구 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조합놀이대			-	-	-	-	-	-	-	④		-	-	-	-	-	-	1	
	그네			-	-	-	-	-	-	-	⑤		-	-	-	-	-	-	1	
운동시설	소 계			-	-	-	-	-	-	-			1,596.00	1,596.00	-	-	-	-	11	
	게이트볼장			-	-	-	-	-	-	-	다		498.00	498.00	-	-	-	-	-	
	다목적구장			-	-	-	-	-	-	-	라		498.00	498.00	-	-	-	-	-	
	배드민턴장			-	-	-	-	-	-	-	마		499.00	499.00	-	-	-	-	-	
	체력단련장			-	-	-	-	-	-	-	바		101.00	101.00	-	-	-	-	-	
	체력단련기구			-	-	-	-	-	-	-	⑥		-	-	-	-	-	-	11	
편익시설	소 계			-	-	-	-	-	-	-			20.00	20.00	-	1	13.00	13.00	-	
	화장실			-	-	-	-	-	-	-	1		20.00	20.00	-	1	13.00	13.00	-	
관리시설	소 계			-	-	-	-	-	-	-			-	-	-	-	-	-	12	
	안내판			-	-	-	-	-	-	-	⑦		-	-	-	-	-	-	12	
녹지및기타	소 계			-	-	-	-	-	-	-			8,373.80	-	-	-	-	-	-	
	녹 지			-	-	-	-	-	-	-			8,373.80	-	-	-	-	-	-	

북한산 근린공원 23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	-				
변 경					526.0	917.00				
당 초	소 로	계			-	-				
변 경					66.0	250.00				
신 설		3류	1	3.5	62.0	235.0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3류	2	3.5	4.0	15.0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	
당 초	산책로	계								
변 경					460.0	667.00				
신 설			1	1.5	61.0	91.50	산책로	산책로 13	산책로 2	
신 설			2	1.0	94.0	94.00	산책로	산책로 1	공원경계	
신 설			3	1.0	20.0	20.00	산책로	산책로 2	산책로 2	
신 설			4	1.5	3.0	4.50	산책로	산책로 3	다목적구장 라	
신 설			5	1.5	12.0	18.00	산책로	산책로 2	광장 가-2	
신 설			6	1.5	8.0	16.20	산책로	광장 가-2	다목적구장 라	
신 설			7	2.0	7.0	14.00	산책로	광장 가-2	배드민턴장 마	
신 설			8	3.8	19.0	72.20	산책로	배드민턴장 마	소로 3-1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9	1.5	3.0	4.50	산책로	산책로 8	화장실 1	
신 설			10	1.0	10.0	10.00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나	게이트볼장 다	
신 설			11	0.8	7.0	5.60	산책로	다목적구장 라	게이트볼장 다	
신 설			12	1.5	3.0	4.5	산책로	산책로 13	게이트볼장 다	
신 설			13	1.5	164.0	246.00	산책로	공원경계	소로 3-1	
신 설			14	1.5	34.0	51.00	산책로	산책로 15	산책로 12	
신 설			15	1.0	15.0	15.00	산책로	산책로 2	산책로 14	

북한산 근린공원 24지구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	907.50	-	-	-	-	-	
녹지 및 기타	-	-	-	-	-	-	907.50	-	-	-	-	-	

북한산 근린공원 24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	-	-	-	-	-	-			907.50	-	-	-	-	-	-	
녹지및기타	소 계			-	-	-	-	-	-	-			907.50	-	-	-	-	-	-	
	녹 지			-	-	-	-	-	-	-			907.50	-	-	-	-	-	-	

북한산 근린공원 24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변 경										
당 초	소 로	계								
변 경										
폐 지										

북한산 근린공원 25지구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	107.30	-	-	-	-	-	
녹지 및 기타	-	-	-	-	-	-	107.30	-	-	-	-	-	

북한산 근린공원 25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계				-	-	-	-	-	-	-			107.30	-	-	-	-	-	-	
녹지및기타	소계			-	-	-	-	-	-	-			107.30	-	-	-	-	-	-	
	녹지			-	-	-	-	-	-	-			107.30	-	-	-	-	-	-	

북한산 근린공원 25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변 경										
당 초	소 로	계								
변 경										
폐 지										

북한산 근린공원 26지구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	1,449.40	162.93	-	-	-	-	
기반시설	소계	-	-	-	-	-	-	162.93	162.93	-	-	-	-	
	도로	-	-	-	-	-	-	162.93	162.93	-	-	-	-	
	광장	-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	-	-	-	-	-	1,286.47	-	-	-	-	-	

북한산 근린공원 26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	-	-	-	-	-	-			1,449.40	162.93	-	-	-	-	-	
기반시설	소 계			-	-	-	-	-	-	-			162.93	162.93	-	-	-	-	-	
	도 로			-	-	-	-	-	-	-			162.93	162.93	-	-	-	-	-	
녹지및기타	소 계			-	-	-	-	-	-	-			1,286.47	-	-	-	-	-	-	
	녹 지			-	-	-	-	-	-	-			1,286.47	-	-	-	-	-	-	

북한산 근린공원 26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	-				
변 경					82.0	162.93				
당 초	산책로	계			-	-				
변 경					82.0	162.93				
신 설			1	2.0	82.0	162.93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북한산 근린공원 27지구 총괄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	56.80	-	-	-	-	-	
녹지 및 기타	-	-	-	-	-	-	56.80	-	-	-	-	-	

북한산 근린공원 27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	-	-	-	-	-	-			56.80	-	-	-	-	-	-	
녹지및기타	소 계			-	-	-	-	-	-	-			56.80	-	-	-	-	-	-	
	녹 지			-	-	-	-	-	-	-			56.80	-	-	-	-	-	-	

북한산 근린공원 27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	-				
변 경					-	-				
당 초	소 로	계			-	-				
변 경					-	-				
폐 지					-	-				

북한산 근린공원 28지구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	343.40	-	-	-	-	-	
녹지 및 기타	-	-	-	-	-	-	343.40	-	-	-	-	-	

북한산 근린공원 28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	-	-	-	-	-	-			343.40	-	-	-	-	-	-	
녹지및기타	소 계			-	-	-	-	-	-	-			343.40	-	-	-	-	-	-	
	녹 지			-	-	-	-	-	-	-			343.40	-	-	-	-	-	-	

북한산 근린공원 28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	-				
변 경					-	-				
당 초	소 로	계			-	-				
변 경					-	-				
폐 지					-	-				

북한산 근린공원 29지구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	821.30	212.52	-	-	-	-	
기반시설	소계	-	-	-	-	-	-	212.52	212.52	-	-	-	-	
	도로	-	-	-	-	-	-	212.52	212.52	-	-	-	-	
녹지 및 기타		-	-	-	-	-	-	608.78	-	-	-	-	-	

북한산 근린공원 29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계				-	-	-	-	-	-	-			821.30	212.52	-	-	-	-	-	
기반시설	소계			-	-	-	-	-	-	-			212.52	212.52	-	-	-	-	-	
	도로			-	-	-	-	-	-	-			212.52	212.52	-	-	-	-	-	
녹지및기타	소계			-	-	-	-	-	-	-			608.78	-	-	-	-	-	-	
	녹지			-	-	-	-	-	-	-			608.78	-	-	-	-	-	-	

북한산 근린공원 29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	-				
변 경					61.8	212.52				
당 초	소 로	계			-	-				
변 경					61.8	212.52				
신 설		3류	3-1	4.0	2.7	10.79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3류	3-2	7.0	19.1	133.78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3류	3-3	7.0	21.4	57.45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3류	3-4	7.0	2.6	1.42	연결로	소로 3-1	공원경계	
신 설		3류	3-5	7.0	16.0	9.08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1	

북한산 근린공원 30지구 총괄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	1,318.00	-	-	-	-	-	
녹지 및 기타	-	-	-	-	-	-	1,318.00	-	-	-	-	-	

북한산 근린공원 30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	-	-	-	-	-	-			1,318.00	-	-	-	-	-	-	
녹지및기타	소 계			-	-	-	-	-	-	-			1,318.00	-	-	-	-	-	-	
	녹 지			-	-	-	-	-	-	-			1,318.00	-	-	-	-	-	-	

북한산 근린공원 30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	-				
변 경					-	-				
당 초	소 로	계			-	-				
변 경					-	-				
폐 지					-	-				

북한산 근린공원 31지구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	4,758.60	497.21	1	198.62	198.62	-	
기반시설	소계	-	-	-	-	-	-	298.59	298.59	-	-	-	-	
	도로	-	-	-	-	-	-	298.59	298.59	-	-	-	-	
휴양시설		-	-	-	-	-	-	198.62	198.62	1	198.62	198.62	-	
녹지 및 기타		-	-	-	-	-	-	4,460.01	-	-	-	-	-	

북한산 근린공원 31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	-	-	-	-	-	-			4,758.60	497.21	-	1	198.62	198.62	-	
기반시설	소 계			-	-	-	-	-	-	-			298.59	298.59	-	-	-	-	-	
	도 로			-	-	-	-	-	-	-			298.59	298.59	-	-	-	-	-	
휴양시설	소 계			-	-	-	-	-	-	-			198.62	198.62	-	1	198.62	198.62	-	
	경로당			-	-	-	-	-	-	-	가		198.62	198.62	-	1	198.62	198.62	-	
녹지및기타	소 계			-	-	-	-	-	-	-			4,261.39	-	-	-	-	-	-	
	녹 지			-	-	-	-	-	-	-			4,261.39	-	-	-	-	-	-	

북한산 근린공원 31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	-				
변 경					149.51	298.59				
당 초	산책로	계			-	-				
변 경					149.51	298.59				
신 설			1	2.0	96.54	192.66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2	2.0	52.97	105.93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북한산 근린공원 32지구 총괄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	36.60	-	-	-	-	-	
녹지 및 기타	-	-	-	-	-	-	36.60	-	-	-	-	-	

북한산 근린공원 32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	-	-	-	-	-	-			36.60	-	-	-	-	-	-	
녹지및기타	소 계			-	-	-	-	-	-	-			36.60	-	-	-	-	-	-	
	녹 지			-	-	-	-	-	-	-			36.60	-	-	-	-	-	-	

북한산 근린공원 32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	-				
변 경					-	-				
당 초	소 로	계			-	-				
변 경					-	-				
폐 지					-	-				

북한산 근린공원 33지구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	1,350.30	185.47	-	-	-	-	
기반시설	소계	-	-	-	-	-	-	356.38	46.57	-	-	-	-	
	도로	-	-	-	-	-	-	356.38	46.57	-	-	-	-	
교양시설		-	-	-	-	-	-	138.90	138.90	-	-	-	-	
녹지 및 기타		-	-	-	-	-	-	855.02	-	-	-	-	-	

북한산 근린공원 33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	-	-	-	-	-	-			1,350.30	185.47	-	-	-	-	-	
기반시설	소 계			-	-	-	-	-	-	-			356.38	46.57	-	-	-	-	-	
	도 로			-	-	-	-	-	-	-			356.38	46.57	-	-	-	-	-	
교양시설	소 계			-	-	-	-	-	-	-			138.90	138.90	-	-	-	-	-	
	도서관	가		-	-	-	-	-	-	-			138.90	138.90	-	-	-	-	-	
녹지및기타	소 계			-	-	-	-	-	-	-			855.02	-	-	-	-	-	-	
	녹 지			-	-	-	-	-	-	-			855.02	-	-	-	-	-	-	

북한산 근린공원 33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	-				
변 경					10.6 (74.66)	46.57 (309.81)				
당 초	소 로	계			-	-				
변 경					10.6 (74.66)	46.57 (309.81)				
당 초		3류	2	4.0	74.66	(309.81)	도시계획도로			
신 설		3류	1	6.0	10.6	46.57	연결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북한산 근린공원 34지구 총괄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	312.00	-	-	-	-	-	
녹지 및 기타	-	-	-	-	-	-	312.00	-	-	-	-	-	

북한산 근린공원 34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	-	-	-	-	-	-			312.00	-	-	-	-	-	-	
녹지및기타	소 계			-	-	-	-	-	-	-			312.00	-	-	-	-	-	-	
	녹 지			-	-	-	-	-	-	-			312.00	-	-	-	-	-	-	

북한산 근린공원 34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	-				
변 경					-	-				
당 초	소 로	계			-	-				
변 경					-	-				
폐 지					-	-				

북한산 근린공원 35지구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	141.00	61.72	-	-	-	-	
기반시설	소계	-	-	-	-	-	-	61.72	61.72	-	-	-	-	
	도로	-	-	-	-	-	-	61.72	61.72	-	-	-	-	
녹지 및 기타		-	-	-	-	-	-	79.28	-	-	-	-	-	

북한산 근린공원 35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	-	-	-	-	-	-			141.00	61.72	-	-	-	-	-	
기반시설	소 계			-	-	-	-	-	-	-			61.72	61.72	-	-	-	-	-	
	도 로			-	-	-	-	-	-	-			61.72	61.72	-	-	-	-	-	
녹지및기타	소 계			-	-	-	-	-	-	-			79.28	-	-	-	-	-	-	
	녹 지			-	-	-	-	-	-	-			79.28	-	-	-	-	-	-	

북한산 근린공원 35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	-				
변 경					28.0	61.72				
당 초	소 로	계			-	-				
변 경					28.0	61.72				
신 설		3류	3-1	5.0	28.0	61.72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북한산 근린공원 36지구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	1,272.70	1,272.70	2	254.00	254.00	-	
관리시설	-	-	-	-	-	-	254.00	254.00	2	254.00	254.00	-	
녹지 및 기타	-	-	-	-	-	-	1,018.70	-	-	-	-	-	

북한산 근린공원 36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	-	-	-	-	-	-			1,272.70	254.00	-	2	254.00	254.00	-	
관리시설	소 계			-	-	-	-	-	-	-			254.00	254.00	-	2	254.00	254.00	-	
	진화대대기실			-	-	-	-	-	-	-	가		189.00	189.00	-	1	189.00	189.00	-	
	창고			-	-	-	-	-	-	-	나		65.00	65.00	-	1	65.00	65.00	-	
녹지및기타	소 계			-	-	-	-	-	-	-			1,018.70	-	-	-	-	-	-	
	녹 지			-	-	-	-	-	-	-			1,018.70	-	-	-	-	-	-	

북한산 근린공원 36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	-				
변 경					-	-				
당 초	소 로	계			-	-				
변 경					-	-				
폐 지					-	-				

북한산 근린공원 37지구 총괄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	1,032.40	-	-	-	-	-	
녹지 및 기타	-	-	-	-	-	-	1,032.40	-	-	-	-	-	

북한산 근린공원 37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	-	-	-	-	-	-			1,032.40	-	-	-	-	-	-	
녹지및기타	소 계			-	-	-	-	-	-	-			1,032.40	-	-	-	-	-	-	
	녹 지			-	-	-	-	-	-	-			1,032.40	-	-	-	-	-	-	

북한산 근린공원 37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	-				
변 경					-	-				
당 초	소 로	계			-	-				
변 경					-	-				
폐 지					-	-				

위 치 도

북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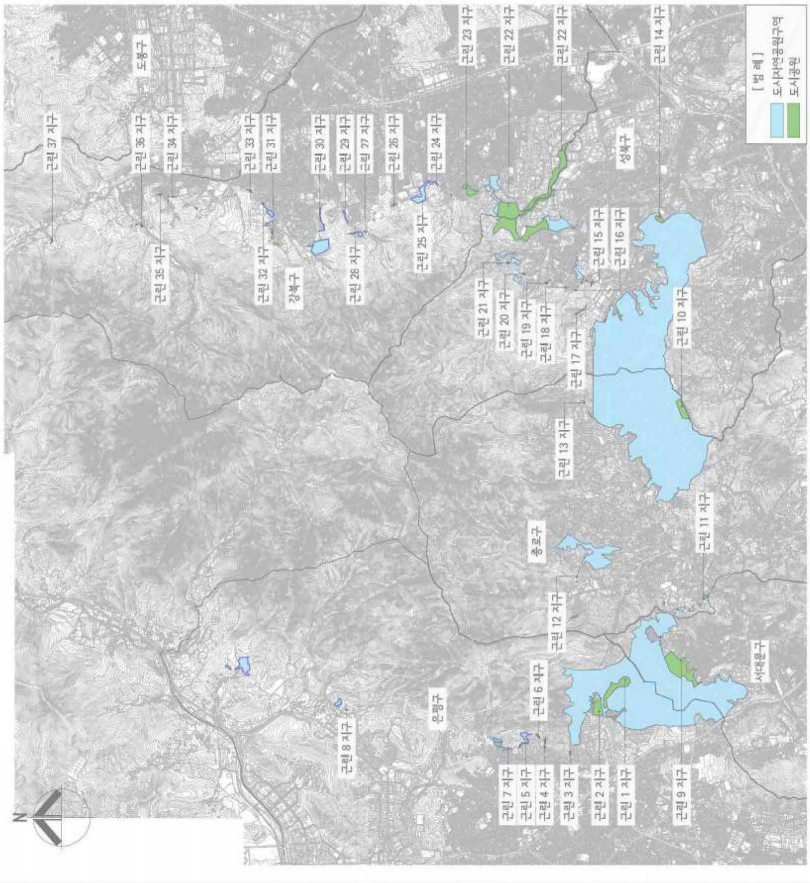

■ 개요

구분	위치	면적(㎡)	비고
01	근린공원 1 지구	은평구 녹번동 산1-1	32,850,40	
02	근린공원 2 지구	은평구 불광동 산 42-5	18,488,70	
03	근린공원 3 지구	은평구 불광동 8-58	753,80	
04	근린공원 4 지구	은평구 불광동 641-6	1,521,60	
05	근린공원 5 지구	은평구 불광동 641-1	1,136,20	
06	근린공원 6 지구	은평구 불광동 641-5	482,80	
07	근린공원 7 지구	은평구 불광동 23-109	5,202,50	
08	근린공원 8 지구	은평구 신사동 산 40-6	351,00	
09	근린공원 9 지구	서대문구 홍은동 10-305	88,700,00	
10	근린공원 10 지구	종로구 평창동 산 6-18	17,617,30	
11	근린공원 11 지구	종로구 홍지동 36-15	2,698,30	
12	근린공원 12 지구	종로구 구기동 산 3-20	20,20	
13	근린공원 13 지구	종로구 평창동 산 6-2	28,60	
14	근린공원 14 지구	성북구 정릉동 산87-102	6,338,50	
15	근린공원 15 지구	성북구 정릉동 843-20	469,10	
16	근린공원 16 지구	성북구 정릉동 산 1-1	27,40	
17	근린공원 17 지구	성북구 정릉동 산 1-1	497,90	
18	근린공원 18 지구	성북구 정릉동 840-38	35,50	
19	근린공원 19 지구	성북구 보국문로37길 38-13	971,50	
20	근린공원 20 지구	성북구 정릉동 815-28	0,04	
21	근린공원 21 지구	성북구 정릉동 산 1-1	495,70	
22	근린공원 22 지구	성북구 정릉동 산1-1, 강북구 우이동 산 108-9	182,306,30	
23	근린공원 23 지구	강북구 미아동 산 108-95	11,489,30	
24	근린공원 24 지구	강북구 수유동 산 162-36	907,50	
25	근린공원 25 지구	강북구 수유동 491-61	107,30	
26	근린공원 26 지구	강북구 수유동 산 164-5	1,449,40	
27	근린공원 27 지구	강북구 인수동 산 127-1	56,80	
28	근린공원 28 지구	강북구 인수동 산 127-1	343,40	
29	근린공원 29 지구	강북구 인수동 522-75	821,30	
30	근린공원 30 지구	강북구 인수동 산 84-1	1,318,00	
31	근린공원 31 지구	강북구 수유동 586-2	4,756,60	
32	근린공원 32 지구	강북구 수유동 576-24	36,60	
33	근린공원 33 지구	강북구 우이동 산 63-54	1,350,30	
34	근린공원 34 지구	강북구 우이동 산 47-4	312,00	
35	근린공원 35 지구	강북구 우이동 산 40-3	141,00	
36	근린공원 36 지구	강북구 우이동 산 25-4	1,272,70	
37	근린공원 37 지구	강북구 우이동 247-3	1,03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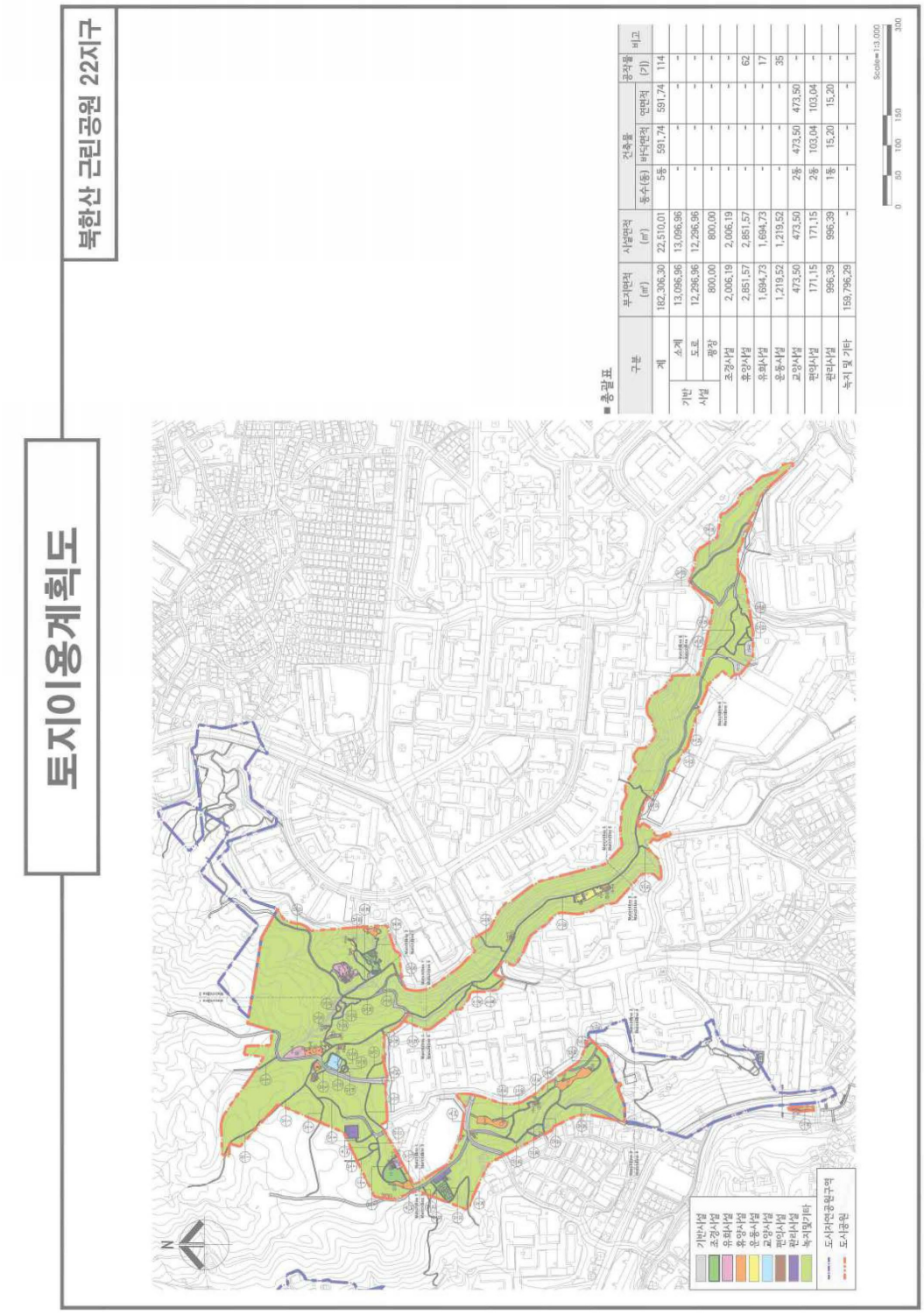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
북한산 근린공원 22지구
■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
사설면적 (㎡)
건축물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계
182,306.30
22,510.01
5동
581.74
591.74
114
기반사설
소계
13,096.96
13,096.96
도로
12,296.96
12,296.96
광장
800.00
800.00
조경사설
2,006.19
2,006.19
휴양사설
2,851.57
2,851.57
62
유희사설
1,694.73
1,694.73
17
운동사설
1,219.52
1,219.52
35
교양사설
473.50
473.50
2동
473.50
473.50
편익사설
171.15
171.15
2동
103.04
103.04
관리사설
996.39
996.39
1동
15.20
15.20
녹지 및 기타
159,796.29
Scale=1:3,000
0 50 100 150 300
N
기반사설
조경사설
휴양사설
운동사설
교양사설
편익사설
관리사설
녹지및기타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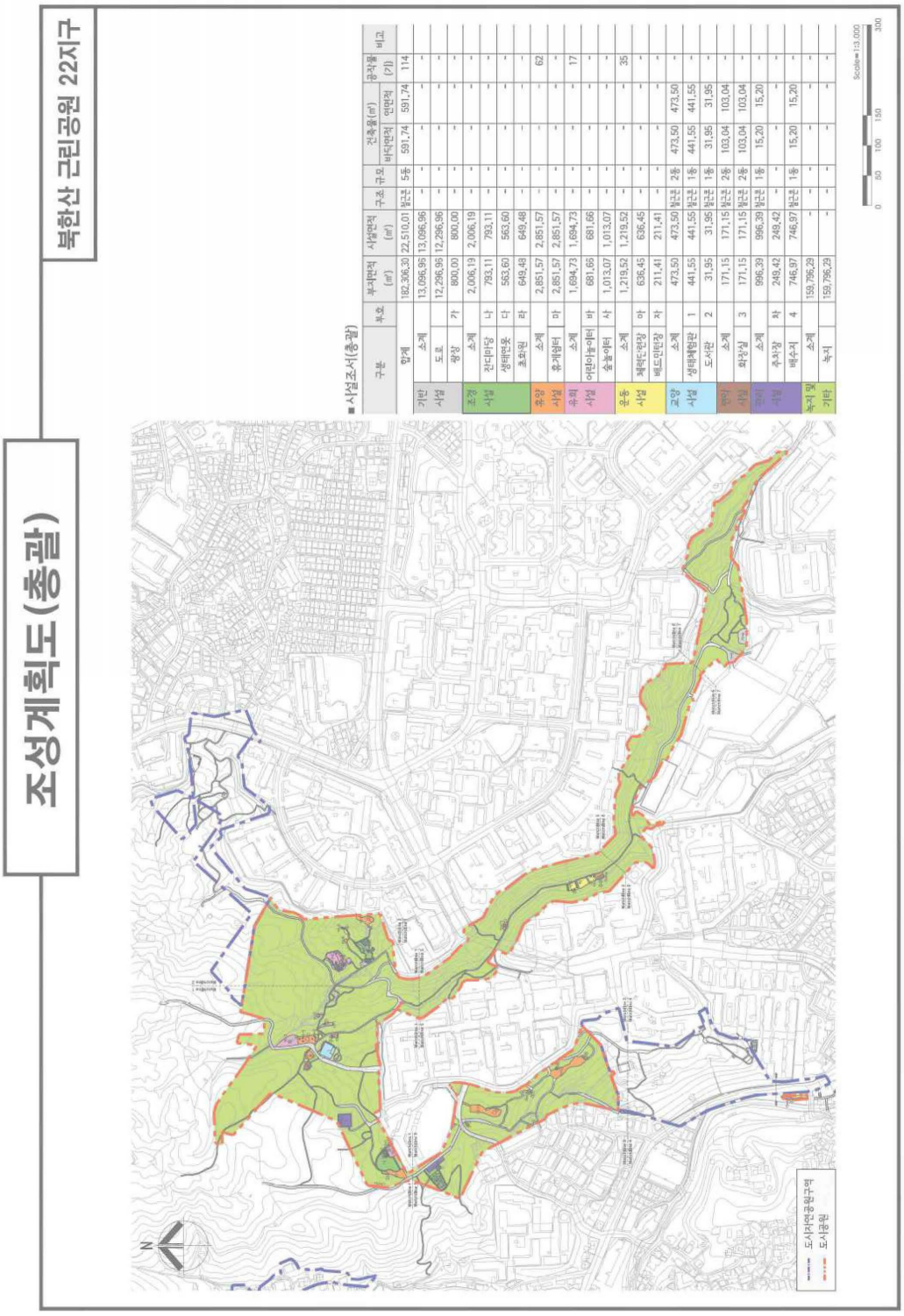
조성계획도(총괄)
북한산 근린공원 22지구
■시설조서(총괄)
구분 / 부호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기) / 비고
합계 182,306.30 22,510.01 철근콘 5동 591.74 591.74 114
기반시설 소계 13,096.95 13,096.96 - - - -
기반시설 도로 12,296.95 12,296.96 - - - -
기반시설 광장 가 800.00 800.00 - - - -
조경시설 소계 2,006.19 2,006.19 - - - -
조경시설 자연마당 나 793.11 793.11 - - - -
조경시설 생태연못 다 563.60 563.60 - - - -
조경시설 초화원 라 649.48 649.48 - - - -
휴양시설 소계 2,851.57 2,851.57 - - - 62
휴양시설 휴게쉼터 마 2,851.57 2,851.57 - - - -
유희시설 소계 1,694.73 1,694.73 - - - 17
유희시설 어린이놀이터 바 681.66 681.66 - - - -
유희시설 숲놀이터 사 1,013.07 1,013.07 - - - -
운동시설 소계 1,219.52 1,219.52 - - - 35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아 636.45 636.45 - - - -
운동시설 베드민턴장 자 211.41 211.41 - - - -
교양시설 소계 473.50 473.50 철근콘 2동 473.50 473.50 -
교양시설 생태체험관 1 441.55 441.55 철근콘 1동 441.55 441.55 -
교양시설 도서관 2 31.95 31.95 철근콘 1동 31.95 31.95 -
관리시설 소계 171.15 171.15 철근콘 2동 103.04 103.04 -
관리시설 화장실 3 171.15 171.15 철근콘 2동 103.04 103.04 -
관리시설 소계 996.39 996.39 철근콘 1동 15.20 15.20 -
관리시설 주차장 차 249.42 249.42 - - - -
배수시 4 746.97 746.97 철근콘 1동 15.20 15.20 -
녹지 및 기반 소계 159,796.29 - - - - -
녹지 159,796.29 - - - - -
■ 도시어연공원구역
■ 도시공원
N
Scale=1:3,000
0 50 100 150 300

조성계획도-1

북한산 근린공원 22지구



■ 시설조서-1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58,668.06	9,548.62	철근콘	1동	531.74	531.74	48	
기반 시설	소계		5,419.85	5,419.85	-	-	-	-	-	
	도로		5,419.85	5,419.85	-	-	-	-	-	
조경 시설	소계		793.11	793.11	-	-	-	-	-	
	잔디마당	나	793.11	793.11	-	-	-	-	-	
휴양 시설	소계		1,014.76	1,014.76	-	-	-	-	27	
	휴게쉼터	마	1,014.76	1,014.76	-	-	-	-	-	
		마-1	(347.09)	(347.09)	-	-	-	-	-	
		마-2	(35.55)	(35.55)	-	-	-	-	-	
		마-3	(16.00)	(16.00)	-	-	-	-	-	
		마-4	(131.24)	(131.24)	-	-	-	-	-	
		마-5	(377.90)	(377.90)	-	-	-	-	-	
		마-6	(78.58)	(78.58)	-	-	-	-	-	
		마-7	(28.40)	(28.40)	-	-	-	-	-	
	정자	①	-	-	-	-	-	-	2	
	막구조파고라	②	-	-	-	-	-	-	1	
	파고라	③	-	-	-	-	-	-	2	
	평의자	④	-	-	-	-	-	-	19	
	원형의자	⑤	-	-	-	-	-	-	3	
유희 시설	소계		799.32	799.32	-	-	-	-	6	
	어린이놀이터	바	681.66	681.66	-	-	-	-	-	
		바-1	(210.10)	(210.10)	-	-	-	-	-	
		바-2	(471.56)	(471.56)	-	-	-	-	-	
	숲놀이터	사	117.66	117.66	-	-	-	-	-	
		사-1	(117.66)	(117.66)	-	-	-	-	-	
	조합놀이대	⑥	-	-	-	-	-	-	2	
	숲놀이시설	⑦	-	-	-	-	-	-	4	
운동 시설	소계		189.96	189.96	-	-	-	-	15	
	체력단련장	아	189.96	189.96	-	-	-	-	-	
		아-1	(80.50)	(80.50)	-	-	-	-	-	
		아-2	(109.46)	(109.46)	-	-	-	-	-	
	체력단련시설	⑧	-	-	-	-	-	-	15	
교양 시설	소계		441.55	441.55	철근콘	1동	441.55	441.55	-	
	생태체험관	1	441.55	441.55	철근콘	1동	441.55	441.55	-	
편익 시설	소계		143.10	143.10	철근콘	1동	74.99	74.99	-	
	화장실	3	143.10	143.10	철근콘	1동	74.99	74.99	-	
		3-1	(143.10)	(143.10)	철근콘	(1동)	(74.99)	(74.99)	-	
관리 시설	소계		746.97	746.97	-	1동	15.20	15.20	-	
	배수지	4	746.97	746.97	-	1동	15.20	15.20	-	
녹지 및 기타	소계		49,119.44	-	-	-	-	-	-	
	녹지		49,119.44	-	-	-	-	-	-	

조성계획도-2
북한산 근린공원 22지구
■ 사업조서-2
구분 부호 부지면적(㎡) 사업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기) 비고
합계 24,113.91 2,574.12 - - - - 27
기반사업 소계 748.53 748.53 - - - - -
도로 671.74 671.74 - - - - -
지압광장 가 76.79 76.79 - - - - -
가-1 (76.79) (76.79) - - - - -
조경사업 소계 563.60 563.60 - - - - -
생태연못 다 563.60 563.60 - - - - -
휴양사업 소계 285.25 285.25 - - - - 10
휴게쉼터 마 285.25 285.25 - - - - -
마-8 (21.46) (21.46) - - - - -
마-9 (263.79) (263.79) - - - - -
정자 ① - - - - - - 1
비고라 ③ - - - - - - 1
평의자 ④ - - - - - - 8
유희사업 소계 895.41 895.41 - - - - 11
숲놀이터 사 895.41 895.41 - - - - -
사-2 (895.41) (895.41) - - - - -
숲놀이시설 ⑦ - - - - - - 11
운동사업 소계 81.33 81.33 - - - - 6
체력단련장 아 81.33 81.33 - - - - -
아-3 (81.33) (81.33) - - - - -
체력단련시설 ⑧ - - - - - - 6
녹지 및 기타 소계 21,539.78 - - - - - -
녹지 21,539.78 - - - - -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Matchline 2
Matchline 1
Matchline 1
Matchline 5
Matchline 1
Matchline 5
N
Scale=1:1,000
0 10 20 5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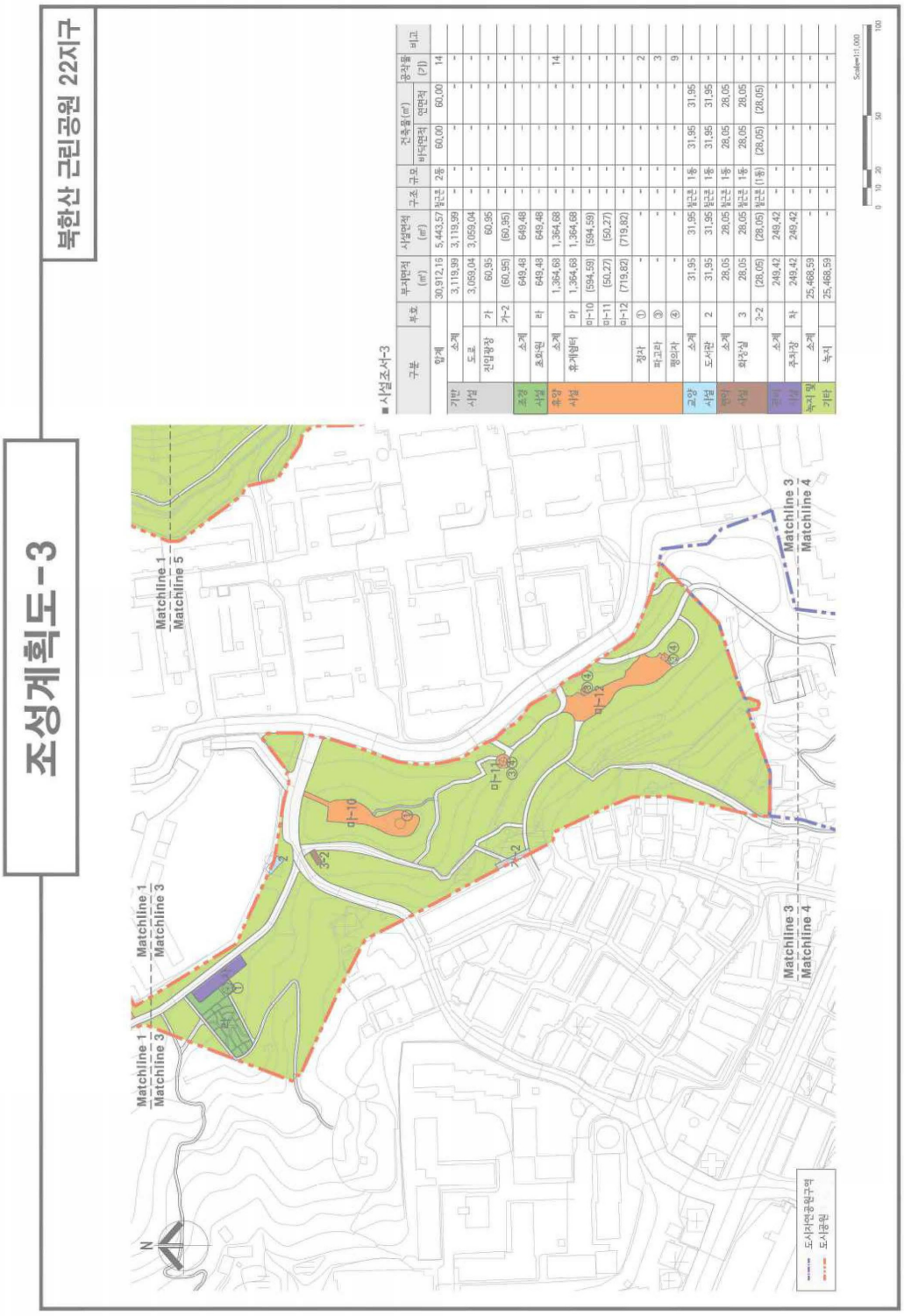
조성계획도-3
북한산 근린공원 22지구
■ 사업조서-3
구분 부호 부지면적(㎡) 사업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
합계 30,912.15 5,443.57 철근콘 2동 60.00 60.00 14
기반시설 소계 3,119.99 3,119.99 - - - - -
도로 3,059.04 3,059.04 - - - - -
친업광장 가 60.95 60.95 - - - - -
가-2 (60.95) (60.95) - - - - -
조경시설 소계 649.48 649.48 - - - - -
초화원 라 649.48 649.48 - - - - -
유상시설 소계 1,364.68 1,364.68 - - - - 14
휴게쉼터 마 1,364.68 1,364.68 - - - - -
마-10 (594.59) (594.59) - - - - -
마-11 (50.27) (50.27) - - - - -
마-12 (719.82) (719.82) - - - - -
정자 ① - - - - - - 2
파고라 ③ - - - - - - 3
팽이차 ④ - - - - - - 9
교양시설 소계 31.95 31.95 철근콘 1동 31.95 31.95 -
도서관 2 31.95 31.95 철근콘 1동 31.95 31.95 -
관리시설 소계 28.05 28.05 철근콘 1동 28.05 28.05 -
화장실 3 28.05 28.05 철근콘 1동 28.05 28.05 -
3-2 (28.05) (28.05) 철근콘 (1동) (28.05) (28.05) -
공원시설 소계 249.42 249.42 - - - - -
주차장 차 249.42 249.42 - - - - -
녹지 및 기반 소계 25,468.59 - - - - -
녹지 25,468.59 - - - - -
Scale=1:1,000
0 10 20 50 100
Matchline 1
Matchline 3
Matchline 5
Matchline 4
마-10
마-11
마-12
3-2
2
N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조성계획도-4

북한산 근린공원 22지구



■ 시설조서-4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273,63	115,74	-	-	-	-	3	
기반 시설	소계		88,30	88,30	-	-	-	-	-	
	도로		88,30	88,30	-	-	-	-	-	
운동 시설	소계		27,44	27,44	-	-	-	-	3	
	체력단련장	아	27,44	27,44	-	-	-	-	-	
		아-4	(27,44)	(27,44)	-	-	-	-	-	
	체력단련시설	⑧	-	-	-	-	-	-	3	
녹지 및 기타	소계		157,89	-	-	-	-	-	-	
	녹지		157,89	-	-	-	-	-	-	

Scale=1:200
0 10 50 100

■시설조서-5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25,691.65	1,376.15	-	-	-	22	
기반시설	소계		640.14	640.14	-	-	-	-	
	도로		640.14	640.14	-	-	-	-	
유상시설	소계		186.88	186.88	-	-	-	-	11
	휴게쉼터	마	186.88	186.88	-	-	-	-	
		마-13	(70.24)	(70.24)	-	-	-	-	
		마-14	(116.64)	(116.64)	-	-	-	-	
	정자	①	-	-	-	-	-	1	
	파고라	②	-	-	-	-	-	2	
	팔각지	④	-	-	-	-	-	8	
운동시설	소계		549.13	549.13	-	-	-	11	
	체력단련장	아	337.72	337.72	-	-	-	-	
		아-5	(211.64)	(211.64)	-	-	-	-	
		아-6	(126.08)	(126.08)	-	-	-	-	
	배드민턴장	차	211.41	211.41	-	-	-	-	
	체력단련시설	⑤	-	-	-	-	-	11	
녹지 및 기타	소계		24,315.51	-	-	-	-	-	
	녹지		24,315.51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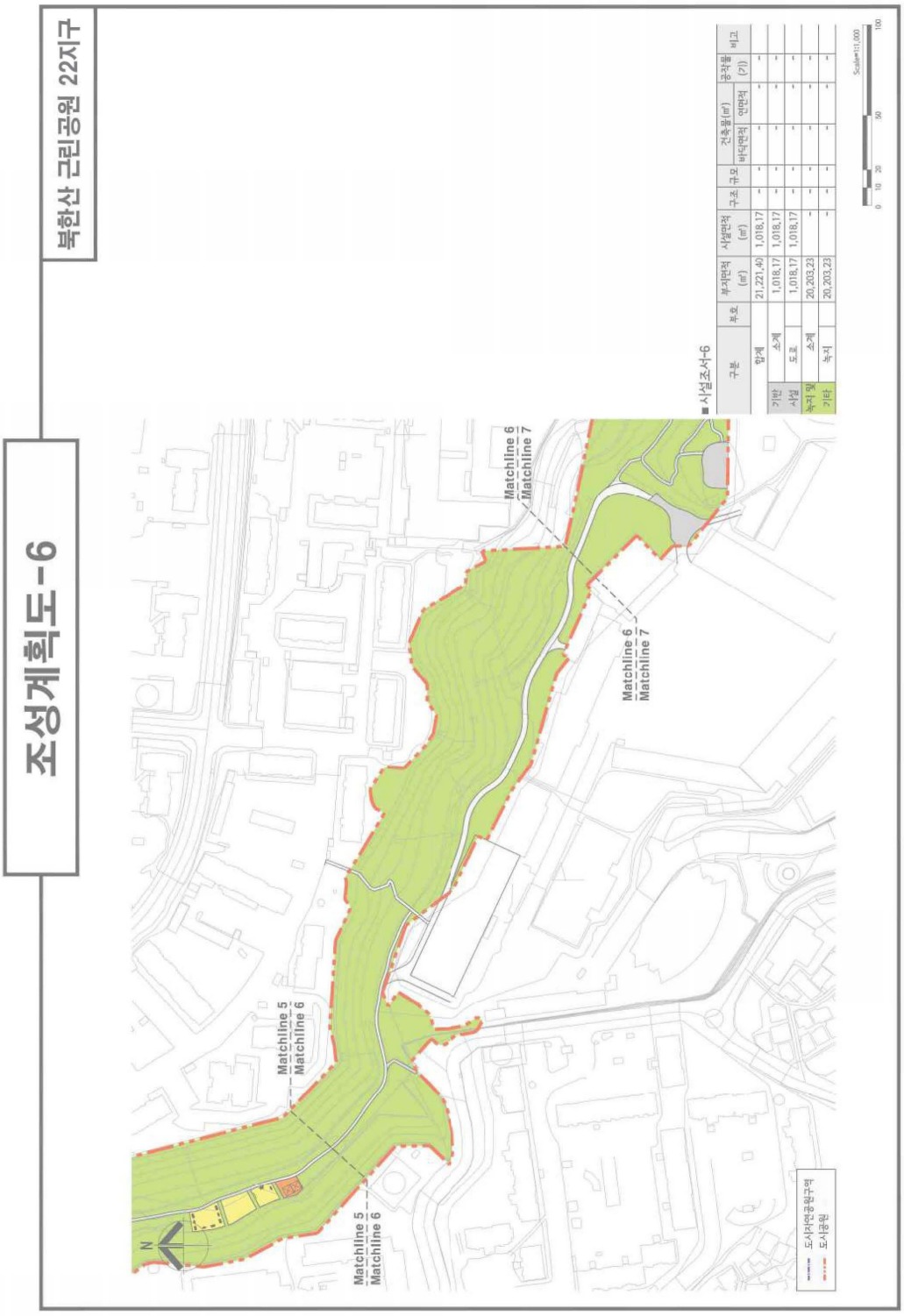
조성계획도-6
북한산 근린공원 22지구
■ 시설조서-6
구분 | 부호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 비고
합계 | | 21,221.40 | 1,018.17 | - | - | - | - | - | -
가반 시설 | 소계 | 1,018.17 | 1,018.17 | - | - | - | - | - | -
가반 시설 | 도로 | 1,018.17 | 1,018.17 |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 소계 | 20,203.23 | - |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 녹지 | 20,203.23 | - | - | - | - | - | - | -
Scale=1:1,000
0 10 20 50 100
Matchline 5
Matchline 6
Matchline 6
Matchline 7
Matchline 6
Matchline 7
Matchline 5
Matchline 6
N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조성계획도-7

북한산 근린공원 22지구



■ 시설조서-7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21,425.49	2,061.98	-	-	-	-	-	
기반 시설	소계		2,061.98	2,061.98	-	-	-	-	-	
	도로		1,399.72	1,399.72	-	-	-	-	-	
	진입광장	가	662.26	662.26	-	-	-	-	-	
		가-3	(337.92)	(337.92)	-	-	-	-	-	
		가-4	(324.34)	(324.34)	-	-	-	-	-	
녹지 및 기타	소계		19,363.51	-	-	-	-	-	-	
	녹지		19,363.51	-	-	-	-	-	-	

Scale=1:1,000
0 10 20 5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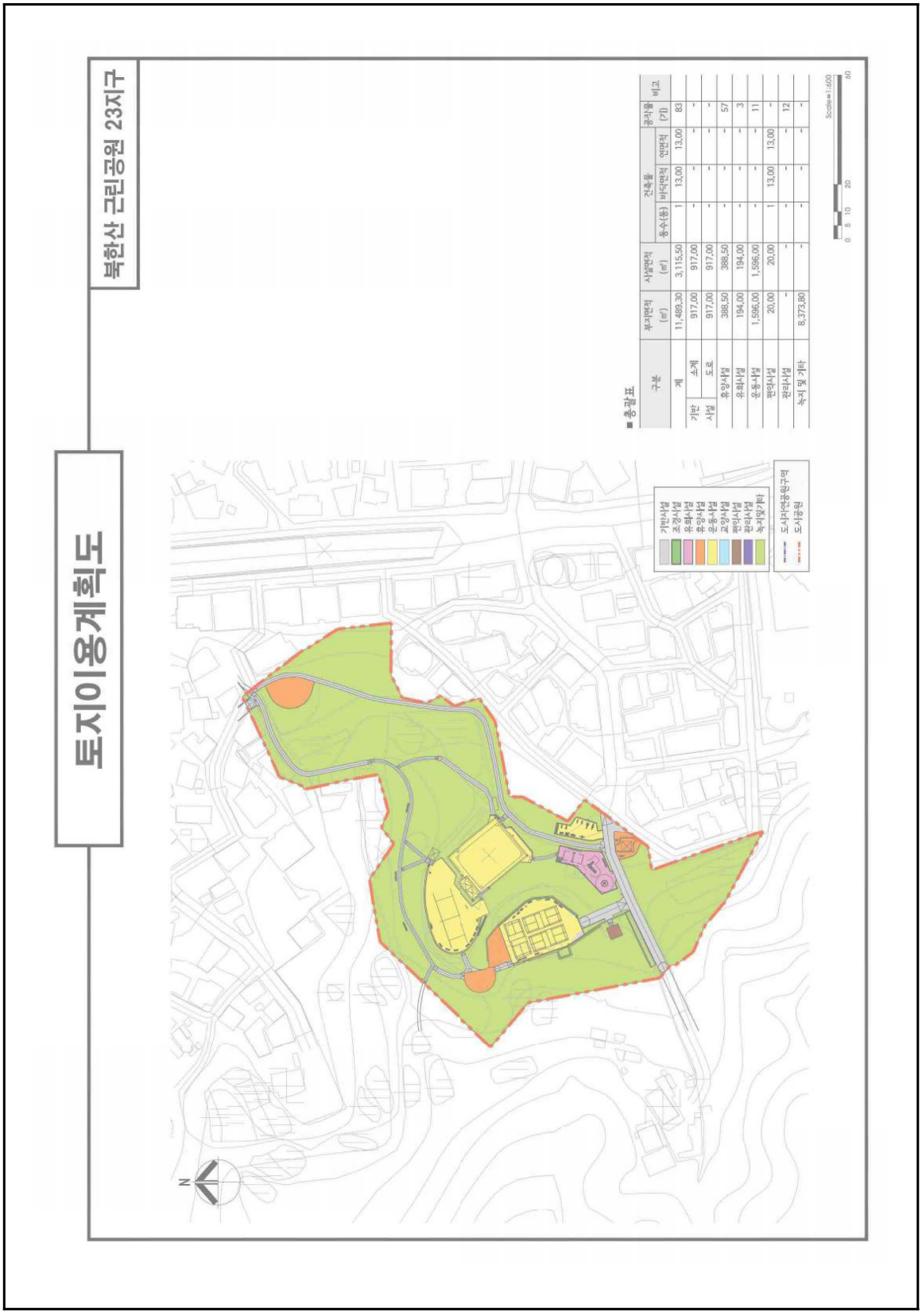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
북한산 근린공원 23지구
■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
사설면적 (㎡)
건축물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비고
계
11,489.30
3,115.50
1
13.00
13.00
83
기반사설
소계
917.00
917.00
-
-
-
-
도로
917.00
917.00
-
-
-
-
유원시설
388.50
388.50
-
-
-
57
유희시설
194.00
194.00
-
-
-
3
운동시설
1,596.00
1,596.00
-
-
-
11
편익시설
20.00
20.00
1
13.00
13.00
-
관리시설
-
-
-
-
-
12
녹지 및 기타
8,373.80
-
-
-
-
-
Scale=1:600
0 5 10 20 60
기반시설
공원시설
유희시설
유원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및기타
도시관리계획구역
도시공원
N

조성계획도

북한산 근린공원 23지구

■ 사업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11,489.30	3,115.50	-	13.00	13.00	83	
기반시설	소계		917.00	917.00	-	-	-	-	
	도로		917.00	917.00	-	-	-	-	
휴양시설	소계		388.50	388.50	-	-	-	57	
	쉼터	가	388.50	388.50	-	-	-	-	
		가-1	(150.00)	(150.00)	-	-	-	-	
		가-2	(80.00)	(80.00)	-	-	-	-	
		가-3	(84.00)	(84.00)	-	-	-	-	
		가-4	(74.50)	(74.50)	-	-	-	-	
	파고라	①	-	-	-	-	-	7	
	평의자	②	-	-	-	-	-	50	
유희시설	소계		194.00	194.00	-	-	-	3	
	어린이놀이터	나	194.00	194.00	-	-	-	-	
	회전놀이대	③	-	-	-	-	-	1	
	조합놀이대	④	-	-	-	-	-	1	
	그네	⑤	-	-	-	-	-	1	
운동시설	소계		1,596.00	1,596.00	-	-	-	11	
	게이트볼장	다	498.00	498.00	-	-	-	-	
	다목적구장	라	498.00	498.00	-	-	-	-	
	배드민턴장	마	499.00	499.00	-	-	-	-	
	체력단련장	바	101.00	101.00	-	-	-	-	
	체력단련기구	⑥	-	-	-	-	-	11	
편익시설	소계		20.00	20.00	-	13.00	13.00	-	
	화장실	1	20.00	20.00	-	13.00	13.00	-	
관리시설	소계		-	-	-	-	-	12	
	안내판	⑦	-	-	-	-	-	12	
녹지 및 기타	소계		8,373.80	-	-	-	-	-	
	녹지		8,373.80	-	-	-	-	-	


토지이용계획도
북한산 근린공원 24지구
기반시설
조경시설
유희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및기타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계
907.50
녹지 및 기타
907.50
Scale=1:800
0 10 20 40 60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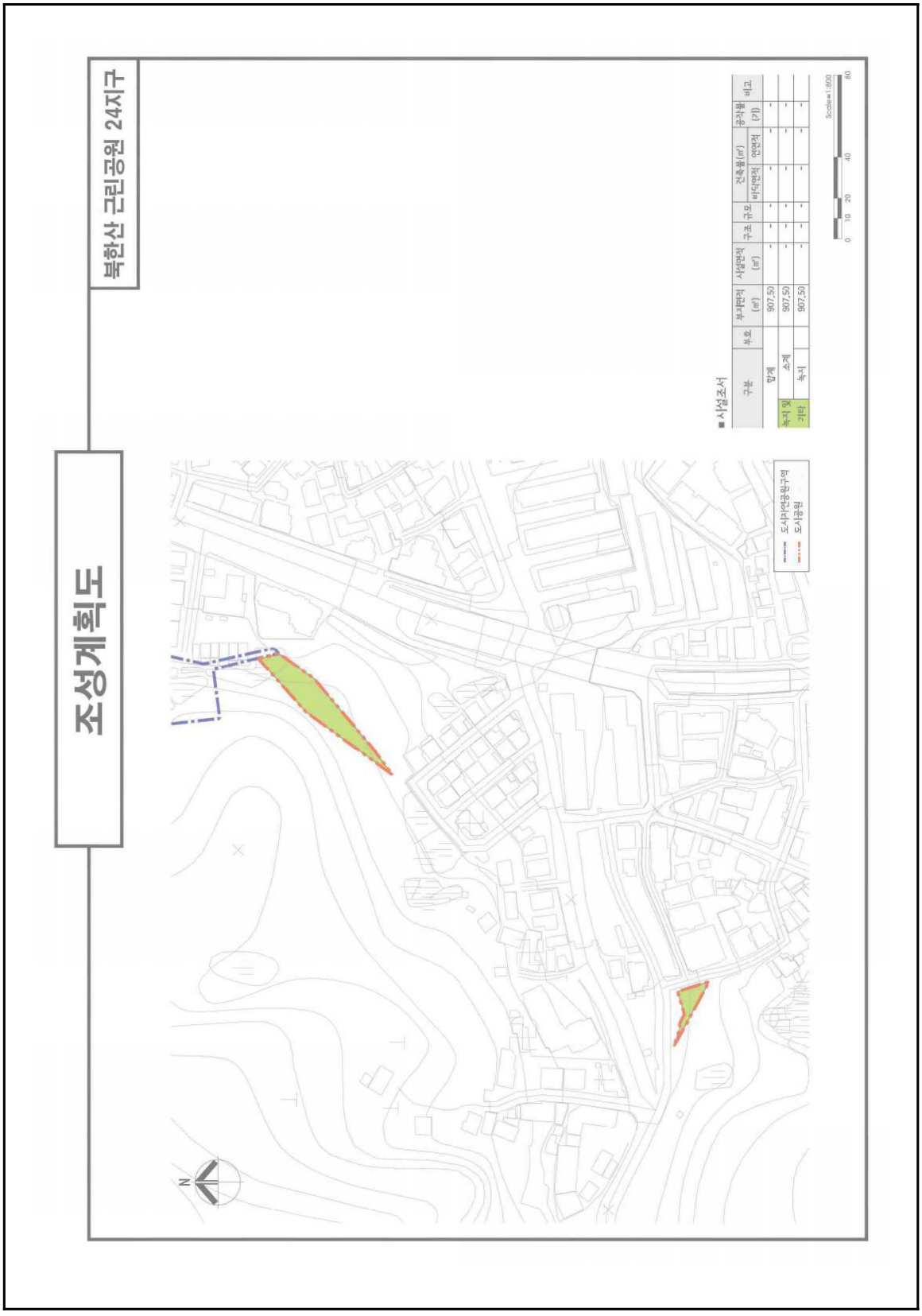
조성계획도
북한산 근린공원 24지구
■사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907.50
소계
907.50
녹지 및 기타
녹지
907.50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N
Scale=1:800
0 10 20 40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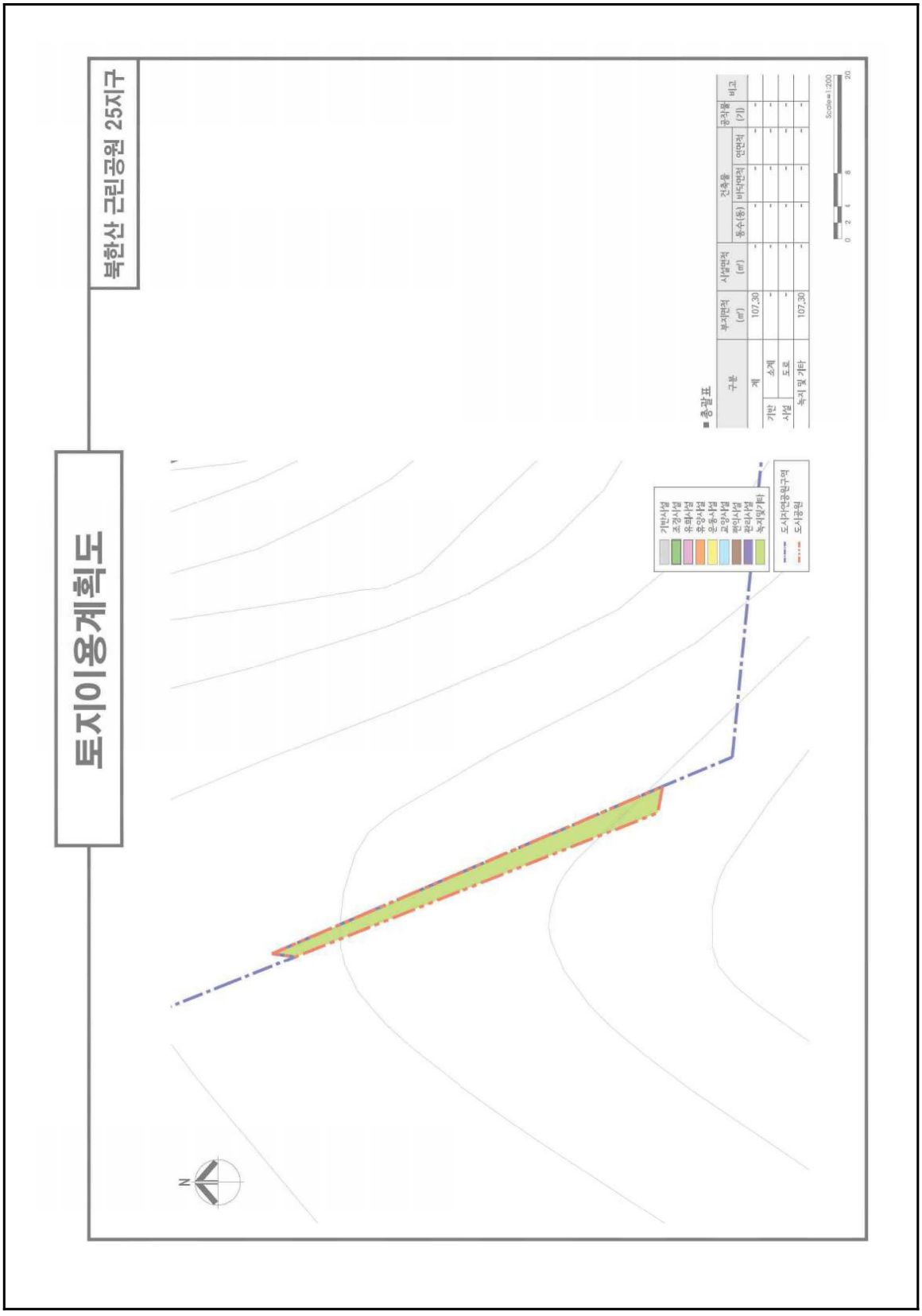
북한산 근린공원 25지구
토지이용계획도
■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
사설면적 (㎡)
건축물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계
107,30
기반 사설
소계
도로
녹지 및 기타
107,30
기반사설
조경사설
유희사설
휴양사설
운동사설
교양사설
편익사설
전원사설
녹지및기타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Scale=1:200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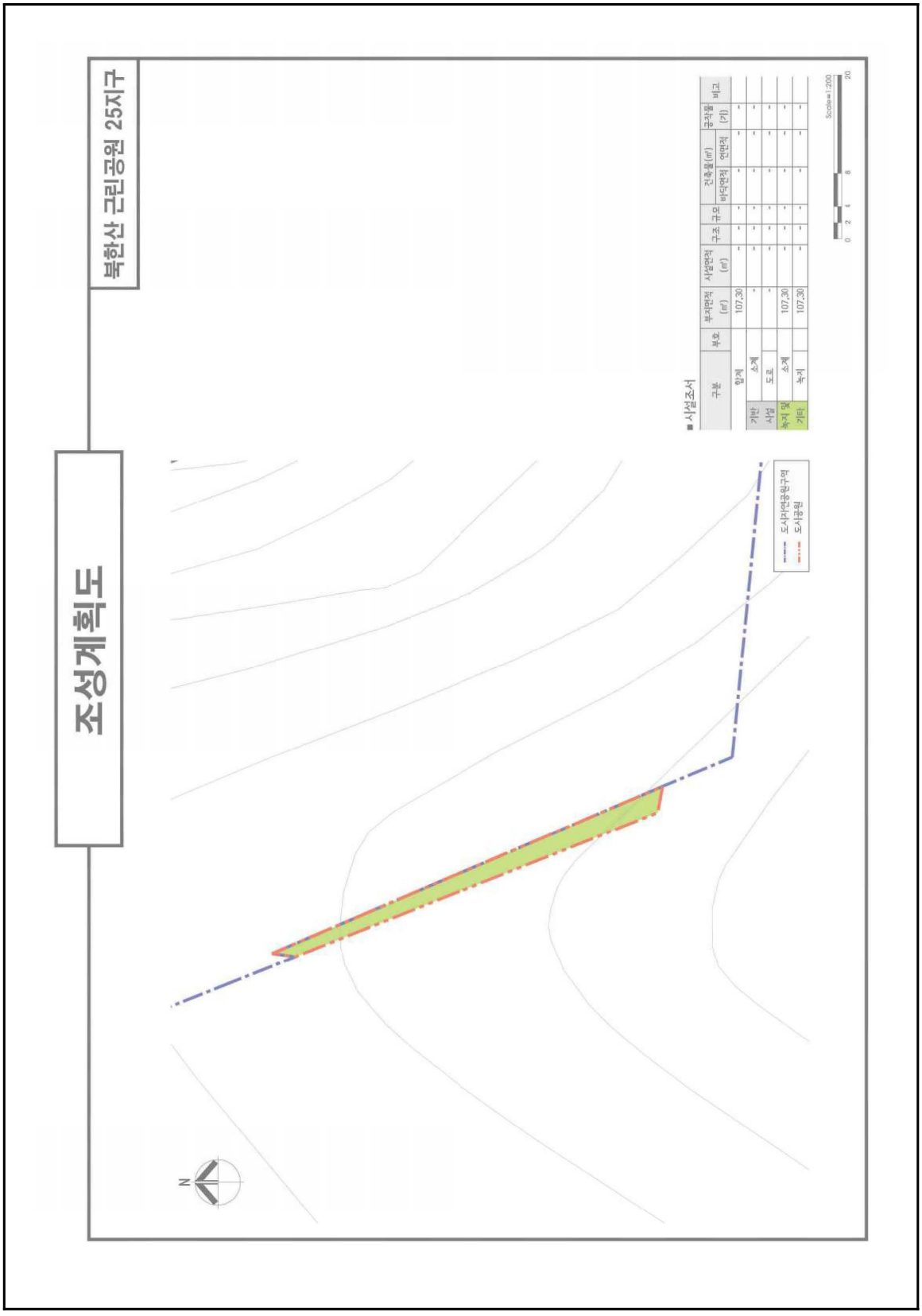
조성계획도
북한산 근린공원 25지구
■ 사업조서
구분 | 부호 | 부지면적(㎡) | 사업면적(㎡) | 구조 규모 |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기) | 비고
합계 | | 107.30 | - | - | - | - | - | -
개발사업 소계 | | - | - | - | - | - | - | -
개발사업 도로 | | - |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소계 | | 107.30 |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녹지 | | 107.30 | - | - | - | - | - | -
도시계획공원구역
도시공원
N
Scale=1:200
0 2 4 8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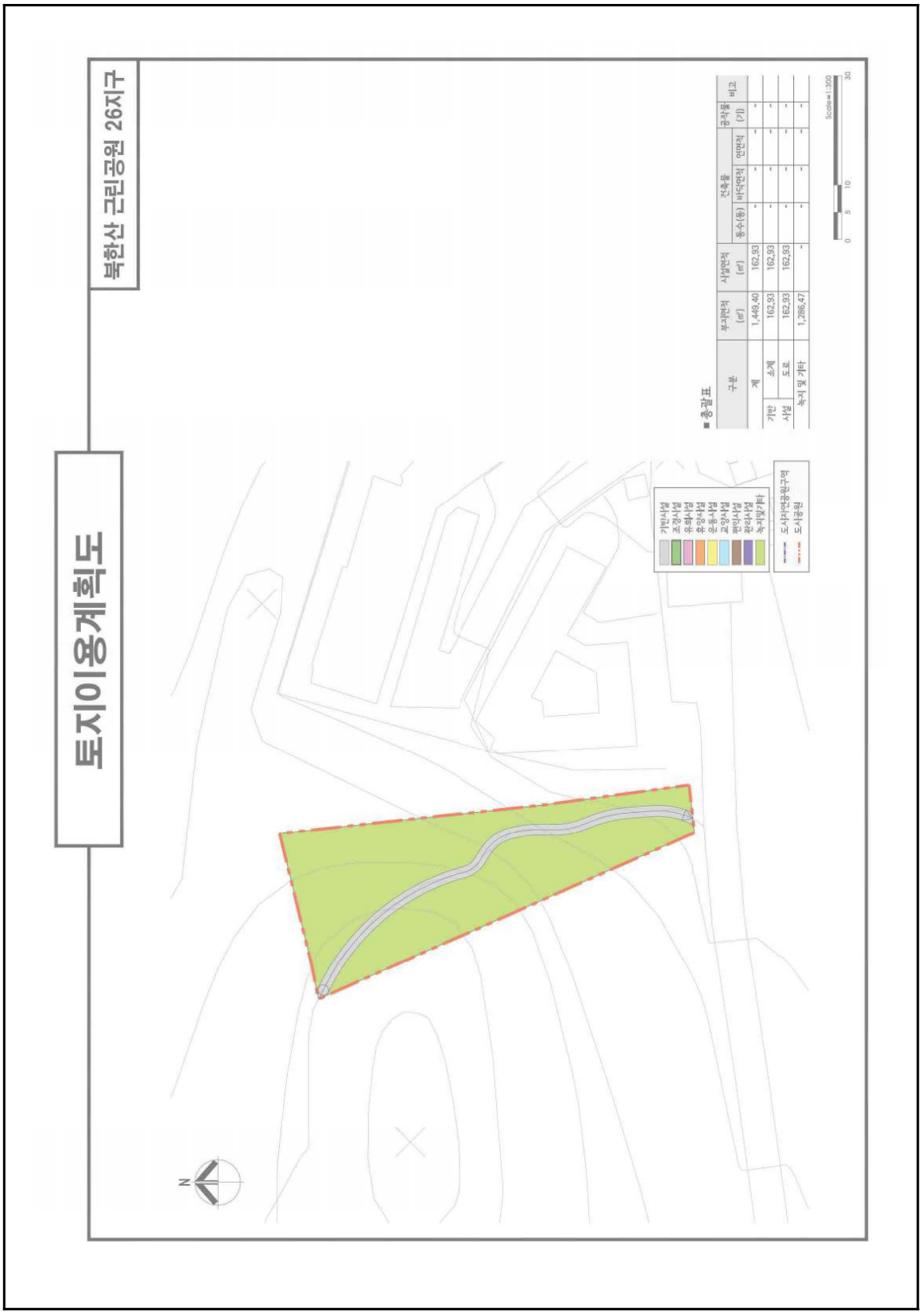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
북한산 근린공원 26지구
■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계
1,449.40
162.93
기반 시설
소계
162.93
162.93
도로
162.93
162.93
녹지 및 기타
1,286.47
기반시설
조경시설
유희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및기타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Scale=1:300
0
5
10
30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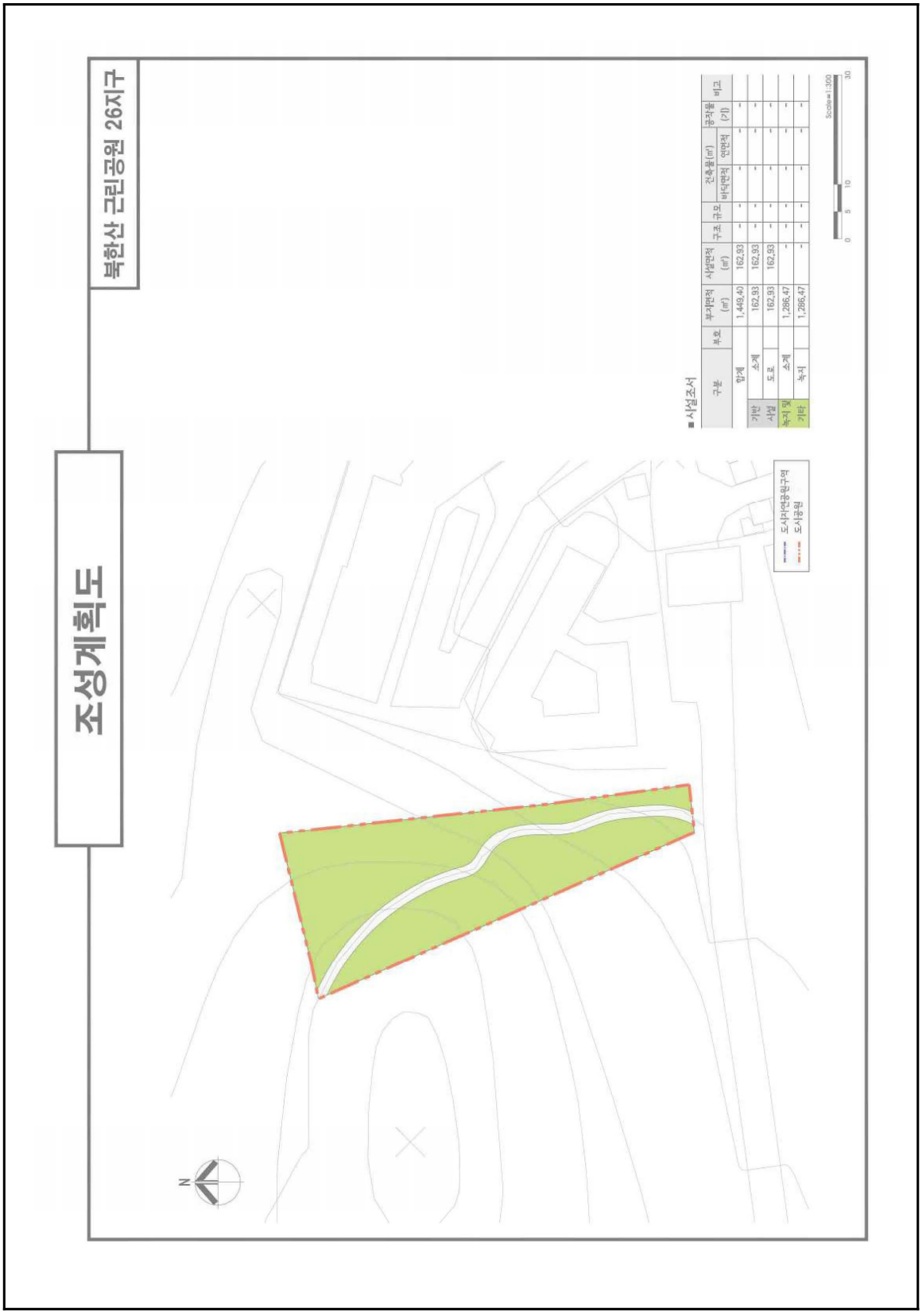
조성계획도
북한산 근린공원 26지구
■ 사업조서
구분 | 부호 | 부지면적(㎡) | 사업면적(㎡) | 구조 규모 | 잔축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기) | 비고
합계 | | 1,449.40 | 162.93 | - | - | - | - | -
기반사업 | 소계 | 162.93 | 162.93 | - | - | - | - | -
기반사업 | 도로 | 162.93 | 162.93 | - | - | - | - | -
녹지 및 기타 | 소계 | 1,286.47 |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 녹지 | 1,286.47 | - | - | - | - | - | -
Scale=1:300
0 5 10 30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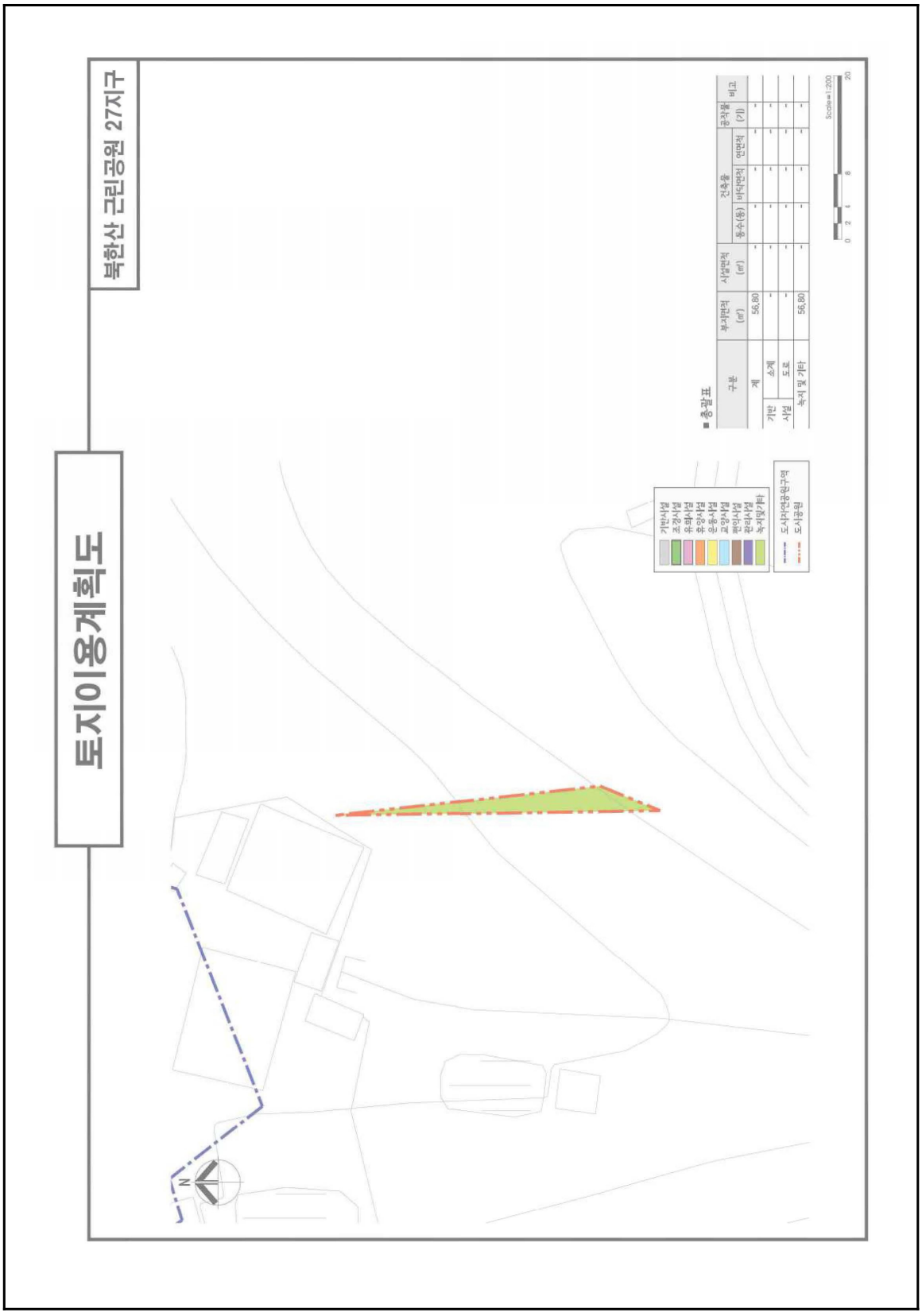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
북한산 근린공원 27지구
■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계
56.80
기반 시설
소계
도로
녹지 및 기타
56.80
기반시설
조경시설
유희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및기타
도시지연공원구역
도시공원
Scale=1:200
0 2 4 8 20
N


북한산 근린공원 27지구
조성계획도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56.80
기반
소계
시설
도로
녹지 및
소계
56.80
기타
녹지
56.80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Scale=1:200
0 2 4 8 20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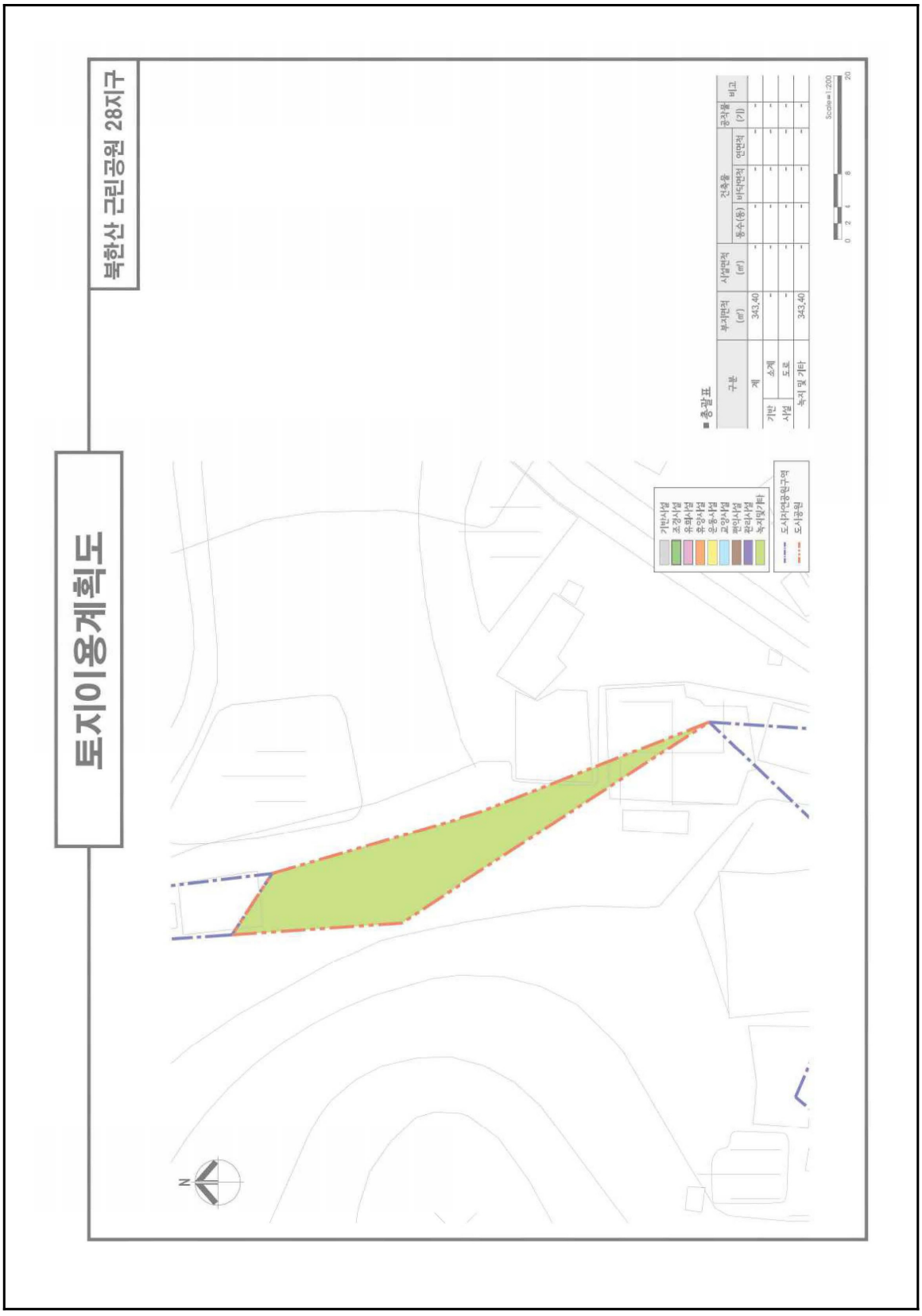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
북한산 근린공원 28지구
기반시설
조경시설
유희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및기타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N
■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계
343.40
기반 시설
소계
도로
녹지 및 기타
343.40
Scale=1:200
0 2 4 8 20


북한산 근린공원 28지구
조성계획도
■ 사업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사업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지율 (%)
비고
합계 343.40
기반시설 소계
도로
녹지 및 기타 소계 343.40
녹지 343.40
도시지역공원구역
도시공원
N
Scale=1:200
0 2 4 8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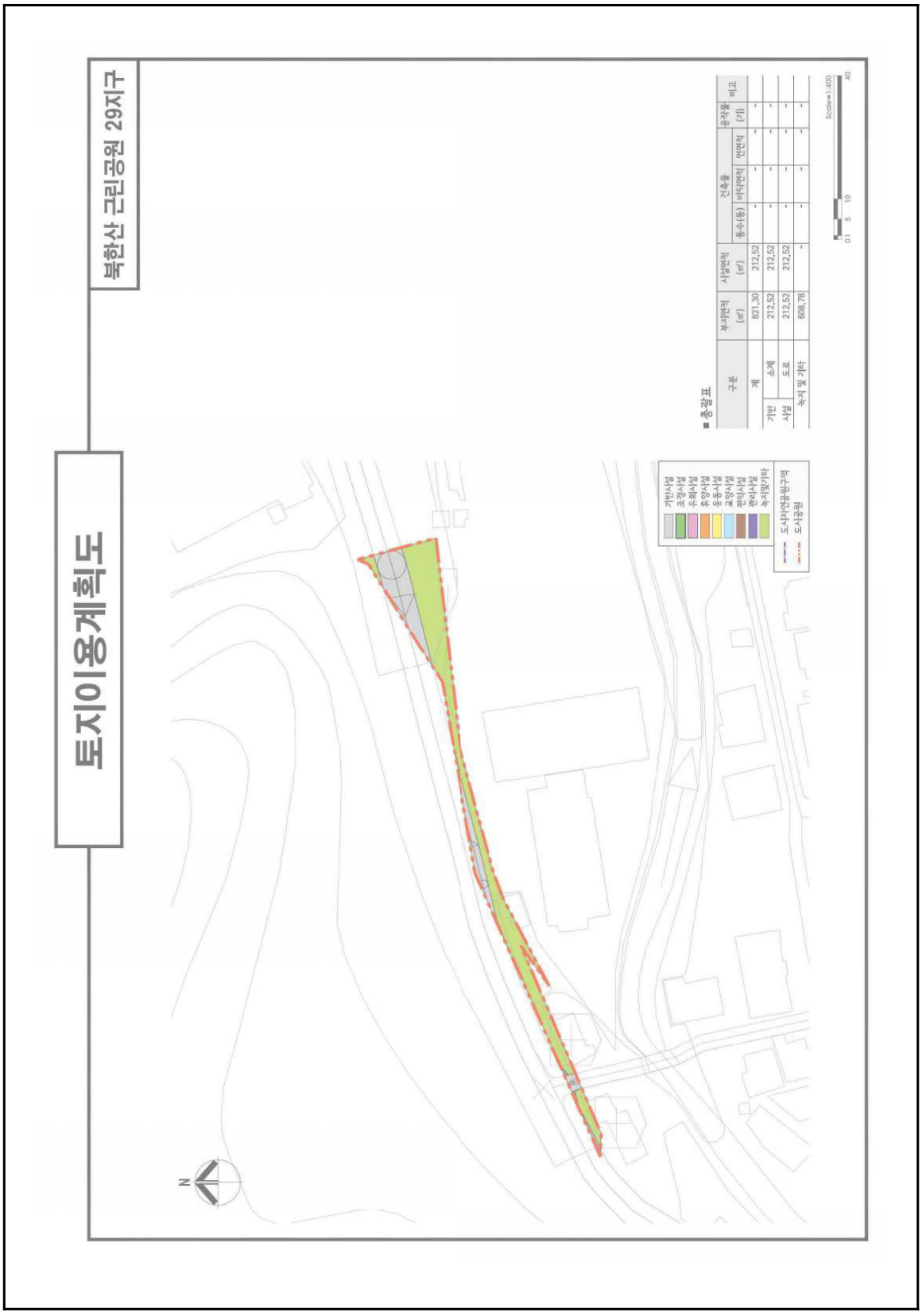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
북한산 근린공원 29지구
■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계 821,30 212,52 - - - -
기반 시설
소계 212,52 212,52 - - - -
도로 212,52 212,52 - - - -
녹지 및 기타 608,78 - - - - -
기반시설
조경시설
유희시설
유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및기타
도시지연공원구역
도시공원
N
Scale=1:400
0 1 5 10 40


북한산 근린공원 29지구
조성계획도
■ 사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상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821.30
212.52
기반시설
소계
212.52
212.52
도로
212.52
212.52
녹지 및 기타
소계
608.78
녹지
608.78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N
Scale=1:400
0.1 5 10 40


토지이용계획도
북한산 근린공원 30지구
■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계
1,318.00
기반 시설
소계
도로
녹지 및 기타
1,318.00
Scale=1:500
0 5 10 20 50
기반시설
초경시설
유희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및기타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N


조성계획도
북한산 근린공원 30지구
■ 사업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사업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1,318.00 - - - - - - -
가반시설 소계 - - - - - - -
도로 - - - - - - -
녹지 및 기타 소계 1,318.00 - - - - - -
녹지 1,318.00 - - - - -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N
Scale=1:500
0 5 10 20 50

토지이용계획도

북한산 근린공원 31지구



■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4,758.60	497.21	1동	198.62	198.62	-	
기반 시설	소계	298.59	298.59	-	-	-	-	
	도로	298.59	298.59	-	-	-	-	
휴양시설		198.62	198.62	1동	198.62	198.62	-	
녹지 및 기타		4,460.01	-	-	-	-	-	

Scale=1:800

0 10 20 40 80


조성계획도
북한산 근린공원 31지구
■ 사업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사업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4,758.60 497.21 - 1동 198.62 198.62 -
기반시설 소계 298.59 298.59 - - - - -
도로 298.59 298.59 - - - - -
용상시설 소계 198.62 198.62 - 1동 198.62 198.62 -
경로당 가 198.62 198.62 - 1동 198.62 198.62 -
녹지 및 경관 소계 4,261.39 - - - - - -
녹지 4,261.39 - - - - - -
도시계획공원구역
도시공원
N
Scale=1:800
0 10 20 40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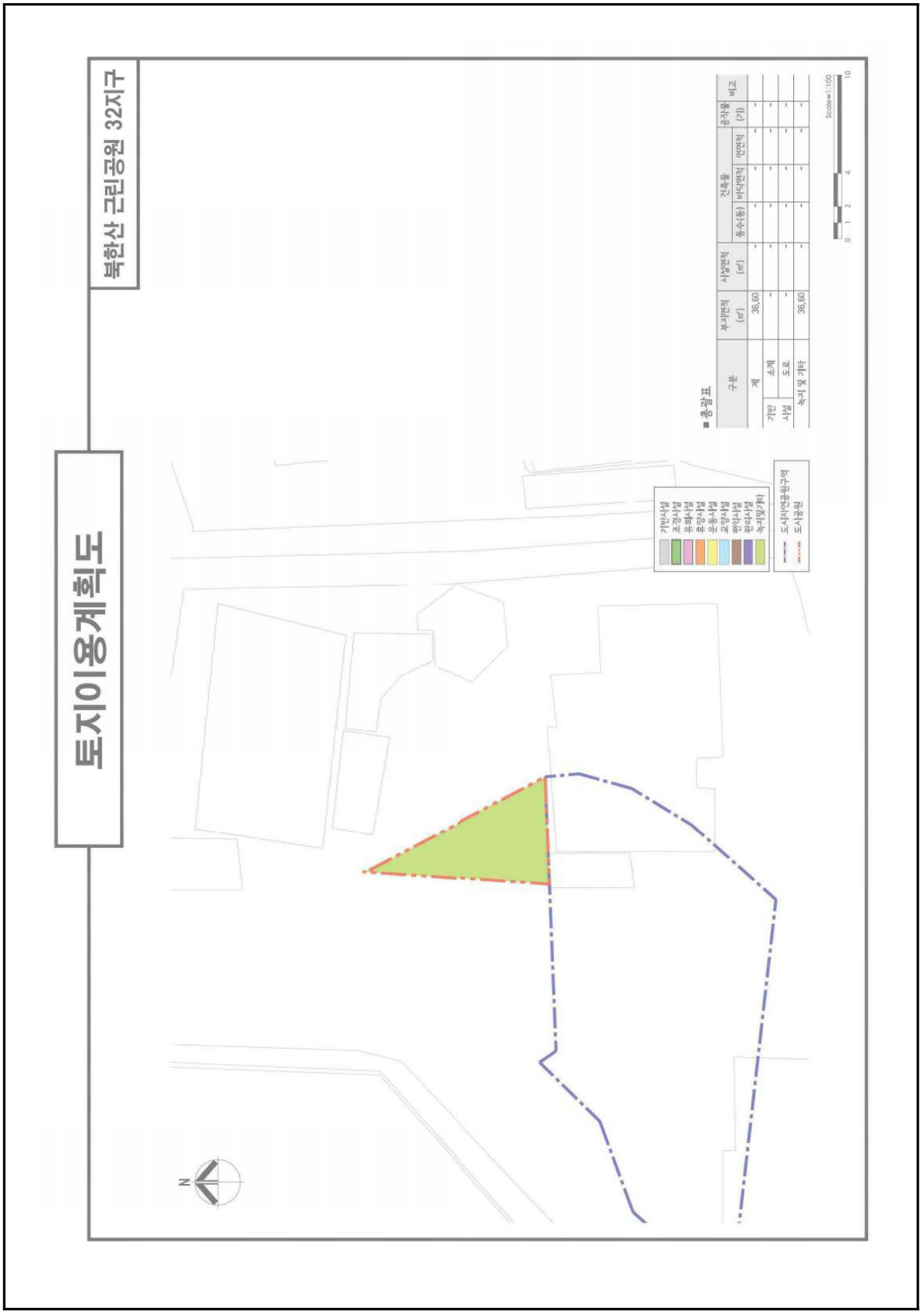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
북한산 근린공원 32지구
■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계
36.60
기반 시설
소계
도로
녹지 및 기타
36.60
기반시설
조경시설
유희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및기타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Scale=1:100
N


북한산 근린공원 32지구
조성계획도
■ 사업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사업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개)
비고
합계
36.60
기반 시설
소계
도로
녹지 및 기타
소계
녹지
36.60
36.60
도시군계획구역
도시공원
N
Scale=1:100
0 1 2 4 10

토지이용계획도

북한산 근린공원 33지구



■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350,30	185,47	-	-	-	-	
시설 기반	소계	356,38	46,57	-	-	-	-	
	도로	356,38	46,57	-	-	-	-	
교양시설		138,90	138,90	-	-	-	-	
녹지 및 기타		855,02	-	-	-	-	-	

Scale=1:800

0 10 20 40 60


조성계획도
북한산 근린공원 33지구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1,350.30 185.47 - - - - -
기반시설 소계 356.38 46.57 - - - - -
도로 356.38 46.57 - - - - -
교통시설 소계 138.90 138.90 - - - - -
도시관 가 138.90 138.90 - - - - -
녹지 및 기타 소계 855.02 - - - - - -
녹지 855.02 - - - - -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가
N
Scale=1:800
0 10 20 40 60


토지이용계획도
북한산 근린공원 34지구
■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계
312,00
-
-
-
-
-
녹지 및 기타
312,00
-
-
-
-
-
Scale=1:400
0.1 5 10 40
N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조성계획도
북한산 근린공원 34지구
■사업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사업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312.00
소계
312.00
녹지 및 기타
녹지
312.00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N
Scale=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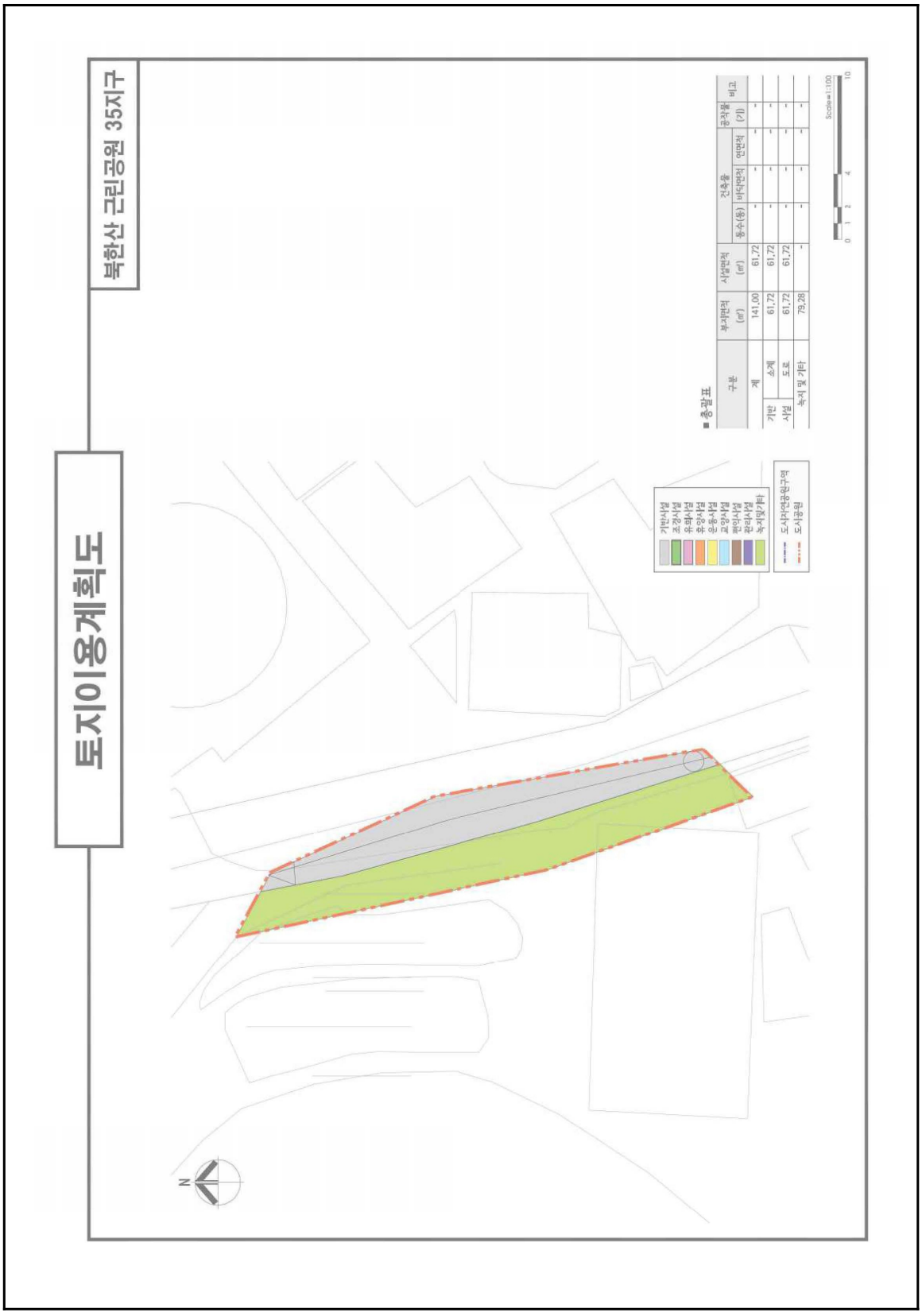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
북한산 근린공원 35지구
■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계
기반 시설
소계
도로
녹지 및 기타
141,00
61,72
61,72
61,72
79,28
기반시설
조경시설
유희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및기타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Scale=1:100
N


조성계획도
북한산 근린공원 35지구
■ 사업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사업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개) 비고
합계 141.00 61.72
기반사업 소계 61.72 61.72
도로 61.72 61.72
녹지 및 기타 소계 79.28
녹지 79.28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N
Scale=1:100
0 1 2 4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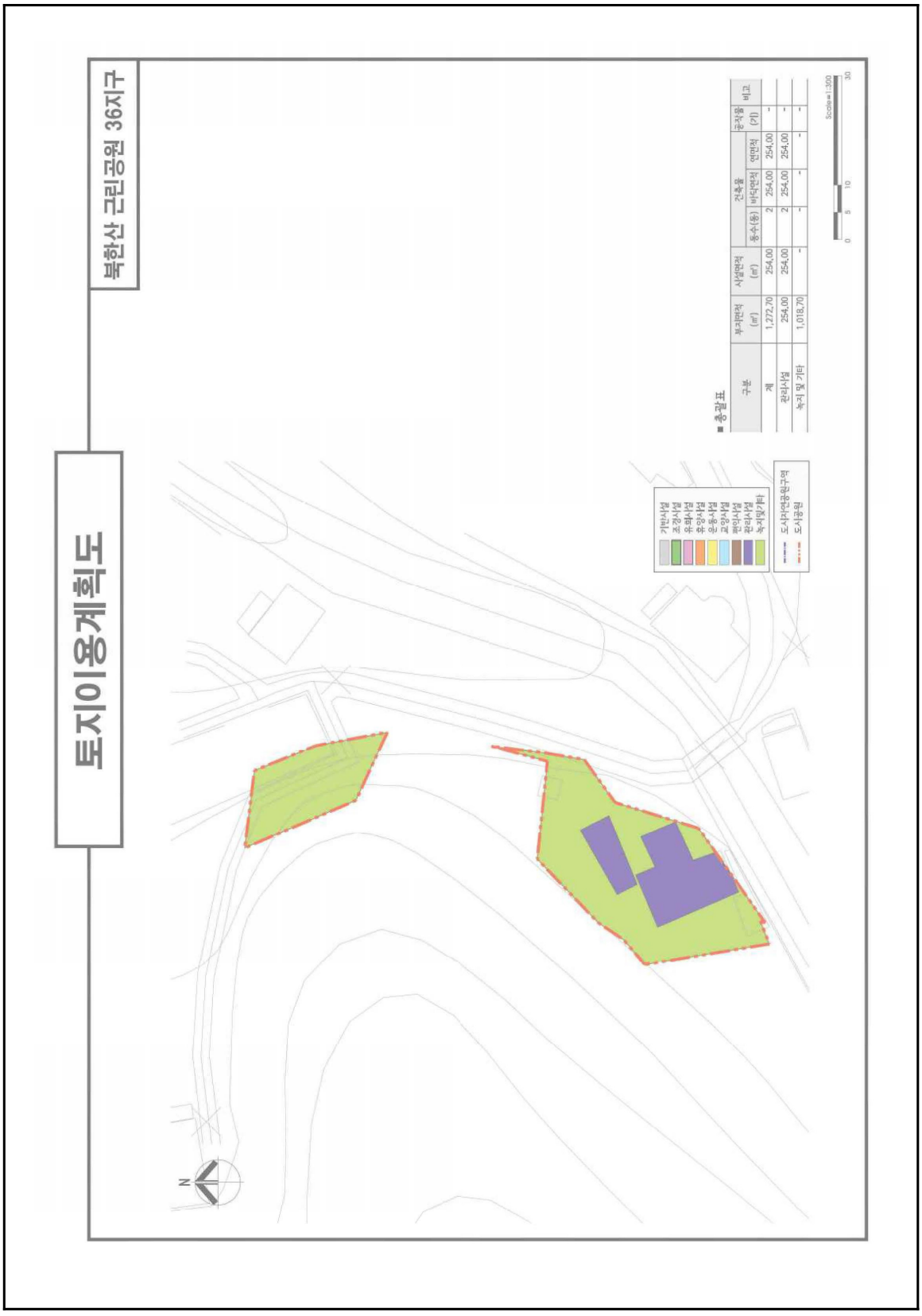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
북한산 근린공원 36지구
■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율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계
1,272.70
254.00
2
254.00
254.00
-
관리시설
254.00
254.00
2
254.00
254.00
-
녹지 및 기타
1,018.70
-
-
-
-
기반시설
조경시설
유희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및기타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Scale=1:300
0
5
10
30
N

조성계획도

북한산 근린공원 36지구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1,272,70	254,00	-	2	254,00	254,00	-	
관리 시설	소계		254,00	254,00	-	2	254,00	254,00	-	
	진화대대기실	가	189,00	189,00	-	1	189,00	189,00	-	
	창고	나	65,00	65,00	-	1	65,00	65,00	-	
녹지 및 기타	소계		1,018,70	-	-	-	-	-	-	
	녹지		1,018,70	-	-	-	-	-	-	

Scale=1:300

0 5 1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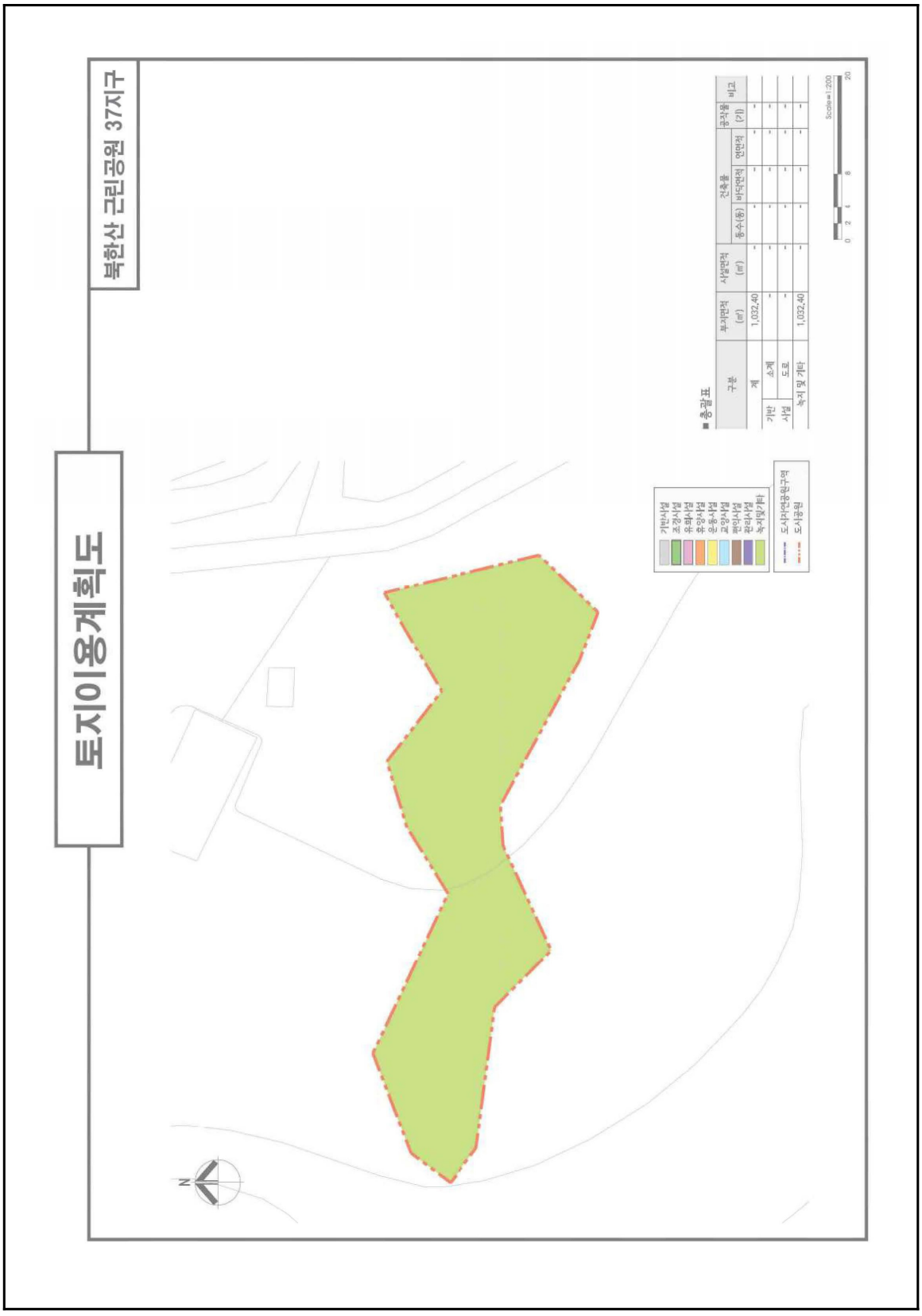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
북한산 근린공원 37지구
■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
사설면적 (㎡)
건축물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계
1,032.40
기반 사설
소계
도로
녹지 및 기타
1,032.40
Scale=1:200
0 2 4 8 20
기반사설
조경사설
유희사설
휴양사설
운동사설
교양사설
편익사설
관리사설
녹지및기타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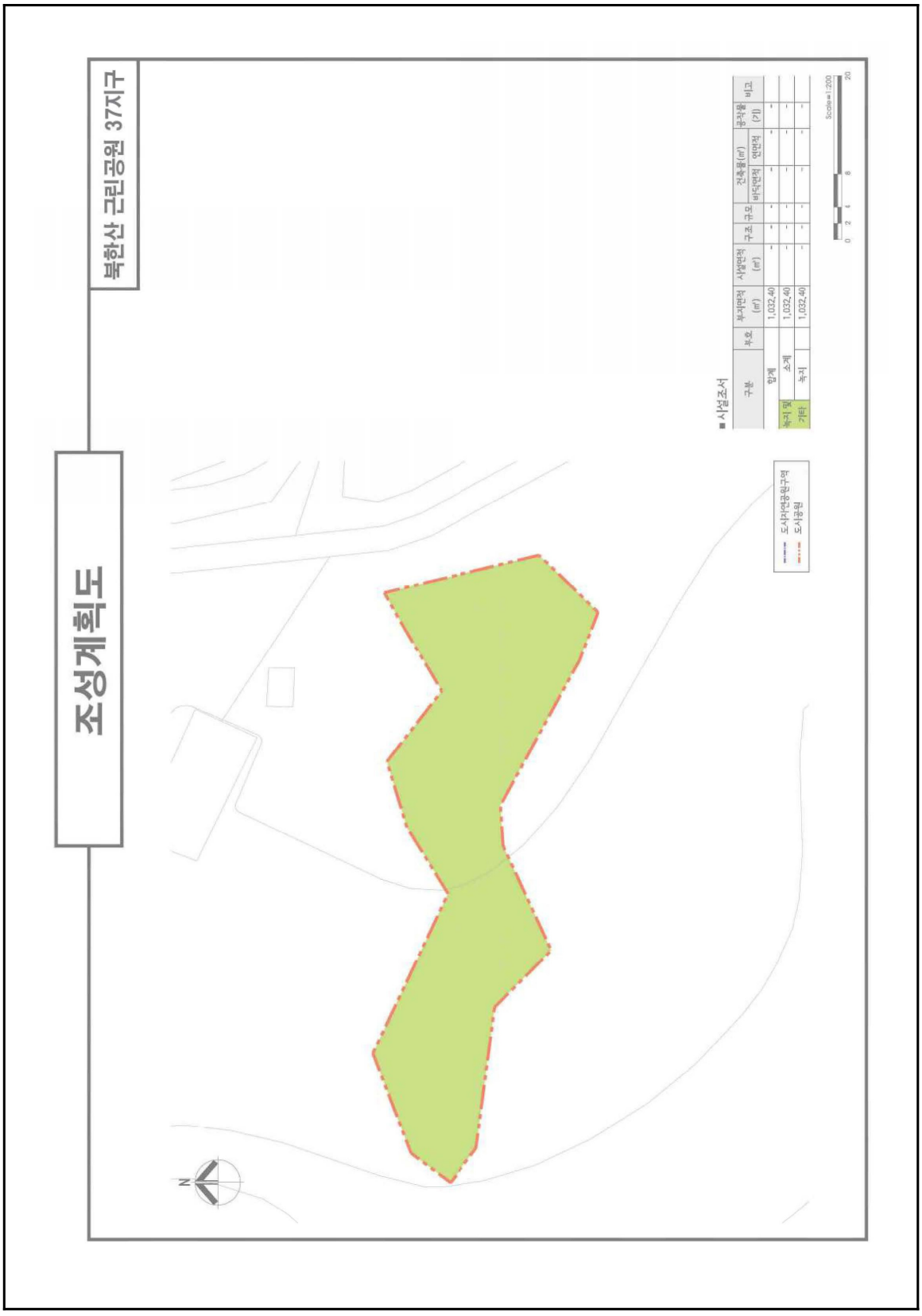
조성계획도
북한산 근린공원 37지구
■ 사업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사업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개)
비고
합계
1,032.40
소계
1,032.40
녹지 및 기타
녹지
1,032.40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N
Scale=1:200

◈ 은평구공고 제2021-279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광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재열람 공고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은평구 고시 제16호(1997.5.6.)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서울시 고시 제155호(1995.6.5.)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되었고, 서울시 고시 제265호(1998.10.2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불광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불광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열람 공고 합니다.
3. 관련 내용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용할 물건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할 것이나,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32-10 등(2필지)
나.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불광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주요 변경내용
  ┌ 변경 전 : 토지보상 1,285㎡(불광동 산32-10 등 3필지)
  └ 변경 후 : 토지보상 1,080㎡(불광동 산32-10 등 2필지)
  ※ 불광동 산58-17번지가 독바위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서울시고시 제2019-237호(2019.07.25.)에 포함되어 보상대상에서 제외
라. 사업시행자
  1)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21.12.31.까지
사. 열람장소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 351-8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사 업 명 : 불광근린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 은평구청장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불광동	산32-10	임야	603	603	염**	서울시 **구 ***동 ***-5 **아파트 79동 1**1호	서울 **** 공사	서울시 **구 **대로 3*6	지성권 설정	
2	불광동	산58-26	임야	477	477	박**	서울시 **구 ****로2길 48 6**호(**동, ****)				
						박**	경기도 과천시 **로 143, 1**2동 8**호(**동, ***** 팰*스)				
						박**	경기도 **시 **읍 **로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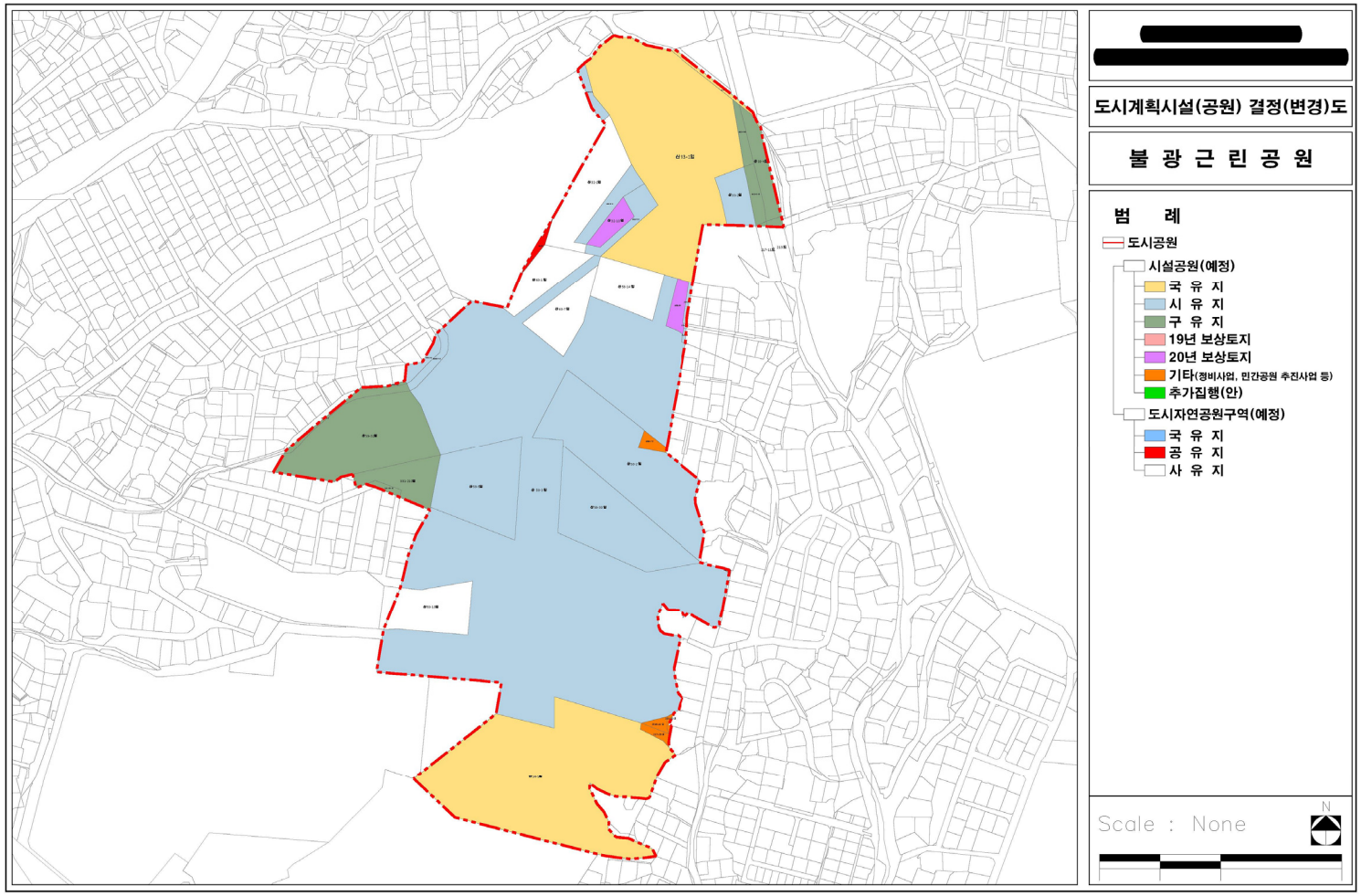
[redacted]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도
불 광 근 린 공 원
범 례
도시공원
시설공원(예정)
국 유 지
시 유 지
구 유 지
19년 보상토지
20년 보상토지
기타(정비사업, 민간공원 추진사업 등)
추가집행(안)
도시자연공원구역(예정)
국 유 지
공 유 지
사 유 지
Scale : None
N

◈ 은평구공고 제2021-293호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8호(2004.2.25.)로 은평뉴타운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58호(2006.12.28.)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04호(2016.4.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48호(2020.4.16.)로 은평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열람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8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76-40번지 일원(폐기물처리시설①)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2) 명 칭 :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다. 사업의 면적 : 11,535.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은평구청장
2)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23. 10.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열람도서 참조

사. 열람기간 : 2021. 2. 19 ~ 2021. 3. 4.

아. 열람장소 : 은평구청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02-351-76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서구공고 제2021-228호

도시계획시설(등마루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등마루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18일
강 서 구 청 장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14)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91호(2002.7.9.)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등마루근린공원에 대하여
2.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이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산199-1번지 외 1필지
다. 사업의 규모
  1) 변경 전 : 토지 12,216㎡
  2) 변경 후 : 토지 12,216㎡, 건물 264.46㎡, 기타 지장물 및 수목 등
라. 사업의 내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바.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사. 사업기간
  1) 변경 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3년간
  2) 변경 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5년간
아.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 : 별도첨부
자.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공원녹지과(☎02-2600-4255)
차.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토지)

□ 사업명 :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 사업시행자 : 강서구청장

연번	지번	지목	지적(㎡)		공유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1	화곡동 산199-1	임야	12,050	12,050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24길 **	학교법인** *******학원				
2	화곡동 1128-27	대지	166	166	5.68/16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서교동)	이*호				
					5.68/16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	임*훈				
					5.68/166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해안로 ****(오류동)	유*덕	서울 도봉구 쌍문동 ***-**	김*봉	근저당	
					4.53/16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8길 **, *동 ***호(화곡동, 연희빌라)	박*기				
					10.21/16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 ***호(공덕동, 파크팰리스2)	조*숙				
					4.81/16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8길 **, *동 ***호(화곡동, 연희빌라)	허*				
					4.81/16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8길 **, *동 ***호(화곡동, 연희빌라)	양*희				
					4.81/16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8길 **, *동 ***호(화곡동, 연희빌라)	이*호				
					5.68/16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8길 **, *동 ***호(화곡동, 연희빌라)	양*봉				
					4.53/16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8길 **, *동 ***호(화곡동, 연희빌라)	한*백				
					5.68/16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8길 **, *동 ***호(화곡동, 연희빌라)	정*용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	신용보증기금	채권자	

연번	지번	지목	지적(㎡)		공유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2	화곡동 1128-27	대지	166	166				강남구 강남대로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자	
					4.53/16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8길 **, *동***호(화곡동, 연희빌라)	이*주				
					5.68/16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 ***동 ***호(청라동, 청라웰카운티19단지)	김*수				
					4.88/166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석길 3-**	라*숙				
					4.81/166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33가길 **(화곡동)	최*일	서울 마포구 독막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강서구	압류	
					5.68/16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문래동2가)	이*숙				
					4.53/16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9길 **	안*생				
					5.68/16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8길 **, *동 ***호(화곡동, 연희빌라)	김*수				
					4.53/16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8길 **, *동 ***호(화곡동, 연희빌라)	김*임	서울 중구 을지로2가 ***-*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	
					4.53/16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8길 **, *동 ***호(화곡동, 연희빌라)	이*찬				
					4.88/16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 ***동 ****호(화곡동, 우장산롯데캐슬)	전*수				
					4.53/16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8길 **, ***호(화곡동)	이*자	서울 중구 소공로 **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5.68/16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 ***동 ***호(중산동, 중산마을)	채*엽				
					4.81/16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8길 **, ***호(화곡동)	이*옥				

연번	지번	지목	지적(㎡)		공유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2	화곡동 1128-27	대지	166	166	2.265/16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8길 **, ***호(화곡동)	김*혜				
					2.265/16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8길 **, ***호(화곡동)	이*용	서울 중구 남대문로 **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	
					4.53/16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8길 **, ***호(화곡동)	김*택				
					4.53/166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 ***호(화곡동)	김*숙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	주식회사 신한은행	근저당	
					4.53/16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67번길 **, ***동 ***호(상현동, 만현마을3단지성원상떼빌)	권*도				
					4.88/16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8길 **, *동 ***호(화곡동, 연희빌라)	조*륜	서울 중구 소공로 **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5.68/166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18나길 *(화곡동)	주*하				
					2.84/16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8길 **, ****동 ****호(화곡동, 화곡보람아파트)	박*주				
					2.84/16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8길 **, ****동 ****호(화곡동, 화곡보람아파트)	문*숙				
					4.79/16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8길 **, *동 ***호(화곡동, 연희빌라)	박*이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물건)

□ 사업명 :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 사업시행자 : 강서구청장

연번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주) 또는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계										
1	강서구 화곡동 산199-1	주택	철근연와조 (2층)	264.46㎡	학교법인****** ***학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24길 **)				
2	강서구 화곡동 산199-1	주택 및 창고	블록조 1,2층 (각층 5.5×4.5)	1식	학교법인****** ***학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24길 **)				
3	강서구 화곡동 산199-1	차고 등 물건 9개소	철파이프조 6×6 등	1식	학교법인****** ***학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24길 **)				
4	강서구 화곡동 산199-1	선주목 등 수목 427주	4×1.5 등	1식	학교법인****** ***학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24길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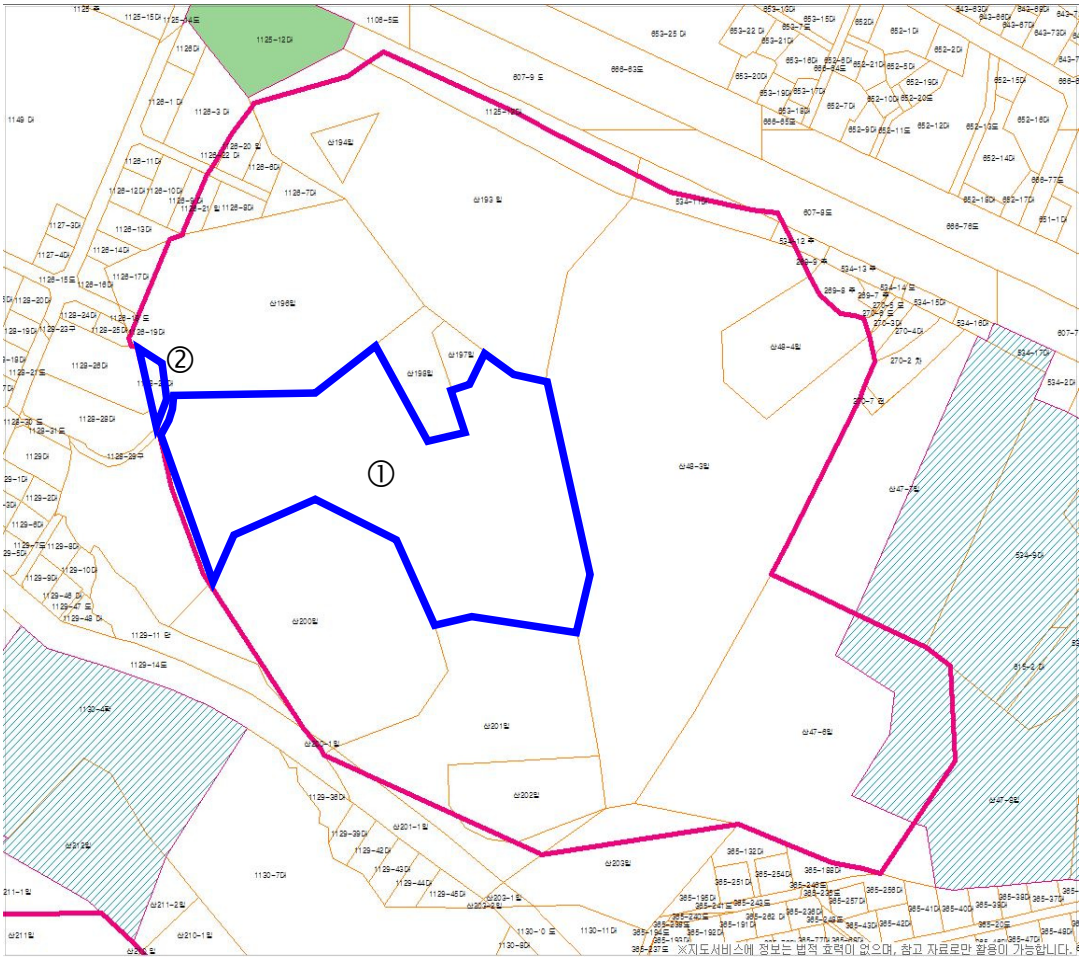

연번	지 번	비 고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산199-1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128-27	

◈ 동작구공고 제2021-28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77호(2014. 7.31.)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166호(2020.11.12.)로 도시관리계획 변경되어, 같은 고시 제2020-199호(2020.12.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되었으며, 같은 고시 제2021-11호(2021. 1.21.)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아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동 작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동작구 노량진동 13-27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드림스퀘어 진입도로 연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폭 6m, 연장 6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현숙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17, 806호
5.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관리청 무상귀속 공공시설(사업시행자 → 동작구)

시설의 종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사업시행자)	비고
도로(소로3-2)	노량진동 13-27	도로	36㎡	김현숙	

6.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02-820-95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공고 제2021-28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6-29호(2016. 3.3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되고, 같은 고시 제2016-73호(2016. 9.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되었으며, 같은 고시 제2020-108호(2020. 7.23.)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노량진 철도횡단지하보도 개설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동 작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노량진동 42-18 ~ 16-3 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노량진 철도횡단지하보도 개설공사
     (노량진 드림스퀘어복합빌딩 신축관련 지하횡단보도 개설공사)

3. 사업규모
   - 도로(지하보도)개설(소로3-②) : 폭 6m ~ 9m, 길이 75m
   - 도로(입체결정) (소로4-) : 폭 6m ~ 9m, 길이 3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법 인 명 칭 : 드림스퀘어
   - 법인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2길 9-3호 외 5필지
   - 대표자성명 : 김현숙 외 106명

5.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관리청 무상귀속 공공시설

시설의 종류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면적(㎡)	비고
도로(소로3-②) 도로(소로4-)	노량진동 42-18 일대	노량진동 16-3 일대	보행자 전용도로	706 (입체결정 195)	• 철도, 완충녹지 중복결정 • 드림스퀘어 복합빌딩 통과부분 입체결정

※ 건물 내 입체결정 부분(소로4-)은 저촉 토지부분에 대해 구분지상권 설정(예정)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 지목 ·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7.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 02-820-95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구 분		주 소	지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 고
지하횡단보도	①	동작구 노량진동	40-6	공원	226.0	85.7	서울특별시	-	완충녹지
	②	동작구 노량진동	40-62	공원	109.0	108.1	서울특별시	-	
	③	동작구 노량진동	42-18	공원	149.0	41.9	서울특별시	-	
	④	동작구 노량진동	14-2	철도	439.0	26.8	국(국토교통부)	-	철도
	⑤	동작구 노량진동	14-37	철도	45,908.0	243.8	국(국토교통부)	-	
	⑥	동작구 노량진동	16-32	철도	12.0	4.7	국(국토교통부)	-	
	소 계				46,843.0	511.0			
입체적결정	⑦	동작구 노량진동	16-3	대지	1505.0	156.1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기재생략	
	⑧	동작구 노량진동	13-18	도로	558.0	38.9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기재생략	
	소 계				2,063.0	195.0			
총 계					48,096.0	706.0			

◈ 동작구공고 제2021-291호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00번지 일대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24조의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3. 본 지구단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8일
동 작 구 청 장

가. 계획의 개요
  1) 계 획 명 :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2) 위　　치 : 동작구 대방동 400번지 일대
  3) 면　　적 : 114,376.1㎡
나. 공람기간 : 2021. 2.19.(금) ~ 2021. 3.19.(금)
다.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3층)
라. 관계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의견제출
  1) 공람기간 내 및 공람기간 끝난 후 7일 이내(2021. 3.26.까지)
  2)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서면제출
  3) 제출장소 : 공람장소 서면제출, 우편, 팩스(02-820-9798),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 02-820-9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공고

◈ 강남소방서공고 제2021-4호

행정처분 1차(경고) 알림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사업장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강 남 소 방 서 장

1. 공고기간 : 2021. 2. 18.(목)~2021. 3. 3.(목)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통지
   보양기술공영㈜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경고)을 통보합니다.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행정처분 등 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보양기술공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0길 33, 4층(논현동, 덕당빌딩)]	서정원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강남92-3호 (1996. 7. 30.)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4호	1차 경고 (2021. 2. 1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개별기준의 라목

3. 행정심판 등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청(강남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 함)에 행정청(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21-61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사전통지분)과태료 부과 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21.2.18. ~ 2021. 3.3.(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21. 3.4. ~ 2021. 3.17.(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자진납부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1	000001	이*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길 **-*	지*층 *호 (홍은동)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1	000002	조*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	**동****호 (성포동, 선경아파트)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1	000003	정*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길 **-*	(화양동)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1	000005	박*희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길 **	(토정동)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2	000012	이*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동***호 (장현동, 제이파크)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2	000013	박*국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동****호 (염창동, e편한세상)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2	000014	정*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가길 **	(정릉동)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2	000017	박*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가길 **	(성수동*가)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2	000021	박*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번길 *	***동 ***호 (월평동, 월평타운)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21-62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21.2.18. ~ 2021. 3.3.(14일)
5. 납부기간 : 2021.3.4. ~ 2021.3.17.(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구분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2	00009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예*반도체 (윤*미)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길 **	라동 ****호 (구로동, 중앙유통단지)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2	00010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자	수취인불명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	(신둔면)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2	000103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정*빈	주소불명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번길 **-*	(장기동)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2	000113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박*석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	****호 (잠원동, 신사샤르망에스)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2	00010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강*중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	***동 ***호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2	00010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유*훈	기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번길 **	***동 ****호 (용현동, 엑슬루타워)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2	00010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배*진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길 **	*층 ***호 (수유동, 신우팰리스)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2	00011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서*원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	***동***호 (하월곡동, 월곡* 에스에이치빌)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2	000096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윤*태	기타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	***동***호 (목동동, 산내마을*단지)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50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강서구청장
 -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60, 61번지 (총 2필지)
 - 면 적: 37.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수문 원격감시 제어반 설치
 - 내 역:
  · 통신선로(폴리에틸렌관 D=28mm, L=100m)
  · 자동제어반 및 CCTV 각 1개소

5. 점용기간: (당초) 2016.01.31. ~ 2021.01.30.
 (변경) 2021.01.31. ~ 2026.06.3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5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1번지
 - 면 적: 1,9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설치
 - 내 역: 이동식 컨테이너 18개소

5. 점용기간: (당초) 2017.09.21. ~ 2020.09.20.
(변경) 2020.09.21. ~ 2025.12.3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5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번지, 마포구 현석동 218번지, 토정동 136-1번지, 마포동 423-1번지, 상수동 308번지
 - 면 적: 52.2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이야기조형물(패널 등) 설치
 - 내 역: 이야기조형물(패널 등) 설치 6개소

5. 점용기간: (당초) 2014.10.27. ~ 2019.10.26.
(변경) 2019.10.27. ~ 2024.12.31.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43 문의 : ☎120